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고 용 보 험 기 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임 금 채 권 보 장 기 금
근 로 복 지 진 흥 기 금

2026. 1.

고 용 노 동 부

- 순 서 -

I. 고용보험기금	1
(1) 고용유지지원금(1045-350)	3
(2) 고용창출장려금(1046-350)	11
(3) 청년추가고용장려금(1046-351)	20
(4) 고용서비스모니터링(1051-351)	26
(5)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1054-510)	39
(6) 지역고용촉진지원금(1056-353)	67
(7)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1061-350)	73
(8) 고용보험징수위탁지원(1083-350)	80
(9) 고용보험적용부과지원(1083-351)	87
(10) 고용보험적용부과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1083-355)	102
(11)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방지(1083-357)	109
(12) 내일배움카드(고보)(1151-352)	115
(13)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1152-350)	124
(14)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1153-350)	133
(15)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1154-356)	141
(16)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1155-350)	147
(17)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1160-352)	157
(18) 구직급여(1280-350)	163
(19) 조기재취업수당(1280-351)	174
(20) 자영업자 실업급여(1292-350)	181
(21) 실업크레딧지원(고보)(1293-350)	187
(22) 고용안정장려금(1345-350)	193
(23) 직장어린이집지원(1345-351)	205
(24) 모성보호육아지원(1345-358)	217
(25)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1347-350)	236
(26) 근로복지공단 인건비(7076-115)	244
(27) 고용보험운영 인건비(7076-119)	248
(28) 기금관리비 기타경비(7076-201)	252
(29) 근로복지공단 기타경비(7076-210)	256
(30)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보증금지원(7076-213)	260
(31) 고용안정사업운영(7076-220)	264

(32) 고용서비스선진화지원(7076-222)	269
(33) 실업급여운영 기타경비(7076-223)	274
(34) 실업급여심사·재심사 기타경비(7076-225)	278
(35) 고용보험운영 기타경비(7076-226)	283
(36) 고용센터자체청사관리비(7076-228)	287
(37) 지역고용 정책협의회 운영지원(7076-234)	292
(38) 직업능력개발사업운영(7076-240)	297
(39) 근로자능력개발사업운영(7076-241)	301
(40) 모성보호사업운영(7076-250)	305
(41) 고령자고용촉진캠페인(7076-252)	310
(42) 고용보험연구용역(7077-271)	315
(43) 한국직업능력연구원조사연구지원(7077-272)	319
(44)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제도 홍보(7078-280)	324
(45)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7078-281)	328
(46)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9001-840)	332
(47)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9201-840)	335
(48) 한국은행예치(9710-970)	339
(49)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10-972)	343

II.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347

(1) 산재보험급여(4051-350)	349
(2)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4052-350)	355
(3) 연구기관 및 케어센터 지원(4052-356)	366
(4) 산재근로자 요양관리(4053-351)	374
(5) 산재병원지원(4054-350)	386
(6) 산재보험 시설건립(4055-350)	394
(7) 산재보험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4057-350)	401
(8) 산재보험 징수위탁지원(4058-350)	408
(9) 산재보험 적용부과지원(4058-351)	416
(10)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4060-350)	428
(11) 클린사업장조성지원(4151-350)	434
(12) 산재예방시설융자(융자)(4151-351)	444
(13) 업종별재해예방(4152-350)	450
(14)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4152-351)	466
(15) 유해작업환경개선(4152-352)	475

(16) 근로자건강보호(4152-353)	488
(17)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4152-355)	506
(18) 안전보건문화정착(4154-350)	513
(19) 산재예방시설건립(4154-351)	524
(20)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4154-357)	534
(21) 안전보건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4155-350)	539
(22)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4155-351)	548
(23) 미래환경변화대응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R&D)(4155-361)	554
(24) 기금관리비 인건비(7084-101)	560
(25) 산재보험운영 인건비(7084-102)	564
(26) 산재예방운영 인건비(7084-103)	569
(27) 근로복지공단 인건비(7084-104)	574
(2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건비(7084-105)	578
(29) 기금운영관리(7084-106)	583
(30) 기금관리비 기타경비(7084-201)	587
(31) 산재보험운영 기타경비(7084-202)	592
(32) 산재예방운영 기타경비(7084-203)	597
(33)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7084-204)	602
(3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관운영경비(7084-205)	606
(35)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7084-206)	611
(3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청사임차(7084-207)	615
(37) 산재보험 적용징수보상(7084-208)	620
(38) 산재보험 및 예방 연구개발(7085-200)	624
(39)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탁(9005-840)	628
(40) 한국은행 예치(9705-970)	632
(41)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05-972)	636

Ⅲ.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641

(1) 장애인고용장려금(1452-303)	643
(2) 장애인고용관리지원(1452-306)	651
(3) 장애인취업지원(1452-311)	660
(4)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1452-315)	670
(5)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1452-317)	676
(6)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1452-318)	682
(7)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1453-304)	688

(8) 보조공학기기지원(1453-305)	695
(9) 장애인직업능력개발(1457-314)	701
(10) 장애인기능경기대회(1457-319)	710
(11) 장애인고용연구(1459-324)	717
(12) 장애인인식개선지원(1459-327)	724
(13) 장애인고용증진융자(융자)(1462-330)	732
(14) 장애인고용정보화(정보화)(1466-240)	737
(15) 기금관리비(인건비)(7079-110)	744
(16) 장애인고용공단 인건비(7079-120)	748
(17) 기금관리비(기타경비)(7079-210)	752
(18) 장애인고용공단 사업운영비(7079-220)	756
(19) 장애인고용공단 청사임차보증금(7079-230)	761
(20) 장애인고용공단 대외협력(7079-250)	765
(21)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9006-840)	770
(22) 한국은행예치(9702-971)	774
(23)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02-973)	778

IV. 임금채권보장기금 783

(1) 대지급금 지급(3051-300)	785
(2) 무료법률구조지원(3052-302)	797
(3) 체불청산지원 융자(융자)(3054-304)	803
(4) 임금채권정보화경비(정보화)(3055-301)	810
(5) 기금관리비(인건비)(7082-101)	815
(6) 사업운영비(제도운영인건비)(7082-102)	819
(7) 사업운영비(공단인건비)(7082-103)	823
(8) 기금관리비(기타경비)(7082-201)	827
(9) 사업운영비(제도운영기타경비)(7082-202)	831
(10) 사업운영비(공단기타경비)(7082-203)	836
(11)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9202-840)	841
(12) 한국은행예치(9704-971)	845
(13)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04-973)	849

V. 근로복지진흥기금 853

(1) 근로자복지지원(3061-301)	855
(2) 퇴직연금사업운영(3061-318)	864
(3) 근로복지기금지원(3061-322)	874

(4) 근복기금(중소계정) 정보화경비(정보화)(3061-325)	880
(5) 근로복지정보시스템(정보화)(3061-500)	885
(6) 생활안정자금(융자)(3062-306)	893
(7) 기금관리비(인건비)(7081-101)	900
(8) 기금관리비(기타경비)(7081-201)	904
(9) 기금관리비(법인세)(7081-202)	909
(10) 사업운영비(근로자생활안정대부)(7081-204)	913
(11) 사업운영비(근로자휴양시설지원)(7081-205)	919
(12) 복권기금전출(8999-841)	924
(13)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9005-840)	928
(14) 신용보증사업계정 전출(9301-860)	932
(15) 통화금융기관예치(9713-970)	936
(16)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13-977)	939
(17) 근복기금(신용계정) 정보화경비(정보화)(3063-326)	943
(18) 신용보증대위변제(3064-308)	947
(19) 사업운영비(신용보증인건비)(7081-102)	953
(20) 사업운영비(신용보증기타경비)(7081-209)	957
(21)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13-978)	963
(22)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9005-841)	967
(23) 통화금융기관예치(9713-971)	971
(24)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13-979)	974

I . 고용보험기금

사 업 명						
(1) 고용유지지원금(1045-3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45	350
명칭	고용창출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용유지 지원금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고용유지자금융자채권관리비용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
		근로복지공단
	사업시행주체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고용유지 지원금	70,126	70,255	81,368	70,225	70,225	△30	△0.04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71,372	71,372	70,126	-	1,246	70,255	81,368	81,368	71,729	-	-	70,225
· 고용유지지원금	71,372	71,372	70,126	-	1,246	70,205	81,318	81,318	71,679	-	-	70,205
- 휴업·휴직	70,223	70,223	70,053	-	170	70,105	80,270	80,270	71,190	-	-	68,689
- 무급휴업·휴직	1,149	1,149	72	-	1,077	100	1,048	1,048	489	-	-	1,516
· 고용유지자금융자채 권관리비용	-	-	-	-	-	50	50	50	50	-	-	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조정하지 않고 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휴업·휴직수당)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에 기여
 - (고용유지자금융자 채권관리비용) 고용유지자금융자*('20.7~'21.12) 수혜 사업주 대상 융자금 채권관리를 위한 소요 비용 반영
-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시적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고용유지조치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과 연계하여 휴업·휴직수당을 저리로 대부(한시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구분	내용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고용조정의 지원내용 등), 제1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제20조(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신고), 제20조의2(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 제한),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 제21조의2(휴업 등에 따른 임금감소 수준), 제21조의 3(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
고용유지자금융자 채권관리비용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제37조의3(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② 추진경위

구분	내용
고용유지 지원금	○ 최초 사업시작년도 : 1995년 ○ 추진경위 -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할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 노사는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력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공동노력하고, 감원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임금·근로시간의 조정 등 감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며,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이를 적극 지원한다. *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04.2.10) 제2장 2-4-가 · 노사민정은 노동위원회가 경영이 악화된 기업의 노사가 고용유지를 위해 법정 기준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시간 단축·휴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예외 승인신청 심사 시 이를 존중하도록 촉구하며, 정부는 휴업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09.2.23) 1-2-(2)-나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존 지원방식이 휴업·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지원방식으로 설계되어, 만약 사업주가 경영난 악화로 무급(또는 아주 낮은 수당)으로 고용을 유지(휴업·휴직)하려고 하는 경우 근로자가 생계불안으로 휴업·휴직에 합의가 어렵고 동 사업 지원도 안 되어, 고용안정장치로서 효과가 제한적임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노동시장 안정성을 위해 마련 · 무급휴업·휴직 시 근로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13.1.22.)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13.4.12.) 개정
고용유지자금융자 채권관리비용	○ 최초 사업시작년도 : 2020년(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 ○ 추진경위 - 고용유지자금융자사업(‘20.7.30.~‘21.12.31.)* 종료에 따른 채권관리비용 편성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시적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고용유지조치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과 연계하여 휴업·휴직수당을 저리로 대부 · ‘20.4.22. 관계부처 합동 고용안정특별대책(고용유지자금 융자 신설) 마련, ‘20.6.9.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시행, ‘20.7.30. 고시 제정 및 사업 공고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95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98,058	197,374	71,372	81,368	70,225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 고용유지자금융자 채권관리는 근로복지공단 위탁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 고용유지자금융자 채권관리는 근로복지공단 시행
- 사업 수혜자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고용유지지원금 : (2025 추경) 81,368백만원 → (2026 계획) 70,225백만원, 11,143백만원 감액
(2025 당초 계획 70,255백만원 → 1차 추경 81,368백만원)

① 고용유지지원금: 70,205백만원

: ('25 당초) 70,205백만원 → ('25 1차 추경) 81,318백만원 → ('26 계획) 70,205백만원, 11,113백만원 감액

* 휴업·휴직: ('25 당초) 70,105백만원 → ('25 1차 추경) 80,270백만원 → ('26 계획) 68,689백만원, 11,581백만원 감액

* 무급휴업·휴직: ('25 당초) 100백만원 → (25 1차 추경) 1,048백만원 → ('26 계획) 1,516백만원, 468백만원 증액

- (요구)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한 인식 확대, '25년 이후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 및 최근 지원 추세 등을 고려하여 고용위기시 적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년도 본예산 수준 편성

- (산출) ㉠ 휴업·휴직: 68,689백만원 $\approx 37,575\text{명} \times 2.14\text{개월} \times 854\text{천원}$

- ㉡ 무급휴업·휴직: 1,516백만원 $\approx 315\text{명} \times 3.26\text{개월} \times 1,476\text{천원}$

<세부산출 내역>

㉠ 휴업·휴직: 68,689백만원

- (지원인원) '18~'19년, '24년 평균 지원인원(35,338명)에 '25년 이후 경기 불확실성 고려하여 6.3%(2,237명) 증원: **37,575명**
- (지원기간) '18~'19년, '24년 평균 지원기간 적용: **2.14개월**
- (지원단가) '25년 평균 지원단가 적용: **854천원**

㉡ 무급휴업·휴직: 1,516백만원

- (지원인원) '23.4월 이후 지원 수요 없다가 '24.11월부터 지속적 수요 발생하고 있는 점 고려하여 산정: **315명**
- (지원기간) '18~'19년, '24년 평균 지원기간 적용: **3.26개월**
- (지원단가) '25년 평균 지원단가 적용: **1,476천원**

② 고용유지비용대부 채권관리비용: 20백만원

: ('25) 50백만원 → ('26 요구) 20백만원, 30백만원 감액

- (요구) '25년 상환 완료 예상 사업장수 반영하여 비용 감액 편성

* 채권관리 대상 : ('25) 241개소 → ('26) 125개소

- (산출) 소송관련 비용 등 20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고용유지 지원금 81,318	< 고용유지지원금 81,318백만원 > ○ 보험금(320-04): 81,318백만원 가. 유급 휴업·휴직(80,270백만원) · (본예산) 23,866명×2.5개월×1,175천원 ≒ 70,105백만원 + (1차 추경) 5,750명×2.07개월×854천원 ≒ 10,165백만원 나. 무급 휴업·휴직(1,048백만원) · (본예산) 48명×1.38개월×1,513천원 ≒ 100백만원 + (1차 추경) 250명×2.57개월×1,476천원 ≒ 948백만원	고용유지 지원금 70,205	< 고용유지지원금 70,205백만원 > - 11,113백만원 감액 ○ 보험금(320-04): 70,205백만원 가. 유급 휴업·휴직(68,689백만원) · 37,575명×2.14개월×854천원 ≒ 68,689백만원 나. 무급 휴업·휴직(1,516백만원) · 315명×3.26개월×1,476천원 ≒ 1,516백만원
고용유지 자금용자 채권관리 비용 50	< 고용유지자금용자 채권관리비용 50백만원 > ○ 일반용역비(210-14): 50백만원 · 채권관리비용 50백만원	고용유지 자금용자 채권관리 비용 20	< 고용유지자금용자 채권관리비용 20백만원 > ○ 일반용역비(210-14): 20백만원 · 채권관리비용 2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5~64세 고용률(%)	목표	66.4	68.0	69.0	69.5	70.0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68.5	69.2	69.5	-	-			
	달성도	103.2	101.8	100.7	-	-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목표	-	-	-	-	48.5	최근 5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29세 경제활동 인구 수 / 만15~29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	-	-	-	-			
	달성도	-	-	-	-	-			
상용직 근로자비율(%)	목표	69.8	71.4	-	-	-	-	상용근로자 수 / 임금 근로자 수 *100	통계청
	실적	73.0	74.1	-	-	-			
	달성도	104.5	103.8	-	-	-			
청년고용률(%)	목표	42.5	43.8	-	-	-	-	(청년취업자 / 청년층 인구)*100	통계청
	실적	46.6	46.5	-	-	-			
	달성도	109.6	106.2	-	-	-			
청년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고용(공제) 유지율(%)	목표	63.1	68.0	-	-	-	-	(t-2)년 청년공제 가입자 중 2년 이상 유지자수 (만7자 포함) / (t-2)년 청년공제 가 입인원(철회·취소 제외)*100, t당해연도	청년층고용보험피 보험자 전수조사/ 중소벤처 기업진흥 공단
	실적	69.7	64.6	-	-	-			
	달성도	110.4	95.0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14,268개 사업장, 137,114명 지원
2023	6,204개 사업장, 61,176명 지원
2024	3,727개 사업장, 44,842명 지원
2025	3,065개 사업장, 32,797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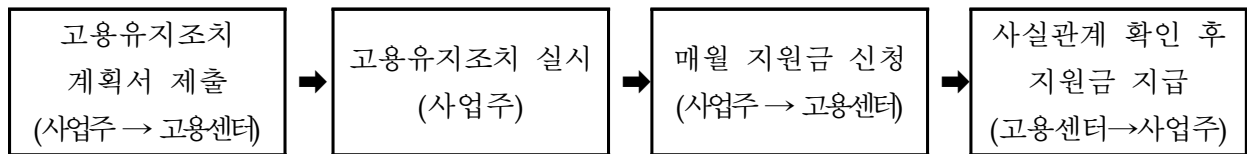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안정 조치를 취하는 경우 지원하여 '26년 37,890명의 재직근로자 고용안정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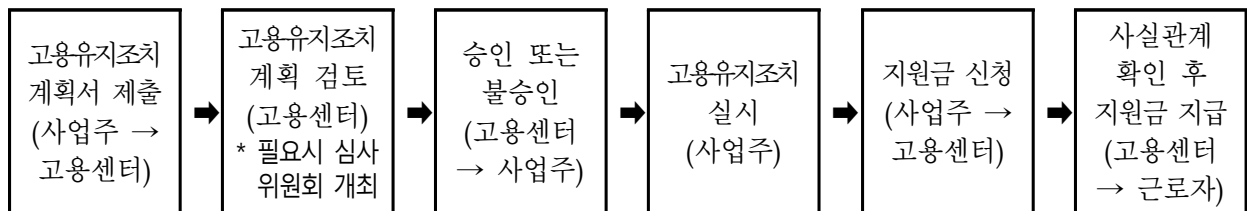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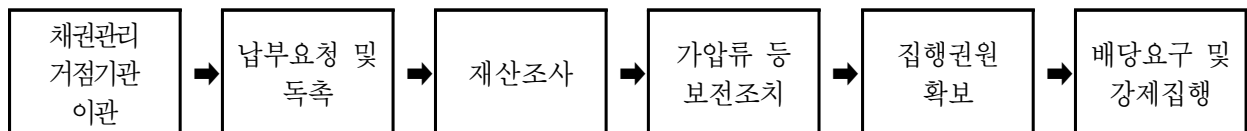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



* 무급휴업의 경우 노동위원회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무급휴직은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 필요

<고용유지자금융자 채권관리>



* 근로복지공단 위탁 수행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2 결산, 환노위) 고용유지지원금의 체계적인 운영기준 마련 및 관련 규정 정비
 - ⇒ (조치결과) 대규모 고용위기 상황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국민 편의성 개선(요건 개선·절차 간소화 등) 등 개편 방안 추진중*임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25.11.11.), 하위법령 개정 추진중('26.1.5.~2.19. 입법예고 실시)
 - ('25 1차 추경, 예결위) 부정수급 처분되지 않도록 신청 사업주를 대상으로 철저한 안내 교육 절차 준비 필요
 - ⇒ (조치결과) 현재 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부정수급 처분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
 -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동영상 필수 시청, 모바일 부정수급 예방 안내 실시 등
- 2) 대외공개 평가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 ('24년 회계연도) '양호' - 예산 집행률이 크게 향상,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598,058	-	598,058	598,058	464,375	77.6	77.6	-	133,683
2023	197,374	-	197,374	197,374	126,956	64.3	64.3	-	70,418
2024	71,372	-	71,372	71,372	70,126	98.3	98.3	-	1,246
2025	70,255	11,113	81,368	81,368	71,729	88.2	88.2	-	9,63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요 증가 및 노사합의고용유지지원금 추가 소요 발생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 - ('22.1.28. 자체변경)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액 중 42,222백만원을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41,502백만원, 노사합의고용유지지원금 720백만원으로 자체 변경 ○ 불용사유 -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 해제 및 경기호전으로 지원수요 감소함에 따라 불용액 133,683백만원 발생
2023	○ 불용사유 - '23년 경기·고용상황 호전으로 지원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불용액 70,418백만원 발생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미국 관세부과, 경기하방 우려 등에 따른 고용충격 적시 대응 및 하반기 고용악화 대비를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 ('25.4.30. 국회의결)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10,165백만원,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948백만원 증액 ○ 불용사유 - 관세부과 유예 등으로 예상보다 기업의 신청이 저조하여 불용액 9,639백만원 발생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국회의결 (2024.4.30.)	고용유지지원금	320	04	11,113	미국 관세부과, 경기하방 우려 등에 따른 고용충격 적시 대응 및 하반기 고용악화 대비를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합 계				11,113	

사 업 명
(2) 고용창출장려금(1046-3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46	350
명칭	고용창출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용촉진장려금 일자리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
	사업시행주체	
신중년적합직무	소관부처	실·국·과(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고용창출 장려금	37,451	26,003	26,003	21,520	21,420	△4,583	△17.6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55,315	55,315	37,451	-	17,864	26,003	26,003	26,003	20,360	-	5,643	21,420
· 고용촉진장려금	30,094	30,094	20,622	-	9,472	22,997	22,997	22,997	18,353	-	4,644	20,654
· 고용창출장려금 (잔여사업비)	24,408	24,408	16,047	-	8,361	2,275	2,275	2,275	1,282	-	993	135
- 일자리 함께하기	2,409	2,409	2,149	-	260	573	573	573	149	-	424	-
- 국내복귀기업 지원	4,401	4,401	3,155	-	1,246	1,051	1,051	1,051	859	-	192	-
-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17,598	17,598	10,743	-	6,855	651	651	651	274	-	377	-
· 고용장려금(음자)	1	1	1	-	-	-	-	-	-	-	-	-
· 운영비	812	812	781	-	31	731	731	731	725	-	6	63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취업취약계층 고용, 신중년 고용,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국내 복귀 등 구직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내역	지원유형	지원내용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촉진 장려금	○ (장려금)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가구주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연간 360~720만원 지원(최대 2년)
	고용창출 장려금 (잔여사업비)	○ (인건비 등) 별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던 '24년 신규 지원 종료사업'을 '26년부터 하나의 내역사업으로 통합 * 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24년 사업종료>	○ (인건비 및 임금감소액보전)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단축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해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 증가 근로자 1인당 연간 480~960만원 지원(최대 2년)

		*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1인당 연간 120~480만원 지원(최대 2년)
	국내복귀기업 지원 <24년 사업종료>	○ (인건비, 국내복귀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 증가 근로자 1인당 연간 360~720만원 지원(최대 2년)
	신중년적합직무 지원 <24년 사업종료>	○ (인건비, 신중년 적합직무)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연간 480~960만원 지원(최대 1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내역명	지원유형	지원내용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촉진 장려금	○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고용촉진 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잔여사업비)	-
	일자리함께하기 <24년 사업종료>	○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24년 사업종료>	○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신중년적합직무 지원 <24년 사업종료>	○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② 추진경위

내역명	지원유형	추진경위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촉진 장려금	○ '04년 제도 시행 후 그동안 각각 운영되고 있던 취약계층 고용촉진 지원제도들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으로 통합하고 지원대상을 청년, 장애인까지 확대 ○ '11년부터는 제도개선을 통해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 한 사람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17년부터 취약계층 선별 지원 강화(취성패2유형 청·장년층 지원대상 제외 등) 등 제도개선, 고용창출장려금으로 통합 ○ '20년부터 취업지원 요구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에 취성패2 유형 중장년층 및 일반고 특화과정 이수자 추가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여건 악화에 대응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한시 운영('20년, '21년) ○ '20년부터 취업지원 요구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에 취성패2

내역명	지원유형	추진경위
		유형 중장년층 및 일반고 특화과정 이수자 추가 ○ '23년부터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종료
	고용창출장려금 (잔여사업비)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11년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인 교대제, 실근로시간 단축제,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증가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제도 도입 ○ '14년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설비투자비를 지원해주는 '설비투자비 지원', 고용확대를 위해 설비투자를 한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인 '설비투자비 융자지원',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기존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임금 보전을 해줄 경우 이를 지원하는 '임금감소 기존근로자 임금보전'이 추가되었음 ○ '17년부터 고용창출장려금으로 통합 ○ '18년부터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주근로시간 단축제' 지원 유형 추가 ○ '22년부터 일자리 순환제, 주근로시간단축제 신규지원 종료 ○ '24년부터 사업 폐지에 따른 잔여사업비 편성
	국내복귀기업 지원	○ '11년 중소기업 및 지역 특화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고용창출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신규 실시 ○ '17년부터 고용창출장려금으로 통합 ○ '18년부터 지원 유형 중 성장유망업종 지원, 지역특화사업 지원은 신규지원 종료, 국내복귀기업은 계속 지원 ○ '24년부터 사업 폐지에 따른 잔여사업비 편성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 제2차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 취업에 특히 애로를 겪는 구직자 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 현장연수를 제공하여 재취업촉진 ○ '12년 현장연수사업인 「50+새일터적용지원사업」 시행 ○ '13년 인턴사업으로 개편·시행, '13년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선정 ○ '16년 사업명칭을 '장년고용지원금'으로 변경 ○ '17년부터 고용창출장려금으로 통합 ○ '18년부터 장년고용지원(구 장년인턴)은 신규지원은 종료하고, 지원 유형으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실시 ○ '19년 신중년 적합직무 범위 확대(71개→213개) ○ '21년 신중년 적합직무 범위 확대(213개→242개) ○ '22년 신중년 적합직무 범위 확대(242개→245개) ○ '23년부터 신중년 적합직무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원직무 범위 확대(42개 제외직무 지정) ○ '24년부터 사업 폐지에 따른 잔여사업비 편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7년 통합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 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86,888	139,407	48,277	26,003	21,42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 근거: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고용촉진장려금

: (2025 계획) 22,997백만원 → (2026 계획) 20,654백만원, 2,343백만원 감액

- (요구) 최근 4년 간 연평균 지원인원 및 연평균 실집행단가 등 고려, '25년 대비 10.2% 감액
- (산출) 20,654백만원 = 4,490명¹⁾ × 460만원²⁾
 - 1) '26년 고용촉진장려금 예상 지원인원 4,490명
= 최근 4년간 연평균 지원인원 4,420명 + 지역맞춤형 및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프로그램 활성화에 따른 수요 예상인원(70명)
 - 2) '26년 고용촉진장려금 예상 연 실집행 단가 460만원
= 최근 4년 연평균 실집행액 20,652백만원 ÷ 4,490명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2,997	○ 22,997백만원 = 4,893명×470만원* * 최근 3년('21~'23년) 평균 실집행단가 산정	20,654	○ 20,654백만원 = 4,490명×460만원* * 최근 4년('21~'24년) 평균 실집행단가 산정

② 고용창출장려금(잔여사업비)

: (2025 계획) 2,275백만원 → (2026 계획) 135백만원, 2,140백만원 감액

- (요구) 신규지원이 종료된 고용창출장려금의 내역사업(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의 잔여 지원분을 고용창출장려금(잔여사업비)의 내역사업으로 통합 편성 ('25년 대비 94.1% 감액)
- (산출)
 - (1) 일자리 함께하기 22백만원 = 증가근로자 인건비(3명¹⁾×240만원²⁾ + 임금감소액 보전(30명³⁾×48만원⁴⁾
 - 1) '26년 일자리 함께하기 증가근로자 인건비 예상 지원 연인원(3명)
 - 2) '26년 일자리 함께하기 증가근로자 인건비 예상 실집행 단가
 - 3) '26년 일자리 함께하기 임금감소액 보전 예상 지원 연인원(30명)
 - 4) '26년 일자리 함께하기 임금감소액 보전 예상 실집행 단가

(2) 국내복귀기업 지원 103백만원 = 57명¹⁾×180만원²⁾

1) '26년 국내복귀기업 지원 수요 예상 사업장(1개소)의 예상 지원 연인원(57명)

2) '26년 국내복귀기업 지원 수용 예상 사업장 실집행단가

(3)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10백만원 = 2명¹⁾×4,800천원²⁾

1) '26년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수요 예상 사업장(2개소)의 예상 지원 연인원(2명)

2) '26년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수요 예상 사업장 실집행 단가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275	○ (일자리 함께하기) 573백만원 = 증가근로자 인건비(141명×240만원)+임금감소액 보전(453명×52만원) ○ (국내복귀기업 지원) 1,051 백만원 = (474명 × 159만원)+(165명 × 180만원) ○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651백만원=[(165명×9,600천원)+(9명×4,800천원)]×0.4	135	○ (일자리 함께하기) 22백만원 = 증가근로자 인건비(3명×240만원)+임금감소액 보전(30명×48만원) ○ (국내복귀기업 지원) 103백만원 = 57명×180만원 ○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10백만원 = 2명×4,800천원

③ 운영비

: (2025 계획) 731백만원 → (2026 계획) 631백만원, 100백만원 감액

- (요구) 예산 감축 및 3개 사업 종료*에 따른 '25년 대비 13.7% 감액

* 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적합직무 지원

- (산출) 631백만원 = 고용창출장려금 일반수용비 482백만원 + 공공요금 9백만원 + 특근매식비 41백만원 + 임차료 9백만원 + 국내여비 75백만원 + 업무추진비 15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31	○ 일반수용비 577백만원, 공공요금 9백만원, 특근매식비 41백만원, 임차료 9백만원, 국내여비 79백만원, 업무추진비 16백만원	631	○ 일반수용비 482백만원, 공공요금 9백만원, 특근매식비 41백만원, 임차료 9백만원, 국내여비 75백만원, 업무추진비 1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5~64세 고용률(%)	목표	66.4	68.0	69.0	69.5	70.0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68.5	69.2	69.5	-	-			
	달성도	103.2	101.8	100.7	-	-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목표	-	-	-	-	48.5	최근 5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29세 경제활동인구 수 / 만15~29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	-	-	-	-			
	달성도	-	-	-	-	-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상용직 근로자비율(%)	목표	69.8	71.4	-	-	-	-	상용근로자 수 / 임금 근로자 수 *100	통계청
	실적	73.0	74.1	-	-	-			
	달성도	104.5	103.8	-	-	-			
청년고용률(%)	목표	42.5	43.8	-	-	-	-	(청년취업자 / 청년층 인구)*100	통계청
	실적	46.6	46.5	-	-	-			
	달성도	109.6	106.2	-	-	-			
청년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고용(공제) 유지율(%)	목표	63.1	68.0	-	-	-	-	(t-2)년 청년공제 가입자 중 2년 이상 유지자수 (만기자 포함) /(t-2)년 청년공제 가입인원(철회 · 취소 제외)*100, t:당해연도	청년층고용보 험피보험자 전수조사/중소 벤처 기업진흥공단
	실적	69.7	64.6	-	-	-			
	달성도	110.4	95.0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고용촉진장려금 32,293명 지원 ○ 일자리 함께하기 2,922명 지원 ○ 국내복귀기업 지원 255명 지원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37명 지원 ○ 신중년적합직무 지원 5,034명 지원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54,805명 지원
2023	○ 고용촉진장려금 9,805명 지원 ○ 일자리 함께하기 2,020명 지원 ○ 국내복귀기업 지원 808명 지원 ○ 신중년적합직무 지원 4,995명 지원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5,556명 지원
2024	○ 고용촉진장려금 4,472명 지원 ○ 일자리 함께하기 1,413명 지원 ○ 국내복귀기업 지원 475명 지원 ○ 신중년적합직무 지원 1,881명 지원
2025	○ 고용촉진장려금 4,001명 지원 ○ 일자리 함께하기 51명 지원 ○ 국내복귀기업 지원 167명 지원 ○ 신중년적합직무 지원 60명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취업취약계층 고용, 신중년 고용,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국내 복귀 등 구직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26년 4,582명의 일자리 창출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사업계획 수립	⇒	② 사업참여 신청서(계획서 포함) 제출	⇒	③ 사업참여 신청서(계획서 포함) 심사 및 승인	⇒
고용노동부		사업주		고용센터	
④ 심사결과 통보	⇒	⑤ 지원 제도 도입 및 사업시행	⇒	⑥ 장려금 지급 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⑦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	⑧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②~④ 생략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2년 결산)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방안 마련 ⇒ 지원요건 개편하여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신설('24년)
○ ('23년 결산) 고용촉진장려금을 타 장려금 사업과 차별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 ⇒ 지역별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취약계층 수요 다각화 마련
2) 대외공개 평가
○ ('25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사업수요를 다각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운영의 내실화 필요 ⇒ 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연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다각화를 통한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686,888	-	686,888	686,888	470,280	68.5	68.5	-	216,608
2023	139,504	△97	139,407	139,407	103,562	74.3	74.3	-	35,845
2024	48,277	7,038	55,315	55,315	37,451	67.7	67.7	-	17,864
2025	26,003	-	26,003	26,003	20,360	78.3	78.3	-	5,64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계획변경'의 상세내역: 특이사항 없음 ○ 계획변경 사유: 특이사항 없음 ○ 불용사유: (일자리 함께하기)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21. 7월)*으로 추가적인 조기·실 근로시간 단축이 어렵고,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사업주의 신규 고용창출 부담으로 작용 * ▲300인 이상 ('18.7.1.<특례제외업종은 '19.7.1.>), ▲50~299인 ('20.1.1.), ▲5~49인 ('21.7.1.)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1년 채용되어 지원받은 청년 수가 예상(3.9만명)보다 적은 3.5만명이었고, 중도퇴사·지원요건 미충족·신청기간 도과 등으로 신청을 누락하여 집행 부진
2023	○ '계획변경'의 상세내역 - (감액) 청년채용특별장려금 97백만원 ○ 계획변경 사유: 세대간 상생지원 사업 예산 부족으로 인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 불용사유: (고용촉진장려금) ①인건비 등 고용비용 상승 등으로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유인 한계 발생, ②지원금액이 큰 고용장려금 선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주의 신규 고용창출 부담 및 제도의 복잡성으로 신규 지원수요 감소
2024	○ '계획변경'의 상세내역 - (증액) 일자리함께하기 455백만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3,357백만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10,626백만원 - (감액) 고용촉진장려금 7,400백만원 ○ 계획변경 사유: '24년 신규지원 종료 사업' 예산 부족으로 인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 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 불용사유: (고용촉진장려금) 경제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유인 한계 발생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최근 3년간 집행추이 등을 고려해 잔여사업비를 편성했으나 '24년부터 신규지원 종료에 따라 실제 신청이 저조
2025	○ '계획변경'의 상세내역: 특이사항 없음 ○ 계획변경 사유: 특이사항 없음 ○ 불용사유: (고용촉진장려금) 임금 상승, 경기 불황 등으로 사업장의 채용 여력 위축, 낮은 지원단가 등으로 인한 사업 수요 저조 (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집행 추이 등을 고려하여 잔여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24년 신규지원 종료에 따라 실제 신청이 저조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025.5.21.)	-	210	01	△8	< 세목 조정 > ○ 지방관서 공공요금 및 제세 지급
	-	210	02	8	
합 계				0	○ 세부사업 기준 계획액 변동 없음

사 업 명
(3) 청년추가고용장려금(1046-3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46	351
명칭	고용창출	고용창출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소관부처	실·국·과(팀)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
	사업시행주체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17,071	1,710	1,710	300	300	△1,410	△82.5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7,071	17,071	11,540	-		1,710	1,710	1,710	996	-	714	300
·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17,071	17,071	11,540	-		1,710	1,710	1,710	996	-	714	3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5인 이상)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일자리창출

* 추가 채용한 청년 1인당 年900만원(월 75만원, 최대 3년간 2,700만원)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일부와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② 추진경위

- '17년 하반기 추경예산에 반영('17.7.22, 48억원) → '17.8.17. 사업 시행
 - * 국정과제 : 「2-4-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18.3.15. 「청년대책」을 반영하여 제도 개편 및 추경을 통해 물량 확대
 - * '18년 본예산 4.5만명 → '18년 추경 9만명(+4.5만명)
- '21.5.31. 신규 신청 종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7.8월(추경) ~ '21년(한시)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95,210	229,358	17,071	1,710	300

- 기타: '26년 910명(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 지원 인원임)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25) 1,710백만원 → ('26 계획) 300백만원(△1,410백만원)

- (요구) 기업당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효미완성 지속지원 인원 예산 편성
 - * 지원인원 : ('25) 5,100명 → ('26) 910명(△4,190명)
- (산출) 300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7,071 백만원	○ 기타보전금(310-04) : 1,710백만원 - 5,100명 ^① X 68만원 ^② X 0.5 ^③ * 단수조정 △24백만원 ** ① 지원인원('20~'21년 지속지원인원의 10%), ② 평균 지원단가('21~'23년), ③ 소급신청 잔여기간 비율	1,710 백만원	○ 기타보전금(310-04) : 300백만원 - 910명 ^① X 66만원 ^② X 0.5 ^③ * 단수조정 △0.3백만원 ** ① 지원인원('25년 지속지원인원의 18%), ② 평균 지원 단가('22~'24년), ③ 소급신청 잔여기간 비율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5~64세 고용률(%)	목표	66.4	68.0	69.0	69.5	70.0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68.5	69.2	69.5	-	-			
	달성도	103.2	101.8	100.7	-	-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목표	-	-	-	-	48.5	최근 5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29세 경제활동 인구 수 / 만15~29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	-	-	-	-			
	달성도	-	-	-	-	-			
상용직 근로자비율(%)	목표	69.8	71.4	-	-	-	-	상용근로자 수 / 임금 근로자 수 *100	통계청
	실적	73.0	74.1	-	-	-			
	달성도	104.5	103.8	-	-	-			
청년고용률(%)	목표	42.5	43.8	-	-	-	-	(청년취업자 / 청년층 인구)*100	통계청
	실적	46.6	46.5	-	-	-			
	달성도	109.6	106.2	-	-	-			
청년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고용(공제) 유지율(%)	목표	63.1	68.0	-	-	-	-	(t-2)년 청년공제 가입자 중 2년 이상 유지자수 (만7자 포함) /(t-2)년 청년공제 가 입인원(철회·취소 제외)*100, t당해연도	청년층고용보험피 보험자 전수조사/ 중소벤처 기업진흥 공단
	실적	69.7	64.6	-	-	-			
	달성도	110.4	95.0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22,519개사 72,900명 지원
2023	6,859개사 17,264명 지원
2024	989개사 2,024명 지원
2025	82개사 1,595명 지원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17~'21년 한시사업으로 '21년 이후 신규지원은 종료 되었으나, 지속지원인원에 대한 효과적 관리를 통한 청년 장기근속 및 고용안정 유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2년 결산) 고용유지율 추계 정확도 제고하여 적정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필요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995,210	-	995,210	995,210	375,605	37.7	37.7	-	619,605
2023	229,358	-	229,358	229,358	70,389	30.7	30.7	-	158,969
2024	17,071	-	17,071	17,071	11,540	67.6	67.6	-	5,531
2025	1,710	-	1,710	1,710	996	58.2	58.2	-	714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긴 신청기간(3년), 지원 사업장 대부분이 30인 이하(87.6%) 소규모 사업장으로 채용담당자의 잦은 퇴사와 업무 변경, 신규 신청 종료에 따른 담당자의 관심저하 등으로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집행 부진(집행률 37.7%)
2023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22년부터 주기적으로 신청기한 도래 사업장에 대한 우편발송, 지원 이력 조회·신청 시스템 안내, 신청 매뉴얼 배포 등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잔여지원분 신청 수요 부족 등으로 불용 발생(집행률 30.7%) * 한시사업('17~'21년)으로 '22년부터는 잔여지원분만 지원
2024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신청 기한 도래 사업장에 대한 온·오프라인 지원금 찾아주기 서비스 등 지속적인 신청 독려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잔여지원분 신청 수요 부족 등으로 불용 발생(집행률 67.6%) * 한시사업('17~'21년)으로 '22년부터는 잔여지원분만 지원
2025	- 총예산 1,710백만원('25.12월 기준 집행률 58.2%)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4) 고용서비스모니터링(1051-3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51	351
명칭	고용창출	직업정보지원	고용서비스모니터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과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센터혁신추진단
		고용지원정책관
		고용서비스기반과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고용지원정책관
		미래고용분석과
	사업시행주체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4,848	4,111	4,111	6,317	8,057	3,946	96.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4,848	4,848	4,484	-	-	4,111	4,111	4,111	4,111	-	-	8,057
· 고용서비스평가	762	762	762	-	-	702	702	702	702	-	-	2,432
·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 및 민간위탁성과 평가	447	447	447	-	-	407	407	407	407	-	-	407
· 고용보험사업평가	1,085	1,085	1,085	-	-	995	995	995	995	-	-	995
· 고용서비스 전문교육실시	2,554	2,554	2,554	-	-	2,007	2,007	2,007	2,007	-	-	2,007
· 고용동향조사분석 모니터링	-	-	-	-	-	-	-	-	-	-	-	2,21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용서비스평가)** 고용센터 이용자 대상의 품질조사, 공공취업알선기관의 구인 및 구직정보제공 성과평가 및 민간 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의 모니터링 등을 통한 고용서비스 질적 향상과 취업 성과 제고
-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 및 민간위탁성과평가)** ①민간고용서비스기관 대상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을 통해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우수 고용서비스 모델을 민간시장에 확산하는 한편, ②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위탁사업 성과 제고 도모
- **(고용보험사업평가)**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변화된 경제 및 고용환경에 맞게 고용보험제도 개편을 지원
- **(고용서비스 전문교육 실시)** 고용서비스 전문 인력양성 및 직업상담원 직무향상 보수교육 운영
- **(고용동향조사분석 모니터링)**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변화 등을 추적 관찰하고, 노동시장 이슈를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사업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고용서비스 평가>

-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 ① 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 ④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고용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

- 고용보험법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등에 대한 구인·구직·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직업안정법 제3조(정부의 업무)

-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구인광고 등 금지)

- ① 제18조·제19조·제28조·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 및 민간위탁성과평가>

- 직업안정법 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인자·구직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직업소개 또는 취업정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법 제4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 고용서비스우수기관인증제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6호) 제4조(인증운영기관)

제4조(인증 운영기관) ① 한국고용정보원을 인증업무를 주관하여 운영하는 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

- ① 국가는 민간 고용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고용서비스 전문가의 양성
 2. 공공부문과 민간의 고용 관련 정보망의 연계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고용서비스 제공사업 중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과 그 사업의 위탁

4. 우수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인증

-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① 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④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고용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

<고용보험사업평가>

- 고용보험법 제11조(보험 관련 조사·연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직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와 보험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11조의2(보험사업의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험사업을 조정하거나 제81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고용서비스 전문교육 실시>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52조의2 (기술교육대학의 설립·운영)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대학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다른 법령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

- 직업안정법 제40조의2 (직업소개사업을 하는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직업소개, 직업상담 등을 할 때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고용동향조사분석 모니터링>

- 고용보험법 제11조(보험 관련 조사·연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직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와 보험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고용서비스 평가>

- '06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평가센터 신설

- '11 : 고용서비스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14 : '고용복지+센터'업무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개선 등 서비스 활성화 방안 제시

- '15 : 고용복지+센터 신규 개소기관 조기안착을 위한 '운영 가이드북'제작
- '16 :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사업의 개선 방안 제시
- '16 : 고용복지 관련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고용서비스 포럼(대토론회) 실시
- '17 : 고용복지연계 협업을 위한 워크숍 실시
- '08~'24 : 고용센터 고용서비스 품질지수 조사 실시
- '15~'24 : 고용센터, 지차체, 새일센터, 기타 유관기관 등 공공부문 취업알선기관의 취업알선실적 모니터링 실시
- '17~'24 : 고용서비스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고용서비스 포럼(대토론회) 실시
- '24 :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품질관리 사업 실시 및 표준 운영 모델 개발 등
- '25 : 국정감사('25.10월, 과장·거짓구인광고 대응방안 마련필요), 당정협의('25.11월, 구인광고 개선방안 마련)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및 민간위탁 성과평가>

- '07: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시범운영실시
- '08 :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제 실시
- '11 :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기관 성과평가 실시
- '15 : 복합고용서비스 인증제 시범운영
- '17 : 민간위탁기관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 국정과제(19-3) 선정 및 일자리정책로드맵(15-2)
- '18 : 고용부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고용서비스기관을 대상으로 품질인증 시범사업 실시
- '19 : 고용서비스 질적 향상과 취업성과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기관 고용서비스 품질인증·컨설팅·모니터링·민간위탁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및 고용서비스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 '20 :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인증평가 참여기관의 고용서비스 품질개선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컨설팅·성과평가·종사자교육 실시 및 고용서비스 품질관리 정보망 구축 사업 운영
- '20 : 고용부 지방관서 정성평가 사업 실시
- '20 ~'21 :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인증평가 참여기관의 고용서비스 품질개선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컨설팅·성과평가 및 고용서비스 품질관리 정보망 사업 운영
- '22 ~'23 :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컨설팅·성과평가·우수기관 인증 등 프로세스별 연계 및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 체계적 정보관리를 통해 민간고용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및 취업성과 제고
- '24 : 기본역량심사 및 고용서비스 품질관리 컨설팅 사업 폐지
- '24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개편 시행

<고용보험사업평가>

- '05, '06 : 사업 평가체계 구축의 필요성 지적(기금운용평가단)
- '06 : “비용이 들더라도 사업을 제대로 평가할 필요”(임시국회 장복심의원)
- '07 : 「고용보험사업 심층평가」 연구용역실시
- '08 : 「고용보험사업 심층평가」 연구용역실시
- '08.5.7. : 고용보험사업에 관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평가체계를 갖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정 합의문 채택 (노사정위원회)

- '09 평가의 법적근거 마련, '11년도부터 제도개선방안 및 고용보험사업 평가 실시
- '18~'25년 :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위탁사업 지정·운영(한국노동연구원)
- '21~'23년 : 「고용보험 사업 위탁사업」 3년간 지정·운영(한국고용정보원)
- '24~'26년 : 「고용보험사업 평가 위탁사업」 3년간 지정·운영(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 전문교육실시>

- '19: 고용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및 역량강화, 직업상담사 자격 개편 관련 내용이 담긴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방안 발표(제11차 일자리위원회)
- '20: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전문상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예산(과정평가형 기반 직업상담사 1, 2급 양성) 반영('21년 본예산)
- '21: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보수교육 시행 방안 등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발표(제20차 일자리위원회), 교육 실시('21~)
- '22: 과정평가형 직업상담사 1급 과정 중심으로 사업예산 및 물량 변경, 보수교육 물량 확대(5,000명 → 7,000명)
- '23: 고용서비스품질을 올리기 위하여 서비스 중심으로 민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23년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발표)
- '24: 고용서비스 현장 AI 활용 관련 교과 개발('24년 1개)

<고용동향조사분석 모니터링>

- '98: 제1차 한국노동패널조사 실시(약 5,000 가구의 15세이상 가구원)
- '09: 제6차 한국노동패널조사 실시 및 농어촌지역 1,500가구 추가
- '13: 일자리 창출이 국정 핵심 과제로 부각되면서 심층적인 노동시장 분석을 위해 노동시장 분석 센터 위탁사업 실시
- '18: 제21차 한국노동패널조사 실시(약 5,000 가구 추가)
- '19~'24년: 제22~27차 한국노동패널조사 실시(약 12,000가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계속(고용서비스 평가), '07년~ 계속(고용서비스우수인증 및 민간 위탁성과평가) '07년 ~ 계속(고용보험사업평가) '21년~ 계속(고용서비스 전문교육 실시) '98년 ~ 계속 (고용동향조사분석 모니터링)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935	5,253	4,848	4,111	8,05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및 위탁
- 사업시행주체 : 한국고용정보원(출연 및 위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출연) 등
- 사업 수혜자 : 구인·구직자, 취약계층, 사업체,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등 전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고용서비스 평가	출연 및 위탁	한국고용 정보원 등	2,432	100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및 제40조(위탁)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인증 및 민간위탁 성과평가	출연	한국고용 정보원	407		
고용보험 사업평가	위탁	한국고용 정보원 등	995		
고용서비스 전문교육실시	출연	한국기술 교육대학교	2,007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52조의 2
고용동향분석 모니터링	위탁	-	2,216		고용보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고용서비스모니터링 : (2025) 4,111백만원 → (2026) 8,057백만원(+3,946백만원)

① 고용서비스 평가 (2025) 702백만원 → (2026) 2,432백만원(+1,730백만원)

- 고용서비스 품질평가: (2025) 150백만원 → (2026) 150백만원(전년동)
 - (산출) 20,000(샘플) × 7,500원
- 고용서비스 성과평가 지원(고용센터 모니터링 등): (2025) 200백만원 → (2026) 1,940백만원(전년동)
 - (산출) 워크넷 취업실적 평가지원 모니터링 75백만원 + 고용서비스성과관리시스템 125백만원
+ 통합 구인광고 모니터링 및 거짓구인광고 AI 점검 시스템 구축 등 1,740백만원
- 고용부 지방관서 정성평가 사업: (2025) 105백만원 → (2026) 105백만원(전년동)
 - (산출) 48개 청·지청 × 2,187,500원
- 도약보장패키지 품질관리: (2025) 80백만원 → (2026) 70백만원(△10백만원)
 - (산출) 48개 청·지청 × 2개 사업 × 729,166원
- 기타운영비: 167백만원(전년동)

② 고용서비스우수기관인증 및 민간위탁성과평가 (2025) 407백만원 → (2026) 407백만원 (전년동)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사업: (2025) 253백만원 → (2026) 253백만원(전년동)
 - (산출) 인증사업 운영 188백만원 + 사후 모니터링 34백만원 +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등 연구 31백만원
-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2026) 112백만원 (전년동)
 - (산출) 만족도 조사, 모니터링 108백만원 + 자문수당 1백만원 + 지표설명 자료 제작비 3백만원
- 기타운영비 (2026) 42백만원 (전년동)

③ 고용보험사업 평가 (2026) 995백만원 (전년동)

- 고용보험사업평가: (2026) 435백만원 (전년동)
 - (산출) 435백만원 × 1식
- 고용안전망 연구센터: (2026) 560백만원(전년동)
 - (산출) 560백만원 × 1식

④ 고용서비스 전문교육 실시 (2026) 2,007백만원(전년동)

- 고용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교육: (2026) 964백만원(전년동)
 - (산출) 교육 운영비 6,426천원 × 150명
- 직업상담원 보수교육: (2026) 1,043백만원(전년동)
 - (산출) 149천원 × 7,000명

⑤ 고용동향분석 모니터링 (2025) 0백만원 → (2026) 2,216백만원(순증, 이관)

- 한국노동패널조사: (2025) 0백만원 → (2026) 2,086백만원(순증, 이관)
 - (산출) 2,086백만원 × 1식
- 고용동향 점검 및 모니터링: (2025) 0백만원 → (2026) 130백만원(순증, 이관)
 - (산출) 130백만원 × 1식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111,000 천원	(신규) ○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 995,000천원 가. 고용보험사업평가 : 435,000천원 나. 고용안전망연구센터 : 560,000천원 ○ 사업출연금(350-02) : 3,116,000천원 가. 고용서비스평가 · 고용서비스품질평가: 20,000샘플×7,500원=150,000천원 · 고용서비스 성과평가 지원: 워크넷 취업실적 평가지원 모니터링 75,000천원+고용서비스 성과관리시스템 125,000천원=200,000천원 · 고용부 지방관서 정성평가: 48개소×2,187,500원=105,000천원 · 도약보장패키지 품질관리: 48개소×833,333원×2식=80,000천원 · 기타 운영비: 167,000천원 나. 고용서비스우수기관인증 및 민간위탁성과평가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인증사업 운영 188,000천원+ 사후 모니터링 34,000천원+ 시장 실태조사 등 연구 31,000천원= 253,000천원 ·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 민간위탁사업 만족도 조사, 모니터링비 등 112,000천원 · 기타운영비: 42,000천원 다. 고용서비스 전문교육 실시 · 고용서비스전문인력 양성교육: 964,000천원 : (교육운영비) 6,426천원 × 150명 = 964,000천원 · 고용서비스 민간종사자 보수교육: 7,000명×149,000원=1,043,000천원	6,316,000 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3,056,000천원 가. 한국노동패널조사 : 2,086,000천원 나. 고용동향 점검 및 모니터링 : 130,000천원 다. 통합 구인광고 모니터링: 840,000천원 ○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 995,000천원 가. 고용보험사업평가 : 435,000천원 나. 고용안전망연구센터 : 560,000천원 ○ 사업출연금(350-02) : 4,006,000천원 가. 고용서비스평가 · 고용서비스품질평가: 20,000샘플×7,500원=150,000천원 · 고용서비스 성과평가 지원: 워크넷 취업실적 평가지원 모니터링 75,000천원+고용서비스 성과관리시스템 125,000천원+거짓구인광고 AI시스템 구축 900,000천원 =1,100,000천원 · 고용부 지방관서 정성평가: 48개소×2,187,500원=105,000천원 · 도약보장패키지 품질관리: 48개소×729,166원×2식=70,000천원 · 기타 운영비: 167,000천원 나. 고용서비스우수기관인증 및 민간위탁성과평가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인증사업 운영 188,000천원+ 사후 모니터링 34,000천원+ 시장 실태조사 등 연구 31,000천원= 253,000천원 ·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 민간위탁사업 만족도 조사, 모니터링비 등 112,000천원 · 기타운영비: 42,000천원 다. 고용서비스 전문교육 실시 · 고용서비스전문인력 양성교육: 964,000천원 : (교육운영비) 6,426천원 × 150명 = 964,000천원 · 고용서비스 민간종사자 보수교육: 7,000명×149,000원=1,043,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5~64세 고용률(%)	목표	66.4	68.0	69.0	69.5	70.0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68.5	69.2	69.5	-	-			
	달성도	103.2	101.8	100.7	-	-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목표	-	-	-	-	48.5	최근 5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29세 경제활동인구 수 / 만15~29세인구) *100	통계청
	실적	-	-	-	-	-			
	달성도	-	-	-	-	-			
상용직 근로자비율(%)	목표	69.8	71.4	-	-	-	-	상용근로자 수 / 임금 근로자 수 *100	통계청
	실적	73.0	74.1	-	-	-			
	달성도	104.5	103.8	-	-	-			
청년고용률(%)	목표	42.5	43.8	-	-	-	-	(청년취업자 / 청년층 인구)*100	통계청
	실적	46.6	46.5	-	-	-			
	달성도	109.6	106.2	-	-	-			
청년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고용(공제) 유지율(%)	목표	63.1	68.0	-	-	-	-	(t-2)년 청년공제 가입자 중 2년 이상 유지자수 (만기자 포함) /(t-2)년 청년공제 가입인원(철퇴·취소 제외)*100, t당해연도	청년층고용보험피보험 자 전수조사/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실적	69.7	64.6	-	-	-			
	달성도	110.4	95.0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고용서비스 평가> ○ '22년 고용센터 고용서비스 품질지수 조사 실시와 집합, 방문컨설팅 실시 ○ 취업알선실적 모니터링 조사(연2회) 및 소명회의실시 ○ 고용부 소속기관 정성평가 실시 ○ 잡케어서비스 활용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 방안 마련 ○ 고용서비스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고용서비스포럼 8회 운영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및 민간위탁성과평가> ○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 (사업개편) 민간고용서비스 영역과 민간위탁사업 영역으로 구분하여 신청 및 평가 실시 ○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접수('22.5~6월 및 8월) 및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심의위원회('22.10월 및 11월) ○ 민간고용서비스기관 대상 품질관리 컨설팅 실시 - 고용서비스 품질관리 입문컨설팅('22.6~7월) - 취업지원·기관 컨설팅(집합)('22.9~11월), 역량강화 컨설팅(현장방문) 실시('22.9~11월) ○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6개 성과평가 실시 <일자리사업 평가>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대상 성과평가 실시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운영 실태조사 -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대상 성과관리 컨설팅 ○ 일반회계(일자리대책지원 및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로 이관('23) <고용보험사업 평가> ○ 고용보험사업 평가 -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목적, 집행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평가하여 효율화 등을
------	--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고용보험사업 주요 사업(군)에 대해 고용형태, 장기고용유지율 등 성과지표 분석, 제도·전달체계 개선방안, 사업구조 개편방안 도출 ○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운영(위탁기관: 한국노동연구원) - 고용보험 중장기 제도개선 관련 조사·연구 <고용서비스 전문교육 실시> ○ 직업상담원 보수교육 - 2022년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22.3월~'23.2월) ○ 과정평가형 전문인력 양성 - 2022년 직업상담사 1급 과정평가형 양성과정 실시('22.3월~'23.2월) - 교육과정 확대(既 13개 과정 → 36개 과정)
2023	<고용서비스평가> ○ '23년 고용센터 고용서비스 품질지수 조사 실시(상·하반기 각 1회)와 집합, 방문 컨설팅 실시 ○ 취업알선실적 모니터링 조사(연1회) 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 ○ 고용부 소속기관 정성평가 실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및 민간위탁성과평가> ○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59개 기관 신청·접수, 47개 기관 인증 ○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실시 - 기관건전성심사, 역량심사 실시('23.7~9월) 및 기본역량심사 결과발표('23.10월) ○ 민간고용서비스기관 대상 품질관리 컨설팅 실시 - 고용서비스 품질관리 입문컨설팅 실시('23.3월, 6월) - 역량강화 컨설팅(집합)('23.8~11월), 역량강화 컨설팅(현장방문) 실시('23.10~11월) - '23년 우수인증기관 대상 집합컨설팅 실시('23.11월) ○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6개 성과평가 실시 <고용보험사업 평가> ○ 고용보험사업 평가 -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목적, 집행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평가하여 효율화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고용보험사업 주요 사업(군)에 대해 고용형태, 장기고용유지율 등 성과지표 분석, 제도·전달체계 개선방안, 사업구조 개편방안 도출 ○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운영(위탁기관: 한국노동연구원) - 고용보험 중장기 제도개선 관련 조사·연구 <고용서비스 전문교육 실시> ○ 직업상담원 보수교육 - 2023년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23.2월~'24.2월) ○ 과정평가형 전문인력 양성 - 2023년 직업상담사 1급 과정평가형 양성과정 실시('23.3월~'24.2월)
2024	<고용서비스 평가> ○ '23년 품질지수 하위 20% 고용센터 대상(20개) 집단 컨설팅 수행('24.6월) ○ '24년 고용센터(101개) 대상 고용서비스 품질지수 조사('24.9~12월) ○ 취업알선 실적 상반기 현장 모니터링('24.5~6월, 17개소), 하반기 정기 모니터링('24.10~11월) 수행 ○ 금융·고용 복합지원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수행 ○ 고용부 지방관서 고용분야 평가 -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24년부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병행 운영 ○ 구직자 및 기업 도약보장패키지 품질 관리 - 전국 고용센터 48개소 대상 현장 모니터링(104회), 사업성과 분석, 성과지표 개발 <고용서비스우수기관인증 및 민간위탁성과평가>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 사업시행계획 공고('24.4월) 및 사업설명회('24.5월)

	- 우수기관 인증 신청 및 접수('24.5.20~6.3, 118개 기관 신청) - 우수기관 인증제 평가위원(인증위원) 워크숍 ('24.5월, 7월) - 우수기관 인증제 서면심사(6월) 및 현장실사('24.8~9월) ○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4개 성과평가 수행 -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장년내일센터 고객만족도 조사 One-page report 각 민간기관에 제공 <고용보험사업평가> ○ 고용보험사업 평가 -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목적, 집행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평가하여 효율화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고용보험사업 주요 사업(군)에 대해 고용형태, 장기고용유지율 등 성과지표 분석, 제도·전달체계 개선방안, 사업구조 개편방안 도출 ○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운영(위탁기관: 한국노동연구원) - 고용보험 중장기 제도개선 관련 조사·연구 <고용서비스 전문교육실시> ○ 직업상담원 보수교육 - 2024년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24.2월~'25.2월) ○ 과정평가형 전문인력 양성 - 2024년 직업상담사 1급 과정평가형 양성과정 실시('24.3월~'25.2월) - 교육과정 확대(既 36개 과정 → 37개 과정)
2025	<고용서비스평가> ○ 고용센터 고용서비스 품질지수 '24년 하위 기관 집합 컨설팅 및 '25년 조사 준비 ○ 취업알선실적 현장 모니터링 수행('25.6~7월, 20개소) ○ 고용부 소속기관 대상 정량 평가 및 자율형(정성)평가 준비 ○ 기업지원종합서비스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25.3~7월) - 시범사업 참여센터 12개소 1:1 모니터링, 성과 분석, 성과목표와 평가지표 개발 ○ 현장체감형 모니터링 및 고용서비스 정책과제 제언 ○ 금융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이력과 복합애로요인 분석 <고용서비스우수기관인증 및 민간위탁성과평가> ○ 2025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 사업시행계획 공고('25.4.9) 및 사업설명회('25.4.24) - 우수기관 인증 신청 및 접수('25.5.12~5.26, 106개 기관 신청) ○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고객만족도 및 모니터링 조사 준비('25.9~10월 실시) -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장년내일센터 성과평가 지표정의서 검토와 실적데이터 추출, 검증 <고용보험사업평가> -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목적, 집행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평가하여 효율화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고용보험사업 주요 사업(군)에 대해 고용형태, 장기고용유지율 등 성과지표 분석, 제도·전달체계 개선방안, 사업구조 개편방안 도출 - 고용보험 중장기 제도개선 관련 조사·연구 -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운영(위탁기관: 한국노동연구원) - 고용보험 중장기 제도개선 관련 조사·연구 <고용서비스 전문교육실시> ○ 2025년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25. 3월-'26. 2월) - 고용서비스 현장 AI 활용 관련 교과 개발('24년 1개, '25년 1개) - 既 교과의 효과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한 온라인콘텐츠 개편(4개) ○ 'AI를 활용한 고용서비스 업무 효율화' 경진대회 최초 개최 <고용동향분석 모니터링> - 제28차 한국노동패널조사 실시('25.2월~'25.12월) - 분기별 고용동향점검회의를 통해 고용이슈 및 전망 관련 논의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용서비스평가>

- 고용센터(중형센터 30개 포함)의 고객서비스 평가 및 피드백 실시로 효율적 관리 지원
- 고용센터·지자체·새일센터·유관기관 취업알선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기관별 실적의 투명성 확보 및 처리절차 표준화 틀 마련
- 고용센터 성과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고용서비스정책의 노동시장 성과 제고
- 민간 취업포털의 통합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거짓구인광고로부터 구직자 보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인증 및 민간위탁성과평가>

-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하여 구인·구직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고용서비스 품질 저하 예방
- 성과평가 결과를 사업 수행기관 선정에 반영하여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의 고용서비스 품질제고

<고용보험사업 평가>

- 고용보험사업 평가에 따른 체계적 사업성과 관리를 통해 예산연계, 사업개편 등 환류기능 강화
- 고용보험 중장기 제도개선 관련 조사·연구를 통한 고용보험제도 개선에 기여

<고용서비스 전문교육 실시>

-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통한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

<고용동향분석 모니터링>

-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변화 등을 추적 관찰하고, 노동시장 이슈를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사업 수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업기준 및 지침 수립	고용노동부
↓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계획서 제출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	
운영계획서 검토 및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재배정	고용노동부
↓	
사업수행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고용노동부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재정지원일자리사업평(고용부, '25.5.) “우수”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8,935	-	8,935	-	-	8,935	100	-	-
2023	5,253	-	5,253	-	-	5,253	100	-	-
2024	4,848	-	4,848	-	-	4,848	100	-	-
2025	4,111	-	4,111	-	-	3,353	81.6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5)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1054-5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54	510
명칭	고용창출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용전산망 관리(정보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서비스기반과
	사업시행주체	한국고용정보원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고용전산망 관리 (정보화)	37,381	39,230	39,230	38,470	39,470	240	0.6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37,381	37,381	37,381	-	-	39,230	39,230	39,230	39,230	-	-	39,470
· 워크넷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793	2,793	2,793	-	-	3,381	3,381	3,381	3,381	-	-	3,591
· 고용보험시스템 운 영 및 유지관리	1,873	1,873	1,873	-	-	1,995	1,995	1,995	1,995	-	-	3,305
· 직업 능 력 개 발 정 보 망 운영 및 유지 관리	1,810	1,810	1,810	-	-	2,436	2,436	2,436	2,436	-	-	2,436
· 외국인근로자고용관 리시스템 운영 및 유 지관리	677	677	677	-	-	898	898	898	898	-	-	1,133
· 일모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3,018	3,018	3,018	-	-	1,480	1,480	1,480	1,480	-	-	1,653
· 고 용 복 지 통 합 정 보 망 운영 및 유지관 리	400	400	400	-	-	400	400	400	400	-	-	1,366
· 고용서비스통합시 스템 운영 및 유지관 리	252	252	252	-	-	252	252	252	252	-	-	252
· 개인정보보호 및 정 보보안	862	862	862	-	-	862	862	862	862	-	-	862
· 고용정보 콘텐츠 및 UI·UX 기획·디자인	980	980	980	-	-	980	980	980	980	-	-	980
· 취업정보 발굴·수집	456	456	456	-	-	456	456	456	456	-	-	456
· 국가사이버 안전관리	1,835	1,835	1,835	-	-	1,515	1,515	1,515	1,515	-	-	1,515
· 고용전산망 운영지원	22,425	22,425	22,425	-	-	24,575	24,575	24,575	24,575	-	-	21,92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용전산망관리) 법·제도 신설·변경 및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 반영 등을 위해 기존의 취업알선전산망,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고용보험전산망, 외국인고용관리 시스템 등의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
- (워크넷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포털 구축 완료 후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 등 안정적인 운영관리와 취업지원업무 지침 제·개정, 사용자 요구사항 등 일자리 정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관리

- (고용보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실업급여, 모성보호(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금 등) 등 고용보험법·제도 변경에 대한 고용보험시스템 개선·운영, 고용보험사업의 부정수급에 대한 수사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하는 사업
- (직업능력개발정보망 운영 및 유지관리) HRD-Net 훈련정보를 일자리포털로 통합하기 위한 기반 구축, 직업능력개발 법령, 규정 등 개정에 맞춘 훈련정보(훈련생, 훈련 과정, 비용 등)의 체계적인 관리, 법·제도·지침 개정과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개발 SW 유지관리하는 사업
-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 및 외국인고용관리 정책·법령 제·개정 사항에 대한 신속한 상시 대응 등 외국인고용관리 내외부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하는 사업
- (일모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일자리사업 관련 지침 등 법·제도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과 연계 수신 자료에 대한 통합DB 전환, 일자리사업 실적 평가용 통계 등 실적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하는 사업
- (고용복지통합정보망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개정 사항 반영 및 SSO 확대와 복지부 시스템 연계 관리하는 사업
- (고용서비스통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업무(신청·접수·평가 등), 민간위탁사업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실시 등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하는 사업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시스템 취약점 진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점검,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 등 고용전산망의 보안을 점검하고 강화하는 사업
- (고용전산망 콘텐츠 및 UI·UX 기획·디자인) 고용24 등 고용전산망(PC, 모바일)의 콘텐츠(누리집, 서비스, 기능 등)에 대한 디자인(UX·UI) 개선, 신규 디자인 기획·제작하는 사업
- (취업정보 발굴·수집) 온라인에 산재되어 있는 채용정보와 취업 관련 정보를 상시 수집·발굴하는 사업(발굴된 정보는 워크넷에 탑재하여 구직자에게 제공)
- (국가사이버 안전관리) 「국가고용전산망 사이버보안관제센터」 보안관제 용역사업
- (고용전산망 운영지원) 고용전산망에 도입된 장비에 대한 임차료와 유지보수료, 통신요금, 본인인증 및 정보 알람 사용료, 보험료 등 일반운영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고용·직업정보의 수집·관리), 제15조의2(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제40조(위탁)

제15조(고용·직업 정보의 수집·관리)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과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이하 "고용·직업 정보"라 한다)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1. 구인·구직 정보
 2.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안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3. 직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정보
 4. 외국인 고용관리에 필요한 정보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
 6. 산업별·지역별 고용 동향 및 노동시장 정보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자·구인자, 직업훈련기관, 교육기관 및 그 밖에 고용·직업 정보가 필요한 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배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노동시장의 직업구조를 반영한 고용직업분류표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15조의2(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고용·직업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법무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2.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공무원연금·공무원 재해보상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 여부, 가입종별,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3. 건물·토지·자동차·건설기계·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액
 4. 주민등록등본·초본
 5.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6. 북한이탈주민확인증명서
 7. 범죄사실에 관한 정보
 8. 출입국 정보
 9. 외국인등록 자료 중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10. 장애 정도
 11.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12.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13.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

14.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와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위탁받은 기관·단체(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사업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의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전산망을 연계하여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으로의 정보 제공 및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에 소요 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 이용에 관하여는 수수료·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① 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고용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④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 동향, 직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2. 인력 수급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고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40조(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
3. 제15조의5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

② 추진경위

- '95.7: 고용보험전산시스템 서비스 개시(적용·징수, 지원금, 기타)
- '96.9: 국내·외 취업알선 서비스 개시
- '98.11: Work-Net 서비스 개시
- '02.1~12: 직업훈련종합정보망 구축
- '03.1: HRD-Net(직업훈련종합정보망) 서비스 개시
- '04.3~8: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른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구축
- '05.11~'06. 2: HRD-Net 종합서비스망 구축
- '07.5~'08.8: 워크넷시스템 혁신사업 추진
- '08.10: 고용보험시스템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등

- '10.6~11: 차세대 종합 고용서비스망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12.6: 차세대 종합고용서비스 시스템 구축 2차 사업 추진
- '12.6: 장애인고용공단의 워크투게더를 워크넷으로 통합
- '13.6: “바로ONE”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13~'14: 차세대고용보험시스템 구축 추진
- '13.8: 차세대일모아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 '14.6: 차세대고용보험시스템 서비스 개시
- '14년: 차세대 고용보험시스템 구축에 따른 MDM 재구축
- '14.12: “바로ONE” 시스템을 통한 맞춤 서비스 제공
- '16~'17년: 차세대 HRD-Net 시스템 구축
- '17.10: 대국민 개방통계 홈페이지(eis.work.go.kr) 구축 및 서비스 개시
- '18.3: 일자리 관련 정보 연계·공유의 기반이 되는 고용사업장 DB 구축
- '18.10: 데이터사전, 표준직무기술서 오픈API 서비스 개시
- '18.12: 국가일자리정보 플랫폼 기반 및 일자리포털 구축
- '19.2: 워크넷 일자리 자동상담(챗봇) 시스템 시범서비스 오픈
- '20.10: HRD-Net 홈페이지·모바일 개편(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적용, 성과정보 공개 강화, 훈련정보 자동 표출 및 검색 지원 등)
- '21.6: 워크넷 이용자 및 기업회원 양방향 화상면접서비스 제공
- '21.12: 디지털 업무 기반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스템 서비스 개시
- '21.12: 고용보험 적용 확대(플랫폼종사자)
- '21.12: 범부처 디지털 훈련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 '22.10: 워크넷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사업 전산망 구축
- '22.12: AI·데이터분석 기반 맞춤형 직업상담 지원 서비스 잡케어(Jab Care) 서비스의 사용자 확대(6개 고용센터 → 전국 고용센터)
- '23.3: 잡케어 대국민 시범운영 오픈('23.3)
- '23.7: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 관련 시스템 개발
- '23.8: 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전산망 구축
- '23.12: 고용보험시스템, 국민취업지원시스템,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등 온라인 민원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민원신청 편의성 제고
- '23.12: 실업급여 내부, 고용안정 내부 및 외부 서비스, HRD-Net 대민포털 서비스 고용24 이관
- '24.4: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국가자격·훈련 디지털배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혁신적인 디지털 고용서비스 제공
- '25.1: EPS 대민홈페이지 외국인서비스 위주 메인화면 개편
- '25.1: 차세대 일모아시스템 서비스 개시
- '25.1~2: 고용보험 육아지원정책 개정 관련 반영
- '25.6: 고용24 행정업무망 싱글뷰(Single view) 구인목록, 인재목록 개발
- '25.6: K-디지털 트레이닝 심사·평가 관리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3,359	31,517	37,381	39,230	39,47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 수혜자 : 구직자, 청소년, 실업자, 구인업체, 진로지도담당자 등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고용전산망 관리	출연	한국고용 정보원	39,470	100%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 정보원의 설립) 및 제40조(위탁)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워크넷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2025 계획) 3,381 → (2026 계획) 3,591백만원, +210백만원, +6.2%

- (요구)

■ 워크넷시스템 운영비

* 제도 확대 등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이 증가하여 운영비 상승분 반영

- ① 구인·구직·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업무 지침 개정
- ② 청년·중장년 고용정책에 대한 신규 서비스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 증가
- ③ 일자리 연계 및 신기술을 적용한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신규 대민서비스 개발

■ 워크넷 화상 서비스 이용료(△53백만원, 순감)

* 사유: 이용량에 따라 과금하는 성격 고려하여 「⑫고용전산망 운영지원」으로 이동

- (산출)

■ 워크넷시스템 운영비 : ('25) 3,328백만원 → ('26) 3,591백만원(+263백만원)

(1) 구인·구직·취업·알선 등 대민서비스 강화 및 고용서비스 업무지침 개정(대민서비스 유지관리)

- ① (필요성 및 시급성) 제도 확대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용자 편의성 향상, 데이터분석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필요(테마별 채용관 강화, 추천 메일, 검색 개선 등)
- ② (기대효과) 구직자에게 풍부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원활한 인재확보, 취업지원 업무 효율성 제고

③ (변동사항)

○ 대민서비스 유지관리 : ('25) 1,844백만원 → ('26) 2,069백만원(+225백만원)

- (FP) '25년 17,951.5 → '26년 12,911.0 (△5,040.5)

- (FP 단가) '25년 553,114원 → '26년 605,784원(+52,670원)

- (요율) '25년 13.75% → '26년 14.35%(+0.6%p)

* 대민서비스 유지관리 : 2,069백만원

계산식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재산정된 개발비 × 유지관리 요율(10~15%) + 직접경비
합계(VAT별도)	13,107,465,533원 × 14.35% + 0 = 1,880,921,304원
합계(VAT포함)	2,069,013,434원

(2) 청년 고용정책에 대한 신규 서비스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 증가

- ① (필요성 및 시급성)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24.5.1) 및 역동 경제 로드맵(7.3)을 계기로 부처(기재부-교육부-고용부) 간 협업을 통해 재학 단계부터 졸업 이후까지 취업 정보·컨설팅·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 적극 지원을 위한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구축('25년 사업비 3,000백만원), '25년 시스템 구축에 따라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증가
- ② (기대효과) "찾아가는 청년 고용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 진입단계 미취업 졸업생에게 취업 관련 정보 적극 제공, NEET 예방 등을 위해 졸업 직후부터 일자리 매칭, 직업훈련 등 고용 관련 맞춤형 서비스 조기 지원
- ③ (변동사항)
 - 행정서비스 유지관리 : ('25) 1,484백만원 → ('26) 1,522백만원(+38백만원)
 - (FP) '25년 11,428.8 → '26년 9843.8 (△1585.0)
 - (FP 단가) '25년 553,114원 → '26년 605,784원(+52,670원)
 - (요율) '25년 13.50% → '26년 13.85%(+0.35%p)

* 행정서비스 유지관리 : 1,522백만원

계산식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재산정된 개발비 × 유지관리 요율(10~15%) + 직접경비
합계(VAT별도)	9,993,592,225원 × 13.85% + 0 = 1,384,112,523원
합계(VAT포함)	1,522,523,775원

② 고용보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2025 계획) 1,995 → (2026 계획) 3,305백만원, +1,310백만원, +65.7%

- (요구)

■ 고용보험시스템 운영비

* 제도의 신규 운영 및 확대 시행 등 유지관리 대상이 증가하여 운영비 상승분 반영

- ① 육아지원 3법 등 모성보호 제도 확대 시행(국정과제 96)
- ②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등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시행 및 제도 개정
- ③ 실업급여·모성보호 민원신청 서비스 전체 모바일 제공

* 온라인 이용자 패턴 분석을 통한 민원신청 서비스 개선

* 제도 개선에 따른 고용보험 행정처리지원시스템 개선

■ 부정수급시스템 운영비

* 부정수급 수사관리시스템, 부정수급 처분 및 자동경보 시스템 유지관리

* 신규 부정수급 모델 및 의심자 유형 부정수급인사이트 적용

*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모니터링

■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 전환에 따른 시스템 개선

* 「고용보험법」을 개정(국정과제 96)하여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업무처리 방식과 각종 지원금 계산식 등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시스템 개선 필요

■ 고용보험시스템 BPR/ISMP

*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 전환에 따른 대민서비스 및 행정서비스 개선 방안 수립, 고용보험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BPR)

* 국가 클라우드 전환 계획(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행안부, '23.4), AI 고용서비스 로드맵('25.9월)의 '26년 핵심과제 등에 따라 클라우드 기반의 고용보험시스템 재구축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ISMP)

- (산출)

■ 고용보험시스템 운영비 : ('25) 1,091백만원 → ('26) 1,491백만원(+400백만원)

(1) 기개발된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고용보험 제도 확대 개편 시스템 적기 반영

- ① (필요성 및 시급성) 육아지원3법, 고용안정지원금, 실업급여 제도 등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및 신규 제도 시행이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시스템 반영 필요

* 고령자 계속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국정과제 96) 전면개편 추진 예정

- ② (기대효과) 고용보험 제도의 효율적인 적기 시행(실업급여 등 생계급여 지급)으로 민생안정에 기여

- ③ (변동사항)

○ 고용보험시스템 유지관리 : ('25) 1,091백만원 → ('26) 1,491백만원(+400백만원)

- (FP) '25년 6400.1 → '26년 10,680.1 (+4,280)

- (FP 단가) '25년 553,114원 → '26년 605,784원(+52,670원)

- (요율) '25년 14.35% → '26년 14.00%(△0.35%p)

* 고용보험시스템 유지관리 : 1,491백만원

계산식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재산정된 개발비 × 유지관리 요율(10~15%) + 직접경비
합계(VAT별도)	9,680,909,042원 × 14.00% + 0 = 1,355,327,266원
합계(VAT포함)	1,490,859,992원

■ 부정수급시스템 운영비 : ('25) 904백만원 → ('26) 912백만원(+8백만원)

(2) 부정수급 수사관리시스템 안정적 유지 및 부정수급 적발 지원으로 재정 건정성 확보

- ① (필요성 및 시급성) 국민의 고용보험 제도 신뢰도 제고 및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부정수급 수사관리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기능 제공 및 부정수급 적발 지원 필요

* 연도별 부정수급액 : ('23년)52,476백만원→('24년)45,791백만원→('25년)50,353백만원

- ② (기대효과) 부정수급 수사관리시스템 안정적 제공으로 부정수급 관리 행정 효율성 제고

- ③ (변동사항)

○ 수사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25) 542백만원 → ('26) 550백만원(+8백만원)

- (FP) '25년 4,040.0 → '26년 4,087.1 (+47.1)

- (FP 단가) '25년 553,114원 → '26년 605,784원(+52,670원)

- (요율) '25년 13.05% → '26년 13.50%(+0.45%p)

* 수사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550백만원

계산식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재산정된 개발비 × 유지관리 요율(10~15%) + 직접경비
합계(VAT별도)	3,704,725,925원 × 13.50% + 0 = 500,138,000원
합계(VAT포함)	550,151,800원

(3) 부정수급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규 부정수급 모델 및 의심자 유형 적용 관리

- ① (필요성 및 시급성) 부정수급 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정수급 의심자 유형 추가 및 제외 등 자동 경보시스템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효율적인 부정수급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

* 자동경보시스템 부정수급 적중률 : ('23년)33.72%→('24년)38.03%

- ② (기대효과) 부정수급 의심자 적중률 향상을 통한 고용보험 재정건전화에 기여

- ③ (변동사항)

○ 부정수급분석시스템 유지관리 : ('25) 362백만원 → ('26) 362백만원(전년동)

- (총 투입공수) '25년 14.175M/M → '26년 14.52M/M(+0.345M/M)

※ 총 투입공수 : 투입인원 × 투입기간 × 투입률

※ '25년 SW기술자 평균임금 적용

* 부정수급분석시스템 유지관리 : 362백만원

업무활동	투입직무	평균임금(원)	투입공수(M/M)	투입율(업무비중)	직접인건비
빅데이터분석	데이터분석가	7,751,183	12	90%	83,712,776
데이터수집 및 마트 설계	데이터분석가	7,751,183	4	93%	28,834,401
직접인건비 합계			112,547,177		
제경비(144%)			162,067,935		
기술료(20%)			54,923,022		
합계(부가세 별도)			329,538,135		
합계(부가세 포함)			362,491,948		

■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 전환에 따른 시스템 개선 : ('25) 0원 → ('26) 404백만원(순증)

(4)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 전환에 따른 시스템 적기 개선 추진

- ① (필요성 및 시급성) '25년 법안 통과시 '27년 제도 시행을 위해 '26년에 현행 시스템 개편 추진 반드시 필요(근로복지공단은 '25년에 예산을 편성하여 소득기반 산재·고용보험 정보시스템 ISP 추진 중), 예산 미편성 시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을 수기로 계산해야 하고, 국민은 온라인으로 민원 신청 불가

* 실업급여 민원신청 9종, 모성보호 민원신청 10종, 고용안정지원금 민원신청 14종 등 개선 필요

- ② (기대효과)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 전환에 따른 제도 적기 시행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제공 및 고객 편의성 향상

- ③ (변동사항)

○ 소득기반 고용보험서비스 체계 개편 관련 시스템 개선: ('26) 404백만원(순증)

- (FP 재개발 기능 규모) '26년 420.3 (순증)

- (FP 단가) '26년 605,784원

* 소득기반 고용보험서비스 체계 개편 관련 시스템 개선 : 404백만원

계산식	보정 후 재개발 원가 + 이윤 + 직접경비
합계(VAT별도)	334,498,729원 + (334,498,729원 × 10%) + 0 = 367,948,602원
합계(VAT포함)	404,743,462원

■ 고용보험시스템 BPR/ISMP : ('25) 0원 → ('26) 498백만원(순증)

(5)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 전환에 따른 BPR/ISMP 추진

- ① (필요성 및 시급성)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 전환('27년 제도 시행)에 따른 대민서비스 및 행정서비스 개선 방안 수립, 고용보험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BRP), 국가 클라우드 전환계획(행안부) 및 AI 고용서비스 로드맵(고용부) 핵심과제 등에 따라 클라우드 기반의 고용보험시스템 재구축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ISMP) 필요
- ② (기대효과)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에 맞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제공 및 고객 편의성 향상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 ③ (변동사항)
 - 고용보험시스템 BPR/ISMP 컨설팅 : ('26) 498백만원(순증)
 - (투입인원 × 투입기간 × 투입율) 14.94M/M(순증)

* 고용보험시스템 BPR/ISMP 컨설팅 : 498백만원

계산식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합계(VAT별도)	148,756,902원 + 214,209,939원 + 72,593,368원 + 18,000,000원 = 453,560,208원
합계(VAT포함)	498,916,229원

③ 직업능력개발정보망 운영 및 유지관리

: (2025 계획) 2,436 → (2026 계획) 2,436백만원, 전년동

- (요구)

■ 직업능력개발정보망 운영비

* 법제도 개정, 국정과제 반영에 따른 프로그램 추가 개발 관련 유지관리 대상 증가에 따른 운영비 상승분 반영

- ①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신규 개발
- ② 컨소시엄 훈련유형 통합에 따른 심사·행정시스템 개편
- ③ K-디지털 트레이닝 심사·평가 관리 시스템 신규 구축

■ 일학습병행시스템 운영비

* 일학습병행시스템 등 사업주관련 훈련 안정화 및 기능개선 등 유지관리 대상 증가에 따른 운영비 상승분 반영

- ① 중소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고도화(기업직업훈련카드, 자체훈련탄력운영제,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청년 기술 채용 훈련 등)
- ② 외국인 E-9(민간) 훈련 신규 개발

- (산출)

■ 직업능력개발정보망 운영비 : ('25) 1,845백만원 → ('26) 1,845백만원(전년동)

(1) 신규 및 기 개발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정책 적기 반영

- ① (필요성 및 시급성) 돌봄서비스 등 특화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침 개정, 국정과제 추진 등 신규 서비스 개발과 기 개발 운영중인 심사·행정시스템 서비스 개편, 훈련찾가·검색서비스 고도화 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제도 개선·변경에 따른 신속한 시스템 반영 필요
- ② (기대효과) 직업능력개발정보망 국민내일배움카드 정책의 적기 반영으로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및 국민의 훈련 서비스 활용도 향상에 기여
- ③ (변동사항)
 - 직업능력개발정보망 운영 : ('26) 1,845백만원(전년동)
 - (FP) '25년 14,172.9 → '26년 12,941.3(△1,231.6)
 - (FP 단가) '25년 553,114원 → '26년 605,784원(+52,670원)
 - (요율) '25년 14.30% → '26년 14.30%(전년동)

* 직업능력개발정보망 운영 : 1,845백만원 (전년동)

계산식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재산정된 개발비 × 유지관리 요율(10~15%) + 직접경비
합계(VAT별도)	11,730,559,469원 × 14.30% + 0 = 1,677,470,004원
합계(VAT포함)	1,845,217,004원

■ 일학습병행시스템 운영 : ('25) 591백만원 → ('26) 591백만원(전년동)

(2) 신규 및 기개발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일학습병행 등 사업주 정책 적기 반영

- ①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주 시범사업에 대한 고도화, 국정과제의 원활한 정책지원과 외국인 민간 훈련, 대중소 상생 아카데미 등 사업주, 일학습병행, 컨소시엄 훈련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변경에 따른 신속한 시스템 반영 필요
- ② (기대효과) 직업능력개발정보망 사업주 관련 훈련 정책의 적기 반영으로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및 국민의 훈련 서비스 활용도 향상에 기여
- ③ (변동사항)
 - 일학습병행 관리시스템 운영 : ('26) 591백만원(전년동)
 - (FP) '25년 4,541.3 → '26년 4,148.3(△393)
 - (FP 단가) '25년 553,114원 → '26년 605,784원(+52,670원)
 - (요율) '25년 14.30% → '26년 14.30%(전년동)

* 일학습병행 관리시스템 운영 : 591백만원

계산식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재산정된 개발비 × 유지관리 요율(10~15%) + 직접경비
합계(VAT별도)	3,760,200,277원 × 14.30% + 0 = 537,708,640원
합계(VAT포함)	591,479,504원

④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2025 계획) 898 → (2026 계획) 1,133백만원, +235백만원, +26.2%

- (요구)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정보시스템 운영비

* 제도 신규 운영 및 확대 시행 등 유지관리 대상(FP) 증가에 따른 운영비 상승분 요구

- ① 고용허가제 체류지원 개편 관련 행정시스템 다국어 상담원 프로그램 신규 개발
- ② 사업장변경 노사분쟁 공인노무사지원단 신규 개발
- ③ 외국인력도입 사업주별 맞춤서비스 신규 개발
- ④ 임업 근무처추가 제도 시행에 따른 프로그램 신규 개발
- * 콜 문의 유형분석 및 온라인 이용자 패턴 분석을 통한 민원신청 서비스 개선 추진
- * 법·제도 개선에 따른 대민 홈페이지 및 행정처리지원시스템 개선 추진
- * 민원편의성 및 업무효율화를 위한 유관시스템 간 연계 확대 추진
- ① 외국인특화교육수료사업장 가점 적용 및 뿌리산업특화훈련신청 위한 직업훈련 연계
- ② 점수제 상시 운영을 위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노사누리시스템 연계
- ③ 알선사업주 제공을 위한 산업인력공단 외국인 추가 정보 연계
- ④ 특화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농협, 수협 등 연계 시스템 확대
- ⑤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근로복지공단 연계
- * 운영사이트(10종) : ①고용24 행정-고용허가(www1.work24.go.kr), ②고용24 대민-고용허가(work24.go.kr)
- ③EPS 내부행정(www1.eps.go.kr), ④EPS 외부행정(exadmin.eps.go.kr), ⑤EPS 모바일행정,
- ⑥EPS 구직자명부관리(spas.eps.go.kr), ⑦EPS 국문홈페이지(eps.go.kr),
- ⑧EPS 모국어홈페이지(eps.go.kr), ⑨EPS 모바일앱(m.eps.go.kr) ⑩여권판독시스템

- (산출)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정보시스템 운영비 : ('25) 898백만원 → ('26) 1,133백만원(+235백만원)

(1) 기개발된 전산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고용허가 제도 개편 시스템 적기 반영

- ① (필요성 및 시급성)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 외국인력 확대 정책에 부응하여 외국인 고용사업 시행 이래 역대 최대 10만명 도입을 달성하였고, COVID-19이후 지속적으로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력 신청·도입·체류·출국관리 등 시스템 전반에 걸친 빈번한 전산 개편이 요구되고 있음.
 - * 신규 외국인근로자 쿼터 확대 : 22년:2.5만 ⇨ 23년:12만명 ⇨ 24년:16.5만명 매년 외국인고용 법·시행규칙 개정 및 매분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반영 등 고용허가 관련 신속한 인력지원 및 정책 변경에 대한 즉각적인 시스템 반영을 요구
- ② (기대효과) COVID-19가 가져온 외국인 노동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분석하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전산시스템을 신속하게 개편하여 외국인 노동시장 회복 가속화
- ③ (변동사항)
 -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운영 : ('25) 898백만원 → ('26) 1,133백만원(+235백만원)
 - (FP) '25년 7,780.0 → '26년 7,999.0(+219)

- (FP 단가) '25년 553,114원 → '26년 605,784원(+52,670원)

- (요율) '25년 13.45% → '26년 13.40%(△0.05%p)

*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운영 : 1,133백만원

계산식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재산정된 개발비 × 유지관리 요율(10~15%) + 직접경비
합계(VAT별도)	7,685,681,494원 × 13.40% + 0 = 1,029,881,320원
합계(VAT포함)	1,132,869,452원

⑤ 일모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2025 계획) 1,480 → (2026 계획) 1,653백만원, +173백만원, +11.7%

- (요구)

■ 일모아시스템 운영비

* 일모아시스템 고도화 사업에서 개발한 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증가로 운영비 상승

■ 일모아시스템 고도화(2차)(순감, △953백만원)

* 사유: '25년 일모아시스템 고도화 2차 사업을 종료하여 사업비용 순감

- (산출)

■ 일모아시스템 운영비 : ('25) 527백만원 → ('26) 653백만원(+126백만원)

(1) 일모아시스템 고도화 2차 사업에서 개발된 기능을 포함한 유지관리 확대

① (필요성 및 시급성) 2025년 일모아시스템 고도화 2차 사업에서 신규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증가하여 유지관리 대상 기능점수 증가(약 767FP)

* 2차사업 내용 : 개인정보접속기록 소명 구축, 마이데이터 연계 개선, 모바일 신분증 인증체계 구축, 각 부처 실적정보 연계, 정부디렉토리 시스템 연계 등

② (기대효과) 각 부처의 직접일자리 사업을 일모아시스템으로 통합·확대하여 부적격자 참여를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국고를 낭비하는 사례 방지

③ (변동사항)

○ 일모아시스템 운영 : ('25) 527백만원 → ('26) 653백만원(+126백만원)

- (FP) '25년 3,208.0 → '26년 3,975.0(+767)

- (FP 단가) '25년 553,114원 → '26년 605,784원(+52,670원)

- (요율) '25년 13.50% → '26년 13.50%(전년동)

* 일모아시스템 운영 : 653백만원

계산식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재산정된 개발비 × 유지관리 요율(10~15%) + 직접경비
합계(VAT별도)	4,396,080,773원 × 13.50% + 0 = 593,470,904원
합계(VAT포함)	652,817,995원

■ 일모아시스템 개선 사업 : ('25) 0원 → ('26) 1,000백만원(+1,000백만원)

(2) 일모아 공공일자리플랫폼 확대 및 통계서비스 구축

① (필요성 및 시급성) 지역별·연령별 참여가능 사업 정보 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고 사업별 임금수준, 참여자 연령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등 관리 기능 강화

② (기대효과) 통합된 일자리 정보 통계 집계로 지역별 수요·공급의 불균형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 후 대국민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③ (변동사항)

○ 일모아 공공일자리플랫폼 확대 구축: ('26) 250백만원(순증)

- (FP 개발 기능 규모) '26년 198.9 (순증)

- (FP 단가) '26년 605,784원

○ 일모아 통계서비스 신규 구축 : ('26) 150백만원(순증)

- (FP 개발 기능 규모) '26년 186.4 (순증)

- (FP 단가) '26년 605,784원

○ 서버 용량 증설 장비(HW/SW) 구매 : 600백만원(순증)

- (서버 용량 증설 장비 구매) : 600백만원(순증)

* 일모아 공공일자리플랫폼 확대 구축 : 250백만원

계산식	보정 후 개발 원가 + 이윤 + 직접경비
합계(VAT별도)	206,902,092원 + (206,902,092원 × 10%) + 0 = 227,592,301원
합계(VAT포함)	250,351,531원

* 일모아 통계서비스 신규 구축 : 150백만원

계산식	보정 후 개발 원가 + 이윤 + 직접경비
합계(VAT별도)	124,238,887원 + (124,238,887원× 10%) + 0 = 136,662,776원
합계(VAT포함)	150,329,054원

* 서버 용량 증설 장비(HW/SW) 구매 : 600백만원

구분	항목명	금 액(원)
HW/SW	IBM Netezza Appliance	545,353,000
	합계(VAT별도)	545,353,000
	합계(VAT포함)	599,888,300

⑥ 고용복지통합정보망 운영 및 유지관리

: (2025 계획) 400 → (2026 계획) 1,366백만원, +966백만원, +241.5%

- (요구)

■ 고용복지통합정보망 운영비

* 클라우드 전환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정보망 운영비를 감액하여 최소한도 요구

■ 고용복지통합정보망 클라우드 전환 구축비

* 클라우드 장비 구입비, 프로그램 재개발비, 아키텍처 설계비 등

- (산출)

■ 고용복지통합정보망 운영비 : ('25) 400백만원 → ('26) 268백만원(△132백만원)

* 고용복지통합정보망 운영 : 268백만원

산출 근거				금액(원)
구분	평균임금(원)	투입공수(MM)	투입률	
응용SW개발자	6,943,457	12	100%	83,321,484
직접인건비 합계				83,321,484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44%)				119,982,937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40,660,884
합계(VAT별도)				243,965,305
합계(VAT포함)				268,361,836

■ 고용복지통합정보망 클라우드 전환 구축비 : ('25) 0원 → ('26) 1,098백만원(순증)

(1) 노후화된 고용복지통합정보망 고용24 통합구축으로 시스템 안정성 확보

① (필요성 및 시급성) 고용복지통합정보망은 상담을 거친 후 내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고용, 복지, 금융, 주거 등)를 관련된 기관으로 의뢰하는데 이때,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불편 야기 또한, 2014년 도입된 장비는 노후화되어 서비스 업그레이드에도 제약적

* 서버 OS 버전이 낮아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에 필요한 솔루션(인포메티카) 설치가 불가하여 다른 서버(MDM서버)의 장비에 설치하여 연계 데이터 적재·전송 중('25.4월~)

→ 정부의 3~4등급 시스템 통·폐합과 클라우드 전환 정책(행안부)에 따라 고용복지통합정보망을 폐지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고용24로 통합 추진

② (기대효과) 대부분 유관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고용24로 통합될 경우 유관기관 간 취약계층 서비스 의뢰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

③ (변동사항)

○ 고용복지통합정보망 클라우드 전환 및 고용24 통합 구축: ('26) 605백만원(순증)

- (FP 재개발 기능 규모) '26년 988(순증)

- (FP 단가) '26년 605,784원

○ 클라우드 기반의 고용24로 통합 설계 : ('26) 49백만원(순증)

- (총 투입공수) '26년 1.5M/M(순증)

※ 총 투입공수 : 투입인원 X 투입기간 X 투입률

※ '25년 SW기술자 평균임금 적용

○ 클라우드 장비(HW/SW) 구매 : 444백만원(순증)

- (클라우드 플랫폼 및 상용 SW 구매) : 444백만원(순증)

* 고용복지통합정보망 클라우드 전환 및 고용24 통합 구축 : 605백만원

계산식	대상 소프트웨어의 재개발비 + 이윤 + 직접경비
합계(VAT별도)	500,717,308원 + (500,717,308원 × 10%) + 0 = 550,789,038원
합계(VAT포함)	605,867,942원

* 클라우드 기반의 고용24로 통합 설계 : 49백만원

산출 근거				금액(원)
구분	평균임금	투입공수(MM)	투입률	
IT아키텍트	10,147,745	1.5	100%	15,221,618
직접인건비 합계				15,221,618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44%)				21,919,129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7,428,149
합계(VAT별도)				44,568,896
합계(VAT포함)				49,025,786

* 클라우드 장비(HW/SW) 구매 : 444백만원

구분	항목명	금 액(원)
HW	클라우드 플랫폼 등	266,725,000
상용SW	가상화, 운영체제, 서버보안, 웹셀탐지, SSO, 와탭 등	137,293,000
합계(VAT별도)		404,018,000
합계(VAT포함)		444,419,800

⑦ 고용서비스통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2025 계획) 252 → (2026 계획) 252백만원, 전년동

- (요구)

■ 고용서비스통합시스템 운영비

*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의 민간위탁기관 선정·평가 등 행정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 (산출)

■ 고용서비스통합시스템 운영비 : ('25) 252백만원 → ('26) 252백만원(전년동)

(1) 기개발된 전산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민간위탁사업 관련 시스템 적기 개선

① (필요성 및 시급성) '25년 시행 되는 우수기관인증제 관련 수정 사항 시스템 적용 및 매년 진행되는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오프라인 교육 관리 기능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함. 또한 시스템 기능 개편 요구 발생 시 대응 필요.

* '25년 5월 12일부터 우수기관인증제 운영

② (기대효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위탁 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민간위탁기관 종사자에게 오프라인 교육 제공 등을 통해 민간위탁기관의 고용서비스 품질 향상 기대

③ (변동사항)

○ 고용서비스통합시스템 운영 : ('25) 252백만원 → ('26) 252백만원(전년동)

- (FP) '25년 1,436.0 → '26년 2,518.2(+1082.2)

- (FP 단가) '25년 553,114원 → '26년 605,784원(+52,670원)

- (요율) '25년 11.0% → '26년 13.15%(+2.15%p)

○ 사용활성화 및 외부기관 연계 : ('25) 165백만원 → ('26) 0원(순감)

* 고용서비스통합시스템 운영 : 252백만원

계산식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재산정된 개발비 × 유지관리 요율(10~15%) + 직접경비
합계(VAT별도)	1,743,167,902원 × 13.15% + 0 = 229,226,579원
합계(VAT포함)	252,149,237원

⑧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 (2025 계획) 862 → (2026 계획) 862백만원, 전년동

- (요구)

■ 고용전산망 취약점 분석·평가비

* 고용행정통합포털, 청년일경험, 임금직업포털 등 정보시스템 자산 증가에 따른 취약점 진단 범위 확대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및 영향평가비

*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 조치 점검, 개인정보 영향평가, 가명정보처리 적정성 검증 등 과업 증가

■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운영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 계획」에 따라 개인정보 접속기록 소명 등 점검 강화

■ 보안 라이선스 사용료

* 보안관제 SIEM/SOAR 전환 관련 라이선스 증설 비용 증액

* 인터넷 및 내부망 PC 자산 증가에 따른 백신 및 패치 관리 솔루션 비용 증액

* 웹서비스 증가에 따른 SSL 보안인증서 비용 증액

■ 노후 보안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장비 리스료

* 대상시스템 증가와 리스계약 금리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액

- (산출)

■ 고용전산망 취약점 분석·평가비 : ('25) 225백만원 → ('26) 225백만원(전년동)

(1) 국경원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등 외부기관 점검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한 중장기 관점의 보완 및 추진 계획 수립 및 정보시스템 자산 증가(청년일경험, 임금직업포털 등)에 따른 취약점 진단 범위 확대

① (성과)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점수 상승(25년 76.11점 전년대비 ▲5.73점) 및 취약점 사전 조치

② (필요성 및 시급성) 취약점 진단을 위한 투입공수 증가로 인건비 상승

③ (기대효과) 신규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 사전 점검으로 침해사고 위험 감소 및 보안강화

④ (변동사항)

○ 국가고용정보망 취약점 분석·평가 : ('25) 225백만원 → ('26) 225백만원(전년동)

- (총 투입공수) '25년 7.1M/M → '26년 7.1M/M (전년동)

※ 총 투입공수 : 투입인원 X 투입기간 X 투입률

※ '25년 SW기술자 평균임금 적용

* 국가고용정보망 취약점 분석·평가 : 225백만원

산출 근거				금액(원)
구분	평균임금(원)	투입공수(MM)	투입률	
정보보안전문가 (정보보호컨설턴트)	9,857,100	7.1	100%	69,985,410
직접인건비				69,985,410
제경비(직접인건비의144%)				100,778,990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20%				34,152,880
합계(VAT별도)				204,917,280
합계(VAT포함)				225,409,008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및 영향평가비 : ('25) 192백만원 → ('26) 192백만원(전년동)

(2)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및 보호수준 평가 상승

① (필요성 및 시급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 조치 강화와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점검항목 추가에 따른 점검활동 강화, 가명정보처리 적정성 검증 증가에 따른 과업 증가

② (성과) '24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점수 상승

* A등급 (82.78점, 작년대비 ▲ 12.25점)

③ (변동사항)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강화 및 영향평가 : ('25) 192백만원 → ('26) 192백만원(전년동)

- (총 투입공수) '25년 6.16M/M → '26년 6.16M/M(전년동)

※ 총 투입공수 : 투입인원 X 투입기간 X 투입률

※ '25년 SW기술자 평균임금 적용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강화 및 영향평가 : 192백만원

산출 근거				금액(원)
구분	평균임금(원)	투입공수(MM)	투입률	
IT컨설턴트(정보보호)	9,706,020	6.16	100%	59,789,083
직접인건비 합계				59,789,083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44%)				86,096,280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29,177,073
합계(VAT별도)				175,062,436
합계(VAT포함)				192,568,679

■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운영비 : ('25) 100백만원 → ('26) 100백만원(전년동)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공시스템 지정*

① (필요성 및 시급성) 공공시스템 지정과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및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 계획」에 따라 공공시스템 10대 실행과제 추진으로 개인정보 접속기록 소명 등 점검 강화

* 공공시스템 4개 지정 : 워크넷, 국민취업지원, 고용보험, 일모아

② (성과) "개인정보 접속기록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복수 인증체계 구축 사업" 추진으로 접속기록 기능 개선

③ (변동사항)

○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운영 : ('25) 100백만원 → ('26) 100백만원(전년동)

- (총 투입공수) '25년 6.24M/M → '26년 6.18M/M(△0.06감)

※ 총 투입공수 : 투입인원 X 투입기간 X 투입률

※ '25년 SW기술자 평균임금 적용

*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운영 : 100백만원

산출 근거				금액(원)
구분	평균임금(원)	투입공수(MM)	투입률	
IT지원기술자	5,058,021	12.0	51.5%	31,258,570
직접인건비 합계				31,258,570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44%)				45,012,340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15,254,182
합계(VAT별도)				91,525,093
합계(VAT포함)				100,677,602

■ 보안 라이선스 갱신 및 수수료 : ('25) 280백만원 → ('26) 280백만원(전년동)

(4) 보안관제 SIEM/SOAR 전환 관련 라이선스 증설 및 웹서비스 증가에 따른 보안인증비용 증액

① (필요성 및 시급성) 수집·분석 데이터 증가에 따른 SIEM/SOAR 일일 처리량* 증가로 라이선스 200Gb→300Gb 증설 필요, 웹서비스 증가에 따른 보안인증 비용 필요

* SIEM/SOAR은 일일 처리량에 따른 라이선스 비용 청구(현재 200Gb/1day)

※ 29종의 보안장비 중 패킷분석시스템 및 LogSaver 2종 용량 문제로 미연동

② (기대효과) 미연동 보안장비의 연동과 24시간 무중단 사이버보안관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향상

③ (변동사항)

○ 보안라이선스 갱신 및 수수료 : ('25) 280백만원 → ('26) 280백만원(전년동)

※ 보안라이선스 갱신 및 웹서비스 증가에 따른 보안라이선스 증설

* 보안라이선스 갱신 및 수수료 : 280백만원

구분	상세	수량	단가	금액(원)
보안 라이선스	- SIEM/SOAR 라이선스(100Gb) - SSL 인증서, 백신 프로그램 - 보안시스템 서브스크립션 등	1	280,000,000	280,000,000
합계(VAT포함)				280,000,000

■ 노후 보안장비 교체 및 정보보호 장비 리스료 : ('25) 65백만원 → ('26) 65백만원(전년동)

(5) 기술지원 서비스 종료(EoS) 및 장비 노후화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 교체

① (필요성) SSL가시화 장비 2식(2018년 도입), 웹방화벽 2식(2018년 도입) 등 노후장비 교체 및 망연계 솔루션 DB 성능 저하에 따른 서버 증설 필요

② (기대효과) 노후장비의 성능 저하, 부품 수급 불가 등의 문제 해소를 통한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 고용전산망 보안환경을 고려한 신규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③ (변동사항)

○ 노후 보안장비 교체 및 정보보호강화 : ('25) 65백만원 → ('26) 65백만원(전년동)

- 리스료 : 최초 1분기 납입금이며, 조달 수수료(1.008)와 금리(연 5.5%) 적용

* 노후 보안장비 교체 및 정보보호강화

상세	수량	단가	금액(원)
노후 장비 교체(침입차단시스템, 망연계시스템 등)	2식	300,000,000	65,000,000 (1분기 리스료)
정보보안 장비 구입	3식	700,000,000	
계(VAT 포함)			1,000,000,000

⑨ 고용전산망 콘텐츠 및 UI·UX 기획·디자인

: (2025 계획) 980 → (2026 계획) 980백만원, 전년동

- (요구)

■ 고용전산망 콘텐츠 및 UI·UX 기획·디자인

-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의 단계적 적용 등 업무 증가
 - * '25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및 '25년 SW기술자 평균임금 기준단가 적용에 따른 운영비 상승분 반영
- (산출)

■ 고용전산망 콘텐츠 및 UI·UX 기획·디자인비 : ('25) 980백만원 → ('26) 980백만원(전년동)

(1) 고용전산망 콘텐츠 기획 및 제작, UX 리서치, UI/UX 기획 및 디자인

- ① (필요성)
 - 행정안전부 범정부 UI/UX 디자인시스템(KRDS, Korea Design System) 가이드라인의 단계적 적용을 통해 웹/앱의 효율성 강화 필요
 - 웹표준 및 웹접근성 강화 및 사용자 중심 웹/앱 서비스 구현
 - ② (기대효과)
 - 범정부 디지털 서비스 디자인의 편의성 향상 및 일관성 확보
 - 고객과 함께하는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고객만족도 향상
 - ③ (변동사항)
 - 고용전산망 콘텐츠 및 UI·UX 기획·디자인 : ('25) 980백만원 → ('26) 980백만원(전년동)
 - (총 투입공수) '25년 94.68M/M → '26년 87.74M/M(△6.94M/M)
 - ※ 총 투입공수 : 투입인원 X 투입기간 X 투입률
 - ※ 2024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2025년 적용분, 2024.12.27. 공표)
 - ※ 2025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 * 고용전산망 콘텐츠 및 UI·UX 기획·디자인 : 980백만원

(단위 : 원)

업무 구분	직무	㉠평균임금 (Month)	㉡투입 기간(M)	㉢투입률	직접인건비 (㉠x㉡x㉢)
고용정보(고용24) 콘텐츠 및 디자인	UI/UX 기획(UX 중급)	4,518,578	12	100%	54,222,936
	UI/UX 기획(UX 초급)	3,628,255	12	100%	43,539,060
	UI/UX 디자인(UX 중급)	4,518,578	24	100%	108,445,872
	UI/UX 디자인(UX 초급)	3,628,255	12	100%	43,539,060
	UI/UX 개발(웹, 앱 퍼블리싱)	3,628,255	12	31.15%	13,562,417
	콘텐츠 기획(연구 보조)	3,605,670	12	100%	43,268,040
	콘텐츠 디자인(시각 중급)	3,926,275	12	100%	47,115,300
총 투입공수		투입기간 x 투입률		87.738	
직접인건비 합계		Σ(직무별 투입공수 x 평균임금)			353,692,685
제경비	110%	디자인사업 직접인건비의 110%			389,061,954
기술료	20%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148,550,928
직접경비		-			
운영비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891,305,567
총액(부가세포함)		부가가치세 10%			980,436,123

⑩ 취업정보 발굴·수집

: (2025 계획) 456 → (2026 계획) 456백만원, 전년동

- (요구)

■ 취업정보 발굴·수집 용역비

- * 온라인에 산재 되어 우수 중소·중견기업, 강소기업, 공기업·공공기관, 대기업 등 기업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자리 정보, 기업정보, 취업 관련 정보를 적시 발굴·수집·활용
- * 직무 정보 안내 및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직무별 기업 특화 자기소개서 가이드 제작 및 게시
- * 공채 정보와 연관된 기업정보 현행화 및 신규 기업정보 등록
- * '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에 따른 운영비 상승분 반영

- (산출)

■ 취업정보 발굴·수집 용역비 : ('25) 456백만원 → ('26) 456백만원(전년동)

(1) 취업정보 발굴·수집

- ① (필요성 및 시급성) 채용기업의 홈페이지에서만 게시되는 대기업,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공채 정보를 수집·등록하고 기업정보, 직무별 자기소개서 등 취업지원에 활용되는 최신 콘텐츠 제공
 - * '25년 공채채용정보 10,337건 등록, 기업정보 1,750건 등록·현행화
- ② (기대효과) 청년 및 구직자의 선호도가 높은 최신의 공채 일자리 및 취업트렌드 정보들을 생성하여 전체 구직자에게 폭 넓고 시의성 높은 정보 제공
- ③ (변동사항)

- 취업정보 발굴·수집 : ('25) 456백만원 → ('26) 456백만원(전년동)
- (총 투입공수) '25년 24.072M/M → '26년 46.2M/M(+22.128M/M)
- ※ 총 투입공수 : 투입인원 X 투입기간 X 투입률
- ※ '25년 SW기술자 평균임금 적용

* 취업정보 발굴·수집 : 456백만원

산출 근거				금액(원)
구분	평균임금	투입공수(MM)	투입률	
취업관련 정보 수집·관리	직무별 평균임금	46.2	100%	141,654,868
직접인건비 합계				141,654,868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44%)				203,983,009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69,127,575
합계(VAT별도)				414,765,452
합계(VAT포함)				456,241,998

⑪ 국가사이버 안전관리

: (2025 계획) 1,515 → (2026 계획) 1,515백만원, 전년동

- (요구)

■ 고용전산망 보안관제센터 운영비

- * 워크넷·고용보험·HRD-Net·EPS 등 고용전산망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부터 근무이력, 지원금 수급이력 등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어,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 침해에 대한 전문보안인력 상주 관리 필요

- (산출)

■ 고용전산망 보안관제센터 운영비 : ('25) 1,515백만원 → ('26) 1,515백만원(전년동)

(1) 보안관제센터 운영

① (성과)

- 보안 위협 평균 대응 시간 단축('24년 43분 06초 → '25년 24분 46초로 18분 20초 단축)
- 보안장비 탐지 규칙 개선('25년 총 805건(추가 626건, 변경 171건, 삭제 8건))

② (기대효과)

- 보안 위협 대응 시간의 감소에 따른 침해사고에 대한 실시간 대응력 향상
- 실제 운영 환경에 부합하는 탐지규칙을 적용하여 오탐·미탐 최소화 및 대응 효율성 향상

③ (변동사항)

○ 고용전산망 보안관제센터 운영 : ('25) 1,515백만원 → ('26) 1,515백만원(전년동)

- 3년간 매년 동일 금액 계약(2024.2.7.~2026.12.31.) 체결

* 고용전산망 보안관제센터 운영 : 1,515백만원

(단위 : 원)

구분	순환근무조투입공수 (M/H)	관리자(PM) 투입공수 (M/H)
직접인건비 합계	360,996,800	109,493,760
직접인건비 총합계		470,490,560
제경비(직접인건비의144%)		677,506,406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20%		229,599,393
부가가치세(10%)		137,759,636
합 계 (부가세 포함)		1,515,355,995

⑫ 고용전산망 운영지원

: (2025 계획) 24,575 → (2026 계획) 21,921백만원, 2,654백만원 감액, △10.8%

- (요구)

■ 도입장비 임차료 및 유지보수료

- * HW/SW 임차료 및 도입장비 유지보수료, SW 사용권 등 시스템 운영비 감액 반영

■ 회선사용료 및 통신요금

■ 본인인증 및 정보알림 사용료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국민연금공단) 분담금

■ 감리용역비, 조달수수료 등 운영비

■ 고용전산망 노후장비 교체 및 장애시스템 보강

- *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전성 강화를 위한 2026년 예산투자 우선대상 알림 및 협조요청'(행정안전부 디지털기반안전과-1166, '25.4.14)에 따라 1등급 정보시스템인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의 노후장비 교체, 전산장비 이중화 등 예산 요구

- (산출)

■ 장비 임차료 : ('25) 1,525백만원 → ('26) 733백만원(△792백만원)

(1) 장비 임차

- ① (필요성 및 시급성) 장비 노후화 및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주기적으로 장비를 최신화하고 최신 장비 도입으로 행정 처리 속도와 정확성 향상에 필요
 - ② (기대효과) 최신 장비 도입으로 인한 국가고용전산망의 안정적 지원 등
 - ③ (변동사항)
 - 장비 임차료: ('25) 1,525백만원 → ('26) 733백만원(△792백만원)
 - ※ '20년 도입 장비 리스계약 만기에 따른 감액
- * 장비 임차료 : 733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임차료	2,443,291,755	1,524,804,299	733,457,332
합 계	2,443,291,755	1,524,804,299	733,457,332

■ 시스템 유지보수료 : ('25) 11,688백만원 → ('26) 11,606백만원(△82백만원)

(2) 시스템 및 라이선스 유지관리

- ① (필요성 및 시급성) HW의 권장 유지보수 요율인 6~8% 중 7%로 적용, 상용SW 권장 유지보수 요율인 12~20% 중 12%로 적용, 고용전산망 시스템 및 업무수행 관련 라이선스 갱신 비용 반영 필요
 - ② (기대효과) 장애 발생 대비 사전점검 및 기술지원, 안정적인 부품 수급, 업무 연속성 확보
 - ③ (변동사항)
 - 시스템 유지보수료 : ('25) 11,379백만원 → ('26) 11,379백만원(전년동)
 - 라이선스 구매비 : ('25) 309백만원 → ('26) 227백만원(△82백만원)
- * 시스템 유지보수료 : 11,379백만원

구분	도입비	요율	요율 적용 예산(원)
HW	70,705,000,000	7%	4,949,000,000
SW	53,589,000,000	12%	6,430,000,000
계	124,294,000,000		11,379,000,000

* 라이선스 구매비 : 227백만원

구 분		금액(원)
고용전산망 디자인 업무 수행 관련 SW 라이선스	·Adobe 등 디자인 업무 관련 라이선스 갱신비 지원	4,000,000
시스템 SW	·OS, DB, WAS, WEB VMware 등	73,000,000
빅데이터 시각화	·Tableau (Viewer-License : 94, creator-License : 20)	60,000,000
클라우드 컴퓨팅 공개 SW 사용권	·클라우드 VDI윈도우	68,000,000
원격 PC제어 SW(프로그램)	·원격 PC제어 프로그램 라이선스(30개)	12,000,000
VDI USER SW(프로그램)	·VDI USER 라이선스(10 USER)	10,000,000
합 계		227,000,000

■ 회선사용료 및 통신요금 : ('25) 1,650백만원 → ('26) 1,650백만원(전년동)

(3) 회선사용 및 통신요금

- ① (필요성 및 시급성)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업무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통신망 확보 필요
 - ② (기대효과) 안정적인 회선 및 통신을 통해 공공서비스 및 민원 응대 품질 향상 및 업무 연속성 확보
 - ③ (변동사항)
 - 공공요금 및 제세(회선사용료 및 전화요금) : ('25) 1,590백만원 → ('26) 1,590백만원(전년동)
 - 보험료 : ('25) 60백만원 → ('26) 60백만원(전년동)
- * 공공요금 및 제세 : 1,590백만원

전용회선명	공급단가	수량	사용 월	금액
고용노동부 MSPP 300Mbps (70km)	8,500,000	2	12	204,000,000
재해복구센터MSPP 300Mbps (125km)	60,750,000	1	12	729,000,000
공공인터넷 10Mbps	720,000	1	12	8,640,000
공공인터넷 10Gbps	15,800,000	2	12	379,200,000
일모아시스템 12개 기관 전용회선	6,950,000	1	12	83,400,000
유선전화	15,500,000	1	12	186,000,000
합계				1,590,240,000

* 보험료 : 60백만원

※ 17,226,250,000원(도입가격) × 0.0035(보험요율) = 60,291,875원

■ 본인인증 및 정보알림 사용료 : ('25) 410백만원 → ('26) 410백만원(전년동)

(4) 본인인증 및 정보알림 요금

- ① (필요성)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등 온라인으로 민원 신청 시 처리 단계별(신청, 처리중, 보완, 처리완료 등)로 알림서비스 제공 필수
- ② (기대효과) 민원신청 단계별 알림서비스 원활한 운영
- ③ (변동사항) 고용정책 지원 인원 확대에 의해 온라인 민원 신청도 증가 예상
* 구직급여수급자(예상) : (근로자) 160만명→162만명 (+2만명)
육아휴직급여(지원 예상인원): ('25년) 165천명 → ('26년) 170천명 (+5천명) 등

■ 4대보험연계센터(국민연금공단) 분담금 : ('25) 304백만원 → ('26) 301백만원(△3백만원)

(5) 4대보험연계센터 분담금

- ① (필요성 및 시급성) 4대보험 연계센터의 운영 및 지속성 확보, 법·제도적 기반에 따른 의무이행
- ② (기대효과) 분담금을 통한 재원확보로 연계 시스템이 중단 없이 운영되어 국민 서비스 품질 유지
- ③ (변동사항)
○ 4대보험연계센터 분담금 : ('25) 304백만원 → ('26) 301백만원(△3백만원)
※ 26년도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예산 요구안 변동에 따른 금액 산정('25.5.2)

■ 기타 운영비 : ('25) 2,436백만원 → ('26) 2,436백만원(전년동)

(6) 고용전산망관리 운영비

- ① (필요성 및 시급성) 고용전산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증액분 반영
- ② (기대효과) 고용전산망의 안정적 운영 및 업무 연속성 확보
- ③ (변동사항)
○ 재해복구센터 관리비 : ('25) 160백만원 → ('26) 160백만원(전년동)
○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 등 동영상 서비스 이용료 : ('25) 60백만원 → ('26) 60백만원(전년동)
○ 마이데이터 연계 등 부가서비스 이용료 : ('25) 75백만원 → ('26) 75백만원(전년동)
○ 정보화 사업 심의, 전문가 회의 및 간담회 운영 : ('25) 40백만원 → ('26) 40백만원(전년동)
○ 감리용역비 및 조달청 수수료 등 : ('25) 458백만원 → ('26) 498백만원(+40백만원)
- (대상 사업)
* 워크넷운영 개발SW유지관리(3,591백만원), 고용보험시스템운영 개발SW유지관리비(1,491백만원), 부정수급시스템운영 개발SW유지관리비(550백만원),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 개편에 따른 시스템 개선 SW개발비(404백만원), 직업능력개발전산망운영 개발SW유지관리비(1,845백만원), 일학습병행시스템운영 개발SW유지관리비(591백만원),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운영 개발SW유지관리비(1,133백만원), 일모아시스템운영 개발SW유지관리비(653백만원), 고용복지통합 정보망운영 일반용역비(268백만원), 클라우드전환 및 고용24통합구축 개발SW유지관리비(1,098백만원), 고용서비스품질관리정보망운영 개발SW유지관리비(252백만원), 기타운영비(395백만원)
○ 국내·외 출장비 : ('25) 305백만원 → ('26) 305백만원(전년동)
○ 특근매식비 : ('25) 42백만원 → ('26) 54백만원(+12백만원)
※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근거하여 특근매식비 지급단가 7,000원 → 9,000원으로 인상 적용
○ 전산소모품 구매 등 일반 운영성 경비 : ('25) 300백만원 → ('26) 300백만원(전년동)
○ 고용전산망 이용 후기 공모전, 이벤트, 홍보 등 : ('25) 400백만원 → ('26) 400백만원(전년동)
○ 고용전산망 민원처리시스템 유지관리 : ('25) 180백만원 → ('26) 200백만원(+20백만원)
※ 25년 SW기술자 평균임금 적용에 따른 증액
○ 고용전산망 실시간 채팅 상담 서비스 도입 : ('25) 170백만원 → ('26) 0원(순감)

- EA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25) 151백만원 → ('26) 195백만원(+44백만원)
※ 25년 SW기술자 평균임금 적용에 따른 증액
- 고용전산망 웹사이트 품질관리 점검 : ('25) 95백만원 → ('26) 96백만원(+1백만원)
※ 25년 SW기술자 평균임금 적용에 따른 증액
- 워크넷 화상 서비스 이용료 : 53백만원 (순증)
↳ **이용량에 따라 과금하는 성격 고려하여 「④워크넷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㉔고용전산망 운영지원」으로 이동함**

■ **고용전산망 노후장비 교체 및 핵심정보시스템 보강 : ('25) 6,562백만원 → ('26) 4,785백만원(△1,777백만원)**

(7) 노후장비 교체 및 핵심정보시스템 보강 사업

- ① (필요성 및 시급성)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 강화를 위한 원칙」(행안부)에 따라 노후장비 교체, 24시간관제, 표준운영절차 시스템화 등 예산 요구
- ② (기대효과) 1·2등급 핵심정보시스템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안부 기준 충족
- ③ 노후장비교체 및 행정전산망개선 대상 목록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상세구분	주요내용	소요예산	세부내역
노후장비 교체	스토리지	워크넷	4,041	· VSP 5600 205TB 이상 · 이중화 및 DR포함
행정전산망 개선	표준운영절차 시스템화	ITSM 업그레이드	242	· POLESTAR ITG v8, IT Service Management 업그레이드
핵심정보시스템 자원 보강	고용24 스토리 증설	스토리지 증설 (운영, DR)	502	· 스토리지 증설(63TB)
합계			4,785	

④ (변동사항)

- 노후장비교체 : ('25) 6,562백만원 → ('26) 4,785백만원(△1,777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9,230	○ 사업출연금(350-02) : 39,230백만원 가. 워크넷 운영 및 유지관리 (3,381백만원) · 워크넷 운영 (3,328백만원) 개발SW 유지관리 : 0.13625요일×22,205백만원×1.1부가세 = 3,328백만원 · 화상면접서비스 운영 (53백만원) 화상회의솔루션이용료 : 1회×53백만원 = 53백만원 나. 고용보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995백만원) · 고용보험시스템 운영 (1,091백만원) 개발SW 유지관리 : 0.1435요일×6,913백만원×1.1부가세 = 1,091백만원 · 부정수급시스템 운영 (904백만원) 개발SW 유지관리 : 0.1305요일×3,778백만원×1.1부가세 = 542백만원 일반용역비 : 14.175MM×23.22백만원×1.1부가세 = 362백만원 다. 직업능력개발전산망 운영 및 유지관리 (2,436백만원) · 직업능력개발전산망 운영 (1,845백만원) 개발SW 유지관리 : 0.1435요일×11,730백만원×1.1부가세 = 1,845백만원 · 일학습병행시스템 운영 (591백만원) 개발SW 유지관리 : 0.1435요일×3,760백만원×1.1부가세 = 591백만원 라.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898백만원)	39,470	○ 사업출연금(350-02) : 39,470백만원 가. 워크넷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3,591백만원) · 워크넷 운영 (3,591백만원) 개발SW 유지관리 : 0.141요일×23,153백만원×1.1부가세 = 3,591백만원 나. 고용보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3,305백만원) · 고용보험시스템 운영 (1,491백만원) 개발SW 유지관리 : 0.14요일×9,681백만원×1.1부가세 = 1,491백만원 · 부정수급시스템 운영 (912백만원) 개발SW 유지관리 : 0.1355요일×3,704.7백만원×1.1부가세 = 550백만원 일반용역비 : 14.52MM×22.695백만원×1.1부가세 = 362백만원 ·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 전환에 따른 시스템 개선 (404백만원) SW개발비 : 1회×367.94백만원×1.1부가세 = 404백만원 · 고용보험시스템 BPR/ISMP (498백만원) 컨설팅비 : 1회×498백만원 = 498백만원 다. 직업능력개발정보망 운영 및 유지관리 (2,436백만원) · 직업능력개발전산망 운영 (1,845백만원) 개발SW 유지관리 : 0.1435요일×11,730백만원×1.1부가세 = 1,845백만원 · 일학습병행시스템 운영 (591백만원) 개발SW 유지관리 : 0.1435요일×3,760백만원×1.1부가세 = 591백만원 라.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133백만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운영 (898백만원) 개발SW 유지관리 : 0.1345요일×6,070백만원×1.1부가세 = 898백만원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정보시스템 운영 (1,133백만원) 개발SW 유지관리 : 0.134요일×7,685.7백만원×1.1부가세 = 1,133백만원
	마. 일모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480백만원) - 일모아시스템 운영 (527백만원) 개발SW 유지관리 : 0.135요일×3,551백만원×1.1부가세 = 527백만원 - 일모아시스템 고도화 (953백만원) SW개발비 : 866.4백만원×1.1부가세 = 953백만원		마. 일모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653백만원) - 일모아시스템 운영 (653백만원) 개발SW 유지관리 : 0.135요일×4,396백만원×1.1부가세 = 653백만원 - 일모아시스템 개선 사업(1,000백만원) SW개발비 : 363.6백만원×1.1부가세 = 400백만원 HW/SW구매비 : 1회×600백만 = 600백만원
	바. 고용복지통합정보망 운영 및 유지관리 (400백만원) 고용복지통합정보망 운영 (400백만원) 개발SW 유지관리 : 0.135요일×2,693.7백만원×1.1부가세 = 400백만원		바. 고용복지통합정보망 운영 및 유지관리 (1,366백만원) - 고용복지통합정보망 운영 (268백만원) 개발SW 유지관리 : 12MMx20.3백만원×1.1부가세 = 268백만원 - 고용복지통합정보망 클라우드 전환 구축비 (1,098백만원) SW개발비 : 1회×550백만원×1.1부가세 = 605백만원 일반용역비 : 1.5MMx29.697백만원×1.1부가세 = 49백만원 HW/SW구매비 : 1회×444백만 = 444백만원
	사. 고용서비스품질관리정보망 운영 및 유지관리 (252백만원) 고용서비스품질관리정보망 운영 (252백만원) 개발SW 유지관리 : 0.11요일×719백만원×1.1부가세 = 87백만원 일반용역비 : 6.95MMx21.58백만원×1.1부가세 = 165백만원		사. 고용서비스통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52백만원) 고용서비스품질관리정보망 운영 (252백만원) 개발SW 유지관리 : 0.1315요일×1,743.1백만원×1.1부가세 = 252백만원
	아.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862백만원) - 국가고용전산망 취약점 분석·평가 (225백만원) 컨설팅비 : 1회×225백만원 = 225백만원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강화 및 영향평가 (192백만원) 컨설팅비 : 1회×192백만원 = 192백만원 - 보안라이센스 갱신 및 수수료 (280백만원) 일반수용비 : 1회×280백만원 = 280백만원 - 개인정보조회로그시스템 운영 (100백만원) 일반용역비 : 5.9MMx15.41백만원×1.1부가세 = 100백만원 - 노후 보안장비 교체 및 정보보호강화 (65백만원) SW 구매비(임차료) : 1회×65백만원 = 65백만원		아.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862백만원) - 국가고용전산망 취약점 분석·평가 (225백만원) 컨설팅비 : 1회×225백만원 = 225백만원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강화 및 영향평가 (192백만원) 컨설팅비 : 1회×192백만원 = 192백만원 - 보안라이센스 갱신 및 수수료 (280백만원) 일반수용비 : 1회×280백만원 = 280백만원 - 개인정보조회로그시스템 운영 (100백만원) 일반용역비 : 5.9MMx15.41백만원×1.1부가세 = 100백만원 - 노후 보안장비 교체 및 정보보호강화 (65백만원) SW 구매비(임차료) : 1회×65백만원 = 65백만원
	자. 고용정보 콘텐츠 및 디자인 관리 (980백만원) 고용정보 콘텐츠 및 디자인 관리 (980백만원) 일반용역비 : 94.68MMx9.41백만원×1.1부가세 = 980백만원		자. 고용전산망 콘텐츠 및 UI-UX 기획·디자인 (980백만원) 고용전산망 콘텐츠 및 UI-UX 기획·디자인 (980백만원) 일반용역비 : 87.74MMx10.15백만원×1.1부가세 = 980백만원
	차. 취업정보 발굴 지원 (456백만원) 취업정보 발굴 지원 (456백만원) 일반용역비 : 24.072MMx17.22백만원×1.1부가세 = 456백만원		차. 취업정보 발굴 수집 (456백만원) 취업정보 발굴·수집 (456백만원) 일반용역비 : 46.2MMx8.98백만원×1.1부가세 = 456백만원
	카. 국가사이버 안전관리 (1,515백만원) 고용전산망 보안관제센터 운영 (1,515백만원) 일반용역비 : 12개월×126.25백만원 = 1,515백만원		카. 국가사이버 안전관리 (1,515백만원) 고용전산망 보안관제센터 운영 (1,515백만원) 일반용역비 : 12개월×126.25백만원 = 1,515백만원
	타. 고용전산망 운영지원 (24,575백만원) - 도입장비임차료 (1,525백만원) 임차료 : 4회×381.3백만원 = 1,525백만원 - 시스템유지관리 (11,688백만원) 상용SW유지보수비 : 0.12요일×53,585백만원 = 6,430백만원 HW유지보수비 : 0.07요일×70,705백만원 = 4,949백만원 일반수용비 : 1회×309백만원 = 309백만원 - 회선사용료 (1,650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 12개월×132.5백만원 = 1,590백만원 보험료 : 0.0035요일×17,226백만원 = 60백만원 - 본인인증 및 정보알림 수수료 (410백만원) 일반수용비 : 12개월×34.2백만원 = 410백만원		타. 고용전산망 운영지원 (21,921백만원) - 도입장비임차료 (733백만원) 임차료 : 4회×183.3백만원 = 733백만원 - 시스템유지관리 (11,606백만원) 상용SW유지보수비 : 0.12요일×53,585백만원 = 6,430백만원 HW유지보수비 : 0.07요일×70,705백만원 = 4,949백만원 일반수용비 : 1회×227백만원 = 227백만원 - 회선사용료 (1,650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 12개월×132.5백만원 = 1,590백만원 보험료 : 0.0035요일×17,226백만원 = 60백만원 - 본인인증 및 정보알림 수수료 (410백만원) 일반수용비 : 12개월×34.2백만원 = 410백만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대보험연계센터(국민연금공단) 분담금 (304백만원) 운영 및 차세대구축비 : 1회x304백만원 = 304백만원 - 기타 운영비 (2,436백만원) 일반수용비 : 12개월x203백만원 = 2,436백만원 - 국가고용전산망 노후장비 및 장애시스템 보강 사업 (6,562백만원) 국가고용전산망 노후장비 및 장애시스템 보강 : 1회x6,562백만원 = 6,562백만원			4대보험연계센터(국민연금공단) 분담금 (301백만원) 운영 및 차세대구축비 : 1회x301백만원 = 301백만원 - 기타 운영비 (2,436백만원) 일반수용비 : 12개월x203백만원 = 2,436백만원 - 국가고용전산망 노후장비 및 장애시스템 보강 사업 (4,785백만원) 국가고용전산망 노후장비 및 장애시스템 보강 : 1회x4,785백만원 = 4,78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5~64세 고용률(%)	목표	66.4	68.0	69.0	69.5	70.0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68.5	69.2	69.5	-	-			
	달성도	103.2	101.8	100.7	-	-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목표	-	-	-	-	48.5	최근 5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29세 경제활동 인구 수 / 만15~29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	-	-	-	-			
	달성도	-	-	-	-	-			
상용직 근로자비율(%)	목표	69.8	71.4	-	-	-	-	상용근로자 수 / 임금 근로자 수 *100	통계청
	실적	73.0	74.1	-	-	-			
	달성도	104.5	103.8	-	-	-			
청년고용률(%)	목표	42.5	43.8	-	-	-	-	(청년취업자 / 청년층 인구)*100	통계청
	실적	46.6	46.5	-	-	-			
	달성도	109.6	106.2	-	-	-			
청년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고용(공제) 유지율(%)	목표	63.1	68.0	-	-	-	-	(t-2)년 청년공제 가입자 중 2년 이상 유지자수 (만7자 포함) /(t-2)년 청년공제 가 입인원(철회·취소 제외)*100, t당해연도	청년층고용보험피 보험자 전수조사/ 중소벤처 기업진흥 공단
	실적	69.7	64.6	-	-	-			
	달성도	110.4	95.0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AI, 데이터분석 기반의 맞춤형 직업상담 지원서비스 잡케어(Jab Care) 서비스 제공 - 고용장려금 간소화(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확인서 등 총 5종의 서류는 데이터 연계로 자동 제출) 서비스
2023	- 잡케어 대국민 시범운영 오픈 -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 관련 시스템 개발 - 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전산망 구축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자동발급 서비스 도입, 청년 및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 도입, 취약계층 고용위기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련 시스템을 신속하게 개선 등 고용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 지원 -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국가자격·훈련 디지털배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혁신적인 디지털 고용서비스 제공 - 고용보험시스템, 국민취업지원시스템,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등 온라인 민원 이용 행태 분석을 통한 민원신청 편의성 제고 - 디지털 부정수급관리 기능 강화를 통한 국가 재정·행정 효율화 - 실업급여 내부, 고용안정 내부 및 외부 서비스, HRD-Net 대민포털 서비스 고용24 이관
2024	-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자체 365일 24시간 고용전산망 보안관제센터 운영 - 워크넷 고용형태공시제 2차 인증 로그인 적용 -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 시스템 구축 - HRD-Net 내일배움카드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신규 개발 - 국민취업지원 내부, 외국인 내부 서비스 고용24 이관
2025	- 차세대 일모아시스템 서비스 개시 - 고용보험 육아지원정책 개정 관련 반영 - 고용24 행정업무망 싱글뷰(Single view) 구인목록, 인재목록 개발 - K-디지털 트레이닝 심사·평가 관리시스템 구축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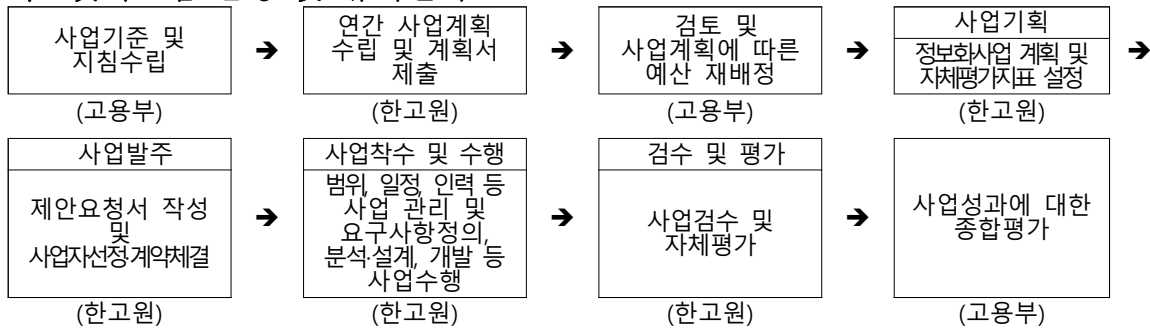
-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국가고용정보망의 활용률 제고 및 품질 개선
- 법/제도 신설·변경 및 시스템 개선요구에 따른 기존 행정지원서비스 시스템 기능 강화 사업으로 대민서비스 제고 및 노동행정서비스의 안정적인 지원
- 고용노동부 및 고용센터 등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 반영과 기능 개선
- **(고용률 제고)** 정부 일자리사업 관련 채용정보, 정부·공공기관·강소기업 등 구인정보를 종합 제공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유도하여 고용률 제고
- **(미스매치 해소)** 청년층의 눈높이 상승, 안정적인 일자리 선호 현상으로 빚어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
- **(이용편의 향상)**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이용 편의 향상
- **(고객만족도 향상)**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고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
- **(수요자 측면)** 수요자 특성 기반 지능형 매칭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의 취업(채용), 직무 만족도 제고, 비대면 면접시스템 도입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취업기회 확대
- **(정책 측면)** 채용의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심사를 위한 블라인드 채용 문화 확산 및 고용서비스 역량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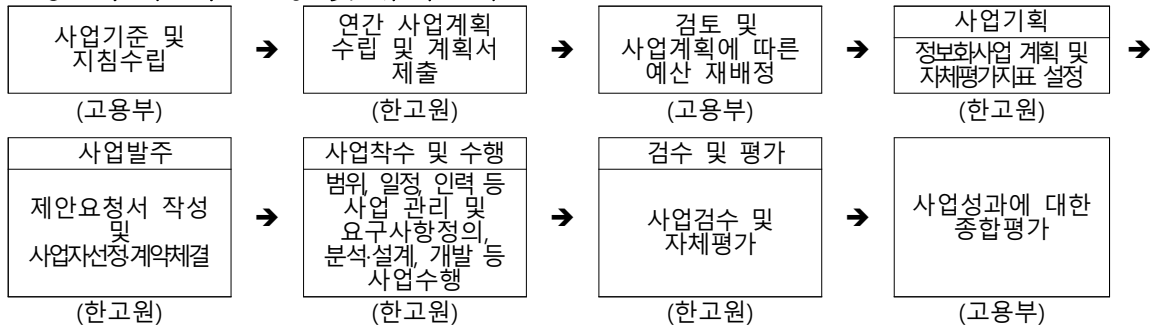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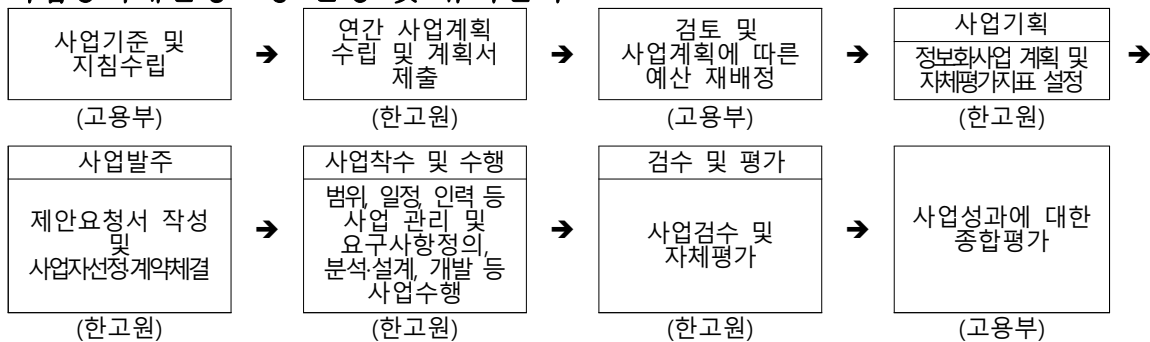
- 워크넷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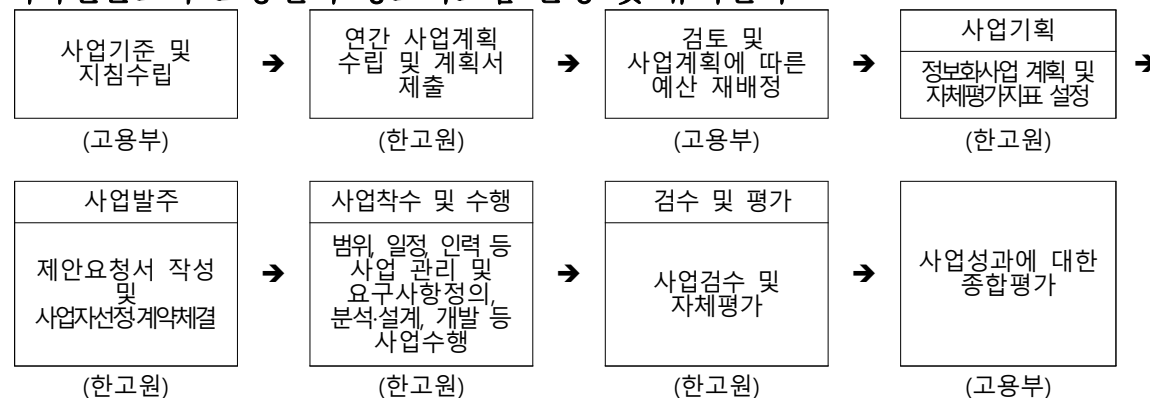
- 고용보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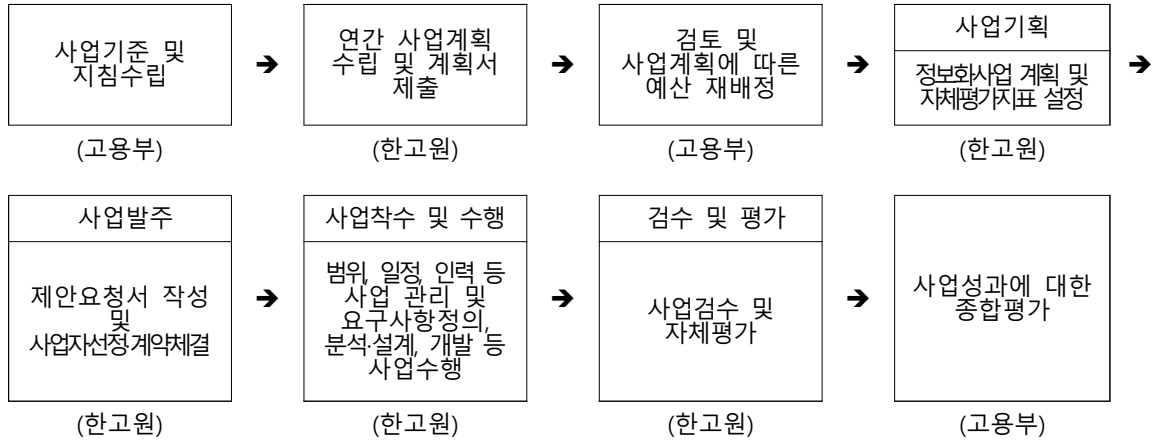
- 직업능력개발정보망 운영 및 유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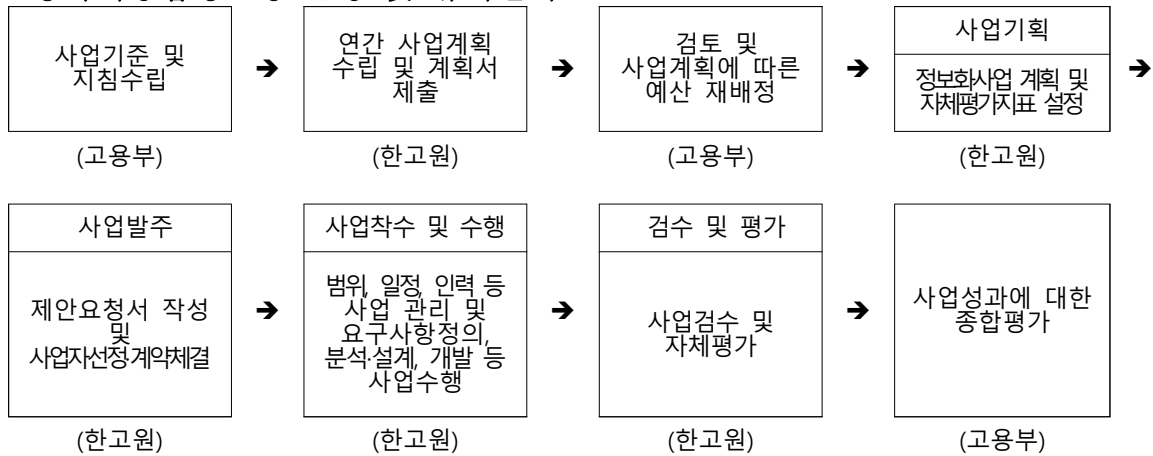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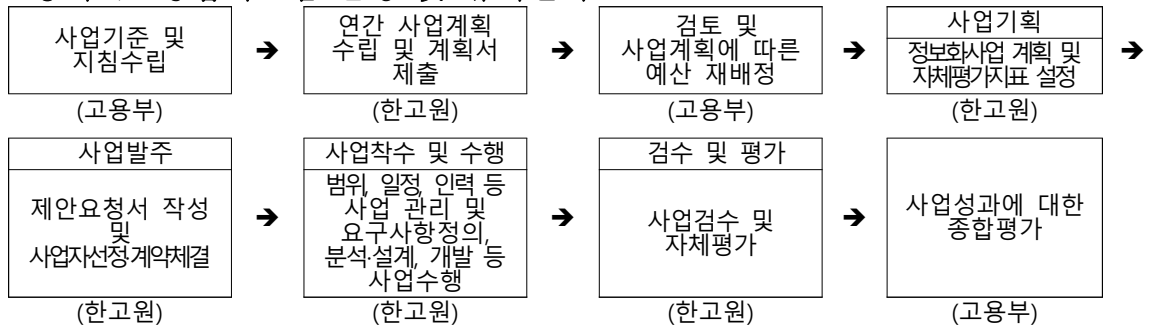
- 일모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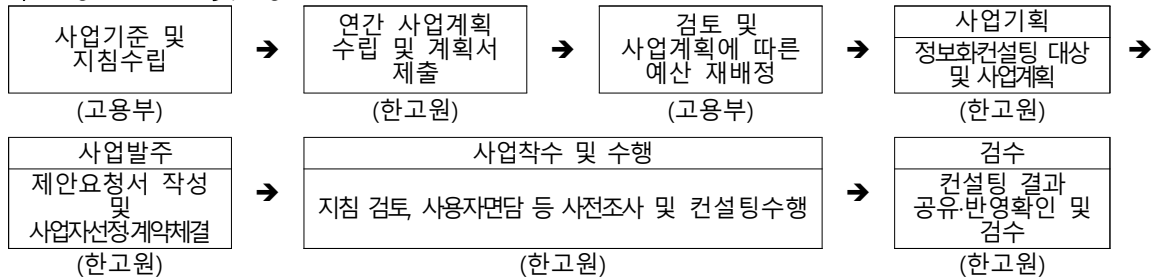
- 고용복지통합정보망 운영 및 유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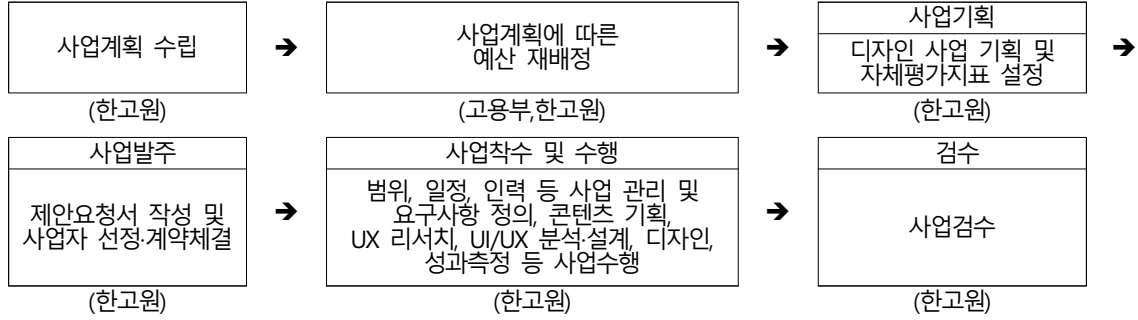
- 고용서비스통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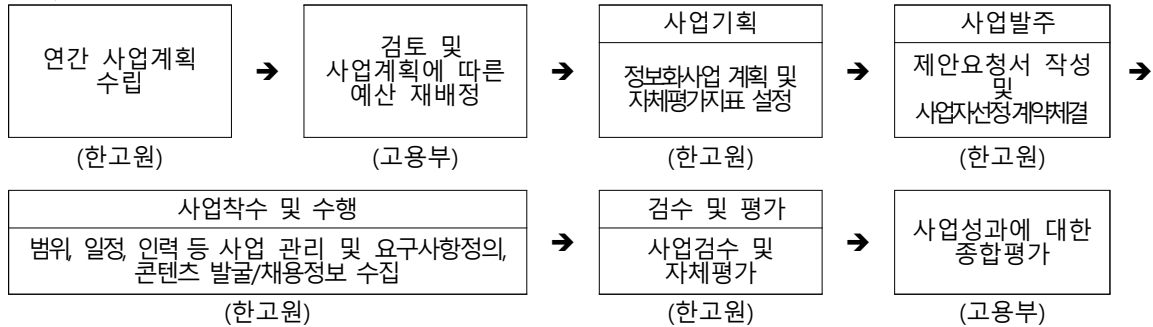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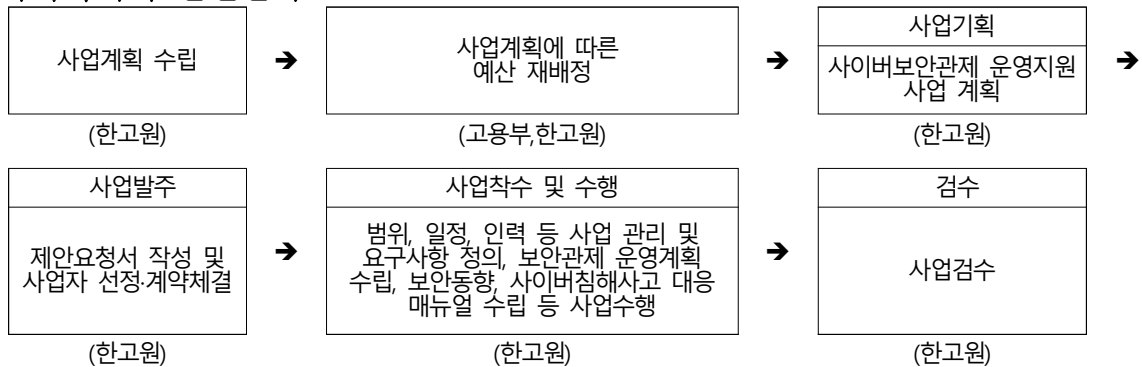
- 고용정보 콘텐츠 및 디자인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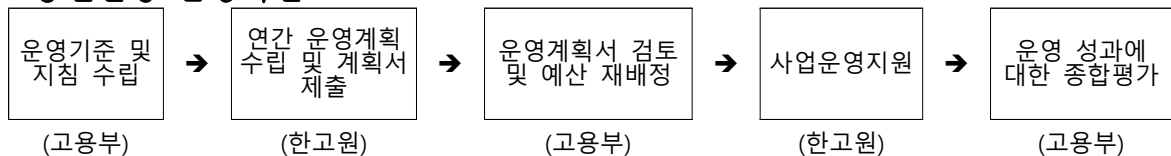
- 취업정보 발굴·수집



- 국가사이버 안전관리



- 고용전산망 운영지원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 '25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평가등급 '양호'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33,359	-	33,359	33,359	33,359	100.0	100.0	-	-
2023	31,517	-	31,517	31,517	31,517	100.0	100.0	-	-
2024	37,381	-	37,381	37,381	37,381	100.0	100.0	-	-
2025	39,230	-	39,230	39,230	39,230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6) 지역고용촉진지원금(1056-35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56	353
명칭	고용창출	지역고용촉진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지역고용 촉진지원금	실·국·과(팀)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 고용정책과
	소관부처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지역고용 촉진지원금	13,010	5,911	5,911	610	610	△5,301	△89.7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9,511	14,687	13,010	-	-	5,911	5,911	5,911	2,214	-	3,697	610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9,511	14,687	13,010	-	-	5,911	5,911	5,911	2,214	-	3,697	6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신설·증설한 사업주가 해당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한 경우 임금의 1/2(대규모기업 1/3)을 최대 1년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고용보험법 제22조(지역고용의 촉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② 추진경위

- 대통령 업무보고('08.12.24):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고용기회가 현저히 부족하거나 인력확보가 시급한 지역을 지역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지원
- 노사민정 합의문('09.2): 3-1-라. 정부는 국내외 경제 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지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을 고용촉진개발 지역으로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고용촉진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 '09.8.31. 평택시를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 고시('09.8.13~'10.8.12)
- '13.1.25. 통영시를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 고시('13.1.25~'14.1.24)
- '14.1.25. 통영시 지정기간 연장('14.1.25~'15.1.24)
- '14.8.25. 고시개정: '고용촉진특별구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명칭 변경,
- '18.4.5. 군산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18.4.5~'19.4.4)

- '18.5.4. 목포시·영암군을 묶어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18.5.4.~'19.5.3)
- '19.4.5. 군산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에 대해 지정기간 1년 연장('19.4.5~'20.4.4)
- '19.5.4. 목포시·영암군에 대해 지정기간 1년 연장('19.5.4.~'20.5.3)
- '20.3.16. 군산시, 목포시·영암군 등 7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을 '20.12.31.까지 연장
- '20.12월 군산시, 목포시·영암군 등 7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을 '21.12.31.까지 연장
- '21.12월 군산시, 목포시·영암군 등 7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을 '22.12.31.까지 연장
- '22.12월 거제시 지역에 대해 고용위기지역 신규지정('23.1.1.~'23.12.31.)
 - * 거제시를 제외한 6개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종료('22.12.31.)
- '23.12월 거제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을 '24.6.30.까지 연장
 - *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종료('24.6.30.)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9년 ~ (고용위기지역 지정시 예산 편성)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9,442	20,127	14,687	5,911	610

- 기타: '25년 12월말 기준 31개사 304명 지원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고용위기지역 소재 사업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2025 계획) 5,911백만원 → (2026 계획) 610백만원, 5,301백만원 감액

- (요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종료에 따라 잔여사업분에 대해 전년대비 감액하여 요구
- (산출) 610백만원 = (261명* × 0.30**) × 7.8백만원***
 - * 거제시의 지역고용계획 신고서 상의 채용예정인원
 - ** 거제시의 전년도 채용예정인원 대비 실채용인원 비율
 - *** 최근 3년간 지역고용촉진지원금 1인당 평균 지원단가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911	○ 보험금(320-04) : 5,911백만원	610	○ 보험금(320-04) : 610백만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가. 거제지역 외 6개 지역의 잔여지급예산액(1,339백만원) • 290명(조업시작신고서 상의 채용예정인원) × 0.57(실채용비율) × 8.1백만원(1인당 단가) = 1,339백만원 나. 거제지역 지급예산액(4,572백만원) • [227명(지역고용계획 상의 채용예정인원) × 0.48(지역고용계획의 실채용비율) + 799(조업시작신고서의 채용예정인원)명 × 0.57 (조업시작신고서의 실채용비율)] × 8.1백만원(1인당 단가) = 4,572백만원		가. 거제지역 지급예산액(610백만원) • [261명(지역고용계획 상의 채용예정인원) × 0.30(지역고용계획의 실채용비율)] × 7.8백만원(1인당 단가) = 61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5~64세 고용률(%)	목표	66.4	68.0	69.0	69.5	70.0	최근 3년간 평균 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68.5	69.2	69.5	-	-			
	달성도	103.2	101.8	100.7	-	-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목표	-	-	-	-	48.5	최근 5년간 평균 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설정	(만15~29세 경제 활동인구 수 / 만15~29세인구) *100	통계청
	실적	-	-	-	-	-			
	달성도	-	-	-	-	-			
상용직 근로자비율(%)	목표	69.8	71.4	-	-	-	-	상용근로자 수 / 임금 근로자 수 *100	통계청
	실적	73.0	74.1	-	-	-			
	달성도	104.5	103.8	-	-	-			
청년고용률(%)	목표	42.5	43.8	-	-	-	-	(청년취업자 / 청년층 인구)*100	통계청
	실적	46.6	46.5	-	-	-			
	달성도	109.6	106.2	-	-	-			
청년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고용(공제) 유지율(%)	목표	63.1	68.0	-	-	-	-	(t-2)년 청년공제 가입자 중 2년 이상 유지자수 (만기자 포함) /(t-2)년 청년공제 가입인원(철회· 취소 제외)*100, t 당해연도	청년층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수조사 /중소벤처 기업진 흥공단
	실적	69.7	64.6	-	-	-			
	달성도	110.4	95.0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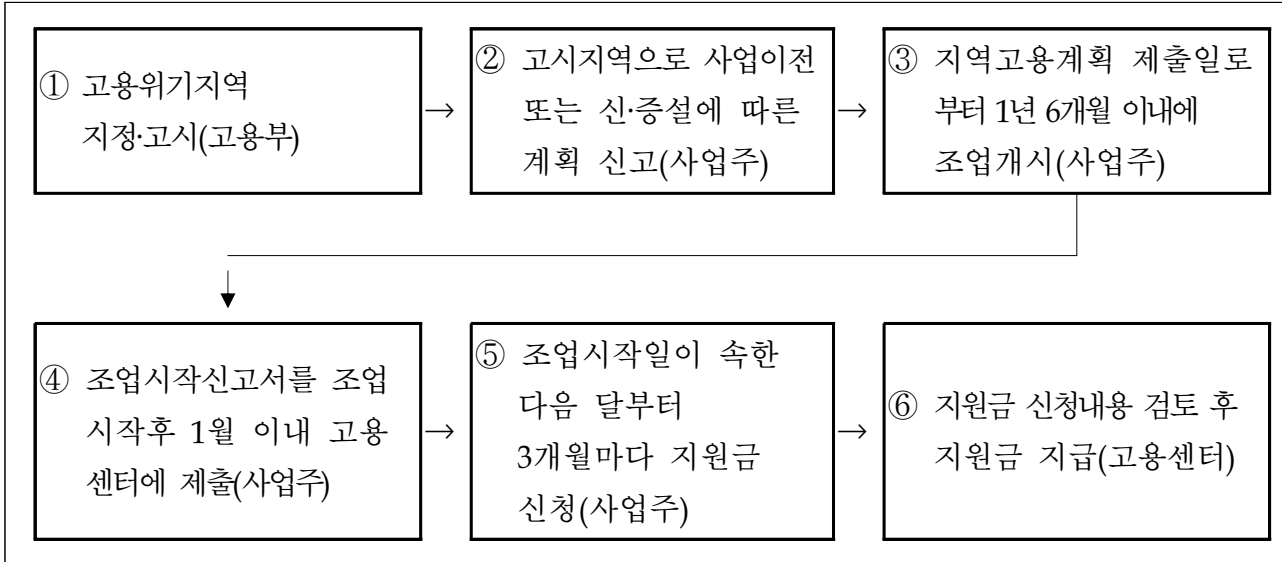
2022	310개사(2,440명) 19,288백만원 지원
2023	336개사(2,451명) 20,127백만원 지원
2024	222개사(1,784명) 13,010백만원 지원
2025	31개사(304명) 2,214백만원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용위기지역의 고용촉진 도모로 고용위기 해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재정사업 자율평가: '19년 보통, '20년 보통, '21년 보통, '22년 양호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23년 양호, '24년 양호, '25년 개선필요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4,641	14,801	19,442	19,442	19,288	99.2	99.2	-	154
2023	4,641	15,486	20,127	20,127	20,127	100.0	100.0	-	-
2024	9,511	5,176	14,687	14,687	13,010	88.6	88.6	-	1,677
2025	5,911	-	5,911	5,911	2,214	37.5	37.5	-	3,69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2021년 12월에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1년('22.1~12월) 연장됨에 따라 이에 따른 예산 소요액 증가 및 사업참여 사업장 증가 등으로 14,801백만원 증액(기금운용계획 변경)
2023	- 조선업 일감 증가 등에 따른 채용 증가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거제시) 등에 따른 집행 증가로 15,486백만원 증액(기금운용계획 변경)
2024	- 조선업 일감 증가 등에 따른 채용 증가 등에 따른 집행 증가로 5,176백만원 증액(기금운용계획 변경) - 최근 실채용인원 추이, 채용예정인원 등 현장수요를 파악하여 편성하였으나, 하반기 고용 둔화 영향으로 실제 신규 채용인원이 감소하여 불용 발생
2025	- 지역고용계획 신고사업장 중 31.0%가 조업미신고 등 조선업종 고용둔화에 따른 신규 채용저조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해당없음

사 업 명
(7)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1061-3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61	350
명칭	고용창출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소관부처	실·국·과(팀)
		청년고용정책관
	사업시행주체	청년취업지원과 직접수행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청년내일 채움공제 (고보)	53,875	9,514	9,514	872	872	△8,642	90.8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76,653	76,653	53,875	-	22,778	9,514	9,514	9,514	3,723	-	5,791	872
·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76,653	76,653	53,875	-	22,778	9,514	9,514	9,514	3,723	-	5,791	87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을 통해 제조·건설업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① 국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채용지원, 장기근속지원 및 전직지원서비스사업 등 취업지원사업
-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①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①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3.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4.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제35조의4(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리·운용한다.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3.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4.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제35조의6(공제사업의 운영)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중소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금 처리,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6.4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정부합동)」의 주요 내용으로 '중소기업 청년 취업인턴제'를 개편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결정

- ('16.7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범사업 시행

* 청년취업인턴제 예산·물량 활용하여 총 1만명 지원(인턴제 수료자 1만명)

- ('17.1월) 「청년내일채움공제」 본 사업 시행(참여경로 다양화)

- ('17.8월) 지원금 상향* (추경)

* (청년) 2년간 600만원 → 900만원

(기업) 2년간 500만원(인턴 경로) 또는 600만원(취성패 경로) → 700만원

- ('18.1월) 제도개선(참여경로 폐지)을 통해 참여권 확대

- ('18.3.15.) 「청년일자리대책(정부합동)」의 주요 내용으로 '3년형' 신설 결정

* (2년형) 청년 300 + 정부 900(일반회계) + 기업 400(고보기금) = 2년 1,600만원

(3년형) 청년 600 + 정부 1,800(일반회계) + 기업 600(고보기금) = 3년 3,000만원

- ('18.6.1.)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개시

- ('21.1.1.) 「청년내일채움공제」 2·3년형 통합 시행

* (2년형) 청년 300 + 기업 300(고보기금) + 정부 600(일반회계) = 2년 1,200만원

- ('21.9.8.) 추경을 통해 2만명 지원 확대 및 기업 자부담 일부 정상화

* 50인 이상 기업 기업자부담 지원(80%)

- ('22.1.1.) 기업 자부담 지원 축소

* (지원율) 30~49인 80%, 50~199인 50%, 200인 이상 미지원

- ('23.1.1.) 재정건전성 및 사중손실 등을 고려한 청년·기업적립금 상향 조정, 기업자부담 정상화(미지원) 등 제도 개편
 - * 청년 400 + 기업 400 + 정부 400(일반회계 200, 고보기금 200) = 2년 1,200만원
- ('24.1.1.) 신규지원 중단, 기가입자만 계속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7년~계속('24년부터 잔여 지원)
 - *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부터는 신규신청없이 기존 가입자에 대한 잔여 지원금만 지급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34,414백만원	210,693백만원	76,653백만원	9,514백만원	872백만원

- 목표(수혜)인원 : ('26년) 기가입자 0.1만명 지원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23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이 재직 중인 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25) 9,514백만원 → ('26) 872백만원, △90.8%

① 2년형 정부지원금: ('25) 8,633백만원 → ('26) 641백만원, △92.6%

- (편성) '24년 신규가입자가 없으므로 '23년까지 가입자의 잔여인원 지급시기 도래분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금>

- * 적립금액 ('20.1~) 정부지원금 450만원 중 400만원을 청년에게 적립 →
 - ('21.1~) 정부지원금 300만원 전액을 청년에게 적립(기업 순지원금 없음)
 - ('21.9~) 정부지원금 최대 300만원(기업자부담: 50인 이상기업 20%)
 - ('22.1~) 정부지원금 최대 300만원(기업 자부담: 30~49인 20%, 50~199인 50%, 200인 이상 100%)
 - ('23~) 정부지원금 최대 200만원(기업 자부담: 100%)
- * 지급주기 ('18.6~, 2년 500만원) 1월 65만원, 6월 90만원, 12·18·24월 115만원 지원 →
 - ('20.1~, 2년 450만원) 1월 55만원, 6월 80만원, 12·18·24월 105만원 지원 →
 - ('21.1~, 2년 300만원) 1월 50만원, 6·12·18월 60만원, 24월 70만원 지원 →
 - ('21.9~, 2년 300만원) 6·12·18·24월 최대 75만원 지원(자부담 비율만큼 매월 적립) →
 - ('23~, 2년 200만원) 1월 30만원, 6·12월 35만원, 18·24월 50만원 지원

- (내역) 641백만원

▲ '19~'23년 가입자 중 잔여인원 지급시기 도래분

- * ('23년, 24개월)=684명×50만원=342백만원
- * ('22년, 24개월)=179명×55.3만원=99백만원
- * ('21년, 24개월)=255명×70만원=178백만원
- * ('20년, 24개월)=20명×105만원=21백만원
- * ('19년, 24개월)=1명×115만원=1백만원

② 3년형 정부지원금: ('25) 32백만원 → ('26) 66백만원, +106.3%

- (편성) '19~'20년 3년형 가입자 중 잔여인원의 도래분 반영('21년부터 신규지원 없음)

- * ('19) 1-6월 70만원, 12월 95만원, 18-24월 120만원, 30월 125만원, 36월 150만원
- ('20) 1-6월 60만원, 12월 85만원, 18-24·30월 110만원, 36월 135만원

- (내역) 66백만원

▲ '19~'20년 가입자 중 잔여인원 지급시기 도래분

- * ('20년, 36개월)=40명×135만원=54백만원
- * ('19년, 36개월)=8명×150만원=12백만원

③ 일반용역비: ('25) 649백만원 → ('26) 29백만원, △95.5%

- (편성) '19~'22년 가입자 근속관리비
- (내역) 2년형 : 26백만원, 3년형 : 3백만원

④ 기타 경상경비: ('25) 200백만원 → ('26) 136백만원, △32.0%

- (편성) 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운영비
- (내역) 136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514	○ 기타보전금(310-04): 8,665백만원 가. 2년형 기업지원금: 8,633백만원 <기 참여자의 지급시기 도래분> · '23년도 가입자 지급시기 도래분: 2,324백만원 · '22년도 가입자 지급시기 도래분: 6,246백만원 · '18~'21년도 가입자 중 잔여인원 지급시기 도래분: 64백만원 나. 3년형 기업지원금: 32백만원 <기 참여자의 지급시기 도래분> · '18~'20년도 가입자 중 잔여인원 지급시기 도래분: 78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160백만원 ○ 임차료(210-07): 3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649백만원 가. 근속관리비: 649백만원 · 2년형: 648백만원 · 3년형: 1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20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17백만원	872	○ 기타보전금(310-04): 707백만원 가. 2년형 기업지원금: 641백만원 <기 참여자의 지급시기 도래분> · '23년도 가입자 지급시기 도래분: 342백만원 · '22년도 가입자 지급시기 도래분: 99백만원 · '19~'21년도 가입자 중 잔여인원 지급시기 도래분: 200백만원 나. 3년형 기업지원금: 66백만원 <기 참여자의 지급시기 도래분> · '18~'20년도 가입자 중 잔여인원 지급시기 도래분: 66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110백만원 ○ 임차료(210-07): 0원 ○ 일반용역비(210-14): 29백만원 가. 근속관리비: 29백만원 · 2년형: 26백만원 · 3년형: 3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14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1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5~64세 고용률(%)	목표	66.4	68.0	69.0	69.5	70.0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68.5	69.2	69.5	-	-			
	달성도	103.2	101.8	100.7	-	-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목표	-	-	-	-	48.5	최근 5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29세 경제활동 인구 수 / 만15~29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	-	-	-	-			
	달성도	-	-	-	-	-			
상용직 근로자비율(%)	목표	69.8	71.4	-	-	-	-	상용근로자 수 / 임금 근로자 수 *100	통계청
	실적	73.0	74.1	-	-	-			
	달성도	104.5	103.8	-	-	-			
청년고용률(%)	목표	42.5	43.8	-	-	-	-	(청년취업자 / 청년층 인구)*100	통계청
	실적	46.6	46.5	-	-	-			
	달성도	109.6	106.2	-	-	-			
청년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고용(공제) 유지율(%)	목표	63.1	68.0	-	-	-	-	(t-2)년 청년공제 가입자 중 2년 이상 유지자수 (만7자 포함) / (t-2)년 청년공제 가 입인원(철회·취소 제외)*100, t당해연도	청년층고용보험피 보험자 전수조사/ 중소벤처 기업진흥 공단
	실적	69.7	64.6	-	-	-			
	달성도	110.4	95.0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시행('22. 1월, 신규 7만명) ○ '22년 청년 69,489명, 기업 35,538개소 신규가입 * 누적 청년 576,859명, 기업 127,552개소 가입, 249,968명 만기공제금 수령
2023	○ '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시행('23.2월, 신규 2만명) ○ '23.7월 기준 청년 2,493명, 기업 1,965개소 신규가입 * 누적 청년 579,352명, 기업 128,206개소 가입, 297,795명 만기공제금 수령
2024	○ '24년 신규지원 중단(기가입자 7.6만명 계속 지원) * 누적 청년 580,924명, 기업 128,587개소 가입, 355,162명 만기공제금 수령
2025	○ '24년 신규지원 중단(기가입자 0.4만명 계속 지원) * 누적 청년 580,924명, 기업 128,587개소 가입, 377,979명 만기공제금 수령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기존 가입자 지속적 관리 및 지원으로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숙련인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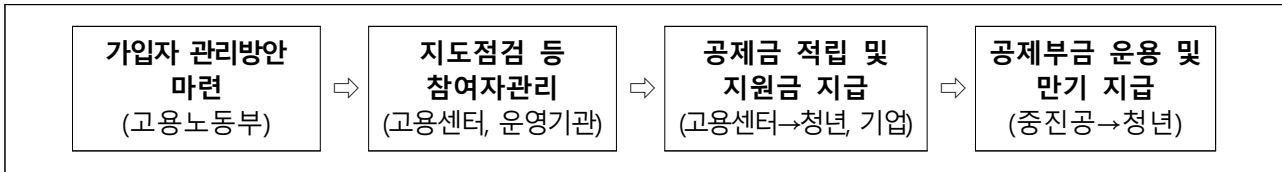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16. 7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의 제도를 개편하여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사업
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 청년취업인턴제의 물량(5만)을 활용하여 시범사업으로 도입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고용노동부는 정부차원에서 청년의 자산형성과 경력개발 관리·지원 등 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을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할 것(예결위, '24결산)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재정사업 자율평가('24) : 미흡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434,414	-	434,414	434,414	388,682	89.5	89.5	-	45,732
2023	210,693	-	210,693	210,693	172,781	82.0	82.0	-	37,912
2024	76,653	-	76,653	76,653	53,875	70.3	70.3	-	22,778
2025	9,514	-	9,514	9,514	3,723	39.1	39.1	-	5,79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사유: 집행잔액
2023	- 불용 사유: 집행잔액
2024	- 불용 사유: 집행잔액
2025	- 결산 진행 중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8) 고용보험징수위탁지원(1083-3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83	350
명칭	고용창출	고용보험징수관리	고용보험징수위탁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용보험 징수위탁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사업시행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고용보험 징수위탁지원	15,882	16,959	16,959	17,238	17,238	279	1.6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5,882	15,882	15,882	-	-	16,959	16,959	16,959	16,959	-	-	17,238
· 고용보험징수위탁지원	15,882	15,882	15,882	-	-	16,959	16,959	16,959	16,959	-	-	17,23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용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함에 따른 출연
 - 2011년도부터 4대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징수 업무 통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회보험통합징수업무를 수행하여 징수업무 효율성 제고 및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
 - 그에 따라 고용보험료 징수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인건비, 경비를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출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 2의2. 제55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3.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4. 보험료의 반환
5.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6. 이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고지·수납·체납 업무를 말한다)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1. 보험료등(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2. 보험료등의 체납관리

② 추진경위

-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기획단 출범('08.7.17)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징수통합 실무추진단」 출범('09.6.1)
- 사회보험 징수통합관련 노·사·정 합의서 서명('09.6.4)
- 「사회보험 징수통합준비위원회」 구성·운영('09.6.12) : 보건복지부
- 분야별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노사정실무협의회 : 정부, 공단, 노조 등 관계자
 - 정보화실무협의회 : 복지부, 노동부, 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계자
- 각 공단별 징수통합 실무준비조직 구성·운영
- 전환인력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인력 배치('11.1.1)
 - 건강(1,512명), 연금(712명), 근복공단(317명)
- 사회보험 통합징수 시작('11.1.1)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1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416	15,582	15,882	16,959	17,23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고용보험 징수위탁지원	출연	국민건강 보험공단	17,238	100.0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25년) 16,959백만원 → ('26년 계획) 17,238백만원(증 279백만원)
- 인건비 ('25년) 10,487백만원 → ('26년 계획) 10,854백만원(증 367백만원)
- 인건비: 10,487백만원('25년 인건비) × 103.5%(처우개선)
- 사업비 ('25년) 6,197백만원 → ('26년 계획) 6,109백만원(감 88백만원)
- 고지관리 3,595백만원 (전년동)
 - 고지서발송 : 월 9,772천건 × 430원 × 12개월 × 5.9% = 2,975백만원
 - 고지서제작 및 인쇄 : 월 9,772천건 × 82원 × 12개월 × 5.9% = 567백만원
 - 모바일고지수수료 : 월 670천건 × 100원 × 12개월 × 5.9% = 48백만원
 - 여비 등 : 5백만원
 - 수납관리 704백만원 (전년동)
 - 자동이체·환급금신청안내문 발송 : 월 255천건 × 430원 × 12개월 × 5.9% = 78백만원
 - 안내문 제작·인쇄 : 월 255천건 × 72.5원 × 12개월 × 5.9% = 13백만원
 - 수납대행수수료 : 월 14,741천건 × 58.5원 × 12개월 × 5.9% = 611백만원
 - 여비 등 : 2백만원
 - 체납관리 702백만원 (전년동)
 - 체납·압류통보서 발송 : 월 708천건 × 430원 × 12개월 × 5.9% + 월 178천건 × 2,530원 × 12개월 × 5.9% = 534백만원
 - 통보서 제작·인쇄 : 월 1,732천건 × 63.4원 × 12개월 × 5.9% = 78백만원
 - 예금전자전송수수료 : 50,108천건 × 19.6원 × 5.9% = 58백만원
 - 여비 등 : 32백만원
 - 징수행정지원 9백만원 (전년동)
 - 고객상담 도급비 226백만원 (전년동)
 - 시스템 유지보수료 126백만원 (전년동)
 - 통합징수시스템 재구축 747백만원 (감 88백만원)
- 경비 ('25년) 275백만원 → ('26년 계획) 275백만원(전년동)
- 통합징수정보화시스템 운영 경비 및 인건비에 따른 각 소득세 등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959	○ 인건비 : 10,487백만원 - 10,487백만원* = 10,181백만원('24년 인건비)* × 103%(25년 인건비 공통처우개선) ○ 사업비 : 6,197백만원 - 사업비 : 6,197백만원 ① 고지관리(3,595백만원) - 고지서발송: 2,975백만원 · 월 9,772건 × 430원 × 12개월 × 5.9% - 고지서제작 및 인쇄: 567백만원 · 월 9,772건 × 82원 × 12개월 × 5.9% - 모바일고지수수료: 48백만원 · 월 670천건 × 100원 × 12개월 × 5.9%	17,238	○ 인건비 : 10,854백만원 - 10,854백만원* = 10,487백만원('24년 인건비)* × 103.5%(25년 인건비 공통처우개선) ○ 사업비 : 6,109백만원 - 사업비 : 6,109백만원 ① 고지관리(3,595백만원) - 고지서발송: 2,975백만원 · 월 9,772건 × 430원 × 12개월 × 5.9% - 고지서제작 및 인쇄: 567백만원 · 월 9,772건 × 82원 × 12개월 × 5.9% - 모바일고지수수료: 48백만원 · 월 670천건 × 100원 × 12개월 × 5.9%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여비 등 : 5백만원 ② 수납관리(704백만원) - 자동이체, 환급금신청안내문 발송 : 월 255천건 x 430원 x 12개월 x 5.9% = 78백만원 - 안내문 제작·인쇄 : 월 255천건 x 72.5원 x 12개월 x 5.9% = 13백만원 - 수납대행수수료 : 월 14,741천건 x 58.5원 x 12개월 x 5.9% = 611백만원 - 여비 등 : 2백만원 ③ 체납관리(702백만원) - 체납 및 압류 통보서 발송 : 월 708천건 x 430원 x 12개월 x 5.9% + 월 178천건 x 2,530원 x 12개월 x 5.9% = 534백만원 - 통보서 제작·인쇄 : 월 1,732천건 x 63.4원 x 12개월 x 5.9% = 78백만원 - 예금전자전송수수료 : 50,108천건 x 19.6원 x 5.9% = 58백만원 - 여비 등 : 32백만원 ④ 징수행정지원(9백만원) ⑤ 고객상담 도급비(226백만원) ⑥ 시스템유지보수료(126백만원) ⑦ 통합징수시스템 재구축 1차 사업비(835백만원) ○ 경비 : 275백만원 - 통합징수정보화시스템 운영 경비 및 인건비에 따른 각 소득세 등		- 여비 등 : 5백만원 ② 수납관리(704백만원) - 자동이체, 환급금신청안내문 발송 : 월 255천건 x 430원 x 12개월 x 5.9% = 78백만원 - 안내문 제작·인쇄 : 월 255천건 x 72.5원 x 12개월 x 5.9% = 13백만원 - 수납대행수수료 : 월 14,741천건 x 58.5원 x 12개월 x 5.9% = 611백만원 - 여비 등 : 2백만원 ③ 체납관리(702백만원) - 체납 및 압류 통보서 발송 : 월 708천건 x 430원 x 12개월 x 5.9% + 월 178천건 x 2,530원 x 12개월 x 5.9% = 534백만원 - 통보서 제작·인쇄 : 월 1,732천건 x 63.4원 x 12개월 x 5.9% = 78백만원 - 예금전자전송수수료 : 50,108천건 x 19.6원 x 5.9% = 58백만원 - 여비 등 : 32백만원 ④ 징수행정지원(9백만원) ⑤ 고객상담 도급비(226백만원) ⑥ 시스템유지보수료(126백만원) ⑦ 통합징수시스템 재구축 1차 사업비(747백만원) ○ 경비 : 275백만원 - 통합징수정보화시스템 운영 경비 및 인건비에 따른 각 소득세 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추정산식 (또는 추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상용직 근로자비율(%)	목표	69.8	71.4	-	-		-	상용근로자 수 / 임금 근로자 수 *100	통계청
	실적	73.0	74.1	-	-				
	달성도	104.5	103.8	-	-				
15~64세 고용률(%)	목표	66.4	68.0	69.0	69.2		최근 3년간 평균실 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설정	(만5~64세 취업자수/ 만5~64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68.5	69.2	69.5	-				
	달성도	103.2	101.8	100.7	-				
청년고용률(%)	목표	42.5	43.8	-	-		-	(청년취업자 / 청년층 인구)*100	통계청
	실적	46.6	46.5	-	-				
	달성도	109.6	106.2	-	-				
청년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고용(공제) 유지율(%)	목표	63.1	68.0	-	-		-	(t-2)년 청년공제 가입자 중 2년 이상 유지자수(만기자 포함) /(t-2)년 청년공제 가 입인원(철회·취소 제외)*100, t당해연도	청년층고용보험 피보험자 전수조사/중소 벤처 기업진흥공단
	실적	69.7	64.6	-	-				
	달성도	110.4	95.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징수율 99.8%(부과액 145,176억원, 징수액 144,969억원)
2023	- 징수율 99.8%(부과액 162,362억원, 징수액 161,981억원)
2024	- 징수율 99.8%(부과액 166,643억원, 징수액 166,231억원)
2025.11	- 징수율 99.8%(부과액 146,629억원, 징수액 146,361억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효율적인 징수·채납업무 수행을 통해 징수율 향상 및 보험재정 건전성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산정· 부과	■ (연금) 국민연금공단 ■ (산재, 고용) 근로복지공단
↓		
건강보험공단	고지서 발송	■ 정기고지서 ■ 독촉고지서(정기·수시) ■ 반송고지서 정리 및 현지 확인 ■ 고지서 외주용역 및 인쇄업체 확인 점검
	보험료 수납	↓
		■ 보험료 수납·정산처리(창구수납, 자동이체, 신용카드, 표준OCR, CD/ATM, 가상계좌 등) ■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 안내문 발송 ■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안내문 발송 ■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송
		↓
	채납자 관리	■ 채납보험료 납부독려(유선 및 출장) ■ 재산 및 행방조사 ■ 압류예정통보서(최고서) 발송 ■ 압류 및 압류해제 처리(통지서 발송) ■ 교부청구서 및 추심요청서 발송 ■ 공매예정통지서 및 공매통지서 발송 ■ 고액·상습채납자 인적공개 예고문 및 대상 통보 ■ 채납자료 금융기관 제공 통보
↓		
	결손 처분	■ 채납보험료 결손처분 ※ 결손처분 절차(대상자조사 및 승인신청 → 1차심사 → 2차심사 → 이사장결재 → 재정운영위원회 심의·의결)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5,416	-	15,416	15,416	15,416	100.0	100.0	-	-
2023	15,582	-	15,582	15,582	15,582	100.0	100.0	-	-
2024	15,882	-	15,882	15,882	15,882	100.0	100.0	-	-
2025	16,959	-	16,959	16,959	16,959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해당없음

사 업 명						
(9) 고용보험적용부과지원(1083-3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83	351
명칭	고용창출	고용보험징수관리	고용보험적용부과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용보험료 부과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영세사업장 보험사무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고용보험 적용부과지원	35,433	37,033	37,033	34,787	34,787	△ 2,246	△ 6.1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35,772	35,772	35,433	-	-	37,033	37,033	37,033	37,033	-	-	34,787
· 고용보험료 부과지원	10,038	10,038	10,038	-	-	10,082	10,082	10,082	10,082	-	-	9,844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5,267	5,267	5,267	-	-	5,255	5,255	5,255	5,255	-	-	5,382
·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6,565	6,565	6,565	-	-	6,594	6,594	6,594	6,594	-	-	6,644
· 영세사업장 보험사무지원	13,902	13,902	13,563	-	-	15,102	15,102	15,102	15,102	-	-	12,91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용보험료 부과지원)

- 근로자 개인별 보수에 기초하여 매월 보험료 산정·부과, 이에 따라 근로자 개인별 가입 및 보수정보 관리, 보험료 부과자료 구축
- 가입 및 보수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가입누락자 등의 방지를 통해 보험재정 건전성 도모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예술인을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확대
-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노무제공자를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1.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확대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운영)

- 고용보험 적용·부과 등에 대한 전화, 인터넷 등 민원상담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고용보험 가입 또는 가입대상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편의 및 원활한 사업수행 지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 '17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업무 수행기관이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
- 고용보험료 부과 기초자료면서 실업급여 적정 지급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운영을 위한 기본 데이터베이스인 '피보험자'의 자격관리

-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 '95년부터 소규모 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부담 경감 및 적용·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험사무대행제도를 도입하고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지원금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보험료 부과지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보수총액등의 신고) 제1항~제7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해당 예술인·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때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때
3.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때

④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노무제공계약의 종료일 등을 해당 고용관계 또는 계약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
2.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종료한 때
3.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종료한 때

⑤ 사업주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사항, 신고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사업주 또는 발주자·원수급인이 「고용보험법」 제15조, 제77조의2제3항, 제77조의5 제1항, 제77조의10제1항에 따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2. 예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예술인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15세 미만인 경우. 다만, 15세 미만인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예술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사업에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져 원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2. 하나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져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인 사업주와 예술인 등은 발주자·원수급인이 피보험자 자격 취득 등의 신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 정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2. 12. 31.>

⑥ 제1항에 따라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제3항의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며, 그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납부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고용보험법」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고용보험법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31.>

1.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2. 노무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노무제공자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은 제외한다.
3. 15세 미만인 경우. 다만,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삭제 <2022. 12. 31.>

④ 제1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하는 노무제공자와 그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며, 그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납부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 2의2. 제55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3.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4. 보험료의 반환
5.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6. 이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고지·수납·체납 업무를 말한다)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권한의 위임등)제2항

- ②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
 2. 삭제
 - 2-2. 법 제17조(법 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

- 2-3. 법 제77조의2 및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의 접수
- 2-4. 법 제77조의6 및 제77조의10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의 접수
3. 법 제108조에 따른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탁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109조에 따른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과 서류의 조사(위탁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5. 법 제110조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6.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한 보험 가입 신청의 수리 및 가입 신청 사실의 통보
7.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공무원의 탈퇴신청의 수리
8. 제4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해임의 신고 수리(대리인이 법 제15조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①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료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고용보험료 부과지원)

- 사업시작년도 : '11년
-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함께 보험료 징수체계 변경 및 근로자 고용정보관리제도 도입
- ※ 보험료징수법 개정('09.12.30.) 및 하위법령 개정('10.9.29.)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 '11년 위탁상담에 의한 콜센터(광주) 개소(상담사 110명)
- '12년 콜센터(광주) 위탁상담원 40명 증원
- '15년 콜센터(인천) 개소(시간선택제 위탁상담사 92명)

- '16년 콜센터(울산) 개소(시간선택제 위탁상담사 100명)
- '19년 콜센터 상담사 350명 정규직 전환
- '23년 근로복지공단 직제규정 개정에 따라 고객센터로 명칭 변경

-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 사업위탁년도 : '17년
- 기존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17.1.1.자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개정('16.10.18.)

-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 사업시작년도 : '71년(산재보험료 징수가 곤란했던 건설업에 대해 보험료 징수를 위탁하고 징수비용 교부)
- '84년 : 소규모 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부담을 덜어주고, 산재보험의 가입촉진 및 적정한 징수를 도모하기 위해 보험사무조합으로 변경
- '05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명칭 변경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확대)

- '17.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국정과제 선정
- '17.9.부터 고용부 「고용보험제도 개선TF」, 종사자·사업주단체 의견수렴, 국회 토론회 등 실시
- '20.5.11. 환경노동위원회 및 '20.5.20.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의결('20.12.10. 시행)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 '17.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국정과제 선정
- '18.7월 고용보험위원회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방안' 심의·의결
- '20.9월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회 제출 → '21.1.5. 개정('21.7.1. 시행)
-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일하는 모든 국민을 실업급여로 보호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수립·발표('20.12.23.)

고용보험 적용확대 경과

- '95년 7월 고용보험제도 도입(실업급여: 30인 이상, 고안·직능: 70인 이상)
- '98년10월 쉼(1인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 '04년 1월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 고용보험 당연적용
- '12년 1월 자영업자(50인 미만 근로자 고용) 고용보험 임의적용
- '20년12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 '21년 7월 노무제공자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 '22년 1월 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 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 '22년 7월 노무제공자 5개 직종 고용보험 추가 적용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고용보험료 부과지원) '11년~계속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11년~'14년(운영비), '15년~(사업비)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17년~계속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19년~계속(운영비→사업비 이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확대) '20년 12월~계속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21년 7월~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3,208	37,140	35,772	37,033	34,78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고용보험료 부과지원,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고용보험피 보험자관리
(민간경상보조)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고용보험료 부과지원	출연	근로복지 공단	9,844	10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고용보험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145조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출연	근로복지 공단	5,382	100.0	고용보험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145조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출연	근로복지 공단	6,644	10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고용보험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145조
영세사업장 보험사무지원	보조	근로복지 공단	12,917	10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제37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7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25년) 37,033백만원 → ('26년 계획) 34,787백만원(감 2,246백만원)

① 고용보험료 부과지원 ('25년) 10,082백만원 → ('26년 계획) 9,844만원(감 238백만원)

- 근로자정보조사원 인건비 3,220백만원
- 기존임금 3,147백만원
 - 기본임금 3,147백만원(2,973천원×180명×12월×49%)
- 복리후생비 73백만원
 - 복지포인트 35백만원(40만원×180명×49%)
 - 자생조직지원비 7백만원(80천원×180명×49%)
 - 직무역량개발비 31백만원(350천원×180명×49%)
- 사업장안내 896백만원
 - 보수총액 신고 안내 774백만원(739원×214만개×49%)
 - 보험료 정산내역 통지 72백만원(560원×26만개×49%)
 - 지역별 사업주 설명회 개최 50백만원(1,855천원×55개×49%)
- 보험료 부과자료 확보 101백만원
 - 유관기관자료수집 및 자료연계협의, 사업장조사 101백만원 (315천원×12월×55개소×49%)
- 보험료부과 근거안내 687백만원
 - 부과근거 자료 제공 587백만원(560원×214만개×49%)
 - 보수총액 미신고사업장 직권부과 통지 100백만원(550원×37만개×49%)
- 퇴직정산 결과통지 676백만원
 - 퇴직정산 결과 통지서 676백만원(560원×4,106,982건×60%×49%)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확대 183백만원
 - 사업운영비 183백만원
 - 가입안내문 16백만원(530원×3만개)
 - 피보험자격통지 167백만원(450원×37만개)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3,061백만원
 - 사업운영비 3,061백만원
 - 가입안내문 90백만원(530원×17만개)
 - 피보험자격 통지 2,970백만원(450원×660만개)
- 일용근로종사자 적용확대 1,020백만원
 - 일용 가입안내문 73백만원(100원×73만개소)
 - 일용 피보험자격 통지 47백만원(30원×152만개소)
 - 일용 우편요금 900백만원(400원×225만개소)

②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운영 ('25년) 5,255백만원 → ('26년 계획) 5,382만원(증 127백만원)

- 상용임금 등 4,883백만원
- 인건비 4,716백만원

- 전일제상담사 2,975백만원(2,755천원×90명×12월)
- 반일제상담사 1,169백만원(1,499천원×65명×12월)
- 선임상담사 519백만원(2,883천원×15명×12월)
- 책임상담사 53백만원(4,417천원×1명×12월)
- 복리후생비 167백만원
 - 전일제상담사 96백만원(1,069천원×90명)
 - 반일제상담사 54백만원(830천원×65명)
 - 선임상담사 16백만원(1,069천원×15명)
 - 책임상담사 1백만원(1,069천원×1명)
- 일반운영비 등 499백만원
- 일반운영비 499백만원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25년) 6,594백만원 → ('26년 계획) 6,644만원(증 50백만원)

- 근로자정보입력원 인건비 2,016백만원
- 기존임금 1,994백만원(2,915천원×57명×12월)
- 복리후생비(복지포인트) 22백만원(40만원×57명)
- 사업운영비 4,628백만원
- 피보험자격신고 제도안내 41백만원
 - 사업장 안내문 제작발송 23백만원(300원×75천개)
 - 신고서식 제작 18백만원(30원×10종×6만)
- 피보험자 신고서처리 및 사실관계 조사지원 4,587백만원
 - 통지서제작발송 4,500백만원(300원×1,500만건)
 - 신고내역사실 관계조사 등 87백만원(115천원×64개소×12월)

④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25년) 15,102백만원 → ('26년 계획) 12,917만원(감 2,185백만원)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 11,565백만원(11,431백만원×101.2%)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이행 지원금 1,352백만원(215,976명×1,647원×95%×4회)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7,033	① 고용보험료 부과지원 10,082백만원 ■ 근로자정보조사원 인건비 3,143백만원 - 기존임금 3,070백만원 · 기본임금3,026백만원(2,901천원×180명×12월×49%) - 복리후생비 73백만원 · 복지포인트 35백만원(40만원×180명×49%) · 자생조직지원비 7백만원(80천원×180명×49%) - 직무역량계발비 31백만원(350천원×180명×49%) ■ 사업장안내 896백만원 - 보수총액신고안내 774백만원(739원×214만개×49%) - 보험료정산내역통지 72백만원(560원×26만개×49%) - 지역별사업주 설명회 개최50백만원(1,855천원×55개×49%) ■ 보험료부과 자료확보 101백만원 - 유관기관자료수집 및 자료연계협의, 사업장조사 101백만원 (315천원×12월×55개소×49%)	35,267	① 고용보험료 부과지원 9,844백만원 ■ 근로자정보조사원 인건비 3,220백만원 - 기존임금 3,147백만원 · 기본임금3,147백만원(2,973천원×180명×12월×49%) - 복리후생비 73백만원 · 복지포인트 35백만원(40만원×180명×49%) · 자생조직지원비 7백만원(80천원×180명×49%) - 직무역량계발비 31백만원(350천원×180명×49%) ■ 사업장안내 896백만원 - 보수총액신고안내 774백만원(739원×214만개×49%) - 보험료정산내역통지 72백만원(560원×26만개×49%) - 지역별사업주 설명회 개최50백만원(1,855천원×55개×49%) ■ 보험료부과 자료확보 101백만원 - 유관기관자료수집 및 자료연계협의, 사업장조사 101백만원 (315천원×12월×55개소×49%)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보험료부과 근거안내 687백만원 - 부과근거자료제공 587백만원(560원×214만개×49%) - 보수총액미신고사업장직권부과통지 100백만원(550원×37만개×49%) - 사업장직권부과통지 ■ 퇴직정산결과통지 676백만원 - 퇴직정산 결과 통지서 676백만원(560원×4,106,982건×60%×49%)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확대 183백만원 - 사업운영비 183백만원 · 인채유인비 20백만원(100원×2만개+30원×43만개+329원×2만개) · 우편요금 163백만원(360원×45만개)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3,376백만원 - 사업운영비 3,376백만원 · 가입안내문 26백만원(124원×21만개) · 피보험자격 통지 182백만원(30원×607만개) · 보수총액신고안내 104백만원(329원×315만개) · 우편요금 3,064백만원(430원×712만개) ■ 일용근로종사자 확대 1,020백만원 · 일용 가입안내문 73백만원(100원×73만개소) · 일용 피보험자격 통지 47백만원(30원×152만개소) · 일용 우편요금 900백만원(400원×225만개소) ②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운영 5,255백만원 ■ 상용임금 등 4,756백만원 - 인건비 4,589백만원 · 전일제상당사 2,897백만원(2,682천원×90명×12월) · 반일제상당사 1,140백만원(1,462천원×65명×12월) · 선임상당사 501백만원(2,783천원×15명×12월) · 책임상당사 51백만원(4,250천원×1명×12월) - 복리후생비 167백만원 · 전일제상당사 96백만원(1,069천원×90명) · 반일제상당사 54백만원(830천원×65명) · 선임상당사 16백만원(1,069천원×15명) · 책임상당사 1백만원(1,069천원×1명) ■ 일반운영비 등 499백만원 - 일반운영비 499백만원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6,594백만원 ■ 근로자정보입력원 인건비 1,966백만원 - 기존임금 1,944백만원(2,842천원×57명×12월) - 복리후생비(복지포인트) 22백만원(40만원×57명) ■ 사업운영비 4,628백만원 - 피보험자격신고 제도안내 41백만원 · 사업장안내문 제작발송 23백만원(300원×75천개) · 신고서식제작 18백만원(30원×10종×6만) - 피보험자 신고서처리 및 사실관계 조사지원 4,587백만원 · 통지서제작발송 4,500백만원(300원×1,500만건) · 신고내역사실 관계조사 등 87백만원(115천원×64개소×12월) ④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15,102백만원 - 보험료 납부 지원금 569백만원 - 피보험자 관리 지원금 12,131백만원 (10,885백만원+1,246백만원(3천원×207,667개소×4분기×50%)) - 사업장 가입 지원금 1,050백만원 (857백만원+193백만원(10천원×38,566개소×50%))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이행 지원금 1,352백만원 (215,976명×1,647원×95%×4회)		■ 보험료부과 근거안내 687백만원 - 부과근거자료제공 587백만원(560원×214만개×49%) - 보수총액미신고사업장직권부과통지 100백만원(550원×37만개×49%) - 사업장직권부과통지 ■ 퇴직정산결과통지 676백만원 - 퇴직정산 결과 통지서 676백만원(560원×4,106,982건×60%×49%)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확대 183백만원 - 사업운영비 183백만원 · 인채유인비 20백만원(100원×2만개+30원×43만개+329원×2만개) · 우편요금 163백만원(360원×45만개)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3,061백만원 - 사업운영비 3,061백만원 · 가입안내문 90백만원(530원×17만건) · 피보험자격 통지 2,970백만원(450원×660만개) ■ 일용근로종사자 확대 1,020백만원 · 일용 가입안내문 73백만원(100원×73만개소) · 일용 피보험자격 통지 47백만원(30원×152만개소) · 일용 우편요금 900백만원(400원×225만개소) ②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운영 5,382백만원 ■ 상용임금 등 4,883백만원 - 인건비 4,696백만원 · 전일제상당사 2,975백만원(2,755천원×90명×12월) · 반일제상당사 1,169백만원(1,499천원×65명×12월) · 선임상당사 519백만원(2,883천원×15명×12월) · 책임상당사 53백만원(4,417천원×1명×12월) - 복리후생비 167백만원 · 전일제상당사 96백만원(1,069천원×90명) · 반일제상당사 54백만원(830천원×65명) · 선임상당사 16백만원(1,069천원×15명) · 책임상당사 1백만원(1,069천원×1명) ■ 일반운영비 등 499백만원 - 일반운영비 499백만원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6,644백만원 ■ 근로자정보입력원 인건비 2,016백만원 - 기존임금 1,994백만원(2,915천원×57명×12월) - 복리후생비(복지포인트) 22백만원(40만원×57명) ■ 사업운영비 4,628백만원 - 피보험자격신고 제도안내 41백만원 · 사업장안내문 제작발송 23백만원(300원×75천개) · 신고서식제작 18백만원(30원×10종×6만) - 피보험자 신고서처리 및 사실관계 조사지원 4,587백만원 · 통지서제작발송 4,500백만원(300원×1,500만건) · 신고내역사실 관계조사 등 87백만원(115천원×64개소×12월) ④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12,917백만원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11,565백만원 (11,431백만원×101.2%) -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 지원금 1,352백만원 (215,976명×1,647원×95%×4회)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상용직 근로자비율(%)	목표	69.8	71.4	-	-		-	상용근로자 수 / 임금 근로자 수 *100	통계청
	실적	73.0	74.1	-	-				
	달성도	104.5	103.8	-	-				
15~64세 고용률(%)	목표	66.4	68.0	69.0	69.2		최근 3년간 평균실 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수/ 만15~64세 인구)*100	통계청
	실적	68.5	69.2	69.5	-				
	달성도	103.2	101.8	100.7	-				
청년고용률(%)	목표	42.5	43.8	-	-		-	(청년취업자 / 청년층 인구)*100	통계청
	실적	46.6	46.5	-	-				
	달성도	109.6	106.2	-	-				
청년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고용(공제) 유지율(%)	목표	63.1	68.0	-	-		-	(t-2)년 청년공제 가입자 중 2년 이상 유지자수(만기자 포함) /(t-2)년 청년공제 가 입인원(철퇴·취소 제외)*100, t당해연도	청년층고용보험 피보험자 전수조사/중소 벤처 기업진흥공단
	실적	69.7	64.6	-	-				
	달성도	110.4	95.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고용보험료 부과지원)

2022	- 214만개 사업장에 대한 매월 보험료 부과
2023	- 221만개 사업장에 대한 매월 보험료 부과
2024	- 224만개 사업장에 대한 매월 보험료 부과
2025. 11.	- 227만개 사업장에 대한 매월 보험료 부과

(고객센터 운영)

2022	- 상담응대건수 : 3,727,461건, 응대율 89.4% - 직접민원업무처리(증명원 발급 등) : 93,421건 ※ 시스템 분리로 보험료 부과관련 증명원 제외된 건수
2023	- 상담응대건수 : 3,317,881건, 응대율 95.7% - 직접민원업무처리(증명원 발급 등) : 76,730건
2024	- 상담응대건수 : 3,417,808건, 응대율 92.9% - 직접민원업무처리(증명원 발급 등) : 164,439건
2025. 11.	- 상담응대건수 : 2,880,685건, 응대율 90.3% - 직접민원업무처리(증명원 발급 등) : 143,099건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2022	- 보험자 14,899천명 관리
2023	- 피보험자 15,200천명 관리
2024	- 피보험자 15,365천명 관리
2025. 11.	- 피보험자 15,716천명 관리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2022	- 위탁사업장수 882천개소(위탁률 33.7%), 위탁근로자 448만명
2023	- 위탁사업장수 894천개소(위탁률 33.3%), 위탁근로자 465만명
2024	- 위탁사업장수 952천개소(위탁률 37.0%), 위탁근로자 492만명
2025. 11.	- 위탁사업장수 1,011천개소(위탁률 35.6%), 위탁근로자 525만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용보험료 부과지원)

-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입·퇴사 등 근로자 가입정보 관리를 통해 적용근로자 누락방지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보험재정 건전성 도모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 고객센터 운영 효율화 및 상담 인프라 확대를 통한 상담서비스 품질 향상 및 고객만족도 제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 피보험자에 대한 입·퇴사 등 관리를 통해 적용근로자 누락방지 등 보험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보험재정 건전성 도모

○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 보험사무 위탁률 제고를 통한 소규모 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부담 경감 및 적용·징수 업무의 효율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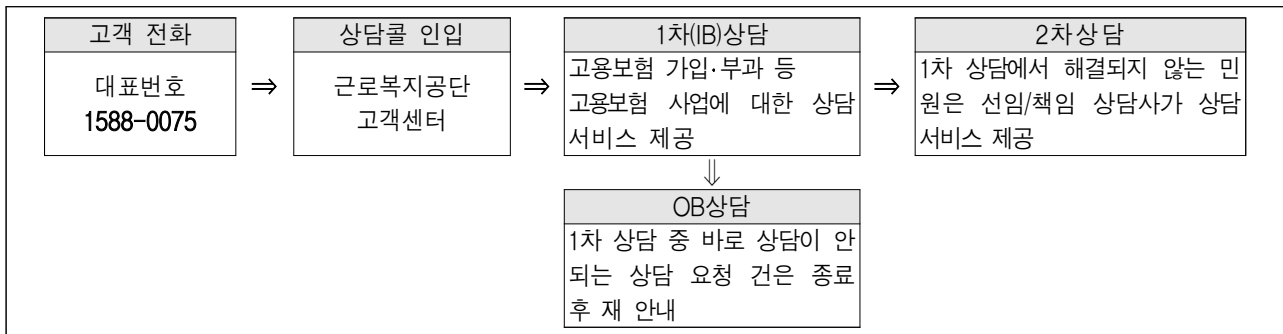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고용보험료 부과지원)

- 매년 3.15까지 보수총액신고서 제출(사업주)→월평균보수를 근거로 월별 보험료 산정 (근로복지공단)

구 분		신고종류	기한	관련법령
보수관리	보수총액신고	보수총액신고서	매년 3. 1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10 제1항~제8항
	보수총액 착오신고	보수총액 수정신고	변경사유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 피보험자의 입·퇴사 신고(사업주)→ 신고내역 확인 및 통지(근로복지공단)
→ 월별보험료 산정(근로복지공단)
- 퇴사 및 이직확인신고(사업주)→ 신고내역 확인 및 처리(근로복지공단)
→ 실업급여 지급(고용노동부)

구 분		신고종류	기한	관련법령
피보험자관리	입 사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다음달 15일	고용보험법 제13조~제18조
	퇴 사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휴 직	휴직등신고서	14일 이내	
	전근(전보)	전보신고서	"	
	정보 변경	정보변경신고서	"	
	일 용 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다음달 15일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절차	주체	적용 법령 등
①인가신청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료징수법 제33조 제2항
②인가결정	근로복지공단	보험료징수법 제33조 제2항
③사무위탁서 작성	보험사무대행기관, 사업주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
④보험사무 대행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6조
⑤보험사무대행지원금 신청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료징수법 제37조
⑥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료징수법 제37조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사항 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영세사업장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의 수요 반영 필요 (보조사업평가)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33,208	-	33,208	33,208	33,208	100.0	100.0	-	-
2023	37,140	-	37,140	37,140	36,199	97.5	97.5	-	941
2024	35,772	-	35,772	35,772	35,433	99.1	99.1	-	339
2025	37,033	-	37,033	37,033	35,677	96.3	96.3	-	1,35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집행잔액
2024	- 집행잔액
2025	- 집행잔액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10) 고용보험적용부와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1083-35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83	355
명칭	고용창출	고용보험징수관리	고용보험적용부와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용보험 적용부와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고용보험 적용부와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5,657	10,873	10,873	12,662	12,662	1,789	16.5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5,657	5,657	5,657	-	-	10,873	10,873	10,873	10,873	-	-	12,662
· 전산장비유지관리	3,898	3,898	3,898	-	-	4,359	4,359	4,359	4,359	-	-	4,428
· 정보시스템운영지원	1,759	1,759	1,759	-	-	1,587	1,587	1,587	1,587	-	-	2,034
· 노후국가핵심반사설장비 교체 및 증설	-	-	-	-	-	2,530	2,530	2,530	2,530	-	-	-
· 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	-	-	-	-	-	2,240	2,240	2,240	2,240	-	-	6,200
· 소득기반 산재· 고용 보험 정보시스템 구축 BPR/ISP	-	-	-	-	-	157	157	157	157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료 부과와 징수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구축 및 운영
- 고용보험 보험료 부과의 기초자료인 피보험자의 자격관리 및 수요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제80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3.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4. 보험료의 반환
5.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6. 이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시작년도 : 1999년
- '99.10월 99년부터 고용보험 적용·징수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전산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등 지원
 - ※ 보험료징수법 개정('09.12.30.) 및 하위법령 개정('10.9.29.)
- '23년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확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9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881	5,678	5,657	10,873	12,662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근로자, 사업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출연	근로복지공단	12,662	100.0	고용보험법 제80조 제1항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25년) 10,873 → ('26년 계획) 12,662백만원(증 1,789백만원, 증 16.5%)

① 전산장비 유지관리 ('25년) 4,359백만원 → ('26년 계획) 4,428백만원(증 69백만원)

- 시스템 유지관리 2,388백만원
- 상용SW 유지관리 : 895백만원
 - 장비도입비(8,949백만원) × 10%(요율) = 895백만원
- HW 유지관리 : 676백만원
 - 장비도입비(9,657백만원) × 7%(요율) = 676백만원
- 기타설비 유지관리 : 82백만원
 - 장비도입비(1,172백만원) × 7%(요율) = 82백만원
- 사무용SW 사용료 : 188백만원
 - {오피스(262천원)+한글(101천원)} × 518본 = 188백만원
- 개발SW 유지관리 : 547백만원
 - SW기술자평균임금(15,194천원) × 12개월 × 3명 = 547백만원
- 노후장비 교체 및 증설 2,040백만원
- 기존임차료 : 1,371백만원
- 신규임차료 : 669백만원

②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25년) 1,587백만원 → ('26년 계획) 2,034백만원(증 447백만원)

- 회선사용료 1,481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 1,031백만원
 - 고용노동부 통합통신망(75회선) × 967천원 × 12월 = 870백만원
 - 인터넷 유관기관 및 통신회선(22회선) × 606천원 × 12월 = 160백만원
 - 우편요금 : 1백만원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클라우드 사용료 : 450백만원
- 기타 운영지원 553백만원
- 일반수용비 : 200백만원
 - 사무용품 구입 등 : 20백만원
 - 바이러스 백신 사용료 : 79백만원
 - * PC용 라이선스 : 단가(22천원) × 수량(1,280본) = 28백만원
 - * 인터넷망 PC용 : 단가(28천원) × 수량(1,545본) = 43백만원
 - * 서버용 라이선스 : 단가(351천원) × 수량(24본) = 8백만원
 - 패치관리SW 사용료 : 단가(39,600원) × 2,559본 = 101백만원
- 특근매식비 : 11백만원
 - 특근자 식대(9천원) × 104회 × 12월 = 11백만원
- 일숙직비 : 2백만원
 - 전산당직 수당(30천원) × 5.6명 × 12월 = 2백만원
- 기타운영비 : 11백만원
 - 정보화인력 전문교육비(700천원) × 10회 = 7백만원
 - 부서운영비(21천원) × 8부 × 12월 = 2백만원
 - 사용자교육식대(6천원) × 42명 × 4회 = 1백만원
 - 소속기관 정보화간담회(6천원) × 42명 × 4개기관 = 1백만원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분담금 : 301백만원
 - 4대보험연계센터 차세대정보시스템 재구축 등 운영비 공단분담금 : 602백만원 × 50%(고용기금분담율) = 301백만원
- 국내여비 : 14백만원
 - 국내여비(90천원) × 13명 × 1회 × 12월 = 14백만원
- 업무추진비 : 14백만원
 - 정보화사업 관련 업무협의(30천원) × 8명 × 2.4회 × 12월 = 7백만원
 - 유관기관 간 업무협의(30천원) × 8명 × 1회 × 12월 = 3백만원
 - 간담회 등(30천원) × 8명 × 1.4회 × 12월 = 4백만원

③ 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

(’25년) 2,240백만원 → (’26년 계획) 6,200백만원(중 3,960백만원)

- 장비도입비 : 12,400백만원 × 50%(고용기금분담율) = 6,200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873	① 전산장비 유지관리 4,359백만원 ■ 시스템 유지관리 2,319백만원 - 상용SW 유지관리 : 895백만원 · 장비도입비(8,949백만원) × 10%(요율) = 895백만원	12,662	① 전산장비 유지관리 4,428백만원 ■ 시스템 유지관리 2,388백만원 - 상용SW 유지관리 : 895백만원 · 장비도입비(8,949백만원) × 10%(요율) = 895백만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HW 유지관리 : 676백만원 · 장비도입비(9,657백만원) × 7%(요율) = 676백만원 - 기타설비 유지관리 : 82백만원 · 장비도입비(1,172백만원) × 7%(요율) = 82백만원 - 사무용SW 사용료 : 119백만원 · {오피스(262천원)+한글(101천원)} × 329식 = 119백만원 - 개발SW 유지관리 : 547백만원 · SW기술자평균임금(15,194천원) × 12개월 × 3명 = 547백만원 ■ 노후장비 교체 및 증설 2,040백만원 - 기존임차료 : 2,040백만원 ②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1,587백만원 ■ 회선사용료 1,031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 1,031백만원 · 고용노동부 통합통신망(75회선) × 967천원 × 12월 = 870백만원 · 인터넷 유관기관 및 통신회선(22회선) × 606천원 × 12월 = 160백만원 · 우편요금 : 1백만원 ■ 기타 운영지원 556백만원 - 일반수용비 : 200백만원 · 사무용품 구입 등 : 20백만원 · 바이러스 백신 사용료 : 79백만원 * PC용 라이선스 : 단가(22천원) × 수량(1,280본) × = 28백만원 * 인터넷망 PC용 : 단가(28천원) × 수량(1,545본) × = 43백만원 * 서버용 라이선스 : 단가(351천원) × 수량(24본) × = 8백만원 - 패치관리SW 사용료 : 101백만원 - 특근매식비 : 11백만원 · 특근자 식대(9천원) × 104회 × 12월 = 11백만원 - 일숙직비 : 2백만원 · 전산당직 수당(30천원) × 5.6명 × 12월 = 2백만원 - 기타운영비 : 11백만원 · 정보화인력 전문교육비(700천원) × 10회 = 7백만원 · 부서운영비(21천원) × 8부 × 12월 = 2백만원 · 사용자교육식대(6천원) × 42명 × 4회 = 1백만원 · 소속기관 정보화간담회(6천원) × 42명 × 4개기관 = 1백만원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분담금 : 304백만원 · 4대보험연계센터 차세대정보시스템 재구축 등 운영비 공단분담금 : 608백만원 × 50%(고용기금분담율) = 304백만원 - 국내여비 : 14백만원 · 국내여비(90천원) × 13명 × 1회 × 12월 = 14백만원 - 업무추진비 : 14백만원 · 정보화사업 관련 업무협의(30천원) × 8명 × 2.4회 × 12월 = 7백만원 · 유관기관 간 업무협의(30천원) × 8명 × 1회 × 12월 = 3백만원 · 간담회 등(30천원) × 8명 × 1.4회 × 12월 = 4백만원		- HW 유지관리 : 676백만원 · 장비도입비(9,657백만원) × 7%(요율) = 676백만원 - 기타설비 유지관리 : 82백만원 · 장비도입비(1,172백만원) × 7%(요율) = 82백만원 - 사무용SW 사용료 : 188백만원 · {오피스(262천원)+한글(101천원)} × 518식 = 188백만원 - 개발SW 유지관리 : 547백만원 · SW기술자평균임금(15,194천원) × 12개월 × 3명 = 547백만원 ■ 노후장비 교체 및 증설 2,040백만원 - 기존임차료 : 1,371백만원 - 기존임차료 : 669백만원 ②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2,034백만원 ■ 회선사용료 1,481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 1,031백만원 · 고용노동부 통합통신망(75회선) × 967천원 × 12월 = 870백만원 · 인터넷 유관기관 및 통신회선(22회선) × 606천원 × 12월 = 160백만원 · 우편요금 : 1백만원 · 산재-고용보험 대국민 민원접수 시스템(토털서비스) 클라우드 이용료 : 450백만원 = 75백만원 × 12개월 × 50%(고용기금분담율) ■ 기타 운영지원 553백만원 - 일반수용비 : 200백만원 · 사무용품 구입 등 : 20백만원 · 바이러스 백신 사용료 : 79백만원 * PC용 라이선스 : 단가(22천원) × 수량(1,280본) × = 28백만원 * 인터넷망 PC용 : 단가(28천원) × 수량(1,545본) × = 43백만원 * 서버용 라이선스 : 단가(351천원) × 수량(24본) × = 8백만원 - 패치관리SW 사용료 : 101백만원 - 특근매식비 : 11백만원 · 특근자 식대(9천원) × 104회 × 12월 = 11백만원 - 일숙직비 : 2백만원 · 전산당직 수당(30천원) × 5.6명 × 12월 = 2백만원 - 기타운영비 : 11백만원 · 정보화인력 전문교육비(700천원) × 10회 = 7백만원 · 부서운영비(21천원) × 8부 × 12월 = 2백만원 · 사용자교육식대(6천원) × 42명 × 4회 = 1백만원 · 소속기관 정보화간담회(6천원) × 42명 × 4개기관 = 1백만원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분담금 : 301백만원 · 4대보험연계센터 차세대정보시스템 재구축 등 운영비 공단분담금 : 602백만원 × 50%(고용기금분담율) = 301백만원 - 국내여비 : 14백만원 · 국내여비(90천원) × 13명 × 1회 × 12월 = 14백만원 - 업무추진비 : 14백만원 · 정보화사업 관련 업무협의(30천원) × 8명 × 2.4회 × 12월 = 7백만원 · 유관기관 간 업무협의(30천원) × 8명 × 1회 × 12월 = 3백만원 · 간담회 등(30천원) × 8명 × 1.4회 × 12월 = 4백만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③ 노후된 국가핵심기반시설 장비 교체 및 증설 2,530백만원 ■ 자산취득비 : 2,530백만원 ④ 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 2,240백만원 ■ 공사비 : 4,480백만원 × 50%(고용기금분담율) = 2,240백만원 ⑤ 소득기반 산재·고용보험 정보시스템 구축 BPR/ISP 157백만원 ■ 연구용역비 : 314백만원 × 50%(고용기금분담율) = 157백만원		③ 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 6,200백만원 ■ 장비도입비 : 12,400백만원 × 50%(고용기금분담율) = 6,2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상용직 근로자비율(%)	목표	69.8	71.4	-	-		-	상용근로자 수 / 임금 근로자 수 *100	통계청
	실적	73.0	74.1	-	-				
	달성도	104.5	103.8	-	-				
15~64세 고용률(%)	목표	66.4	68.0	69.0	69.2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68.5	69.2	69.5	-				
	달성도	103.2	101.8	100.7	-				
청년고용률(%)	목표	42.5	43.8	-	-		-	(청년취업자 / 청년층 인구)*100	통계청
	실적	46.6	46.5	-	-				
	달성도	109.6	106.2	-	-				
청년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고용(공제) 유지율(%)	목표	63.1	68.0	-	-		-	(t-2)년 청년공제 가입자 중 2년 이상 유지자수 (만기자 포함) / (t-2)년 청년공제 가입인원(철퇴·취소 제외)*100, t당해연도	청년층고용보험 피보험자 전수조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실적	69.7	64.6	-	-				
	달성도	110.4	95.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용보험 적용, 보험료 산정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근로복지공단 매월 자금 교부 신청 → 자금교부 → 집행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우수 (재정사업자율평가)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23,881	-	23,881	23,881	23,881	100.0	100.0	-	-
2023	5,678	-	5,678	5,678	5,678	100.0	100.0	-	-
2024	5,657	-	5,657	5,657	5,657	100.0	100.0	-	-
2025	10,873	-	10,873	10,873	10,873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11)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방지(1083-35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83	357
명칭	고용창출	고용보험징수관리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방지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방지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
	사업시행주체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직접수행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방지	3,546	4,285	4,285	4,925	4,167	△118	△2.7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4,185	4,185	3,546		639	4,285	4,285	4,285	3,430		855	4,167
· 신고포상금	3,240	3,240	2,606		634	3,240	3,240	3,240	2,387		853	3,048
· 운영비	945	945	940		5	1,045	1,045	1,045	1,043		2	1,11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실업급여, 고용안정, 모성보호 등 고용보험 사업이 확대되면서, 부정수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브로커를 통한 공모형 부정수급도 다수 발생하는 등 그 범위도 확대되고 있어 부정수급 예방 활동, 적발을 위한 조사 및 신고포상금 지급 등으로 건전한 고용보험재정 유지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사업근거 : 「고용보험법」 제109조(조사 등),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및 제116조(벌칙) 등

- * 고용보험법 제109조(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등에게 미리 조사 일시·조사 내용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그 사업주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 고용보험법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의 지원, 위탁 및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4.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추진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08년
- 사업추진배경
 - '07.12월 브로커 개입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을 계기로 부정수급 전담팀 구성
 - '08.01월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방지사업 개시
 - '10.12월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보완대책 수립·시행
 - '13.12월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국무조정실 관계부처 합동)
 - '14.01월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
 - '15.01월 6개청 부정수급조사과(청장 직속) 설치
 - '17.12월 사범경찰직무법 개정으로 수사권 부여
 - '18.03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47개 관서 부정수급 조사 업무 일원화
 - '20.08월 부정수급 제재강화 및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수사권 도입
 - '22.01월 광역·기획조사 활성화를 위한 부정수급 기획조사 기본계획 시행법령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8년~(계속)
 - * 부정수급업무는 '98년부터 시행, 예산은 '08년부터 개시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 '23년 예산부터 기금운영비에서 고용창출로 프로그램 이관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3,567	4,185	4,285	4,16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방지(1083-357)
 - : ('25년 예산) 4,285백만원 → ('26년 예산안) 4,071백만원
 - (요구)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모성보호 등) 부정수급 예방·적발 활동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고용보험사업 각종 급여 및 지원금 부정행위 신고자 신고포상금 3,048백만원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조사 운영비 및 예방·홍보 비용 1,023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285	○ 일반수용비(210-01) : 434,200천원 가. 부정수급 예방 등 홍보(300,000천원) • 지하철·편의점 등 생활접점시설 온·오프라인 홍보(실업급여, 모성보호 150,000천원, 고용안정, 직업능력 150,000천원) 나. 부정수급방지 안내 및 홍보물 제작·배포(40,000천원) •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제보 활성화, 부정수급 근절 현수막, 배너, 리플릿 제작·배포(48개 관서) 다. 부정수급 지침·수사사례집 제작(60,000천원) 라. 수사서식, 봉투 및 소모성비용 등 사무용품(34,200천원) • (6개청×1,000천원)+(42개지청×600천원)+본부 3,000천원=34,20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56,000천원 가. 제세공과금(56,000천원) • 48개 지방관서 우편발송, 전기료, 전화 및 인터넷사용료 등 ○ 피복비(210-03) : 50,000천원 가. 고용보험수사관 피복비 및 수선비(50,000천원) • 고용보험수사관 279명(수사관복 제작 및 수선비) ○ 특근매식비(210-05) : 18,000천원 가. 고용보험수사관 특근매식비(18,000천원) • 고용보험수사관 279명, 매월 4~5회 기준(1회 7,000원) ○ 국내여비(220-01) : 90,000천원 가. 부정수급 점검·수사 등 출장비(78,000천원) • 고용보험수사관 279명×25,000원(관내)×9회=64,000천원 • 고용보험수사관 279명×50,000원(관외)×1회=14,000천원 나. 본부·지방 간담회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12,000천원) • 본부·지방 간담회 30,000원×10명×6개청×2회=6,000천원 • 본부·지방·유관기관 간담회 50,000원×20명×6회=6,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21,000천원 가. 워크숍 개최(8,310천원) • 고용보험수사관 279명×30,000원×1회=8,310천원 나. 본부·지방 간담회(2,250천원) • 본부·지방 간담회 30,000원×5명×6개청=450천원 • 본부·지방·유관기관 간담회 30,000원×10명×6개청=1,800천원 다. 유관기관 업무협의(10,440천원) • 본부·유관기관 30,000원×15명×1회=450천원 • 지방·검·경 등 간담회 30,000원×6명×48개 지방관서=8,640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334,800천원 가. 고용보험수사관 특정업무경비(334,800천원) • 고용보험수사관 279명×100,000원×12월=334,800천원 ○ 포상금(310-03) : 3,240,000천원 가. 신고포상금(제보된 부정수급액의 20~30% 포상금 지급) •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 1,560,000 / 고용안정 1,490,000 / 직업	4,167	○ 일반수용비(210-01) : 412,200천원 가. 부정수급 예방 등 홍보(278,000천원) • 지하철·편의점 등 생활접점시설 온·오프라인 홍보(실업급여, 모성보호 150,000천원, 고용안정, 직업능력 150,000천원) 나. 부정수급방지 안내 및 홍보물 제작·배포(40,000천원) •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제보 활성화, 부정수급 근절 현수막, 배너, 리플릿 제작·배포(48개 관서) 다. 부정수급 지침·수사사례집 제작(60,000천원) 라. 수사서식, 봉투 및 소모성비용 등 사무용품(34,200천원) • (6개청×1,000천원)+(42개지청×600천원)+본부 3,000천원=34,20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56,000천원 가. 제세공과금(56,000천원) • 48개 지방관서 우편발송, 전기료, 전화 및 인터넷사용료 등 ○ 피복비(210-03) : 50,000천원 가. 고용보험수사관 피복비 및 수선비(50,000천원) • 고용보험수사관 279명(수사관복 제작 및 수선비) ○ 특근매식비(210-05) : 18,000천원 가. 고용보험수사관 특근매식비(18,000천원) • 고용보험수사관 279명, 매월 4~5회 기준(1회 7,000원) ○ 국내여비(220-01) : 90,000천원 가. 부정수급 점검·수사 등 출장비(78,000천원) • 고용보험수사관 279명×25,000원(관내)×9회=64,000천원 • 고용보험수사관 279명×50,000원(관외)×1회=14,000천원 나. 본부·지방 간담회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12,000천원) • 본부·지방 간담회 30,000원×10명×6개청×2회=6,000천원 • 본부·지방·유관기관 간담회 50,000원×20명×6회=6,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21,000천원 가. 워크숍 개최(8,310천원) • 고용보험수사관 279명×30,000원×1회=8,310천원 나. 본부·지방 간담회(2,250천원) • 본부·지방 간담회 30,000원×5명×6개청=450천원 • 본부·지방·유관기관 간담회 30,000원×10명×6개청=1,800천원 다. 유관기관 업무협의(10,440천원) • 본부·유관기관 30,000원×15명×1회=450천원 • 지방·검·경 등 간담회 30,000원×6명×48개 지방관서=8,640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334,800천원 가. 고용보험수사관 특정업무경비(334,800천원) • 고용보험수사관 279명×100,000원×12월=334,800천원 ○ 포상금(310-03) : 3,048,000천원 가. 신고포상금(제보된 부정수급액의 20~30% 포상금 지급) •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 1,500,000 / 고용안정 1,358,000 / 직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능력개발 150,000 / 기타 40,000		업능력개발 150,000 / 기타 40,000
	○ 자산취득비(430-01) : 41,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37,000천원
	가. 사무가구(책상, 의자, 캐비닛 및 서랍장)(28,800천원) · 48개 지방관서×600,000원=28,800천원		가. 사무가구(책상, 의자, 캐비닛 및 서랍장)(28,800천원) · 48개 지방관서×600,000원=28,800천원
	나. 전산장비(부정수급 조사용, 컴퓨터·모니터·전화기·복사기 등) (9,600천원) · 48개 지방관서×200,000원=9,600천원		나. 전산장비(부정수급 조사용, 컴퓨터·모니터·전화기·복사기,고속 스캐너 등) (105,600천원) · 48개 지방관서×2,200,000원=105,600천원
	다. 기타자산·장비(2,600천원) · 본부, 지방관서 기타 자산·장비 구입비용 2,600천원		다. 기타자산·장비(2,600천원) · 본부, 지방관서 기타 자산·장비 구입비용 2,6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1	부정수급 27,973건(588억원) 적발
2022	부정수급 25,524건(465억원) 적발
2023	부정수급 24,456건(524억원) 적발
2024	부정수급 25,783건(457억원) 적발
2025	('25. 6월 기준) 부정수급 13,518건(216억원) 적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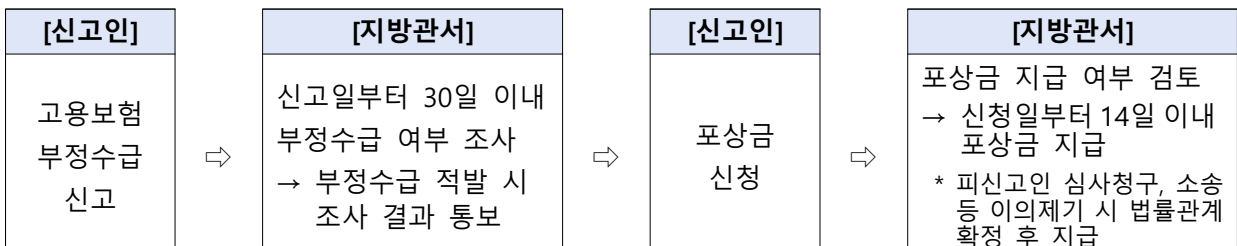
- ③ 향후(2025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용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등을 통해 고용 보험재정 건전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신고포상금 지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급여 및 지원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원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포상금 집행 실태 점검과 고용보험수사관 역량 제고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26년 예산안 검토보고서)
- 2) 대외공개 평가
- 3) 자체평가
 - '25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보통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2,367	-	2,367	3,137	3,110	99.1	99.1	-	27
2023	3,567	-	3,567	3,567	3,466	97.2	97.2	-	101
2024	4,185	-	4,185	4,185	3,546	84.7	84.7	-	639
2025	4,285	-	4,285	4,285	3,430	80.0	80.0	-	85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계획변경 사유: 부정수급 제보 활성화에 따라 신고포상금 예산 충당을 위한 기금운용계획변경 - 불용 사유: 집행 잔액
2023	- 계획변경 사유: 해당없음 - 불용 사유: 집행 잔액
2024	- 계획변경 사유: 해당없음 - 불용 사유: 집행 잔액
2025	- 계획변경 사유: 해당없음 - 불용 사유: 집행 잔액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12) 내일배움카드(고보)(1151-35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51	352
명칭	직업능력개발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	내일배움카드(고보)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일반직종 훈련	소관부처	실·국·과(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소관부처	실·국·과(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소관부처	실·국·과(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내일배움카드(고보)	571,022	603,198	603,198	508,979	508,979	△ 94,219	△ 15.6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734,204	721,374	571,022	-	150,352	603,198	603,198	603,198	553,372	37	49,789	508,979
· 일반직종훈련	331,239	331,239	296,553	-	34,686	332,890	332,890	332,890	284,980	-	47,910	266,039
·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325,960	313,098	198,572	-	114,526	205,160	205,160	191,160	189,718	-	1,442	159,995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75,960	75,960	74,904	-	1,056	64,103	64,103	78,103	77,741	-	362	82,122
· 운영비 등	1,045	1,077	992	-	85	1,045	1,045	1,045	932	37	76	82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일반직종 훈련)**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금속, 동력, 전기, 전자 등 우리나라 중요 산업분야에서 부족하거나 새로운 수요가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 양성·공급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산업구조 변화 및 고용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직자, 자영업자 등의 고용유지, 이·전직을 신속히 지원하고 인력양성이 필요한 산업계의 인력수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장 수요 반영 훈련을 수시 공급하고 훈련비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직종(이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이라 한다)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경제의 기간(基幹)이 되는 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2. 정보통신산업·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3.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

②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의 선정기준 및 절차,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 비용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의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근로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2. 제3조제4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내용·절차·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국민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 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 제공

2.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국민에게 직업·진로상담 및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정보 제공,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일반직종 훈련>

- '98년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자 취·창업훈련 및 고학력 미취업자 대상 취업 유명분야 훈련 실시
- '08.9월 공급자 중심의 기존 직업훈련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 '11년 계좌제 훈련 전면 실시(물량배정방식 실업자훈련 폐지)
- '15년 직업능력개발계좌제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운영방식 통합
- '20년 실업자·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제도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84년 신체장애자, 생활보호대상자 및 비진학 청소년 등 취약계층 대상 직업훈련 실시
- '97년 실업대책 및 인력부족직종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전환
- '11년 민간우선선정직종훈련과 대한상의우선선정직종훈련 통합 및 명칭 변경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15년 직업능력계좌제와 운영방식 및 실시규정 등 통합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 '22년 종사자 및 산업계 등의 산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고용유지, 이·전직 등을 위해 희망하는 훈련수요에 기반한 훈련과정 실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97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98,296	887,312	734,204	603,198	508,979

- 기타: '25년 훈련규모 638,500명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 사업 수혜자 : 15세 이상의 실업자,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일반직종 훈련

: (2025 당초 계획) 332,890백만원 → (2026 계획) 266,039백만원, 66,851백만원 감액

- (요구) AI 융복합 과정 신설(56,400명, 훈련비 NCS 단가 110% 적용)
- (산출)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266,039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32,890	○ 보험금(320-04) : 332,890백만원 가. 일반직종 훈련(실업자) 훈련비, 훈련장려금(273,376,000천원) · (348,000명 × 520천원 × 1.3) + (104,000명 × 319천원 × 1.1) + (24,000명 × 55천원 × 1.3) = 273,376,000천원 · 조정재원(△82,000천원) 나. 일반직종훈련(재직자) 훈련비, 훈련장려금(59,514,000천원) · (239,000명 × 180천원 × 1.3) + (12,000명 × 230천원 × 1.3) = 59,514,000천원	266,039	○ 보험금(320-04) : 266,039백만원 -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266,039,000천원) · 564,000명 × 472천원 = 266,208,000천원 · 조정재원(△169,000천원)

②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 (2025 당초 계획) 205,160백만원 → (2026 계획) 159,995백만원, 45,165백만원 감액

- (요구)
 - ㉠ 자부담 10% 부과
 - ㉡ '25년 실집행 추이 및 KDT 중복 직종 해소 반영하여 목표인원 감소(31,500명→25,500명)
 - ㉢ 훈련장려금 전년동(월 200천원) 및 뿌리산업직종훈련 특별훈련수당(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20만원, 인구감소지역 30만원) 반영
- (산출)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등 159,995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05,160	○ 기타보전금(310-04) : 205,160백만원 가. 훈련비, 훈련장려금(205,160천원) · (훈련비) 31,500명 × 5,479천원 = 172,588,500천원 · (훈련장려금) 31,500명 × 1,100천원 × 0.94 = 32,571,000천원 나. 조정재원(500천원)	159,995	○ 기타보전금(310-04) : 159,995백만원 가. 훈련비(125,899,000천원) · (훈련비) 25,500명 × 4,937천원 = 125,893,500천원 · (조정재원) 5,500천원 나. 훈련장려금 및 특별훈련수당(34,096,000천원) · (훈련장려금 및 특별훈련수당) 25,500명 × 1,337천원 = 34,093,500천원 · (조정재원) 2,500천원

③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 (2025 당초 계획) 64,103백만원 → (2026 계획) 82,122백만원, 18,019백만원 증액

- (요구)

㉠ 자부담 10% 부과

㉡ AI 전환 대응 과정 신설(4,000명, 단가 등 지급 요건은 육성산업직종과 동일)

㉢ 훈련장려금 인상(月 116 → 200천원) 및 육성산업직종훈련 특별훈련수당(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20만원, 인구감소지역 30만원) 반영

- (산출)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79,722백만원

운영비 2,400백만원(△200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4,103	○ 일반용역비(210-14) : 2,600백만원 · 지역별·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10개소×260,000천원 =2,600,000천원 ○ 기타보전금(310-04) : 61,503백만원 가. 훈련비, 훈련장려금(61,497,000천원) · (훈련비) 20,000명×2,654천원=53,077,000천원 · (훈련장려금, 특별훈련수당) 20,000명×421천원=8,420,000천원 나. 조정재원(6,000천원)	82,122	○ 일반용역비(210-14) : 2,400백만원 · 지역별·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10개소×240,000천원 =2,400,000천원 ○ 기타보전금(310-04) : 79,722백만원 가. 훈련비(63,574,000천원) · (훈련비) 24,000명×2,649천원=63,576,000천원 · (조정재원) △2,000천원 나. 훈련장려금 및 특별훈련수당(16,148,000천원) · (훈련장려금 및 특별훈련수당) 24,000명×673천원=16,152,000천원 · (조정재원) △4,000천원

④ 운영비

: (2025 당초 계획) 1,045백만원 → (2026 계획) 823백만원, 222백만원 감액

- (요구) 정책연구비 예산 감액(250→28백만원) 반영, 국내여비,사업추진비 등 일부 세목 예산 조정

- (산출) 운영비 823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45	○ 일반수용비(210-01) : 460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65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28백만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46백만원 ○ 정책연구비(260-02) : 250백만원 ○ 공사비(420-03) : 96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100백만원	823	○ 일반수용비(210-01) : 466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62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27백만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44백만원 ○ 정책연구비(260-02) : 28백만원 ○ 공사비(420-03) : 96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1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추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K-Digital Training 수료율 (단위: %)	목표	88.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89.7	-	-	-	-			
	달성도	101.9	-	-	-	-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수 (단위: 명)	목표	130,0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132,005	-	-	-	-			
	달성도	101.5	-	-	-	-			
K-Digital Training 취업률 (단위: %)	목표	(신규)	68.2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	57.5	-	-	-			
	달성도	-	84.3	-	-	-			
폴리텍 하이테크과정 취업률 (단위: %)	목표	73.0	80.3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81.7	80.1	-	-	-			
	달성도	111.9	99.8	-	-	-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수료율 (단위: %)	목표	(신규)	78.2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	78.6	-	-	-			
	달성도	-	99.7	-	-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인원 (단위: 명)	목표	(신규)	(신규)	786,000	690,258	(삭제)	-	-	-
	실적	-	-	664,955	-	-			
	달성도	-	-	84.5	-	-			
훈련 양성률 (단위: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89.3	최근 3년 실적 평균치* * (22) 88.8 (23) 89.7 (24) 89.5	$\frac{(\text{내일배움카드 수료 인원} / \text{훈련실시인원}) \times 0.8 (\text{가중치}) + (\text{폴리텍 훈련 수료 인원} / \text{훈련실시인원}) \times 0.2 (\text{가중치})}{1}$	전수조사 (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폴리텍대학)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실시인원 869,944명, 829,591백만원 지원
2023	실시인원 804,936명, 655,434백만원 지원
2024	실시인원 645,858명, 571,022백만원 지원
2025	실시인원 568,329명(2025.11월말 기준), 553,372백만원 지원(2025.12월말 기준 잠정)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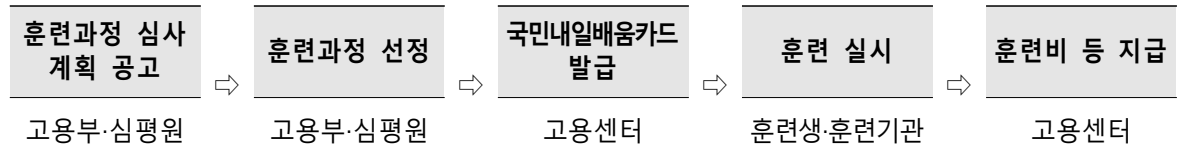
- 산업구조,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이·전직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업훈련 수요에 반영하고 다양한 훈련과정을 공급하여 국민의 고용안정과 노동이동,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 등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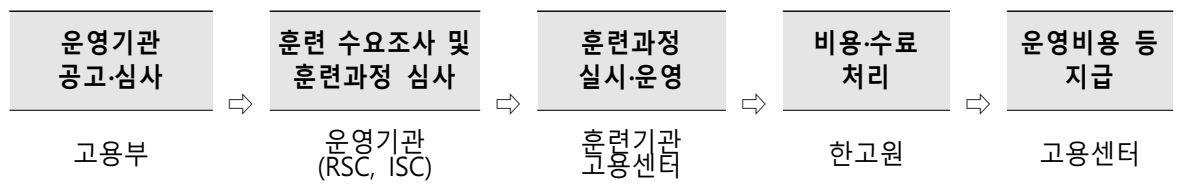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일반직종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은 지역 현장에 맞는 훈련과정 공급 및 우수사례 공유 등 사업 집행 개선방안 마련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후 환류체계를 마련할 것(예결위, '22년 결산)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의 적정 목표 설정 및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예결위, '23년 결산)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의 물류직종 직업훈련 현장실습장 관리·감독 방안 마련 필요(국정감사, '23년)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과 KDT 사업 간 중복해소 방안 마련하여 효율적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예결위, '24년 결산)

2) 대외공개 평가: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798,296	40,000	838,296	838,426	755,679	90.1	90.1	76	82,670
2023	887,312	-	887,312	887,388	655,434	73.9	73.9	32	231,922
2024	734,204	△12,862	721,342	721,374	571,022	79.2	79.2	-	150,352
2025	603,198	-	603,198	603,198	553,372	91.7	91.7	37	49,78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월) 용역계약이 익년도 종료되어 일반연구비 76백만원 이월 - (불용)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은 '22년 신규사업으로 지역현장에 맞는 훈련과정을 신설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보니 훈련수요 선별 등 훈련과정 기반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체됨
2023	- (이월) 용역계약이 익년도 종료되어 일반연구비 32백만원 이월 - (불용) 훈련기간이 장기과정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참여 저조로 인한 불용 발생
2024	- (불용) 훈련기간이 장기과정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참여 저조로 인한 불용 발생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13)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1152-3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52	350
명칭	직업능력개발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일반훈련	소관부처	실·국·과(팀) 직업능력정책국 기업훈련지원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현장맞춤형 체계적훈련	소관부처	실·국·과(팀) 직업능력정책국 기업훈련지원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인력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사업주직업 훈련지원금	368,023	300,670	300,670	249,668	249,668	△51,002	△17.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369,690	369,690	368,023	-	1,667	300,670	300,670	300,670	292,423	-	8,247	249,668
· 일반훈련	321,584	321,584	321,253	-	331	195,424	211,351	211,351	206,861	-	4,490	210,237
· 혁신형 기업훈련	-	-	-	-	-	51,867	38,867	38,867	35,534	-	3,333	-
· 현장맞춤형체계적훈련	27,271	27,271	26,185	-	1,086	32,706	29,279	29,279	29,055	-	224	35,899
· 지역산업맞춤형훈련	19,203	19,203	19,203	-	-	19,041	19,541	19,541	19,446	-	95	-
· 운영비	1,632	1,632	1,382	-	250	1,632	1,632	1,632	1,527	-	105	3,53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
- (일반훈련)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기업 규모별로 훈련에 소요된 비용 지원
 - * 기업훈련 절차 및 지원체계 개선으로 기업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최신 온라인 훈련 제공 등 양질의 기업훈련을 지원
- (현장맞춤형체계적훈련) 중소기업 훈련컨설팅(능력개발전담주치의, 중소기업AI훈련확산 센터 등)을 통한 기업 맞춤형 훈련프로그램 개발·실시 지원, 민간주치의 육성, 행정 지원 등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직무훈련 지원 서비스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보험법 제27조,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고시)

② 추진경위

- '95.7.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근거 마련
- '05.7. 사업주 수요가 많은 단기훈련 지원 확대(3일 20시간 이상→중소기업 1일 8시간 이상, 대기업 2일 16시간 이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
- '17.12.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 설치, 중소기업 고숙련·신기술훈련(고급훈련) 지원

- 확대(NCS 100% → 300%), 중소기업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 근거 등 규정 등 신설
- '19.1. 공통법정훈련(개인정보보호, 성희롱예방교육 등) 지원 중단, 법정직무훈련 지원을 인하, 과다 공급과정 지원을 인하 등 재정 효율화 시행
 - '19.9.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을 혼합하여 훈련 시 지원금 지급기준(집체훈련 수료인원이 전체 훈련실시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지원) 등 신설
 - '22.1. 최소훈련시간 단축(중소기업 1일 8시간 이상, 대기업 2일 16시간 이상→기업규모와 관계 없이 4시간 이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
 - '22.下. 기업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으로 3대 혁신 사업(기업직업훈련카드,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및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운영 시범 도입
 - '25.1. 기업의 실제 훈련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는 줄이고, 훈련품질은 높인 '혁신형 기업훈련(기업훈련 탄력운영제, 중소기업 근로자주도 훈련, 최신원격훈련)'을 신규 도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74,429백만원	303,030백만원	356,828백만원	300,670백만원	249,668백만원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 수혜자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현장맞춤형 체계적훈련	보조	한국산업 인력공단	4,230백만원	100.0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고시) 제3조 3항, 제11조
	출연	한국산업 인력공단	5,139백만원	10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25) 300,670 → ('26) 249,668백만원 <△51,002백만원, 17.0% 감>

- 기업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훈련서비스 공급과 중소기업 AI훈련 지원확대 등을 통한 기업 직업훈련 활성화 필요, (국정과제92)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 전환
- * 컨소시엄공동훈련센터에서 실시하는 훈련비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으로 이관(631억)

(1) 일반훈련: ('25) 195,424 → ('26) 210,237백만원 <14,813백만원, 7.6% 증>

① 일반직무훈련: 129,973백만원

- (요구) 재직근로자 등의 훈련을 위해 자체위탁 및 집체원격훈련 방식의 일반직무훈련을 지원
- (산출내역) 916,435명×121,870원 + 248,195명×73,680원 <△12,819백만원 >
- ↳ 기업의 자체훈련 활성화를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탄력운영제를 내역이동하여 편성

② 유급휴가훈련: 15,864백만원

- (요구)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고 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여 숙련인력 양성지원 필요
- (산출내역) 11,453명×1,385,140원 <△12,968백만원 >

③ 중소기업재직근로자 지원: 42,420백만원

- (요구)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기업훈련 여건 및 수요에 맞게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훈련비 지원을 강화한 동 사업 확대
- * AI분야(기초과정 및 융합과정 등) 및 비수도권 우대
- (산출내역) 1만개소×1,160천원 + 1만개소×1,732천원 + 10만명×135천원 <+30,820백만원 >

④ 최신원격훈련: 21,980백만원

- (요구) 훈련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훈련기관(민간혁신기관, 대기업)이 보유한 고품질 원격 훈련 콘텐츠를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
- (산출내역) 157,000명×140천원 <전년 동>

(2) 현장맞춤형 체계적훈련: ('25) 32,706 → ('26) 35,899백만원 <3,193백만원, 9.8% 증>

① 체계적현장훈련: 16,100백만원

- (요구) 기업 현장의 개선과제를 문제해결 방식으로 구성하여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실무중심의 문제 해결 훈련을 통해 직무역량 개발지원
- (산출내역) 2,300개소×7백만원 <전년 동>

② 능력개발전담주치의: 5,730백만원

- (요구) 기업DB를 활용하여 AI 훈련이 미흡한 기업을 발굴하고, 훈련에 시간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 찾아가는 훈련 컨설팅 확대를 위해 관련 운영비 증액

- (산출내역) 운영비 (20개소×204.7백만원 + 12개소×113백만원) + 기업진단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280백만원 <+1,355백만원>
↳ 능력개발전담주치의 확대(20→32개소, 추가 12개소는 기존 20개 부서 운영 단가의 55% 산정)

③ 중소기업AI훈련확산센터: 8,930백만원

- (요구) 중소기업의 AI 훈련 확산을 위해 지역별 전문기관 선정 → AI분야 등 역량있는 전문인력을 민간주치의로 선발·육성하여 중소기업 AI역량진단·훈련체계 수립 및 AI+PBL훈련과정 개발 지원
- (산출내역) 10개센터×273백만원 + 2천개소×750천원 + 600개소×7,830천원 <+7,565백만원>
* 기존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를 '중소기업AI훈련확산센터'로 명칭 변경, 확대(5→10)개소·개편

④ 기업인적자원개발인증: 739백만원

- (요구)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우수기관에 대해 인증 수여 및 각종 혜택(감독 면제, 가점 부여 등) 제공 유지
- (산출내역) 123개소×6,010천원 <전년 동>

⑤ 산업현장교수지원: 4,400백만원

- (요구) 기술애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업무 노하우 및 기술 전수를 통한 기술 경쟁력 향상제고
- (산출내역) 1천개소×4,400천원 <△1,500백만원>
↳ 기업별 총 지원시간을 40시간 내외로 축소

(3) 운영비 : ('25) 1,632 → ('26) 3,532백만원 <1,900백만원, 116.4% 증>

- (요구) 사업주훈련 성과관리, 사업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등 운영비, 사업주훈련 업무 프로세스(과정 적정성 심사, 비용 지급 등)에 AI 도입
- (산출내역) 1,632백만원(사업운영비) + 1,900백만원(1식 x 시스템개발비 1,540백만원 + 1식 x 하드웨어 비용 360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00,670	○ 보험금(320-04) : 286,659백만원 가. 일반훈련(195,424백만원) · 일반직무훈련 673,106명 × 123천원 + 5만명 × 1,200천원 = 142,792백만원 · 장기유급휴가훈련 8,000명 × 3,604천원 = 28,832백만원 · 기업직업훈련카드 1만개소 × 2,380천원 = 23,800백만원 나. 혁신형 기업훈련(51,867백만원) · 탄력운영제 153,672명 × 119천원 = 18,287백만원 · 중소기업재직근로자지원 1만개소 × 1,160천원 = 11,600백만원 · 최신원격훈련 157,000명 × 140천원 = 21,980백만원 다. 현장맞춤형체계적훈련(20,327백만원) · 체계적현장훈련 2,300개소 × 7백만원 = 16,100백만원 · 빈일자리재직청년기술연수: 650명 × 6,503천원 =	249,668	○ 보험금(320-04) : 231,037백만원 가. 일반훈련(210,237백만원) · 일반직무훈련 916,435명×121,870원 + 248,195명×73,680원 = 129,973백만원 · 유급휴가훈련 11,453명×1,385,140원 = 15,864백만원 · 중소기업재직근로자지원: 1만개소×1,160천원 + 1만개소 ×1,732천원 + 10만명×135천원 = 42,420백만원 · 최신원격훈련 157,000명 × 140천원 = 21,980백만원 나. 현장맞춤형체계적훈련(20,800백만원) · 체계적현장훈련 2,300개소 × 7백만원 = 16,100백만원 · 중소기업AI훈련확산센터: 600개소 × 7,830천원 = 4,700백만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227백만원 라. 지역·산업맞춤형훈련(19,041백만원) · 지역·산업맞춤형: 45,336명 × 420천원 = 19,041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1,365백만원 가. 현장맞춤형체계적훈련(1,365백만원) ·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 5개소 × 273백만원 = 1,365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6,007백만원 가. 운영비(1,632백만원) · 운영비(1,005백만원) + 직업훈련성과관리(627백만원) 나. 현장맞춤형체계적훈련(4,375백만원) · 능력개발전문주치의: 20개소 × 204.7백만원 + 280백만원 = 4,375백만원 ○ 출연금(350-02) : 6,639백만원 가. 기업인적자원개발인증: 123개소 × 6,010천원 = 739백만원 나. 산업현장교수지원: 1천개소 × 5,900천원 = 5,900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4,230백만원 가. 현장맞춤형체계적훈련(4,230백만원) · 중소기업시훈련확산센터: 10개센터×273백만원 + 2천개소 × 750천원 = 4,230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9,262백만원 가. 운영비(3,532백만원) · 운영비 등(1,632백만원) + 훈련과정심사 시스템도입 (1,900백만원) = 3,532백만원 나. 현장맞춤형체계적훈련(5,730백만원) · 능력개발전문주치의: 20개소×204.7백만원 + 12개소×113백만원 + 280백만원 = 5,730백만원 ○ 출연금(350-02) : 5,139백만원 가. 기업인적자원개발인증: 123개소 × 6,010천원 = 739백만원 나. 산업현장교수지원: 1천개소 × 4,400천원 = 4,4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추정산식 (또는 추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K-Digital Training 수료율 (단위: %)	목표	88.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89.7	-	-	-	-			
	달성도	101.9	-	-	-	-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수 (단위: 명)	목표	130,0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132,005	-	-	-	-			
	달성도	101.5	-	-	-	-			
K-Digital Training 취업률 (단위: %)	목표	(신규)	68.2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	57.5	-	-	-			
	달성도	-	84.3	-	-	-			
폴리텍 하이테크과정 취업률 (단위: %)	목표	73.0	80.3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81.7	80.1	-	-	-			
	달성도	111.9	99.8	-	-	-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수료율 (단위: %)	목표	(신규)	78.2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	78.6	-	-	-			
	달성도	-	99.7	-	-	-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인원 (단위: 명)	목표	(신규)	(신규)	786,000	690,258	(삭제)	-	-	-
	실적	-	-	664,955	-	-			
	달성도	-	-	84.5	-	-			
훈련 양성률 (단위: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89.3	최근 3년 실적 평균치* * (22) 88.8 (23) 89.7 (24) 89.5	$\frac{\text{내일배움카드 수료 인원}}{\text{훈련실시인원}} \times 0.8 (\text{가중치})$ $+ \frac{\text{폴리텍 훈련 수료 인원}}{\text{훈련실시인원}} \times 0.2 (\text{가중치})$	전수조사 (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폴리텍대학)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훈련 실시) 2,890천명, (지원 금액) 303,279백만원
2023	(훈련 실시) 2,764천명, (지원 금액) 398,366백만원
2024	(훈련 실시) 2,148천명, (지원 금액) 368,023백만원
2025	(훈련 실시) 1,896천명, (지원 금액) 292,423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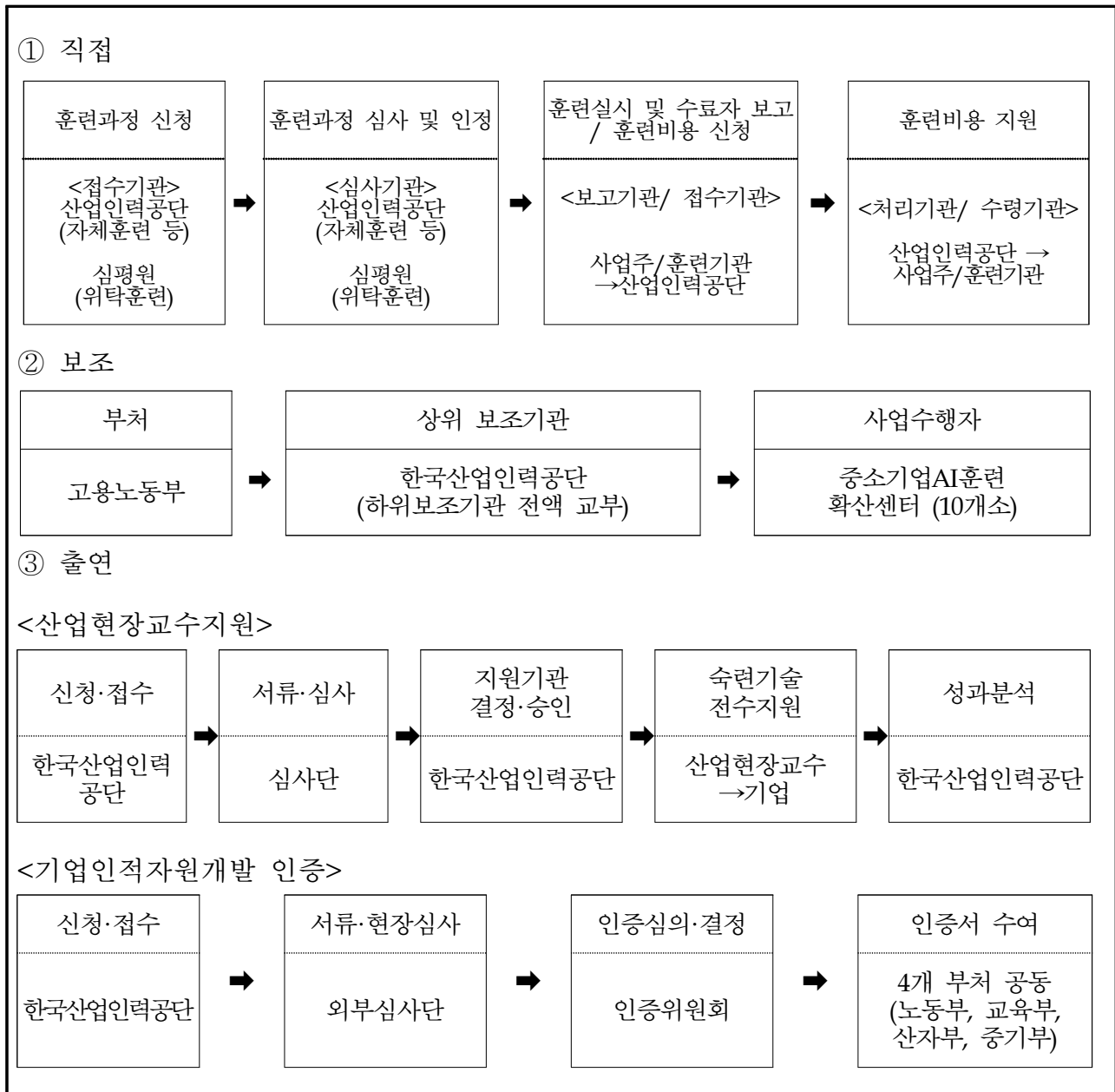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4차 산업혁명, 디지털전환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맞춤형 훈련지원 강화 및 기업의 훈련자율성 강화를 통한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및 기업경쟁력 제고
- AI 활용역량이 기업의 경쟁력이 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그 필요성은 알면서도 인력부족 및 당면한 현업 등으로 개별기업 대응에 한계 ⇒ 중소기업의 AI훈련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필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외국인력(E-9) 특화훈련의 현실적인 목표인원 설정 및 집행 제고 방안 마련 필요 (환노위, 24결산)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 없음
- 3) 자체평가: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274,429	29,288	303,717	303,717	303,279	99.9	99.9	-	438
2023	303,030	98,375	401,405	401,405	398,365	99.2	99.2	-	3,040
2024	356,828	12,862	369,690	369,690	368,023	99.5	99.5	-	1,667
2025	300,670	-	300,670	300,670	292,423	97.3	97.3	-	8,24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훈련 참여인원 증가 등에 따른 계획변경 +29,288백만원 * 불용사유: 훈련비 잔액(99.9% 집행)
2023	- 훈련 참여인원 증가 등에 따른 계획변경 +98,375백만원 * ①(보험금) 체계적현장훈련의 훈련비 잔액(高 단가의 신기술특화훈련 참여 비중이 낮음) 발생, ②(일반용역비)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컨설팅 체계 개편이 다소 늦어져 집행 부진
2024	- 훈련 참여인원 증가 등에 따른 계획변경 +12,862백만원 * ①(보험금) 체계적현장훈련 과정개발비 절감(‘표준개발(AI) 추천’ 활용)으로 잔액 발생, ②(일반용역비)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컨설팅 지원금 및 일반운영비 잔액 발생
2025	- 불용사유: 훈련비 잔액(97.3% 집행)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14)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1153-3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53	350
명칭	직업능력개발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8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직업능력정책국
	사업시행주체	기업훈련지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 시엄지원	124,802	119,225	129,325	197,240	192,240	73,015	61.2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25,000	125,000	124,802	-	-	119,225	129,325	129,325	129,325	-	-	192,240
· 산업맞춤형	71,000	71,000	71,000	-	-	71,225	71,225	71,225	71,225	-	-	154,840
· 하이테크형	40,000	40,000	40,000	-	-	34,000	38,000	38,000	38,000	-	-	35,600
·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12,200	12,200	12,200	-	-	12,200	18,300	18,300	18,300	-	-	내역이관
· 일반용역비	1,800	1,800	1,602	-	-	1,800	1,800	1,800	1,800	-	-	1,8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대기업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 자체 훈련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여 대·중소 상생의 직업훈련 생태계 조성

유형	내용
산업맞춤형	- 공동훈련센터: 대기업, 협·단체가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협약체결)하여 중소기업의 훈련 수요조사를 통해 공통의 훈련과정을 개발, 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인프라(시설·장비 등) 비용을 공동훈련센터에 지원 -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대기업이 자사 근로자를 위해 개발한 우수 훈련프로그램을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에 제공하는 모듈형 훈련프로그램을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로 인정하여 훈련비, 운영비 등 지원
하이테크형	- K-하이테크 플랫폼: 디지털 및 첨단분야 직무훈련 제공 및 인프라 공유·개방 -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전환 훈련, 경력재설계 등 서비스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보험법」 제31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6. 사업주, 사업주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② 추진경위

- 2000. 4월 “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재경부, 노동부 등)
- 2000.12월 “직업능력개발 3개년 계획”의 주요과제로 선정
※ 노동연구원 등의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방안으로 “훈련컨소시엄 제안”
- 2001. 2월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계획” 수립 및 6개 시범 훈련기관 선정('01.6월)
- 2010. 11월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으로 확대·개편
※ 수요자 중심 재정지원 일자리 효율화 방안(국무회의, '10.7.6.)에 따라, 정부 각 부처에서 산재되어 수행하는 인력양성사업을 '11년부터 인력양성 전문부처인 고용노동부로 통합·운영
- 2019. 12월 미래유망분야 맞춤형훈련, 산업계주도 청년 맞춤형훈련 신설
- 2021. 1월 거점형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K-Digital Platform)’ 신규 추진
- 2022. 1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신규 추진
- 2023. 3월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조선사 대상 시범사업 운영
- 2023. 4월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 추진
- 2024. 1월 컨소시엄 유형통합(8개→2개) 및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1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1,882	144,521	125,000	129,325	192,24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
- 사업 수혜자 : 고용보험 가입 중소기업 사업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산업맞춤형	보조	포스코 등 20여개소	154,840백만원	· 훈련시설·장비비 및 인건비(80%) · 운영비 및 프로그램개발비(100%)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하이테크형	보조	삼성전자 등 83개소	35,600백만원	100%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산출근거

① 산업맞춤형: ('25) 71,225 → ('26) 154,840백만원, +117.4%

- (요구) 타 사업에서 지출하던 훈련비 이관 및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한 특화 공동훈련센터 운영 등으로 '25년 대비 +117.4% 증액 요구
- (산출) ❶ 공동훈련센터 57,285백만원

* 공동훈련센터 운영비: 기존 195개소 × 242백만원 = 47,285백만원

↳ 전략형 공동훈련센터(67개소)의 훈련비를 이관 → ('25년) 692억 → ('26) 473억(△219억)

*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20개소 × 500백만원 = 10,000백만원

❷ E-9 특화훈련 2,000백만원(전년동)

* 10개소 × 200백만원

❸ 훈련비 : 95,555백만원(순증)

* 공동훈련센터 훈련비: 232,599명 × 365,675원 = 85,055백만원(순증)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에서 지출한 훈련비 이관(631억) + ❶ 전략형 훈련비(219억)

*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훈련비: 150개 × 70백만원 = 10,500백만원

↳ 편성 비목 변경(보조금 → 보험금) 및 단가 현실화 등

② 하이테크형: ('25) 38,000 → ('26) 35,600백만원, △6.3%

- (산출) ❶ K-하이테크 플랫폼: 기존 48개소 × 400백만원 = 19,200백만원
- ❷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 기존 35개소 × 400백만원 + 신규 3개소 × 800백만원 = 16,400백만원

- ③ 일반용역비: ('25) 1,800→ ('26) 1,800백만원, 전년동
- (산출) 1식× 1,800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9,325	○ 민간경상보조(320-01) : 129,325백만원 가. 산업맞춤형 : 71,225백만원 - 공동훈련센터 : 69,225백만원 = 195개 × 355백만원 - 비전문외국인력(E-9) 특화훈련 : 2,000백만원 = 10개 × 200백만원 나. 하이테크형 : 38,000백만원 - K-하이테크 플랫폼 : 20,000백만원 = 기존 50개소 × 400백만원 -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 18,000백만원 * (본예산) 기존 25개소 × 400백만 + 신규 5개소 × 800백만 * (2회 추경) 신규 5개소 × 800백만원 = 4,000백만원 나.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 18,300백만원 * (본예산) 100개 프로그램 × 122백만원 * (2회 추경) 50개 프로그램 × 122백만원 = 6,100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1,800백만원 가. 일반용역비: 1,800백만원 1식 × 1,800백만원 = 1,800백만원	192,240	○ 보험금(320-04) : 95,555백만원 가. 공동훈련센터 : 85,055백만원 - 훈련비 232,599명 × 365,675원 나.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훈련비 : 10,500백만원 150개 프로그램 × 70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94,885백만원 가. 산업맞춤형 : 59,285백만원 - 공동훈련센터 : 47,285백만원 = 195개 × 242백만원 - 비전문외국인력(E-9) 특화훈련 : 2,000백만원 = 10개 × 200백만원 -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10,000백만원 = 20개 × 500백만원 나. 하이테크형 : 35,600백만원 - K-하이테크 플랫폼 : 19,200백만원 = 기존 48개소 × 400백만원 -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 16,400백만원 = 기존 35개소 × 400백만원 + 신규 3개소 × 800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1,800백만원 1식 × 1,800백만원 = 1,8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추정산식 (또는 추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K-Digital Training 수료율 (단위: %)	목표	88.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89.7	-	-	-	-			
	달성도	101.9	-	-	-	-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수 (단위: 명)	목표	130,0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132,005	-	-	-	-			
	달성도	101.5	-	-	-	-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K-Digital Training 취업률 (단위: %)	목표	(신규)	68.2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	57.5	-	-	-			
	달성도	-	84.3	-	-	-			
폴리텍 하이테크과정 취업률 (단위: %)	목표	73.0	80.3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81.7	80.1	-	-	-			
	달성도	111.9	99.8	-	-	-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수료율 (단위: %)	목표	(신규)	78.2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	78.6	-	-	-			
	달성도	-	99.7	-	-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인원 (단위: 명)	목표	(신규)	(신규)	786,000	690,258	(삭제)	-	-	-
	실적	-	-	664,955	-	-			
	달성도	-	-	84.5	-	-			
훈련 양성률 (단위: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89.3	최근 3년 실적 평균치* * (22) 88.8 (23) 89.7 (24) 89.5	$\frac{\text{내일배움카드 수료 인원}}{\text{훈련실사인원}} \times 0.8(\text{가중치})$ $+ \frac{\text{폴리텍 훈련 수료 인원}}{\text{훈련실사인원}} \times 0.2(\text{가중치})$	전수조사 (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폴리텍대학)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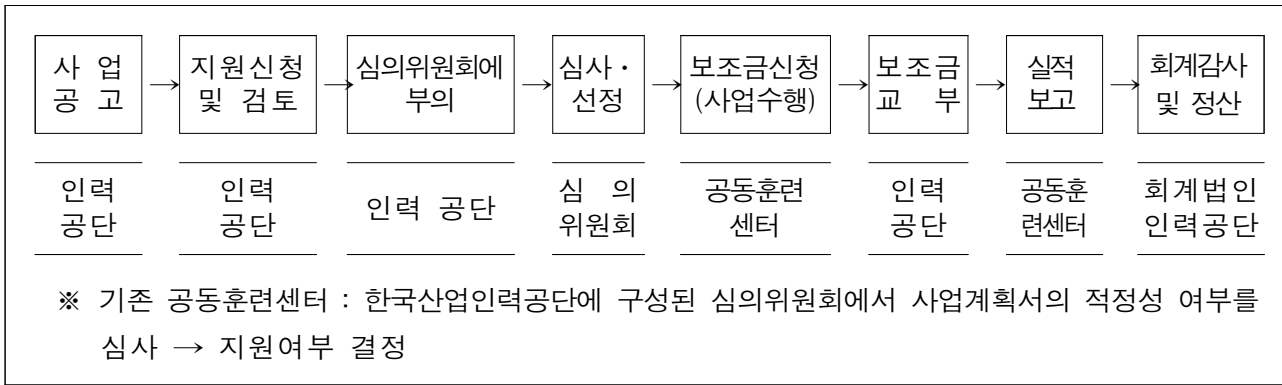
2022	- 254개 공동훈련센터, 212,368명 훈련실시
2023	- 270개 공동훈련센터, 239,285명 훈련실시
2024	- 290개 공동훈련센터, 254,729명 훈련실시
2025	- 320개 공동훈련센터, 272,422명 훈련실시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저탄소, AI 대전환 등 급속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대기업의 우수 훈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역량 강화 지원 → 대중소 기업 훈련 격차 완화 및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31,882		131,882	131,882	131,650	99.8	99.8	-	232
2023	144,521		144,521	144,521	144,287	99.8	99.8	-	234
2024	125,000		125,000	125,000	124,802	99.8	99.8	-	198
2025	119,225	10,100	129,325	129,325	129,325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내역간 사업비 조정) 전략분야 인력양성 지원 지출증가에 따라, 일부불용액이 예상되는 미래유망분야 맞춤형훈련 예산 조정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집행 부진) ①K-하이테크플랫폼 사업개편에 따른 신규기관 선정 지연, ②'24년 신규추진한 시범사업인 대중소상생 아카데미의 하반기 선정프로그램의 경우 훈련생 모집 등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필요한 기간 부족으로 집행실적 저조
2025	- (계획 변경) '25. 7. 4. +10,100백만원 2차 추경안 국회 통과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국회의결 (7.4.)	하이테크형	320	01	4,000	○ 산업전환 공동훈련 지원 확대를 위한 신규 기관(5개소) 선정 추경예산 편성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320	01	6,100	○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신규 프로그램 (50개) 선정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합 계				10,100	

사 업 명						
(15)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1154-35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54	356
명칭	직업능력개발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사업지원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산업현장 일학습병행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직업능력정책국
	사업시행주체	기업훈련지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	301,547	276,632	276,632	267,952	267,952	△ 8,680	△ 3.1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311,632	311,632	301,547	-	10,085	276,632	276,632	276,632	275,522	-	-	267,952
· 일학습병행 운영지원	80,684	80,684	80,684	-	-	70,159	73,159	73,159	73,159	-	-	70,159
·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76,955	76,955	76,955	-	-	73,346	67,246	67,246	66,542	-	-	68,516
· 일학습병행 훈련비	141,593	141,593	137,008	-	4,585	133,127	136,227	136,227	135,821	-	-	129,277
·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12,400	12,400	6,900	-	5,500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기업이 청년 등을 先 채용 후 현장훈련(OJT)과 이론교육(Off-JT)을 통해 현장 맞춤형 인재로 양성
 - (일학습병행 운영·지원) 훈련과정 인정 실시 등 인정체계 운영, 산업계 일학습병행 지원기관 등 육성, 기업별 전담인력(기업현장교사, HRD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 교육 및 수당 지원
 -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훈련장비가 부족하거나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Off-JT 훈련성과 제고를 위해 공동훈련센터의 운영비 및 시설·장비비 지원
 - (일학습병행훈련비) 기업의 안정적인 일학습병행 훈련을 위한 현장훈련(OJT) 및 이론교육(Off-JT) 비용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20.8.28 시행)
- ② 추진경위
 - 「한국형 듀얼시스템 도입방안」 세부계획 확정("13.9월. 경제관계장관회의)
 - 「성과제고를 위한 일학습병행제 확산 방안」 마련("14.9월. 국가정책조정회의)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9.8.27) → 시행("20.8.28.)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4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86,608	299,232	311,632	276,632	267,95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출연 등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 수혜자 :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일학습병행 운영지원	출연	한국산업 인력공단	70,159	1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보조	고교·대학 등 208개 기관	68,516	80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34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일학습병행 운영지원(출연금)

- (2025 당초 계획 70,159백만원 → 기금운용계획변경 73,159백만원)
: ('25 기금변경) 73,159백만원, → ('26계획) 70,159백만원, △4.3%
- (요구) 25년 계획 기준 훈련 물량 유지
 - (산출) 신규기업 700개, 일학습병행 훈련 실시 기업 6,690개소 기준

②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보조금)

- (2025 당초 계획 73,346백만원 → 기금운용계획변경 67,246백만원)
: ('25 기금변경) 67,246백만원 → ('26계획) 68,516백만원, 9.1%
- (요구) 채용연계형 직업훈련 강화를 위해 先취업-後학습 중심으로 일학습병행을 운영 개편
 - (산출)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고교-산학일체형 도제학교) 21,996백만원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고교 제외) 46,520백만원

③ 일학습병행 훈련비(보험금)

- (2025 당초 계획 133,127백만원 → 기금운용계획변경 136,227백만원)
: ('25 기금변경) 136,227백만원 → ('26계획) 129,277백만원, △2.3%
- (요구) 채용연계형 직업훈련 강화를 위해 先취업-後학습 중심으로 훈련물량 조정
 - (산출) 일학습병행 훈련 28,728명 실시 기준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수정)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76,632	○ 출연금(350-02) : 73,159백만원 + (기금변경) 신규 700개-1,100개 기업(+3,000백만원) 가.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신규1,100개×3.89백만 = 4,279백만 나. 기업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 수당: 6,690기업×0.875백만×8개월 = 46,830백만 다. 학습도구 개발 지원: 신규1,100개×2백만+AR·VR 1,000백만 = 3,200백만원 라. 전담인력 양성교육: 신규1,100개×0.8백만+보수 6,690기업×0.39백만 = 3,490백만원 마. 기업 선정 및 훈련과정 인정: 신규 700기업×1백만 = 700백만원 바. 일학습병행지원기관 육성 및 성과관리: 12개소×385백만원+성과평가 1,810백만원=6,430백만원 사. 현장훈련 모니터링: 6,690기업×0.7백만×85% = 3,980백만원	267,952	○ 출연금(350-02) : 70,159백만원 가.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신규700개×3.89백만 = 2,723백만 나. 기업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 수당: 6,690기업×0.875백만×8개월 = 46,830백만 다. 학습도구 개발 지원: 신규700기업×2백만+AR·VR 1,000백만 = 2,400백만원 라. 전담인력 양성교육: 신규700기업×0.8백만+보수 4,680기업×0.39백만 = 2,385백만원 마. 기업 선정 및 훈련과정 인정: 신규 700기업×1백만 = 700백만원 바. 일학습병행지원기관 육성 및 성과관리: 12개소×385백만원+성과평가 1,810백만원=6,430백만원

2025년 계획(수정)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아. 사업안내: 1식 × 400백만 = 400백만원 자. 평가기준(보완) 개발: 6종목×7.2백만+보완100종목×3.6백만= 403백만원 차. 외부평가 문제출제: 150종목×12백만 = 1,800백만원 카. 평가체계 운영: 6,690기업×70%×0.45백만= 2,107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67,246백만원 <u>+ (71금변경) 외국인유학생 일학습병행 20개소(개소당 345백만원) → 5개소(개소당 160백만원)△610백만원</u> 가. 고교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 78개 사업단 × 282백만원 = 21,996백만원 나.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고교 제외): 135개 기관 × 270백만원 (통합 단가) = 36,450백만원 다. 일학습병행 첨단산업 아카데미: 19개소 × 400백만원 + 첨단 장비·시설 지원 × 400백만원 라. 외국인유학생 일학습병행: 5개소×160백만원= 800백만원 ○ 보험금(320-04) : 136,227백만원 <u>+ (71금변경) 훈련인원 22만명 → 30만명(+3100백만원)</u> · 일학습병행 훈련비: 일학습병행 훈련인원 약 30,273명 × 4.5 백만원('24년 평균훈련단가) = 136,277백만원		사. 현장훈련 모니터링: 6,690기업×0.7백만×85%= 3,981백만원 아. 사업안내: 1식 × 400백만= 400백만원 자. 평가기준(보완) 개발: 6종목×7.2백만+보완100종목×3.6백만= 403백만원 차. 외부평가 문제출제: 150종목×12백만 = 1,800백만원 카. 평가체계 운영: 6,690기업×70%×0.45백만= 2,107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68,516백만원 가. 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고교-산학일체형 도제학교): 78개 사업단 × 282백만원 = 21,996백만원 나.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고교제외) 약 172개 공동훈련센터 × 270백만원 = 46,520백만원 ○ 보험금(320-04) : 129,277백만원 · 일학습병행 훈련비: 일학습병행 훈련인원 약 28,728명 × 4.5 백만원('24년 평균훈련단가) = 129,27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추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K-Digital Training 수료율 (단위: %)	목표	88.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89.7	-	-	-	-			
	달성도	101.9	-	-	-	-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수 (단위: 명)	목표	130,0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132,005	-	-	-	-			
	달성도	101.5	-	-	-	-			
K-Digital Training 취업률 (단위: %)	목표	(신규)	68.2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	57.5	-	-	-			
	달성도	-	84.3	-	-	-			
폴리텍 하이테크과정 취업률 (단위: %)	목표	73.0	80.3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81.7	80.1	-	-	-			
	달성도	111.9	99.8	-	-	-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수료율 (단위: %)	목표	(신규)	78.2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	78.6	-	-	-			
	달성도	-	99.7	-	-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인원 (단위: 명)	목표	(신규)	(신규)	786,000	690,258	(삭제)	-	-	-
	실적	-	-	664,955	-	-			
	달성도	-	-	84.5	-	-			
훈련 양성률 (단위: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89.3	최근 3년 실적 평균치* * (22) 88.8 (23) 89.7 (24) 89.5	(내일배움카드 수료 인원/훈련실사인원) × 0.8(가중치) + (폴리텍 훈련 수료 인원/훈련실사인원) × 0.2(가중치)	전수조사 (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폴리텍대학)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참여기업 19,165개, 학습근로자수 131,737명
2023	· 참여기업 20,412개, 학습근로자수 145,302명
2024	· 참여기업 21,535개, 학습근로자수 158,219명
2025	· 참여기업 22,500개, 학습근로자수 169,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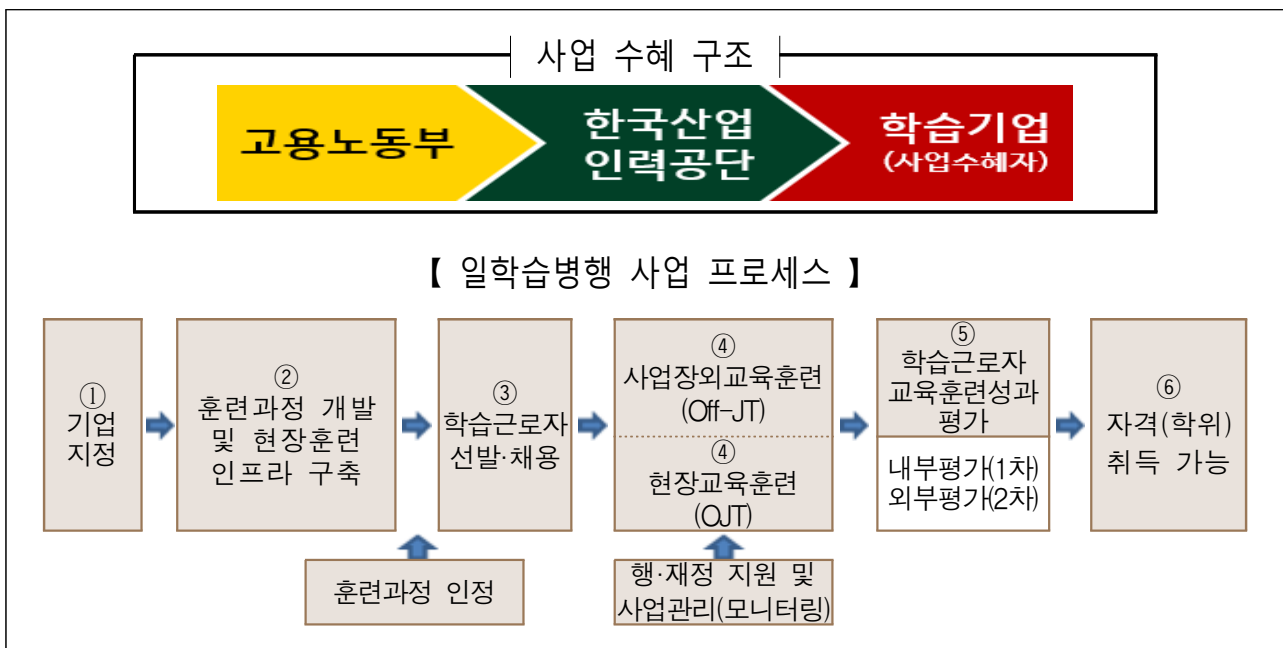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기업·산업계가 현장에 맞는 인력을 직접 양성함으로써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결, 청년 조기취업, 청년 고용률 제고

-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불요한 재교육 비용 절약
- 장기간 현장훈련을 통해 훈련생의 기업 적응력을 높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함으로써 기업 핵심인재로 육성
- 학교, 자격, 학력, 인사 시스템 개편을 통해 능력중심사회 토대 마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학습병행 지원금 부정수급 추가 징수 규정을 상위법의 취지에 따라 개정할 것('23 회계연도 상임위)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286,608	11,393	298,001	298,001	296,831	99.6	99.6	-	1,170
2023	299,232	-	299,232	299,232	294,608	98.5	98.5	-	4,624
2024	311,632	-	311,632	311,632	301,547	96.8	96.8	-	10,085
2025	276,632	-	276,632	276,632	275,522	99.6	99.6	-	1,11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훈련비 부족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증 11,393백만원)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비자 관련 제도개편 지연 등으로 외국인 유학생 훈련 부진
2025	-기업지원 및 훈련비 부족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사업 내 변경, 증감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025.12.5.)	일학습병행운영지원	350	350-02	3,000	- 예산 감액 규모 대비 훈련인원 감소 폭이 제한적, 훈련비 등 추가 소요에 대해 운용계획 자체 변경
	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	320	320-01	△6,100	
	일학습병행훈련비	320	320-04	3,100	
합 계				-	

사 업 명						
(16)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1155-3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55	350
명칭	직업능력개발	한국폴리텍대학 능력개발사업지원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 (폴리텍)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능인력양성 및장비확충 (폴리텍)	소관부처	실·국·과(팀)
		직업능력정책국
	사업시행주체	직업능력정책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능인력양성 및 장비확충 (폴리텍)	54,678	57,689	61,961	58,694	59,778	2,089	3.6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55,226	55,226	54,678	-	548	57,689	61,961	61,961	61,611	-	350	59,778
· 전문기술과정	8,328	8,328	8,328	-	-	7,287	7,287	7,287	7,287	-	-	6,319
· 하이테크과정	10,150	10,150	10,150	-	-	12,150	12,150	12,150	12,150	-	-	12,997
· 중장년특화과정	4,932	4,932	4,932	-	-	5,532	9,189	9,189	9,189	-	-	10,556
· AX과정	-	-	-	-	-	-	-	-	-	-	-	1,500
· 여성재취업훈련	4,756	4,756	4,756	-	-	4,756	4,756	4,756	4,756	-	-	3,971
· 이주배경 구직자 직 업훈련	2,200	2,200	1,955	-	245	2,200	2,200	2,200	2,200	-	-	2,200
· 소규모사업장훈련	1,113	1,113	1,113	-	-	1,270	1,270	1,270	1,270	-	-	1,261
· 기능장과정	625	625	625	-	-	603	603	603	603	-	-	569
· 훈련장려금	4,163	4,163	3,860	-	303	4,284	4,899	4,899	4,549	-	350	4,978
· 교육훈련과정	1,544	1,544	1,544	-	-	1,488	1,488	1,488	1,488	-	-	1,488
· 교육훈련직종개발	296	296	296	-	-	-	-	-	-	-	-	-
· 교과개발및교재발간	2,419	2,419	2,419	-	-	2,419	2,419	2,419	2,419	-	-	2,419
· 신기술장비확충	11,700	11,700	11,700	-	-	11,700	11,700	11,700	11,700	-	-	11,700
· 학과신설 및 개편	3,000	3,000	3,000	-	-	4,000	4,000	4,000	4,000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능인력양성 및 장비확충(폴리텍)) 국가 기간·전략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등 차세대 고부가산업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공급 및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 (전문기술과정) 무기능·단순기능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등 취업애로계층의 기능습득 및 취업 촉진을 위해 만 15세 이상 실업자를 대상으로 기능사 수준의 직업훈련 지원
- (하이테크과정) 국가 미래산업 선도인력 양성 및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4차산업 관련 신산업·신기술 분야 고급 교육훈련과정운영
- (중장년특화과정)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4060 중장년을 대상으로 전직,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년특화 교육훈련과정운영
- (AX과정) 산업전반에 걸친 인공지능 전환에 따른 구직자·재직자 대응력 제고를 위한 가칭 폴리텍 AX과정 시범운영
- (여성재취업훈련)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한 여성 특화 교육훈련과정운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 (이주배경 구직자 직업훈련) 이주배경 학생 및 외국인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진로·직업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지원
- (기능장과정) 기능장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기능계 최고 자격인 기능장 수준의 훈련을 실시하여 산업현장의 기능과 연륜을 겸비한 중간관리자 공급
- (훈련장려금) 비학위과정 직업훈련생을 대상으로 훈련기간 동안 기초생활 유지를 위한 훈련 장려금 지원
- (소규모사업장훈련) 훈련시설이 미비하거나 훈련기관이 없는 지역 등 교육훈련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중소기업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기회 제공
- (교육훈련과정) 재학생 및 졸업(수료)생의 취업역량 강화와 취업을 제고를 위한 기업전담제 기반 취업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지원
- (교과개발및교재발간) 직업교육훈련의 질 제고를 위한 4차산업 신기술분야 융합형 교과 과정 개발 및 교재 보급 지원
- (신기술장비확충) 노후부족 및 교과과정 개편에 따른 신장비 보강을 통해 미래 산업변화 추이를 선도하는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48조(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은 기능대학 설립·경영자에게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장비구입, 학교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한 학교법인에 한정한다)에게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으며,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 및 직업훈련과정의 훈련생에 대하여 그 재학기간 중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하기 위하여 '98. 2. 5일자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으로부터 분리하여 학교법인기능대학 설립·운영

- 국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다기능기술자과정 재학생으로부터 등록금을 징수하여 예산에 편성
- 2005년 공공훈련인프라 혁신계획에 의거 '06. 3. 1일자로 공공훈련기관 운영 일원화 및 기능대학 개편(24개 기능대학, 21개 직업전문학교⇒한국폴리텍 11개 대학운영)
- 2012년 특성화 대학 체제 개편(11개→8개) 및 다습학교 개교
- 2016년 분당융합기술교육원 개원
- 2020년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개원
- 2021년 로봇캠퍼스(영천) 개원
- 2025년 전력기술교육원(나주) 개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3,887	53,132	55,226	61,961	59,778

- 기타: 전문기술과정, 하이테크과정, 중장년특화과정 등 22,000명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사업 수혜자 : 재학생, 재직근로자, 미취업자, 비진학청소년 등 사회 취업 취약 계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전문기술과정	출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6,319	100.0%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11조의2~3, 39조, 40조, 48조
하이테크과정			12,997		
중장년특화과정			10,556		
AX과정			1,500		
여성재취업훈련			3,971		
아주배경 구조자 직업훈련			2,200		
기능장과정			569		
훈련장려금			4,978		
소규모 사업장훈련			1,261		
교육훈련과정			1,488		
교과개발 및 교재발간			2,419		
산기술장비확충			11,700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가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 (2025 추경) 61,961백만원 → (2026 계획) 59,778백만원, 2,183백만원 감액 (2025 당초 계획 57,689백만원 → 제1회 추경 61,961백만원)**
- ① **전문기술과정 : (2025 당초 계획) 7,287백만원 → (2026 계획) 6,319백만원, 968백만원 감액**
 - (요구) 훈련인원 2,500명의 교육훈련비용
 * 훈련인원: ('25) 3,000명 → ('26안) 2,500명(△500명)
 ** 급식비 단가 인상 2,400원 → 2,700원 (+300원)
 - (산출) 교육훈련비 2,500명 x 2.528백만원(급식비 단가 인상 +246백만원 포함)
- ② **하이테크과정 : (2025 당초 계획) 12,150백만원 → (2026 계획) 12,997백만원, 847백만원 증액**
 - (요구) 훈련인원 2,500명의 교육훈련비용
 * 훈련인원: ('25) 2,430명 → ('26안) 2,500명(70명 ↑)
 ** 급식비 단가 인상 2,200원 → 2,700원 (+500원)
 - (산출) 교육훈련비 2,500명 x 5.199백만원(급식비 단가 인상 +847백만원 포함)
- ③ **중장년특화과정 : (2025 추경) 9,189백만원 → (2026 계획) 10,556백만원, 1,367백만원 증액 (2025 당초 계획 5,532백만원 → 제1회 추경 9,189백만원)**
 - (요구) 훈련인원 7,700명의 교육훈련비용
 * 급식비 단가 인상 2,200원 → 2,700원 (+500원)
 - (산출) 교육훈련비 7,700명 x 1.371백만원(평균)(급식비 단가 인상 + 327백만원 포함)
 * 장기과정 4,124백만원(1,500명×2.749백만원)
 ** 집중1과정 2,063백만원(1,500명×1.375백만원)
 *** 집중2과정 4,369백만원(4,700명×0.93백만원)
- ④ **AX과정 : (2025 당초 계획) -백만원 → (2026 계획) 1,500백만원, 순증**
 - (요구) 훈련인원 1,000명의 교육훈련비용
 · 산업전반에 걸친 인공지능 전환에 따른 구직자·재직자 대응력 제고 위한 AX과정 신설
 * 훈련인원: ('25) -명 → ('26안) 1,000명(순증)
 - (산출) 교육훈련비 1,000명 x 1.5백만원
- ⑤ **여성재취업훈련 : (2025 당초 계획) 4,756백만원 → (2026 계획) 3,791백만원, 965백만원 감액**
 - (요구) 훈련인원 1,350명의 교육훈련비용
 * 훈련인원: ('25) 1,700명 → ('26안) 1,350명(△350명)
 ** 급식비 단가 인상 2,500원 → 2,700원 (+200원)
 - (산출) 교육훈련비 1,350명 x 2.808백만원(급식비 단가 인상 +14백만원 포함)
- ⑥ **이주배경 구직자 직업훈련 : (2025 당초 계획) 2,200백만원 → (2026 계획) 2,200백만원, 전년동**
 - (요구) 훈련인원 200명의 교육훈련비용
 * 훈련인원: ('25) 200명 → ('26안) 200명(전년동)
 - (산출) 26년 훈련인원 200명 x 11,000천원 = 2,200백만원(전년동)
- ⑦ **기능장과정 : (2025 당초 계획) 603백만원 → (2026 계획) 569백만원, 34백만원 감액**
 - (요구) 훈련인원 250명의 교육훈련비용
 * 훈련인원: ('25) 265명 → ('26안) 250명(△15명)
 - (산출) 교육훈련비 250명 x 2.274백만원
- ⑧ **소규모사업장훈련 : (2025 당초 계획) 1,270백만원 → (2026 계획) 1,261백만원, 9백만원 감액**

- (요구) 훈련인원 6,500명의 교육훈련비용
- * 훈련인원: ('25) 4,400명 → ('26) 6,500명(+2,100명 ↑)
- (산출) 교육훈련비 6,500명 x 0.194백만원

⑨ 훈련장려금 : (2025 추경) 4,899백만원 → (2026 계획) 4,978백만원, 79백만원 증액
(2025 당초 계획 4,284백만원 → 제1회 추경 4,899백만원)

- (요구) 훈련인원 15,250*명의 훈련장려금 반영
- * ('25) 10,130 → ('26안) 15,250명(5,120명 ↑)
- (산출) 과정별 훈련인원 x 훈련기간 x 단가 x '26년 지급률 = 4,978백만원(+79백만원)
 - 1) 전문기술과정: 2,500명×10월×116천원×50.5%=1,465백만원
 - 2) 하이테크과정: 2,500명×10월×116천원×52.3%=1,517백만원
 - 3) 중장년특화(장기): 1,500명×6월×116천원×58.9%=615백만원
 - 4) 중장년특화(집중1): 1,500명×3월×116천원×61.0%=319백만원
 - 5) 중장년특화(집중2): 4,700명×1.5월×116천원×61.0%=499백만원
 - 6) AX과정 시범운영: 1,000명×3월×116천원×63.1%=219백만원
 - 7) 여성재취업훈련: 1,350명×3월×116천원×62.5%=293백만원
 - 8) 이주배경구직자: 200명×6월×116천원×36.4%=51백만원

⑩ 교육훈련과정 : (2025 당초 계획) 1,488백만원 → (2026 계획) 1,488백만원, 전년동

- (요구) 35개 캠퍼스 취업지원 및 연구활동중사자 법정임무비
- (산출) 취업지원 및 기업전담제 35개소 x 33.429백만원 = 1,170백만원(전년동)
- 연구활동중사자 특수건강진단 7,760명 x 41천원 = 318백만원(전년동)

⑪ 교과개발 및 교재발간 : (2025 당초 계획) 2,419백만원 → (2026 계획) 2,419백만원, 전년동

- (요구) 신기술 교과과정 개발, 학습 모듈·신기술 교재발간 등 반영
- (산출) 35개소 x 69.12백만원

⑫ 신기술장비확충 : (2025 당초 계획) 11,700백만원 → (2026 계획) 11,700백만원, 전년동

- (요구) 노후 교육훈련장비 보강, 장비 수리비 등 반영
- (산출) 노후장비보강 39개소 x 300백만원 = 11,700백만원(전년동)

⑬ 학과신설 및 개편 : (2025 당초 계획) 4,000백만원 → (2026 계획) -백만원, 순감

- (요구) 나주 전력기술교육원 학과신설 종료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1,961 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57,062,000천원 가. 전문기술과정 (7,287,000천원) • 교육훈련비 3,000명 x 2,428천원=7,287,000천원 나. 하이테크과정 (12,150,000천원) • 교육훈련비 2,430명 x 5,000천원=12,150,000천원 다. 중장년특화과정 (9,189,000천원) • 교육훈련비 2,800명 x 1,976천원=5,532,000천원 * 장기과정 3,599,000천원(1,350명×2.666백만원) * 집중1과정 1,93,000천원(1,450명×1.333백만원) + (1회 추경안) 집중2과정 3,657,000천원(4,700명×0.778백만원) 라. 여성재취업훈련 (4,756,000천원)	59,778 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59,778,000천원 가. 전문기술과정 (6,319,000천원) • 교육훈련비 2,500명 x 2,528천원=6,319,000천원 나. 하이테크과정 (12,997,000천원) • 교육훈련비 2,500명 x 5,199천원=12,997,000천원 다. 중장년특화과정 (10,554,000천원) • 교육훈련비 7,700명 x 1,371천원=10,554,000천원 * 장기과정 4,124,000천원(1,500명×2.749백만원) * 집중1과정 2,063,000천원(1,500명×1.375백만원) * 집중2과정 4,369,000천원(4,700명×0.93백만원) 라. AX과정 (1,500,000천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교육훈련비 1,700명 × 2,798천원=4,756,000천원 마. 이주배경 구직자 직업훈련 (2,200,000천원) - 교육훈련비 200명 x 11,000천원 = 2,200,000천원 바. 기능장과정 (603,000천원) - 교육훈련비 265명 x 2,274천원=603,000천원 사. 소규모사업장훈련 (1,270,000천원) - 교육훈련비 (내국인) 4,200명 x 265천원=1,113,000천원 (외국인) 200명 x 786천원=157,000천원 아. 교육훈련과정운영 (1,488,000천원) - 취업지원 및 기업전담제 35개소 x 33,429천원=1,170,000천원 -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진단 7,760명 x 41,000원=318,000천원 자. 교과개발및교재발간 (2,419,000천원) - 교과·교재개발비 35개소 × 69,114천원=2,419,000천원 차. 신기술장비확충 (11,700,000천원) - 노후장비보강 39개소 x 300,000천원=11,700,000천원 카. 학과신설 및 개편 (4,000,000천원) - 나주전력기술교육원 학과신설 장비비 2개과 x 2,000,000천원 = 4,000,000천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4,899,000천원 가. 훈련장려금 (4,899,000천원) - 과정별 훈련인원 × 훈련기간 × 단가 × '23년 해당과정 수료율× '25년 훈련장려금 지급률 = 4,284백만원 1)+2)+3)+4)+5)(+121백만원) 1) 전문기술과정 3,000명×10월×116천원×67.4%×64.79%=1,519,662천원 2) 중장년특화(장기): 1,350명×6월×116천원×84.2%×64.79%=512,582천원 3) 중장년특화(단기): 1,450명×3월×116천원×87.1%×64.79%=284,756천원 4) 하이테크: 2,430명×10월×116천원×84.2%×64.79%=1,537,745천원 5) 여성재취업 1,700명×3월×116천원×90.9%×64.79%=348,418천원 6) 이주배경: 200명×6월×116천원×90.0%×64.79%=81,169천원 + (1회 추경안) (집중2) 4,700명×2월×116천원×87.1%×64.79%=615,335천원		- 교육훈련비 1,000명 x 1,500천원=1,500,000천원 마. 여성재취업훈련 (3,791,000천원) - 교육훈련비 1,350명 × 2,808천원=3,791,000천원 바. 이주배경 구직자 직업훈련 (2,200,000천원) - 교육훈련비 200명 x 11,000천원 = 2,200,000천원 사. 기능장과정 (569,000천원) - 교육훈련비 250명 x 2,274천원=569,000천원 아. 소규모사업장훈련 (1,261,000천원) - 교육훈련비 (내국인) 6,500명 x 194천원=1,261,000천원 자. 교육훈련과정운영 (1,488,000천원) - 취업지원 및 기업전담제 35개소 x 33,429천원=1,170,000천원 -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진단 7,760명 x 41,000원=318,000천원 차. 교과개발및교재발간 (2,419,000천원) - 교과·교재개발비 35개소 × 69,114천원=2,419,000천원 카. 신기술장비확충 (11,700,000천원) - 노후장비보강 39개소 x 300,000천원=11,700,000천원 타. 학과신설 및 개편 (-원) - 나주 전력기술교육원 학과신설 종료 ○ 민간경상보조(320-01) : 4,978,000천원 가. 훈련장려금 (4,284,000천원) - 과정별 훈련인원 × 훈련기간 × 단가 × '26년 지급률 = 4,978백만원 (+79백만원) 1) 전문기술과정 2,500명×10월×116천원×50.5%=1,465백만원 2) 하이테크과정 2,500명×10월×116천원×52.3%=1,517백만원 3) 중장년특화(장기): 1,500명×6월×116천원×58.9%=615백만원 4) 중장년특화(집중1): 1,500명×3월×116천원×61.0%=319백만원 5) 중장년특화(집중2): 4,700명×1.5월×116천원×61.0%=499백만원 6) AX과정 시범운영 1,000명×3월×116천원×63.1%=219백만원 7) 여성재취업훈련 1,350명×3월×116천원×62.5%=293백만원 8) 이주배경구직자: 200명×6월×116천원×36.4%=51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추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K-Digital Training 수료율 (단위: %)	목표	88.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89.7	-	-	-	-			
	달성도	101.9	-	-	-	-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수 (단위: 명)	목표	130,0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132,005	-	-	-	-			
	달성도	101.5	-	-	-	-			
K-Digital Training 취업률 (단위: %)	목표	(신규)	68.2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	57.5	-	-	-			
	달성도	-	84.3	-	-	-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폴리텍 하이테크과정 취업률 (단위: %)	목표	73.0	80.3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81.7	80.1	-	-	-			
	달성도	111.9	99.8	-	-	-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수요율 (단위: %)	목표	(신규)	78.2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	78.6	-	-	-			
	달성도	-	99.7	-	-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인원 (단위: 명)	목표	(신규)	(신규)	786,000	690,258	(삭제)	-	-	-
	실적	-	-	664,955	-	-			
	달성도	-	-	84.5	-	-			
훈련 양성률 (단위: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89.3	최근 3년 실적 평균치* * (22) 88.8 (23) 89.7 (24) 89.5	$\frac{\text{내일배움카드 수요인원} / \text{훈련실사인원}}{08(\text{가중치})} \times$ $+ \frac{\text{폴리텍 훈련 수요인원} / \text{훈련실사인원}}{02(\text{가중치})} \times$	전수조사 (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폴리텍대학)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계획인원: 13,890명, 참여인원: 13,743명 - 신기술장비확충 노후장비보강 2,194점 및 하이테크 학과개편 대전캠퍼스 등 5개과
2023	- 계획인원: 14,010명, 참여인원: 14,385명 - 신기술장비확충 노후장비보강 3,190점 및 DX-Academy 학과개편 2개과
2024	- 계획인원: 14,385명, 참여인원: 14,778명 - 신기술장비확충 노후장비보강 2,771점 및 전력기술교육원 학과신설 장비 수급 1개과
2025	- 계획인원: 19,495명, 참여인원: 30,753명 - 신기술장비확충 노후장비보강 및 나주전력기술교육원 학과신설 장비 수급 2개과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전문기술과정 : 2,500명
- 하이테크과정 : 2,500명
- 중장년특화과정 : 7,700명
- AX과정: 1,000명
- 여성재취업훈련 : 1,350명
- 이주배경 구직자 직업훈련: 200명
- 기능장과정 : 250명
- 소규모사업장훈련 : 6,5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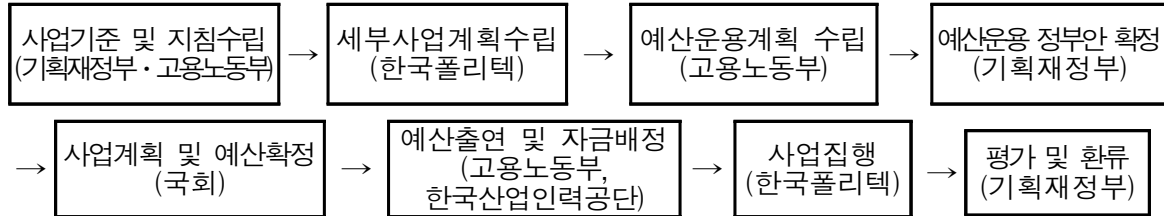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집행절차 : 정부에서 국가기간·전략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사업을 한국폴리텍대학에 위탁 실시하고, 재원은 한국산업 인력공단을 통하여 학교법인에 재출연

- 사업추진 흐름도



* (예산출연 및 자금배정-인력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사업)제2호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위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운영 지원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공단의 수입·지출)제2항 공단의 지출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과 제26조에 따라 공단 산하에 설립되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연금으로 한다.

* (사업집행-폴리텍)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11조의3(소요재원) 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그 지원 또는 융자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등에 의한다.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40조(과정구분 등)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48조(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예결위,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23년) 전문기술과정 사업 단기과정의 수료율 제고를 위하여 기간 확대, 환경 개선, 기업 연계 등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
- (환노위, 2024 예산안 부대의견, '23년) 다문화청년특화교육 사업을 운영할 때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방안 마련
- (예결위,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24년) 경력단절 여성 훈련 사업의 성과제고 필요
- (환노위, 2025회계연도 예산심사, '24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사업장훈련 사업의 철저한 준비 필요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53,887	-	53,887	53,887	53,082	98.5	98.5	-	805
2023	53,132	-	53,132	53,132	52,284	98.4	98.4	-	848
2024	55,226	-	55,226	55,226	54,678	99.0	99.0	-	548
2025	57,689	4,272	61,961	61,961	61,611	99.4	99.4	-	35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교육생들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집행잔액 반납
2023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교육생들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집행잔액 반납
2024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교육생들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집행잔액 반납
2025	- 중장년특화과정 집중2과정 4,700명 확대 운영 - 퇴직(예정)하는 중장년의 역량강화와 재취업 지원을 위해 공공직업훈련 강화 - 교육생들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집행잔액 반납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국회승인변경 (2025.5.1)	신중년특화과정	350	02	3,657	퇴직(예정)하는 중장년의 역량강화와 재취업 지원을 위해 공공직업훈련 강화를 위한 중장년특화과정 4,700명 확대 운영
국회승인변경 (2025.5.1)	훈련장려금	320	01	615	
합 계				4,272	

사 업 명
(17)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1160-35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60	352
명칭	직업능력개발	능력개발융자지원(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융자)	소관부처	실·국·과(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응자)	25,055	34,788	34,788	508,979	508,979	△ 9,733	△ 28.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 기능별 분류(합계)	45,492	45,492	25,055	-	20,437	34,788	34,788	24,480	-	10,308	25,055
·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응자)	45,492	45,492	25,055	-	20,437	34,788	34,788	24,480	-	10,308	25,05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대부지원을 통해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직업훈련 몰입도 제고를 및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보험법」 제29조(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를 대부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 ① 법 제29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피보험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수준 및 종전의 대부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사람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3.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등

4.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생계비 대부 신청 시 실업상태에 있는 피보험자 등이었던 사람(법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5. 제35조제5호바목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등
 6. 그 밖에 생계비 대부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피보험자 등
-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생계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생계비의 대부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대부 대상자 해당 여부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대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대부의 신청·결정 절차에 관한 사항, 대부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대부금액 및 상환방법, 그 밖에 대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추진경위

- '09. 1월 신규실업자 훈련생계비 대부 사업 시행
- '10. 2월 대부이자율 하향 조정(2.4%→ 1%), 거치 및 상환기간 선택
- '17. 4월 대부한도 인상(월 100만원→200만원), 대부요건 완화(배우자합산 연간소득금액 8천만원 이하로 확대)
- '19. 1월 소득요건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으로 조정
- '20. 1월 소득요건을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로 조정
- '22. 8월 소득요건을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80% →100%로 완화('22년 한시)
- '24. 1월 대부대상 훈련 정비(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 제외)
- '24. 8월 대부한도 인상(총 1,000만원→1,500만원)('24년 한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9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1,030	53,520	45,492	34,788	25,055

- 기타: '25년 지원규모 6,500명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용자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가구원합산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용자)	용자	근로복지 공단	25,055	100.0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직업훈련생계비대부(용자)

: ('25) 34,788백만원 → ('26) 25,055백만원, 9,733백만원 감액

- (요구) 원격훈련 배제 제도개선에 따른 집행추이 등 고려하여 예산 지원인원 △1,820명 감축
- (산출) 25,055백만원 = 4,680명 × 5,352천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4,788	○ 기타민간용자금(450-04) : 34,788,000천원 - 6500명×5,352천원=34,788,000천원	25,055	○ 기타민간용자금(450-04) : 25,055,000천원 - 4,680명×5,352천원=25,055,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K-Digital Training 수료율 (단위: %)	목표	88.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89.7	-	-	-	-			
	달성도	101.9	-	-	-	-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수 (단위: 명)	목표	130,0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132,005	-	-	-	-			
	달성도	101.5	-	-	-	-			
K-Digital Training 취업률 (단위: %)	목표	(신규)	68.2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	57.5	-	-	-			
	달성도	-	84.3	-	-	-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폴리텍 하이테크과정 취업률 (단위: %)	목표	73.0	80.3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81.7	80.1	-	-	-			
	달성도	111.9	99.8	-	-	-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수료율 (단위: %)	목표	(신규)	78.2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	78.6	-	-	-			
	달성도	-	99.7	-	-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인원 (단위: 명)	목표	(신규)	(신규)	786,000	690,258	(삭제)	-	-	-
	실적	-	-	664,955	-	-			
	달성도	-	-	84.5	-	-			
훈련 양성률 (단위: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89.3	최근 3년 실적 평균치* * (22) 88.8 (23) 89.7 (24) 89.5	$\frac{\text{내일배움카드 수료 인원}}{\text{훈련실사인원}} \times 0.8(\text{가중치})$ $+ \frac{\text{폴리텍 훈련 수료 인원}}{\text{훈련실사인원}} \times 0.2(\text{가중치})$	전수조사 (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폴리텍대학)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10,840명, 53,848백만원 지원
2023	14,611명, 78,953백만원 지원
2024	4,535명, 25,055백만원 지원
2025	3,969명(11월말 기준), 24,480백만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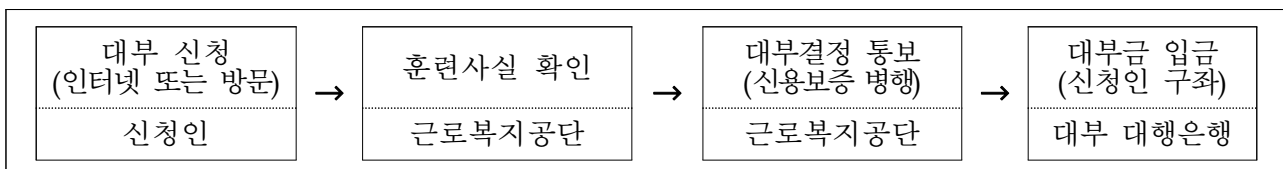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직업훈련 몰입도 제고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국회 의결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증감하여 집행하여 「국가재정법」 위반소지가 없도록 국회 의결취지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23년 결산 국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 없음
- 3) 자체평가: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41,030	-	41,030	41,030	36,000	87.7	87.7	-	5,030
2023	53,520	42,039	95,559	95,559	78,953	82.6	82.6	-	16,606
2024	45,492	-	45,492	45,492	25,055	55.1	55.1	-	20,437
2025	34,788	-	34,788	34,788	24,480	70.4	70.4	-	10,30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기금계획변경)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에 따라 생계비 대부 지원 대상 소득을 중위소득 기준 100% 이하로 완화하여 따른 추가 소요 발생 - (불용) 집행잔액
2023	- (기금계획변경)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 방향(‘23.2)」에 따른 생계비 대부한도 한시적 확대 반영으로 추가 소요 발생 - (불용) 집행잔액
2024	- (불용) 사업 제도 개선 등으로 혼련 수요자 감소로 불용
2025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18) 구직급여(1280-3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80	350
명칭	고용안전망확충	실업급여	구직급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구직급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구직급여	11,740,486	10,917,074	12,607,046	11,537,611	11,537,611	620,537	5.7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0914396 (+873397)	11,787,793	11,740,486	-	47,307	10917074	12,607,046	12,607,046	12,365,489	-	241,557	11,537,611
· 구직급여	10914396 (+873397)	11,787,793	11,740,486	-	47,307	10917074	12,607,046	12,607,046	12,365,489	-	241,557	11,537,61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재취업활동을 전제로 이직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여 실직자 생활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

*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노무제공자는 12개월 이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보험법 제40조부터 제63조, 제77조의3, 제77조의8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지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지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제43조에 따른 지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지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지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지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3조의2(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수급자격의 인정) ①근로자,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이직하여 그 피보험자격을 모두 상실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중 자신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이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상실한 경우에는 동시에 상실된 피보험자격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제58조 또는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이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고용보험법 제44조(실업의 인정) ①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

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후략>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출산·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후략>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①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신·출산·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후략>

고용보험법 제51조(훈련연장급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면 그 수급자격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훈련연장급여"라 한다)의 지급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한도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훈련대상자·훈련 과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제52조(개별연장급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개별연장급여"라 한다)는 6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제53조(특별연장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직 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격자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특별연장급여"라 한다)를 지급하려면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57조(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 ①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분을 지급한다. <후략>

고용보험법 제63조(질병 등의 특례) ①수급자격자가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46조의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상병급여”라 한다)을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상병급여(傷病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일수는 그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에서 그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된 일수를 뺀 일수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상병급여의 지급 일수에 상당하는 일수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본다. <후략>

고용보험법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예술인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 예술인이었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 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 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피보험 자격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 예술인,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예술인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예술인(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보수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예술인은 제외한다)의 기초일액이 이직 당시의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예술인의 일단위 기준보수 미만인 경우에는 일단위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 ④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은 제3항에 따른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상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⑥ 예술인은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유별로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각 호의 사유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기기간이 가장 긴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본다.
- 1.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 2.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⑦ 예술인의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기간은 제2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기예술인은 해당 계약기간 중 노무제공일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 ⑧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근로 등의 활동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3. 이직사유가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 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 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하였을 것 <후략>

- ② 추진경위 - 1992년 3월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 발족
 - 1993년 4월 「고용보험 실무 작업반」 구성 및 1995년 시행방침 확정
 - 1993년 12월 고용보험법 제정 및 공포
 - 1995년 7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등) 시행 이후 1996년부터 지급
 - 2020년 12월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실업급여 등) 시행
 - 2021년 7월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으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제도(실업급여 등)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5년 7월 1일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180,665	11,346,824	11,787,793	12,607,046	11,537,611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구직급여 수급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구직급여: (2025 추경, 기금변경) 12,607,046백만원 → (2026 계획) 11,537,611백만원, △1,069,435백만원 감액
 (2025 계획 10,917,074백만원 → 제2회 추경 12,209,974백만원 → 기금변경 12,607,046백만원)

- ① 구직급여(순수) (2025 추경, 기금변경) 12,603,333백만원 → (2026 계획) 11,534,072백만원, △672,189백만원
 (2025 계획 10,913,361백만원 → 제2회 추경 12,206,261백만원 → 기금변경 12,603,333백만원)

○ (지원인원)

- (근로자) 1,620,048명: '25년 본예산상 지원인원(160만명)을 기준으로 '23년 대비 '24년 지급자수 증감률(1.5%)을 적용
- (예술인) 5,872명: '24년 결산상 지원인원 기준
- (노무제공자) 8,895명: '24년 결산상 지원인원 기준

○ (1일 지급액)

- (근로자) 63,142원: '26년 최저임금 인상률(2.9%) 적용하여 63,142원 추계

구분	'25년	'26년
최저임금	10,030	10,320
하한액 추정치(원)*	64,192	66,048
1일 평균 지급액 추정치(원)**	61,368	63,142

* 최저임금액×8시간×0.8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한액 산출)

** '24년 1일 하한액(63,104원) 대비 평균 지급액(60,329원) 비율인 95.6% 적용

- (예술인) 50,407원: '24.12월말 기준 평균 1일 지급액 50,407원 적용
- (노무제공자) 50,848원: '24.12월말 기준 평균 1일 지급액 50,848원 적용
- (지급기간)
 - (근로자) 112일: '25년 예산상 지급기간과 동일하게 편성
 - (예술인) 99일 '24년 결산상 지급기간 기준
 - (노무제공자) 106일: '24년 결산상 지급기간 기준
- (산출) 근로자(1,620,048명 × 63,142원 × 112일) + 예술인(5,872명 × 50,407원 × 99일) + 노무제공자 (8,895명 × 49,604원 × 88일) + 2,704,472원 = 11,534,072백만원

② 개별연장급여

: (2025년 계획) 3,537백만원 → (2026년 계획) 3,370백만원, △167백만원

- 구직급여(순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년 지출액이 적고 변동 폭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25년 예산 대비 지원인원 약 5% 감소한 1,133명 적용
- (산출) 1,133명×56,120원×53일= 3,370백만원

③ 훈련연장급여

: (2025년 계획) 176백만원 → (2026년 계획) 168백만원, △8백만원

- 구직급여(순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년 지출액이 적고 변동 폭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25년 예산 대비 지원인원 약 5% 감소한 23명 적용
- (산출) 23명×60,000원×122일= 168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209,974	< 보험금(320-04) : 12,607,046백만원 > 가. (구직급여(순수)) 12,206,261백만원 • (근로자) 1,596,106명 × 61,560원 × 112일 = 10,913,361백만원 • (예술인) 5083명 × 49,604원 × 88일= 22,190백만원 • (노무제공자) 9,796명 × 47,071원 × 106일= 48,877백만원 •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개편 절감효과) 23,559명 × 61,560원 × 112일 = △162,430백만원 + (제2회 추경) (근로자) 187,208명×61560원×112일=1,292,900백만원 + (기금변경) (근로자) 57,590명×61560원×112일=397,072백만원 나. (개별연장급여) 3,537백만원 • (개별연장급여) 1,189명×56,120원×53일= 3,537백만원 다. (훈련연장급여) 176백만원 • (훈련연장급여) 24명×60,000원×122일= 176백만원	11,537,611	< 보험금(320-04) : 11,537,611백만원 > △1,069,435백만원 감액 가. (구직급여(순수)) 11,534,072백만원 • (근로자) 1,620,048명 × 63,142원 × 112일 = 11,456,824백만원 • (예술인) 5,872명 × 50,407원 × 99일= 29,303백만원 • (노무제공자) 8,895명 × 50,848원 × 106일= 47,943백만원 나. (개별연장급여) 3,370백만원 • (개별연장급여) 1,133명×56,120원×53일= 3,370백만원 다. (훈련연장급여) 168백만원 • (훈련연장급여) 23명×60,000원×122일= 16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고용보험가입자수 (단위: 천명)	목표	15,640	15,710	15,993	16,188	16,317	'25년 목표치 대비 0.8% 상향	연도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	고용보험 전산망
	실적	15,555	15,835	16,060	-	-			
	달성도	99.5	100.8	100.4	-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 (단위: %)	목표	56	56	-	-	-	-	-	-
	실적	53.4	57.9	-	-	-			
	달성도	95.4	103.4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수 (단위: 명)	목표	470,000	376,000	-	-	-	-	-	-
	실적	207,258	212,873	-	-	-			
	달성도	44.1	56.6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수급자 1,631,270명에게 구직급여 등 109,105억원 지급
2023	수급자 1,671,623명에게 구직급여 등 113,071억원 지급
2024	수급자 1,697,150명에게 구직급여 등 117,403억원 지급
2025	수급자 1,632,193명('25.11 기준)에게 구직급여 등 123,655억원 지급('25.12 기준)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수급자 164만명에게 구직급여 등 115,376억원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고용보험법 제42조 (실업의 신고)	실직자 →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	고용보험법 제43조 (수급자격의 인정)	고용센터 → 실직자
실업인정 신청(재취업활동 및 취업 여부 증빙자료 제출)	고용보험법 제44조 (실업의 인정)	수급자격자 → 고용센터
구직급여 지급 및 구직상담 등 재취업활동 지원	고용보험법 제44조 (실업의 인정)	고용센터 → 수급자격자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4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과도한 구직급여 반복수급 해소를 위한 개선 필요 - (후속조치) 구직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조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복수급자 대면 실업인정 확대, 재취업활동계획서 수립 의무 등의 개선방안을 시행 ○ (“24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60세 이상 수급자의 실질적인 재취업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방식 개편 필요 - (후속조치) 60세 이상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실업인정 방식을 개편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1,533,853	△ 353,188	11,180,665	11,180,665	10,910,504	97.6	97.6	-	270,161
2023	11,183,948	162,876	11,346,824	11,346,824	11,307,122	99.7	99.7	-	39,702
2024	10,914,396	873,397	11,787,793	11,787,793	11,740,486	99.6	99.6	-	47,307
2025	10,917,074	1,689,972	12,607,046	12,607,046	12,365,489	98.1	98.1	-	241,55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계획변경 사유 ① 계획변경 : '22. 5. 29. △353,188백만원 2차 추경안 국회 통과 - 이월 및 불용 사유 ① 이월 : 해당없음 ② 불용 : ▲구직급여 사업은 예산 규모가 크므로 높은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불용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측면이 있음 ▲구직급여는 실직자 대상 의무지출사업이므로 통상 1~2주분의 여유 재원을 확보하여 예산 운용(불용액 2,702억원은 약 6일분)
2023	- 계획변경 사유 ① 계획변경 : '23. 12. 26. 예산 조기 소진이 전망되어 +162,876백만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 이월 및 불용 사유 ① 이월 : 해당없음 ② 불용 : 집행 잔액(불용 397억원은 약 0.9일분)
2024	- 계획변경 사유 ① 계획변경 : '24. 11. 26. 예산 조기 소진이 전망되어 +873,397백만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 이월 및 불용 사유 : 해당없음
2025	- 계획변경 사유 ① 계획변경 : '25. 7. 4. +1,292,900백만원 2차 추경안 국회 통과 ② 계획변경 : '25. 12. 5. 예산 조기 소진이 전망되어 +397,072백만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 이월 및 불용 사유 ① 이월 : 해당없음 ② 불용 : 집행 잔액(불용 2,416억원은 약 4.7일분)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국회의결 (7.4.)	구직급여	320	04	1,292,900	○ 수급자수 지속 유지 등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법정 의무지출사업인 구직급여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추경
자체변경 (12.5)	구직급여	320	04	397,072	○ 수급자수 지속 유지 등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법정 의무지출사업인 구직급여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기금 변경
합 계				1,689,972	

사 업 명
(19) 조기재취업수당(1280-3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80	351
명칭	고용안전망확충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조기재취업수당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조기재취업수당	544,284	525,484	525,484	585,196	585,196	59,712	11.4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463,837 (+94,880)	558,717	544,284	-	14,433	525,484	525,484	525,484	486,922	-	38,562	585,196
· 조기재취업수당	463,837 (+94,880)	558,717	544,284	-	14,433	525,484	525,484	525,484	486,922	-	38,562	585,19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급여 수급 중 조기에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등을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조기 재취업 촉진
 - ▲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잔여 소정급여의 1/2 지급
 - * 만 65세 이상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잔여 소정급여의 1/2 지급
 - ▲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 훈련참여기간에 1일당 실비성격의 수당을 지급(‘25년 7,530원)
 - ▲ (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면 교통비 등 지급
 - ▲ (이주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취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물운송 실비 등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보험법 제64조부터 제69조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 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65조(직업능력개발 수당) ①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지급 요건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인력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66조(광역 구직활동비) ①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은 제1항의 구직 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제67조(이주비) ①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 ② 추진경위 - '92.3월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 발족
 - '93.4월 「고용보험실무작업반」 구성 및 '95년 시행방침 확정
 - '93.12월 고용보험법 제정 · 공포
 - '95.7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등) 시행 이후 '96년부터 지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5. 7. 1.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24,934	470,260	558,717	525,484	585,196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구직급여 수혜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조기재취업수당(순수)

: (2025 계획) 525,290백만원 → (2026 계획) 585,003백만원, 59,713백만원 증액

○ 지원인원: 117천명

- '25년 예산 편성시 지급인원(115천명)에 '23년 대비 '24년 구직급여 신청자수 증가율 반영(1.4%)

- (산출) 115천명 × 1.014 = 117천명

*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조기재취업할 경우 지급

○ 1인당 평균 지급액: 4,992천원

- '24년 결산 기준 1인당 지급액 4,901천원에 '23~'24년 1인당 지급액 증가율 1.9% 반영하여 추계

○ 산출액: 117천명 × 4,992천원 = 585,003백만원

② 직업능력개발수당

: (2025 계획) 10백만원 → (2026 계획) 10백만원, 전년 동

- 상대적으로 매년 지출액이 적고 변동 폭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25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

- (산출) 10백만원 (15명×651천원)

③ 광역구직활동비

: (2025 계획) 0.16백만원 → (2026 계획) 0.16백만원, 전년 동

- 상대적으로 매년 지출액이 적고 변동 폭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25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

- (산출) 0.16백만원 (4명×40천원)

④ 이주비

: (2025 계획) 184백만원 → (2026 계획) 184백만원, 전년 동

- 상대적으로 매년 지출액이 적고 변동 폭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25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

- (산출) 184백만원 (134명×1,371천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25,484	○ 보험금(320-04) : 525,484백만원 가. 조기재취업수당(순수): 525,290백만원 ① '25년 예산 수급자 91,865명×4,834천원 = 444,075백만원 ② 60-64세 추가수급자 23,559명×61,560원×112일×1/2 = 81,215백만원 나. 직업능력개발수당: 10백만원 • 15명×651천원 다. 광역구직활동비: 0.16백만원 • 4명×40천원 라. 이주비: 184백만원 • 134명×1,371천원	585,196	○ 보험금(320-04) : 585,196백만원 가. 조기재취업수당(순수): 585,003백만원 • 117천명 × 4,992천원 = 585,003백만원 나. 직업능력개발수당: 10백만원 • 15명×651천원 다. 광역구직활동비: 0.16백만원 • 4명×40천원 라. 이주비: 184백만원 • 134명×1,371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고용보험가입자수 (단위: 천명)	목표	15,640	15,710	15,993	16,188	16,317	'25년 목표치 대비 0.8% 상향	연도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	고용보험 전산망
	실적	15,555	15,835	16,060	-	-			
	달성도	99.5	100.8	100.4	-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 (단위: %)	목표	56	56	-	-	-	-	-	-
	실적	53.4	57.9	-	-	-			
	달성도	95.4	103.4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수 (단위: 명)	목표	470,000	376,000	-	-	-	-	-	-
	실적	207,258	212,873	-	-	-			
	달성도	44.1	56.6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수급자 97,600명에게 조기재취업수당 등 4,680억원 지급
2023	수급자 97,410명에게 조기재취업수당 등 4,684억원 지급
2024	수급자 111,134명에게 조기재취업수당 등 5,442억원 지급
2025	수급자 92,962명('25.11 기준)에게 조기재취업수당 등 4,869억원 지급('25.12 기준)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수급자 11만명에게 조기재취업수당 등 5,852억원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1.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 제출	고용보험법 제64조 (조기재취업 수당)	수급자 → 고용센터
지급요건 확인	고용보험법 제64조 (조기재취업 수당)	고용센터 →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고용보험법 제64조 (조기재취업 수당)	고용센터 → 수급자

2.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수당 신청서 제출	고용보험법 제65조~제67조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수급자 → 고용센터
지급요건 확인 (서류심사, 심의위원회 등 개최)	고용보험법 제65조~제67조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고용센터 → 수급자
수당 지급	고용보험법 제65조~제67조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고용센터 → 수급자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4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불합리하게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제도개선 추진필요
 - (후속조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 범위 등과 관련하여, 추후 연구용역을 진행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365,635	159,299	524,934	524,934	468,018	89.2	89.2	-	56,916
2023	386,659	83,601	470,260	470,260	468,354	99.6	99.6	-	1,906
2024	463,837	94,880	558,717	558,717	544,284	97.4	97.4	-	14,433
2025	525,484	525,484	525,484	525,484	486,922	92.7	92.7	-	38,56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계획변경 사유 ① 9. 5.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되어 +159,299백만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 이월 및 불용 사유 ① 이월 : 해당없음 ② 불용 : 조기채취업수당은 지급요건을 충족한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의무지출사업이므로 여유 재원을 확보하여 예산 운용 * '22년 기준 1일 평균 19억원 지출, 불용액인 569억원은 약 30일분
2023	- 계획변경 사유 ① 10. 23.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되어 +83,601백만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 이월 및 불용 사유 ① 이월 : 해당없음 ② 불용 : 집행 잔액(불용액인 19억원은 약 1일분)
2024	- 계획변경 사유 ① 10. 23.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되어 +94,880백만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 이월 및 불용 사유 ① 이월 : 해당없음 ② 불용 : 집행 잔액(불용액인 144억원은 약 6일분)
2025	- 계획변경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및 불용 사유 ① 이월 : 해당없음 ② 불용 : 집행 잔액(불용액인 385억원은 약 19일분)

사 업 명
(20) 자영업자 실업급여(1292-3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92	350
명칭	고용안전망확충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자영업자 실업급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자영업자 실업급여	18,833	18,444	21,619	19,915	19,915	1,471	8.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20,196	20,196	18,833	0	1,363	18,444	21,619	21,619	20,535	0	1,084	19,915
· 자문수당	23	23	15	0	8	23	23	23	9	0	14	23
· 보험금	20,173	20,173	18,818	0	1,355	18,421	21,596	21,596	20,526	0	1,070	19,89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자영업자 실업급여) 비자발적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적절한 재취업·재창업 활동 보장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고용보험법」 제4절(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9까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② 추진경위

- 2013년: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관련 구체적 업무처리절차 마련
- 2014년: 가입률 제고를 위한 가입요건 등 완화 방안 검토
 - ※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14.6월~12월)
- 2015년: 기준보수 등급 신설(총 5등급 → 7등급)
- 2016년: 임의가입기간 확대(개업일로부터 6개월 → 1년 이내, '16.1.1. 시행)
- 2017년: 임의가입기간 추가 확대(개업일로부터 1년 → 5년 이내, '18.1.1. 시행)
- 2019년: 임의가입기간 폐지(개업일로부터 5년 → 폐지, '19.7.1. 시행)
 - 실업급여보장성 강화('19.10.1.시행)
 - 지급수준 10%p 인상(50%→60%), 지급일수 30일 확대(90~180일→120~210일)
- 2020년: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 발표('12.23), 자영업자 가입대상 및 방식과 적용 시기 단계적 확대방안 논의('21년 상반기부터)
- 2021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적용 관련 경사노위 등 사회적 논의 추진
- 2022년: 가입대상 확대(고유번호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22.7.1. 시행)

- * (고용부 고시) 가정·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대표자와 기관장이 동일한 개인인 경우
- 2023년: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관련 업무처리 절차 마련
- 2024년: 농어업경영체 등록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24.7.1) 및 실업급여 지급 관련 업무처리 절차 마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3 ~ 현재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539	18,757	20,196	21,619	19,91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자문수당: (2025 계획) 23백만원 → (2026 계획) 23백만원, 전년동

- (요구) 최근 자문건수 추이 및 자문위원 자문료 현실화 필요성 등을 고려, 전년동 요구
 - * '12년 제도 도입 당시 자문료(자문 1건당 70,000원)가 12년간 유지 중, 최근 세무·회계 분야 자문료 대비 낮은 단가로 인해 자문 공급 제약 요인으로 작용
- (산출) ('25) 328건×70,000원 → ('26 계획) 228건×100,000원
 - * (자문건수): '22년~'24년 자문건수 평균(228건)
 - ↳ 자문건수(건): ('22) 229 ('23) 243 ('24) 211

② 보험금: (2025 계획변경) 21,596백만원 → (2026 계획) 19,892백만원, 1,704백만원 감액 (2025 당초 계획 18,421백만원 → 기금운용계획변경 21,596백만원)

- (요구) 최근 5년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 지속 증가 추세*, 내수경기 악화 전망 등을 고려하여 '25년 대비 1,471백만원 증액(+8.0%) 요구
 - * 가입자(명): ('20) 30,629 → ('21) 36,859 → ('22) 42,643 → ('23) 47,604 → ('24) 53,705 → ('25.6) 57,417
 - 수급자(명): ('20) 1,495 → ('21) 2,056 → ('22) 2,575 → ('23) 3,248 → ('24) 3,490 → ('25°) 3,499
- (산출) ('25) 3,499명×52,645원×100일 → ('26 계획) 3,611명×53,277원×103.4일
 - * (수급자): '25년 예상 수급자수(3,499명)에 '24년 수급자 증가율(7.5%), '25.2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가입자 증가율(12.8%), '25.2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수급자 증가율(3.2%) 중 가장 보수적 증가율(3.2%)을 적용하여 산출 <3,611명>
 - ↳ 수급자(명): ('19) 1,166 → ('20) 1,495(28.2%) → ('21) 2,056(37.5%) → ('22) 2,575(25.2%) → ('23) 3,248(26.1%) → ('24) 3,490(7.5%) → ('25°) 3,499(0.3%)

* (급여일액): 가장 높은 기준보수(7등급) 선택 비율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 등을 고려, '25년 예상 급여일액(52,645원)에 '21~'24년 평균증가율(1.2%)을 적용하여 산출('19년 기준보수,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하여 '21년부터 추세 반영) <53,277원>

↳ 급여일액(원): ('19) 36,937 → ('20) 46,988(27.2%) → ('21) 50,117(6.7%) → ('22) 50,766(1.3%) → ('23) 51,439(1.3%) → ('24) 51,977(1.0%) → ('25^예) 52,645(1.3%)

* (지급일수): '24년 실제 지급일수(103.4일)와 동일하게 적용 <103.4일>

↳ 지급일수(일): ('19) 90.8 → ('20) 102.5(12.9%) → ('21) 96.0(△6.3%) → ('22) 94.4(△1.7%) → ('23) 100.0(5.9%) → ('24) 103.4(3.4%)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1,619	○ 자문수당 일반수용비(210-01) : 23백만원 • 328건×70,000원=23백만원 ○ 보험금(320-04) : 21,596백만원 • (당초) 3,499명×52,645원×100일=18,421백만원 • (기금운용계획변경) 3,175백만원 증액	19,915	○ 자문수당 일반수용비(210-01) : 23백만원 • 228건×100,000원=23백만원 ○ 보험금(320-04) : 19,892백만원 • 3,611명×53,277원×103.4일=19,89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고용보험가입자수 (단위: 천명)	목표	15,640	15,710	15,993	16,188	16,317	'25년 목표치 대비 0.8% 상향	연도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	고용보험 전산망
	실적	15,555	15,835	16,060	-	-			
	달성도	99.5	100.8	100.4	-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 (단위: %)	목표	56	56	-	-	-	-	-	-
	실적	53.4	57.9	-	-	-			
	달성도	95.4	103.4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수 (단위: 명)	목표	470,000	376,000	-	-	-	-	-	-
	실적	207,258	212,873	-	-	-			
	달성도	44.1	56.6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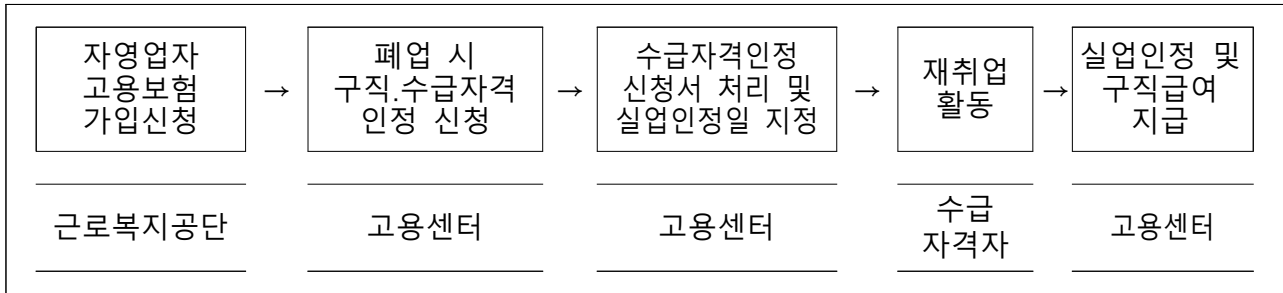
2022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수 2,575명
2023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수 3,248명
2024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수 3,490명
2025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수 3,820명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에 따른 신규 가입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로 사회안전망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24년 개선필요, '25년 개선필요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8,869	3,670	12,539	12,539	12,399	98.9	98.9	0	140
2023	11,222	7,535	18,757	18,757	16,784	89.5	89.5	0	1,973
2024	17,541	2,655	20,196	20,196	18,833	93.3	93.3	0	1,363
2025	18,444	3,175	21,619	21,619	20,535	95.0	95.0	0	1,08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집행률 98.9%로 집행률 양호
2023	- (계획변경 및 불용 사유) '23.6월 기준 8,450백만원이 집행(75.4%)되어 8월중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까지 일평균 지급액 69백만 원을 기준으로 소요액을 추정하여 7,535백만을 증액하였으나, 8월 이후 월평균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어 불용 발생
2024	- (계획변경 및 불용 사유) '24.9월 기준 14,597백만원이 집행(83.3%)되어 11월중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까지 집행액을 기준으로 소요액을 추정하여 2,655백만을 증액하였으나, 11월 이후 집행액이 예상보다 적어 불용 발생
2025	- (계획변경 및 불용 사유) '25.9월 기준 15,584백만원이 집행(84.5%)되어 11월중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근 6개월(4~9월) 집행액을 기준으로 소요액을 추정하여 3,175백만을 증액하였으나, 11월 이후 집행액이 예상보다 적어 불용 발생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025.11.17.)	보험금	320	04	3,175	'25.9월 기준 15,584백만원이 집행(84.5%)되어 11월중 조기 소진 예상
합 계				3,175	

사 업 명
(21) 실업크레딧지원(고보)(1293-3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93	350
명칭	고용안전망확충	실업크레딧지원	실업크레딧지원(고보)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실업크레딧지원(고보)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소관부처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실업크레딧 지원(고보)	32,157	31,720	31,720	33,234	33,234	1,514	4.8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33,658	33,658	32,157	-	1,501	31,720	31,720	31,720	31,720	-	-	33,234
· 실업크레딧지원(고보)	33,658	33,658	32,157	-	1,501	31,720	31,720	31,720	31,720	-	-	33,23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려는 재산 6억원 이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하인 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75%를 지원하여 실업자 노후소득 보장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일반회계, 고보기금, 국민연금기금 각 25% 지원, 자부담 25%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인정소득"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선 및 하한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경우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후략)

- ② 추진경위 - 2014년 4월~5월 실업크레딧 도입 여·야·정 합의

- 2014년 12월 19일 국민연금법 개정, 2015년 7월 1일 시행
- 2016년 5월 29일 고용보험법 개정, 2016년 8월 1일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6년 8월 1일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6,935	34,474	33,658	31,720	33,234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동 수행
- 사업 수혜자 : 보험료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실업크레딧 신청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실업크레딧지원(고보) 기타보전금

: (2025 계획) 31,720백만원 → (2026 계획) 33,234백만원, 1,514백만원 증액

○ 지원인원: 554천명

- '24년 예산서상 지원인원(563천명)에 '23년 및 '24년의 60세 미만 수급자 비율 감소분(1.4%p) 반영

* 실업크레딧은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지원

○ 지원금액: 16,435명

- '26년 국민연금 보험료를 상승분(9.0→9.5%)에 따른 지원단가 반영

* 국민연금법 개정('25.4.2.): '26. 1. 1.부터 시행

○ 지원기간: 3.65개월

- '23년 및 '24년 예산서상 평균 지원기간

○ 산출액: 554천명×1개월 지원금액 16,435원×3.65개월=33,234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1,720	○ 기타보전금(310-04) : 31,720백만원 가. 실업크레딧지원: 31,720백만원 · 563,362명×15,640원×3.6개월=31,720백만원	33,234	○ 기타보전금(310-04) : 33,234백만원 가. 실업크레딧지원: 33,234백만원 · 554천명×16,435원×3.65개월=33,23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고용보험가입자수 (단위: 천명)	목표	15,640	15,710	15,993	16,188	16,317	'25년 목표치 대비 0.8% 상향	연도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	고용보험 전산망
	실적	15,555	15,835	16,060	-	-			
	달성도	99.5	100.8	100.4	-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 (단위: %)	목표	56	56	-	-	-	-	-	-
	실적	53.4	57.9	-	-	-			
	달성도	95.4	103.4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수 (단위: 명)	목표	470,000	376,000	-	-	-	-	-	-
	실적	207,258	212,873	-	-	-			
	달성도	44.1	56.6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584,351명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343억원 지원
2023	563,362명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320억원 지원
2024	564,191명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322억원 지원
2025	570,348명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317억원 지원('25년 12월말 기준)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재산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실업크레딧 신청자 55만명의 국민연금 보험료 332억원을 지원하여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 및 사회 보험 사각지대 해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실업크레딧 신청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1항	수급자 → 고용센터/국민연금공단
재산 및 소득요건 검토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1항	국민연금공단 → 수급자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자 확정 및 납입고지서 송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제2항	국민연금공단 → 수급자
자부담분 25% 납부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3항	수급자 → 국민연금공단
자부담분 납부한 신청자에 대해 보험료지원금 예산 요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1항	국민연금공단 →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보험료지원금 예산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2항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1항	국민연금공단 → 수급자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2회계연도 결산, 환노위) 연례적 예산 부족에 따른 집행 지연 방지 필요
 - (후속조치) '22년 예산 부족분을 전용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해소하였고, 향후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
- 2) 대외공개 평가
 - ('25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청년층의 낮은 신청률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연금제도 인식 개선을 위한 맞춤형 홍보전략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후속조치) 현재 고용센터 현장 등에서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실업크레딧 사업을 안내하는 홍보 게시물 게재 및 안내 중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30,041	26,894	56,935	56,935	55,918	98.2	98.2	-	1,017
2023	34,474	-	34,474	34,474	31,967	92.7	92.7	-	2,507
2024	33,658		33,658	33,658	32,157	95.5	95.5	-	1,501
2025	31,720	-	31,720	31,720	31,720	10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계획변경 사유 ① 9. 5.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실업크레딧 지원인원이 급증함에 따라 예산 부족분이 커졌으며, 예산 소진 시기가 앞당겨져서 '22년 4월에 예산을 모두 집행하였고, 지연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예산 확보 필요하여 +26,894백만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 불용 사유 : 예산 소진 시기가 앞당겨져서 지연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하였고, '22년 하반기 이후 월평균 집행액 3,052백만원을 기준으로 소요액 추정하여 26,894백만원 증액하였으나, 실제 9월 이후 월평균 지급액이 적어 불용 발생
2023	- '계획변경'의 상세내역 기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집행 잔액
2024	- '계획변경'의 상세내역 기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집행 잔액
2025	- '계획변경'의 상세내역 기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없음

사 업 명
(22) 고용안정장려금(1345-3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45	350
명칭	고용평등증진	일·가정양립지원	고용안정장려금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위라벨일자리장려금	고용노동부	실·국·과(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실·국·과(팀)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
		실·국·과(팀) 고용지원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실·국·과(팀) 근로기준정책관 고용차별개선과
		실·국·과(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실·국·과(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정규직 전환 지원	고용노동부	실·국·과(팀) 근로기준정책관 고용차별개선과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고용노동부	실·국·과(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노동부	실·국·과(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고용안정장려금	339,913	390,894	390,894	439,394	439,394	48,500	12.4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347,495	347,495	339,913	-	7,582	390,894	390,894	390,894 [390,894]	381,361	0	9,533	439,394
· 위라벨일자리 장려금	30,866	30,866	24,293	-	6,573	35,826	35,826	30,726 [30,726]	28,223	0	2503	58,362
· 정규직전환 지원	10,000	10,000	9,599	-	401	2,500	2,500	2,500 [2,500]	1,778	0	722	6,900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12,332	12,332	12,223	-	109	15,931	15,931	21,031 [21,031]	20,529	0	502	14,644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294,297	294,297	293,798	-	499	336,637	336,637	336,637 [336,637]	330,831	0	5,806	359,48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용안정장려금)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를 도입·활용 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하여 고용을 안정시키는 사업주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 도모

구 분	지원내용
위라벨 일자리 장려금	<장려금> (1유형: 소정근로시간단축)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등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 단축 근로자 1인당 장려금(월 최대 3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금(월 최대 20만원), 최대 1년 지원 (2유형: 실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여 연장근로 감소 등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 근로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정액), 1년 지원 <시험사업 위라벨+4.5 프로젝트 지원사업>

구 분	지원내용
	(기업지원) 노사 합의로 임금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 * 생명·안전 관련 업종, 장시간 근로 발생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등은 선정·지원 우대
정규직 전환 지원	(장려금 및 임금증가 보전금)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사용)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는 30인 미만 기업 * 근로자 1인당 장려금 40만원, 임금증가 보전금 20만원(임금 20만원 이상 인상시) 최대 1년 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유연근무 장려금)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재택·원격·선택·시차출퇴근)를 활용하게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에 지원 * 활용횟수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 1년 지원,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일반근로자의 두배 지원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시차출퇴근),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모성보호·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용하거나 활용할 계획인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에 일·생활 균형 시스템 설치·사용비용 지원 *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구축비용의 80%(최대 1천만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장려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 *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첫 3개월 월 100만원)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1~3번째 사례,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월 30만원(인센티브 적용 시 월 10만원 추가 지급)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또는 파견근로자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월 최대 120~140만원)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원(월 최대 20~60만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제6호 및 제7호, 제37조의2(고용안정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
- 정규직 전환 지원: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제5호, 제37조의2(고용안정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제7호, 제37조의2(고용안정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② 추진경위 '17년 고용안정장려금으로 통합~계속

○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 근로자 사정(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습, 간병 등)이 있을 때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근무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일·생활 균형을 지원
- ('15년)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사업 도입
- ('17년) 고용장려금 통합에 따라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의 내역으로 통합
- ('18년)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의 내역으로 통합
- ('20년)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으로 사업명칭 변경
- ('24년)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내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유형 신설
- ('26년)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 신규지원 종료 및 워라벨+ 4.5프로젝트(시범사업) 유형 신설

○ 정규직 전환 지원

- 최초 사업시작년도 : '15년
- 추진경위: 인건비 절감목적의 비정규직 사용을 자제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가급적 정규직을 고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고용창출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정규직 전환 지원' 신설('15년)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새경제팀 경제정책방향('14.3월, 7월 발표)

□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를 완화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제정,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비정규직 사용규제를 합리화

- 비정규직 종합대책('14.12월 발표)

□ 고용형태별 근로조건 개선

- (정규직 전환지원) 우선지원중견기업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원(고용보험기금, '15)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16.3월 발표)

□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처우개선 강화

-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 지원) 정규직 전환지원금* 제도, 고용구조개선 컨설팅 등 행·재정 지원을 통해 자율적 정규직 전환 촉진

* 정규직 전환지원금 확대: (현행) 기간제·파견근로자 정규직 채용시 지원

→ (개선) 사내하도급·특수형태종사자 지원 추가('16 상반기 고보법시행령 개정)

- ('17년) 고용장려금 개편 및 지원한도 인상 : (임금상승분 70% <청년80%> → 임금상승분 80%, 간접노무비 20만원 포함 60만원 한도)
- ('18년) 지원한도 인상 : 간접노무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18.7.18.이후 전환자부터 적용)
- ('22년)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개편 : 임금 20만원 이상 증가 시 임금 증가 보전액

20만원 정액 지급(20만원 미만 증가 시 간접노무비만 지급)

- ('24~'25년) 신규 지원 종료, 기승인인원에 대해서만 지급
- ('26년) 비정규직 규모 및 정규직과의 격차 지속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지원 재개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16년)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에 따라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 도입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경 조성

○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 환경 조성 지원

-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 중 유연근무, 재택·원격 근무제를 도입·활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여 우수사례 발굴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

○ 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고용부, 행자부)

- 민간에서 수용 가능한 유연근로 모형 개발,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 지원(월 30만원) 신설
-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활성화로 전반적 근로방식·문화 변화 선도
- * 정부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평가시 유연근무제 활용률 배점 상향

- ('17년) 지원대상 확대(중소→중소·중견기업),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신설
- ('20년) 재택근무종합 컨설팅 신설
- ('23년) 유연근무종합 컨설팅으로 확대
- ('24년)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 지원 신설
- ('25년)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일반회계 이관)에 통합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 ▲ '05.12.30.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으로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사업 도입
- ▲ '07.4.27: 임신 16주 이상으로 완화, 1년 단위 반복계약의 경우 지원 제외 조항 삭제
- ▲ '08.4.30: 정규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지원기간은 1년으로 확대
- ▲ '10년: 임신 중으로 지원요건 완화('10.2월 시행)
- ▲ '11.1.1: 재계약 시점을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로 완화 / 지원금 지급방식 변경 최초 6개월 30만원, 이후 6개월 60만원)
- ▲ '13.1.25: 재계약 시점을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로 완화
- ▲ '14.10.1: 육아휴직(생후 15개월 이내 자녀)까지 대상자 확대
- ▲ '15.1.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 지원금 상향조정(최초 6개월 40만원, 이후 6개월 80만원)
- ▲ '17.1.1: 무기계약으로 재고용시에만 지원금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최대 1년간)
- ▲ '19.1.1: 사업 폐지(수요 저조 및 사업 효율화 차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 ▲ '95.7월 육아휴직등 부여 장려금 도입
- ▲ '04.3월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사업주 지원
- ▲ '06.1월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인상(15~20만원 → 20~30만원) 및 지원요건 완화
- ▲ '08.6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시에도 지원
- ▲ '11.1월 육아휴직등 장려금의 50%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간 고용 유지된 이후 지급
- ▲ '13.1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상향(우선지원대상 기업 월 40만원)
- ▲ '14.1월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 지원 수준 조정(대규모기업 월 10만원),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수준 상향(우선지원대상 기업 월 60만원/대규모 기업 월 30만원)
- ▲ '15.7월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 등 부여)을 국가·공공기관 폐지, 1,000인 이상 대규모기업은 5만원, 1,000인 미만은 10만원
- ▲ '17.1월 육아휴직등 부여 장려금 대규모기업 지원 폐지,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상향(월 30만원), 최초 육아휴직자 월 10만원 추가 지원,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기간에 2주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 포함
- ▲ '18.7월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육아휴직 등 사용 후 복귀 전 또는 복귀 후 3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자진퇴사 한 경우 지원
- ▲ '19.1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인상(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기간 확대 등(인수인계기간 2개월/인수인계기간에 한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 월 120만원)
- ▲ '19.1월 사업 효율화 차원에서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폐지(제도 활용 저조 및 정규직 전환 지원금과 중복)
- ▲ '20.3월 지원금 지급 방식 변경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 등의 기간중에 3개월 주기로 지급 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 '21.1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간접노무비 지원 확대
 - 우선지원대상기업 : 최초~세번째까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경우 사업주에게 각각 월 10만원 추가지원(1호~3호 인센티브)
- ▲ '22.1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중소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과제로 반영)에 따라 '육아휴직 지원금(특례)' 신설(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폐지), 대규모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폐지
- ▲ '24.7월 육아기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원제도 신설(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월 최대 20만원)
- ▲ '25.1월 ①육아휴직 지원금 남성 인센티브 신설, ②대체인력지원금 지원수준 상향(80만원→120만원) 및 파견근로자 사용시에도 지원, ③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및 업무분담지원금 신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7년 통합~계속
 - 위라벨일자리 장려금: '15년~
 - 정규직 전환 지원: '15년~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16년~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95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218,680	211,632	233,836	390,894	439,394

- 기타: 장려금 116,600명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21,260명
 - 정규직 전환 지원: 2,010명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장려금 7,073명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92,744명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민간위탁(워라밸+ 4.5 프로젝트)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민간위탁(추후 선정)
- 사업 수혜자 :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재채움뱅크)	보조	인재채움뱅크 선정기관	3,000	100%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2025 당초 계획) 35,826백만원 → (2026 계획) 58,362백만원, 22,536백만원 증액

- (요구)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 26년부터 신규지원 종료에 따라 통합 소정근로시간 단축 및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을 통합 운영하고, 근로시간 단축 분위기 확산을 위해 워라밸+4.5 프로젝트 신설
- (산출) ①장려금(30,127백만원), ②워라밸+4.5 프로젝트(27,647백만원), ③운영비(588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5,826	○ 소정근로시간 단축 : 25,037백만원 - 장려금: 24,449백만원 가. 기타보전금(310-04) : 24,449백만원 (산출) 13,767명×413천원×4.3개월 - 운영비: 588백만원 가. 일반수용비(210-01) : 527백만원 나. 특근매식비(210-05) : 22백만원 다. 임차료(210-07) : 4백만원 라. 국내여비(220-01) : 16백만원 마. 사업추진비(240-01) : 19백만원 ○ 실근로시간 단축 : 10,789백만원 - 장려금 : 10,789백만원 가. 기타보전금(310-04) : 10,789백만원 (산출) 7,493명×30만원×4.8개월	58,362	○ 장려금: 30,127백만원 가. 기타보전금(310-04) : 30,127백만원 (산출) 1유형: 27,570백만원[일반사유(24,449백만원=11,263명×443천원×4.9개월)+육아사유(3,121백만원=1,734명×30만원×6개월)] (산출) 2유형: 2,557백만원(1,776명×30만원×4.8개월) ○ <시험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 27,647백만원 가. 기타보전금(310-04) : 25,147백만원 (산출) 기업지원(220개소×9.5백만원×12개월) 나. 민간위탁사업비(320-02) : 2,500백만원 + 운영 및 인식확산(2,500백만원) ○ 운영비: 588백만원 가. 일반수용비(210-01) : 527백만원 나. 특근매식비(210-05) : 22백만원 다. 임차료(210-07) : 4백만원 라. 국내여비(220-01) : 16백만원 마. 사업추진비(240-01) : 19백만원

② 정규직 전환 지원

: (2025 당초 계획) 2,500백만원 → (2026 계획) 6,900백만원, 4,400백만원 증액

- (요구) 정규직 전환 지원 기승인 인원 및 신규 재개에 따른 지원금('26)

* '24년 이후 신규 지원 중단, 기승인 인원에 대해서만 지원했으나, 비정규직 규모 증가,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지속 등에 따른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을 고려해 신규 지원 재개('26~)

※ ▲비정규직 규모: ('22.8월) 815.6만명 → ('23.8월) 812.2만명 → ('24.8월) 845.9만명 (경찰 부가조사)

▲ 비정규직/정규직근로자 시간당 임금: ('22년)70.6 → ('23년)70.9 → ('24년)66.4 (고용형태별 실태조사)

- (산출) 510명×49만원×6개월(기승인 지원) + 1,500명×60만원×6개월(신규 지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500	○ 장려금 : 2,500백만원 가. 기타보전금(310-04) : 2,500백만원 (산출) 850명×49만원×6개월	6,900	○ 장려금 : 6,900백만원 가. 기타보전금(310-04) : 6,900백만원 (산출) 기승인 지원(510명×49만원×6개월) + 신규 지원(1,500명×60만원×6개월)

③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2025 당초 계획) 15,931백만원 → (2026 계획) 14,644백만원, 1,287백만원 감액

- (요구) 기업의 유연근무 및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해 사업주 장려금 등 지원 강화하고, 기업 현장에 안착될 수 있게 우수기업 발굴 등 지역별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원

- (산출) ①유연근무장려금(10,609백만원), ②일·생활 균형 시스템지원(1,400백만원), ③일·생활 균형 우수기업(184백만원), ④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구축(950백만원), ⑤일·가정 양립 실태조사(487백만원), ⑥일·생활 균형 인식개선(800백만원), ⑦운영비(214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931	○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11,813백만원 가. 기타보전금(310-04) : 11,813백만원 (산출) 7,875명×250천원×6개월 ○ 일·생활 균형인프라 지원: 2,700백만원 가. 기타보전금(310-04) : 2,700백만원 (산출) 인프라 지원(700백만원): 50개소×14백만원 (산출) 근태관리 지원(2,000백만원): 800개소×2.5백만원 ○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184백만원 가. 일반유역비(210-14): 184백만원 ○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220백만원 가. 일반연구비(260-01): 220백만원 ○ 일·생활 균형 인식개선: 800백만원 가. 일반수용비(210-01): 150백만원 나. 일반유역비(210-14): 650백만원 ○ 운영비: 214백만원 가. 일반수용비(210-01) : 184백만원 나. 국내여비(210-07) : 13백만원 다. 사업추진비(240-01) : 17백만원	14,644	○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10,609백만원 가. 기타보전금(310-04) : 10,609백만원 (산출) 7,073명×250천원×6개월 ○ 일·생활 균형시스템 지원: 1,400백만원 가. 기타보전금(310-04) : 1,400백만원 (산출) 200개소 × 7백만원 ○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184백만원 가. 일반유역비(210-14): 184백만원 ○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구축: 950백만원 가. 일반수용비 : 50백만원 나. 일반유역비(210-14): 900백만원 ○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487백만원 가. 정책연구비(260-02): 487백만원 ○ 일·생활 균형 인식개선: 800백만원 가. 일반수용비(210-01): 150백만원 나. 일반유역비(210-14): 650백만원 ○ 운영비: 214백만원 가. 일반수용비(210-01) : 184백만원 나. 국내여비(210-07) : 13백만원 다. 사업추진비(240-01) : 17백만원

④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2025 당초 계획) 336,637백만원 → (2026 계획) 359,488백만원, 22,851백만원 증액

- (요구) '24~25년 실집행 추세 반영 및 육아휴직지원금 특례 적용 범위 축소를 통한 지출 구조 개선, 제도 개선에 필요한 소요 예산(대체인력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 단가 인상, 육아휴직 복귀 후 인수인계기간 대체인력지원금 추가 지급, 대체인력지원금 사후지급금 폐지 등) 고려
- (산출) 세부산출 비교표 참조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36,637	○ 지원금: 333,637백만원 가. 보험금(320-04): 333,637백만원 · 육아휴직 지원금: 123,646백만원 (산출)(9,640명×780만원(200만원×3월+30만원×6월))+(15,815명×30만원×9월)+(3,889명×30만원×3월)+(3,708명×10만원×8월×75%)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55,404백만원 (산출)(15,830명×35만원×10월) · 대체인력 지원금: 119,352백만원 (산출)(5,159명×120만원×4월)+(805명×120만원×4월×75%)+(10,104명×120만원×9월×75%)+(835명×120만원×8월)+(255명×120만원×4월×75%) · 업무분담 지원금: 35,235백만원 (산출) (6,285명×20만원×8개월)+(18,651명×20만원×9개월×75%) ○ 인재채움뱅크: 3,000백만원 가. 민간경상보조(320-01) · 인재채움뱅크 운영비: 5개소×600백만원	359,488	○ 지원금: 356,388백만원 가. 보험금(320-04): 356,388백만원 · 육아휴직 지원금: 156,600백만원 (산출) (16,000명×30만원×9월)+[(23,000명×100만원×3월)+(23,000명×30만원×6월)]+(3,750명×10만원×8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44,296백만원 (산출) (8,500명×17만원×8월)+(18,600명×22만원×8월) · 대체인력 지원금: 130,298백만원 (산출) [(8,000명×30%×83만원×3월)+(8,000명×70%×90만원×3월)]+[(8,000명×30%×83만원×9월)+(8,000명×70%×90만원×9월)]+(1,400명×47만원×8월)+(89,648백만원×75%×50%)+[(8,000명×30%×83만원×1월)+(8,000명×70%×90만원×1월)] · 업무분담 지원금: 25,194백만원 (산출) [(4,000명×20%×40만원×9개월)+(4,000명×80%×60만원×9개월)]+(5,244명×12만원×8개월) ○ 인재채움뱅크: 3,100백만원 가. 민간경상보조(320-01) · 인재채움뱅크 운영비: (5개소×500백만원)+(2개소×250백만원) 나. 정책연구비(260-02) · 대체인력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1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추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30~40대 여성고용률(%)	목표	신규	63.8	67.0	69.0	69.1	여성고용률 증가 확대에 있다. 2023년 취업자 중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20.1%로 2022년 목표(20.0%)보다 0.1%p 상향하여 목표 설정	30~40대 여성취업자 수 / 30~40대 여성 생산인구 × 100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적	64.5	66.9	68.9	-	-			
	달성도	-	달성	달성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34,593개소, 81,544명
2023	○ 36,966개소, 72,176명
2024	○ 52,425개소, 99,783명
2025	○ 63,725개소, 133,02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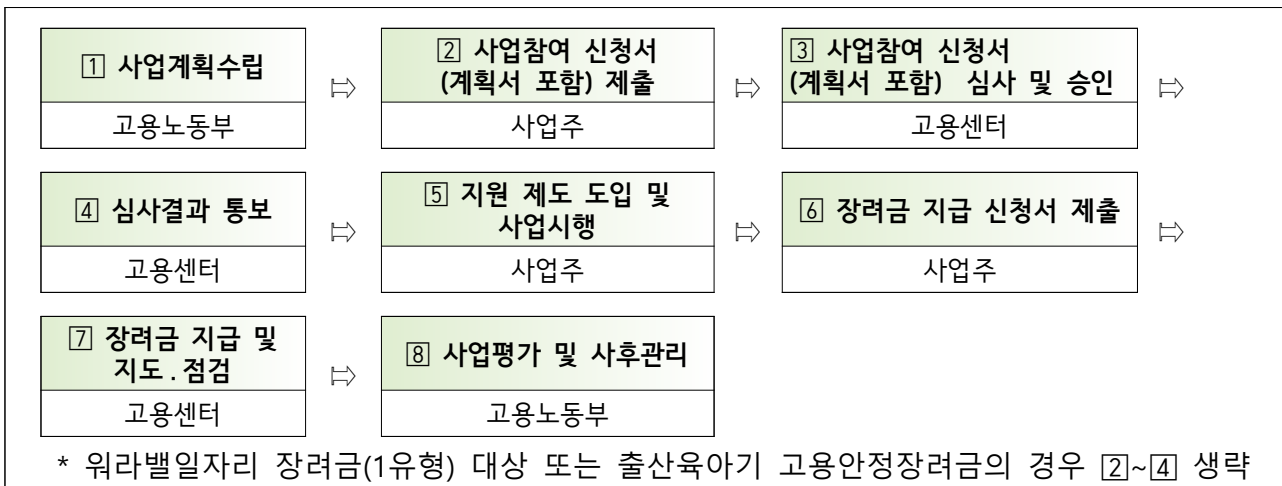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근로시간 단축·유연한 근로형태 활성화를 통해 전일제 위주의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토록 유도하여 바람직한 고용 관행을 유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2) 대외공개 평가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 위라벨일자리 장려금: 미부여<전년 우수>
 - 정규직 전환 지원: 미실시<사업종료>
 -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우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선필요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85,191	33,489	218,680	218,680	214,495	98.1	98.1	-	4,185
2023	199,518	12,114	211,632	211,632	209,488	99.0	99.0	-	2,144
2024	233,836	113,659	347,495	347,495	339,913	97.8	97.8	-	7,582
2025	390,894	-	390,894	390,894	381,361	97.6	97.6	-	9,53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계획변경 내역 -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유연근무 장려금): (7월) +9,332백만원(0.6만명)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7월) +7,100백만원(0.1만명), (12월) +21,057백만원(0.4만명) - 정규직 전환 지원: (12월) △4,000백만원 ○ 계획변경 사유 -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유연근무 장려금): 코로나19에 따른 감염예방, 자녀돌봄 등의 사유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지원수요 지속 증가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모성보호제도(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활성화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인원 증가 ○ 불용 사유: 장려금 집행 잔액 ○ 이월 사유: 해당 없음
2023	○ 계획변경 내역 - (7월) 내역사업 25,000백만원(위라벨일자리 장려금<△12,452>, 정규직 전환 지원 <△2,000>,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10,548>) + 여유자금 12,114백만원(비통화금융기관예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37,114백만원(1.6만명) ○ 계획변경 사유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장려금 지원 수요 증가에 따라 지원인원 확대 및 집행 예상잔액 내역사업 간 기금변경을 통해 효율적 예산 집행 ○ 불용 사유: 장려금 집행 잔액 ○ 이월 사유: 해당 없음
2024	○ 계획변경 내역 - (사업비 조정) 6,000백만원(정규직 전환 지원), △3,000백만원(위라벨일자리 장려금),

	△3,000백만원(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기금운용계획변경) 113,659백만원(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계획변경 사유 - (사업비 조정)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 부족에 따라 내역사업 간 사업비 조정을 통해 예산 집행 - (기금운용계획변경) 육아지원제도 활성화 등에 따른 육아휴직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 등 지원 수요 증가에 따라 지원인원 확대 ○ 불용 사유: 장려금 집행 잔액 ○ 이월 사유: 해당 없음
2025	○ 계획변경 내역 - (사업비 조정) △5,100백만원(위라벨일자리 장려금), +5,100백만원(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025.10.26.)	위라벨일자리 장려금	보전금 (310)	기타 보전금 (04)	△3,000	유연근무 장려금 예산부족에 따라 동일 세목내 내역사업 간 사업비 조정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3,000	
자체변경 (2025.12.26.)	위라벨일자리 장려금	보전금 (310)	기타 보전금 (04)	△2,100	유연근무 장려금 예산부족에 따라 동일 세목내 내역사업 간 사업비 조정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2,100	
합 계				-	

사 업 명						
(23) 직장어린이집지원(1345-3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45	351
명칭	고용평등증진	일가정양립지원	직장어린이집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직장어린이집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일가정양립지원부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직장어린이집지원	107,255	107,873	107,873	103,873	103,873	△4,000	△3.7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 획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2,130 (107,930)	107,930	107,255	-	675	107,873	107,873	107,754	-	119	103,873
·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18,583 (18,583)	18,583	18,583	-	-	14,946	14,946	14,946	-	-	15,205
·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14,134 (8,237)	8,237	8,000	-	237	12,204	11,999	11,999	-	-	8,000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75,461 (77,158)	77,158	77,158	-	-	76,537	77,518	77,461	-	57	76,537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3,952 (3,952)	3,952	3,514	-	438	4,186	3,410	3,348	-	62	4,131

※ '25년부터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의 비목이 '일반용역비(210-14)'에서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변경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직장어린이집 등 운영 지원)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공공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 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 및 고용안정에 기여
- 직장어린이집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에 대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및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확대 유도 및 운영의 내실화 도모

*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보육수요조사·시설규모 결정·설치공사 자문·인력채용 지원·지원신청 안내 및 특수보육프로그램 개발·지원, 보육교사 교육 지원 등

-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 직장어린이집 시설비 및 교재교구비 등 지원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게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게 운영비를 지원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고용보험법」 제26조(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시설, 어린이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시설의 지원)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운영비용 중 일부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주단체를 포함하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영유아보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인 피보험자로 한정한다)의 영유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지원의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치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비용을 융자하거나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와 장애아동 또는 영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융자나 지원의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2항(권한의 위임) ②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9. 제38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비용의 지원

10. 제3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비용의 융자·지원 및 융자금·지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직장어린이집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단독으로 설치·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운영비의 일부와 보육교사, 직장어린이집의 원장과 조리원(이하 “보육교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건비(위탁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등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원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주 단체를 포함하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영유아보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인 피보험자로 한정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의 영유아 수가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한 영유아보육 및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운영비에 한정하고, 직장어린이집의 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 영유아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어린이집(이하 “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할 사업주의 범위 등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2(그 밖의 보육 관련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및 비용의 일부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공공 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교육·육아·주택 등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복지시설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경비보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여성의 취업촉진과 복지증진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보조금의 지급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② 추진경위

○ 여성고용 확대 및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94년 경제기획원, 보건사회부, 노동부 공동으로 「영유아 보육(탁아)사업 확충 대책('95~'97년)」 수립·시행

○ '91.8월 영유아보육법 설치의무사업장 명시(상시 여성근로자 500인 이상)

○ '95.5월 설치의무사업장 범위 확대(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 '96.11월 「직장어린이집 확충대책('96.11월)」을 수립

○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사업주의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취약한 지역에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위탁

○ '03년 직장어린이집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업주에 대한 직장 어린이집 설치·운영 관련 서비스 제공

○ '05.1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범위 확대(영유아보육법령 개정)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 '08.4월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요건을 완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하여 대기업 어린이집의 협력업체와의 공동 활용 등 인근사업장 근로자의 보육부담 완화

○ '1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상한액을 확대하고, 인건비 지원을 확대

- '1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비 확대
- '12년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지원 확대
- '13.6.10. 「일과 가정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수립
- '13.12.26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보육교사 인건비 확대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일부개정(상시)
 -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요건 완화, 코로나19등 천재지변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긴급 지원, 자녀 뿐만 아니라 보호자인 피보험자의 영유아를 모두 포함('21.1), 우선지원대상 기업 인건비 지원단가 15% 상향조정('22.1)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일부개정(22.8.)
 - 공동직장어린이집 중소기업 근로자 영유아 비율 50% 유지 의무 미준수시 설치지원금 반환 규정 삭제(제재 조치 완화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의무비율 (20%) 마련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23.1.1. 시행)
 - 공동직장어린이집 중소기업 근로자 영유아 비율이 50%에 미달할 경우에도 인건비·운영비 우대지원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일부개정('24.12.9.)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임차비 지원 신설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일부개정('25.1.21.)
 -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인건비, 운영비 지원 신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0~계속(공공직장어린이집 등 운영 지원)
 - '00~계속(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 '95~계속(직장보육교사등 인건비 지원)
 - '11~계속(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5,965	111,195	107,930	107,873	103,87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위탁)

- 사업 수혜자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직장어린이집 지원		근로복지 공단	7,450	100	고용보험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5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2025) 14,946백만원 → (2026 계획) 15,205백만원(+1.7%)

①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비: 9,533백만원, 전년동

② 어린이집 통학버스 구매 비용: 1,350백만원(+1,076백만원)

- (요구)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사항 준수를 위한 공공직장어린이집 통학버스(전기버스) 6대 구매
- (산출) ① (버스구입) 210백만원 x 6대 = 1,260백만원('26년말 기준 차령 13년 초과분)
- ② (제세금) 10백만원 x 6대 = 60백만원
- ③ (충전대) 5백만원 x 6개소 = 30백만원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개정 '21.4.1.)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2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④제1항에 따른 차령과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의 합은 1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자부담 비용: 1,358백만원(△1,396백만원)

- (요구) 국토교통부 주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된 수안들, 모아래 어린이집 공사비 자부담분(50%) 1,358백만원 요구
- (산출) 737백만원(수안들) + 621백만원(모아래) = 1,358백만원

◇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 '24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노후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을 국비50% : 자비50% 비용 부담으로 지원
-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4개소 선정, '26년에 2개소 공사계획 (2개소는 '24, '25년에 공사)

④ 노후어린이집 주방 급/배기 설비 공사비: 531백만원(순증)

- (요구) “조리매연”에 상시 노출돼 폐암 발병이 우려되는 조리근로자를 보호하고자, 20년 이상 노후된 어린이집 주방 급/배기 설비교체 공사비 531백만원 요구
- (산출) 88.5백만원 x 6개소 = 531백만원 * 24개 노후어린이집에 대한 4개년 순차사업 추진

◇ 조리근로자 보호를 위한 매연 관리 필요

- 환경부는 조리매연이 대기오염 및 근로자 건강에 미치는 심각성에 대비하고자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계획(2025~2029)」 세부추진과제 2-4로 ‘조리매연 관리체계 마련’ 추진
- 3개 공공직장어린이집(남동, 부천, 수원) 대상 실태조사에서, 배기 구조는 실제 필요배기량의 10% 미만을 소화하여 교체 필요

⑤ 직장보육지원센터 운영: 2,433백만원, (+48백만원)

- (요구) 센터 운영비 및 공무원 29명 인건비, 여성고용촉진시설관리,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요구
- (산출) 직장보육지원센터(3개소) 운영비 567백만원 + 공무원 29명 인건비 1,434백만원 + 시설관리 107백만원 + 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 325백만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2025) 12,204백만원 → (2026 계획) 8,000백만원(△34.4%)

① 시설비 지원: 6,070백만원 (△3,757백만원)

- (요구) 4개년 평균 지원단가 반영하여 '24년 지원 수준 요구
- (산출) 27개소 x 225백만원('24년 지원 개소수 및 4개년 평균 지원단가 반영)

② 교재교구비 지원: 1,380백만원 (△216백만원)

- (요구) 4개년 평균 지원단가 반영하여 '24년 지원 수준 요구
- (산출) 46개소 x 30백만원 = 1,380백만원

③ 중소기업 임차비 지원: 550백만원 (△230백만원)

- (요구) '24년 지원 수준 요구
- (산출) 13개소 x 42백만원(평균 지원단가)

□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2025) 76,537백만원→(2026 계획) 76,537백만원, 전년동

① 중소기업 운영 어린이집: 21,118백만원(전년동)

- (요구)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4개년('21~'24년) 평균 지원수준 요구
- (산출) 132개소 x 138만원 x 9.6명 x 12개월 = 21,118백만원

② 대기업 운영 어린이집: 54,343백만원(전년동)

- (요구) 대기업 직장어린이집 4개년('21~'24년) 평균 지원수준 요구
- (산출) 585개소 x 60만원 x 12.9명 x 12개월 = 54,343백만원

③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인건비 지원: 1,076백만원(전년동)

- (요구) '24년 기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개소수 반영
- (산출) 65개소 x 138만원* x 12월 = 1,076백만원
- * '25년 현재 중소기업 지원단가 반영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2025) 4,186백만원 → (2026 계획) 4,131백만원 (△1.3%)

① 운영비: 3,897백만원(△55백만원)

- (요구) 전년도 지원수준 요구
- (산출) 132개소 x 246만원 x 12월 = 3,897백만원
- * 지원 ('21) 136개소 → ('22) 133개소 → ('23) 116개소 → ('24) 132개소

②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운영비 지원: 234백만원(전년동)

- (요구) '24년 기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개소수 반영
- (산출) 65개소 x 30만원 x 12월 = 234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7,873	○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14,946백만원	103,873	○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15,205백만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가.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37개소)(9,533백만원) 나. 통학버스(전기차) 구매(274백만원) 다. 그린리모델링 공사비(2,754백만원) 라. 직장보육지원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2,060백만원) 마. 직장보육지원시스템 유지관리비(325백만원)		가.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37개소)(9,533백만원) 나. 통학버스(전기차) 구매(1,350백만원) 다. 그린리모델링 공사비(1,358백만원) 라. 직장보육지원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2,108백만원) 마. 직장보육지원시스템 유지관리비(325백만원) 바. 주방 급/배기 설비 공사(531백만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12,204백만원 가. 시설설치 9,828백만원 • 36개소×273백만원 나. 교재교구비 1,596백만원 • 57개소×28백만원 다. 중소기업 임차비 지원 780백만원 • 8개소×97.44백만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8,000백만원 가. 시설설치 6,070백만원 • 27개소×225백만원 나. 교재교구비 1,380백만원 • 46개소×30백만원 다. 중소기업 임차비 지원 550백만원 • 13개소×42백만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76,537백만원 가. 대기업 인건비 지원(54,343백만원) • 591개소×59.4만원×12.9명×12월 나.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21,118백만원) • 134개소×131.3만원×10명×12월 다. 돌봄공백 채움 프로그램(1,076백만원) • 65개소×1명×138만원×12개월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76,537백만원 가. 대기업 인건비 지원(54,343백만원) • 585개소×60만원×12.9×12개월 나.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21,118백만원) • 132개소×138만원×9.6명×12개월 다. 돌봄공백 채움 프로그램(1,076백만원) • 65개소×1명×138만원×12개월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4,186백만원 가.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3,952백만원) • 134개소×2.46백만원×12월 나. 돌봄공백 채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234백만원) • 65개소×30만원×12개월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4,131백만원 가.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3,897백만원) • 132개소×2.46백만원×12개월 나. 돌봄공백 채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234백만원) • 65개소×30만원×12개월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직장어린이집 지원 개소수 (개소)	목표	876	934	942	960	1,065	예산 상 목표 지원 개소수	해당 예산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으로 직접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개소수의 합	근로복지공단 (보육통계)
	실적	857	936	929		-			
	달성도	97.8	100.2	98.6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공공직장어린이집 37개소 및 직장보육지원센터 3개소 14,028백만원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110개소(시설전환 58, 교재교구비 92) 19,711백만원 지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574개소 77,303백만원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34개소 3,973백만원 지원
2023	- 공공직장어린이집 37개소 및 직장보육지원센터 3개소 18,428백만원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69개소(시설전환 36, 교재교구비 57) 12,165백만원 지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714개소 76,807백만원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26개소 3,795백만원 지원
2024	- 공공직장어린이집 37개소 및 직장보육지원센터 3개소 18,428백만원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86개소(시설전환 27, 교재교구비 22, 임차비 12) 8,000백만원 지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711개소 77,158백만원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32개소 3,514백만원 지원
2025	- 공공직장어린이집 37개소 및 직장보육지원센터 3개소 14,926백만원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107개소(시설비 33, 교재교구비 62, 임차비 12) 11,999백만원 지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738개소 77,461백만원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21개소 3,348백만원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공공직장어린이집(37개소) 및 직장보육센터(3개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통해 영아보육, 야간·시간 연장 보육, 휴일 보육, 방과 후 보육 등 근로자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반 어린이집과의 차별성 강화
- 공공보육시설의 노후시설 개보수 및 차량 등 장비 교체를 통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기술 지원 역할을 강화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및 운영 내실화 도모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_86개소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설치비, 시설 개보수비, 교재교구비, 임차료) 지원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유도 및 운영 지원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_717개소 지원

-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운영 부담을 경감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지속 운영을 돕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유도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_132개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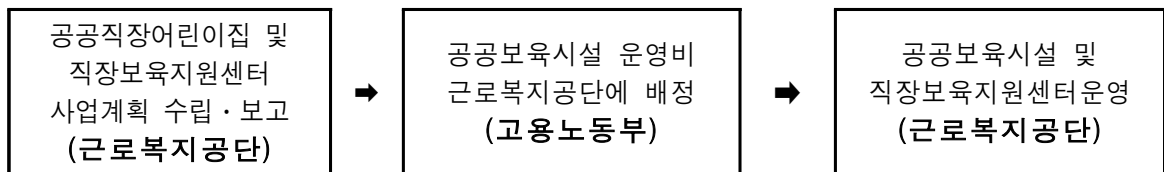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게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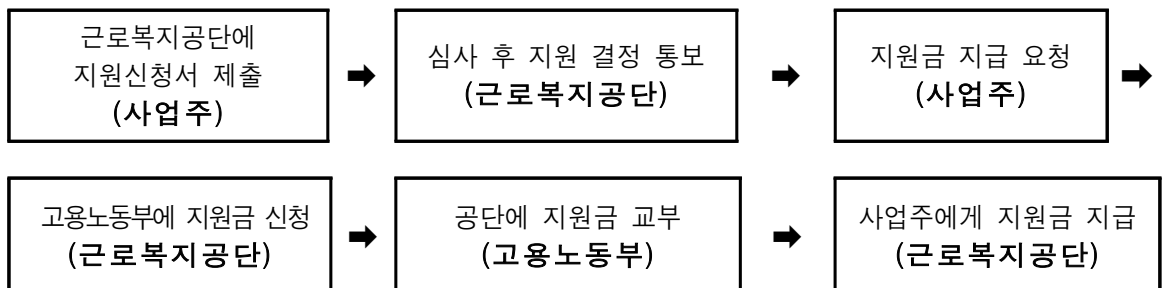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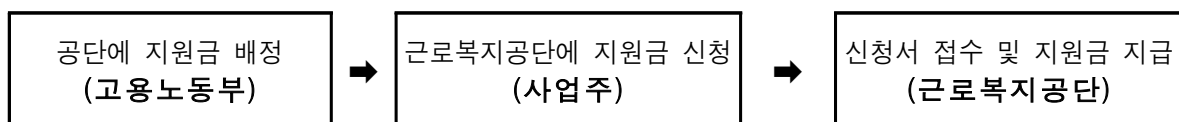
○ 공공직장어린이집 등 운영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공공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성격에 맞게 비목을 변경하고 계약을 통해 수탁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책임과 의무, 과업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할 것('23년 결산)

→ '25년 예산편성시 비목을 변경(일반용역비 → 민간위탁사업비)하고 위탁계약 체결

- 원활한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AI푸드스캐너 장비 확대 및 임차기간 연장 방안을 마련할 것('23년 결산)

→ AI푸드스캐너 장비 확대 및 임차기간 연장에 필요한 비용을 감안하여 '25년 자체 운영비 중 실행예산 40백만원을 편성

2) 대외공개 평가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24년)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개선필요_직장보육교사의 고용유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 (인건비 제외 사업) 양호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25,965	△7,100	118,865	118,865	118,830	99.9	99.9	-	35
2023	111,195	-	111,195	111,195	111,195	100	100	-	-
2024	112,130	-	107,930	107,930	107,255	99.4	99.4	-	675
2025	107,873		107,873	107,873	107,754	99.9	99.9		11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액 35백만원(집행잔액), 이월액 없음
2023	- 불용액 0원, 이월액 없음
2024	- 불용액 675백만원(집행잔액), 이월액 없음
2025	- 불용액 119백만원(집행잔액), 이월액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 변경 (2025.11.19.)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320	04	△ 205	내역사업간 현액조정
자체 변경 (2025.11.19.)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320	04	+ 981	내역사업간 현액조정
자체 변경 (2025.11.19.)	중소기업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320	04	△ 776	내역사업간 현액조정
합 계				0	

사 업 명						
(24) 모성보호육아지원(1345-35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45	358
명칭	고용평등증진	일가정양립지원	모성보호육아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실·국·과(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출산전후 휴가급여	고용노동부	실·국·과(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유산사산 휴가급여	고용노동부	실·국·과(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고용노동부	실·국·과(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배우자출산휴가급여	고용노동부	실·국·과(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난임치료 휴가급여	고용노동부	실·국·과(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모성보호 육아지원	2,573,780	4,022,454	4,319,511	4,103,100	4,072,832	50,378	1.3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2496,830	2,573,841	2,573,780	-	61	4,022,454	297,057	4,319,511	4,309,155	-	10,356	4,072,832
· 출산전후휴가급여	347,012	353,700	353,689	-	11	352,497	65,859	418,356	416,299	-	2,057	379,160
· 유산사산휴가급여	1,858	2,331	2,323	-	8	1,859	2,236	4,095	4,031	-	64	2,666
· 육아휴직급여	1,986,864	2,052,506	2,052,487	-	19	3,402,970	232,832	3,635,802	3,629,169	-	6,633	3,393,598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149,048	157,982	157,970	-	12	233,521	△4,089	229,432	228,186	-	1,246	268,001
· 배우자출산휴가급여	8,375	7,322	7,311	-	11	24,213	7,496	31,709	31,555	-	354	26,944
· 난임치료휴가급여	3,673	-	-	-	-	7,394	△7,277	117	114	-	3	2,46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일하는 여성의 출산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노동시장 이탈을 예방하며, 생활 안정을 도모
-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여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고 배우자의 건강보호를 도모
- (난임치료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여 난임치료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4(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9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9(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 제공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제77조의4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추진경위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 '94-'97,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에 의거 출산전후휴가기간 확대 계획 추진
- '00.4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결정
- '01.8월, 모성보호 관련 3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01.11월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 사회보험 분담 시행
- '05.5월, 출산전후휴가급여 사회분담확대 관련 법 개정
 - 우선지원대상기업 출산전후휴가급여 사회분담 확대(30일→90일)
 - 유산·사산휴가급여 지급
- '07.4.27., 출산전후휴가급여 감액규정 개정(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 '17.1.1.,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135→150만원으로 인상(고시 개정)
- '18.1.1.,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150→160만원으로 인상(고시 개정)
- '19.1.1.,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160→180만원으로 인상(고시 개정)
- '20.1.1.,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180→200만원으로 인상(고시 개정)
- '20.12.10.,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지급 시행('20.6월 「고용보험법」 개정)
- '21.7.1.,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급 시행('20.12월 「고용보험법」 개정)
- '23.1.1.,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200→210만원으로 인상(고시 개정)
- '23.7.1.,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기간중 계약 만료시 법정 유산·사산휴가급여를 보장
- '25.2.23.,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100일) 및 급여 지원 확대

나. 육아휴직급여

-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제1,2차)('94-'97, '98-'02) 및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제3차)
- '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여성의 사회참여 10대 과제』로 선정
- 2000년 16대 총선 관련 새천년민주당 등 3당 공약사항
- '01.8.14., 모성보호관련 3법 개정('01.11.1부터 시행)
- '07.4월, 육아휴직급여 인상 : 40만원→50만원
- '11.1.1.,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수준으로 인상
 - *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15%는 종료후 6개월 후 지급
- '14.1.1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까지 육아휴직 사용범위 확대

국정과제 < 63.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③ 근로자 자녀양육 여건 조성

-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까지 육아휴직 사용 확대 검토·추진

- '14.2.4.,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관계부처 합동) 발표
 - * 여성의 생애주기별(임신·출산 → 영유아→ 초·중·고)로 모성보호, 보육·돌봄, 재취업 지원 및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해 여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참가를 뒷받침

- *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확대를 위한 급여 상향, 비정규직 육아휴직 지원대상 확대, 대체인력 채용지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한 기간 연장 및 급여 상향
- ⇒ 아빠의 달 도입·시행('14.10월) : 동일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한 근로자에 대해 첫 달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 지원

국정과제 < 62. 행복한 임신과 출산 >

- ⑧ 「아빠의 달」 도입을 통한 아빠의 출산휴가 장려
 - 제도 시행방식, 지원수준, 재원마련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도입 추진

- '14.10.15, 여성고용 후속 보완 대책 (기재부, 여가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발표
- * 사업주지원금 인상 및 지원요건 완화, 자동육아휴직 확산, 육아휴직 복귀율 제고에 따른 지급 방식 변경 등 여성의 고용안정 유도
 -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비율을 변경(종전 15% → 25%, '15.7월 시행)
- '16.1.1, 아빠의 달 기간 확대(종전 1개월→3개월)
- '17.9.1. 공약 이행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 인상
 - *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소득대체율 40→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18.하반기. 공약 이행에 따라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인상 추진
 - * (기존) 첫째자녀 150만원, 둘째부터 200만원→ (개선) 모든 자녀 200만원
- '19.1.1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 인상(200→250만원)
- '20.2.28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
- '20.3.31 비자발적 퇴사시 사후지급금 지급 및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인상
 - * 첫 3개월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80%(상한 150만원), 7개월 이후 50%(상한 120만원)
- '20.12.8. 육아휴직 분할횟수 확대(1회 → 2회)
- '21.11.19. 임신중 육아휴직 허용('21.5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 '22.1.1.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통상임금 50% → 80%, 상한액 120만원 → 150만원)
- '22.1.1.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21.12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상한 200~300만원)로 지급
- '24.1.1.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23.12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상한 200~450만원)로 지급
- '24.6.19.,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발표
 - * 육아휴직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 '25.1.1. 육아휴직 급여 인상
 - * 1~3개월 월 상한 250만원(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통상임금 80%),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방식 폐지,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인상(첫 3개월 250만원 상한 → 300만원 상한. 4개월 이후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첫달 상한액 인상(200만원 → 250만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 방식 개정

-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 → 1년 6개월),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2회 → 3회)
-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추가 6개월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08.6.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정('08.12.6 시행)
- '08.12~'09.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 '09.5~12., 여성부·노동부 공동 기본계획(안) 수립 및 관계부처 협의
- '09.12.23., 국무총리 소속 여성정책실무회의 개최
- '09.12.29., 국무총리 소속 여성정책조정회의 심의·확정
- '11.9.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개시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통상임금의 40% × 근로시간 단축 비율
- '14.2.4.,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관계부처 합동) 발표
 - *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확대를 위한 급여 상향, 비정규직 육아휴직 지원대상 확대, 대체인력 채용지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한 기간 연장 및 급여상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14.10.1)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통상임금의 60%(상한 150만원) × 근로시간 단축 비율
- '18.1.1., 공약이행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통상임금의 60%→80%)
 -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임금감소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여 '10to4더불어 돌봄' 지원
- '19.10.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1→2년으로 확대, 日 1시간 단축급여 인상 (통상임금 100%)
- '24.7.1 육아기 근로시간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 주 5시간→10시간으로 확대
- '24.6.19.,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발표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등
- '25.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계산 기준금액(월 통상 임금의 100%) 상한액 상향: 200만원 → 220만원
- '25.2.23., 대상자녀 연령 상향: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사용기간 확대: 최대 2년(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 최대 3년(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2), 최소 사용기간 축소: 3개월 → 1개월

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국정과제: 71-3-1 일·생활 균형과 육아·돌봄 지원 확대 단계별 이행목표에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확대방안 마련('18.하)' →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단계적 확대('19~'21)'로 명시

국정과제< 71. 휴식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

3. 일·생활 균형과 육아·돌봄 지원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기간(현행 5일(유급3일)도 단계적으로 확대, 아빠의 육아참여 촉진

- '17.12.26. 「여성일자리대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기간 확대'를 핵심과제로 발표

◇ 「여성일자리대책(관계부처 합동)」

2. 경력단절예방

(4) 아빠육아참여 확산

-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까지 확대(~'17.12월 실태조사, '22년까지 단계적 시행)

- '18.7.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산대책」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핵심과제로 발표

◇ 「저출산대책」(“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방안)

2.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2) 남성 육아휴가·휴직 사용 확산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 확대 및 유급 사용분 정부 지원, 사용시기 유연화 등 선택권 강화

- '18.7.30., 김상희 의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 '19.8.2. 관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19.10.1.,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및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상한 382,770원)
- '20.1.1.,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 382,770원 고시
- '23.1.1.,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 401,910원 고시
- '24.6.19.,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발표
 - *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
- '25.2.23.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10일 → 20일), 사용 관련 기한(90일 이내 청구 → 120일 이내 사용), 분할 사용 가능 횟수(1회 → 3회)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최초 5일 → 20일)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1,607,650원

마. 난임치료휴가 급여

- 국정과제: 50.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22.5월)

국정과제< 50.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일·가정 양립 지원>

- 실태조사 등을 거쳐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 도입

- '23.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산대책」에서 '난임휴가 확대방안' 발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 정책과제 발표」

(난임지원 확대) 난임휴가 확대(연 3일[1일 유급]→6일[2일 유급])

- '25.2.23.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2일 유급) 이내의 휴가 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 2일분 정부 급여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01년~계속, (유산사산휴가급여) '06년~계속,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1년~계속, (배우자출산휴가급여) '19.하~계속, (난임치료휴가급여) '25년 2월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1,933,301	2,100,641	2,496,830	4,022,454	4,072,83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직접)
- 사업 수혜자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출산전후휴가급여 : (2025) 352,497백만원 → (2026 계획) 379,160백만원, +7.6%

- (변동내역) 최근 5년간('20~'24년) 급여 수급자 수 평균 증가율, '25년 법 개정에 따른 미숙아 지원일수(100일) 확대, 상한액 인상(월 210만원 → 220만원) 반영

$$379,160\text{백만원} = \textcircled{1}\text{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306,387\text{백만원} + \\ \textcircled{2}\text{대규모기업 근로자 } 65,515\text{백만원} + \\ \textcircled{3}\text{예술인 } 994\text{백만원} + \\ \textcircled{4}\text{노무제공자 } 6,264\text{백만원}$$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306,387백만원: 45,780명 × 2.18백만원 × 3.07개월

a. (지원인원: 45,780명)

- * '25년 예상 지원인원 45,237명에 최근 5년간('20~'24년) 전체 수급자 수 평균 증가율 1.2% 반영

b. (월 지원단가: 2.18백만원)

- * '24년 월 통상임금 구간별 수급자 비율 반영

월 통상임금 구간	'24년 수급자 (명)	수급자 비율 (%)	월 지원기준 (만원) ※ 구간별 중간값	수급자 비율 반영 월 지원단가 (만원)
210만원 미만	6,181	13.12	210	27.55
210~220만원 미만	3,744	7.95	215	17.09
220만원 이상	37,189	78.93	220	173.65
합계 (월 지원단가)				218.29

c. (지원기간: 3.07개월)

* 단태아, 미숙아, 다태아 지원기간과 출생아 중 단태아, 미숙아, 다태아 비율 반영
: 3개월×0.885 + 3.33개월×0.06 + 4개월×0.055

※ 지원기간: 단태아 90일(3개월), 미숙아 100일(3.33개월), 다태아 120일(4개월)

※ 출생아 중 단태아, 미숙아, 다태아 반영 비율('23년 통계청 출생통계 참조)
: 단태아 88.5%, 미숙아 6%, 다태아 5.5%

② **대규모기업 65,515백만원:** 28,491명 × 2.19백만원 × 1.05개월

a. (지원인원: 28,491명)

* '25년 예상 지원인원 28,153명에 최근 5년간('20~'24년) 전체 수급자 수 평균 증가율 1.2% 반영

b. (월 지원단가: 2.19백만원)

* '24년 월 통상임금 구간별 수급자 비율 반영

월 통상임금 구간	'24년 수급자 (명)	수급자 비율 (%)	월 지원기준 (만원) ※ 구간별 중간값	수급자 비율 반영 월 지원단가 (만원)
210만원 미만	1,735	6.00	210	12.59
210~220만원 미만	1,326	4.58	215	9.85
220만원 이상	25,875	89.42	220	196.73
합계 (월 지원단가)				219.17

c. (지원기간: 1.05개월)

* 단태아, 미숙아, 다태아 지원기간과 출생아 중 단태아, 미숙아, 다태아 비율 반영
: 1개월×0.885 + 1.33개월×0.06 + 1.5개월×0.055

※ 지원기간: 단태아 30일(1개월), 미숙아 40일(1.33개월), 다태아 45일(1.5개월)

※ 출생아 중 단태아, 미숙아, 다태아 반영 비율('23년 통계청 출생통계 참조)
: 단태아 88.5%, 미숙아 6%, 다태아 5.5%

③ **예술인 994백만원:** 183명 × 1.77백만원 × 3.07개월

a. (지원인원: 183명)

* '25년 예상 지원인원 181명에 최근 5년간('20~'24년) 전체 수급자 수 평균 증가율 1.2% 반영

b. (월 지원단가: 1.77백만원)

* '24년 수급자 월평균 지급액 1.69백만원(지급금액 713백만원 ÷ 수급자 수 141명 ÷ 3개월)
× 상한액 인상비율 1.048(220만원/210만원)

c. (지원기간: 3.07개월)

* 출생아 중 단태아, 미숙아, 다태아 비율을 반영한 지원기간
: 3개월×0.885 + 3.33개월×0.06 + 4개월×0.055

※ 지원기간: 단태아 90일(3개월), 미숙아 100일(3.33개월), 다태아 120일(4개월)

※ 출생아 중 단태아, 미숙아, 다태아 반영 비율('23년 통계청 출생통계 참조)
: 단태아 88.5%, 미숙아 6%, 다태아 5.5%

④ **노무제공자 6,264백만원:** 1,115명 × 1.83백만원 × 3.07개월

a. (지원인원: 1,115명)

* '25년 예상 지원인원 1,102명에 최근 5년간('20~'24년) 전체 수급자 수 평균 증가율 1.2% 반영

b. (월 지원단가: 1.83백만원)

* '24년 수급자 월평균 지급액 1.75백만원(지급금액 4,774백만원 ÷ 수급자 수 909명 ÷ 3개월)
× 상한액 인상비율 1.048(220만원/210만원)

c. (지원기간: 3.07개월)

* 단태아, 미숙아, 다태아 지원기간과 출생아 중 단태아, 미숙아, 다태아 비율 반영
: 3개월×0.885 + 3.33개월×0.06 + 4개월×0.055

※ 지원기간: 단태아 90일(3개월), 미숙아 100일(3.33개월), 다태아 120일(4개월)

※ 출생아 중 단태아, 미숙아, 다태아 반영 비율('23년 통계청 출생통계 참조)
: 단태아 88.5%, 미숙아 6%, 다태아 5.5%

② **유산·사산휴가급여 : (2025) 1,859백만원 → (2026 계획) 2,666백만원, +43.4%**

o (변동내역) 최근 3년간('22~'24년) 급여 수급자 수 평균 증가율, '25년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따른 임신기간 11주 이내 휴가일수 확대(5일→10일), 상한액 인상(월 210만원 → 220만원) 반영

2,666백만원 = ①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2,202백만원 +
②대규모기업 근로자 70백만원 +
③예술인·노무제공자 394백만원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2,202백만원:** ①-1기준 1,729백만원 + ①-2제도확대 473백만원

①-1 **기준 1,729백만원:** 1,544명 × 1.12백만원

a. (지원인원: 1,544명)

* '25년 예상 지원인원 1,395명에 최근 3년간('22~'24년) 수급자 수 평균 증가율 10.7% 반영

b. (지원단가: 1.12백만원)

* '24년 수급자 평균 지급액 1.07백만원(지급금액 1,558백만원 ÷ 수급자 수 1,451명) × 상한액
인상비율 1.048(220만원/210만원)

①-2 **'25년 제도 확대* 반영 473백만원:** 1,314명 × 0.36백만원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경우 급여지원 기간확대(5→10일)에 따른 추가 5일분 지원금액 가산

a. (지원인원: 1,314명)

* 임신기간 11주 이내 근로자 '24년 수급자 수 1,061명에 최근 3년간('22~'24년) 임신기간 11주 이내
근로자 수급자 수 평균 증가율 11.3% 반영

b. (지원단가: 0.36백만원)

* 임신기간 11주 이내 근로자 '24년 수급자 5일분 평균 지급액 0.34백만원(지급금액 365백만원
÷ 수급자 수 1,061명) × 상한액 인상비율 1.048(220만원/210만원)

② **대규모기업 70백만원:** 36명 × 1.95백만원

a. (지원인원: 36명)

* '25년 예상 지원인원 32명에 최근 3년간('22~'24년) 수급자 수 평균 증가율 13.6% 반영

b. (지원단가: 1.95백만원)

* '24년 수급자 평균 지급액(지급금액 78백만원 ÷ 수급자 수 42명) × 상한액 인상비율
1.048(220만원/210만원)

③ 예술인·노무제공자 394백만원: 85명 × 4.63백만원

a. (지원인원: 85명)

* '25년 예상 지원인원 77명(예술인 7명, 노무제공자 70명)에 예상 증가율 10% 적용

※ ('22) 38명(예술인 7명, 노무제공자 30명) → ('23) 64명(예술인 6명, 노무제공자 58명) → ('24) 151명(예술인 27명, 노무제공자 124명)

b. (지원단가: 4.63백만원)

* '24년 수급자 평균 지급액 4.42백만원(지급금액 668백만원 ÷ 수급자 수 151명)

× 상한액 인상비율 1.048(220만원/210만원)

③ 육아휴직급여 : (2025) 3,402,970백만원 → (2026 계획) 3,393,598백만원, △0.3%

o (변동내역) '25년 제도 개편 사항(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간연장, 통합신청 등) 및 향후 추진 사항(단기 육아휴직) 등 반영

3,393,598백만원 = ①일반육아휴직급여 3,092,679백만원 +
②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184,931백만원 +
③육아휴직 기간연장 97,552백만원 +
④단기 육아휴직 18,436백만원

① 일반 육아휴직급여 3,092,679백만원: 173,551명 × 1.980백만원 × 9개월

a. (지원인원: 173,551명)

* '25년 예상 지원인원 165,287명에 예상 증가율 5% 적용

※ '24년 합계출산율 반등 추이(합계출산율: ('23) 0.72 → ('24) 0.75), 제도개선을 통한 사용 여건 조성으로 사용 인원 증가 5% 반영

b. (지원단가: 1.980백만원)

* '24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들의 통상임금 기준 구간별 지원단가 평균 (2.380+1.978+1.582) ÷ 3

기간	통상임금 구간(만원)	지원단가(백만원)	비중 (인원수)
1~3개월	~100	0.85	0.37%(490명)
	100~150	1.25	1.47%(1,952명)
	150~200	1.75	2.79%(3,702명)
	200~250	2.25	29.74%(39,410명)
	250만원~	2.5	65.63%(86,981명)
	평균단가		2.380백만원
4~6개월	~100만원	0.85	0.37%(490명)
	100~150	1.25	1.47%(1,952명)
	150~200	1.75	2.79%(3,702명)
	200~	2	95.36%(126,391명)
	평균단가		1.978백만원
7~9개월	~100만원	0.75	0.37%(490명)
	100~150	1	1.47%(1,952명)
	150~200	1.4	2.79%(3,702명)
	200만원~	1.6	95.36%(126,391명)
	평균단가		1.582백만원

c. (지원기간: 9개월)

* '24년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남성) 7.6개월, (여성) 9.4개월) 반영

②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184,931백만원: 56,937명 × 0.812백만원 × 4개월

a. (지원인원: 56,937명)

* '24년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지원인원 51,761명에 예상 증가율 10% 적용

※ 지원인원(명): ('22) 14,831 → ('23) 23,910 → ('24) 51,761

※ '25.2~3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수급자 수는 10,321명으로 '24년 2~3월 8,095명 대비 27.5% 증가

b. (지원단가: 0.812백만원) 2.891백만원* - 2.079백만원**

* '24년 수급자의 통상임금 구간별 비중을 반영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평균단가 =
(2.657 + 2.843 + 2.971 + 3.094) ÷ 4

통상임금 구간(만원)	비중 (%)	3개월 단가 (상한 300만원)		4개월 단가 (상한 350만원)		5개월 단가 (상한 400만원)		6개월 단가 (상한 450만원)	
		평균 지급액	지원 단가	평균 지급액	지원 단가	평균 지급액	지원 단가	평균 지급액	지원 단가
450 이상	14.0	3	0.420	3.5	0.490	4	0.560	4.5	0.630
400~450미만	6.8	3	0.205	3.5	0.240	4	0.274	4.25	0.291
350~400 미만	9.3	3	0.280	3.5	0.326	3.75	0.350	3.75	0.350
300~350 미만	14.3	3	0.428	3.25	0.464	3.25	0.464	3.5	0.500
250~300 미만	21.2	2.75	0.582	2.75	0.582	2.75	0.582	2.75	0.582
200~250 미만	29.7	2.25	0.669	2.25	0.669	2.25	0.669	2.25	0.669
150~200 미만	2.8	1.75	0.049	1.75	0.049	1.75	0.049	1.75	0.049
~150 미만	1.8	1.25	0.023	1.25	0.023	1.25	0.023	1.25	0.023
합계			2.657		2.843		2.971		3.094

**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간별 평균 지원단가(2.380 + 1.978 + 1.978 + 1.978) ÷ 4

c. (지원기간: 4개월)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지원기간

③ 육아휴직 기간연장 97,552백만원: 13,703명 × 1.582백만원 × 4.5개월

a. (지원인원: 13,703명)

* 육아휴직 '24년 지원인원 132,535명에 '24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21.1%)과 '24년 육아휴직 12개월 사용자 비중(49.0%)를 반영

b. (지원단가: 1.582백만원)

* 일반 육아휴직급여 지원단가

c. (지원기간: 4.5개월)

* '24년 평균 육아휴직 사용기간(9개월) ÷ 2

④ 단기 육아휴직 도입 18,436백만원: 18,622명 × 1.980백만원 × 0.5개월

(※ '25년 법개정 및 '26.1월 제도 시행을 전제함)

a. (지원인원: 18,662명)

• (지원인원: 18,622명) ①맞벌이 15,449명 + ②외벌이 3,173명

①맞벌이: (2,694,810명 × 2 × 55.4% × 77.0% × 2.4% × 54.9% × 51.0%)

②외벌이: (2,694,810명 × 55.4% × 77.0% × 1.2% × 45.1% × 51.0%)

· (2,694,810명) '24년 0~8세(2,694,810명) 인구

· (55.4%) '25.2월 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임금근로자 비율

· (77.0%) 임금근로자 대비 고용보험가입자 비율

· (맞벌이 2.4%, 외벌이 1.2%) 휴가 사용률<제도시행 초기임을 고려한 휴가사용률>

· (54.9%) 맞벌이 가구비율 / (45.1%) 외벌이 가구 비율

· (51.0%) '24년 육아휴직 12개월 미만 사용자 비율

b. (지원단가: 1.980백만원)

* 일반 육아휴직 급여 지원단가

c. (지원기간: 0.5개월)

* 2주 사용

④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2025) 233,521백만원 → (2026 계획) 268,001백만원, 14.8%

o (변동내역) 최근 4년간('21~'24년) 수급자 수 평균 증가율, 월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반영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의 100%) : 220만원 → 250만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통상임금의 80%) : 150만원 → 160만원

268,001백만원 = 35,829명 × 0.68백만원 × 11개월

a. (지원인원: 35,829명)

* '24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수 26,627명에 최근 4년간('21~'24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수 평균 증가율 16% 반영

b. (월 지원단가: 0.68백만원) 0.59백만원* + 0.09백만원** ('24년 주 평균 단축시간 12.3시간 고려)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기준금액(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원 반영

월 통상임금 구간	'24년 수급자 (명)	수급자 비율 (%)	월 지원기준 (만원) ※ 구간별 중간값	단축분 (10/40) 지원금액 (만원)	수급자 비율 반영 월 지원단가 (만원)
210만원 미만	5,601	21.04	210	52.5	11.046
210~230만원 미만	3,808	14.30	220	55	7.865
230~250만원 미만	2,823	10.60	240	60	6.36
250만원 이상	14,395	54.06	250	62.5	33.7875
합계 (월 지원단가)					59.0585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월 기준금액(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60만원 반영

※ '26년 최저임금 적용 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액 160만원을 초과하므로 160만원을 기준으로 월 지원단가 산정: 9.2만원(160만원×단축분(2.3/40))

c. (지원기간: 11개월) 9.3개월* + 1.7개월**

* '24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기간

** 사용기간 확대에 따른 증가 예상분('19.10월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이후, '20년 전년 대비 평균 사용기간 1.7개월 증가 고려)

⑤ 배우자출산휴가급여 : (2025) 24,213백만원 → (2026 계획) 26,944백만원, 11.3%

- o (변동내역) 최근 2년간('23~'24년) 급여 수급자 수 평균 증가율, 상한액 인상(월 지원기준 210만원 → 220만원) 반영

$$26,944\text{백만원} = 16,055\text{명} \times 83,913\text{원} \times 20\text{일}$$

a. (지원인원: 16,055명)

* '25년 예상 지원인원 15,061명에 최근 2년간('23~'24년) 수급자 수 평균 증가율 6.6% 반영

b. (일 지원단가: 83,913원)

* '24년 월 통상임금 구간별 수급자 비율 반영

월 통상임금 구간	'24년 수급자 (명)	수급자 비율 (%)	월 지원기준 (만원) ※ 구간별 중간값	일 지원기준 (만원)	수급자 비율 반영 일 지원단가 (만원)
210만원 미만	949	5.20	210	8.04	0.4182
210~220만원 미만	933	5.11	215	8.23	0.4209
220만원 이상	16,359	89.68	220	8.42	7.5522
합계 (일 지원단가)					8.3913

c. (지원기간: 20일)

* 법정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⑥ 난임치료휴가급여 : (2025) 7,394백만원 → (2026 계획) 2,463백만원, △66.7%

- o (변동내역) '26년 상한액 인상분 반영 검토(월 210만원 → 220만원) 등

$$2,463\text{백만원} = 14,678\text{명} \times 83,913\text{원} \times 2\text{일}$$

a. (지원인원: 14,678명) 136,905명 × 55.4% × 77% × 71.4% × 35.2%

·(136,905명) '23년 난임시술(보조생식술) 환자수(보건의료빅데이터)

·(55.4%) 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임금근로자 비율('25.2월 기준)

·(77.0%) 임금근로자 대비 고용보험가입자 비율('24.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71.4%)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비율*('25.2월 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비율

·(35.2%) 휴가 예상 사용률(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라, '19~'21년 난임치료휴가 대상자 중 실제 사용 비율의 평균값)

b. (일 지원단가: 83,913원)

*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일 지원단가와 동일

c. (지원기간: 2일)

* 법정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022,454	① 출산전후휴가급여: 352,497백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287,041백만원(45,562명×2.10백만원×3개월) + 대규모기업 59,121백만원(28,153명×2.10백만원×1개월) + 예술인 945백만원(181명×1.74백만원×3개월) + 노무제공자 5,390백만원(1,102명×1.63백만원×3개월)	4,072,832	① 출산전후휴가급여: 379,160백만원(+26,663백만원, +7.6%) [평균증가율 + 미숙아 지원일수 확대 + 급여 상한액 인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306,387백만원(45,780명×2.18백만원×3.07개월) + 대규모기업 65,515백만원(28,491명×2.19백만원×1.05개월) + 예술인 994백만원(183명×1.77백만원×3.07개월) + 노무제공자 6,264백만원(1,115명×1.83백만원×3.07개월)
	② 유산사산휴가급여: 1,859백만원 - 근로자 1,626백만원(1,427명×1.14백만원) + 예술인·노무제공자 233백만원(77명×3.03백만원)		② 유산사산휴가급여: 2,666백만원(+807백만원, +43.4%) [평균증가율 + 임신초기 지원일수 확대 + 급여 상한액 인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존 1,729백만원(1,544명×1.12백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제도확대 473백만원(1,314명×0.36백만원) + 대규모기업 70백만원(36명×1.95백만원) + 예술인·노무제공자 394백만원(85명×4.63백만원)
	③ 육아휴직급여: 3,402,970백만원 - 일반 육아휴직급여 2,925,082백만원(165,287명×1.966백만원×9개월) + 육아휴직 기간연장 112,188백만원(15,809명×1.577백만원×4.5개월) + 부모합계육아휴직제 162,400백만원(56,000명×0.725백만원×4개월) + 단기 육아휴직 74,256백만원(75,540명×1.577백만원×0.5개월) + 육아휴직 통합신청 129,044백만원(7,293명×1.966백만원×9개월)		③ 육아휴직급여: 3,393,598백만원(△9,372백만원, △0.3%) - 일반 육아휴직급여 3,092,679백만원(173,551명×1.980백만원×9개월) + 육아휴직 기간연장 97,552백만원(13,703명×1.577백만원×4.5개월) + 부모합계육아휴직제 184,931백만원(56,937명×0.812백만원×4개월) + 단기 육아휴직 18,436백만원(18,622명×1.980백만원×0.5개월)
	④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233,521백만원 - 32,232명×0.63백만원×11.5개월		④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268,001백만원(+34,480백만원, +14.8%) [평균증가율 + 급여 상한액 인상] - 35,829명×0.68백만원×11개월
	⑤ 배우자출산휴가급여: 24,213백만원 - 15,061명×80,383원×20일		⑤ 배우자출산휴가급여: 26,944백만원(+2,731백만원, +11.3%) [평균증가율 + 급여 상한액 인상] - 16,055명×83,913원×20일
	⑥ 난임치료휴가급여: 7,394백만원 - 45,994명×80,383원×2일		⑥ 난임치료휴가급여: 2,463백만원(△4,931백만원, △66.7%) [평균증가율 + 급여 상한액 인상] - 14,678명×83,913원×2일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목표치 산출근거	추정산식 (또는 추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30~40대 여성고용률 (%)	목표	신규	63.8	67.0	69.0	69.1	여성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나, '26년에는 취업자 증가세 둔화 등 고용위축이 예상되는 제약 요인이 존재하므로 '25년 목표치(69.0%)보다 0.1%p 상향하여 목표 설정	30~40대 여성취업자 수/ 30~40대 여성인구 × 100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 조사
	실적	64.5	66.9	68.9	-	-			
	달성도	-	104.9	102.8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출산전후휴가급여 73,099명에 대해 301,861백만원 지원 - 유산사산휴가급여 1,211명에게 1,545백만원 지원 - 육아휴직급여 131,087명에게 1,661,373백만원 지원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19,466명에게 106,316백만원 지원 - 배우자출산휴가급여 16,168명에게 6,056백만원 지원
2023	- 출산전후휴가급여 73,207명에 대해 326,290백만원 지원 - 유산사산휴가급여 1,329명에게 1,647백만원 지원 - 육아휴직급여 126,008명에게 1,796,995백만원 지원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23,188명에게 130,324백만원 지원 - 배우자출산휴가급여 15,797명에게 6,240백만원 지원
2024	- 출산전후휴가급여 77,718명에 대해 353,689백만원 지원 - 유산사산휴가급여 1,650명에게 2,323백만원 지원 - 육아휴직급여 132,535명에게 2,052,487백만원 지원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26,627명에게 157,970백만원 지원 - 배우자출산휴가급여 18,241명에게 7,311백만원 지원
2025	- 출산전후휴가급여 90,759명에 대해 416,299백만원 지원 - 유산사산휴가급여 2,701명에게 4,031백만원 지원 - 육아휴직급여 184,331명에게 3,629,169백만원 지원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39,399명에게 228,186백만원 지원 - 배우자출산휴가급여 31,355명에게 13,496백만원 지원 - 난임치료휴가급여 257명에게 36백만원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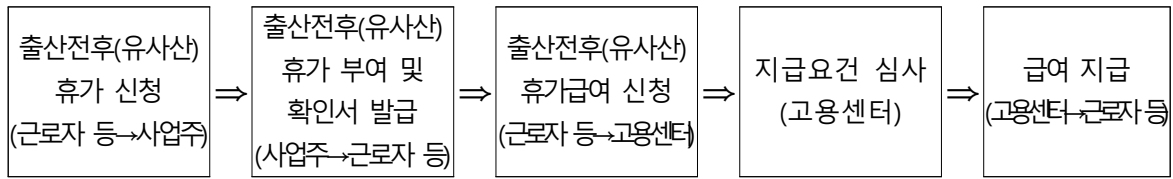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자에 대한 지속적 국가의 급여지원을 통해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에 기여(‘26년 지원 예상 인원: 77,234명)
- 육아휴직급여 및 부모함께육아휴직제를 통해 육아휴직 기간의 소득보전 강화로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및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26년 지원 예상 인원: 173,551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개편(자녀연령 상향, 기간확대 및 급여 인상)을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임금삭감 없는 육아기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실현(‘26년 지원 예상 인원: 35,829명)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확대 및 급여지급 확대를 통해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및 맞돌봄 문화 확산 (‘26년 지원 예상 인원: 16,055명)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을 통해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사용 부담 완화 및 저출산 문제 해소 기여~(‘26년 지원 예상 인원: 14,678명)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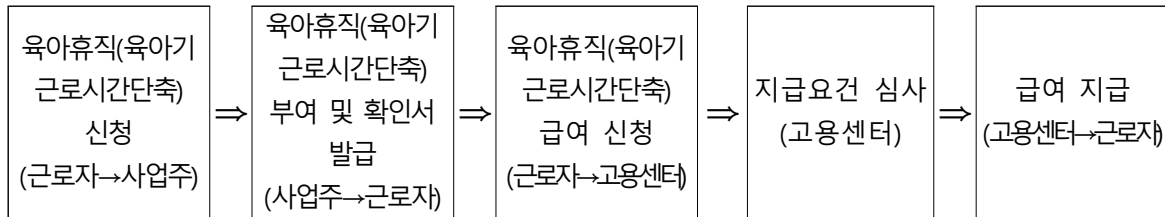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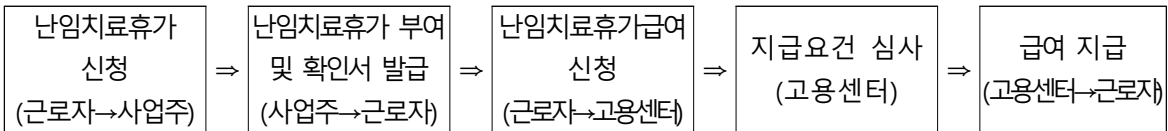
-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유산·사산휴가급여 집행 절차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집행 절차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집행 절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고용노동부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를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23년 환노위, 예정처 결산)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의 모성보호 급여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23년 예결위, 환노위, 예정처 결산)
- 정부는 모성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24년 환노위 결산)

2) 대외공개 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 (평가결과) 양호(유산·사산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우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미부여(육아휴직급여)
- (평가내용)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형성을 동시에 촉진해야 할 필요성이 크며,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특히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대 등 남성의 사업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긍정적임

3) 자체평가: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933,301	144,058	2,077,359	2,077,359	2,077,151	99.9	99.9	-	208
2023	2,100,641	168,041	2,268,682	2,268,682	2,261,495	99.7	99.7	-	7,187
2024	2,496,830	77,011	2,573,841	2,573,841	2,573,780	99.9	99.9	-	61
2025	4,022,454	297,057	4,319,511	4,319,511	4,309,155	99.8	99.8	-	10,35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고용보험기금 변경으로 144,058백만원 증액(출산전후휴가급여 △144백만원, 유산사산휴가급여 △280백만원, 육아휴직급여 80,879백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64,597백만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994백만원)
2023	- 고용보험기금 변경으로 168,041백만원 증액(출산전후휴가급여 24,633백만원, 유산사산휴가급여 △167백만원, 육아휴직급여 109,980백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33,453백만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58백만원)
2024	- 고용보험기금 변경으로 77,011백만원 증액(출산전후휴가급여 6,688백만원, 유산사산휴가급여 473백만원, 육아휴직급여 65,642백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8,934백만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1,053백만원), 난임치료휴가급여 △3,673백만원
2025	- 고용보험기금 변경으로 297,057백만원 증액(출산전후휴가급여 61,859백만원, 유산사산휴가급여 2,236백만원, 육아휴직급여 244,047백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9,589백만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5,796백만원), 난임치료휴가급여 △7,292백만원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025.8.4.)	난임치료휴가급여	320	01	△1,325	예산 현액 조정
	유산사산휴가급여	320	01	1,325	예산 현액 조정
자체변경 (2025.11.5.)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320	01	△911	예산 현액 조정
	유산사산휴가급여	320	01	911	예산 현액 조정
기금변경 (2025.12.5.)	출산전후휴가급여	320	01	61,859	예산 현액 조정
	육아휴직급여	320	01	244,047	예산 현액 조정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320	01	△8,678	예산 현액 조정
	배우자출산휴가급여	320	01	5,796	예산 현액 조정
	난임치료휴가급여	320	01	△5,967	예산 현액 조정
자체변경 (2025.12.3.)	출산전후휴가급여	320	01	4,000	예산 현액 조정
	육아휴직급여	320	01	△11,215	예산 현액 조정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320	01	5,500	예산 현액 조정
	배우자출산휴가급여	320	01	1,700	예산 현액 조정
	난임치료휴가급여	320	01	15	예산 현액 조정
합 계				297,057	

사 업 명						
(25)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1347-3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47	350
명칭	고용평등증진	고령자고용촉진지원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령자고용 안정지원금	소관부처	실·국·과(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 인력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고용노동부(고용센터)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안(B)	(B-A)	(B-A)/A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77,257	56,730	56,730	53,560	53,560	△3,170	△5.6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계획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고령자고용안정 지원금(합계)	62,102	77,402	77,257	-	133	56,730	64,811	63,129	-	-	53,560
· 고령자통합장려금	-	-	-	-	-	-	-	-	-	-	10,684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34,982	19,090	18,467	-	623	35,706	21,480	20,494	-	-	22,493
· 고령자고용지원금	26,975	58,309	58,787	-	△478	21,016	43,331	42,635	-	-	20,382
· 임금피크제지원금	55	-	-	-	-	8	-	-	-	-	1
·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90	-	-	-	-	-	-	-	-	-	-
·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	3	3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세부사업)		사업목적 및 내용
내역 사업	고령자 통합장려금	정년 도래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청년 등 다른 세대의 고용을 구축하지 않도록 -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중 비수도권 기업 우대(26년~), 청년세대 신규고용 등 세대상생고용기업 우대 지원(27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 도래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폐지,재고용)를 도입하여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고령자고용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 확대를 위해 3년 평균 대비 60세 이상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임금피크제지원금	정년이 60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26년 소멸시효 완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고령자고용법 제14조(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① 사업주가 제12조에 따른 기준
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고용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고령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지급하는 고용 지원금
2.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지급하는 고용 지원금. 이 경우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며, 해당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3.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 직무 재설계(고령자나 준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 지원금
- ③ 제2항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11조(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4, 제28조의5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임금피크제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임금피크제”라 한다)에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1.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2. 사업주가 제1호에 따른 제도를 시행하거나 제4호에 따라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고용(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4에서 “재고용”이라 한다)하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3. 삭제 <2013. 12. 24.>
4.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사람을 재고용(재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크임금(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낮아진 사람(해당 연도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정년 연장기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가. 임금피크제 적용일부부터 1년까지: 100분의 10
 - 나. 임금피크제 적용일부부터 1년 초과 2년까지: 100분의 15
 - 다. 임금피크제 적용일부부터 2년 초과 이후: 100분의 20
2. 제1항제2호의 경우: 100분의 30
3. 제1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의 차액, 임금인상률과 제1항제2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사업주의 노무비용 증가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날부터 5년 동안 지급한다. 다만,

고용기간이 5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제1항제4호에 따라 재고용한 경우에도 최대 지급 기간은 통산하여 5년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금액산정,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의5(고령자 고용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그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추진경위

○ 임금피크제지원금('16년 종료, '26년 소멸시효 완성)

- '06.9. 신설(고령자의 고용연장,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
 - '08.9.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시제도로 전환
- '10.12.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에서 '임금피크제 지원금'으로 명칭 변경, 임금피크제 유형별 (정년 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 특색에 맞게 지원요건을 다양화
- '13.5. 정년 60세 이상 법제화(고령자고용법 개정)
 - * 시행시기: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대기업 '16.1.1부터, 국가·지자체 및 300인 미만 기업 '17.1.1부터)
- '13.12. 정년 60세 조기정착을 위해 지원대상 확대, 지원한도 상향 등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개편
- '16.12. 사업 종료(300이상 및 공공기관: '15년말, 300인미만 및 국가 지자체: '16년말)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 '20.1. 신설(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폐지, 재고용)를 도입하여 정년 이후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에게 비용 지원)
- '20.7.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소급 적용 허용으로 지원 확대
- '21.4. 정년 도달일 직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년 미만자 지원 제외
- '21.8. 정년 도달일 3개월 이내 재고용 요건을 6개월 이내로 확대, 2년 이내 정년 도달자 지원→ 5년 이내 종전 정년 도달자로 확대, 사업주 기준 2년 지원→ 근로자 기준 2년 지원
- '22.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소급 적용 불인정, 4촌이내 혈족, 인척 지원 제외 규정 삭제
- '22.7.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소급 최대 30일까지 인정, 고령자 비율 30% 초과 사업장 지원 제외
- '23.1. 월평균 보수총액 110만원 미만자 지원 제외, 산업재해 공표 사업주 지원 제외
- '24.1. 최대 지원기간 연장(2년→3년), 월평균 보수총액 115만원 미만자 지원 제외

○ **고령자고용지원금('25년말 사업 종료, '26년부터는 잔여 지원기간만 지원)**

- '22.1. 신설(60세 이상 고령자수가 3년 평균보다 증가한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에게 비용 지원)
- '22.7. 접수기간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 제한
- '23.1. 신규 채용자(근로계약기간 1년 초과자) 지원 규정 삭제('23.7.1.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
- '25. 사업장 내 고용 총량 증가는 없었다는 지적 및 구인난 업종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필요 의견에 따라 사업 구조조정, 폐지 결정(고령자고용지원금은 고령근로자의 고용유지에 기여했으나 신규고용 촉진에는 제한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반영)

* 구인난 업종의 경우 구직자의 지원이 없는 데 기인하므로 사업주 지원이 아닌, 취업하는 50대 이상 중장년들에게 장기근속에 따른 인센티브 신설(26년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18억)

○ **고령자통합장려금('26년 신설)**

- 법정정년과 연금수급연령과의 소득절벽 등 정년연장 필요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 자율적으로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 및 기존 지원금간 구조조정 등 개편 취지에서 장려금 신설
-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청년 등 다른 세대의 고용을 구축하지 않도록 계속고용 기업 중 비수도권 기업 우대 요소 신설 및 청년세대 신규고용 등 세대상생고용기업 우대 지원방안 마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고령자통합장려금은 '26년 신설 사업(107억)

구분	임금피크제지원금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지원금
사업기간	'06년 ~ '18년	'20년~	'22년~
사업규모	'25년 0.08억	'25년 357억	'25년 210억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0,936	86,942	62,102	56,730	53,560

② **사업추진체계**

구분	임금피크제지원금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통합장려금	고령자고용지원금
시행방법	직접수행		
시행주체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사업수혜자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사업주	60세 이상 고용 증가 사업주

3) '25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고령자 통합장려금 : ('25) 신설 → ('26) 10,684백만원, 순증

- (요구) '26년 신규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사업장 중 수도권·비수도권 구분하여 단가 책정 및 요구
- (산출) ① 수도권 4,536백만원, ② 비수도권 6,048백만원, ③ 세대상생고용 관련 연구비 100백만원

* '22~'24년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참여사업장의 신규 순인원/3년 평균 = 3,360명

① 3,360명 × 50%(수도권 기업 비중) × 90만원 × 3분기 = 4,536백만원

② 3,360명 × 50%(비수도권 기업 비중) × 120만원^{우대} × 3분기 = 6,048백만원

③ '27년 세대상생 고용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에 앞서 계속고용장려금 수급 사업장의 청년 등 타 연령층 신규 고용 증감 분석, 사업주단체 등과 공동 실태조사 등 연구 추진 100백만원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25) 35,706백만원 → ('26) 22,493백만원(△13,213백만원, △37%)

- (요구) '25년까지 지원 대상 사업장의 기존 및 신규로 정년도래하여 계속고용된 인원 지원
- (산출) ① 기존 수급자 + ② 신규 수급자

① 4,888명* × 90만원 × 4분기 = 17,597백만원

* 2,860명(24년) + 3,050명(25년 추정치) × 82.7%**

** '24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성과평가상 고용유지율

② 1,813명 × 90만원 × 3분기 = 4,536백만원

□ 고령자고용지원금: ('25) 21,016백만원 → ('26) 20,382백만원(△634백만원, △3.0%)

- (요구) '25년말 지원종료, '26년 계속분만 예산 반영
- (산출) 16,985명* × 30만원 × 4분기 = 20,382백만원
- * '25년 지원인원 중 신규 추정치

□ 임금피크제지원금: ('25) 8백만원 → ('26) 1백만원(△7백만원, △87.5%)

- (요구) 사업종료('16년) 후 소멸시효('26년)까지는 잔여사업비 배정 필요
- (산출) '23년 집행액(2백만원) 및 '24년 및 '25년 현재까지 미집행으로 최소규모(1백만원)만 반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추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중장년 고용률(40~60대) (단위: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72.1	24년 실적(72.0%) 대비 목표 0.1%p 상향	(40~60대 취업자수)/(40~60 대 인구) × 10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실적	71.5	72.0	72.0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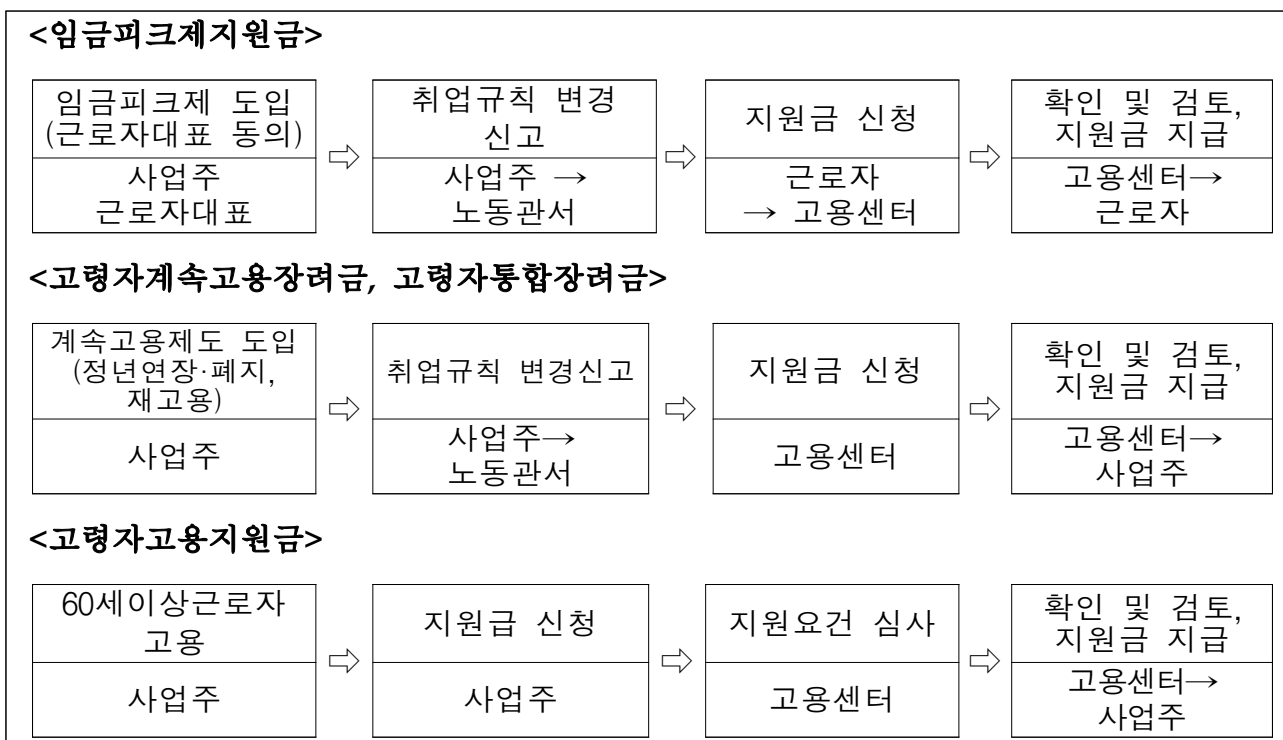
2022	(고용연장지원금) 244개소, 567백만원 (임금피크제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1,136명, 3,840백만원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7,994명, 22,631백만원 (고령자고용지원금) 4,730개소, 5,858백만원
2023	(고용연장지원금) 91개소, 340백만원 (임금피크제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102명, 239백만원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7,888명, 19,101백만원 (고령자고용지원금) 11,655개소, 38,620백만원
2024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7,114명, 18,467백만원 (고령자고용지원금) 16,638개소, 58,787백만원
2025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7,698명, 20,494백만원 (고령자고용지원금) 11,726개소, 42,635백만원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60세 이상 정년도래자를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과 청년 등 신규 고용 확대를 통해 세대상생의 고용을 도모하는 한편,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을 통해 지방균형발전에도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재정지원일자리사업평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3년 개선필요, '24년 양호, '25년 양호 - (고령자 고용지원금) '23년 양호, '24년 양호, '25년 개선필요 ○ 고용영향평가: '24년 노동연구원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 수혜 사업장 고령자 고용인원 증가 2.64명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금 수혜 사업장 고령자 고용인원 증가 2.68명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계획변경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6,407	-	-	24,529		50,936	50,178		98.5
2023	86,942	-	-	8,820		95,762	91,372		95.4
2024	62,102	-	-	15,300		77,402	77,257		99.8
2025	56,730	-	-	8,081		64,811	63,128		97.4

2) 주요 결산사항

☐ 2021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계획변경(24,529백만원 증액) 사유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21년도 제도개편 후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업장 증가 -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집행 증가('22년 신설사업)
2023	○ 계획변경(8,820백만원 증액) 사유 -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집행 증가
2024	○ 계획변경(15,300백만원 증액) 사유 -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집행 증가
2025	○ 계획변경(8,081백만원 증액) 사유 -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집행 증가

사 업 명
(26) 근로복지공단 인건비(7076-11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6	115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사업시행주체	고용보험기획과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74,381	76,660	76,946	79,629	79,629	2,969	3.9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74,381	74,381	74,381	-	-	76,660	76,946	76,946	76,946	-	-	79,629
·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74,381	74,381	74,381	-	-	76,660	76,946	76,946	76,946	-	-	79,62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 피보험자의 적용누락을 방지하고 고용보험료의 징수율 제고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적용 · 부과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제80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3.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4. 보험료의 반환
5.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6. 이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추진경위 : '99년부터 고용보험 적용 · 부과에 대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1,072	72,521	74,381	76,660	79,629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근로복지공단 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출연	근로복지공단	79,629	100.0	고용보험법 제80조 제1항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요구내용 : ('25년) 76,660백만원 → ('26년 계획) 79,629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6,660	<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76,660백만원 > 가. 계속소요 : 74,381백만원 나. '25년 공통인상분 : 2,233백만원 다. '24년 정기증원(1명, 잔여 6개월분) : 46백만원	79,629	<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79,629백만원 > 가. 계속소요 : 76,660백만원 나. '26년 공통인상분 : 2,684백만원 다. 내부경영평가 성과급 정상 지급 : 28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산정, 부과업무의 원활한 수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 배정 → 근로복지공단 매월 고용노동부 자금 신청 → 자금 배정 → 집행

8) 각종 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71,072	2,182	73,254	73,254	73,254	100.0	100.0	-	-
2023	72,521	-	72,521	72,521	72,521	100.0	100.0	-	-
2024	74,381	-	74,381	74,381	74,381	100.0	100.0	-	-
2025	76,660	286	76,946	76,946	76,946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계획변경) 통상임금 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소송금액 및 이자비용 기금변경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계획변경)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인건비 증액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025.12.23.)	-	350	01	286	통상임금 판결 결과 반영
합 계				286	

사 업 명						
(27) 고용보험운영 인건비(7076-11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6	119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고용보험운영 인건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용보험운영 인건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사업시행주체	고용보험기획과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고용보험운영 인건비	600	787	787	856	856	69	8.8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784	784	600	-	184	787	787	787	638	-	149	856
· 인건비	784	784	600	-	184	787	787	787	638	-	149	85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용보험운영 인건비) 고용보험통계 전문요원, 고용보험위원회 조사·연구위원,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전문위원, 자산전문위원 및 기금관리실무관 활용을 통한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성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 2의2. 제55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3.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4. 보험료의 반환
5.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6. 이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 ② 추진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1995년
- 사업추진배경 :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95~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12	742	784	787	85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고용보험운영 인건비 : 856백만원

- 고용보험통계 전문요원, 고용보험위원회 조사·연구위원,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전문위원, 자산전문위원 및 기금 관리실무관 인건비
 - 787백만원('25년) → 856백만원('26년, 8.8%증)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87	○ 상용임금(110-03) : 658,308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128,692천원	856	○ 상용임금(110-03) : 714,747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141,52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 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효율적인 고용보험기금 관리 및 운영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고용노동부(본부) 직접 시행

8) 각종 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712	△44	668	668	592	88.7	88.7	-	76
2023	742	-	742	742	573	77.2	77.2	-	169
2024	784	-	784	874	600	76.5	76.5	-	184
2025	787	-	787	787	638	81.1	81.1	-	14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내역변경 사유: 센터 내 공무원 인건비 부족(44백만원)에 따라 기금내역 변경 * 자체청사 관리비(7076-228) - 불용사유: 집행잔액
2023	- 불용사유: 집행잔액
2024	- 불용사유: 집행잔액
2025	- 불용사유: 집행잔액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해당 없음

사 업 명
(28) 기금관리비 기타경비(7076-2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6	201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사업시행주체	고용보험기획과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44	54	54	54	54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54	54	44	-	-	54	54	54	49	-	5	54
· 운영비	51	51	42	-	-	51	51	51	47	-	4	51
· 여비	3	3	2	-	-	3	3	3	3	-	-	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고용보험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 등 집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 2의2. 제55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3.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4. 보험료의 반환
5.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6. 이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 ② 추진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1995년
- 사업추진배경 :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95~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6	54	54	54	5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 54백만원

○ 기금관리 및 운영을 위한 관서운영비, 여비 등 기타경비

- 54백만원('25년) → 54백만원('26년, 전년동)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4	○ 일반수용비(210-01) : 8,972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5,514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37,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514천원	54	○ 일반수용비(210-01) : 8,972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5,514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37,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514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 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효율적인 고용보험기금 관리 및 운영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고용노동부(본부) 직접 시행

8) 각종 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56	-	56	56	50	88.8	88.8	-	6
2023	54	-	54	54	48	90.1	90.1	-	6
2024	54	-	54	54	44	81.5	81.5	-	-
2025	54	-	54	54	49	90.7	90.7	-	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사유: 집행잔액
2023	- 불용사유: 집행잔액
2024	- 불용사유: 집행잔액
2025	- 불용사유: 집행잔액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해당 없음

사 업 명
(29) 근로복지공단 기타경비(7076-2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6	21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근로복지공단 기타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근로복지공단 기타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사업시행주체	고용보험기획과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근로복지공단 기타경비	13,270	12,369	12,369	13,152	13,152	783	6.3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3,270	13,270	13,270	-	-	12,369	12,369	12,369	12,369	-	-	13,152
· 근로복지공단 기타경비	13,270	13,270	13,270	-	-	12,369	12,369	12,369	12,369	-	-	13,15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용보험 적용부과사업을 위탁·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및 소속기관 기관 운영경비 지원
-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피보험자 적용누락 방지 및 고용보험료 징수율 제고를 통해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 조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제80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3.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4. 보험료의 반환
5.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6. 이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추진경위 : '99년부터 고용보험 적용·부과사업 수행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902	12,787	13,270	12,369	13,152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근로복지공단 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출연	근로복지공단	13,152	100.0	고용보험법 제80조 1항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요구내용 : ('25년) 12,369백만원 → ('26년 계획) 13,152백만원 중 783백만원, 중 6.3%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369	< 근로복지공단 기타경비 12,369백만원 > ○ 상용임금 : 3,306백만원 ○ 일반수용비 : 712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 1,056백만원 ○ 급식비 : 1백만원 ○ 특근매식비 : 1백만원 ○ 임차료 : 1,155백만원 ○ 유류비 : 13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 : 3,214백만원 ○ 복리후생비 : 905백만원 ○ 일반용역비 : 452백만원 ○ 관리용역비 : 96백만원 ○ 기타운영비 : 700백만원 ○ 국내여비 : 320백만원 ○ 국외여비 : 53백만원 ○ 사업추진비 : 35백만원 ○ 관서업무추진비 : 85백만원 ○ 직책수행경비 : 172백만원 ○ 일반연구비 : 64백만원 ○ 자산취득비 : 29백만원	12,369	< 근로복지공단 기타경비 13,152백만원 > ○ 상용임금 : 3,412백만원 ○ 일반수용비 : 712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 1,224백만원 ○ 급식비 : 1백만원 ○ 특근매식비 : 1백만원 ○ 임차료 : 1,358백만원 ○ 유류비 : 13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 : 3,608백만원 ○ 복리후생비 : 905백만원 ○ 일반용역비 : 452백만원 ○ 관리용역비 : 96백만원 ○ 기타운영비 : 700백만원 ○ 국내여비 : 320백만원 ○ 국외여비 : 53백만원 ○ 사업추진비 : 35백만원 ○ 관서업무추진비 : 85백만원 ○ 직책수행경비 : 172백만원 ○ 일반연구비 : 64백만원 ○ 자산취득비 : 377백만원 ○ 26년 공통절감 : -43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산정, 부과업무의 원활한 수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 배정 → 근로복지공단 매월 고용노동부 자금 신청 → 자금 배정 → 집행

8) 각종 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2,902	-	12,902	12,902	12,857	99.7	99.7	-	45
2023	12,787	-	12,787	12,787	12,782	100.0	100.0	-	5
2024	13,270	-	13,270	13,270	13,270	100.0	100.0	-	-
2025	12,369	-	12,369	12,369	12,369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사유: 집행잔액
2023	- 불용사유: 집행잔액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30)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보증금지원(7076-21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6	213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보증금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 보증금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 보증금지원	392	392	392	548	548	156	39.8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392	392	392	-	-	392	392	392	392	-	-	548
·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보증금지원	392	392	392	-	-	392	392	392	392	-	-	54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대한 청사 및 숙소 임차보증금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제80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3.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4. 보험료의 반환
5.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6. 이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추진경위 : '99년부터 고용보험 적용·부과사업을 위탁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및 소속기관 청사 임차보증금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13	841	392	392	548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무형자산)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근로복지공단 임직원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요구내용 : ('25년) 392백만원 → ('26년 계획) 548백만원 중 156백만원, 중 39.8%

① 계속소요 : 392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92	<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보증금 392백만원 > 가. 계속소요 : 392백만원 나. 특이소요 : 51백만원(기존소요 인상분) 다. 완료소요 : △51백만원(울산중부지사 신설 완료소요)	392	<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보증금 548백만원 > 가. 계속소요 : 392백만원 나. 기존 임차청사보증금 재계약 인상분 : 206백만원 다. (26년) 공통감액 : -5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산정, 부과업무의 원활한 수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 배정 → 근로복지공단 임차보증금 소요발생시 고용노동부 자금 신청 → 자금 배정 → 집행

8) 각종 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113	-	1,113	1,113	1,113	100.0	100.0	-	-
2023	841	-	841	841	841	100.0	100.0	-	-
2024	392	-	392	392	392	100.0	100.0	-	-
2025	392	-	392	392	392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31) 고용안정사업운영(7076-22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4	노동시장정책관		080	08D
명칭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6	22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고용안정사업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용안정사업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
	사업시행주체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고용안정사업 운영	364	398	398	398	378	△20	△5.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398	398	364	-	34	398	398	398	396	-	2 [18]	378
-고용안정사업 운영	398	398	364	-	34	398	398	398	396	-	2 [18]	37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용보험 사업인 고용안정사업의 효율적 집행에 필요한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최소한의 경상경비 필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및 동법 시행령 제107조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1995년
 - 추진배경: 1995년 고용보험 제도 시행에 따라 고용안정 사업운영비 반영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22	442	398	398	378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고용안정 사업운영	보조	지자체 보조	21백만원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별표1) 122호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고용안정사업 운영비 : ('25) 398백만원 → ('26) 378백만원, 20백만원 감액
 - (요구) 고용안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 비용 등 예산 요구
 - (산출, 백만원) 일반수용비(178), 공공요금(4), 특근매식비(60), 국내여비(72), 사업추진비(44), 자치단체보조(21)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98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97,600천원 가. 고용안정사업 홍보자료 제작 (40,100천원) • 20,000,000원*2회+100,000원 나. 업무매뉴얼 제작 (20,000천원) • 10,000원*2,000부 다. 연찬회 자료 (10,000천원) • 5,000원*2,000부 라. 지방관서 사업장 설명자료 (94,000천원) • 5,000원*47개 관서*400부 마. 전문가 회의수당 (3,500천원) • 100,000원*7회*5명 바. 안내책자, 리플릿 등 제작(30,000천원) • 1,500원*20,000부*1회	378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77,600천원 가. 고용안정사업 홍보자료 제작 (30,100천원) • 15,000,000원*2회+100,000원 나. 업무매뉴얼 제작 (20,000천원) • 10,000원*2,000부 다. 연찬회 자료 (10,000천원) • 5,000원*2,000부 라. 지방관서 사업장 설명자료 (94,000천원) • 5,000원*47개 관서*400부 마. 전문가 회의수당 (3,500천원) • 100,000원*7회*5명 바. 안내책자, 리플릿 등 제작(20,000천원) • 1,500원*13,333부*1회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3,625천원 1. 고용안정사업 설명자료 배포 • 250원*12,000부*1회=3,000천원 2. 업무매뉴얼, 리플릿 등 배포 • 250원*2,500부=625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3,625천원 1. 고용안정사업 설명자료 배포 • 250원*12,000부*1회=3,000천원 2. 업무매뉴얼, 리플릿 등 배포 • 250원*2,500부=625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60,200천원 가. 본부 • 7,000원*100일*14명=9,800천원 나. 지방 • 7,000원*80일*90명=50,4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60,200천원 가. 본부 • 9,000원*77.78일*14명=9,800천원 나. 지방 • 9,000원*70일*80명=50,400천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국내여비(220-01) : 72,119천원 1. 고용안정사업 관련 자료수집 등 가. 본부 1) 고용안정사업 설명회 및 간담회 • 20,000원*29회*10명=5,800천원 나. 지방 1) 지원금 지급 관련 사업장 확인 및 지도 • 20,000원*100회*33명+319,000원=66,319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43,501천원 1. 고용안정사업 간담회 가. 본부 (15,301천원) 1) 제도개선 관련 간담회 • 15,000원*20명*12월*2회+1,000원=7,201천원 2) 전문가 회의 • 15,000원*15명*12월*1월=2,700천원 3) 유관기관 협의 • 15,000원*15명*12월*2회=5,400천원 나. 지방 (28,200천원) 1) 사업장 설명회, 간담회 • 15,000원*10명*47개 관서*4회=28,200천원 ○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 20,955천원 1.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가. 사업장 설명자료 • 600부*1회*1,000원+240,000원=840천원 나. 공공요금 및 제세 • 200원*500부*2회=200천원 다. 국내여비 • 20,000원*5회*12월=1,200천원 라. 업무추진비 • 15,000원*9명*9회=1,215천원 마.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 33건*500,000원+100,000원=16,600천원 바. 특근매식비 • 6,000원*4.2일*12월*3명-7,000원=900천원		○ 국내여비(220-01) : 72,119천원 1. 고용안정사업 관련 자료수집 등 가. 본부 1) 고용안정사업 설명회 및 간담회 • 20,000원*29회*10명=5,800천원 나. 지방 1) 지원금 지급 관련 사업장 확인 및 지도 • 20,000원*100회*33명+319,000원=66,319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43,501천원 1. 고용안정사업 간담회 가. 본부 (15,301천원) 1) 제도개선 관련 간담회 • 15,000원*20명*12월*2회+1,000원=7,201천원 2) 전문가 회의 • 15,000원*15명*12월*1월=2,700천원 3) 유관기관 협의 • 15,000원*15명*12월*2회=5,400천원 나. 지방 (28,200천원) 1) 사업장 설명회, 간담회 • 15,000원*10명*47개 관서*4회=28,200천원 ○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 20,955천원 1.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가. 사업장 설명자료 • 600부*1회*1,000원+240,000원=840천원 나. 공공요금 및 제세 • 200원*500부*2회=200천원 다. 국내여비 • 20,000원*5회*12월=1,200천원 라. 업무추진비 • 15,000원*9명*9회=1,215천원 마.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 33건*500,000원+100,000원=16,600천원 바. 특근매식비 • 9,000원*3일*12월*2.8명-7,000=9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용안정사업의 효과적인 사업수행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462	△40	422	422	345 [343]	81.7	81.7	-	77
2023	442	-	442	442	389 [377]	88.0	88.0	-	53
2024	398	-	398	398	364 [347]	91.5	91.5	-	34
2025	398	-	398	398	396 [380]	99.4	99.4	-	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기금계획변경을 통해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으로 수용비 40백만원 감액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해당없음

사 업 명
(32) 고용서비스선진화지원(7076-22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6	222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고용서비스선진화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용서비스 선진화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고용서비스 선진화지원	673	674	674	674	500	△174	△25.8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674	674	673	-	1	674	674	674	671	-	-	5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용복지+센터 및 중점사업(실업급여 및 취업지원 등) 인지도 제고, 국민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 등 고용센터의 이미지 개선을 통한 고용서비스 선진화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법령상 근거 >

-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1.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사업
2. 피보험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에 관한 교육사업·홍보사업
2. 피보험자 등의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인턴채용지원 및 전직지원 서비스사업 등 취업지원사업
3. 고령자·여성·장애인인 피보험자등의 고용환경개선사업
4.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

② 추진경위

-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사업 평가 보고회('05.12.20)를 통하여 보다 많은 기업과 국민들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 인지도 제고 활동 강화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58	749	674	674	50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고용센터 이용 구인·구직자 등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고용서비스 선진화지원: (2025) 674백만원 → (2026) 500백만원(△174백만원)

- ① 일반수용비 (2025) 198백만원 → (2026) 150백만원(△48백만원)
 - 고용센터 및 중점사업 홍보 등 150백만원
- ② 일반용역비 (2025) 261백만원 → (2026) 135백만원(△126백만원)
 - 고용센터 홍보 콘텐츠 제작 등 135백만원
- ③ 공사비 (2026) 215백만원(전년동)
 - 민원인 중심 시설 설치 및 전광판 유지보수 등 215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74,000	○ 일반수용비(210-01) : 198,000천원 - 101개소 x 1,96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260,807천원 - 101개소 x 2,582천원 ○ 공사비(420-03) : 215,193천원 - 101개소 x 2,129천원	500,000	○ 일반수용비(210-01) : 198,000천원 - 101개소 x 1,485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260,807천원 - 101개소 x 1,337천원 ○ 공사비(420-03) : 215,193천원 - 101개소 x 2,129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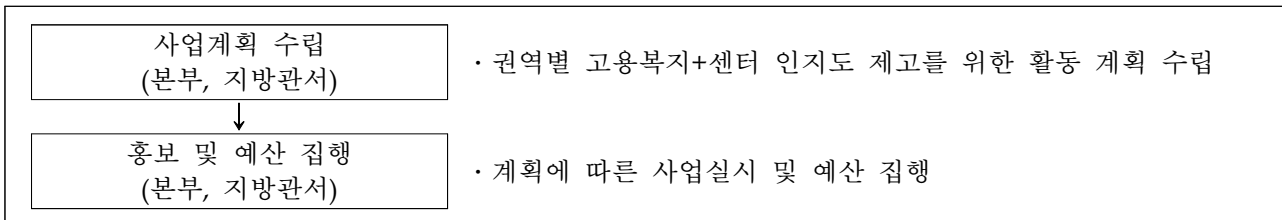
2022	○ 고용복지+센터 인지도 제고 및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시설개선 등
2023	○ 고용복지+센터 인지도 제고 및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시설개선 등
2024	○ 고용복지+센터 인지도 제고 및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시설개선 등
2025	○ 고용복지+센터 인지도 제고 및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시설개선 등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용복지+센터 인지도 제고 및 시설개선을 통한 서비스 제공 기반 확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 대외공개 평가
-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788	△130	658	658	653	99.2	99.2	-	5
2023	749	-	749	749	740	98.8	98.8	-	9
2024	674	-	674	674	673	99.9	99.9	-	1
2025	674	-	674	674	671	99.6	99.6	-	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부족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 *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방지(7076-230), 130백만원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33) 실업급여운영 기타경비(7076-22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6	223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실업급여운영 기타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실업급여운영 기타경비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실업급여운영 기타경비	1,543	1,603	1,603	1,536	1,536	△67	△4.2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600	1,600	1,543	-	57	1,603	1,603	1,603	1,584	-	19	1,536
· 운영비	1,312	1,377	1,325	-	52	1,397	1,397	1,397	1,378	-	18	1,245
· 사업추진비	24	24	23	-	1	24	24	24	23	-	1	24
· 자치단체경상보조	104	104	104	-	-	107	107	107	107	-	-	107
· 자산취득비	95	95	91	-	4	75	75	75	75	-	-	7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실업급여 지급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본운영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고용보험법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후략>
7. 그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 ② 추진경위 - 1992년 3월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 발족
 - 1993년 4월 「고용보험 실무 작업반」 구성 및 1995년 시행방침 확정
 - 1993년 12월 고용보험법 제정 및 공포
 - 1995년 7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등)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5년 7월 1일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802	1,755	1,600	1,603	1,536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각 고용센터 및 구직급여 수급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실업급여운영 기타경비	보조	지자체 보조	107,053,000원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호 [별표1] 제122호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실업급여운영 기타경비 : 1,536백만원

○ 실업급여 지급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본운영비 지원

- (2025 계획) 1,603백만원 → (2026 계획) 1,536백만원, △67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03	○ 일반수용비(210-01) : 527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20-01) : 680백만원 ○ 특근매식비(210-05) : 63백만원 ○ 임차료(210-07) : 8백만원 ○ 유류비(210-08) : 19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4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85백만원 ○ 업무추진비(240-01) : 24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107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75백만원	1,603	○ 일반수용비(210-01) : 527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20-01) : 613백만원 ○ 특근매식비(210-05) : 63백만원 ○ 임차료(210-07) : 8백만원 ○ 유류비(210-08) : 19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4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85백만원 ○ 업무추진비(240-01) : 24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107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7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본부·지방관서 비목별 예산 배정	고용보험법 제80조제1항 제2호 및 제7호	본부 → 6개 대표청
대표청 소속 고용센터 비목별 예산 배정	고용보험법 제80조제1항 제2호 및 제7호	6개 대표청 → 소속 지청
본부 및 각 고용센터 예산 집행	고용보험법 제80조제1항 제2호 및 제7호	소속 지청 → 고용센터 고용센터 → 수급자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842	△40	1,802	1,802	1,713	95.1	95.1	-	89
2023	1,755	-	1,755	1,755	1,664	94.8	94.8	-	91
2024	1,600	-	1,600	1,600	1,543	96.4	96.4	-	57
2025	1,603	-	1,603	1,603	1,584	98.8	98.8	-	1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계획변경' : 12.7. 고용보험사업부정수급방지(포상금) 소진으로 △40백만원 기금운용계획변경 - 이월 및 불용 사유 : 해당없음
2023	- '계획변경'의 상세내역 기술 : 해당없음 - 이월 및 불용 사유 : 해당없음
2024	- '계획변경'의 상세내역 기술 : 해당없음 - 이월 및 불용 사유 : 해당없음
2025	- '계획변경'의 상세내역 기술 : 해당없음 - 이월 및 불용 사유 : 해당없음

사 업 명
(34) 실업급여심사·재심사 기타경비(7076-22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6	225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실업급여 심사·재심사운영 기타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실업급여 심사·재심사운영 기타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사업시행주체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실업급여 심사·재심사 운영 기타경비	44	50	50	50	50	-	-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50	50	44	-	6	50	50	50	48	-	2	50
· 운영비	37	37	32	-	6	37	37	37	36	-	1	37
· 여비	5	5	4	-	0	5	4	5	5	-	-	5
· 업무추진비	7	7	7	-	-	7	7	7	7	-	-	7
· 보전금	0.4	0.4	-	-	0.4	0.4	0.4	0.4	-	-	0.4	0.4
· 유형자산	0.7	0.7	0.7	-	-	0.7	0.7	0.7	0.7	-	-	0.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실업급여 심사·재심사운영 기타경비) 실업급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확인, 육아휴직 급여·산전후휴가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 관한 처분에 있어서 직업안정기관의 부당한 불이익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피보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보험심사·재심사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보험법」 제87조(심사와 재심사), 고용보험법 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36조(전문위원의 배치)

- **고용보험법 제87조(심사와 재심사)** ①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 ③제1항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 **고용보험법 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①제87조에 따른 재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심사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제2항의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⑥ 상임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심사위원회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50일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결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89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⑧ 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⑨ 심사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6조(전문위원의 배치)**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제99조제8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자격·복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1995년
- 사업추진배경 : 고용보험법령이 시행('95.7.1.) 되면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처분 등에 이의가 있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재결을 위하여 제도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95~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3	50	50	50	5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심사·재심사 청구인, 사업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실업급여 심사·재심사운영 기타경비 : 50백만원

- 심사·재심사 운영을 위한 관서운영비, 여비 등 기타경비
 - 50백만원('25년) → 50백만원('26년, 전년동)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0	○ 일반수용비(210-01) : 26,935천원	50	○ 일반수용비(210-01) : 26,935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6,506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6,506천원
	○ 특근미색비(210-05) : 2,232천원		○ 특근미색비(210-05) : 2,232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1,8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1,800천원
	○ 국내여비(220-01) : 4,610천원		○ 국내여비(220-01) : 4,61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6,774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6,774천원
	○ 손실보상금(310-01) : 441천원		○ 손실보상금(310-01) : 441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702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702천원

4) 사업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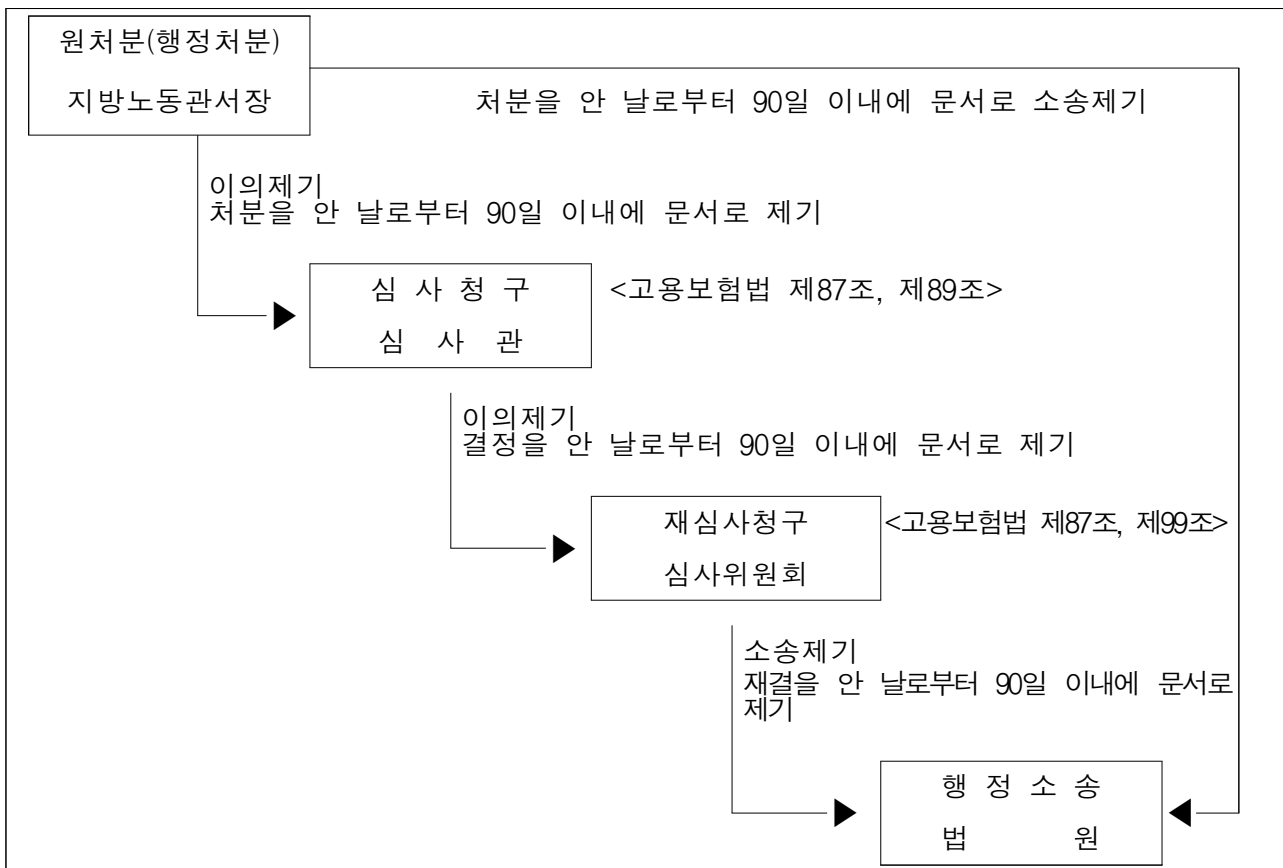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 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 심사·재심사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 대외공개 평가
-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53	-	53	53	51	96.8	96.8	-	2
2023	50	-	50	50	49	98.0	98.0	-	1
2024	50	-	50	50	44	88.0	88.0	-	6
2025	50	-	50	50	48	96.0	96.0	-	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사유: 집행잔액
2023	- 불용사유: 집행잔액
2024	- 불용사유: 집행잔액
2025	- 불용사유: 집행잔액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해당 없음

사 업 명
(35) 고용보험운영 기타경비(7076-22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6	226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고용보험운영 기타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용보험운영 기타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사업시행주체	고용보험기획과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고용보험운영 기타경비	2,441	2,730	2,730	2,630	2,630	△100	△3.7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2,730	2,730	2,441	-	289	2,730	2,730	2,730	2,421	-	309	2,630
· 운영비	2,496	2,496	2,225	-	271	2,496	2,496	2,496	2,201	-	295	2,396
· 여비	158	158	155	-	3	157	157	157	144	-	13	158
· 업무추진비	77	77	61	-	15	77	77	77	75	-	2	7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용보험운영 기타경비) 고용보험제도와 보험사업에 대한 적극적 안내를 통한 국민들의 이해도 제고, 보험사업의 활성화 및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소요되는 필수 경비 지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 2의2. 제55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3.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4. 보험료의 반환
5.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6. 이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 ② 추진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1995년
- 사업추진배경 :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국민 이해 도모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95~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828	2,730	2,730	2,730	2,63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심사·재심사 청구인, 사업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고용보험운영 기타경비 : 2,730백만원

- 고용보험제도 안내 및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한 운영비 등 필수경비 지원
- 2,730백만원('25년) → 2,630백만원('26년, △100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730	○ 일반수용비(210-01) : 1,427,929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21,203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13,355천원 ○ 임차료(210-07) : 26,769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2,769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849,887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153,836천원 ○ 국내여비(220-01) : 14,215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43,282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76,755천원	2,630	○ 일반수용비(210-01) : 1,544,14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21,203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13,355천원 ○ 임차료(210-07) : 26,769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2,769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638,372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153,836천원 ○ 국내여비(220-01) : 14,215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43,282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76,755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 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고용보험에 대한 적극적 안내를 통해 고용보험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 하여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 지원
 - 고용보험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지출을 통해 고용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고용노동부(본부) 직접 시행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 대외공개 평가
-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2,828	△470	2,358	2,358	2,074	88.0	88.0	-	284
2023	2,730	-	2,730	2,730	2,131	78.1	78.1	-	599
2024	2,730	-	2,730	2,730	2,441	89.4	89.4	-	289
2025	2,730	-	2,730	2,730	2,421	88.7	88.7	-	30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부족(470백만원)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 *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방지(7076-230) - 불용사유: 집행잔액
2023	- 불용사유: 집행잔액
2024	- 불용사유: 집행잔액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해당 없음

사 업 명						
(36) 고용센터자체청사관리비(7076-22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6	228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고용센터자체청사관리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용센터자체청사관리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사업시행주체	고용서비스정책과
		직접 수행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고용센터 자체청사관리비	15,978	16,158	16,433	16,446	16,446	288	1.8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6,015	16,015	15,978	-	37	16,158	16,433	16,433	16,393	-	40	16,44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용센터 매입청사 운영에 필요한 시설 유지·관리(건물 보수, 관리비 등) 비용, 청사 근무 공무원(미화·보안실무·시설관리직) 근로자 인건비 지원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법령상 근거 >

- 고용정책기본법 제11조(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등)

- ① 국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지역 근로자와 사업주가 편리하게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직업안정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구직자와 구인기업에 대하여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에 그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7조(기금의 용도 등)

- ① 법 제8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드는 경비
2. 기금의 관리·운용에 드는 경비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08년 ~ 계속

○ 추진배경

- 센터 임차보증금 인상요구 및 이전요구 등에 따른 빈번한 이전으로 민원인 불편 및 접근성 취약, 이전비·시설비·홍보비 등 예산낭비 문제 발생

- 이에 '03.4월 『고용안정 인프라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종합고용지원센터 중심 단계적 자체청사 확보사업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6,760	16,289	16,015	16,158	16,446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지방관서)
- 사업 수혜자 : 구인 · 구직자 등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 · 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고용센터자체청사관리비 : (2025) 16,158백만원 → (2026) 16,446백만원(+288백만원)

- 공무직 근로자(미화원, 보안실무관, 시설관리(요)원) 인건비
: (2025) 4,811백만원 → (2026) 5,250백만원(+439백만원)
- 상용임금 4,321백만원(+358), 복리후생비 73백만원(전년동), 고용부담금 856백만원(+81)
- 고용센터 운영비: (2025) 4,086백만원 → (2026) 3,800백만원(△286백만원)
- 자체청사 전기세, 도시가스 공공요금 등
↳ (산출) 53개소 × 71.7백만원
- 자체청사관리비 등: (2025) 6,191백만원 → (2026) 6,324백만원(+133백만원)
- 청사 관리비 및 시설유지보수비, 보안구역비 등
↳ (산출) 53개소 × 119백만원
- 시설공사비: (2026) 928백만원(전년동)
- 고용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등
↳ (산출) 53개소 × 17.5백만원
- 자산취득비: (2026) 142백만원(전년동)
- 사무집기, 전산장비 등 노후 자산 교체 및 구매 등
↳ (산출) 53개소 × 2.7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158 천원	○ 상용임금(110-03) : 3,963,213천원 가. 공무직 근로자(미화원, 시설관리(요)원 등) 인건비 · 기본급, 기타 수당 등 : 2,262천원×12월×146명 ○ 일반수용비(210-01) : 82,554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 소모품 구입, 에너지-안전진단 등 : 1,557,640원×53개소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3,977,923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 청사 공공요금 등 : 6,255천원×12월×53개소	16,446 천원	○ 상용임금(110-03) : 4,320,906천원 가. 공무직 근로자(미화원, 시설관리(요)원 등) 인건비 · 기본급, 기타 수당 등 : 2,466천원×12월×146명 ○ 일반수용비(210-01) : 82,554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 소모품 구입, 에너지-안전진단 등 : 1,557,640원×53개소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3,694,190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 청사 공공요금 등 : 5,808천원×12월×53개소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유류비(210-08) : 23,322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 냉난방 유류비 등 : 36,670원×12월×53개소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5,786,850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 자체청사 관리비 : 8,765,487원×12월×53개소=5,574,850천원 · 시설유지보수 등 : 4,000,000원×53개소=212,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73,400천원 가. 공무원 근로자(미화원, 시설관리(요)원 등)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 : 500,000원×146명=73,4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404,069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 청사관리·보안용역비 : 635,328원×12월×53개소 ○ 사업추진비(240-01) : 1,785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 청사관련 유관기관 협업 등 : 33,679원×53회 ○ 고용부담금(320-09) : 752,528천원 가. 공무원 근로자(미화원, 시설관리(요)원 등) 고용부담금 · 고용부담금 : 429,525원×12월×146명 ○ 공사비(420-03) : 928,000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 노후시설 개보수 등 : 17,509천원×53개소 ○ 자산취득비(430-01) : 142,385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 노후자산 교체 등 : 2,686천원×53개소		○ 유류비(210-08) : 23,322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 냉난방 유류비 등 : 36,670원×12월×53개소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5,919,850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 자체청사 관리비 : 8,765,487원×12월×53개소=5,574,850천원 · 시설유지보수 등 : 6,509,434원×53개소=345,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73,400천원 가. 공무원 근로자(미화원, 시설관리(요)원 등)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 : 500,000원×146명=73,4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404,069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 청사관리·보안용역비 : 635,328원×12월×53개소 ○ 사업추진비(240-01) : 1,785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 청사관련 유관기관 협업 등 : 33,679원×53회 ○ 고용부담금(320-09) : 855,539천원 가. 공무원 근로자(미화원, 시설관리(요)원 등) 고용부담금 · 고용부담금 : 488,321원×12월×146명 ○ 공사비(420-03) : 928,000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 노후시설 개보수 등 : 17,509천원×53개소 ○ 자산취득비(430-01) : 142,385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 노후자산 교체 등 : 2,686천원×53개소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고용센터 자체청사 53개소 운영
2023	○ 고용센터 자체청사 53개소 운영
2024	○ 고용센터 자체청사 53개소 운영
2025	○ 고용센터 자체청사 53개소 운영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53개 고용센터 자체청사의 안정적 운영으로 고용서비스 품질 개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본부(예산 재배정)	○ 예산 재배정 계획 및 사업 지침 마련
↓	
지방관서(예산집행)	○ 본부 시달 계획, 지침, 규정에 따라 사업 수행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6,760	44	16,804	16,804	16,548	98.5	98.5	121	135
2023	16,289	-	16,289	16,410	16,334	100.3	99.5	-	76
2024	16,015	-	16,015	16,015	15,978	99.8	99.8	-	37
2025	16,158	275	16,433	16,433	16,393	99.8	99.8	-	4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월 사유: 자재수급 지연 등으로 구미고용센터 승강기 교체공사 연장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025.9.15.)	고용센터 자체 청사관리비	420	03	275,000	광주고용센터 화재로 인한 복구비용 마련을 위해 여유자금에서 자체변경
합 계					

사 업 명						
(37) 지역고용 정책협의회 운영지원(7076-23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6	234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지역고용정책협의회운영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지역고용정책협의회 운영지원	고용노동부	실·국·과(팀)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지역고용 정책협의회 운영지원	147	161	161	161	153	8	△5.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61	161	146	-	15	161	161	161	154	-	7	153
· 지역고용정책 협의회운영지원	161	161	146	-	15	161	161	161	154	-	7	15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고용촉진 대책의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고용노동부의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지역고용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을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제9조 및 제9조의2
- 「고용보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② 추진경위

-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기획된 고용정책으로는 지역 수요에 적합한 지역고용 정책 추진에 어려움 발생
- 이에, 지역고용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 실무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체 구성 필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7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87	179	161	161	15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지역고용정책협의회운영지원

: (2025 계획) 161백만원 → (2026 계획) 153백만원, 8백만원 감액

- (요구) 지역고용정책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및 적정 소요 등을 반영하여 예산 요구
- (산출) 지역고용정책협의회 37백만원(18.5백만원 × 2회)
 권역별 고용정책 실무협의회 31백만원(5.2백만원 × 6개 권역)
 지역별 워크숍 85백만원(5백만원 × 17개 시·도)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1,000	○ 일반수용비(210-01) : 94,693천원 가. 지역고용정책협의회운영(14,193천원) • 70,000원×105명×2회-단수조정507,000원=14,193천원 나. 권역별고용정책실무협의회운영(21,000천원) • 70,000원×50명×6개권역=21,000천원 다. 지역별워크샵운영(59,500천원) • 70,000원×50명×17개시도=59,500천원 ○ 임차료(210-07) : 15,000천원 가. 지역고용정책협의회개최(6,000천원) • 회의 개최 행사장 임차 3,000,000원×2회=6,000천원 나. 권역별고용정책실무협의회개최(9,000천원) • 회의 개최 행사장 임차 1,500,000원×6회=9,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302천원 가. 지역고용정책협의회등참석(2,302천원) • 40,000원×57명+단수조정22,000원=2,302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49,005천원 가. 지역고용정책협의회개최(14,400천원) • 30,000원×240명×2회=14,400천원 나. 권역별고용정책실무협의회개최(9,000천원) • 30,000원×50명×6개권역=9,000천원 다. 지역별워크샵개최(25,605천원) • 30,000원×50명×17개시도+단수조정105,000원=25,605천원	153,000	○ 일반수용비(210-01) : 94,693천원 가. 지역고용정책협의회운영(14,193천원) • 70,000원×105명×2회-단수조정507,000원=14,193천원 나. 권역별고용정책실무협의회운영(21,000천원) • 70,000원×50명×6개권역=21,000천원 다. 지역별워크샵운영(59,500천원) • 70,000원×50명×17개시도=59,500천원 ○ 임차료(210-07) : 7,000천원 가. 지역고용정책협의회개최(7,000천원) • 회의 개최 행사장 임차 3,500,000원×2회=7,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302천원 가. 지역고용정책협의회등참석(2,302천원) • 40,000원×57명+단수조정22,000원=2,302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49,005천원 가. 지역고용정책협의회개최(14,400천원) • 30,000원×240명×2회=14,400천원 나. 권역별고용정책실무협의회개최(9,000천원) • 30,000원×50명×6개권역=9,000천원 다. 지역별워크샵개최(25,605천원) • 30,000원×50명×17개시도+단수조정105,000원=25,605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지역고용정책협의회 3회 개최
2023	지역고용정책협의회 3회 개최
2024	지역고용정책협의회 2회 개최
2025	지역고용정책협의회 2회 개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중앙과 지방이 소통·협력할 수 있는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일자리 이슈 논의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제고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 | |
|---|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환노위('23년 예산): 일반회계로 사업 이관 검토 필요 |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87	-	187	187	172	92.0	92.0	-	15
2023	179	-	179	179	164	95.0	95.0	-	15
2024	161	-	161	161	146	90.6	90.6	-	15
2025	161	-	161	161	154	95.7	95.7	-	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계획변경'의 상세내역 : 해당없음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2023	- '계획변경'의 상세내역 : 해당없음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2024	- '계획변경'의 상세내역 : 해당없음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2025	- '계획변경'의 상세내역 : 해당없음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38) 직업능력개발사업운영(7076-24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6	24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직업능력개발사업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직업능력개발사업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직업능력정책국
	사업시행주체	직업능력정책과 직접수행

가. 예산(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직업능력개발 사업운영	702	702	702	667	667	35	△0.5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702	702	693	-	9	702	702	702	697	-	-	667
· 직업능력개발사업 운영	702	702	693	-	9	702	702	702	697	-	-	66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직업능력개발사업운영)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본운영비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기금의 용도 등)
- ② 추진경위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업무추진비, 여비, 관서운영비 등 필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수행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5년 이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66	780	702	702	66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 관련 지방관서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 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직업능력개발 사업운영	보조	지자체 보조	7	100.0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의2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직업능력개발사업운영 667백만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02	○ 일반수용비(210-01) : 407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31백만원 ○ 특근매식비(210-05) : 23백만원 ○ 임차료(210-07) : 15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151백만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9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49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7백만원	702	○ 일반수용비(210-01) : 372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31백만원 ○ 특근매식비(210-05) : 23백만원 ○ 임차료(210-07) : 15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151백만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9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49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원활한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재배정 ⇒ 예산집행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816	△50	766	766	682	89.0	89.0	-	84
2023	780	-	780	780	748	95.9	95.9	-	32
2024	702	-	702	702	653	93.0	93.0	-	9
2025	702	-	702	702	697	99.2	99.2	-	5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운영비 및 여비 5,000만원 계획 변경(고용보험사업부정수급방지(포상금)) - 집행잔액에 따른 불용 발생
2023	- 집행잔액에 따른 불용 발생
2024	- 집행잔액에 따른 불용 발생
2025	- 집행잔액에 따른 불용 발생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39) 근로자능력개발사업운영(7076-24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6	241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근로자능력개발사업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근로자능력개발사업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중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근로자능력 개발사업운영	112	112	112	112	112	-	-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12	112	112	-	-	112	112	112	112	-	-	112
· 근로자능력개발 사업운영	112	112	112	-	-	112	112	112	112	-	-	11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된 사업의 업무수행을 위해 운영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고용보험법」 제1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5조

- 「고용보험법」 제115조: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 11. 제45조에 따른 능력개발비용의 대부에 관한 사항
 - 12. 제47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와 대부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제3항: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 8. 제4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대부와 대부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9. 제4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지원과 지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② 추진경위

- '95년 훈련시설장비대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
- '09년 직업훈련생계비대부 근로복지공단 위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95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0	124	112	112	11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 수혜자 :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사업 운영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근로자능력개발사업운영

: (2025 당초 계획) 112백만원 → (2026 계획) 112백만원, 전년동

- (요구)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된 사업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운영비 요구
- (산출) 직업훈련생계비대부 108백만원, 능력개발시설장비비용대부 4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2	○ 일반용역비(210-14) : 112,000천원 가. 직업훈련생계비대부(107,690천원) · 사업공고, 홍보 등 47,384천원 · 공공요금, 업무협의 등 25,846천원 · 직무교육 등 12,923천원 · 여비 등 21,537천원 나. 능력개발시설장비비용대부(4,310천원) · 여비 등 4,310천원	112	○ 일반용역비(210-14) : 112,000천원 가. 직업훈련생계비대부(107,690천원) · 사업공고, 홍보 등 47,384천원 · 공공요금, 업무협의 등 25,846천원 · 직무교육 등 12,923천원 · 여비 등 21,537천원 나. 능력개발시설장비비용대부(4,310천원) · 여비 등 4,31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 위탁사업의 원활한 수행으로 사업의 효과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 없음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 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 없음
- 3) 자체평가: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30	-	130	130	114	87.7	87.7	-	16
2023	124	-	124	124	124	100.0	100.0	-	-
2024	112	-	112	112	112	100.0	100.0	-	-
2025	112	-	112	112	112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해당 없음

사 업 명
(40) 모성보호사업운영(7076-2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6	25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모성보호사업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모성보호 사업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고용노동부
	사업시행주체	고용노동부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모성보호 사업운영	295	307	307	307	165	△142	△46.2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307	307	295	-	12	307	307	307	297	-	10	165
· 모성보호사업운영	307	307	295	-	12	307	307	307	297	-	10	16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에 대한 교육 및 사업장 홍보 등을 통하여 모성보호 제도의 조기 정착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동법 시행령 제107조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7조(기금의 용도 등) ① 법 제8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드는 경비
2. 기금의 관리·운용에 드는 경비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교부금
4. 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사업이나 업무의 위탁수수료 지급금

② 추진경위

- 95.7.1. 고용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
- '03년부터 모성보호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동 제도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기 시작한 이후 계속 사업으로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3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43	230	307	307	16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제도 내용에 대한 교육 등을 위한 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직접 집행, 사업장 지도·감독을 위한 여비 등 지방관서 재배정 등
- 사업시행주체 : 직접수행
- 사업수혜자 : 고용노동부(본부·지방관서)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165백만원 = 운영비 (152) + 여비(7) + 사업추진비(7)

기능별	계획	산출내역
운영비	152백만원	- 일반수용비: 132백만원 · 제도안내 책자유인, 법령집유인, 제도 안내 및 설명, 전문가 및 관계자 회의 운영수당 등 - 공공요금 및 제세: 14백만원 - 특근매식비 : 6백만원
여비	7백만원	- 관내출장비: 5백만원 - 관외출장비: 2백만원
업무추진비	7백만원	- 모성보호제도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간담회: 5백만원 - 노동단체 및 여성단체 간담회: 2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07	① 운영비 194백만원 - 일반수용비: 174백만원 · 제도안내 책자유인, 법령집유인, 제도 안내 및 설명, 전문가 및 관계자 회의 운영수당 등 - 공공요금 및 제세: 14백만원 - 특근매식비 : 6백만원 ② 여비 7백만원 - 관내출장비: 5백만원 - 관외출장비: 2백만원 ③ 업무추진비 7백만원 - 모성보호제도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165	① 운영비 152백만원 - 일반수용비: 132백만원 · 제도안내 책자유인, 법령집유인, 제도 안내 및 설명, 전문가 및 관계자 회의 운영수당 등 - 공공요금 및 제세: 14백만원 - 특근매식비 : 6백만원 ② 여비 7백만원 - 관내출장비: 5백만원 - 관외출장비: 2백만원 ③ 업무추진비 7백만원 - 모성보호제도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간담회: 5백만원 - 노동단체 및 여성단체 간담회: 2백만원 ④ 연구비 100백만원 - 모성보호제도 관련 연구용역 수행: 5백만원		간담회: 5백만원 - 노동단체 및 여성단체 간담회: 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집행액 198백만원
2023	집행액 228백만원
2024	집행액 295백만원
2025	집행액 297백만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로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정착 및 지원확대에 기여할 것을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안내 및 교육 등을 위한 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직접 집행(본부)
-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정착 관련 사업장 지도·감독을 위한 여비, 업무추진비 등 지방관서에 재배정하여 집행(지방관서)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 대외공개 평가
-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243	-	203	203	198	81.5	97.5	-	5
2023	230	△40	230	230	228	97.5	97.5	-	2
2024	307	-	307	307	295	96.1	96.1	-	12
2025	307	-	307	307	297	96.7	96.7	-	1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불용액: 5백만원(집행잔액)
2023	불용액: 2백만원(집행잔액)
2024	불용액: 12백만원(집행잔액)
2025	불용액: 1백만원(집행잔액)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해당 없음

사 업 명
(41) 고령자고용촉진캠페인(7076-25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6	252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	고령자고용촉진캠페인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령자고용촉진캠페인	소관부처	실·국·과(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고령자고용 촉진캠페인	419	423	423	423	323	△100	△0.24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423	423	419	-	4	423	423	423	152	-	-	323
· 고령자고용촉진캠페인	423	423	419	-	4	423	423	423	152	-	-	32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령자고용촉진캠페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촉진사업 등의 인신개선 캠페인을 전개하여, 연령차별 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고령자고용촉진사업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고령자 고용 안정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② 추진경위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04.1월)에 Age campaign 전개 확정·발표,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07~'11)에 포함, '06년부터 사업시작
 - 명칭변경 : '06년 에이지캠페인 → '12년 고령자고용촉진캠페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495	470	423	423	323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고령/준고령 근로자·근로자가 되려는 자, 사업주,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고령자고용촉진캠페인: (2025) 423백만원 → (2026) 323백만원, 100백만원 감액

- (요구) 고령자고용촉진 관련 홍보비용 조정 후 적정 예산 요구
- (산출) 고령자고용촉진 홍보 관련 운영비 311백만원, 업무추진비 12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23	○ 일반수용비(210-01) : 300백만원 - 고령자고용촉진 관련 홍보비(230백만원) - 온라인 홍보 7,500,000원*4회=30,000천원 - 오프라인 홍보 10,000,000원*5회=50,000천원 - 영상매체 홍보 50,000,000원*3회=150,000천원 - 고령자고용촉진사업 설명자료(40백만원) 4,000원*10,000부=40,000천원 - 장년고용우수기업사례집 및 리플릿 발간(27백만원) 3,000원*9,000부=27,000천원 - 고령자업무담당자 지방관서별 간담회(3백만원) 30,000원*10회*10명=3,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1백만원) - 사례집 및 리플릿 발송 비용 500원*3,200개소=1,600천원 ○ 임차료(2백만원) - 지방관서 간담회 등을 위한 회의장 임차료 200,000원*8.5회=1,700천원 ○ 일반용역비(107백만원) - 홍보 용역(홍보 영상 등 제작)(100백만원) 50,000,000원*2회=100,000천원 - 단수조정(7백만원) ○ 기타운영비(1백만원) ○ 업무추진비(240-01) : 12백만원 - 장년고용촉진 홍보 심사위원회 7,000원*10명*50회=3,500천원 - 장년고용촉진 세미나 개최 간담회 7,000원*20명*25회=3,500천원 - 장년고용촉진 사업 추진 관계자 간담회 7,000원*15명*45회=4,725천원 - 단수조정 254천원	323	○ 일반수용비(210-01) : 200백만원 - 고령자고용촉진 관련 홍보비(157백만원) - 온라인 홍보 5,700,000원*3회=17,100천원 - 오프라인 홍보 10,000,000원*4회=40,000천원 - 영상매체 홍보 50,000,000원*2회=100,000천원 - 고령자고용촉진사업 설명자료(20백만원) 4,000원*5,000부=20,000천원 - 장년고용우수기업사례집 및 리플릿 발간(21백만원) 3,000원*7,000부=21,000천원 - 고령자업무담당자 지방관서별 간담회(2백만원) 20,000원*10회*10명=2,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1백만원) - 사례집 및 리플릿 발송 비용 500원*3,200개소=1,600천원 ○ 임차료(2백만원) - 지방관서 간담회 등을 위한 회의장 임차료 200,000원*8.5회=1,700천원 ○ 일반용역비(107백만원) - 홍보 용역(홍보 영상 등 제작)(100백만원) 50,000,000원*2회=100,000천원 - 단수조정(7백만원) ○ 기타운영비(1백만원) ○ 업무추진비(240-01) : 12백만원 - 장년고용촉진 홍보 심사위원회 7,000원*10명*50회=3,500천원 - 장년고용촉진 세미나 개최 간담회 7,000원*20명*25회=3,500천원 - 장년고용촉진 사업 추진 관계자 간담회 7,000원*15명*45회=4,725천원 - 단수조정 254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방송캠페인) 고령 근로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및 고용상 연령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영상광고 송출 * 지상파(KBS), 중편(JTBC, 채널A), 케이블(YTN), IPTV, 유튜브, 카카오, KTX 열차 및 오피스·엘리베이터 모니터, 옥외전광판 등 ○ (지면광고)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 홍보 ○ (리플릿) 중장년 고용정책 리플릿 배포
2023	○ (온라인) 고령 근로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및 고용상 연령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유형별 테스트 및 이모티콘 제작 추진, 고령자 고용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영상 제작 및 유튜브 홍보 추진 등 ○ (오프라인) '23년 중장년 고용정책 리플릿 배포

2024	○ (온라인) 고령자고용활성화를 위한 영상 및 카드뉴스 제작, 고령자 계속고용홍보를 위한 영상광고 송출,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안내를 위한 오피스보드, 정류장 스크린 홍보 ○ (오프라인)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안내 신문지면 광고 및 리플릿 배포
2025	○ (온라인) 베테랑 고령인력 고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유튜브 영상 제작 및 퀴즈 이벤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및 중장년 경력지원제 홍보 카드뉴스 제작 ○ (오프라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및 중장년 경력지원제 관련 KTX매거진 광고, 중장년 경력지원제 언론매체(머니투데이) 광고, 고령자 계속고용 우수사업장 사례집·계속고용장려금 사업주 가이드북·재취업지원서비스 매뉴얼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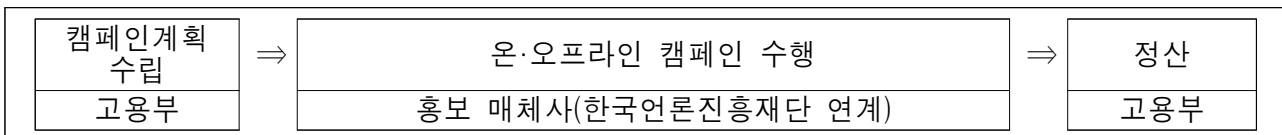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장년고용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환기, 세대 간 일자리 갈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및 장년고용에 관한 정부 정책의 수용도 및 효과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495	-	495	495	491	99.2	99.2	-	4
2023	470	-	470	470	463	98.5	98.5	-	7
2024	423	-	423	423	419	99.1	99.1	-	4
2025	423	-	423	423	419	98.9	98.9	-	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42) 고용보험연구용역(7077-27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7	271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고용보험연구개발	고용보험연구용역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용보험 연구용역	고용노동부	실·국·과(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중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고용보험 연구용역	1,370	1,337	1,337	1,337	554	△783	△58.6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 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337	1,386	1,370	-	16	1,337	1,337	1,337	1,110	-	-	554
· 고용보험연구용역	1,337	1,386	1,370	-	16	1,337	1,337	1,337	1,110	-	-	55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용보험 활성화 방안, 고용보험의 법령, 재정 등 고용보험 관련 사업, 그리고 노동시장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고용정책의 대안을 마련하고,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연구기관의 연구 참여를 통해 연구의 내실화를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보험법 제11조(보험 관련 조사·연구)

* 고용보험법 제11조(보험 관련 조사·연구)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직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와 보험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고용보험 및 노동시장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한 정책적 대안 제시 및 다양한 연구기관 참여를 통한 연구 저변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04년부터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4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37	1,337	1,337	1,337	55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정부,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37	○ 일반연구비(260-01) : 1,337백만원 - 고용보험 연구과제 영역비 1,337백만원 (주요 사업 및 일자리 관련 현안에 대한 연구용역) * (산출내역) 50백만원(평균단가)*26건+37백만원	554	○ 일반연구비(260-01) : 554백만원 - 고용보험 연구과제 영역비 554백만원 (주요 사업 및 일자리 관련 현안에 대한 연구용역) * (산출내역) 50백만원(평균단가)*11건+4백만원 ** 한국노동연구원 등 연구기관 출연금으로 이관 (△7.8억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고용형태 공시제 실효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등 29개 과제 수행
2023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 22개 과제 수행
2024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고용정책 개선전략 연구’ 등 17개 과제 수행
2025	‘고용보험 DB 등을 활용한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 평가 모델 개발 연구’ 등 12개 과제 수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각종 고용보험사업 및 노동시장 현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시의적절하고 효과성 있는 중·장기적 고용정책 대안 마련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연구과제 수요조사 및 연구과제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제출 →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개최(연구과제 선정) → 공개경쟁입찰 →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개최(연구자 선정) → 계약 체결 → 연구상황 점검 → 연구결과물 평가 및 검수 → 연구결과물 제출 및 활용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337	-	1,337	1,337	1,324	99.0	99.0	11	2
2023	1,337	-	1,337	1,348	1,113	83.2	82.6	49	186
2024	1,337	-	1,337	1,386	1,370	102.5	98.8	-	16
2025	1,337	-	1,337	1,337	1,110	83.0	83.0	-	22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불용액 2백만원 발생
2023	불용액 186백만원 발생
2024	불용액 16백만원 발생
2025	불용액 227백만원 발생

사 업 명						
(43) 한국직업능력연구원조사연구지원(7077-27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7	272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고용보험연구개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연구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연구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한국직업능력 연구원 조사연구지원	480	495	495	445	445	△50	△10.1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495	501	480	21	-	495	495	516	500	16	-	445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위탁·대행	495	501	480	21	-	495	495	516	500	16	-	44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하고 미래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직업훈련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정책 조사 및 분석 수행을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보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고용보험법 제11조(보험 관련 조사·연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직업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연구와 보험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조(업무의 대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와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노동시장·직업 및 직업능력개발과 보험 관련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연구기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조사·연구, 관리·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99)에 근거하여 국가 인적자원개발과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자격제도,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위탁사업 실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9년 이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79	550	495	495	445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위탁)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조사연구지원

: (2025 계획) 495백만원 → (2026 계획) 445백만원, 50백만원 감액

- (요구) 직업능력개발 주요쟁점 및 현안 사항 등에 대한 용역 수행
- (산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위탁·대행 445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95	○ 일반용역비(210-14) : 495백만원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위탁·대행	445	○ 일반용역비(210-14) : 445백만원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위탁·대행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발전협의회 운영 외 9건 용역 수행
2023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방안 외 8건 용역 수행
2024	직업능력개발 포럼 운영 외 10건 용역 수행
2025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포럼 외 11건 용역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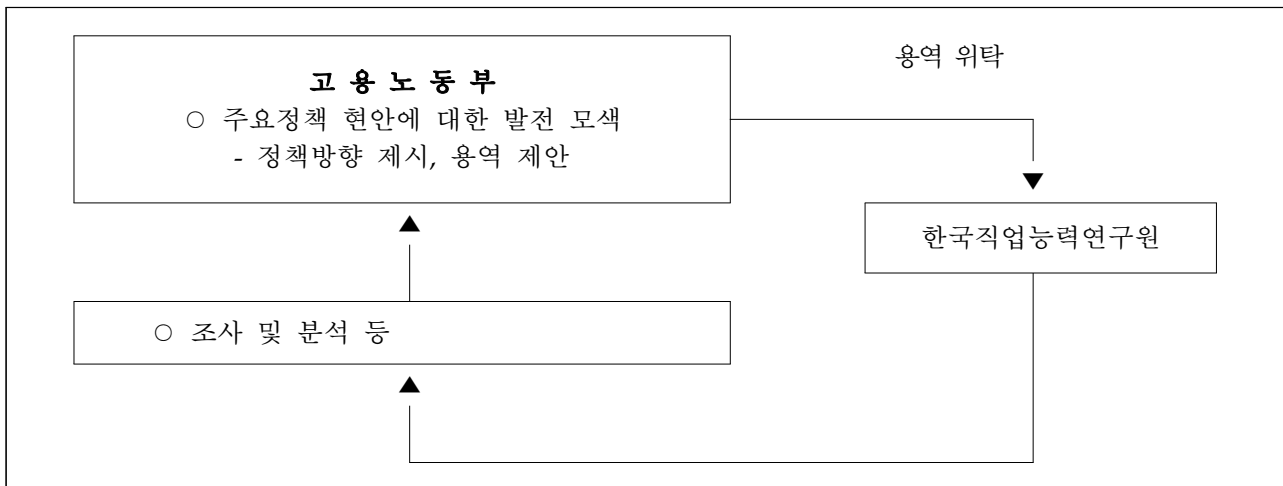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직업능력개발 제도개선 및 정책 대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579	-	579	599	512	88.4	85.6	6	80
2023	550	-	550	556	550	100.0	98.9	6	-
2024	495	-	495	501	480	97.0	95.8	21	-
2025	495	-	495	516	500	101.1	97.0	16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월 사유 : 일부 용역의 연내 완수가 어려운 사정이 있어 이월 발생(6백만원)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80백만원)
2023	- 이월 사유 : 일부 용역의 연내 완수가 어려운 사정이 있어 이월 발생(6백만원)
2024	- 이월 사유 : 일부 용역의 연내 완수가 어려운 사정이 있어 이월 발생(21백만원)
2025	- 이월 사유 : 일부 용역의 연내 완수가 어려운 사정이 있어 이월 발생(16백만원)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44)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제도 홍보(7078-28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080	08D
명칭			고용서비스정책관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8	28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자영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제도 홍보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도 홍보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도 홍보	376	376	376	376	276	△100	△26.6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376	376	376	0	0	376	376	376	376	0	0	276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 입제도 홍보	376	376	376	0	0	376	376	376	376	0	0	27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제도 안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제도 안내 및 가입유도를 통한 자영업자의 고용안전망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고용보험법」 제80조 제1항

② 추진경위

- 2013년: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관련 구체적 업무처리절차 마련
- 2014년: 가입률 제고를 위한 가입요건 등 완화 방안 검토
 - ※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14.6월~12월)
- 2015년: 기준보수 등급 신설(총 5등급 → 7등급)
- 2016년: 임의가입기간 확대(개업일로부터 6개월 → 1년 이내, '16.1.1. 시행)
- 2017년: 임의가입기간 추가 확대(개업일로부터 1년 → 5년 이내, '18.1.1. 시행)
- 2019년: 임의가입기간 폐지(개업일로부터 5년 → 폐지, '19.7.1. 시행)
 - 실업급여보장성 강화('19.10.1.시행)
 - 지급수준 10%p 인상(50%→60%), 지급일수 30일 확대(90~180일→120~210일)
- 2020년: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 발표('12.23), 자영업자 가입대상 및 방식과 적용 시기 단계적 확대방안 논의('21년 상반기부터)
- 2021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적용 관련 경사노위 등 사회적 논의 추진
- 2022년: 가입대상 확대(고유번호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22.7.1. 시행)
 - * (고용부 고시) 가정·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대표자와 기관장이 동일한 개인인 경우
- 2023년: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관련 업무처리 절차 마련
- 2024년: 농어업경영체 등록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24.7.1) 및 실업급여 지급 관련 업무처리 절차 마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3 ~ 현재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40	418	376	376	27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자영업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도 홍보	출연	근로복지 공단	276	100	고용보험법 제80조제1항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제도 홍보: (2025 계획) 376백만원 → (2026 계획) 276백만원, 100백만원 감액

- (요구) 유관기관과 협업 및 자영업자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며, 연례적 홍보비용을 감축하여 100백만원 감액 요구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76	○ 사업출연금(350-02) : 376,000천원 1. 자영업자 수용비(136,661천원) 가. 안내물 제작 및 DM용역(106,000천원): 145원x800,000개소-10,000천원 나. 홍보리플렛 제작(30,000천원): 40원x800,000개소-20,000천원 다. 가입통지서 인쇄(661천원): 50원x13,211개소 2. 자영업자 공공요금(233,963천원) 가. 사업안내문 발송비용(230,000천원): 300원x800,000개소-10,000천원 나. 가입통지서 발송비용(3,963천원): 300원x13,211개소 3. 홍보비(97,376천원) 가. 라디오 광고(48,000천원): 800,000원x30일x2개사 나. 신문 및 협회지 광고(49,376천원) 4. 공통감액(△92,000천원)	276	○ 사업출연금(350-02) : 276,000천원 1. 자영업자 수용비(77,723천원) 가. 안내물 제작 및 DM용역(59,600천원): 145원x480,000개소-10,000천원 나. 홍보리플렛 제작(17,200천원): 40원x480,000개소-2,000천원 다. 가입통지서 인쇄(923천원): 50원x18,463개소 2. 자영업자 공공요금(139,539천원) 가. 사업안내문 발송비용(134,000천원): 300원x480,000개소-10,000천원 나. 가입통지서 발송비용(5,539천원): 300원x18,463개소 3. 홍보비(58,738천원) 가. 라디오 광고(24,000천원): 800,000원x30일x1개사 나. 신문 및 협회지 광고(34,738천원)

4) 사업효과: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근로복지공단 출연금(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공단에서 집행)

8) 각종 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440	0	440	440	440	100	100	0	0
2023	418	0	418	418	418	100	100	0	0
2024	376	0	376	376	376	100	100	0	0
2025	376	0	376	376	376	100	100	0	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해당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해당없음

사 업 명						
(45)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7078-28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8	281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기금운영비(자영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중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87	106	106	106	106	0	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06	106	87	0	19	106	106	106	99	0	7	106
· 운영비	69	69	53	0	16	69	69	69	65	0	4	69
· 여비	18	18	16	0	2	18	18	18	17	0	2	18
· 업무추진비	19	19	17	0	1	19	19	19	18	0	1	1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촉진 및 제도운영 등에 관한 업무수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고용보험법」 제80조 제1항

② 추진경위

- 2013년: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관련 구체적 업무처리절차 마련
- 2014년: 가입률 제고를 위한 가입요건 등 완화 방안 검토
 - ※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14.6월~12월)
- 2015년: 기준보수 등급 신설(총 5등급 → 7등급)
- 2016년: 임의가입기간 확대(개업일로부터 6개월 → 1년 이내, '16.1.1. 시행)
- 2017년: 임의가입기간 추가 확대(개업일로부터 1년 → 5년 이내, '18.1.1. 시행)
- 2019년: 임의가입기간 폐지(개업일로부터 5년 → 폐지, '19.7.1. 시행)
 - 실업급여보장성 강화('19.10.1.시행)
 - 지급수준 10%p 인상(50%→60%), 지급일수 30일 확대(90~180일→120~210일)
- 2020년: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 발표('12.23), 자영업자 가입대상 및 방식과 적용 시기 단계적 확대방안 논의('21년 상반기부터)
- 2021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적용 관련 경사노위 등 사회적 논의 추진
- 2022년: 가입대상 확대(고유번호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22.7.1. 시행)
 - * (고용부 고시) 가정·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대표자와 기관장이 동일한 개인인 경우
- 2023년: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관련 업무처리 절차 마련
- 2024년: 농어업경영체 등록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24.7.1) 및 실업급여 지급 관련 업무처리 절차 마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3 ~ 현재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3	118	106	106	10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자영업자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운영 지원 : (2025 계획) 106백만원 → (2026 계획) 106백만원, 전년동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6	○ 일반수용비(210-01) : 50,701천원 가. 직원직무교육(11,288천원) 나. 유인비 등 기타경비(39,413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9,703천원 가. 심사위원회(478천원) 나. 심사관 업무지원(2,679천원) 다. 고용보험운영지원 법령집 제작(6,546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5,616천원 ○ 임차료(210-07) : 3,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8,364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8,616천원	106	○ 일반수용비(210-01) : 50,701천원 가. 직원직무교육(11,288천원) 나. 유인비 등 기타경비(39,413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9,703천원 가. 심사위원회(478천원) 나. 심사관 업무지원(2,679천원) 다. 고용보험운영지원 법령집 제작(6,546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5,616천원 ○ 임차료(210-07) : 3,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8,364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8,616천원

4) 사업효과: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직접수행

8) 각종 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23	0	123	123	110	89.4	89.4	0	13
2023	118	0	118	118	108	91.2	91.2	0	10
2024	106	0	106	106	87	82.1	82.1	0	19
2025	106	0	106	106	99	93.6	93.6	0	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사유: 집행잔액
2023	- 불용 사유: 집행잔액
2024	- 불용 사유: 집행잔액
2025	- 불용 사유: 집행잔액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해당없음

사 업 명
(46)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9001-84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000	9001	840
명칭	기금간거래(예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자산운용팀
	소관부처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비통화금융 기관예치	-	-	-	2,000,000	2,000,000	2,000,000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2,000,000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	-	-	-	-	-	-	-	-	-	-	2,00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자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설치된 공공자금관리기금(기획재정부 소관)에 예탁하여 공공목적의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국가재정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보험법 제79조(기금의 관리·운용)**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보험사업의 수행 또는 기금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5.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 방법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② 추진경위

- 2026.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6.~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2,000,00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직접관리(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200,0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공공목적의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국가재정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규모 및 국가재정상황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8) 각종 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47)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9201-84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200	9201	840
명칭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과
	고용보험기획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공공자금관리 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161,979	120,632	137,637	139,444	139,444	18,812	15.6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 획
	계 획 액 (수정)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이 월 액	불 용 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이 월 액	불 용 액	
						당 초	수 정					
○ 기능별 분류(합계)	164,122	164,122	161,979	-	2,143	120,632	137,637	137,637	137,460	-	177-	139,444
· 공자기금 예수 이자상환	164,122	164,122	161,979	-	2,143	120,632	137,637	137,637	137,460	-	177-	139,44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자금의 이자 상환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보험법 제86조(차입금)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기금재원 확충을 위해 차입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에 대한 이자상환을 위해 편성('20년 추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72,103	180,197	164,122	120,632	139,444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적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25) 120,632백만원 → ('26) 139,444백만원(증 18,812백만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대한 이자 편성

- '20~'26년 예수금 110,549억원*에 대한 이자 1,394억원

* ('20년) 46,997억원, ('21) 46,584억원, ('22) 9,468억원, ('26) 7,500억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0,632	○ 예수금이자(510-05) : 120,632,000천원	139,444	○ 예수금이자(510-05) : 139,444,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76,694	△4,591	172,103	172,103	164,926	95.8	95.8	-	7,177
2023	180,197	-	180,197	180,197	172,003	95.5	95.5	-	8,194
2024	164,122	-	164,122	164,122	161,979	98.7	98.7	-	2,143
2025	120,632	17,005	137,637	137,637	137,460	99.9	99.9	-	17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집행 잔액
2023	- 집행 잔액
2024	- 집행 잔액
2025	- 집행 잔액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이자 부족으로 인한 기금운용
계획변경(25.11.17, 증17,005백만원)

사 업 명
(48) 한국은행예치(9710-97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10	970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	한국은행예치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한국은행 예치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사업시행주체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한국은행 예치	133,271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1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00,000 (100,000)	100,000	133,271	-	-	100,000	100,000	100,000	-	-	-	100,000
· 한국은행예치	100,000 (100,000)	100,000	133,271	-	-	100,000	100,000	100,000	-	-	-	100,000

* 2025년은 2025년 11월말 현재 기준임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한국은행예치) 회계연도말 여유자금운용 또는 기타 지출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보험법 제78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 고용보험법 제82조(기금계정의 설치)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95.7 고용보험기금의 설치
- 추진배경: 회계연도말 부득이 지출되지 못하고 국고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한국은행 예치금으로 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5.7월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한국은행예치: ('25년) 100,000백만원 → ('26년) 100,000백만원

- 한국은행 국고잔액 평균금액 수준 반영
-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0,000	○ 한국은행예치금(470-01): 100,000,000천원	100,000	○ 한국은행예치금(470-01): 100,00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용보험기금사업의 적정한 수행 및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회계연도 말일 한국은행 시재 파악 → 지출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통화 및 비통화 금융기관에 예치 → 이후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입금되거나 시재로 미파악된 부분이 국고 잔액으로 남음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00,000	-	100,000	100,000	106,382	106.4	106.4	-	-
2023	100,000	-	100,000	100,000	77,583	77.6	77.6	-	-
2024	100,000	-	100,000	100,000	133,271	133.3	133.3	-	-
2025	100,000	-	100,000	100,000	-	-	-	-	-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

사 업 명						
(49)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10-97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10	972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비통화금융 기관예치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자산운용팀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비통화금융 기관예치	3,289,012	8,284,165	6,965,780	7,991,701	6,893,689	△1,390,476	16.8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1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4,358,772	4,358,772	3,125,785	-	-	8,284,165	6,965,780	6,965,780	2,364,782			6,893,689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4,358,772	4,358,772	3,125,785	-	-	8,284,165	6,965,780	6,965,780	2,364,782			6,893,68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여유자금(기금 적립금)을 비통화금융기관(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에 수익증권(채권형, 주식형, 단기자금 등)으로 예치하여 기금 조성에 기여하고, 기금의 지출 수요에 대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보험법 제78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 고용보험법 제79조(기금의 관리·운용)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보험사업의 수행 또는 기금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5.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 방법

② 추진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95. 7. 고용보험기금의 설치
- 추진배경: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당해 연도 지출소요를 초과하는 여유자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동 여유자금을 비통화 금융기관(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에 일정비율 예치하여 기금운영의 안정성과 수익성, 유동성 확보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5.7.~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090,952	3,890,223	4,358,772	8,284,165	6,893,689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직접관리(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고용보험기금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26년도 여유자금 운용 금액(당해년도 여유자금 회수액 및 수지차를 합한 금액) 6,893,689
백만원을 비통화금융기관에 전부 예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유동성을 확보하여 기금 조성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분기별 자산운용계획에 따른 자산군별 투자 비중내에서 채권형·주식형 등의 수익증권 운용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3,587,614	△496,662	3,090,952	3,090,952	2,665,119	86.2	86.2	-	-
2023	4,489,110	△598,887	3,890,223	3,890,223	3,776,650	97.1	97.1	-	-
2024	5,743,688	△1,384,916	4,358,772	4,358,772	3,125,785	71.7	71.7	-	-
2025.11	8,284,165	△1,318,385	6,965,780	6,965,780	2,364,782	33.9	33.9	-	-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

Ⅱ.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사 업 명
(1) 산재보험급여(4051-3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업보건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보상정책관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51	350
명칭	산재보험	산재보험급여	산재보험급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산재보험급여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보건 보상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산재보험급여	7,633,318	8,004,326	8,004,326	8,146,300	8,146,300	141,974	1.8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7,876,091	7,876,091	7,633,318	-	242,773	8,004,326	8,004,326	8,004,326	8,004,324	-	2	8,146,300
· 요양급여	1,540,630	1,540,630	1,462,943	-	77,687	1,467,065	1,467,065	1,457,960	[1,457,960]	-	-	1,418,467
· 휴업급여	2,072,138	2,072,138	1,926,062	-	146,076	2,118,282	2,118,282	1,957,280	[1,957,280]	-	-	2,047,752
· 장해급여	2,703,410	2,703,410	2,703,410	-	-	2,781,327	2,781,327	2,966,028	[2,966,028]	-	-	2,977,823
· 유족급여	981,157	981,157	972,295	-	8,862	1,030,880	1,030,880	1,053,966	[1,053,966]	-	-	1,107,050
· 간병급여	48,601	48,601	47,903	-	698	50,561	50,561	45,406	[45,406]	-	-	46,363
· 상병보상연금	129,565	129,565	127,725	-	1,840	141,847	141,847	104,799	[104,799]	-	-	84,574
· 장례비	44,937	44,937	38,837	-	6,100	38,978	38,978	42,937	[42,937]	-	-	40,529
· 직업재활급여	30,749	30,749	30,715	-	34	27,913	27,913	37,904	[37,902]	-	2	38,998
· 진폐연금	324,904	324,904	323,427	-	1,477	347,473	347,473	338,045	[338,045]	-	-	384,74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 및 그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신속·공정하게 지급하여 산재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도모
- 산재 장해급여자의 직업훈련 및 직장복귀지원을 통해 사회복귀 촉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64년
- 추진배경
 - '64년 산재노동자 및 그 유족의 보호를 위하여 산재보험제도 도입
 - '06. 12. 13 노사정합의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체계 전면 개정 시행('08. 7. 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이 평등권(통근버스 등이 제공되는 대규모 사업장과 영세 사업장 노동자간, 출퇴근재해를 인정하는 공무원과 일반노동자간)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되어,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18.1.1.)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64~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146,284	7,792,317	7,876,091	8,004,326	8,146,300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위탁)
- 사업 수혜자 : 산재보험법 적용 사업장의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 및 그 유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산재보험급여 : (2025) 8,004,326백만원, (2026 계획) 8,146,300백만원, 증 141,974백만원, 증 1.8%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요양급여 1,467,065	< 요양급여 1,467,065백만원 > 가. 기존산재 : 1,467,069백만원(343,174명×4,275천원) 나. 단수조정 : △ 4백만원	요양급여 1,418,467	< 요양급여 1,418,467백만원 > 감 48,598백만원 가. 기존산재 : 1,408,942백만원(307,562명×4,581천원) 나. 간병료 고시 인상 : 9,835백만원(9,048명×1,087천원) 다. 단수조정 : △310백만원
휴업급여 2,118,282	< 휴업급여 2,118,282백만원 > 가. 기존산재 : 2,118,281백만원(188,913명×11,213천원) 나. 단수조정 : 1백만원	휴업급여 2,047,752	< 휴업급여 2,047,752백만원 > 감 70,530백만원 가. 기존산재 : 2,040,223백만원(190,586명×10,705천원) 나. 노무제공자 최저보장액 상향 : 7,508백만원(7,700명×975천원) 다. 단수조정 : 21백만원
장해급여 2,781,327	< 장해급여 2,781,327백만원 > 가. 장해일시금 : 1,168,843백만원(54,883명×21,297천원) 나. 장해연금 : 1,612,484백만원(56,422명×28,579천원)	장해급여 2,977,823	< 장해급여 2,977,823백만원 > 증 196,496백만원 가. 장해일시금 : 1,307,017백만원(59,125명×22,106천원) 나. 장해연금 : 1,670,806백만원(57,065명×29,279천원)
유족급여 1,030,880	< 유족급여 1,030,880백만원 > 가. 유족일시금 : 144,338백만원(1,031명×139,998천원) 나. 유족연금 : 886,542백만원(36,757명×24,119천원)	유족급여 1,107,050	< 유족급여 1,107,050백만원 > 증 76,170백만원 가. 유족일시금 : 149,459백만원(1,018명×146,816천원) 나. 유족연금 : 957,591백만원(38,183명×25,079천원)
간병급여	< 간병급여 50,561백만원 >	간병급여	< 간병급여 46,363백만원 > 감 4,198백만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0,561	가. 기존산재: 50,561백만원(4,474명×11,301천원)	46,363	가. 기존산재 : 39,704백만원(4,335명×9,159천원) 나. 간병급여 고시 인상 : 6,659백만원(4,335명×1,536천원)
상해보상연금 141,847	< 상해보상연금 141,847백만원 > 가. 기존산재: 141,847백만원(2,923명×48,528천원)	상해보상연금 84,574	< 상해보상연금 84,574백만원 > 감 57,273백만원 가. 기존산재 : 84,574백만원(2,686명×31,487천원)
장례비 38,978	< 장례비 38,978백만원 > 가. 기존산재: 38,978백만원(2,462명×15,832천원)	장례비 40,529	< 장례비 40,529백만원 > 증 1,551백만원 가. 기존산재 : 40,529백만원(2,462명×16,462천원)
직업재활급여 27,913	< 직업재활급여 27,913백만원 > 가. 직업훈련비용: 5,198백만원(1,306명×3,980천원) 나. 직업훈련수당: 15,126백만원(1,399명×10,812천원) 다. 직장복귀지원금: 7,556백만원(1,461명×5,172천원) 라. 직장적응훈련비: 23백만원(21명×1,082천원) 마. 재활운동비: 10백만원(26명×366천원)	직업재활급여 38,998	< 직업재활급여 38,998백만원 > 증 11,085백만원 가. 직업훈련비용: 8,912백만원(2,397명×3,718천원) 나. 직업훈련수당: 23,583백만원(2,416명×9,761천원) 다. 직장복귀지원금: 6,467백만원(1,853명×3,490천원) 라. 직장적응훈련비: 25백만원(22명×1,145천원) 마. 재활운동비: 11백만원(28명×387천원)
진폐연금 347,473	< 진폐연금 347,473백만원 > 가. 진폐보상연금: 284,252백만원(12,173명×23,351천원) 나. 진폐유족연금: 63,221백만원(2,558명×24,715천원)	진폐연금 384,744	< 진폐연금 384,744백만원 > 증 37,271백만원 가. 진폐보상연금: 310,547백만원(12,517명×24,810천원) 나. 진폐유족연금: 74,197백만원(2,851명×26,025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추정산식 (또는 추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산재보험 신속성(건)	목표	신규	신규	신규	154,485	158,954	최근 3개년('23~'25년*) 처리건 중 6개월 이내 처리건의 평균건수에서 45% 증가를 목표 설정 * '25년 산출된 값(가정)을 적용하여 '26년 목표치 설정('25년 실적 반영 시 '26년 목표치 변경 가능)	당해연도 산재신청서 처리건 중 6개월 이내 처리건 수의 합 *당해연도 1.1~ 1231.까지 처리된 산재신청서 중 6개월(접수일 ~ 처리일) 이내 처리건수의 합(건)으로 함	근로복지공단 전산자료
	실적	신규	신규	153,085	158,556	-			
	달성도	-	-	-	-	-			

* '25년 실적은 '26.1월말 집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보험급여 집행액 : 6,686,486백만원, 수급자수: 390,475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 특례 적용 확대 · (유통배송기사 등 직종 확대)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당연적용 대상 확대 · (전속성 기준 폐지) 현행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대리운전기사 등 비전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확대
2023	- 보험급여 집행액 : 7,284,941백만원, 수급자수: 398,324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특례 적용확대 ·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속성 기준 폐지 ·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시간을 채워야 하는 산재보험법 “특고 전속성 요건” 때문에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 건강손상자녀 산재보험 특례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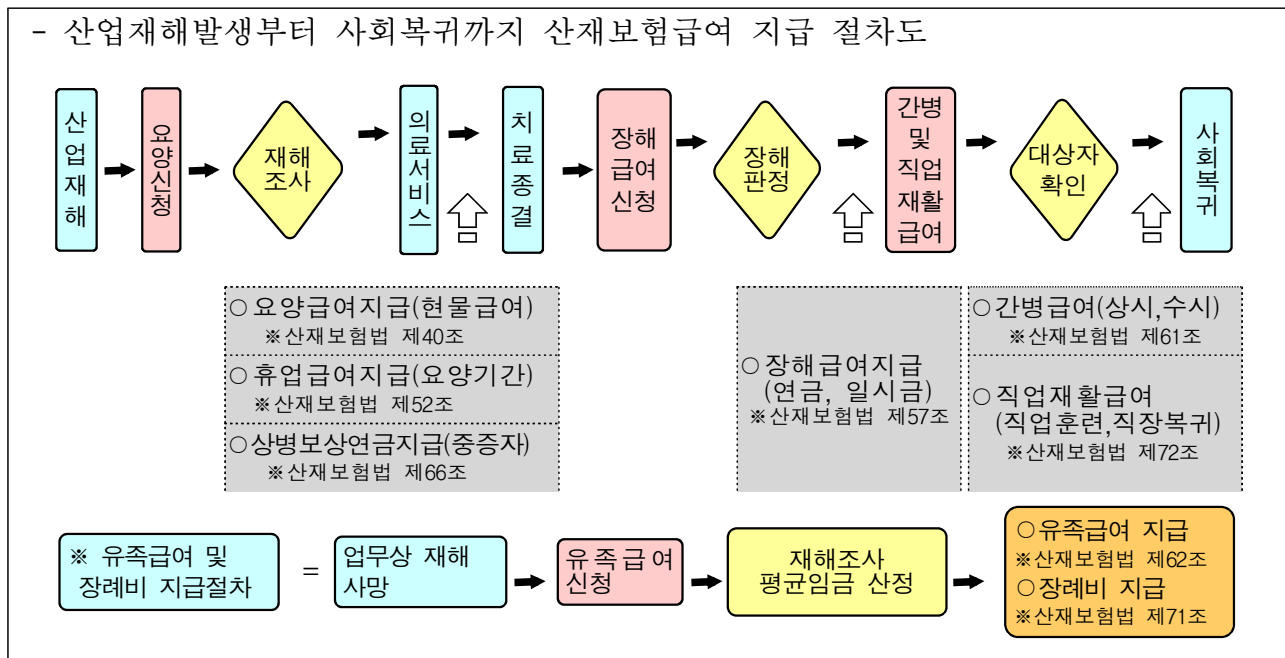
	·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 (산재보험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2024	- 보험급여 집행액 : 7,633,318백만원, 수급자수: 405,539명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특례 적용확대 · 방과후학교강사, 보험설계사(새마을금고·신협 공제모집인) 등
2025	- ('25.12월)보험급여 집행액 : 8,004,324백만원, / ('25.12월)수급자수: 419,432명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재해노동자 및 그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신속·공정하게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수급자 중심의 사회안전망 강화 추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소음성 난청의 산재처리기간 단축 방안 마련 필요
 - 업무상 재해 산재승인 처리지연 개선 방안을 통해 산재처리 신속성 강화 필요
 -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장기화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업무상 질병 관련 공단 패소율이 높아지고 있어 산재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필요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사항 없음
- 3) 자체평가
 -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보통'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7,146,284	-	7,146,284	7,146,284	6,686,486	93.6	93.6	-	459,798
2023	7,792,317	-	7,792,317	7,792,317	7,284,941	93.5	93.5	-	507,376
2024	7,876,091	-	7,876,091	7,876,091	7,633,318	96.9	96.9	-	242,773
2025	8,004,326	-	8,004,326	8,004,326	8,004,324	100.0	100.0	-	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사유 : 코로나19 관련 의료서비스 접근 제약에 따른 요양급여 감소 등의 영향으로 459,798백만원 불용
2023	- 불용사유 : 평균 진료일수, 입원일수 감소 등에 따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집행잔액 발생 등의 영향으로 507,376백만원 불용
2024	- 불용사유 : 합리적 요양관리 등 제도개선에 따른 요양종결자 증가에 따라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집행잔액 발생 등의 영향으로 242,773백만원 불용
2025	- 불용사유 : 직업재활급여 집행잔액 2백만원 불용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2)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4052-3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업보건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보상정책관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52	350
명칭	산재보험	산재근로자 재활복지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보건 보상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78,372	77,937	116,466	87,651	87,651	9,714	12.5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78,384	78,384	78,372	-	15	77,937	116,466	116,466	116,459	-	7	87,651
· 합병증등예방관리	60,154	60,154	60,154	-	3	60,154	98,683	98,683	98,683	-	-	69,070
· 산재근로자직장복귀지원	2,667	2,667	2,667	-	-	11,593	11,593	11,593	11,593	-	-	12,391
· 사회심리재활지원	2,472	2,472	2,472	-	-	2,472	2,472	2,472	2,472	-	-	2,472
· 산재근로자복지사업지원	351	351	346	-	5	-	-	-	-	-	-	-
· 맞춤형서비스지원	9,022	9,022	9,022	-	-	-	-	-	-	-	-	-
· 산재근로자대체인력지원	3,168	3,168	3,168	-	-	3,168	3,168	3,168	3,168	-	-	3,168
· 직업복귀통합지원시스템 운영	550	550	543	-	7	550	550	550	543	-	7	5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산재노동자의 신속한 사회·직업복귀 촉진을 위하여 산재 노동자에게 의료·사회심리·직업재활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제공하고,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임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요양종결 이후 합병증 발병 등이 우려되는 44개 상병군에 대한 예방 진료비 지원과 요양종결 후 건강보험으로 치료한 비용을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산재노동자의 성공적 직업 및 사회복귀를 위해 요양단계별 (요양초기·요양중·직업복귀 및 사후관리·통계조사)로 재활서비스 체계적인 지원(사업주 직업복귀계획서 제출제도 운영, 직업복귀계획 수립, 의학자문, 재활서비스 통합제공 등)
- (사회심리재활지원) 산재로 인한 심리불안 해소 및 재활의욕 고취를 위한 희망찾기·사회적응프로그램 등 지원으로 사회복귀 촉진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산재노동자를 원직복귀 시킨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 지원
- (직업복귀통합지원시스템 운영) 취업 취약계층에게 신속·정확한 적합일자리 및 직업훈련 추천정보 등 직업복귀통합서비스를 적기에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5의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요양 및 재활

제75조의2(직장복귀 지원)

①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 종결 후 장애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시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직장복귀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직장복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직장복귀계획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업주에게 이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그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요양기간 중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근로자의 직업능력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을 위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및 제50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① 공단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92조(근로복지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가. 요양이나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

나. 의료재활이나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2.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촉진)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장해급여 또는 진폐 보상연금을 받은 자를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7조(직업재활 지원)

①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사람의 직업재활을 위하여 그 근로자가 요양을 받는 기간이나 요양종결 후에 심리상담, 직업재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그 근로자의 직업욕구나 직업능력 등을 고려한 직업평가, 직업복귀계획 수립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1조의2(직장복귀 지원)

①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시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직장복귀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 종결 후 별표 6에 따른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복귀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경우

② 법 제75조의2제3항에서 “직업능력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직업능력 평가에 대한 진단 및 직업능력 평가의 실시

2. 직업능력 회복·강화를 위한 지원

3. 재활치료에 대한 진단 및 신체기능 회복·강화를 위한 지원

4. 의지(義肢) 또는 보조기의 처방, 제작·유지·보수를 위한 지원과 그 사용에 따른 적응력 향상 훈련 지원

5. 장해 상태를 고려한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직무 전환을 위한 지원

6. 근로자의 심리적 안정 및 정신기능 회복과 가족, 직장동료와의 관계 회복 지원

7. 그 밖에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해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추진경위

- '00. 7. 1. 후유증상진료지원제도 도입
- '01. 1.11.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수립
- '01. 3. 1. 재활스포츠지원사업 도입
- '02. 1. 1. 산재근로자 사회적응위탁프로그램 운영 개시
- '06. 3.24. 재활사업 제1차 중기 발전계획('06-'08) 수립

- '08. 7. 1. 직업재활급여(직장복귀지원금, 재활운동비, 직장적응훈련비, 직업훈련) 도입
- '09. 4. 6. 제2차 재활사업 중기 발전계획 수립
- '10. 4.28. 직업재활급여 및 직업훈련 지원대상 확대
- '12. 5.31. 제3차 재활사업 중기 발전계획 수립
- '15. 3.31. 제4차 재활사업 중기 발전계획 수립
- '16. 1. 1.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 도입
- '17. 7. 1. 직업훈련기관 인증제와 NCS 성과 평가체계 도입
- '17.12.13. 제5차 산재보험 재활중기계획('18.~'22.) 수립
- '18.12.21. 산재관리의사 제도 시범운영
- '19. 3. 1. 사업주 원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 시범운영
- '20. 2. 1. 지능형 재활추천시스템 운영 개시
- '21. 4.29.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도 산재보험법 개정 국회 의결(제도 시행: '22.1.1.)
- '22. 2.23. 제6차 재활사업 중기 발전계획 수립
- '23. 3.20.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개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0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6,654	76,654	78,384	116,466	87,651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산재노동자 및 (유)가족, 사업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출연	근로복지공단	87,651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 (2025) 77,937백만원 → (2026) 87,651백만원, 증 9,714백만원, 증 12.5%

① 합병증 등 예방관리 : (2025) 60,154백만원 → (2026) 69,070백만원, 증 8,916백만원, 증 14.8%

- (요구) 합병증 등 예방관리 수급자수, 평균진료 단가 현실화 요구

- (산출)

· 합병증 등 예방관리 : 수급자수 46,929명 × 평균진료비 1.23백만원 = 57,623백만원

· 요양종결 후 건강보험 지원 : 수급자수 62,422명 × 평균진료비 0.2백만원 = 11,447백만원

②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 (2025) 11,593백만원 → (2026) 12,391백만원, 증 798백만원, 증 6.9%

- (요구) 산재근로자의 날 행사비용, 직업복귀 토탈케어 제도 확대 요구

- (산출)

· 요양초기 지원 : 상담 등 출장 및 설명회 445 + 결정통지 DM 등 공공요금 및 제세 300 + 유관기관 간담회 및 협의 등 운영 114 + 제도안내 제작배포 41 = 900백만원

· 요양 중 지원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321 + 산재인식개선사업 250 + 우수기관 포상 및 사회복귀코디 양성 운영 672 + 산재의료전문위원 인건비 2,635 + 상시수시 자문의사 수당 5,097 + 의료영상장비 전송시스템 545 + 오류상병코드 위탁 보정 100 = 9,620백만원

· 직업복귀토탈케어 : 1,208백만원

· 직업복귀 및 사후관리 통계조사 지원 : 570백만원(패널조사 및 경제활동 실태조사)

③ 사회심리재활지원 : (2025) 2,472백만원 → (2026) 2,472백만원, 전년동

- (요구) 전년동 수준 요구

- (산출)

· 재활프로그램 1,002백만원

재활스포츠 : 지원인원 2,167명 × 평균지원액 294,291원 = 638백만원

멘토링프로그램 : 지원인원 1,570명 × 평균지원액 231,822원 = 364백만원

· 사회적응프로그램 1,470백만원

희망찾기프로그램 : 지원인원 1,882명 × 평균지원액 542,347원 = 1,021백만원

사회적응프로그램 : 지원인원 294명 × 평균지원액 902,430원 = 266백만원

취미활동반 : 지원인원 520명 × 평균지원액 351,455원 = 183백만원

④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 (2025) 3,168백만원 → (2026) 3,168백만원, 전년동

- (요구) 전년동 수준 요구

- (산출) 대체인력지원금 : 지원인원 1,427명 × 1인 지원액 600,000원 × 평균 지원기간 3.7개월

⑤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통합지원시스템 : (2025) 550백만원 → (2026) 550백만원, 전년동

- (요구) 전년동 수준 요구

- (산출)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소요 비용 : 550백만원

(상용SW, 메타버스, 추천모델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공공클라우드 DB 사용료 등)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합병증등 예방관리 60,154	< 합병증 등 예방관리 60,154백만원 >	합병증등 예방관리 69,070	< 합병증 등 예방관리 69,070백만원 >
	가. 합병증 등 예방관리: 수급자수 42,285명 × 평균진료비 1.26백만원 = 53,279백만원 나. 요양종결 후 건강보험 지원 : 수급자수 34,375명 × 평균진료비 0.2백만원 = 6,875백만원		가. 합병증 등 예방관리: 수급자수 46,929명 × 평균진료비 1.23백만원 = 57,623백만원 나. 요양종결 후 건강보험 지원 : 수급자수 62,422명 × 평균진료비 0.2백만원 = 11,447백만원
산재근로자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11,593백만원 >	산재근로자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12,391백만원 >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직업복귀지원 11,593	가. 요양초기 지원: 900백만원 (상담 등 출장 및 설명회 445, 결정통지 등 DM 등 공공요금 및 제세 300, 유관기관 간담회 및 협의 등 운영 114, 제도안내 제작 배포 41) 나. 요양 중 지원 : 9,420백만원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321, 산재인식개선사업 50, 우수기관 포상 및 사회복귀 코디 양성운영 등 672, 산재의료전문위원 인건비 2,635, 상시수시 자문의사 수당 등 5,097, 의료영상장비 전송시스템 545, 오류상병코드 위탁 보장 100) 다. 직업복귀 사후관리 지원 : 703백만원 라. 직업복귀 및 사후관리 통계조사 지원 : 570백만원 (패널조사 및 경제활동 실태조사)	직업복귀지원 12,391	가. 요양초기 지원: 900백만원 (상담 등 출장 및 설명회 445, 결정통지 등 DM 등 공공요금 및 제세 300, 유관기관 간담회 및 협의 등 운영 114, 제도안내 제작 배포 41) 나. 요양 중 지원 : 9,713백만원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321, 산재인식개선사업 250*, 우수기관 포상 및 사회복귀 코디 양성운영 등 672, 산재의료전문위원 인건비 2,728, 상시수시 자문의사 수당 등 5,097, 의료영상장비 전송시스템 545, 오류상병코드 위탁 보장 100) * 산재근로자의 날 행사 200백만원 포함 다. 직업복귀토탈케어 : 1,208백만원 라. 직업복귀 및 사후관리 통계조사 지원 : 570백만원 (패널조사 및 경제활동 실태조사)
사회심리 재활지원 2,472	< 사회심리 재활지원 2,472백만원 > 가. 재활스포츠: 638백만원 = 지원인원 2,167명 × 평균지원액 294,291원 나. 희망찾기프로그램 1,021백만원 = 지원인원 1,882명 × 평균지원액 542,347원 다. 사회적응프로그램 266백만원 = 지원인원 294명 × 평균지원액 902,430원 라. 취미활동반: 183백만원 = 지원인원 520명 × 평균지원액 351,455원 마. 멘토링프로그램 : 364백만원 = 지원인원 1,570명 × 평균지원액 231,822원	사회심리 재활지원 2,472	< 사회심리 재활지원 2,472백만원 > 가. 재활프로그램 1,002백만원 재활스포츠 638백만원 = 지원인원 2,167명 × 평균지원액 294,291원 멘토링프로그램 364백만원 = 지원인원 1,570명 × 평균지원액 231,822원 나. 사회적응프로그램 1,470백만원 희망찾기프로그램 1,021백만원 = 지원인원 1,882명 × 평균지원액 542,347원 사회적응프로그램 266백만원 = 지원인원 294명 × 평균지원액 902,430원 취미활동반 183백만원 = 지원인원 520명 × 평균지원액 351,455원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지원 3,168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3,168백만원 > 가. 대체인력지원금: 3,168백만원 = 지원인원 1,427명 × 1인지원액 600,000원 × 평균 지원기간 3.7개월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지원 3,168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3,168백만원 > 가. 대체인력지원금: 3,168백만원 = 지원인원 1,427명 × 1인지원액 600,000원 × 평균 지원기간 3.7개월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통합지원 시스템 운영 550	<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550백만원 > 가.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소요 비용 : 550백만원 (상용SW, 메타버스, 추천모델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공공클라우드 DB 사용료 등)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통합지원 시스템 운영 550	<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550백만원 > 가.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소요 비용 : 550백만원 (상용SW, 메타버스, 추천모델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공공클라우드 DB 사용료 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산재보험 신속성(건)	목표	신규	신규	신규	154,485	158,954	최근 3개년('23~'25년*) 처리건 중 6개월 이내 처리건의 평균건수에서 3% 증가를 목표 설정 * '25년 산출된 값(가정)을 적용하여 '26년 목표치 설정('25년 실적 반영 시 '26년 목표치 변경 가능)	당해연도 산재신 청서 처리건 중 6 개월 이내 처리건 수의 합 *당해연도 1.1~1231. 까지 처리된 산재 신청서 중 6개월 (접수일 ~ 처리일) 이내 처리건수의 합(건)으로 함	근로복지공단 전산자료
	실적	신규	신규	153,085	-	-			
	달성도	-	-	-	-	-			

* '25년 실적은 '26.1월말 집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합병증 등 예방관리

2022	- 합병증 수혜인원은 42,729명으로, '21년 대비 0.25% 감소 * 신규 이용자는 16,296명('21년 17,563명 대비 7.22% 감소) - 요양종결 후 건강보험지원은 50,935명, 6,762백만원 집행
2023	- 합병증 수혜인원은 44,074명, 53,277백만원 집행 * 신규 이용자는 18,891명 - 요양종결 후 건강보험지원은 34,416명, 6,762백만원 집행
2024	- 합병증 수혜인원은 43,962명, 53,276백만원 집행 * 신규 이용자는 20,777명 - 요양종결 후 건강보험지원은 36,473명, 6,875백만원 집행
2025	- 합병증 수혜인원은 49,107명, 82,300백만원 집행 * 신규 이용자는 21,630명 - 요양종결 후 건강보험지원은 77,633명, 16,383백만원 집행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2022	- 재활상담 및 서비스 수혜인원 63,716명 - 작업능력평가·강화프로그램 6,469명
2023	- 직장복귀계획서 제출건수 6,505건 - 재활상담 및 서비스 수혜인원 81,334명 - 작업능력평가·강화프로그램 7,293명
2024	- 직장복귀계획서 제출건수 9,476건 - 재활상담 및 서비스 수혜인원 43,193명 - 작업능력평가·강화프로그램 7,872명
2025	- 직장복귀계획서 제출건수 12,150건 - 재활상담 및 서비스 수혜인원 61,596명 - 작업능력평가·강화프로그램 7,944명

☐ 사회심리재활지원

2022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제공(희망찾기, 사회적응) 2,444명 - 재활스포츠 지원 2,355명, 취미활동반 지원 514명 - 멘토링프로그램 1,485명
2023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제공(희망찾기, 사회적응) 2,301명 - 재활스포츠 지원 1,978명, 취미활동반 지원 496명 - 멘토링프로그램 2,304명
2024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제공(희망찾기, 사회적응) 2,602명 - 재활스포츠 지원 1,948명, 취미활동반 지원 432명 - 멘토링프로그램 1,576명
2025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제공(희망찾기, 사회적응) 2,485명 - 재활스포츠 지원 2,454명, 취미활동반 지원 393명 - 멘토링프로그램 2,079명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2022	- 대체인력지원 1,457명, 대체근로자 신규 고용 1,624명
2023	- 대체인력지원 1,478명, 대체근로자 신규 고용 1,695명
2024	- 대체인력지원 1,453명, 대체근로자 신규 고용 1,633명
2025	- 대체인력지원 1,485명, 대체근로자 신규 고용 1,541명

□ 직업복귀통합지원시스템 운영

2023	- 일자리 및 직업훈련정보 추천제공 57,917건
2024	- 일자리 및 직업훈련정보 추천제공 48,267건
2025	- 일자리 및 직업훈련정보 추천제공 65,967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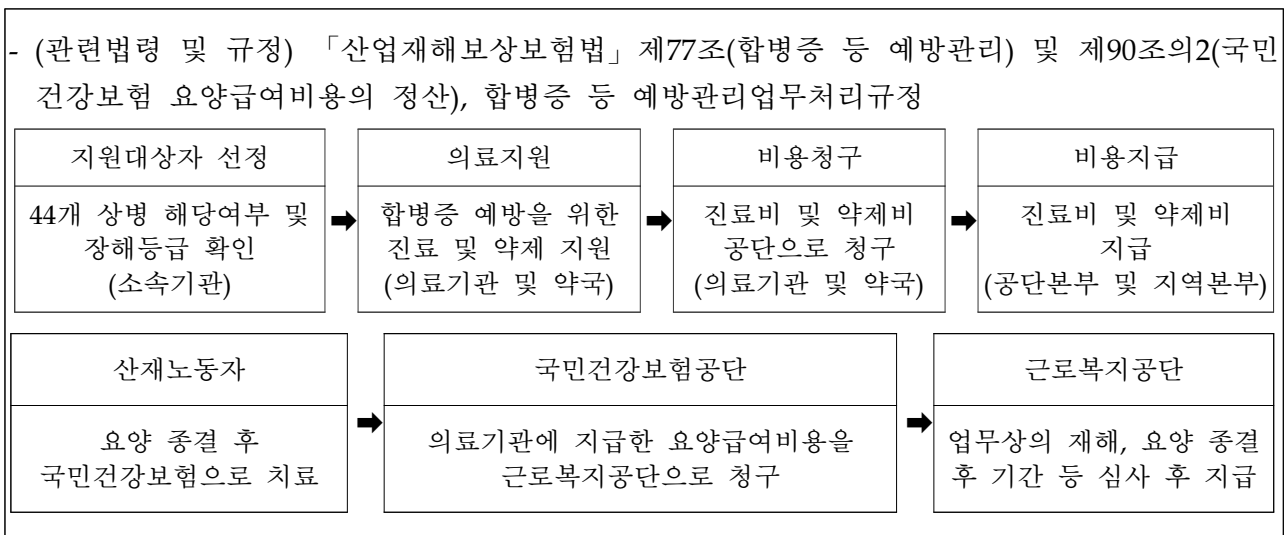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산재노동자 재활복지지원을 통해 직업복귀 촉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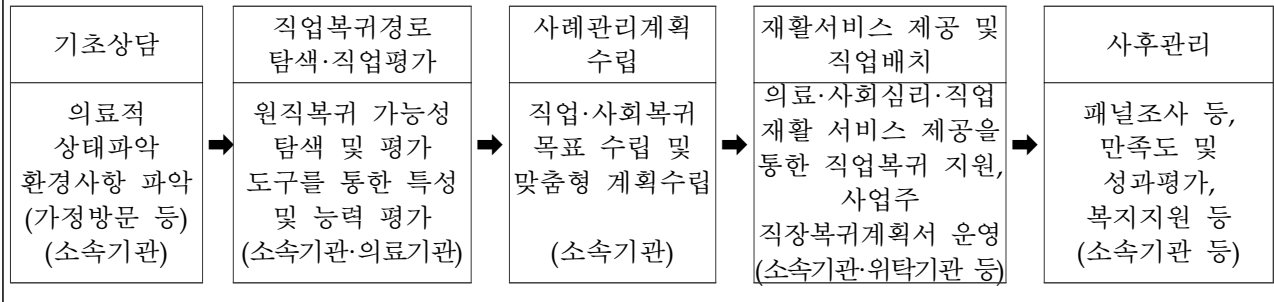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 합병증 등 예방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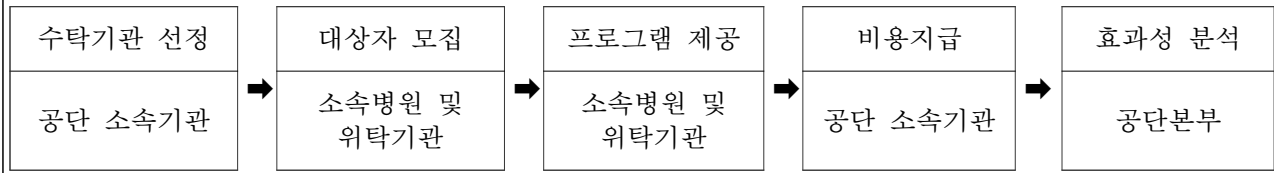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 (관련법령 및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의2(직장복귀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7조(직업재활 지원), 직업재활업무처리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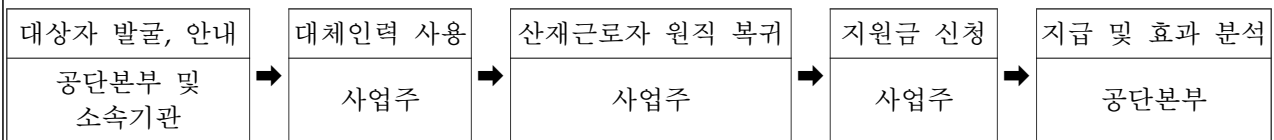
□ 사회심리재활지원

- (관련법령 및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근로복지사업),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 지원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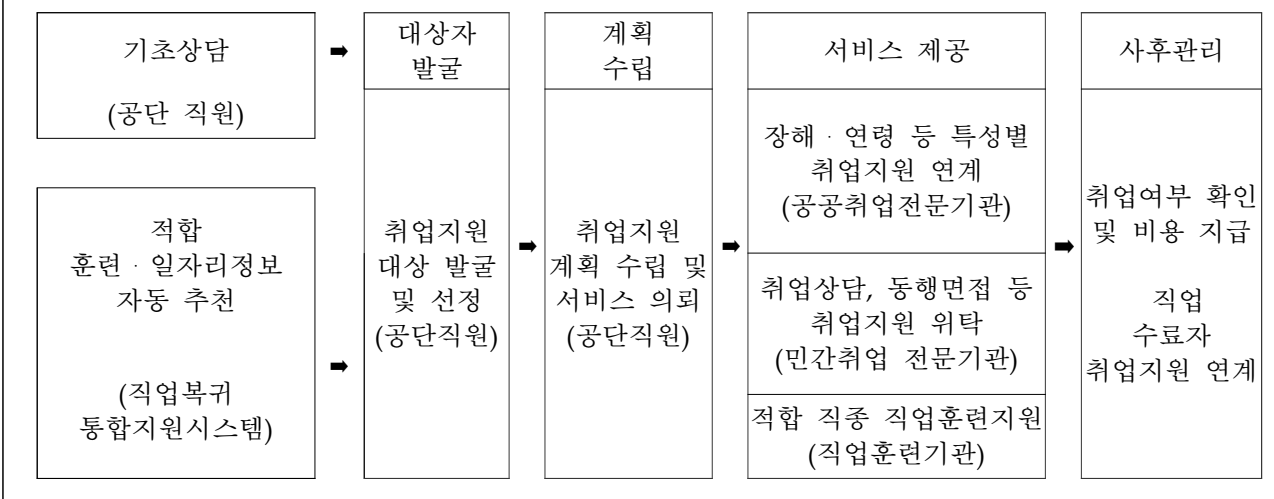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 (관련법령 및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근로복지사업),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 직업복귀통합지원시스템(산재근로자 재취업지원) 운영

- (관련법령 및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의2(직장복귀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7조(직업재활 지원), 직업재활업무처리규정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사항 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사항 없음
- 3) 자체평가
 -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우수'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중감액	수정(A)						
2022	76,654	-	76,654	76,654	76,498	99.8	99.8	-	156
2023	76,654	-	76,654	76,654	76,537	99.8	99.8	-	117
2024	78,384	-	78,384	78,384	78,369	99.9	99.9	-	15
2025	77,937	-	116,466	116,466	116,459	99.9	99.9	-	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직업훈련 급여사업 확대, 고교무상교육 등으로 156백만원 불용
2023	- 직업훈련 급여사업 확대, 고교무상교육 등으로 117백만원 불용
2024	- 고교무상교육 등으로 15백만원 불용
2025	- 직업복귀통합지원시스템 계약 낙찰 차액 7백만원 불용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기재부협의 (2025.12.18.)	합병증 등 예방관리	350	02	38,529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한 기금 변경 합병증 등 예방관리(29,021백만원), 요양 종결 후 건보지원(9,508백만원)
합 계				38,529	

사 업 명						
(3) 연구기관 및 케어센터 지원(4052-35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업보건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보상정책관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52	356
명칭	산재보험	산재근로자 재활복지	연구기관 및 케어센터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연구기관 및 케어센터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보건 보상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연구기관 및 케어센터 지원	12,407	12,665	12,665	14,104	14,104	1,439	11.3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2,747	12,747	12,407	310	30	12,665	12,665	12,975	12,665	-	-	14,104
· 재활공학연구소	4,633	4,633	4,633	-	-	4,756	4,756	4,756	4,756	-	-	4,948
· 직업환경연구원	4,851	4,851	4,511	310	30	4,580	4,580	4,890	4,580	-	-	5,677
· 케어센터	3,263	3,263	3,263	-	-	3,329	3,329	3,329	3,329	-	-	3,47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활공학연구소) 첨단 재활보조기구의 개발·보급을 통해 산재장해인의 직업 및 사회복귀 촉진
-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 질병 판정관련 역학조사와 직업병 연구
- (케어센터) 중증·고령·무의탁 산재 장애인에게 전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간병부담 완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4.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5.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 5의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요양 및 재활
- 5의3.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검정 및 보급
- 5의4.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업무
- 5의5.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사업
6.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92조(근로복지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

가. 요양이나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나. 의료재활이나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2.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의 근로자의 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하 “지정법인”이라 한다)에 제1항의 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보험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정법인의 지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고용노동부 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재활공학연구소)

- 산재장해근로자의 재활보조기구 및 재활치료·훈련기법을 연구·개발·보급하여 사회복귀 촉진 목적으로 설립('94.8월)
-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01~'05)」
- 고용노동부 『산재환자 요양과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한 산재의료관리원 역할강화 방안('06~'10년)』 ('06.3월)
- 고용노동부 『산재전문병원 역할강화 세부실행계획』 수립('07.10월)
- 고용노동부 『제5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18~'22)』 ('17.12월)

- (직업환경연구원)

- 안산산재병원 부설 ‘직업성폐질환연구소’ 개소('06.4월)
 - * 수도권 유일한 진폐전문기관인 여의도 성모병원이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산재진폐전문 의료기관 반납
- 직업환경연구원 명칭 변경('19.1월)
- 백혈병, 피부질환 등 호흡기 외 질환 역학조사 수행('19.5월)

- (케어센터)

- 「산재장해인 케어센터」 및 「진폐환자보호요양시설」 건립 추진('01. 6월, 노동부)
- 산재보험 케어센터 건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한국노동연구원, '01. 12월)
- 근로복지공단 「산재장해인 케어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02. 11월)
- '산재보험 케어센터 건립계획' 확정('02. 11월)
- 「진폐환자 보호 요양시설」 건립 기본계획 수립('04. 2월)
- 경기케어센터 개소('07. 7월), 태백케어센터 개소('08. 4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재활공학연구소) '95~계속, (직업환경연구원) '06~계속, (케어센터) '07~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275	10,275	12,747	12,665	14,104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위탁)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출연	근로복지공단	14,104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제1항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연구기관 및 케어센터 지원 : (2025) 12,665백만원 → (2026) 14,104백만원, 증 1,439백만원, 증 11.4%

① 재활공학연구소 : (2025) 4,756백만원 → (2026) 4,948백만원, 증 192백만원, 증 4.0%

- (요구) 재활공학연구소 인력 인건비 처우개선을 반영 등 요구
- (산출) 지출 13,105백만원 - 수입 8,157백만원 = 4,948백만원
- 지출 : 인건비 5,652백만원(84명×67.29백만원) + 운영비 3,486백만원 + 외부연구과제 3,967백만원
- 수입 : 외부연구과제 3,967백만원 + 보장구 공급 수입 3,858백만원 + 시험검사 수수료 332백만원

② 직업환경연구원 : (2025) 4,580백만원 → (2026) 5,677백만원, 증 1,097백만원, 증 24.0%

- (요구) 직업환경연구원 연구장비 교체, 외부위탁 연구용역 확대 및 증원인력 잔여 6개월 인건비 등 요구
- (산출)
- 인건비 2,866백만원(30명×95.53백만원) + 운영비 691백만원 + 연구장비 교체 1,150백만원 + 외부위탁 970백만원 = 5,677백만원

③ 케어센터 : (2025) 3,329백만원 → (2026) 3,479백만원, 증 150백만원, 증 4.5%

- (요구) 케어센터 인건비 처우개선을 반영 등 예산 요구
- (산출) 경기케어(1,961백만원) + 태백케어(1,518백만원) = 3,479백만원
- 경기케어: 지출 3,052백만원(인건비 2,346백만원 + 운영비 706백만원) - 수입 1,091백만원 = 1,961백만원
- 태백케어: 지출 1,759백만원(인건비 1,328백만원 + 운영비 431백만원) - 수입 241백만원 = 1,518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재활공학 연구소 4,756	< 재활공학연구소 4,756백만원 > 가. 지출 : 12,913백만원 - 인건비 : 5,460백만원(84명×65.00백만원) - 운영비 : 3,486백만원(재료비 포함) - 외부연구과제 : 3,967백만원 나. 수입 : 8,157백만원	재활공학 연구소 4,948	< 재활공학연구소 4,948백만원 > 증 192백만원 가. 지출 : 13,015백만원 - 인건비 : 5,652백만원(84명×67.29백만원) - 운영비 : 3,486백만원(재료비 포함) - 외부연구과제 : 3,967백만원 나. 수입 : 8,157백만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외부연구과제 : 3,967백만원 - 보장구 공급 수입 : 3,858백만원 - 시험검사 수수료 : 332백만원		- 외부연구과제 : 3,967백만원 - 보장구 공급 수입 : 3,858백만원 - 시험검사 수수료 : 332백만원
직업환경 연구원 4,580	< 직업환경연구원 4,580백만원 > 가. 인건비 : 2,669백만원(30명×88.97백만원) 나. 운영비 : 691백만원 다. 연구장비 교체 : 750백만원 라. 외부위탁 : 470백만원	직업환경 연구원 5,677	< 직업환경연구원 5,677백만원 > 증 1,097백만원 가. 인건비 : 2,866백만원(30명×95.53백만원) 나. 운영비 : 691백만원 다. 연구장비 교체 : 1,150백만원 라. 외부위탁 : 970백만원
케어센터 3,329	< 케어센터 3,329백만원 > 가. 경기케어 : 1,913백만원 - 수입 : 1,044백만원(100명×0.87백만원×12개월) - 지출 : 2,957백만원 • 인건비 : 2,266백만원(48명×47.21백만원) • 운영비 : 691백만원 나. 태백케어 : 1,416백만원 - 수입 : 288백만원(1인실 10명×0.424백만원×12월+ 2인실 70명×0.283백만원×12월) - 지출 : 1,704백만원 • 인건비 : 1,283백만원(29명×44.24백만원) • 운영비 : 421백만원	케어센터 3,479	< 케어센터 3,479백만원 > 증 150백만원 가. 경기케어 : 1,961백만원 - 수입 : 1,091백만원(83명×1.31백만원×12개월) - 지출 : 3,052백만원 • 인건비 : 2,346백만원(48명×48.88백만원) • 운영비 : 706백만원 나. 태백케어 : 1,518백만원 - 수입 : 241백만원(1인실 39명×0.424백만원×12월+ 2인실 5명×0.316백만원×12월) - 지출 : 1,759백만원 • 인건비 : 1,328백만원(29명×45.79백만원) • 운영비 : 431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산재보험 신속성(건)	목표	신규	신규	신규	154,485	158,954	최근 3개년('23~'25년*) 처리건 중 6개월 이내 처리건의 평균건수에서 3% 증가를 목표 설정 * '25년 산출된 값(가정)을 적용하여 '26년 목표치 설정('25년 실적 반영 시 '26년 목표치 변경 가능	당해연도 산재신 청서 처리건 중 6 개월 이내 처리건 수의 합 *당해연도 1.1.~ 1231. 까지 처리된 산재 신청서 중 6개월 (접수일 ~ 처리일) 이내 처리건수의 합(건)으로 함	근로복지공단 전산자료	
	실적	신규	신규	153,085	-	-				
	달성도	-	-	-	-	-				

* '25년 실적은 '26.1월말 집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재활공학연구소)

2022	- 보조기 공급건수 : 10,622건, 연구과제 수행실적 : 62건 - 국가공인 품질관리 시험품목 건수 : 176건
2023	- 보조기 공급건수 : 10,573건, 연구과제 수행실적 : 61건 - 국가공인 품질관리 시험품목 건수 : 190건
2024	- 보조기 공급건수 : 10,622건, 연구과제 수행실적 : 58건 - 국가공인 품질관리 시험품목 건수 : 188건
2025	- 보조기 공급건수 : 10,572건, 연구과제 수행실적 : 53건 - 국가공인 품질관리 시험품목 건수 : 103건

- (직업환경연구원)

2022	- 직업성폐질환 연구 6건, 진폐사망여부자문 124건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398건
2023	- 직업성폐질환 연구 7건, 진폐사망여부자문 97건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450건
2024	- 직업성폐질환 연구 10건, 진폐사망여부자문 94건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277건
2025	- 직업성폐질환 연구 9건, 진폐사망여부자문 64건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170건

- (케어센터)

2022	- 자립능력 향상프로그램 및 취미교실 24개 운영(경기 9개, 태백 15개)
2023	- 자립능력 향상프로그램 및 취미교실 30개 운영(경기 13개, 태백 17개)
2024	- 자립능력 향상프로그램 및 취미교실 30개 운영(경기 14개, 태백 16개)
2025	- 자립능력 향상프로그램 및 취미교실 35개 운영(경기 16개, 태백 19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재활공학연구소) 산재보험시설로서 공공성 및 연구기능 강화를 통하여 첨단 재활 보조기기 제작을 위한 기술력 확보
 - 원직복귀를 위한 직무지원 재활보조기구 공급을 확대하여 직업복귀율 향상 지원
 - 첨단 재활의료장비 연구·개발 및 보급, 재활적응훈련 프로그램 운영
-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질병인정 기준 개발·보급 등 합리적 산재보험 보상체계 구축
 - 호흡기 관련 자문(역학조사) 및 진폐 사망 자문의 전문성 강화
 - 기초연구(발병기전연구) 실험 및 임상연구 과제 수행
- (케어센터) 중증, 고령의 산재장해인의 안정적인 삶 유지를 통한 보험사각지대 해소 및 입소자 가족의 간병문제 해결을 통한 경제활동 참여로 고용창출 효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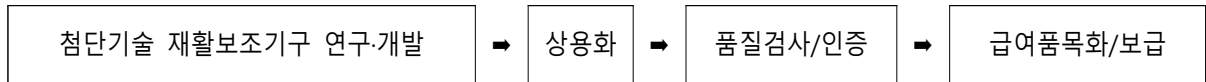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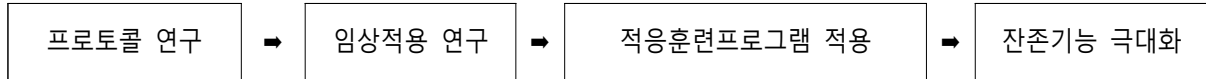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재활공학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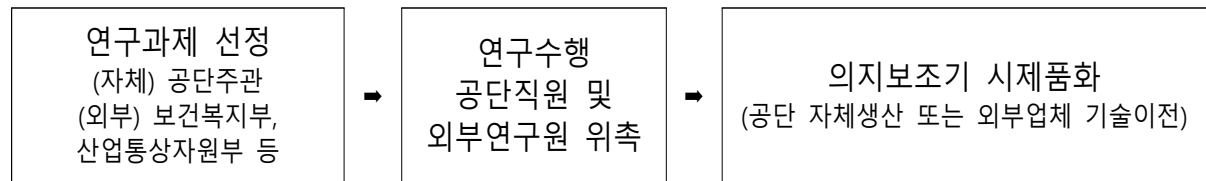
- 재활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



- 선진 과학적 재활치료/훈련 기술 연구 및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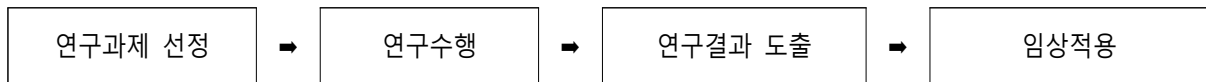


- 외부 위탁연구용역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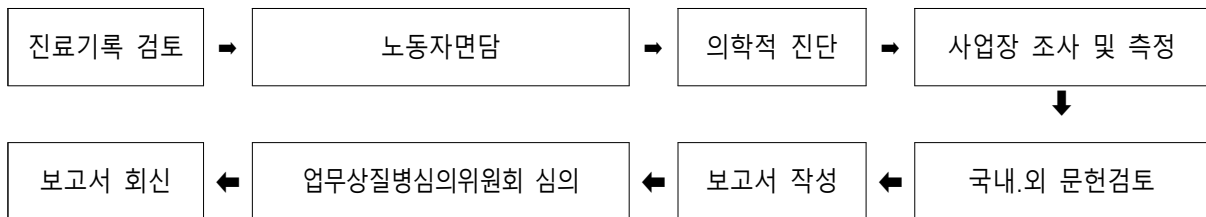


[직업환경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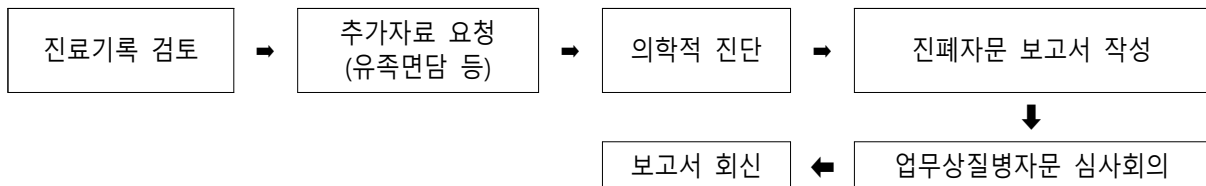
- 연구과제 수행



- 업무관련성 역학조사



- 진폐에 따른 사망여부 자문



[케어센터]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사항 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사항 없음
- 3) 자체평가
 -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우수'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0,275	-	10,275	10,275	10,275	100.0	100.0	-	-
2023	10,446	-	10,446	10,446	10,446	100.0	100.0	-	-
2024	12,747	-	12,747	12,747	12,717	99.7	99.7	-	30
2025	12,665	-	12,665	12,665	12,665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4) 산재근로자 요양관리(4053-3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업보건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보상정책관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53	351
명칭	산재보험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산재보험 부정수급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의료기관평가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재해 조사판정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출퇴근재해 보호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10,648	9,757	11,526	14,146	14,146	4,389	45.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0,648	10,648	10,648	-	-	9,757	11,526	11,526	11,526	-	-	14,146
· 산재보험부정수급관리	1,165	1,165	1,165	-	-	1,165	1,165	1,165	1,165	-	-	1,165
· 산재보험의료기관평가	258	258	258	-	-	258	258	258	258	-	-	258
· 업무상재해조사판정	3,831	3,831	3,831	-	-	2,940	4,709	4,709	4,709	-	-	12,723
· 출퇴근재해보호지원	5,394	5,394	5,394	-	-	5,394	5,394	5,394	5,394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리) 산재보험 범죄예방 및 적발을 통한 기금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 선량한 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 보호
-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인력·시설·의료서비스 및 요양의 질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하여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의료의 질 제고
- (업무상재해 조사판정) 재해조사의 전문성 강화와 인프라 확충,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 및 산재 신청 지원으로 재해 노동자의 산재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업무상 재해의 신속·공정한 조사, 판정 및 보상 지원

2) 사업개요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리)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이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③ 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진료비나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진료비나 약제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제4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제40조제5항 및 제91조의9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조치비용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진료비나 약제비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

제119조의2(포상금의 지급) 공단은 제8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08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환경노동위원회)
 -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허위·부정수급 방지 시스템의 마련과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 국무총리실 주관의 범정부적 보험급여 분야 부정수급 근절대책 추진
 - 「보험범죄 근절대책」('09. 6.19.)
 - 「보험범죄 근절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10. 1.26.)
 - 「공정사회구현을 위한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11. 1.26.)
 -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 추진성과의 향후 추진방안」('12.12.21.)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제50조(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①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43조제1항제3호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시설·의료서비스나 그 밖에 요양의 질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방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우대하거나 제4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06. 12. 13.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제도 도입 노사정 합의
- '08. 7월.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근거조항 신설(산재보험법 제50조)

(업무상재해 조사판정)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② 근로자를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업무상 재해 결정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및 근로자 입증책임 부담 완화 요구 제기*
- * 국회 입법발의('11.11.1, '12.7.13. 민주당 이미경 의원, '16.10.21.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및 국가인권위원회 산재보험 제도개선 권고('12.5.17.)

※ 업무상질병의 입증책임 관련, 공단이 업무수행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산재보험법 개정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독립성 · 공정성 ·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 '11.12. 업무상질병 판정절차 개선 사항 노사정 합의(산재보험제도개선TF팀)
- * 근로자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조사 강화, 질병판정의 전문성 강화, 전문가 참여확대 등 16개 개선 사항 합의 · 시행
- '13.7.1.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개정 · 시행(유해화학물질 35종 인정기준 추가, 직업성 암 종류 21종 추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질병 추가 등)
- '14.2. 업무상 질병 판정의 전문성 · 공정성 강화를 위한 「업무상질병판정업무 종합개선 대책」 수립 · 추진
- * 재해조사 전문가 양성, 재해조사 업무 인프라 확충 등 20개 과제 선정 · 추진
- '17.2. 업무상질병 판정절차 개선 노사정 회의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추진
- * 현장조사 미참석 신청인에게 조사영상 제공, 질병확인 소위원회 도입 등
- '17.12. 업무상 질병 판정의 전문성 · 공정성 강화를 위한 「업무상질병판정업무 종합개선 대책」 수립 · 추진
- * 현장조사 필요 대상 확대 및 현장조사 매뉴얼 마련, 직업성 암 지침 마련, 본부의 업무상질병 부서 전문성 강화 등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리) '10년 ~ 계속
 - (산재보험 의료기관평가) '08년 ~ 계속
 - (업무상재해 조사판정) '15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664	9,181	10,648	11,526	14,146

- 기타
 -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리) 산재노동자 41만명
 - (산재보험 의료기관평가) 산재보험 의료기관 300개소
 - (업무상재해 조사판정) 산재노동자 18만명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위탁)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및 노동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출연	근로복지공단	14,146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제1항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 (2025) 9,757백만원 → (2026) 14,146백만원, 증 4,389백만원, 증 45.0%

① 산재보험 부정수급관리 : (2025) 1,165백만원 → (2026) 1,165백만원, 전년동

- (요구) 전년동 수준 예산 요구
- (산출) 조사역량 강화 87백만원 + 자문위원회 운영 등 조사업무 지원 237백만원 + 부정수급 예방홍보 활동 374백만원 +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199백만원 + 부대경비 268백만원

②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 (2025) 258백만원 → (2026) 258백만원, 전년동

- (요구) 전년동 수준 예산 요구
- (산출) 평가 전담반 운영 129백만원 + 평가결과 분석 및 평가기준 개발 31백만원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설명회 18백만원 + 현지평가 실시 80백만원

③ 업무상재해조사판정 : (2025) 2,940백만원 → (2026) 12,723백만원, 증 9,783백만원, 증 332.8%

- (요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수당 증액, 재해조사 업무지원 증액, 국선대리인 선임 비용, 업무상질병전담팀 운영, 산재보상 관련 정보공개 예산 신설 요구
- (산출) 재해조사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 114백만원 + 재해조사 위원수당 등 3,274백만원 + 재해조사판정 업무지원 4,322백만원 + 소송비용 1,446백만원 + 국선대리인 선임비용 1,925백만원 + 업무상질병전담팀 운영 360백만원 + 산재보상 관련 정보공개 1,082백만원 + 재해조사 신속처리 디지털업무 지원 200백만원
※ 출퇴근재해보호지원 예산 5,281백만원 폐지 후 수관(기존예산 중 113백만원 감액 후 수관)

④ 출퇴근재해보호지원 : (2025) 5,394백만원 → (2026) 0원, 순감

- (요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업무상재해조사판정 예산으로 통합·이관 요구
- (산출) 출퇴근재해보호지원 예산 5,281백만원 폐지 후 이관(업무상재해조사판정 예산으로 113백만원 감액 후 통합·이관)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리 1,165	< 산재보험 부정수급관리 1,165백만원 > 가. 조사역량 강화 - 보험범죄아카데미 : 6명×2회×500천원 = 6백만원 - 보험조사전문교육 : 2회×5,000천원 = 10백만원 - 조사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 40명×2회×518천원 = 41백만원 - 부정수급 사례집 및 매뉴얼 발간 : 3,000부×5천원 = 15백만원 - 유관기관 협의 : 21명×2회×12월×30천원 = 15백만원 나. 자문위원회 운영 등 조사업무 지원 - 보험조사자문위원회 운영 : 10명×6회×350천원 = 21백만원 - 인센티브 : 104건×500천원 = 52백만원 - 진료기록 등 의학분석 자문수당 : 100건×90천원 = 9백만원 - 가압류 및 전자예금 압류비용 : 40백만원 - 부정수급 채권회수 비용 : 5백만원 - 조사 활동비 : 33명×12월×150천원 = 59백만원 - 부정수급조사장비 등 30백만원 - 부당이득징수금심의협의회 운영 : 21백만원 다. 부정수급 예방홍보 활동 - 홍보포스터 등 제작 : 8백만원 - 신문 캠페인 = 2회×40,000천원 = 80백만원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리 1,165	< 산재보험 부정수급관리 1,165백만원 > 전년동 가. 조사역량 강화 - 보험범죄아카데미 : 6명×2회×500천원 = 6백만원 - 보험조사전문교육 : 2회×5,000천원 = 10백만원 - 조사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 40명×2회×518천원 = 41백만원 - 부정수급 사례집 및 매뉴얼 발간 : 3,000부×5천원 = 15백만원 - 유관기관 협의 : 21명×2회×12월×30천원 = 15백만원 나. 자문위원회 운영 등 조사업무 지원 - 보험조사자문위원회 운영 : 10명×6회×350천원 = 21백만원 - 인센티브 : 104건×500천원 = 52백만원 - 진료기록 등 의학분석 자문수당 : 100건×90천원 = 9백만원 - 가압류 및 전자예금 압류비용 : 40백만원 - 부정수급 채권회수 비용 : 5백만원 - 조사 활동비 : 33명×12월×150천원 = 59백만원 - 부정수급조사장비 등 30백만원 - 부당이득징수금심의협의회 운영 : 21백만원 다. 부정수급 예방홍보 활동 - 홍보포스터 등 제작 : 8백만원 - 신문 캠페인 = 2회×40,000천원 = 80백만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지하철 등 광고 : 2회×8,000천원 = 16백만원 - TV 캠페인 : 18회×10,000천원 = 180백만원 - 포털 네트워크 광고 : 8회×10,000천원 = 80백만원 - 신고강조기간 운영비용 : 2회×5,000천원 = 10백만원 라.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199백만원 마. 부대경비 268백만원(공공요금 제세, 차량 임차료 등)		- 지하철 등 광고 : 2회×8,000천원 = 16백만원 - TV 캠페인 : 18회×10,000천원 = 180백만원 - 포털 네트워크 광고 : 8회×10,000천원 = 80백만원 - 신고강조기간 운영비용 : 2회×5,000천원 = 10백만원 라.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199백만원 마. 부대경비 268백만원(공공요금 제세, 차량 임차료 등)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258	<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258백만원 > 가. 평가 전담반 운영 : 20명 × 14개소 × 460천원 = 129백만원 나. 평가결과 분석 및 평가기준 개발 : 1회 × 31백만원 = 31백만원 다.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설명회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설명회 10백만원 + 우수기관 배너 8백만원 = 18백만원 라. 현지평가 실시 : 교통비 66백만원 + 사무비용 14백만원 = 80백만원 - 교통비 3명×280개소×79천원 = 66백만원 - 사무비용 14백만원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258	<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258백만원 > 전년동 가. 평가 전담반 운영 : 20명 × 14개소 × 460천원 = 129백만원 나. 평가결과 분석 및 평가기준 개발 : 1회 × 31백만원 = 31백만원 다.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설명회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설명회 10백만원 + 우수기관 배너 8백만원 = 18백만원 라. 현지평가 실시 : 교통비 66백만원 + 사무비용 14백만원 = 80백만원 - 교통비 3명×280개소×79천원 = 66백만원 - 사무비용 14백만원
업무상 재해 조사판정 2,940	< 업무상재해 조사판정 2,940백만원 > 가. 재해조사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 : 127백만원 나. 재해조사업무 인프라 지원 : 400명×1,850천원 = 740백만원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수당 : 2,073백만원 - 본회의 : 1,555회 × 6명 × 200,000원 = 1,866백만원 - 소위원회 : 359회 × 3명 × 90,000원 = 97백만원 - 준상임위원 회의주재수당 : 110백만원	업무상 재해 조사판정 12,723	< 업무상재해 조사판정 12,723백만원 > 증 9,783백만원 가. 재해조사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 : 114백만원 나. 재해조사 위원수당 등 : 3,274백만원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수당 : 2,876백만원 - 구상금심사수당 : 127백만원 - 심사위원회 수당 : 185백만원 - 권익보호담당관 수당 : 86백만원 다. 재해조사판정 업무지원 : 4,322백만원 - 재해조사 업무지원 1,365백만원 - 일반수용비 468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629백만원 - 임차료 1,183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 119백만원 - 여비 534백만원 - 자산취득비 24백만원 라. 소송비용 : 1,446백만원 마. 국선대리인 선임비용 : 1,925백만원 바. 업무상질병전담팀 운영 : 360백만원 사. 산재보상 관련 정보공개 : 1,082백만원 아. 재해조사 신속처리 디지털 업무지원 : 200백만원 ※ 출퇴근재해보호지원 예산 5,281백만원 폐지 후 수관 (△113백만원 후 수관)
출퇴근 재해 보호지원 5,394	< 출퇴근재해 보호지원 5,394백만원 > 가. 출퇴근재해 보호 사업 운영비 : 4,774백만원 - 일반수용비 : 2,843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 629백만원 - 임차료(임차료 및 관리비) : 1,183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전산유지보수) : 119백만원 나. 출퇴근재해 보호 사업 여비 : 593백만원 다. 출퇴근재해 보호 사업 자산취득비 : 27백만원	출퇴근 재해 보호지원 0	< 출퇴근재해 보호지원 0백만원 > 순감 ※ 출퇴근재해보호지원 예산 5,281백만원 폐지 후 업무상재해조사판정으로 통합이관(△113백만원 후 이관)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산재보험 신속성(건)	목표	신규	신규	신규	154,485	158,954	최근 3개년('23~'25년*) 처리건 중 6개월 이내 처리건의 평균건수에서 3% 증가를 목표 설정	당해연도 산재신청서 처리건 중 6개월 이내 처리건 수의 합	근로복지공단 전산자료
	실적	신규	신규	153,085	158,556	-	* '25년 산출된 값(가정)을 적용하여 '26년 목표치 설정('25년 실적 반영 시 '26년 목표치 변경 가능)	*당해연도 1.1.~ 12.31. 까지 처리된 산재신청서 중 6개월(접수일 ~ 처리일) 이내 처리건수의 합(건)으로 함	
	달성도	-	-	-	-	-			

* '25년 실적은 '26.1월말 집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리)

(단위: 건)

구분	조사건수	적발건수
2022	575	302
2023	577	259
2024	592	336
2025	722	382

-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2022	• 의료기관 평가실시 : 현지평가 299개소, 서면평가 232개소 - 평가대상 : 현지(재활인증병원, 진료 실적인 높은 의료기관), 서면(진료실적 없거나 저조한 의료기관) - 평가기준 : 현지(9개 영역 22개 부분, 재활인증37개, 일반의료기관35개 항목), 서면(진료실적에 따른 기여도) - 평가내용 : 현지(기반의 적정성, 기록의 충실성, 과정·요양의 적정성 등), 서면(진료비 청구실적) - 평가결과 : 평균점수 84.3점(21년(75.2점) 대비 9.1점 상승) ○ 우대의료기관: 30개소(최우수 15개소, 우수 15개소) ○ 하위의료기관: 14개소(22년도에 한해 행정처분 유예) ○ 지정취소: 80개소
2023	• 의료기관 평가실시 : 현지평가 305개소, 서면평가 307개소 - 평가대상 : 현지(재활인증병원, 진료 실적인 높은 의료기관), 서면(진료실적 없거나 저조한 의료기관) - 평가기준 : 현지(9개 영역 22개 부분, 재활인증34개, 일반의료기관27개 항목), 서면(진료실적에 따른 기여도) - 평가내용 : 현지(기반의 적정성, 기록의 충실성, 과정·요양의 적정성 등), 서면(진료비 청구실적) - 평가결과 : 현지(평균점수 83.1점), 서면(94개소 지정취소) ○ 우대의료기관: 30개소(최우수 15개소, 우수 15개소), ○ 하위의료기관: 14개소(개선명령 14개소)
2024	• 의료기관 평가실시 : 현지평가 322개소, 서면평가 39개소 - 평가대상 : 현지(요양적정성이 낮은 의료기관), 서면(진료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의료기관) - 평가기준 : 현지(8개 영역 22개 부분, 일반의료기관35개 항목), 서면(진료실적에 따른 기여도) - 평가내용 : 현지(기반의 적정성, 기록의 충실성, 과정·요양의 적정성 등), 서면(폐업여부 확인) - 평가결과 : 현지(평균점수 70.9점), 서면(39개소 지정취소) ○ 우대의료기관: 32개소(최우수 16개소, 우수 16개소), ○ 하위의료기관: 14개소(개선명령 14개소)

2025	• 의료기관 평가실시 : 현지평가 334개소 - 평가대상 : 평가결과 활용성 높은 의료기관, 평가희망 의료기관 - 평가기간 : '25. 8월 ~ 9월 - 평가기준 : 8개 영역 23개 항목 - 평가내용 : 기반의 적정성, 기록의 충실성, 과정·요양의 적정성 등 - 평가결과: 평균점수 79.1점 ○ 우대의료기관: 34개소(최우수 17개소, 우수 17개소), ○ 하위의료기관: 15개소(개선명령 15개소)
------	--

- (업무상재해 조사판정)

○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 현황

(단위: 명, %)

년도	구분	처리건수	승인	승인율	불승인	불승인율
2022	질병	28,796	18,043	62.7	10,753	37.3
	사고	112,740	109,125	96.8	3,615	3.2
	출퇴근	9,326	8,815	94.5	511	5.5
	합계	150,862	135,983	90.1	14,879	9.9
2023	질병	31,666	18,333	57.9	13,333	42.1
	사고	119,529	115,535	96.7	3,994	3.3
	출퇴근	11,752	11,097	94.4	655	5.6
	합계	162,947	144,965	89.0	17,982	11.0
2024	질병	38,219	21,827	57.1	16,392	42.9
	사고	122,520	117,802	96.1	4,718	3.9
	출퇴근	12,864	12,124	94.2	740	5.8
	합계	173,603	151,753	87.4	21,850	12.6
2025	질병	50,946	28,877	56.7	22,069	43.3
	사고	120,071	115,288	96.0	4,783	4.0
	출퇴근	14,075	13,308	94.6	767	5.4
	합계	185,092	157,473	85.1	27,619	14.9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리)

- 연 평균 400억원 이상의 기금손실 방지
- 허위·부정하게 지급된 보험급여 회수를 통하여 보험재정의 건전성 향상
- 부정수급예방 및 홍보를 통하여 부정수급 차단 등 선량한 수급권자 보호

- (산재보험의료기관평가)

- 재활중심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확대로 산재보험 의료전달체계 개선
- 평가결과에 따른 우대 및 제재조치로 의료기관 관리 효율화

- (업무상재해 조사판정)

- 재해조사 전문교육과정 운영으로 재해조사 전문가 양성
- 현장중심의 재해조사 확대로 재해조사업무 전문성 강화 및 업무상재해 판정의 공정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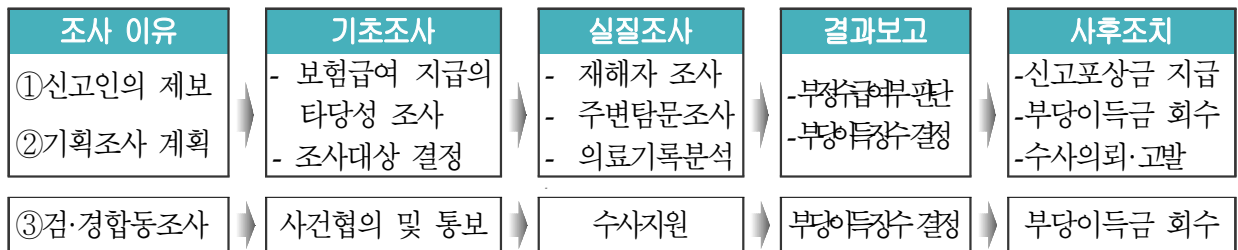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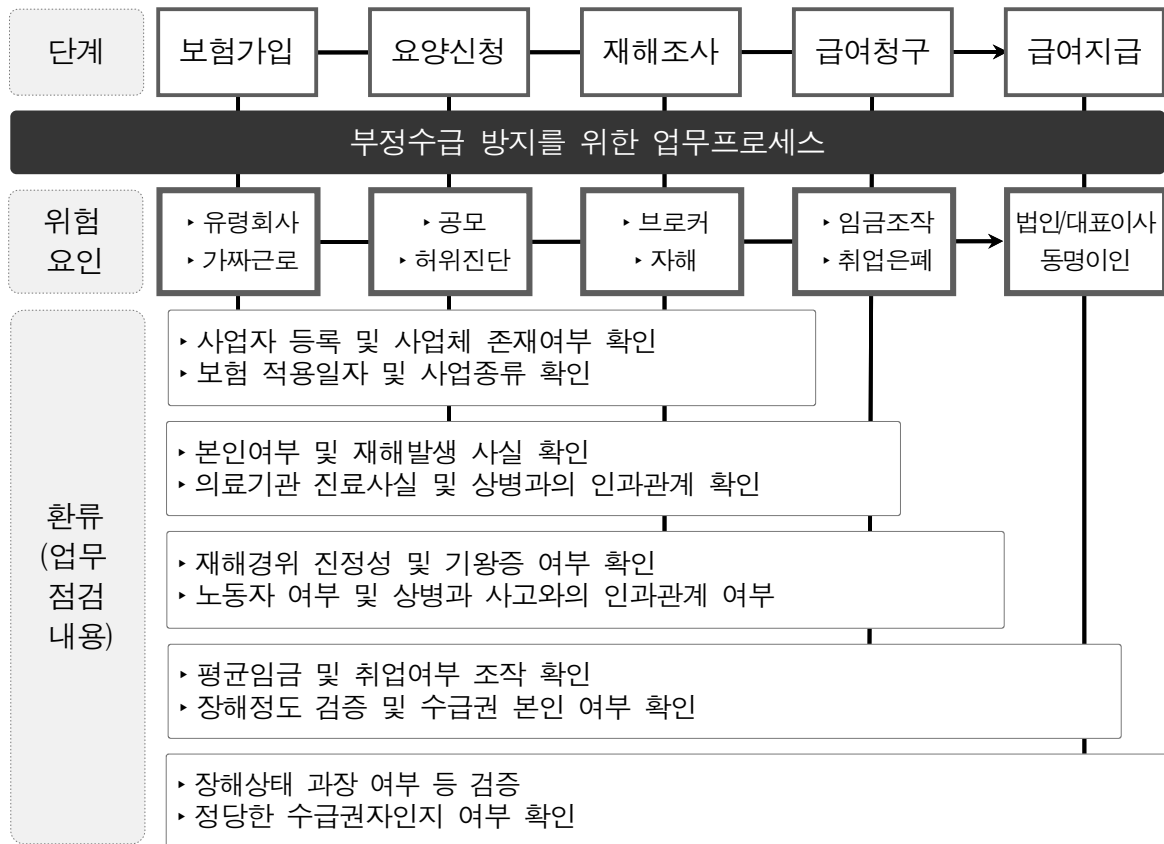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자료제공의 요청), 제117조(사업장등에 대한 조사), 제118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의2(포상금의 지급)
- 부정수급조사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 보험급여 지급 단계별 위험요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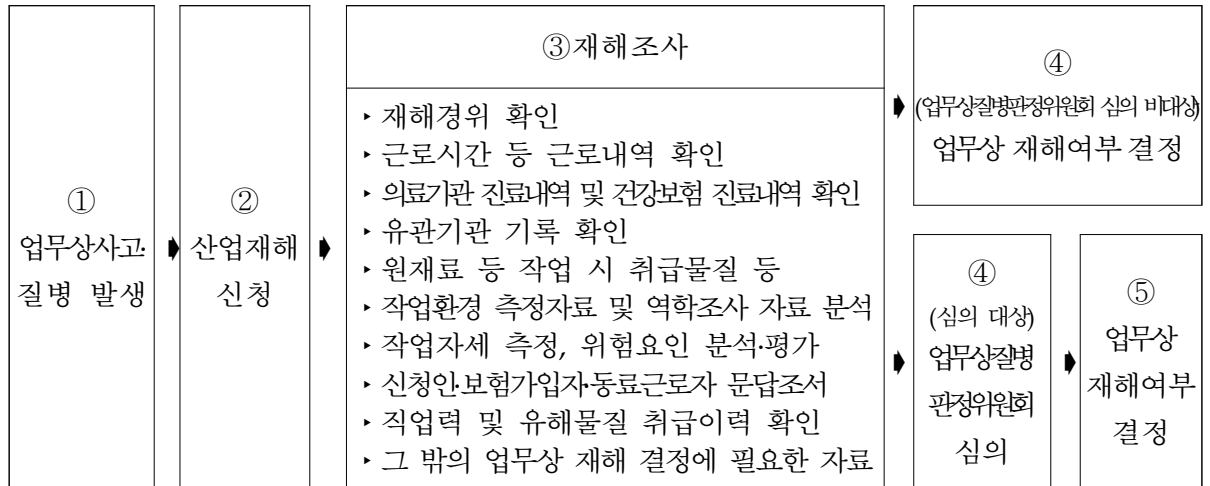


부정수급 요소 발견 및 모험분석을 통하여 필요 시 기획조사로 연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업무상 재해 조사·판정>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율 제고방안 마련 필요
 - 취약계층 국선대리인 선임사업 관련 근거법률 개정 필요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사항 없음
- 3) 자체평가
 -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보통'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9,664	-	9,664	9,664	9,663	100.0	100.0	-	1
2023	9,181	-	9,181	9,181	9,181	100.0	100.0	-	-
2024	9,757	891	10,648	10,648	10,648	100.0	100.0	-	-
2025	9,757	1,769	11,526	11,526	11,526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집행잔액 1백만원 불용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업무상질병 신청 증가에 따라 판정 심의 건수도 증가되어 판정위원 수당 부족액 891백만원 기금변경
2025	- 업무상질병 신청 증가에 따라 판정 심의 건수도 증가되어 판정위원 수당 부족액 1,769백만원 기금변경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기재부협의 (2025.12.18.)	업무상재해 조사판정	350	02	1,769	업무상질병 신청 증가에 따른 판정위원 수당 부족으로 1,769백만원 기금변경
합 계				1,769	

사 업 명						
(5) 산재병원지원(4054-3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업보건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보상정책관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54	350
명칭	산재보험	산재의료사업지원	산재병원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산재병원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보건 보상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산재병원지원	32,734	79,654	79,654	122,788	130,186	50,532	63.4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32,762	32,762	32,734	- [1,000]	28	79,654	79,654	79,654 [80,654]	79,654	443	-	130,186
· 노후시설개선	1,686	1,686	1,686	-	-	3,472	3,472	3,472	3,472	443	-	12,008
· 장비현대화	3,784	3,784	3,784	-	-	3,812	3,812	3,812	3,812	-	-	11,010
· 재활전문센터	6,938	6,938	6,938	- [1,000]	-	4,228	4,228	4,228 [5,228]	4,228	-	-	4,228
· 산재병원본부	4,473	4,473	4,473	-	-	4,518	4,518	4,518	4,518	-	-	4,315
· 울산병원신축	15,681	15,681	15,681	-	-	63,624	63,624	63,624	63,624	-	-	78,077
· 전북권산재병원	200	200	172	-	28	-	-	-	-	-	-	-
· 울산병원 초기개원 운영비	-	-	-	-	-	-	-	-	-	-	-	19,975
· 차세대EMR 구축	-	-	-	-	-	-	-	-	-	-	-	373
· 산재병원 경영개선 및 특화연구	-	-	-	-	-	-	-	-	-	-	-	2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노후시설 개선)**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산재병원 노후시설 개·보수로 안전하고 쾌적한 요양환경 구축
- **(장비현대화)** 내구연한이 경과한 의료장비 교체를 통해 정확한 진단 등 산재근로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공
- **(재활전문센터)** 민간이 기피하는 등 낮은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산재근로자 재활치료 골든타임에 집중재활프로그램 제공, 신체기능 손실 최소화를 통한 조기 직업복귀 지원 등 산재의료재활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7개 재활전문센터의 운영비 지원
- **(산재병원본부)** 산재병원 운영재원은 자체 진료수익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비수익 기관으로 산재의료 정책 수립 및 경영 지원하는 산재병원본부의 운영비 지원
- **(울산병원 초기개원 운영비)** 울산병원 초기정상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초기 고정비 지출에 따른 경영손실 등에 대한 예산 지원
- **(차세대 EMR 구축)** 환자의 안전과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후화된 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지원
- **(산재병원 경영개선 및 특화 연구)** 산재병원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경영수지 개선과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보험자병원으로써의 특화 전략 연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제11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1.27., 2015.1.20.>

1.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4.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5.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 5의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요양 및 재활
 - 5의3.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검정 및 보급
 - 5의4.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
 - 5의5.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
 6.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제5호·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에 딸린 사업
- ② 공단은 제1항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2015.1.20.>
-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보험급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27.>
- ④ 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0.1.27.>
-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4. 07. 고용노동부 『재활전문산재병원 건립계획』
- '06. 03. 고용노동부 『산재환자 요양과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한 산재의료관리원 역할강화방안('06~'10년)』
- '06. 05. 고용노동부 『대구재활전문병원 건립추진계획안』
- '11. 12. 고용노동부 『산재병원 중장기 발전방안』
- '12. 4. 고용노동부 「제3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12~'14)」
- '13. 9. 고용노동부 『산재병원 중장기 발전방안』
- '15. 7. 고용노동부 『산재병원 중장기 발전방안 세부실행계획』
- '06 ~ '22 고용노동부 『제1~5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
- '18. 4. 고용노동부 『산재병원 중장기('18~'22) 발전방안』
- '21. 11. 근로복지공단 『의료사업 중장기('22~'26년) 발전방안 수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2,016억원(울산병원 건립)
- 사업기간 : '9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4,820	32,431	32,762	79,654	130,186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위탁)
- 사업 수혜자 : 산재노동자 및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출연	근로복지공단	130,186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제3항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산재병원지원 : (2025) 79,654백만원 → (2026 계획) 130,186백만원, 증 50,532백만원, 증 63.4%
- ① 노후시설 개보수 : (2025) 3,472백만원 → (2026 계획) 12,008백만원, 증 8,536백만원, 증 245.9%
- (요구) 동해·순천병원 연차별 공사비, 창원병원 노후시설공사 설계비 요구
 - (산출) 동해병원 노후안전시설 개선공사 8,855백만원 + 순천병원 응급대기시설 개선공사 3,027백만원 + 창원병원 노후시설공사 설계비 126백만원 = 12,008백만원
- ② 장비현대화 : (2025) 3,812백만원 → (2026 계획) 11,010백만원, 증 7,198백만원, 증 188.8%
- (요구) 의료장비 42점, 재활장비 2점 교체 예산 요구
 - (산출) 의료장비(42점 × 257.6백만원) + 재활장비(2점 × 95백만원) = 11,010백만원
- ③ 재활전문센터 : (2025) 4,228백만원 → (2026 계획) 4,228백만원, 전년동
- (요구) 산재병원 7개 재활전문센터 운영비 전년동 수준 요구
 - (산출) 지출 21,944백만원 - 수입 14,386백만원 - 자체충당 3,330백만원 = 4,228백만원
- ④ 산재병원본부 : (2025) 4,518백만원 → (2026 계획) 4,315백만원, 감 203백만원, 감 4.5%
- (요구) 산재병원본부 운영비 전년 수준에서 일부 절감 반영하여 요구
 - (산출) 전년수준 4,518백만원 - 경상경비 절감 203백만원 = 4,315백만원
- ⑤ 울산병원 건립 : (2025) 63,624백만원 → (2026 계획) 78,077백만원, 증 14,453백만원, 증 22.7%
- (요구) 울산병원 건립 7차년도 공사비 반영
 - (산출) 건설비 40,727백만원 + 시설부대경비 1,594백만원 + 기타투자비 35,756백만원 = 78,077백만원
- ⑥ 울산병원 초기개원 운영비 : (2025) 0원 → (2026 계획) 19,975백만원, 순증
- (요구) 울산병원 초기 수지차 보전 등 운영비 요구
 - (산출) 지방세 2,544백만원 + 응급대기시설 3,060백만원 + 초기 운영비 지원 14,371백만원 = 19,975백만원
- ⑦ 차세대 EMR 구축 : (2025) 0원 → (2026 계획) 373백만원, 순증
- (요구) 차세대 EMR 구축 BPR/ISP 비용 요구

- (산출) 정보시스템 구축 BPR/ISP 영역비용 373백만원

⑧ 산재병원 경영개선 및 특화 연구 : (2025) 0원 → (2026 계획) 200백만원, 순증

- (요구) 산재병원 경영개선 및 특화연구 비용 요구

- (산출) 연구비용 200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노후시설 개보수 3,472	< 노후시설 개보수 3,472백만원 > 가. 동해병원 노후안전시설 개선공사 2,072백만원(2차년도) 나. 순천병원 응급대기시설 개선공사 1,400백만원(1차년도)	노후시설 개보수 12,008	< 노후시설 개보수 12,008백만원 > 증 8,536백만원 가. 동해병원 노후안전시설 개선공사 8,855백만원(3차년도) 나. 순천병원 응급대기시설 개선공사 3,027백만원(2차년도) 다. 창원병원 노후시설공사 설계비 126백만원
장비 현대화 3,812	< 장비현대화 3,812백만원 > 가. 의료장비 3,812백만원(8점 × 476.5백만원)	장비 현대화 11,010	< 장비현대화 11,010백만원 > 증 7,198백만원 가. 의료장비 10,820백만원(42점 × 257.6백만원) 나. 재활장비 190(2점 × 95백만원)
재활전문 센터 4,228	< 재활전문센터 4,228백만원 > 가. 수입 12,077백만원 · '22년 결산액 × 수가인상률 (2.6) ³ 나. 지출 19,215백만원 · '22년 결산액 × 물가인상률(3.0) ³ 다. 자체충당 2,903 · 기금지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자체 진료수입으로 충당	재활전문 센터 4,228	< 재활전문센터 4,228백만원 > 전년동 가. 수입 14,386백만원 · '23년 결산액 × 수가인상률 (2.1) ³ 나. 지출 21,944백만원 · '23년 결산액 × 물가인상률(3.4) ³ 다. 자체충당 3,330 · 기금지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자체 진료수입으로 충당
산재병원 본부 4,518	< 산재병원본부 4,518백만원 > 가. (운영비) '23년 결산 기준 운영비 반영	산재병원 본부 4,315	< 산재병원본부 4,315백만원 > △203백만원 가. (운영비) '24년 결산 기준 운영비 반영
울산병원 건립 63,624	< 울산병원 건립 63,624백만원 > 가. '25년 6차년도 공사비 63,624백만원 · 58,540백만원(건설비) + 5,804백만원(정보시스템 구축)	울산병원 건립 78,077	< 울산병원 건립 78,077백만원 > 증 14,453백만원 가. '26년 7차년도 공사비 78,077백만원 · 40,727백만원(건설비) + 1,594백만원(시설부대경비) + 35,756백만원(기타투자비)
울산병원 초기개원 운영비 0	-	울산병원 초기개원 운영비 19,975	< 울산병원 초기개원 운영비 19,975백만원 > 순증 가. 지방세 2,544백만원 나. 응급대기시설 3,060백만원 다. 초기 운영비 지원 14,371백만원
차세대 EMR 구축 0	-	차세대 EMR 구축 373	< 울산병원 건립 373백만원 > 순증 가. 차세대 EMR 구축 BPR/ISP 비용 373백만원
산재병원 경영개선 및 특화연구 0	-	산재병원 경영개선 및 특화연구 200	< 산재병원 경영개선 및 특화 연구 200백만원 > 순증 가. 연구비용 2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산재보험 신속성(건)	목표	신규	신규	신규	154,485	158,954	최근 3개년('23~'25년) 처리건 중 6개월 이내 처리건의 평균건수에서 3% 증가를 목표 설정 * '25년 산출된 값(가정)을 적용하여 '26년 목표치 설정('25년 실적 반영 시 '26년 목표치 변경 가능)	당해연도 산재신 청서 처리건 중 6 개월 이내 처리건 수의 합 *당해연도 1.1.~ 12.31. 까지 처리된 산재 신청서 중 6개월 (접수일 ~ 처리일) 이내 처리건수의 합(건)으로 합	근로복지공단 전산자료
	실적	신규	신규	153,085	-	-			
	달성도	-	-	-	-	-			

* '25년 실적은 '26.1월말 집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진료실적: 입원 555,198연명, 외래 1,191,056연명 ○ 산재환자: 입원 469,277연명, 외래 620,654연명 ○ 전문재활: 집중재활 645,980건, 특수·심리재활: 79,650건, 수중재활: 33,881건
2023	○ 진료실적: 입원 637,569연명, 외래 1,146,341연명 ○ 산재환자: 입원 554,142연명, 외래 668,930연명 ○ 전문재활: 집중재활 748,099건, 특수·심리재활: 104,827건, 수중재활: 31,809건
2024	○ 진료실적: 입원 603,447연명, 외래 1,118,244연명 ○ 산재환자: 입원 488,878연명, 외래 636,181연명 ○ 전문재활: 집중재활 632,069건, 특수·심리재활: 126,544건, 수중재활: 25,398건
2025년	○ 진료실적: 입원 623,443명, 외래 1,121,070명 ○ 산재환자: 입원 488,951명, 외래 645,478명 ○ 전문재활: 집중재활 796,883건, 특수·심리재활: 153,799건, 수중재활: 26,372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시설장비 현대화와 전문재활서비스를 통해 요양초기부터 직업복귀까지 산재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통합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촉진
 - 노후 안전시설 개보수를 통해 산재근로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쾌적한 요양환경 구축 및 안전사고 예방
 - 내구연한 경과 의료장비 교체 및 최신장비 도입으로 의료·재활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치료효과 제고
- 산재의료재활치료기법 및 프로그램 개발, 산재의료재활 표준화 및 민간병원 보급 확대
 - 신체기능 회복 이후 직장복귀·일상생활 지원 등 단계별 재활프로그램으로 직업 복귀에 기여
- 산재의료재활 사각지대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울산지역 공공병원 부재 해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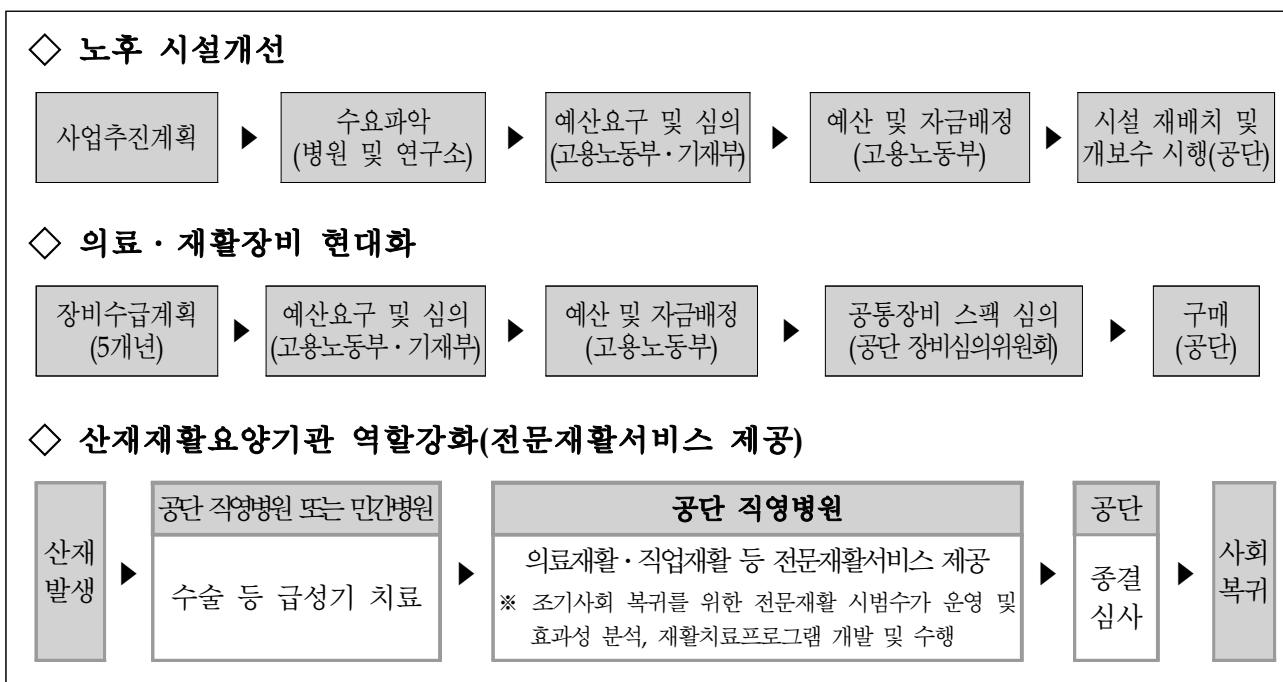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020~2026	299	144	157	636	781	-	2,016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직영병원의 의료장비 노후화에 대한 대책 필요
 - 지역 산재의료 공백 해소 목적으로 산재전문병원 및 외래재활센터 추가 설치 요구
 - 울산병원 건립 사업 예산 실집행 부진으로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공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사항 없음
- 3) 자체평가
 -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보통'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54,820	-	54,820	54,820	54,820	100.0	100.0	-	-
2023	32,431	-	32,431	32,431	32,421	100.0	100.0	-	10
2024	32,762	-	32,762	32,762	32,734	99.9	99.9	-	28
2025	79,654	-	79,654	79,654	79,654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울산병원 설계 등 지연으로 22,227백만원 이월(공단 자체이월) - 울산병원 설계비 집행 잔액 1,427백만원 불용
2023	- 울산병원 정보시스템 구축 BPR/ISP 수립 용역 낙찰 차액 10백만원 불용
2024	- 외래재활센터(경북 구미시) 설치 공사비 10억원 이월(공단 자체이월) - 전북권산재병원 신축 기초조사 연구용역 낙찰 차액 28백만원 불용
2025	- 순천병원 응급대기시설 개선 공사 지연으로 443백만원 이월(공단 자체이월)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6) 산재보험 시설건립(4055-3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업보건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보상정책관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55	350
명칭	산재보험	산재보험시설	산재보험시설건립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산재보험 시설건립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보건 보상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중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산재보험 시설건립	7,023	7,253	7,253	3,119	3,309	△3,944	△54.4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7,023	14,062	14,062	- [3,000]	-	7,253	7,253	10,253	9,535	-	- [718]	3,309
· 경인본부 건립	6,183	13,222	13,222	- [3,000]	-	6,119	6,119	9,119	8,401	-	- [718]	-
· 자체청사 개보수	840	840	840	-	-	974	974	974	974	-	-	1,672
· 창원지사 재건축	-	-	-	-	-	60	60	60	60	-	-	1,117
· 서울합동청사 타당성 조사	-	-	-	-	-	100	100	100	100	-	-	150
· 특별민원실 설치	-	-	-	-	-	-	-	-	-	-	-	180
· (구)대구북부지청 청사 리모델링	-	-	-	-	-	-	-	-	-	-	-	19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산재보험시설건립)

-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을 설치(신축, 증축)하여 업무수행을 통해 산재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받기 위한 물리적 공간 마련 지원

- (자체청사 개보수)

-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 내 상주 임직원,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물의 보수, 장비 교체 등 시설장비 보강 지원
- 개정·강화되는 관련법령(환경, 에너지 등)에 즉각 대응하여 정부 정책 이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6조 (기금의 용도)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1. 27.>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한다.)에 대한 출연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8.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8 이상을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 ③ 제1항제7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고지·수납·채납 업무를 말한다)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8. 6. 12.>

② 추진경위

- '00. 12. 고용노동부 및 산하단체 합동청사 건립계획
- '05. 01. 고용노동부 및 산하단체 합동청사 건립계획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148	17,714	7,023	7,253	3,309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산업재해노동자, 산재보험가입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출연	근로복지공단	3,309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제1항 제3호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산재보험 시설건립 : (2025) 7,023백만원 → (2026 계획) 3,309백만원, 감 3,944백만원, 감 54.4%

① 경인지역본부 건립 : (2025) 6,119백만원 → (2026 계획) 0백만원, 순감

- (요구) '25년 경인지역본부 건립 사업 완료에 따른 순감
- (산출) 완료소요 △6,119백만원 반영

② 서울합동청사 재건축 타당성 조사용역 : (2025) 100백만원 → (2026 계획) 150백만원, 증 50백만원, 증 50.0%

- (요구) 서울합동청사 재건축 관련 2차 조사용역 비용 요구
- (산출) 도시계획시설 결정관련 연구용역 비용 150백만원

③ 창원지사 재건축 : (2025) 60백만원 → (2026 계획) 1,117백만원, 증 1,057백만원, 증 176.2%

- (요구) 창원지사 재건축 2차년도 사업비 요구
- (산출) 설계비 1,097백만원 + 감리비 20백만원 = 1,117백만원

④ 자체청사 개보수 : (2025) 974백만원 → (2026 계획) 1,672백만원, 증 698백만원, 증 71.7%

- (요구) '26년도 자체청사 시설 개보수 공사비용 요구
- (산출) 소화설비 설치공사 712백만원 + 노후전력 개선공사 474백만원 + 전력공급 선로 및 변압기 이중화 공사 486백만원 = 1,672백만원

⑤ 특별민원실 설치 : (2025) 0백만원 → (2026 계획) 180백만원, 순증

- (요구)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민원실 설치비용 요구
- (산출) 자체청사 특별민원실 10개소 설치비용 180백만원

⑥ (구)대구북부지청 청사 리모델링 : (2025) 0백만원 → (2026 계획) 190백만원, 순증

- (요구) (구)대구북부지청 유휴청사 활용을 위한 청사 리모델링 비용 요구
- (산출) 설계비용 등 190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경인본부 건립 6,119	< 경인지역본부 건립 6,119백만원 > 가. 공사비 : 31,357백만원 × 17.3% = 5,436백만원 나. 감리비 등 : 3,199백만원 × 21.4% = 683백만원	경인본부 건립 0	< 경인지역본부 건립 0백만원 > 순감
서울합동 청사 재건축 타당성 조사용역 100	< 서울합동청사 재건축 타당성 조사용역 100백만원 > 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100백만원	서울합동 청사 재건축 타당성 조사용역 150	< 서울합동청사 재건축 타당성 조사용역 150백만원 > 증 50백만원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관련 연구용역 150백만원
창원지사 재건축 60	< 창원지사 재건축 60백만원 > 가. 설계비 1,157백만원 × 5.2% = 60백만원	창원지사 재건축 60	< 창원지사 재건축 1,117백만원 > 증 1,057백만원 가. 설계비 1,157백만원 × 94.8% = 1,097백만원 나. 감리비 1,510백만원 × 1.3% = 20백만원
자체청사 개보수 974	< 자체청사 개보수 974백만원 > 가. 스마트산재보상플랫폼 구축관련 전력증설 836백만원 나. 방문민원실 설치 2개소 138백만원	자체청사 개보수 1,672	< 자체청사 개보수 1,672백만원 > 증 698백만원 가. (청주지사, 제주지사) 소화설비(스프링클러) 설치공사 712백만원 나. (서울남부지사, 인천북부지사, 익산지사) 노후전력 개선공사 474백만원 다. (공단본부) 전력공급 선로 및 변압기 이중화 486백만원
특별 민원실 설치 0	< 특별민원실 설치 0백만원 >	특별 민원실 설치 180	< 특별민원실 설치 180백만원 > 순증 가. 자체청사 특별민원실 10개소 설치비용 180백만원
(구)대구 북부지청 청사 리모델링 0	< (구)대구북부지청 청사 리모델링 0백만원 >	(구)대구 북부지청 청사 리모델링 190	< (구)대구북부지청 청사 리모델링 190백만원 > 순증 가. 설계비용 등 19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산재보험 신속성(건)	목표	신규	신규	신규	154,485	158,954	최근 3개년('23~'25년*) 처리건 중 6개월 이내 처리건의 평균건수에서 3% 증가를 목표 설정 * '25년 산출된 값(가정)을 적용하여 '26년 목표치 설정('25년 실적 반영 시 '26년 목표치 변경 가능)	당해연도 산재신 청서 처리건 중 6 개월 이내 처리건 수의 합 *당해연도 1.1.~ 12.31. 까지 처리된 산재 신청서 중 6개월 (접수일 ~ 처리일) 이내 처리건수의 합(건)으로 합	근로복지공단 전산자료
	실적	신규	신규	153,085	-	-			
	달성도	-	-	-	-	-			

* '25년 실적은 '26.1월말 집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경인지역본부 설계완료 (100%) - 자체청사 개·보수: 서울남부지사 비상발전기 교체, 인재개발원 외벽마감재 개선
2023	- 경인지역본부 공사 계약 및 착공 (12%) - 자체청사 개·보수: 익산지사 냉온수기 교체공사, 인재개발원 코로나 치료센터 복구 완료
2024	- 경인지역본부 공사 진행, 지하층 골조공사 완료 및 지상2층 골조공사 (35%) - 자체청사 개·보수: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및 오수처리시설 개보수 공사 등 완료
2025	- 경인지역본부 공사 완료 - 자체청사 개·보수: 공단본부 노후전력시설 개선공사 및 특별민원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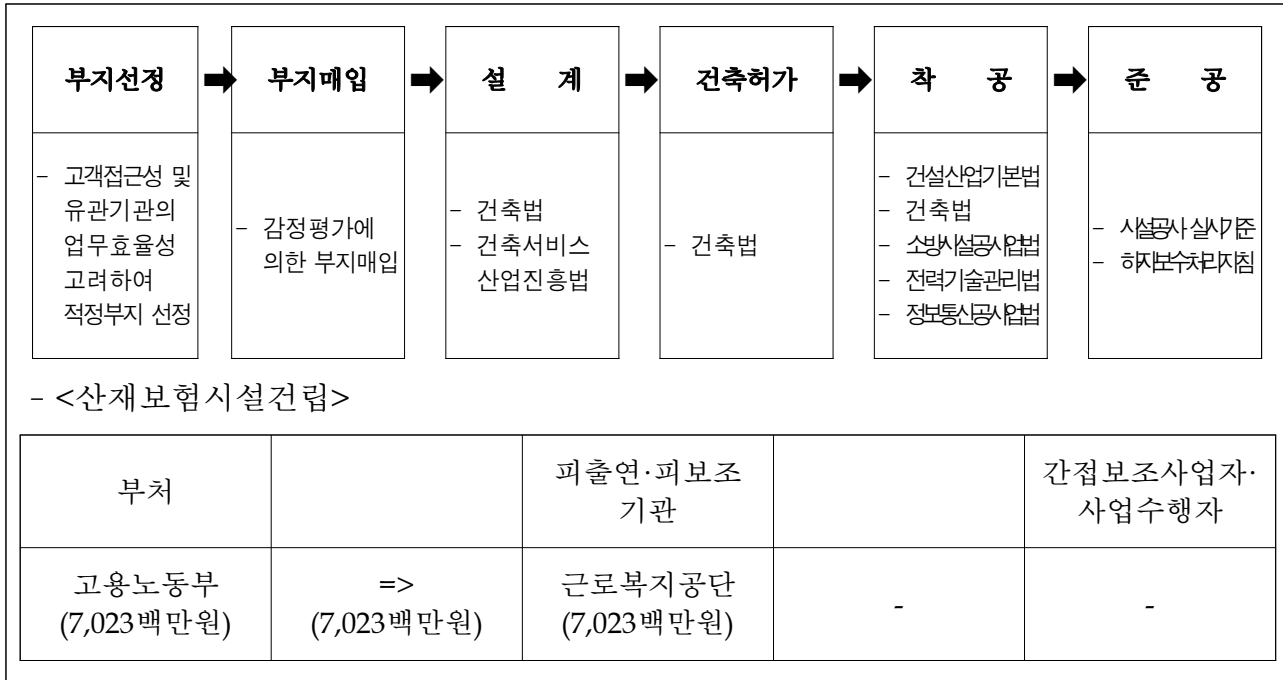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을 설치(신축, 개보수 등)하여 업무수행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산재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받기 위한 업무시설 구축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사항 없음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보통
--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7,148	-	7,148	7,148	7,136	99.8	99.8	-	12
2023	17,714	-	17,714	17,714	17,714	100.0	100.0	-	-
2024	7,023	-	7,023	7,023	7,023	100.0	100.0	-	-
2025	7,253	-	7,253	7,253	7,253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경인지역본부 재건축 관련 설계용역 완료에 따른 완료정산금 일부 불용 (12백만원)
2023	- 경인지역본부 재건축 관련 낙찰차액 및 총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시행주체 자체이월(7,039백만원)
2024	- 경인지역본부 재건축 관련 공정률 순연에 따른 사업시행주체 자체이월(3,000백만원)
2025	- 경인지역본부 재건축 준공에 따른 사후정산금 일부 불용 (718백만원)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7) 산재보험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4057-3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업보건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보상정책관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57	350
명칭	산재보험	산재보험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산재보험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산재보험 정보시스템구축 (정보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보건
		보상정책관
	사업시행주체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산재보험 정보시스템구축 (정보화)	20,059	19,114	19,114	23,671	23,191	4,077	21.3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20,059	20,059	20,059	-	-	19,114	19,114	19,114	19,114	-	-	23,191
· 산재마루시스템 개편 등 고도화	-	-	-	-	-	-	-	-	-	-	-	768
· 전산장비 유지관리	9,665	9,665	9,665	-	-	9,606	9,606	9,606	9,606	-	-	9,606
· 정보시스템운영지원	2,094	2,094	2,094	-	-	1,952	1,952	1,952	1,952	-	-	2,399
· 스마트산재보상 시스템 구축	7,009	7,009	7,009	-	-	5,159	5,159	5,159	5,159	-	-	4,218
· 산재보험전산망 재해복 구센터 구축 ISP	344	344	344	-	-	-	-	-	-	-	-	-
· 산재보험료율시스템 고도화	598	598	598	-	-	-	-	-	-	-	-	-
· PDS솔루션 도입	349	349	349	-	-	-	-	-	-	-	-	-
· 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 해복구센터 구축	-	-	-	-	-	2,240	2,240	2,240	2,240	-	-	6,200
· 소득기반 산재·고용보험 정보시스템 구축 BPR/ISP	-	-	-	-	-	157	157	157	157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산재보험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정보 서비스 제공
- 산재보험법 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 산재보험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연속성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1. 27.>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8.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② 추진경위

- '10년 한국산재의료원 통합에 따른 10개 소속병원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 '11년 고용·산재보험 부과고지 및 근로자 고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13년 산재병원 의료정보시스템 재구축
- '13년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 망분리 구축
- '14년공단본부 울산이전에 따른 전산센터 지방이전 구축
- '16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중소기업사업주로 산재보험 적용 확대
- '16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관리 업무이관 관련 정보시스템 증설
- '17년 소속병원 의료정보시스템 연차별 재구축 완료
- '18년 고용·산재보험 재구축을 위한 업무재설계(BPR) 연구용역 추진
- '18년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도입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 '19년 고용·산재보험료 통합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 '20년 대국민 판례정보시스템 구축
- '20년 통합인사급여시스템 고도화 구축
- '21년 과학적 행정실현을 위한 데이터분석시스템 재구축
- '23년 산재보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확인시스템 구축 및 산재급여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24년 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021	15,047	20,059	19,114	23,191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근로자,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출연	근로복지공단	23,191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산재보험 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 (2025) 19,114백만원 → (2026 계획) 23,191백만원, 증 4,077백만원, 증 21.3%

① 산재마루 시스템 개편 등 고도화 : (2025) 0백만원 → (2026 계획) 768백만원, 순증

- (요구) 산재재심사 재결서 대외공개 즉시 공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산재마루 시스템 고도화 예산 요구
- (산출) 개발용역비 484백만원 + 장비도입비 284백만원 = 768백만원

② 전산장비 유지관리 : (2025) 9,606백만원 → (2026 계획) 9,606백만원, 전년동

- (요구) 전산장비 유지관리 비용 전년도 수준 요구
- (산출) ① 시스템 유지관리 = 상용SW 유지관리 1,924백만원 + HW 유지관리 1,992백만원 + 기타설비 유지관리 142백만원 + 사무용 SW 사용료 781백만원 + 개발 SW 유지관리 2,378백만원 = 7,216백만원
- ② 노후장비 교체 및 증설 2,390백만원

③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 (2025) 1,952백만원 → (2026 계획) 2,399백만원, 증 447백만원, 증 22.9%

- (요구) 산재고용보험 토털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증액 등 요구
- (산출) ① 회선사용료 = 고용노동부 통합통신망 974백만원 + 인터넷 유관기관 통신회선 268백만원 + 우편요금 2백만원 + 산재고용보험 토털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450백만원 = 1,694백만원
- ② 기타운영지원 = 일반수용비 245백만원 + 특근매식비 23백만원 + 일숙직비 4백만원 + 기타운영비 32백만원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분담금 301백만원 + 여비 83백만원 + 관서운영비 17백만원 = 705백만원

④ 스마트산재보상시스템 구축 : (2025) 5,159백만원 → (2026 계획) 4,218백만원, 감 941백만원, 감 18.2%

- (요구) 스마트산재보상시스템 구축 3차년도 사업비 요구
- (산출) 개발용역비 : 4,218백만원

⑤ 국가핵심 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 : (2025) 2,240백만원 → (2026 계획) 6,200백만원, 증 3,960백만원, 증 176.8%

- (요구) 국가핵심 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 2차년도 사업비 요구
- (산출) 장비도입비 : 6,200백만원(산재분담율 50%)

⑥ 소득기반 산재고용보험 정보시스템 구축 BPR/ISP : (2025) 157백만원 → (2026 계획) 0백만원, 순감

- (요구) 완료소요에 따른 순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산재마루 시스템 개편 등 고도화 0	-	산재마루 시스템 개편 등 고도화 768	< 산재마루시스템 개편 등 고도화 768백만원 > 순증 가. 개발용역비 484백만원 나. 장비도입비 284백만원
전산장비 유지관리 9,606	< 전산장비 유지관리 9,606백만원 > 가. 시스템 유지관리 7,216백만원 - 상용SW 유지관리 : 1,924백만원 · 장비도입비(19,244백만원) × 10%(요율) = 1,924백만원 - HW 유지관리 : 1,992백만원 · 장비도입비(28,461백만원) × 7%(요율) = 1,992백만원 - 기타설비 유지관리 : 142백만원 · 장비도입비(2,029백만원) × 7%(요율) = 142백만원 - 사무용SW 사용료 : 781백만원 · {오피스(262천원)+한글(101천원)} × 2,152본 = 781백만원 - 개발SW 유지관리 : 2,378백만원 · 인력(8.86명)×단가(22,364천원)×12개월 = 2,378백만원 나. 노후장비 교체 및 증설 2,390백만원 - 기존임차료 : 2,390백만원	전산장비 유지관리 9,606	< 전산장비 유지관리 9,606백만원 > 전년동 가. 시스템 유지관리 7,216백만원 - 상용SW 유지관리 : 1,924백만원 · 장비도입비(19,244백만원) × 10%(요율) = 1,924백만원 - HW 유지관리 : 1,992백만원 · 장비도입비(28,461백만원) × 7%(요율) = 1,992백만원 - 기타설비 유지관리 : 142백만원 · 장비도입비(2,029백만원) × 7%(요율) = 142백만원 - 사무용SW 사용료 : 781백만원 · {오피스(262천원)+한글(101천원)} × 2,152본 = 781백만원 - 개발SW 유지관리 : 2,378백만원 · 인력(8.605명)×단가(23,034천원)×12개월 = 2,378백만원 나. 노후장비 교체 및 증설 2,390백만원 - 기존임차료 : 1,766백만원 - 신규임차료 : 624백만원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1,952	<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1,952백만원 > 가. 회선사용료 : 1,244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 1,244백만원 · 고용노동부 통합통신망(80회선) × 12,179천원 = 974백만원 · 인터넷 유관기관 및 통신회선(22회선) × 12,182천원 = 268백만원 · 우편요금 : 2백만원 나. 기타운영지원 : 708백만원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2,399	<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2,399백만원 > 증 447백만원 가. 회선사용료 : 1,694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 1,694백만원 · 고용노동부 통합통신망(80회선) × 12,179천원 = 974백만원 · 인터넷 유관기관 및 통신회선(22회선) × 12,182천원 = 268백만원 · 우편요금 : 2백만원 · 산재고용보험 토털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 450백만원 나. 기타운영지원 : 705백만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일반수용비 : 245백만원 · 사무용품 구입비(468천원) × 12월 = 6백만원 · 전산소모품 구입비(3,200천원) × 12월 = 39백만원 · 바이러스 백신 사용료 : 82백만원 * PC용 : 단가(21천원) × 수량(1620본) = 34백만원 * 인터넷망 PC용 : 단가(25천원) × 수량(1,620본) = 40백만원 * 서버용 : 단가(351천원) × 수량(22본) = 8백만원 · 패치관리SW 사용료 : 118백만원 * 1 Copy 단가(39,600원) × 수량(2,986본) = 118백만원 - 특근매식비 : 23백만원 · 특근자 저녁식대(9천원) × 70명 × 3회 × 12월 = 23백만원 - 일숙직비 : 4백만원 · 전산당직 수당(30천원) × 11명 × 12월 = 4백만원 - 기타운영비 : 32백만원 · 정보화인력 전문교육비(900천원) × 30회 = 27백만원 · 부서운영비(52천원) × 8부 × 12월 = 5백만원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분담금 : 304백만원 · 4대보험연계센터 차세대정보시스템 재구축: 608백만원×50%(산재기금분담율) = 304백만원 - 국내여비 : 83백만원 · 국내여비(90천원) × 16명 × 4.8회 × 12월 = 83백만원 - 관서운영비 : 17백만원 · 정보화사업 관련 업무협의(30천원) × 8명 × 2회 × 12월 = 6백만원 · 유관기관 간 업무협의 등(30천원) × 8명 × 3회 × 12월 = 9백만원 · 소속기관 정보화간담회(6천원) × 42명 × 8개 기관 = 2백만원		- 일반수용비 : 245백만원 · 사무용품 구입비(468천원) × 12월 = 6백만원 · 전산소모품 구입비(3,200천원) × 12월 = 38백만원 · 바이러스 백신 사용료 : 83백만원 * PC용 : 단가(22천원) × 수량(1,500본) = 33백만원 * 인터넷망 PC용 : 단가(28천원) × 수량(1,500본) = 42백만원 * 서버용 : 단가(351천원) × 수량(22본) = 8백만원 · 패치관리SW 사용료 : 118백만원 * 1 Copy 단가(39,600원) × 수량(2,986본) = 118백만원 - 특근매식비 : 23백만원 · 특근자 저녁식대(9천원) × 70명 × 3회 × 12월 = 23백만원 - 일숙직비 : 4백만원 · 전산당직 수당(30천원) × 11명 × 12월 = 4백만원 - 기타운영비 : 32백만원 · 정보화인력 전문교육비(800천원) × 34회 = 27백만원 · 부서운영비(52천원) × 8부 × 12월 = 5백만원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분담금 : 301백만원 · 4대보험연계센터 차세대정보시스템 재구축: 602백만원×50%(산재기금분담율) = 301백만원 - 국내여비 : 83백만원 · 국내여비(90천원) × 16명 × 4.8회 × 12월 = 83백만원 - 관서운영비 : 17백만원 · 정보화사업 관련 업무협의(30천원) × 8명 × 2회 × 12월 = 6백만원 · 유관기관 간 업무협의 등(30천원) × 8명 × 3회 × 12월 = 9백만원 · 소속기관 정보화간담회(6천원) × 42명 × 8개 기관 = 2백만원	
스마트 산재보상 시스템 구축 5,159	< 스마트산재보상시스템 구축 5,159백만원 > 가. 개발용역비 4,391백만원 나. 자산취득비 768백만원	스마트 산재보상 시스템 구축 4,218	< 스마트산재보상시스템 구축 4,218백만원 > 감 941백만원 가. 개발용역비 4,218백만원	
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 2,240	< 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 2,240백만원 > 가. 공사비 2,240백만원(산재분담율 50%)	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 6,200	< 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 6,200백만원 > 가. 장비도입비 6,200백만원(산재분담율 50%)	
소독기반 산재고용보험 정보시스템 구축 BPR/ISP 157	< 소독기반 산재고용보험 정보시스템 구축 BPR/ISP 157백만원 > 가. 연구용역비 157백만원(산재분담율 50%)	소독기반 산재고용보험 정보시스템 구축 BPR/ISP 0	< 소독기반 산재고용보험 정보시스템 구축 BPR/ISP 157백만원 > 순감(완료소요)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추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산재보험 신속성(건)	목표	신규	신규	신규	154,485	158,954	최근 3개년('23~'25년*) 처리건 중 6개월 이내 처리건의 평균건수에서 3% 증가를 목표 설정	당해연도 산재신청서 처리건 중 6개월 이내 처리건 수의 합	근로복지공단 전산자료
	실적	신규	신규	153,085	-	-	* '25년 산출된 값(가정)을 적용하여 '26년 목표치 설정('25년 실적 반영 시 '26년 목표치 변경 가능)	*당해연도 1.1.~ 12.31. 까지 처리된 산재신청서 중 6개월(접수일 ~ 처리일) 이내 처리건수의 합(건)으로 함	
	달성도	-	-	-	-	-			

* '25년 실적은 '26.1월말 집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법 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의 적기반영을 통한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2023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확인시스템 구축 - 스마트산재보상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2024	- 산재보험요율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 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 ISP 수립
2025	- 스마트산재보상시스템 구축<2년차> - 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1년차>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법·제도 개선 사항을 즉시 반영하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정보처리 환경을 제공하여 업무수행 비용 절감 및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
-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보장서비스로의 기반 강화
- 재해근로자의 신속한 보상과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 촉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 배정 → 산재보험 적용징수·보상·재활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화 업무 지원
→ 매월 고용노동부에 자금 신청 → 자금 배정 → 매월 경비 등 지급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사항 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사항 없음
- 3) 자체평가
 -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보통'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1,021	-	11,021	11,021	11,021	100.0	100.0	-	-
2023	15,047	-	15,047	15,047	15,047	100.0	100.0	-	-
2024	20,059	-	20,059	20,059	20,059	100.0	100.0	-	-
2025	19,114	-	19,114	19,114	19,114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8) 산재보험 징수위탁지원(4058-3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업보건 보상정책관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58	350
명칭	산재보험	산재보험료징수관리	산재보험 징수위탁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실·국	과(팀)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중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산재보험징수 위탁지원	17,824	18,844	18,844	19,348	19,348	504	2.7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7,824	17,824	17,824	0	0	18,844	18,844	18,844	18,844	-	684	19,348
· 산재보험징수 위탁지원	17,824	17,824	17,824	0	0	18,844	18,844	18,844	18,844	-	684	19,34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산재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함에 따른 출연
 - 2011년도부터 4대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징수 업무 통합
 - 국민건강보험에서 사회보험통합징수업무를 수행하여 징수업무 효율성 제고 및 국민 편익증진에 기여
 - 그에 따라 산재보험료 징수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인건비, 경비를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출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8.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8 이상을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7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고지·수납·체납 업무를 말한다)가 차지 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5조의 3(출연금의 용도 등)** ① 공단, 「한국산업안

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 및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6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공단: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
2. 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
3. 건강보험공단: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 안전보건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하 “피출연자”라 한다)이 출연금을 제1항의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피출연자는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2.>

④ 피출연자는 매 분기(分期)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분기의 출연금 집행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1. 보험료등(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2. 보험료등의 체납관리

② 추진경위

-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기획단 출범('08.7.17) : 보건복지부
- 「사회보험 징수통합준비위원회」 구성·운영('09.6.12) : 보건복지부
- 사회보험 징수통합관련 노·사·정 합의서 서명('09.6.4)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징수통합 실무추진단」 출범('09.6.1)
- 분야별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노사정실무협의회 : 정부, 공단, 노조 등 관계자
 - 정보화실무협의회 : 복지부, 노동부, 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계자
- 각 공단별 징수통합 실무준비조직 구성·운영
- 전환인력 건강보험공단 징수인력 배치('11.1.1)
 - 건강(1,512명), 연금(712명), 근로공단(317명)
- 사회보험 통합징수 시작('11.1.1)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7,575	17,768	17,824	18,844	19,34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및 노동자, 노무제공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산재보험 징수위탁지원	출연	국민건강 보험공단	19,348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산재보험징수위탁지원 :

(‘25계획) 18,844백만원→ (‘26계획) 19,348백만원(504백만원 중, 2.7%)

- ① 인건비: (‘25계획) 11,877백만원→ (‘26계획) 12,293백만원(416백만원 중, 3.5%)
- ② 사업비: (‘25계획) 6,667백만원 → (‘26계획) 6,755백만원(88백만원 중, 1.3%)
- ③ 경비: (‘25계획) 300백만원 → (‘26계획) 300백만원(전년 동)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구 분	‘25	‘26
	계획	계획
□ 산재보험징수위탁지원	18,844	19,348
○ 인건비	11,877	12,293
- 기본인건비	10,829	11,208
	- 168명x64,458천원	- 168명x64,458천원×(1.035)
- 퇴직급여비	1,048	1,085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 2.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 2.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구 분	'25	'26
	계획	계획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90 3. 2021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100	까지의 기간: 100분의 90 3. 2021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100
○ 사업비	6,667	6,755
- 고지관리	4,035 - 고지서발송 : 월11,599천건 x 300원 x 12개월 x 6.6% = 2,756백만원 - 고지서제작 및 인쇄 : 월 11,599천건 x 75원 x 12개월 x 6.6% = 689백만원 - 모바일고지수수료 : 월 309천건 x 100원 x 12개월 x 6.6% = 24백만원 - 여비 등 : 6백만원 - 특수고용직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확대 : 560백만원	4,035 - 고지서발송 : 월11,599천건 x 300원 x 12개월 x 6.6% = 2,756백만원 - 고지서제작 및 인쇄 : 월 11,599천건 x 75원 x 12개월 x 6.6% = 689백만원 - 모바일고지수수료 : 월 309천건 x 100원 x 12개월 x 6.6% = 24백만원 - 여비 등 : 6백만원 - 특수고용직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확대 : 560백만원
- 수납관리	790 - 자동이체, 환급금신청안내문 발송 : 월 360천건 x 300원 x 12개월 x 6.6% = 86백만원 - 안내문 제작인쇄 : 월 360천건 x 56.8원 x 12개월 x 6.6% = 16백만원 - 수납대행수수료 : 월 14,731천건 x 58.5원 x 12개월 x 6.6% = 683백만원 - 여비 등 : 5백만원	790 - 자동이체, 환급금신청안내문 발송 : 월 360천건 x 300원 x 12개월 x 6.6% = 86백만원 - 안내문 제작인쇄 : 월 360천건 x 56.8원 x 12개월 x 6.6% = 16백만원 - 수납대행수수료 : 월 14,731천건 x 58.5원 x 12개월 x 6.6% = 683백만원 - 여비 등 : 5백만원
- 채납관리	778 - 채납 및 압류 통보서 발송 : 월 1,197천건 x 300원 x 12개월 x 6.6% + 월 225천건 x 2,130원 x 12개월 x 6.6% = 664백만원 - 통보서 제작인쇄 : 월 1,422천건 x 56.8원 x 12개월 x 6.6% = 64백만원 - 예금전자전송수수료 : 14,320천건 x 19.4원 x 6.6% = 18백만원 - 여비 등 : 32백만원	778 - 채납 및 압류 통보서 발송 : 월 1,197천건 x 300원 x 12개월 x 6.6% + 월 225천건 x 2,130원 x 12개월 x 6.6% = 664백만원 - 통보서 제작인쇄 : 월 1,422천건 x 56.8원 x 12개월 x 6.6% = 64백만원 - 예금전자전송수수료 : 14,320천건 x 19.4원 x 6.6% = 18백만원 - 여비 등 : 32백만원
- 징수행정지원	9	9
- 시스템유지보수료	118	118
- 특수고용직산업재보험가입확대	560	560
- 통합징수 정보시스템 재구축 분담금	747	835
- 고객상담 도급비	190	190
○ 경비	300	30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산재보험 신속성(건)	목표	신규	신규	신규	154,485	158,954	최근 3개년('23~'25년*) 처리건 중 6개월 이내 처리건의 평균건수에서 3% 증가를 목표 설정 * '25년 산출된 값(가정)을 적용하여 '26년 목표치 설정('25년 실적 반영 시 '26년 목표치 변경 가능)	당해연도 산재신 청서 처리건 중 6 개월 이내 처리건 수의 합 *당해연도 1.1.~ 12.31. 까지 처리된 산재 신청서 중 6개월 (접수일 ~ 처리일) 이내 처리건수의 합(건)으로 함	근로복지공단 전산자료
	실적	신규	신규	153,085	-	-			
	달성도	-	-	-	-	-			

* '25년 실적은 '26.1월말 집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산재보험료 징수율 99.8% (부과액 64,654억원, 징수액 64,523억원)
2023	산재보험료 징수율 99.7 (부과액 69,458억원, 징수액 69,230억원)
2024	산재보험료 징수율 99.7%(부과액 69,509억원, 징수액 69,322억원)
2025. 12. 10.	산재보험료 징수율 99.7% (부과액 67,062억원, 징수액 66,848억원)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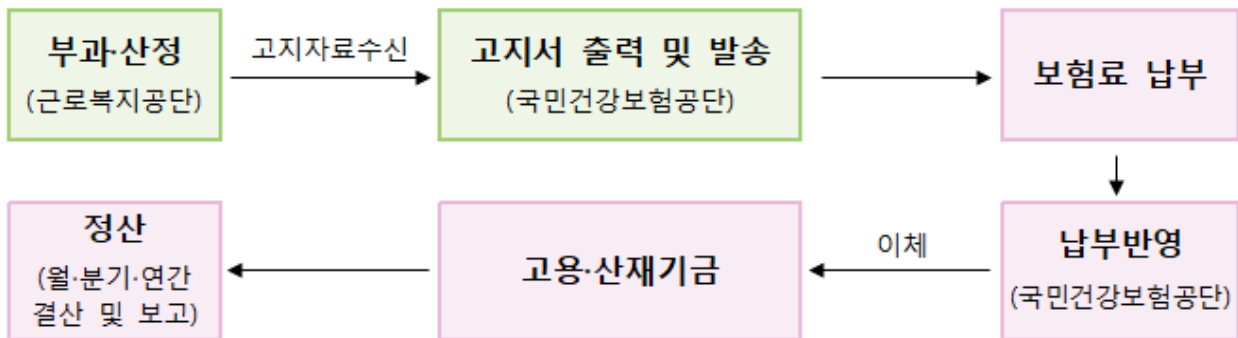
- 효율적인 징수·채납업무수행을 통해 징수율 향상 및 보험재정 건전성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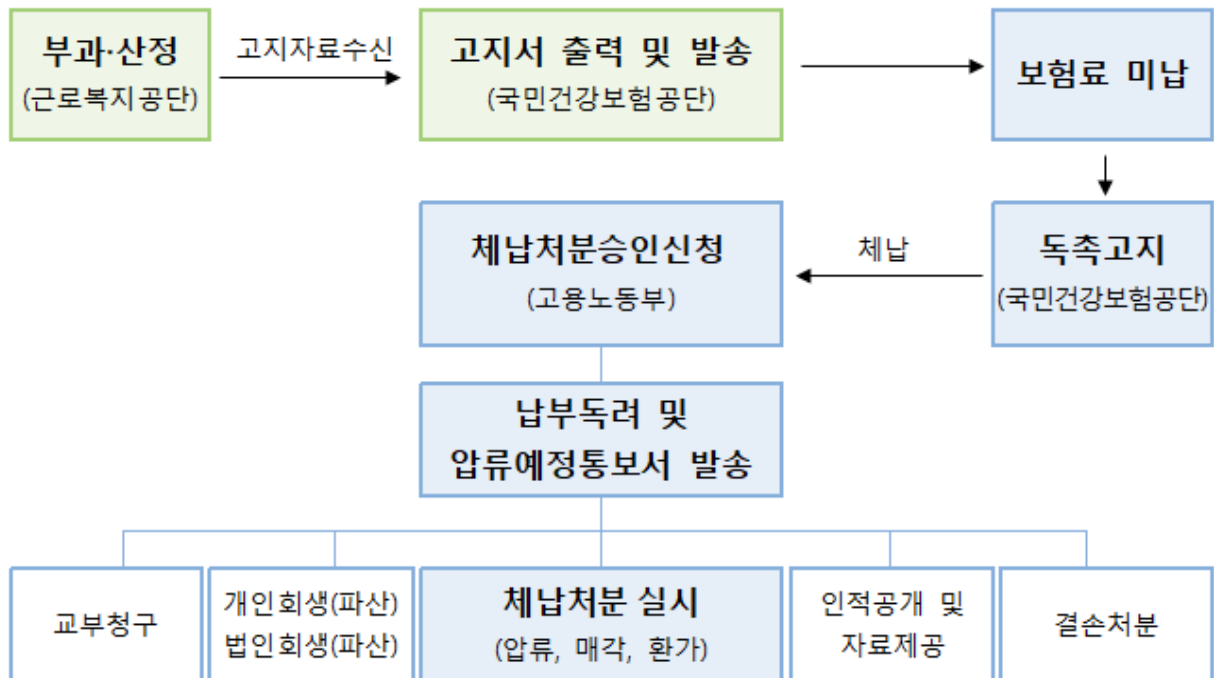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고지·수납관리



■ 체납관리



8) 각종 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7,575	0	17,575	17,575	17,575	100.0	100.0	0	0
2023	17,768	0	17,768	17,768	17,768	100.0	100.0	0	0
2024	17,824	0	17,824	17,824	17,824	100.0	100.0	0	0
2025	18,844	0	18,844	18,844	18,844	100.0	100.0	0	0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전자고지 확대 등 서식 제작비용 절감 및 인건비 집행 잔액 684백만원 불용

☐ 2025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9) 산재보험 적용부과지원(4058-3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업보건 보상정책관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58	351
명칭	산재보험	산재보험료 징수관리	산재보험 적용부과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산재보험 적용부과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산재보험 적용부과지원	30,816	32,506	32,506	30,201	30,201	△ 2,305	△ 7.1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30,816	30,816	30,816	-	[73]	32,506	32,506	32,506	29,540	-	2,966	30,201
· 산재보험 고용정보부과	4,702	4,702	4,702	-	-	4,749	4,749	4,749	4,749	-	-	4,829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7,662	7,662	7662	-	-	7,621	7,621	7,621	7,621	-	-	7,778
· 영세사업장보험사무 지원 및 플랫폼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	15,618	15,618	15,618	-	[73]	17,386	17,386	17,386	14,420	-	2,966	15,118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2,834	2,834	2,834	-	-	2,750	2,750	2,750	2,750	-	-	2,47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산재보험 고용정보·부과)

- '11년부터 보험료 산정방식이 근로자 개인별 보수에 기초하여 매월 산정·부과 되는 체계로 변경, 이에 따라 근로자 고용정보관리제도(근로자 개인별 고용 및 보수정보 관리, 보험료 부과자료 구축 등)를 도입·시행
- 고용 및 보수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가입누락자 등의 방지를 통해 보험재정 건전성 도모 및 사회안전망 강화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 산재보험 적용·부과·보상에 대한 민원(전화, 인터넷 등), 권리구제 방법 등을 신속·공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만족도 제고 및 원활한 사업 수행
- 산재보험 적용·보상·재활사업에 대한 전화·인터넷 상담, 이용고객모니터링, 증명원 발급 등 직접 처리업무

-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및 플랫폼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

- 소규모 사업장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적용·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험 사무대행기관을 통한 보험사무 지원 및 플랫폼운영자에 대한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원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함에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적용 누락 노무제공자가 없도록 가입을 강화하며, 무급가족종사자 등 임의가입 대상에 대한 가입 촉진활동으로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제도 역할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산재보험료 고용정보 · 부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보수총액등의 신고)

- 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 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료 납부자가 사업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해당 예술인·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때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때
 3.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때
- ④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노무제공계약의 종료일 등을 해당 고용관계 또는 계약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
 2.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종료한 때
 3.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종료한 때
- ⑤ 사업주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사항, 신고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사업주 또는 발주자·원수급인이 「고용보험법」 제15조, 제77조의2제3항, 제77조의5제1항, 제77조의10제1항에 따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8.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8이상을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및 플랫폼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①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료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48조의7(플랫폼 운영자의 산재보험 특례) ⑨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 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2. “플랫폼 종사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3. “플랫폼 운영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플랫폼 이용 사업자”란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를 직접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를 플랫폼 이용 사업자로 본다.

② 추진경위

- (산재보험 고용정보·부과)

○ 사업시작년도 : ‘11년

○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함께 보험료 징수체계 변경 및 근로자 고용정보관리제도 도입

* 보험료징수법 개정(‘09.12.30.) 및 하위법령 개정(‘10.9.29.)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 '11년 위탁상담에 의한 콜센터(광주) 개소(상담사 110명)
- '12년 콜센터(광주) 위탁상담원 40명 증원
- '15년 콜센터(인천) 개소(시간선택제 위탁상담사 92명)
- '16년 콜센터(울산) 개소(시간선택제 위탁상담사 100명)
- '19년 콜센터 상담사 350명 정규직 전환
- '23년 근로복지공단 직제규정 개정에 따라 고객센터로 명칭 변경

-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및 플랫폼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

- 사업시작년도 : '71년(산재보험료 징수가 곤란했던 건설업에 대해 보험료 징수를 위탁하고 징수비용 교부)
- '84년 : 소규모 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부담을 덜어주고, 산재보험의 가입촉진 및 적정한 징수를 도모하기 위해 보험사무조합으로 변경
- '05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명칭 변경
- '23.7월: 플랫폼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 개시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 '08년 보험설계사를 시작으로 현재 19개 직종의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경과 >

- ('08.7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 ('12.5월) 택배기사, 쿠팡서비스기사
- ('16.7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19.1월) 전체 건설기계조종사(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27개)
- ('20.7월) 방문판매원, 대여제품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원, 특정 품목(시멘트, 철강재 등) 운송 화물차주
- ('21.7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 ('22.7월)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 품목(자동차·곡물 등) 운송 화물차주
- ('23.7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탁송기사 및 대리주차인, 전체 화물차주, 노무 제공자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에 따른 기존 직종
- ('24.1월) 보험설계사(신협 등 공제모집인), 방과후강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산재보험 고용정보·부과)'11년~계속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11년~'14년(운영비), '15년~(사업비)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및 플랫폼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 '71년~'18년(운영비), '19년~(사업비)
(노무제공자산재보험적용확대) '20년~계속(신규)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4,421	27,768	30,816	32,506	30,201

- 기타

(산재보험 고용정보·부과) 사업장 224만개소, 근로자 2,142만명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3개 센터(광주, 울산, 인천), 상담인력 391명
 (영세사업장 보험사무지원) 보험사무대행기관 7,044개소, 위탁사업장 99만개소
 (노무제공자산재보험적용확대) 노무제공자 19개직종 144만명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산재보험 고용정보·부과,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노무제공자산재보험적용확대
 (민간경상보조) 영세사업장 보험사무지원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영세사업장 보험사무지원 및 플랫폼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	보조	근로복지공단	15,118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및 제96조
산재보험 고용정보·부과	출연	근로복지공단	4,829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및 제96조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운영	출연	근로복지공단	7,778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출연	근로복지공단	2,476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및 제96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산재보험 적용부과지원 : (2025) 32,506백만원 → (2026 계획) 30,201백만원, 감 2,305백만원, 감 7.1%
- ① 산재보험 고용정보부과 : (2025) 4,749백만원 → (2026 계획) 4,829백만원, 증 80백만원
- (요구) 근로자정보조사원 인건비 최저임금 증액분 반영
 - (산출) 근로자정보조사원 인건비 3,297백만원 + 사업장 안내 686백만원 + 보험료부과 자료확보 89백만원 + 보험료부과근거 안내 352백만원 + 퇴직정산결과통지 405백만원
- ②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운영 : (2025) 7,621백만원 → (2026 계획) 7,778백만원, 증 157백만원
- (요구) 고객센터 상담사 인건비 최저임금 증액분 반영
 - (산출) 상용임금 등 6,358백만원 + 일반운영비 등 1,420백만원
- ③ 영세사업장 보험사무지원 및 플랫폼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 :
 (2025) 17,386백만원 → (2026 계획) 15,118백만원, 감 2,268백만원
- (요구) 집행추이 등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
 - (산출) 보험사무대행지원금 13,292백만원 + 플랫폼운영자 보험사무 이해지원금 1,826백만원

④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 (2025) 2,750백만원 → (2026 계획) 2,476백만원, 감 274백만원**

- (요구) 제도 성숙 등에 따른 통지 비용 절감 반영
- (산출) 가입안내문 802백만원 + 신고내용 통지 1,674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산재보험 고용정보 부과 4,749	< 산재보험 고용정보부과 4,749백만원 > 가. 근로자정보조사원 인건비 : 3,217백만원 - 기존임금 : 180명×2,850천원×12월×51% = 3,140백만원 - 복리후생비 : 84만원×180명×51% = 77백만원 나. 사업장 안내 : 686백만원 - 보수총액신고안내 : 350원×177만개소×51% = 316백만원 - 보험료정산내역통지 : 350원×32만개소×51% = 57백만원 - 근로자정보미신고 사업장 신고안내 : 510원×295천개소 = 150백만원 - 지역별사업주 설명회 개최 : 1,800천원×55개소×51%=50백만원 - 소규모사업장적용결과통지 : 113백만원 다. 보험료부과 자료확보 : 89백만원 - 유관기관자료수집 및 자료연계협의, 사업장 조사 : 265천원×12개월×55개소×51% = 89백만원 라. 보험료부과근거 안내 : 352백만원 - 부과근거자료 제공 : 350원×177만개소×51%=316백만원 - 보수총액미신고사업장 직권부과통지 : 350원×20만개소×51%=36백만원 마. 퇴직정산결과통지 : 405백만원 - 퇴직정산결과발송 : 350원×3,786,854개소×60%×51%	산재보험 고용정보 부과 4,829	< 산재보험 고용정보부과 4,829백만원 > 증 80백만원 가. 근로자정보조사원 인건비 : 3,297백만원 - 기존임금 : 180명×2,923천원×12월×51% = 3,220백만원 - 복리후생비 : 84만원×180명×51% = 77백만원 나. 사업장 안내 : 686백만원 - 보수총액신고안내 : 350원×177만개소×51% = 316백만원 - 보험료정산내역통지 : 350원×32만개소×51% = 57백만원 - 근로자정보미신고 사업장 신고안내 : 510원×295천개소 = 150백만원 - 지역별사업주 설명회 개최 : 1,800천원×55개소×51%=50백만원 - 소규모사업장적용결과통지 : 113백만원 다. 보험료부과 자료확보 : 89백만원 - 유관기관자료수집 및 자료연계협의, 사업장 조사 : 265천원×12개월×55개소×51% = 89백만원 라. 보험료부과근거 안내 : 352백만원 - 부과근거자료 제공 : 350원×177만개소×51%=316백만원 - 보수총액미신고사업장 직권부과통지 : 350원×20만개소×51%=36백만원 마. 퇴직정산결과통지 : 405백만원 - 퇴직정산결과발송 : 350원×3,786,854개소×60%×51%
	근로복지 공단 고객센터 운영 7,621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운영 7,621백만원 > 가. 상용임금 등 : 6,201백만원 - 기존임금 : 5,888백만원 - 전일제 상담사 : 2,791천원×12개월×95명=3,182백만원 - 반일제 상담사 : 1,501천원×12개월×105명=1,892백만원 - 선임 상담사 : 2,917천원×12개월×18명=630백만원 - 책임 상담사 : 4,417천원×12개월×2명=106백만원 - 시설미화 : 2,167천원×12개월×3명= 78백만원 - 복리후생비 313백만원 - 전일제 상담사 : 1,579천원×95명=150백만원 - 반일제 상담사 : 1,215천원×105명=127백만원 - 선임 상담사 : 1,611천원×18명=29백만원 - 책임 상담사 : 1,655천원×2명=3백만원 - 시설미화 : 1,480천원×3명=4백만원 나. 일반운영비 등 : 1,420백만원
영세사업장 보험사무 지원 및 플랫폼운 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 17,386	< 영세사업장 보험사무지원 및 플랫폼운영자 보험사무이행지원 17,386백만원 > 가. 보험사무대행지원금 : 15,560백만원 - 보험료납부지원금 : 701백만원×103.5%×97.66%=708백만원 - 피보험자 관리 지원금 : 12,239백만원×103.5%×97.66%=13,609백만원 - 사업장 가입 지원금 : 945백만원×103.5%×97.66%+193백만원=1,148백만원 -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 94백만원×103.5%×97.66%=95백만원 나. 플랫폼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 1,826백만원 [(345,202명×1,289원×95%×4회)+ (3개사×28백만원×4회)+ (6,731명×1,500원×95%×4회)]×88.4% = 1,826백만원	영세사업장 보험사무 지원 및 플랫폼운 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 15,118	< 영세사업장 보험사무지원 및 플랫폼운영자 보험사무이행지원 15,118백만원 > 감 2,268백만원 가. 보험사무대행지원금 : 13,292백만원 - 보험료납부지원금 : 74,041개소×16천원×50%=592백만원 - 피보험자 관리 지원금 : 12,128백만원 - 948,788개소×12천원(피보험자지원금단가)×50%×91.4% - 796,982개소×3천원(10인미만 지원금 증액분)×50%×91.4% - 583,351개소×18천원(보수총액신고지원금 단가)×50%×91.4% - 163,338개소×6천원(5인이상 지원금 증액분)×50%×91.4% - 사업장가입지원금 : 1,093백만원 - 43,986개소×40천원(지원금단가)×50% - 42,666개소×10천원(10인미만 지원금 증액분)×50% -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 86백만원×103.8%=89백만원 나. 플랫폼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 1,826백만원 [(345,202명×1,289원×95%×4회)+ (3개사×28백만원×4회)+ (6,731명×1,500원×95%×4회)]×88.4% = 1,826백만원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2,750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2,750백만원 > 가. 인쇄유인비 : 602백만원 - 노무제공자 : 409백만원 - (1,076,442건×300원)+(3,278,137건×30원×70%)+ (909,136건×30원×70%×89%) - 학생연구자 : 5백만원 - (920건×300원)+(149,060건×30원) - 무급가족종사자 등 : 188백만원 - (713,364건×300원×87%)+(81,704건×30원) 나. 공공요금 및 제세 : 2,148백만원 - 노무제공자 : 1,843백만원 - (880,210건×520원)+(2,294,695건×400원×95%)+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2,476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2,476백만원 > 감 274백만원 가. 가입안내문 : 1,513,094건×530원 = 802백만원 나. 신고내용 통지 : 3,720,178건×450원 = 1,674백만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96,232건×520원)+(566,392건×400원)+(242,739건×176원) - 학생연구자 : 53백만원 · [(920개소×520원)+(149,060건×400원)]×89% - 무급가족종사자 등 : 252백만원 · [(620,627건×520원)+(81,704명×400원)]×71%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산재보험 신속성(건)	목표	신규	신규	신규	154,485	158,954	최근 3개년('23~'25년*) 처리건 중 6개월 이내 처리건의 평균건수에서 3% 증가를 목표 설정	당해연도 산재신청서 처리건 중 6개월 이내 처리건 수의 합	근로복지공단 전산자료
	실적	신규	신규	153,085	-	-	* '25년 산출된 값(가정)을 적용하여 '26년 목표치 설정('25년 실적 반영 시 '26년 목표치 변경 가능)	*당해연도 1.1.~ 12.31. 까지 처리된 산재신청서 중 6개월(접수일 ~ 처리일) 이내 처리건수의 합(건)으로 함	
	달성도	-	-	-	-	-			

* '25년 실적은 '26.1월말 집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산재보험 고용정보·부과

2022	- 214만개 사업장에 대한 매월 보험료 부과
2023	- 221만개 사업장에 대한 매월 보험료 부과
2024	- 224만개 사업장에 대한 매월 보험료 부과
2025. 11.	- 227만개 사업장에 대한 매월 보험료 부과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운영

2022	- 상담응대건수 : 3,729,695건, 응대율 89.2% - 직접민원업무처리(증명원 발급 등) : 93,421건 ※ 시스템 분리로 보험료 부과관련 증명원 제외된 건수
2023	- 상담응대건수 : 3,582,744건, 응대율 95.0% - 직접민원업무처리(증명원 발급 등) : 83,990건
2024	- 상담응대건수 : 3,417,808건, 응대율 92.9% - 직접민원업무처리(증명원 발급 등) : 164,439건
2025	- 상담응대건수 : 3,149,384건, 응대율 90.1% - 직접민원업무처리(증명원 발급 등) : 230,159건

□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2022	- 보험사무대행기관 5,872개소, 보험사무 위탁사업장수 909천개소
2023	- 보험사무대행기관 6,437개소, 보험사무 위탁사업장수 926천개소
2024	- 보험사무대행기관 7,044개소, 보험사무 위탁사업장수 986천개소
2025. 11.	- 보험사무대행기관 7,656개소, 보험사무 위탁사업장수 1,052천개소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적용확대

2022	- 28,317 사업장수, 총입직자수 799,489 대비 적용자수 799,357, 적용률 99.98%
2023	- 노무제공자 17개 직종, 총 적용자수 1,193,801명
2024.	- 노무제공자 19개 직종, 총 적용자수 1,438,067명
2025. 10.	- 노무제공자 19개 직종, 총 적용자수 1,463,897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산재보험 고용정보·부과)
 -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입·퇴사 등 근로자 가입정보 관리를 통해 적용근로자 누락방지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보험재정 건전성 도모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 고객센터 운영 효율화 및 시스템 개선으로 상담서비스 품질 향상 및 고객만족도 제고
- (보험사무대행지원 및 플랫폼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
 - 소규모사업장의 보험사무 처리 부담 경감 및 보험사무 신고의 적정성 확보 등을 통한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와 플랫폼종사자의 산재보험 안전망 강화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 노무제공자 등 산업재해로부터 소외되었던 취약계층의 산재보험제도 편입 확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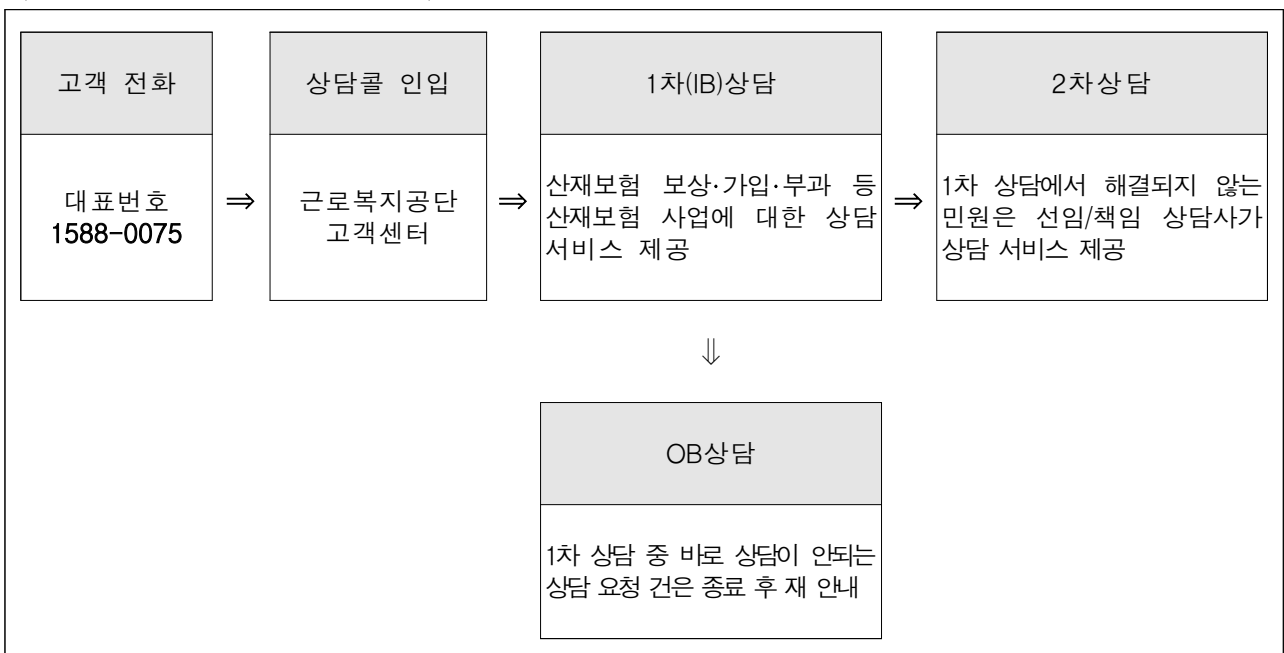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산재보험 고용정보·부과)

- 매년 3.15까지 보수총액신고서 제출(사업주)→월평균보수를 근거로 월별 보험료 산정 (근로복지공단)
- 근로자 입·퇴사 및 전근 등 고용정보와 보수신고(사업주)→근로자 고용정보 확인 및 내역 통지(근로복지공단)→월별보험료 산정(근로복지공단)

구 분		신고종류	기한	관련법령
고용정보관리	입 사	자격취득 신고서	다음달 15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10 제1항~제8항
	퇴 사	자격상실 신고서	"	
	휴 직	휴직등신고서	14일 이내	
	전근(전보)	전보신고서	"	
	정보 변경	정보변경신고서	"	
	일 용 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다음달 15일	
보수관리	보수총액신고	보수총액신고서	매년 3. 15	
	보수총액 착오신고	보수총액 수정신고	변경사유 발생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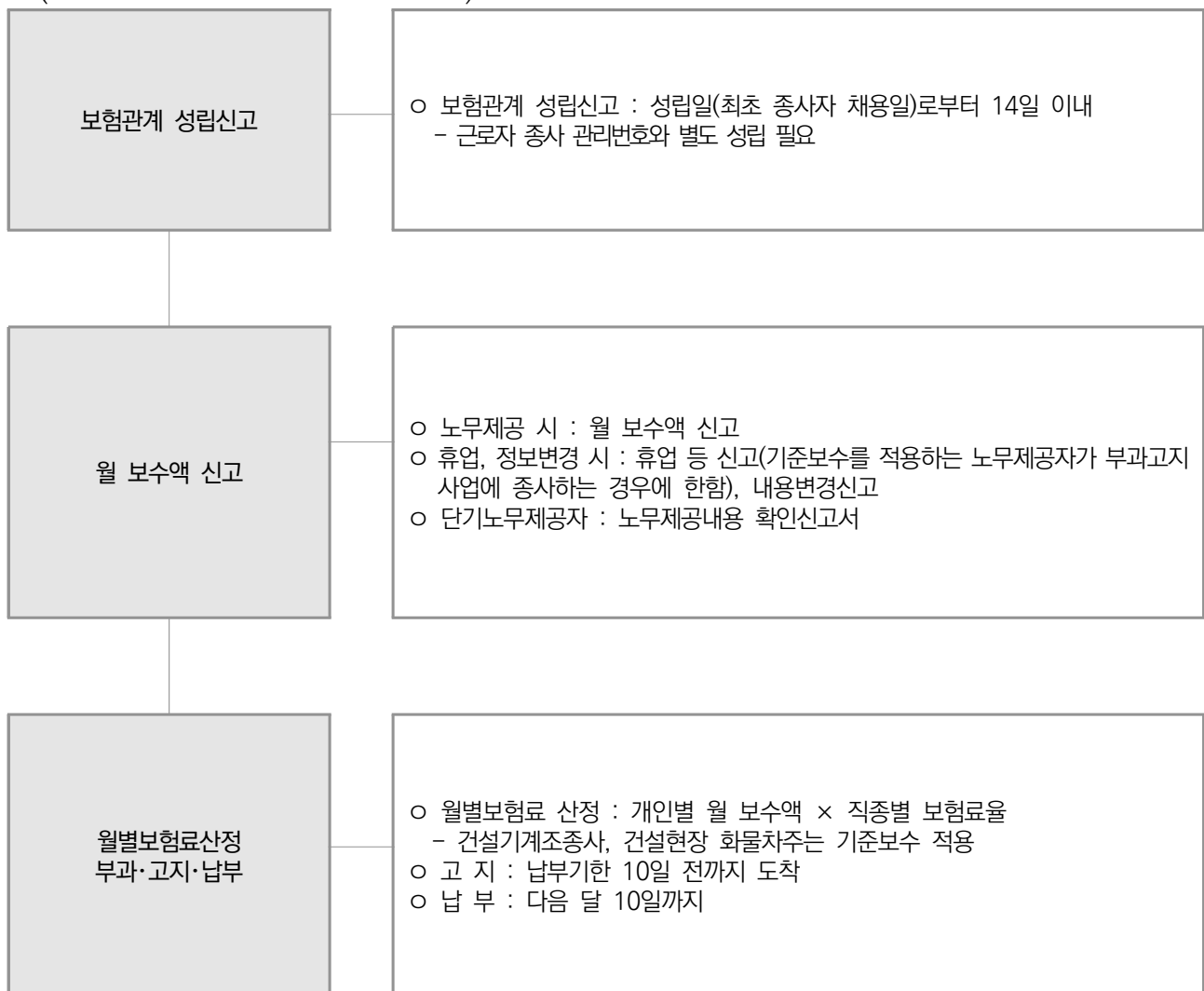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절차	주체	적용 법령 등
① 인가신청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료징수법 제33조 제2항
② 인가결정	근로복지공단	보험료징수법 제33조 제2항
③ 사무위탁서 작성	보험사무대행기관, 사업주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
④ 보험사무 대행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6조
⑤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신청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료징수법 제37조
⑥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료징수법 제37조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8) 각종 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24,421	-	24,421	24,421	24,421	100.0	100.0	-	-
2023	27,768	-	27,768	27,768	27,768	100.0	100.0	-	-
2024	30,816	-	30,816	30,816	30,816	100.0	100.0	-	-
2025	32,506	-	32,506	32,506	29,540	90.9	90.9	-	2,96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및 플랫폼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 73백만원 미 집행(과세소득 3억 이상 지원금 제외 사업장 신고분의 증가로 불용)
2025	-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및 플랫폼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 2,966백만원 미집행(보험사무대행기관 및 플랫폼사 신고실적 감소와 과세소득 3억 이상 지원금 제외 사업장 신고분의 증가로 불용)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10)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4060-3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업보건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보상정책관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60	350
명칭	산재보험	산재근로자복지(융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보건 보상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14,264	14,299	20,859	14,345	14,345	46	0.3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4,299	14,299	14,265	-	34	14,299	20,859	20,859	20,514	-	345	14,345
· 생활안정자금 융자	14,299	14,299	14,265	-	34	14,299	20,859	20,859	20,514	-	345	14,299
· 생활안정자금 융자 운영비	-	-	-	-	-	-	-	-	-	-	-	4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생활안정자금)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을 대상으로 긴급자금(의료·혼례·장례·사업자금) 및 필요자금(차량구입·주택이전)을 적기에 신속한 융자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임
- (운영비) 사업 수행 주체인 근로복지공단에 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근로복지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 가. 요양이나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
 - 나. 의료재활이나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2.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 '87년 : 산재근로자 융자를 통한 생활안정 지원 개시
- '97년 :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 '01년 : 융자이자율을 3%로 인하
- '02년 : 산재장해 제9급까지 대상 확대 및 대부한도 30백만원으로 확대
- '04년 : 담보대부 약정해지로 신용대부만 시행(5백만원)

- '06년 : 1세대당 대부한도 상향조정(5백만원 → 10백만원)
 - '10년 : 대학학자금 용자대상자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를 지원 대상으로 추가
 - '12년 : 1세대당 용자한도 상향조정(1,000만원 → 1,500만원)
 - '14년 : 1세대당 용자한도 상향조정(1,500만원 → 2,000만원), 대상확대(요양 중 저임금근로자 포함), 취업안정자금 신설
 - '15년 : 이자율 인하 (3% → 2%)
 - '17년 : 생활안정 용자대상 소득기준(중위소득 이하) 도입 및 내수활성화를 위한 용자이율 한시 인하(2%→1.5%, 6월~12월)
 - '19년 : 상환조건 다양화(기존 2년거치 3년 상환→ 1년거치4년상환, 2년거치 3년 상환, 3년거치 2년 상환 중 택1)
 - '20년 : 이자율 인하 (2% → 1.25%)
 - '24년 : 신용보증료율 인상(0.7%→1.0%), 창업점포지원사업 종료
 - '25년 : 용자이율 한시 인하(1.25%→1.0%), 1세대당 용자한도 한시 상향조정 (2,000만원 → 3,000만원), 용자종목 확대(자녀양육비 신설)
- * 용자 이율 및 한도 '25.3.~12. 기간 한시적용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87년 ~ 계속(생활안정자금), '00년 ~ '18년(창업점포지원, '19년부터 신규지원중단)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744	15,744	14,299	20,859	14,345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용자,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위탁)
- 사업 수혜자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고시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자 중 산재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수급자, 산재장해 제1급~제9급자, 창업지원사업 지원결정자, 5년이상 장기 요양중인 이황화탄소질병판정자, 3개월이상 요양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이하에 해당되는 자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용자) : (2025 추경) 20,859백만원 → (2026 계획) 14,345백만원, 감 6,514백만원, 감 31.2%
(2025 당초 계획 14,299백만원 → 제1회 추경 20,859백만원)
- (요구)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용자) 전년동 수준 요구
 - (산출) 생활안정자금 용자 : 9.463백만원(평균 지급 단가) × 1,511명(평균 용자인원) = 14,299백만원
생활안정자금 용자 운영비 : 46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용자) 14,299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용자) 14,299백만원 > 가. 9.463백만원 × 1,511명 = 14,299백만원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용자) 14,345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용자) 14,345백만원 > 중 46백만원 가. 9.463백만원 × 1,511명 = 14,299백만원 나. 용자 운영비 4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산재보험 신속성(건)	목표	신규	신규	신규	154,485	158,954	최근 3개년('23~'25년*) 처리건 중 6개월 이내 처리건의 평균건수에서 3% 증가를 목표 설정 * '25년 산출된 값(가정)을 적용하여 '26년 목표치 설정('25년 실적 반영 시 '26년 목표치 변경 가능)	당해연도 산재신 청서 처리건 중 6 개월 이내 처리건 수의 합 *당해연도 1.1.~12.31. 까지 처리된 산재 신청서 중 6개월 (접수일 ~ 처리일) 이내 처리건수의 합(건)으로 함	근로복지공단 전산자료
	실적	신규	신규	153,085	-	-			
	달성도	-	-	-	-	-			

* '25년 실적은 '26.1월말 집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생활안정자금 용자 수혜인원 1,580명
2023	- 생활안정자금 용자 수혜인원 1,637명
2024	- 생활안정자금 용자 수혜인원 1,515명
2025	- 생활안정자금 용자 수혜인원 2,18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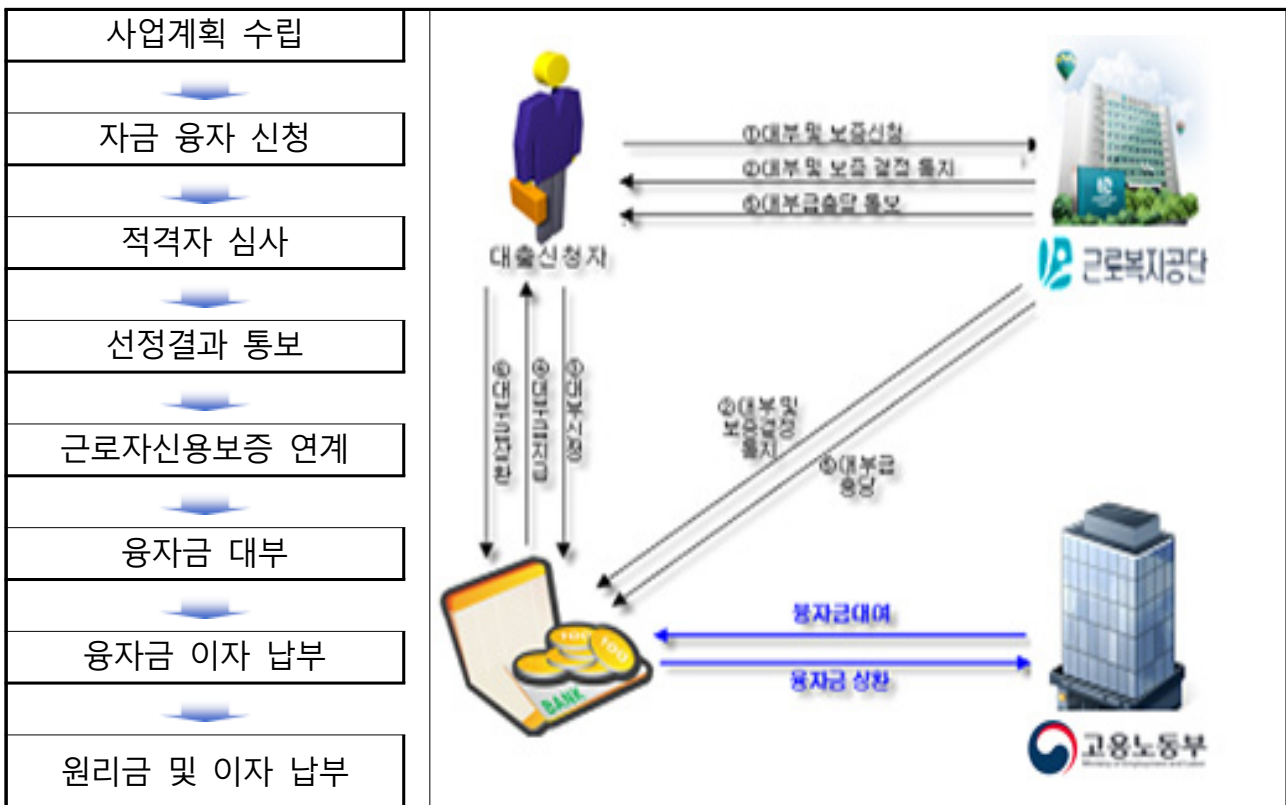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약 2,000명의 산재근로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사항 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사항 없음
- 3) 자체평가
 -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보통”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5,744	-	15,744	15,744	15,636	99.3	99.3	-	108
2023	15,744	-	15,744	15,744	15,617	99.2	99.2	-	127
2024	14,299	-	14,299	14,299	14,265	99.8	99.8	-	34
2025	14,299	6,560	20,859	20,859	20,514	98.3	98.3	-	34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사유 (생활안정자금 8백만원, 창업점포지원 100백만원 불용) (생활안정자금) 매월 배정받은 금액 중 용자가 불가한 소액 자금에 대한 불용처리 (창업점포지원) 경기 불황 등 창업 환경 및 수익성 악화로 사업의 유입요인 저하
2023	- 불용 사유 (생활안정자금 27백만원, 창업점포지원 100백만원 불용) (생활안정자금) 매월 배정받은 금액 중 용자가 불가한 소액 자금에 대한 불용처리 (창업점포지원) 기존지원자 이전계약 수요 없음
2024	- 불용 사유 (생활안정자금 34백만원) (생활안정자금) 매월 배정받은 금액 중 용자가 불가한 소액 자금에 대한 불용처리
2025	- 불용 사유 (생활안정자금 345백만원) (생활안정자금) 집행잔액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국회의결 (2025.5.1.)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450	04	6,560	용자한도 상향(4,760백만원), 자녀양육비 용자항목 신설(1,800백만원)
합 계				6,560	

사 업 명
(11) 클린사업장조성지원(4151-3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예방정책관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1	350
명칭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재정지원	클린사업장조성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40~9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안전동행 지원사업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사후관리 및 사업수행경비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471,652	481,792	496,792	537,093	537,093	55,301	11.5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471,792 (471,792)	471,792	471,652	-	140	481,792	496,792	496,792	496,520	-	272	537,093
·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95,707 (95,707)	95,707	95,707	-	-	-	-	-	-	-	-	-
·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35,000 (35,000)	35,000	35,000	-	-	-	-	-	-	-	-	-
· 안전일터 조성지원	-	-	-	-	-	110,707	110,707	110,707	110,659	-	48	160,607
· 안전동행 지원사업	322,000 (322,000)	322,000	321,997	-	3	332,000	332,000	332,000	331,999	-	1	332,000
· 건강일터 조성지원	15,825 (15,825)	15,825	15,824	-	1	35,825	50,825	50,825	50,824	-	1	40,825
· 클린사업장 사후관리 및 사업 수행경비	3,260 (3,260)	3,260	3,124	-	136	3,260	3,260	3,260	3,038	-	222	3,66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안전일터조성지원)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상시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로 별표1에서 정한 중소기업 규모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포함
- (안전동행지원사업)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 및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위험공정개선 지원을 통해 근원적 안전성 확보 및 대중소기업 간 안전보건수준 격차 완화
- (건강일터조성지원)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예방의 기본이 되는 공학적 설비(국소배기 장치) 및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장비의 일부 비용을 지원

- (클린사업장 사후관리 및 사업수행경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수혜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비용 및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 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995~1996 상반기 : 산업재해예방 특별사업
- 1996 하반기~1999 :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대통령 보고)
- 2000~2004 :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1999. 12월)
- 2001. 2월 : 노동부 업무보고
- 2001. 3월 : 제12회 국무회의시 대책수립 지시(대통령 보고)
- 2001. 8월 : 국무회의 시 산업재해 및 구인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클린사업 추진 계획 보고
- 2005~2009 :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4. 12월)
- 2010~2014 :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0. 3월)
- 2015~2019: 제4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5. 1월)
- 2020~2024: 제5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20. 5월)
- 2022.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국정과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1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50,853	506,974	471,792	496,792	537,093

- 기타 :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지원
- * '23년부터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기업 포함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 수혜자 : 산재보험가입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안전일터 조성지원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 공단	160,607	50~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안전동행 지원사업			332,000	40~50%	
건강일터 조성지원			40,825	70%	
클린사업장 사후관리 및 사업수행경비			3,661	-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구 분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496,792	537,093
	110,707	160,607
(1) 안전일터조성지원	· 제조서비스업 고위험개선 24,240 (2,832개소×8.56백만원) · 건설업 추락·붕괴 예방 51,467 (5,769개소×8.92백만원) ·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35,000 (2,544개소×13.76백만원)	· 제조서비스업 고위험개선 27,240 (3,182개소×8.56백만원) · 건설업 추락·붕괴 예방 53,467 (5,994개소×8.92백만원) ·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37,000 (2,689개소×13.76백만원) ·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42,900 (떨어짐) 1,065개소×8.92백만원 (끼임) 3,296개소×8.71백만원 (부딪힘) 1,232개소×3.84백만원
(2) 안전동행지원사업	332,000	332,000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 (3,660개소×82백만원)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488개소×65.5백만원)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 (3,660개소×82백만원)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488개소×65.5백만원)
(3) 건강일터조성지원	50,825	40,825
	· 국소배기장치 15,825 (화학물질) 260개소×50백만원 (조리부산물) 113개소×25백만원 · 온열질환 예방장비 및 설비 35,000 (예방장비) 5,400개소×3.15백만원 (응급 Kit) 10,000개소×0.1백만원 (예방설비) 40개소×50백만원 (2회 추경안) (설비) 4,762개소×3.15백만원 = 15,000백만원	· 국소배기장치 12,825 (화학물질) 220개소×50백만원 (조리부산물) 73개소×25백만원 · 온열질환 예방장비 28,000 (예방장비) 8,960개소×3.15백만원
(4) 클린사업장 사후관리 및 사업수행경비	3,260	3,661
	· (안전일터조성지원) 1,908 1식×1,908백만원 · (안전동행지원사업) 1,352 1식×1,352백만원	· (안전일터조성지원) 1,908 1식×1,908백만원 · (안전동행지원사업) 1,352 1식×1,352백만원 ·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401 1식×401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 지원사업장의 사고사망 만인율(‰) (하향지표) (단일지표)	목표	신규	0.54	0.50	0.45	0.42	전체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목표 비율*을 준용**하여 목표치 설정	○ 측정산식 : 지원사업장의 사고사망 만인율(‰) = A/B × 10,000 A: 공단 지원 사업장* 사고 사망자수(명) * 재해발생사업장 (중대재해조사 및 감독 대상 사업장 등) 지원실적은 제외 B: 공단 지원 사업장 근로자수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실적	신규	0.51	0.48	-	-	* '25. 0.31 → '26. 0.29 (△6.5%)		
	달성도	-	105.9	104.0	-	-	** '25 목표치 0.45에 6.6% 감소 반영하여 0.42 산출		
② 중상해사고 재해율(%) (하향지표)	목표	0.090	0.084	삭제	삭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실적	0.084	-	-	-	-			
	달성도	93.3	-	-	-	-			
③ 50인 미만 사업장 작업 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연계율(%)	목표	77.6	79.8	삭제	삭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실적	66.2	-	-	-	-			
	달성도	85.3	-	-	-	-			

* '25년 실적은 '26.3월말 집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 : 13,617개소 - 안전투자혁신사업 : 위험기계 1,716대, 위험공정 2,812개소
2023	-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 : 15,956개소 - 안전투자혁신사업 : 위험기계 1,347대, 위험공정 2,581개소 -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 1,548대(1,132개소) - 건강일터조성지원 : 국소배기장치 595개소, 휴게시설 1,139개소
2024	-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 : 11,175개소 - 안전동행지원사업 : 4,029개소 -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 2,669개소 - 건강일터조성지원 : 국소배기장치 606개소
2025	- 안전일터조성지원 : 8,350개소 - 안전동행지원사업 : 4,592개소 - 건강일터조성지원 : 국소배기장치 590개소, 온열질환 21,202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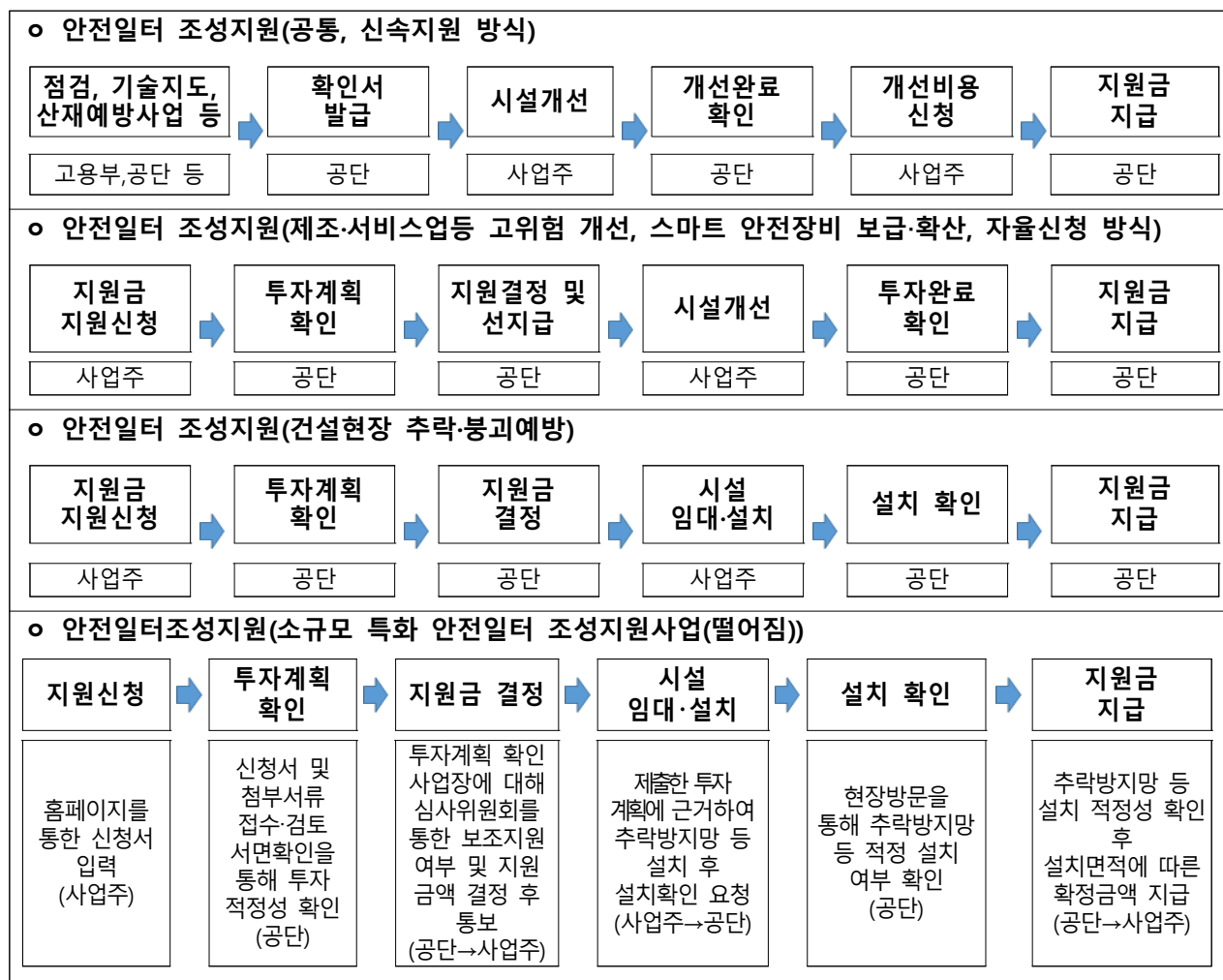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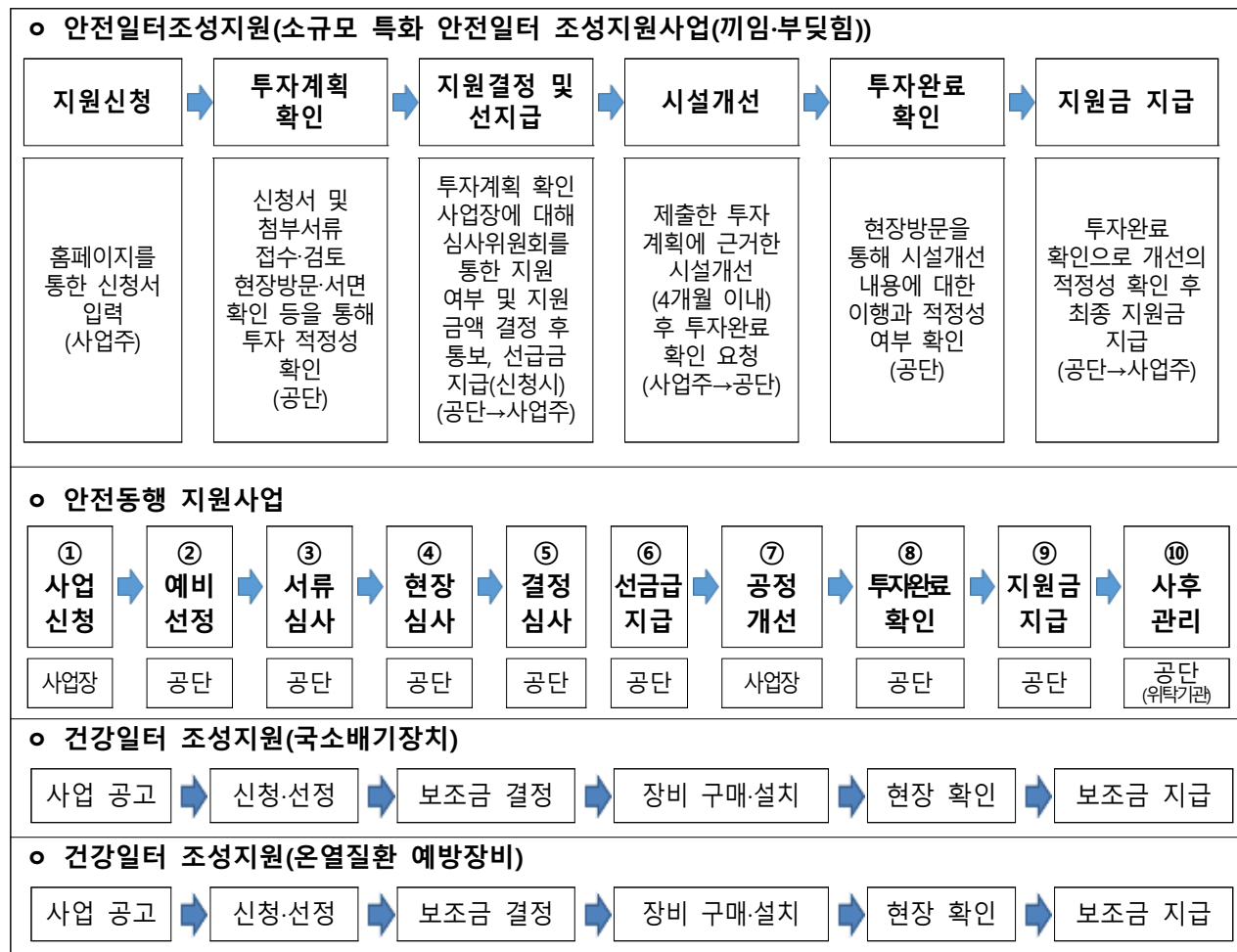
-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상시 50인 미만, 중기법상 소기업,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
- 10인 미만 사업장 및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소규모 사업장의 재래형 3대 사고사망(떨어짐·끼임·부딪힘)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등 지원을 통해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중소기업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필요한 안전보건시설투자 지속지원을 통한 근원적 안전성 확보로 사고사망 감축 등 산업재해 예방 기여
- 상생협약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참여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분야 원·하청 이중구조 및 안전보건 격차 해소로 산업재해 예방 기여
- 노후·위험공정 개선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기여
-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 예방과 온열 환경 근로자 건강보호에 필요한 공학적 설비의 설치비용 및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을 통한 직업병 및 온열질환 예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6년 예산(안) 예정처 검토보고서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관련 대상품목 효과성 검증과 부정수급 문제 등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 산재예방효과 검증 연구용역 실시, 부정수급 전담조직 신설, 가격 결정 방식 변경 등 부정수급 예방 제도적 장치 마련

○ '25년 국정감사

- 이동식 에어컨 등 재정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지급 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관리 철저
- ⇒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사용실태조사 추진으로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

○ '25년 결산 예정처 검토보고서

-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의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재정지원의 적정성 및 형평성 확보
- ⇒ 재정지원 비율의 적정성 재검토 및 명확한 기준 마련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의 재정지원 효율성 및 정책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방 효과에 대한 정량적 검증 방안 마련 필요

⇒ 정책 연구용역 실시를 통해 산재예방 효과에 대한 정량적 검증 방안(평가체계) 마련

○ '25년 예산(안) 환노위 검토보고서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관련 개별법령에 규정된 산업장비의 성능과 안전인증 관련 제도 전수조사 필요

⇒ 연구용역 실시 결과를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품목의 최소성능기준에 적용할 예정

○ '24년 국정감사

- KC 전과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지원제품 인증 여부 조사, KC 인증 관련 취득 조건, 최소성능기준 포함 등 사업 관리

○ '23년 결산 환노위 검토보고서

- 사고 발생률이 높은 3억원 미만 영세사업장에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개선 사업'의 지원 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원인 파악 및 지원 방안 제고 필요

⇒ 3억원 미만 영세사업장이 감소함에 따라 20억원 미만 현장에 지원 횟수 및 금액 확대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24 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평가결과 : 보통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450,853	-	450,853	450,853	440,512	97.7	97.7	-	10,341
2023	506,974	-	506,974	506,974	458,237	90.4	90.4	-	48,737
2024	471,792	-	471,792	471,792	471,652	100.0	100.0	-	140
2025	481,792	15,000	496,792	496,792	496,520	99.9	99.9	-	27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고위험 개선지원 신청품목 조정으로 사업장 신청저조 등으로 인한 미집행액(10,341백만원)
2023	- (불용) 건설경기 둔화에 따른 소규모 건설업 사업장 투자여건 악화, 지원결정 사업장 자진 취소분 및 신규사업 준비기간 소요에 따른 사업개시 지연 등에 따른 지원금 미집행액(48,737백만원)
2024	- (불용) 사후기술지도 용역 낙찰차액 등 사업수행경비 집행잔액(140백만원)
2025	- (불용) 사후기술지도 용역 실적 일부 불인정 등 사업수행경비 집행잔액(272백만원)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국회의결 (2025.7.4)	건강일터조성지원	350	350-02	15,000	폭염 등으로 인한 온열환경 근로자 건강보호에 필요한 온열질환 예방장비 등 물품을 지원하여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유도
합 계				15,000	-

사 업 명						
(12) 산재예방시설용자(용자)(4151-3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예방정책관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1	351
명칭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재정지원	산재예방시설용자(용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산재예방시설용자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사업시행주체	산업안전정책과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산재예방시설 용자(용자)	458,640	458,840	458,840	538,840	538,840	80,000	17.4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458,640 (458,640)	458,640	458,640	-	-	458,840	458,840	458,840	449,775	-	9,065	538,840
· 산재예방시설 용자(용자)	458,640 (458,640)	458,640	458,640	-	-	458,840	458,840	458,840	449,775	-	9,065	538,84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업장에 안전보건시설을 설치·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기저리로 용자금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 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996 하반기~1999: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대통령 보고)
- 2000. 9월: 국무총리실 「안전관리종합대책」 (국무회의 보고)
- 2000~2004: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1999. 12월)
- 2005~2009: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4. 12월)
- 2010~2014: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0. 3월)
- 2015~2019: 제4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5. 1월)
- 2020~2024: 제5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20. 5월)
- 2022.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국정과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84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56,328	356,328	458,640	458,840	538,840

- 기타 : 산재보험가입 사업장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용자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 수혜자 : 산재보험가입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산재예방시설 용자	용자	한국산업 안전보건 공단	538,640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출연		200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구 분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 산재예방시설용자	458,840	538,840
(1) 산재예방시설용자	458,840 · (용자금) 2,600개소×176.4백만원 · (수행경비) 200백만원	538,840 · (용자금) 3,054개소×176.4백만원 · (수행경비) 2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 지원사업장의 사고사망 만인율(‰) (하향지표) (단일지표)	목표	신규	0.54	0.50	0.45	0.42	전체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목표 비율을 준용*하여 목표치 설정	○ 측정산식 : 지원사업장의 사고사망 만인율(‰) = A/B×10,000 A: 공단 지원 사업장* 사고 사망자수(명) * 재해발생사업장 (중대재해조사 및 감독 대상 사업장 등) 자원실적은 제외 B: 공단 지원 사업장 근로자수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실적	신규	0.51	0.48	-	-	* '25. 0.31 → '26. 0.29 (△6.5%)		
	달성도	-	105.9	104.0	-	-	** '25 목표치 0.45에 6.6% 감소 반영하여 0.42 산출		
② 중상해사고 재해율(%) (하향지표)	목표	0.090	0.084	삭제	삭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실적	0.084	-	-	-	-			
	달성도	93.3	-	-	-	-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③ 50인 미만 사업장 작업 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연계율(%)	목표	77.6	79.8	삭제	삭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실적	66.2	-	-	-	-			
	달성도	85.3	-	-	-	-			

* '25년 실적은 '26.3월말 집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지원사업장 수: 2,691개소
2023	- 지원사업장 수: 2,540개소
2024	- 지원사업장 수: 2,795개소
2025	- 지원사업장 수: 3,057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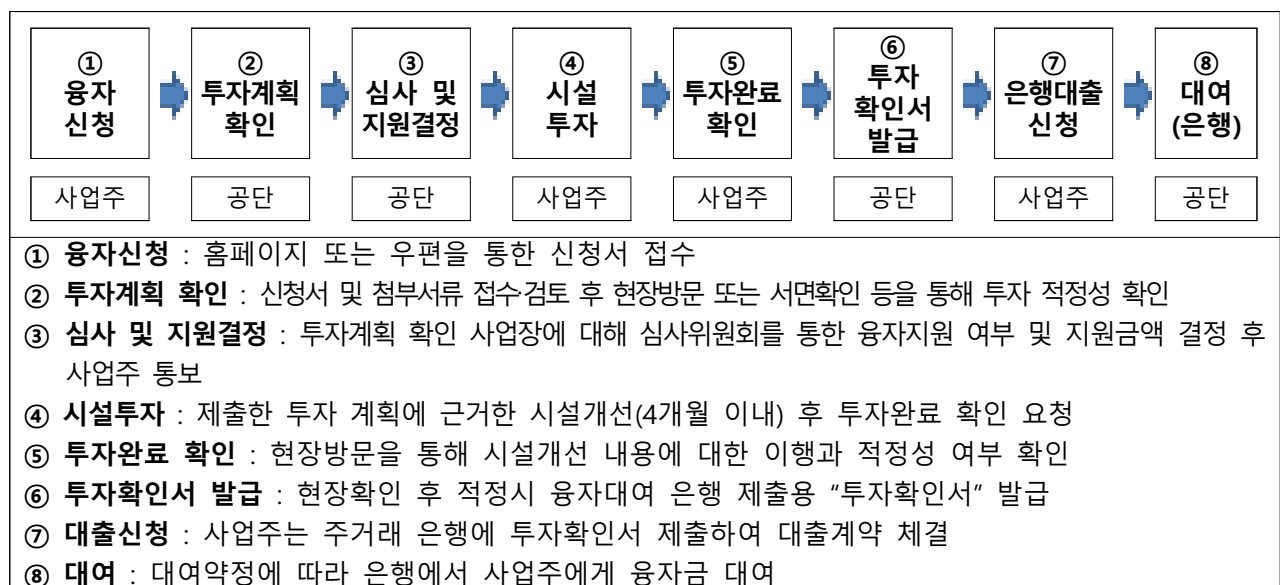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사고사망 등 발생 고위험 설비의 안전성 확보 및 작업공정·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 시설 투자를 유도하여 산업재해 감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6년 예산(안) 예결위 검토보고서
 - 지게차에 대해 재해예방보다 노후장비 교체 목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보임
 - ⇒ 용자지원품목은 사고위험이 높은 노후화된 장비도 포함하며, '26년도 사업추진 시 전·후방 카메라 등 안전장치가 부착된 지게차에 한하여 지원 예정임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 3) 자체평가
 - '24 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평가결과 : 미흡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356,328	-	356,328	356,328	356,327	100.0	100.0	-	1
2023	356,328	-	356,328	356,328	356,328	100.0	100.0	-	-
2024	458,640	-	458,640	458,640	458,640	100.0	100.0	-	-
2025	458,840	-	458,840	458,840	449,775	98.0	98.0	-	9,06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전액집행
2023	- 전액집행
2024	- 전액집행
2025	- (불용)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시설투자 위축으로 인한 용자금 등 집행잔액(9,065백만원)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3) 업종별재해예방(4152-3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예방정책관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2	350
명칭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기술지원	업종별재해예방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공단)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기술지도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 안전보건감독국 화학사고예방조사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율안전관리 체계구축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업종별재해예방	148,410	163,152	163,152	234,829	236,062	72,910	44.7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58,255 (158,255)	158,255	148,410	-	9,845	163,152	163,152	163,152	155,812	- (22)	7,340	236,062
· 사고성재해 집중관리(공단)	12,151 (12,151)	12,151	11,236	-	915	13,386	13,386	13,386	12,528	- (22)	858	60,234
· 민간 기술지도 (舊.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45,023 (45,023)	45,023	44,836	-	187	51,323	52,793	52,793	52,542	-	251	51,273
· 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	2,620 (2,620)	2,620	2,578	-	42	2,620	2,620	2,620	2,535	-	85	2,620
· 자율안전관리 체계 구축	98,461 (98,461)	98,461	89,760	-	8,701	95,823	94,353	94,353	88,207	-	6,146	121,93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공단)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공단의 사업장 대상 기술지도, 산재 현황 분석,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등 실시
- (민간 기술지도) 소규모 사업장에(1억원 미만 건설업, 50인 미만 제조·서비스업 등) 민간재해예방기관이 방문하여 산재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실시
- (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 화학공장 대형사고 예방 등을 위한 기술지원
-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또는 건설공사를 중지하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스로 심사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로서 제5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① 제42조제4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설공사 중에 근로자가 사망(교통사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확인 결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①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45조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이 조 제3항에 따라 보완한 공정안전보고서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3항에 따른 보완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 ④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 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1996 하반기~1999: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대통령 보고)
- 2000. 9월: 국무총리실 「안전관리종합대책」 (국무회의 보고)
- 2000~2004: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1999. 12월)
- 2005~2009: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4. 12월)
- 2010~2014: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0. 3월)
- 2015~2019: 제4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5. 1월)
- 2020~2024: 제5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20. 5월)
- 2022.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국정과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88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1,386	131,530	158,255	163,152	236,06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 수혜자 : 산재보험가입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사고성재해 집중관리(공단)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 공단	57,548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민간 기술지도			51,273		
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			2,620		
자율안전관리 체계 구축			107,835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	보조	자치단체	14,000	100%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구 분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 업종별재해예방	163,152	236,062
(1) 사고성재해 집중관리(공단)	13,386	60,234
	10,368	11,678
■ 사고사망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 기술지원 5,070 (55,000회×92,182원) · 패트롤카 운영 4,251 (318대×1,120천원×12개월) · 직종별 재해예방 플랫폼 구축운영 350 (1식×350백만원) · 건설현장 실시간 종합정보체계 구축 367 (1식×367백만원) · 과학 사고조사 분석 330 (중대재해 원인조사 1식×330백만원)	· 기술지원 5,074 (55,000회×92,255원) · 패트롤카 운영 5,557 (483대×959천원×12개월) · 직종별 재해예방 플랫폼 구축운영 350 (1식×350백만원) · 건설현장 실시간 종합정보체계 구축 367 (1식×367백만원) · 과학 사고조사 분석 330 (중대재해 원인조사 1식×330백만원)
■ 종합심사낙찰제 건설안전지표 산정	· 종합심사낙찰제 건설안전 지표산정 443 (100,000개사×4,430원) ·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255 (1식×255백만원)	· 종합심사낙찰제 건설안전 지표산정 443 (100,000개사×4,430원) ·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255 (1식×255백만원)
■ 민간재해예방 기관평가	· 민간재해예방기관평가 876 (1,130개소×775천원)	· 민간재해예방기관평가 876 (1,130개소×775천원)
■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400 (1식×400백만원)	·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400 (1식×400백만원)
■ AI, 빅데이터, 활용 산재예방 지원 시스템 (舊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 산재예방)	·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 산재예방 544 (1식×544백만원)	·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 산재예방 1,504 (1식×1,504백만원)
■ 안전보건종합진단	· 자율·명령진단 500 (150건×3,333천원)	· 자율·명령진단 500 (150건×3,333천원)
■ 안전한 일터 지킴이	-	· 안전한 일터 지킴이 44,578 (1,000명 × 44,578천원)

구 분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2) 민간기술지도	51,323	51,273
민간 기술지도	51,323 · 민간위탁기술지원 49,800 (332,000회×150,000원) · 사업수행경비 1,523	51,273 · 민간위탁기술지원 49,800 (332,000회×150,000원) · 사업수행경비 1,473
(3) 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	2,620	2,620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및 기술지도	990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594 (1,600건×371천원) ·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396 (2,000회×198천원)	990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594 (1,600건×371천원) ·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396 (2,000회×198천원)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 예방 기술지도	1,000 · 중소기업 화재사고 예방 기술지도 (4,000개소×250천원)	1,000 · 중소기업 화재사고 예방 기술지도 (4,000개소×250천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630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519 (검사 3,000건×173천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111 (268건×413천원)	630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519 (검사 3,000건×173천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111 (268건×413천원)
(4) 자율안전관리 체계구축	95,823	121,935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심사확인	2,632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2,632 (28,000건×94천원)	2,632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2,632 (28,000건×94천원)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구축	1,350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1,350 (1,493개소×904천원)	1,350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1,350 (1,493개소×904천원)
대중소기업 안전 보건 상생협력 사업 지원	13,019 · 협력업체 지원 13,019 (컨설팅 750개소×6.877백만원 안전보건활동 2,800개소×1.742백만원 기술지원 235개소×5.668백만원 운영경비 1,651백만원)	13,019 · 협력업체 지원 13,019 (컨설팅 750개소×6.877백만원 안전보건활동 2,800개소×1.742백만원 기술지원 235개소×5.668백만원 운영경비 1,651백만원)
산업안전보건 표준제정	564 · 산업안전보건표준 개발보급 564 (300건×1,880천원)	564 · 산업안전보건표준 개발보급 564 (300건×1,880천원)

구 분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 공공기관 안전 활동 수준평가	1,093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573 (1식×573백만원) · 안전활동 수준평가 사후관리 200 (100개 기관×2,000천원) · 지방공공기관 평가 220 (17개 기관×12,951천원) · 안전활동 수준평가 연구용역 100 (1식×100백만원)	1,093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573 (1식×573백만원) · 안전활동 수준평가 사후관리 200 (100개 기관×2,000천원) · 지방공공기관 평가 220 (17개 기관×12,951천원) · 안전활동 수준평가 연구용역 100 (1식×100백만원)
■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	63,679 · 위탁지원 59,400 (제조업 등 26,500개소×3.34회×600천원) (건설업 1,500개소×7회×600천원) · 직접지원 2,283 (직접지원 5,500개소×3회×138.4천원) · 수행경비 등 1,996 (수행경비 1,893, 사후지원 500개소 103)	82,007 · 위탁지원 77,300 (제조업 등 23,000개소) -제조업 특화 7,000개소×5회×700천원 -제조업 13,000개소×5회×600천원 -기타업 3,000개소×3회×600천원 (건설업 2,000개소×7회×600천원) · 직접지원 1,937 -중상해 신속 지원 8,000개소×1.5회×138.4천원 -사후지원 2,000개소×1회×138.4천원 · 수행경비 등 2,770
■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 (舊. 공동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12,600 · 지원금 12,000 (400명×2,500천원×12개월) · 수행경비 600	5,113 · 지원금 4,933 (200명×2,710천원×9.1개월) · 수행경비 180
■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	886 ·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 886 (1식×886백만원)	886 ·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 886 (1식×886백만원)
■ 기업 안전보건 공시제	-	950 · 공시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950 (1식×950백만원)
■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	-	14,321 · 보조금 14,000백만원 (10개소×1,400백만원) · 수행경비 등 321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 지원사업장의 사고사망 만인율(‰) (하향지표) (단일지표)	목표	신규	0.54	0.50	0.45	0.42	전체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목표 비율*을 준용**하여 목표치 설정	○ 측정산식 : 지원사업장의 사고사망 만인율(‰) = A/B × 10,000 A: 공단 지원 사업장* 사고 사망자수(명) * 재해발생사업장 (중대재해조사 및 감독 대상 사업장 등) 자원실적은 제외 B: 공단 지원 사업장 근로자수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실적	신규	0.51	0.48	-	-	* '25. 0.31 → '26. 0.29 (△6.5%)		
	달성도	-	105.9	104.0	-	-	** '25 목표치 0.45에 6.6% 감소 반영하여 0.42 산출		
② 중상해사고 재해율(%) (하향지표)	목표	0.090	0.084	삭제	삭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실적	0.084	-	-	-	-			
	달성도	93.3	-	-	-	-			
③ 50인 미만 사업장 작업 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연계율(%)	목표	77.6	79.8	삭제	삭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실적	66.2	-	-	-	-			
	달성도	85.3	-	-	-	-			

* '25년 실적은 '26.3월말 집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사망사고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 101,952회 - 종합심사낙찰제 건설안전지표 산정 : 72,945개사 -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 298,118회 -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사고예방 기술지도 : 1,966개소
2023	- 사망사고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 72,069회 - 종합심사낙찰제 건설안전지표 산정 : 74,158개사 -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 297,283회 -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사고예방 기술지도 : 2,013개소
2024	- 사망사고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 59,998회 - 종합심사낙찰제 건설안전지표 산정 : 108,404개사 -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 298,252회 -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사고예방 기술지도 : 2,015개소
2025	- 사망사고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 47,967회 - 종합심사낙찰제 건설안전지표 산정 : 110,155개사 - 민간 기술지도 : 373,312회 -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사고예방 기술지도 : 4,028개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한 산재 예방사업 및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사고 예방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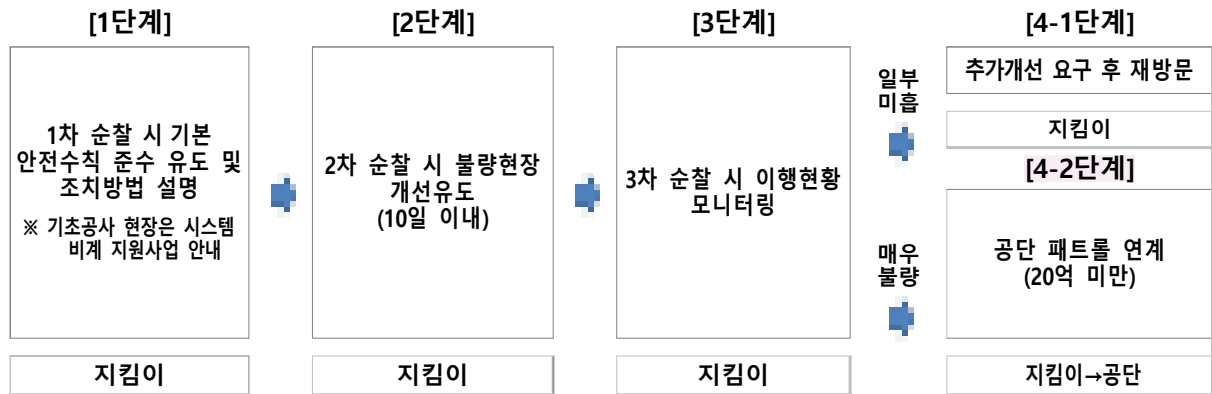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안전한 일터 지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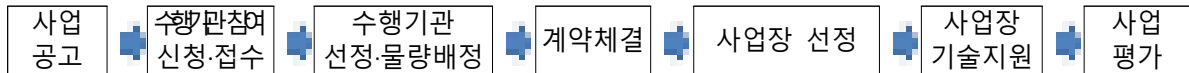
○ 건설업



○ 조선업, 제조업



민간기술지도(舊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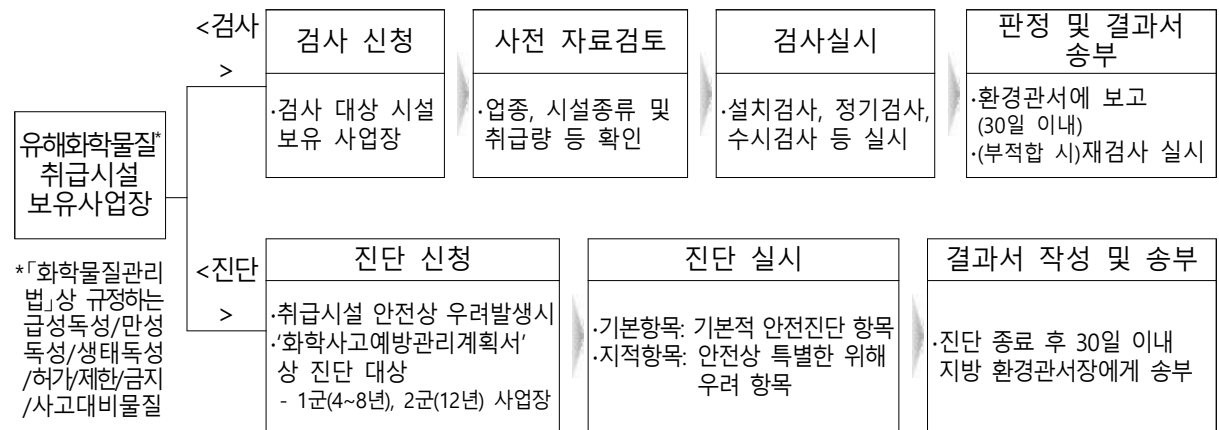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및 기술지도>

공정안전 관리단계	설치·시운전 단계	정상운전 단계	정비·보수 단계
사업 (수행)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공단)	이행상태 평가·점검 (고용노동부·공단)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공단)
세부내용	·(대상) 화학사고 고위험 7개 업종 및 51개 물질 규정량 이상 취급사업장 ·(내용)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사항 적정성 심 사·확인	·(대상)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완료(PSM등급 부여) 사업장 ·(내용) 공정안전보고서상 기술적· 관리적 사항의 지속적 현장 이 행여부 및 적정성	·(대상) 정비·보수 등 비정형 작 업 소요(정기·비정기 포함) 발 생 사업장 ·(내용) 사고발생 위험징후 수집·분 석을 통한 등급별 컨설팅 및 사후 기술지도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사고예방 기술지도>

사업 단계	대상사업장 선정	사업주(안전관리책임자) 교육	1차 기술지원	2차 기술지원	<개선완료시> 종결
세부 내용	·PSM 대상 외 화학 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	·사업내용 및 자체 위험요인발굴·개선방 안 등 교육 실시	·화재·폭발·누출 등의 화학사고 위험 요인 발굴 및 개선유도	·위험요인 개선 여부 확인 및 추가적 재해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유도	<미개선시> 고용노동부 보고·개선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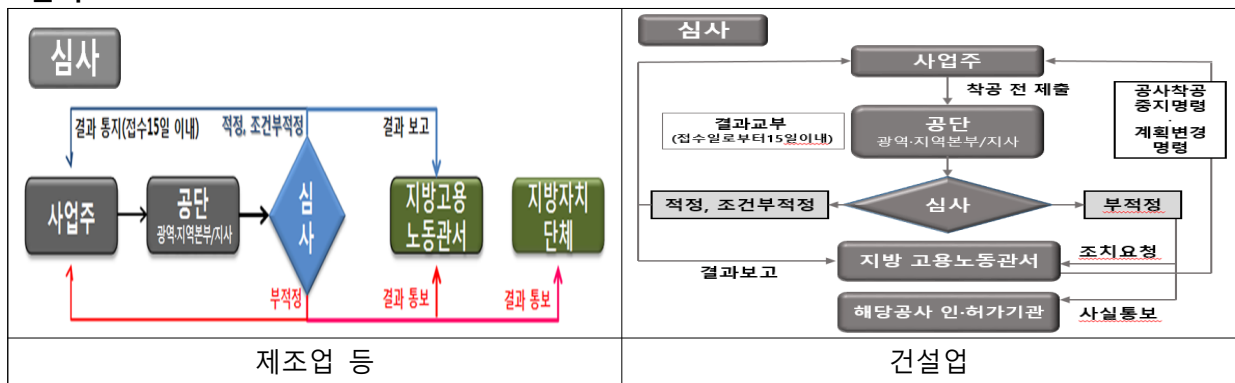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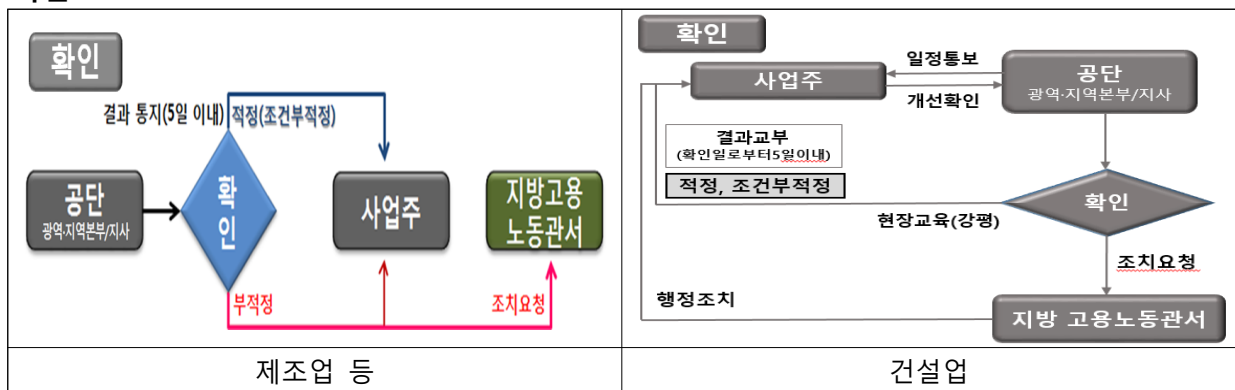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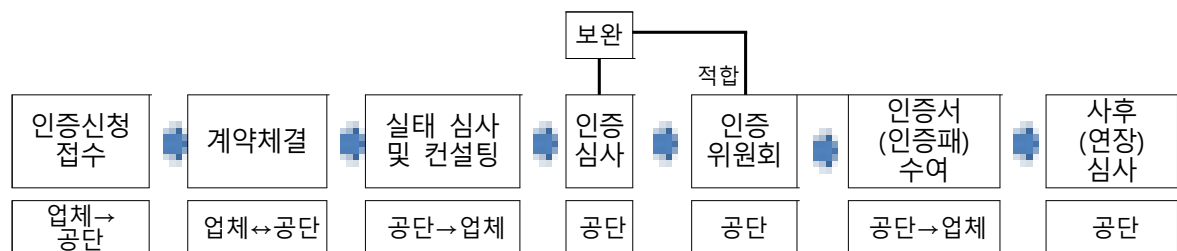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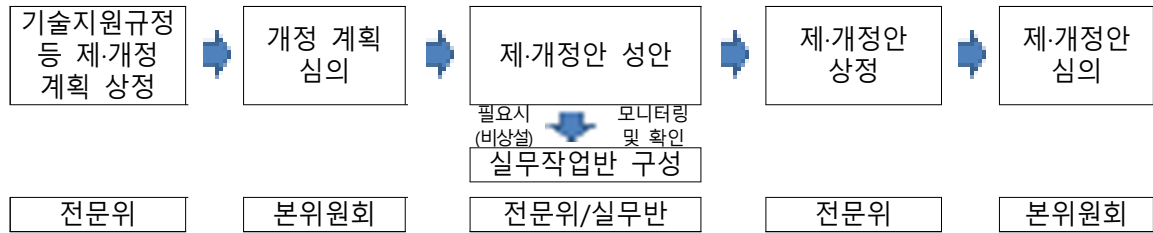
-확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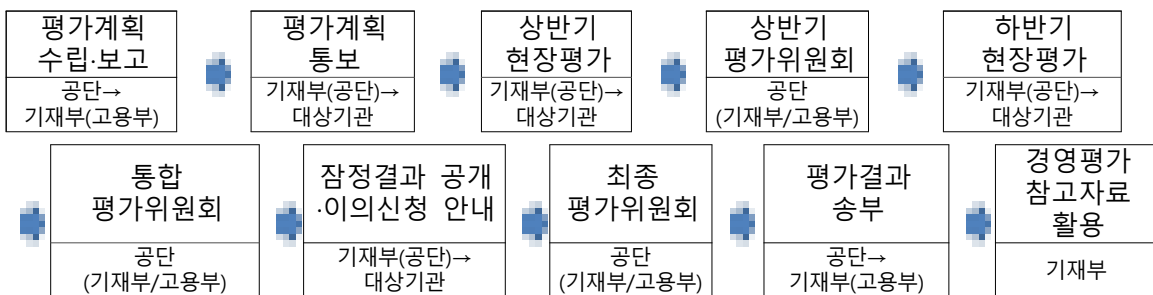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표준 제정>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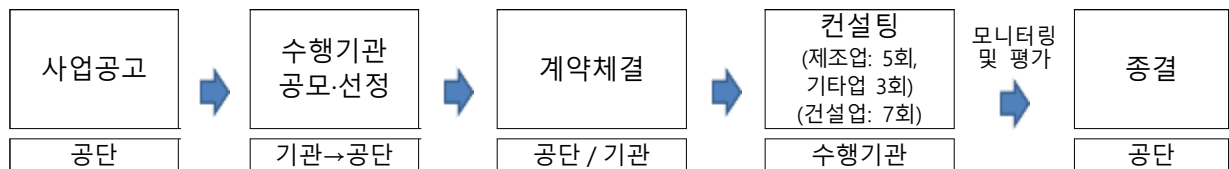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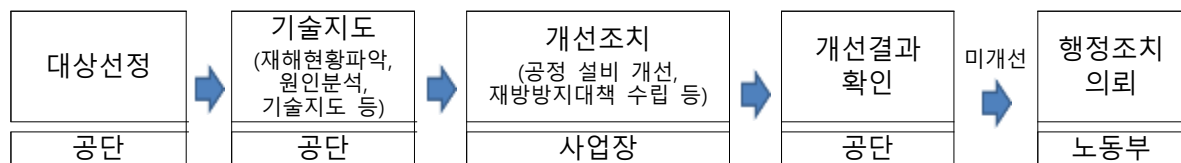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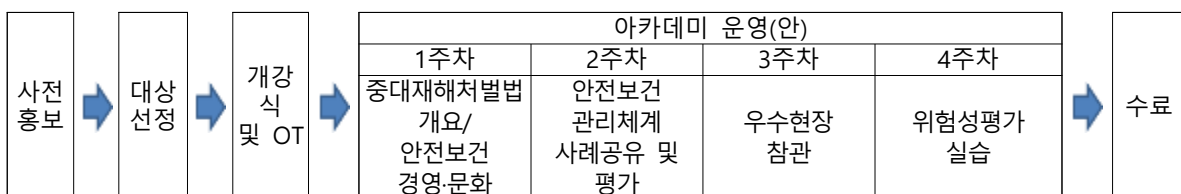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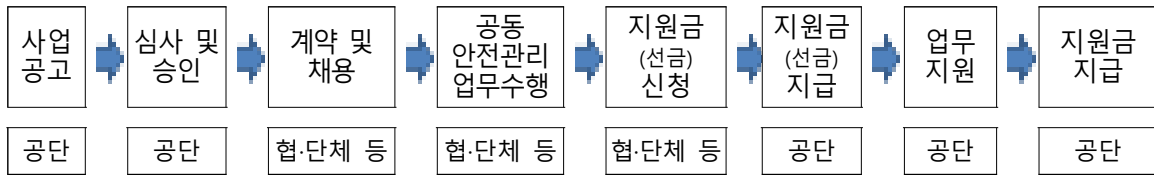
② 중상해재해 사업장 재발방지 신속지원



③ 건설업 아카데미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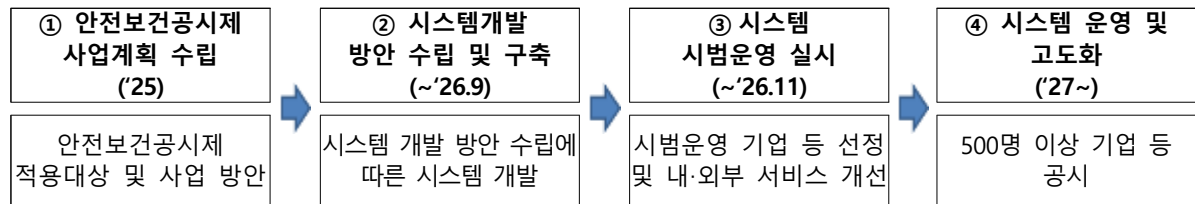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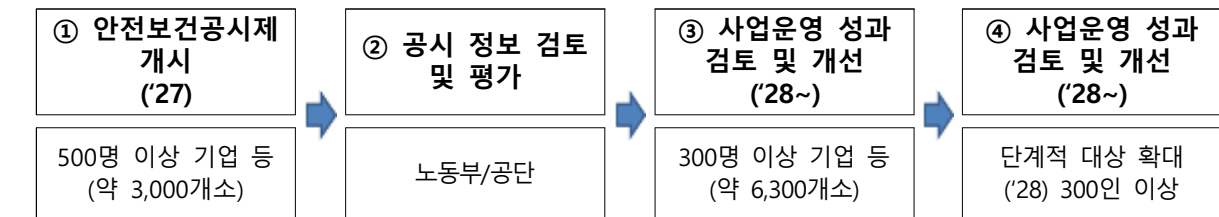


<기업 안전보건 공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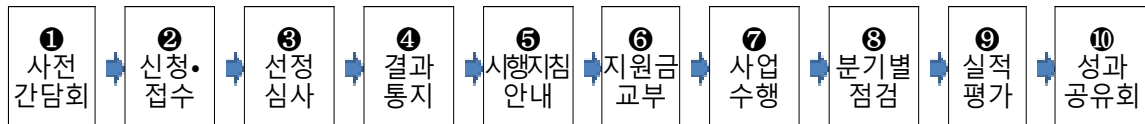
○ 시스템구축



○ 사업수행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6년 예산(안) 기후노동위 검토보고서
 - 300인 미만 기업까지 공시제 대상 확대 검토 필요
 - ⇒ 중대형 사업장 중심으로 우선 도입하고, 효과성 분석 등을 고려하여 확대 여부 검토
 - '24년 예산(안) 환노위 검토보고서
 - 민간위탁수행업체 및 컨설팅 인력 확보 방안, 사업주의 적극적 참여 유도 방안 필요
 - ⇒ '24년 수행기관 조기 확보 및 수행요원 교육 완료, 협·단체와 협업하여 사업 홍보 실시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의 목표 및 단가 산정 등 계획 산출 정확성 제고 필요
 - ⇒ 사업 매칭 결과를 분석하여 지원 유형별 목표물량 및 단가 산정 실시
 - '22년 결산 환노위 검토보고서
 - 안전진단 시 민간진단기관 선호요인을 파악하고, 공단의 안전진단 활성화 방안 강구
 - ⇒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자율진단 유도 및 홍보, 고위험 사업장 대상 적극 권고 실시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 3) 자체평가
 - '24 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평가결과 : 보통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91,386	-	91,386	91,386	88,922	97.3	97.3	-	2,464
2023	131,530	-	131,530	131,530	126,104	95.9	95.9	-	5,426
2024	158,255	-	158,255	158,255	148,410	93.8	93.8	-	9,845
2025	163,152	-	163,152	163,152	155,812	95.5	95.5	-	7,34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인건비 집행 잔액 및 「안전보건종합진단」 사업 신청 저조로 인한 미집행 등 사업수행경비 불용(2,464백만원)
2023	- (불용) 대중소 상생협력사업 사업장 참여 저조로 인한 지원금 미집행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수행 집행잔액 등(5,426백만원)
2024	- (불용) 영세협단체 참여 저조로 인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미집행액 등 사업수행경비 집행잔액(9,845백만원)
2025	- (불용) 영세협단체 참여 저조로 인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미집행액 등 사업수행경비 집행잔액(7,340백만원) - (이월) 국토부 합동조사 지연에 의한 고속철도 터널 붕괴사고 관련 전산해석 및 원인분석 용역 계약 종료일 미도래에 따른 사고 이월(22백만원)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4)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4152-3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예방정책관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2	351
명칭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기술지원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사업시행주체	산업안전기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6,124	6,324	6,324	6,017	6,017	△307	△4.9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6,318 (6,318)	6,318	6,124	-	194	6,324	6,324	6,324	6,034	-	290	6,017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3,169 (3,169)	3,169	3,098	-	71	3,175	3,175	3,175	3,021	-	154	-
· 방호장치보호구 안 전인증	2,170 (2,170)	2,170	2,094	-	76	2,170	2,170	2,170	2,094	-	76	-
· 산업용기계기구 안 전인증	239 (239)	239	221	-	18	239	239	239	211	-	28	-
· 안전인증	- (-)	-	-	-	-	-	-	-	-	-	-	5,277
· 안전검사 (現.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740 (740)	740	711	-	29	740	740	740	708	-	32	74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위험기계·기구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 및 인증하고 주기적 검사를 통해 제품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모델명·제조수량·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⑦ 안전인증의 신청 방법·절차, 제4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995~1996 상반기 : 산업재해예방 특별사업
- 1996 하반기~1999 :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대통령 보고)
- 2000~2004 :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1999. 12월)
- 2005~2009 :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4. 12월)
- 2010~2014 :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0. 3월)
- 2015~2019: 제4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5. 1월)
- 2020~2024: 제5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20. 5월)
- 2022.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국정과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88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855	7,859	6,318	6,324	6,017

- 기타 : 산재보험가입 사업장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안전인증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 공단	5,277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안전검사			740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구 분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6,324	6,017
(1)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3,175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2,871 (50,630건×56.7천원) · 제조과정조사 104 (2,000건×52.3천원) · QR code 플레이트 제작 200 (100,000대×2천원)	사업 이관 · 사업통합으로 인한 순감

구 분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2)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	2,170 ·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 1,691 (5,995건×282.1천원) · 제조과정조사 및 성능시험 163 (300건×543.8천원) · 보호구 안전인증 시험장비 316 (3종, 316백만원)	사업 이관 · 사업통합으로 인한 순감
(3) 산업용기계기구 안전인증	239 · 산업용기계기구 안전인증 239 (1,050건×228천원)	사업 이관 · 사업통합으로 인한 순감
(4) 안전인증	-	5,277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3,184 (52,630건×60.5천원) ·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 1,854 (6,295건×294.6천원) · 산업용기계기구 안전인증 239 (1,050건×228천원)
(5) 안전검사 (舊.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740 ·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740 (33,700건×21.97천원)	740 ·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740 (33,700건×21.97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추정산식 (또는 추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 지원사업장의 사고사망 만인율(‰) (하향지표) (단일지표)	목표	신규	0.54	0.50	0.45	0.42	전체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목표 비율*을 준용**하여 목표치 설정	○ 추정산식 : 지원사업장의 사고사망 만인율(‰) $=A/B \times 10,000$ A: 공단 지원 사업장 사고 사망자수(명) * 재해발생사업장 (중대재해조사 및 감독 대상 사업장 등) 자원실적은 제외 B: 공단 지원 사업장 근로자수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실적	신규	0.51	0.48	-	-	* '25. 0.31 → '26. 0.29 (△6.5%)		
	달성도	-	105.9	104.0	-	-	** '25 목표치 0.45에 6.6% 감소 반영하여 0.42 산출		
② 중상해사고 재해율(%) (하향지표)	목표	0.090	0.084	삭제	삭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실적	0.084	-	-	-	-			
	달성도	93.3	-	-	-	-			
③ 50인 미만 사업장 작업 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연계율(%)	목표	77.6	79.8	삭제	삭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실적	66.2	-	-	-	-			
	달성도	85.3	-	-	-	-			

* '25년 실적은 '26.3월말 집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56,323건 -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 6,826건 - 산업용기계기구 안전인증: 2,199건 -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39,929건
2023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57,723건 -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 7,005건 - 산업용기계기구 안전인증: 1,982건 -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37,327건
2024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52,943건 -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 6,973건 - 산업용기계기구 안전인증: 1,525건 -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38,952건
2025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50,692건 -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 5,754건 - 산업용기계기구 안전인증: 1,828건 -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38,447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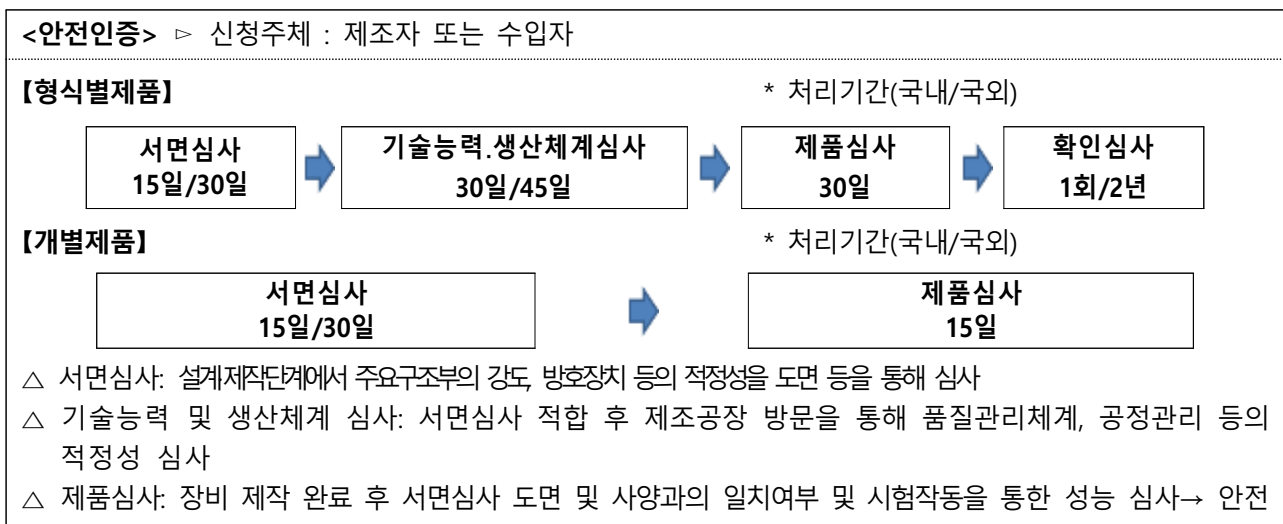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제품의 안전성 뿐만 아니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를 심사하는 안전인증을 통해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제품의 안전성능을 확보하고 수거 시험·현장조사 등 시장 감시기능 강화를 통하여 산업재해예방에 기여
-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안전검사 대상품에 대해 인증·검사 이력 추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상품 사각지대 제거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인증서 발행 - 형식별: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가 적합한 경우 형식별 표본 추출 심사 - 개 별: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 모든 모델 대상으로 심사 △ 확인심사: 사후관리 성격으로 안전인증 후 2년에 1회 이상 제조방문을 통해 공정관리 유지여부 및 제품 샘플링 검사
<자율안전확인신고> ▷ 신청주체 : 제조자 또는 수입자
신고서 접수 ➡ 제출서류 확인 ➡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 교부(15일) △ 제출서류 확인내용 : 제품설명서, 자율안전기준 충족서류, 각종 시험성적서
<제조과정조사>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공단 직접 조사
조사 대상 선정 (공단) ➡ 제조과정 불시 조사 (공단) ➡ 결과보고 (공단→고용노동부) ➡ 수거·파기 명령 등 결과조치 (고용노동부) △ 대상선정 : 사고다발기계, 불량제조·사용 의심사업장 등을 집중 선정 △ 불시조사 : 제조사업장 중심으로 조사하되, 불량제품 유통 의심 시 사용사업장 병행조사 △ 결과보고 : 불량제품 제조 또는 사용으로 확인된 경우 고용노동부 조치의뢰 △ 결과조치 : 불량 제품 파기 또는 개선 명령
<안전검사> ▷ 신청주체 :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소유자
검사 신청 (사업주) ➡ 검사 실시 (공단) ➡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발급 (공단)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 신청주체 :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소유자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사업장 자체 검사원 보유, 장비 보유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제3자에 의한 안전검사 대신 사업장 스스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공단에 승인
프로그램 작성 ➡ 심사 ➡ 인정서 발행(15일) ➡ 자체 검사 ➡ 재인정 심사 (2년주기) 사업주 공단 공단 사업주 사업주→공단 △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신청한 사업주가 공단으로부터 부적합 통지서를 교부 받은 경우 사업주는 안전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4년도 예산안 환노위 검토보고서 -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기준 및 인증 방안 마련 ⇒ 스마트 안전보건 기술·장비의 안전성·신뢰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성능을 인증받은 장비에 대해 지원하는 등 품질이 보장된 스마트 안전장비가 유통·확산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 '2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SPC 그룹의 식품용 혼합기 및 불리프팅 기계 끼임 사고 등 위험기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법 개정을 통해 혼합기·파쇄기·분쇄기 등 회전체 끼임 위험기계 사용 중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검사 대상 편입 ('26.6.26. 시행)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24 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평가결과 : 보통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7,855	-	7,855	7,855	7,623	97.0	97.0	-	232
2023	7,859	-	7,859	7,859	7,639	97.2	97.2	-	220
2024	6,318	-	6,318	6,318	6,124	96.9	96.9	-	194
2025	6,324	-	6,324	6,324	6,034	95.4	95.4	-	29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안전인증 및 검사 관련 장비구매 등 낙찰차액 및 사업수행경비 집행잔액 불용(232백만원)
2023	- (불용) 인증장비 구매 등 낙찰차액 및 수행경비 집행잔액(220백만원)
2024	- (불용) 인증장비 낙찰차액 및 사업수행경비 집행잔액(194백만원)
2025	- (불용) 인증장비 구매 낙찰차액 및 수행경비 집행잔액(290백만원)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5) 유해작업환경개선(4152-35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업보건 보상정책관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2	352
명칭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기술지원	유해작업환경개선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취약계층 고위험 환경 개선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산업보건정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해작업환경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산업보건정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유해작업 환경개선	80,764	75,526	75,526	75,526	75,032	△494	△0.7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81,276 (81,276)	81,276	80,764	-	512	75,526	75,526	75,526	75,238	-	288	75,032
· 취약계층 고위험 환경 개선지원	71,625 (71,625)	71,625	71,243	-	382	71,629	71,629	71,629	71,474	-	155	71,635
· 유해작업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3,351 (3,351)	3,351	3,226	-	125	3,897	3,897	3,897	3,764	-	133	3,397
·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위탁)	6,300 (6,300)	6,300	6,295	-	5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취약계층 고위험 환경 개선지원)
 - 50인 미만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보유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비용 지원
 - 50인 미만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건설일용직 근로자, 건강관리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비용 지원
- (유해작업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석면해체·제거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성평가, 교육, 컨설팅 지원 및 소규모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현장모니터링 지원
 - 영세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지의 화학물질 종류 및 노출수준을 확인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 화학물질 노출현황 상시 모니터링 체계 마련으로, 백혈병 등 직업성 암이 발생하는 전자산업에 대한 예방체계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도시설,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2. 안전보건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시설
 3.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전부 포함된 경우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국외에서 제조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자"라 한다)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경우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 방법·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① 제1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허가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허가대상물질의 제조·사용설비, 작업방법, 그 밖의 허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대상물질제조·사용자"라 한다)는 그 제조·사용설비를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대상물질제조·사용자의 제조·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준에 적합

하도록 제조·사용설비를 수리·개조 또는 이전하도록 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 방법으로 그 물질을 제조·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대상물질제조·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자체검사 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설비소유주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설비소유주 등은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기관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③ 건축물·설비소유주 등이 「석면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축물·설비소유주 등이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설비소유주 등에 대한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⑤ 기관석면조사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

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제2항에 따른 도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작업환경측정 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127조 및 제175조제5항제15호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7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그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뢰성을 평가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뢰성 평가의 방법·대상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항목·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주기·항목·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이하 "임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임시건강진단의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995~1996 상반기 : 산업재해예방 특별사업
- 1996 하반기~1999 :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대통령 보고)
- 2000~2004 :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1999. 12월)
- 2005~2009 :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4. 12월)
- 2010~2014 :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0. 3월)
- 2015~2019 : 제4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5. 1월)
- 2020~2024: 제5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20. 5월)
- 2022.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국정과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88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9,348	82,176	81,276	75,526	75,032

- 기타 : 산재보험가입 사업장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취약계층 고위험환경 개선지원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 공단	71,635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유해작업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3,397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구 분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 유해작업환경개선	75,526	75,032
	71,629	71,635
(1) 취약계층 고위험 환경 개선지원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32,122 (88,000개소×358,375원 + 측정비용 운영 및 관리 585)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31,968 (670,000명×46,400원 + 진단비용 운영 및 관리 880)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715 (650개소×1,100천원) ·직종별 건강진단 및 근골예방 비용지원 6,824 (47,000명×46,404원 + 4,600개소×974천원 + 운영관리 161백만원)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u>32,124</u> (88,000개소×358,375원 + 측정비용 운영 및 관리 <u>587</u>)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31,972 (670,000명×46,400원 + 진단비용 운영 및 관리 <u>884</u>)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715 (650개소×1,100천원) ·직종별 건강진단 및 근골예방 비용지원 6,824 (47,000명×46,404원 + 4,600개소×974천원 + 운영관리 161백만원)
(2) 유해작업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3,897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300 (1,835개소×164천원)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모니터링 724 (5,000개소×145천원)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1,713 (12,000건×142.7천원) ·화학물질 역량강화 프로그램 1,160 (500개소×2백만원) + 운영비 160	3,397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및 모니터링 1,024 (안전성평가) 1,835개소×164천원 (모니터링) 5,000개소×145천원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u>1,213</u> (<u>8,500건</u>×142.7천원) ·화학물질 역량강화 프로그램 1,160 (500개소×2백만원) + 운영비 16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 지원사업장의 사고사망 만인율(‰) (하향지표) (단일지표)	목표	신규	0.54	0.50	0.45	0.42	전체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목표 비율*을 준용**하여 목표치 설정	○ 측정산식 : 지원사업장의 사고사망 만인율(‰) =A/B×10,000 A: 공단 지원 사업장* 사고 사망자수(명) * 재해발생사업장 (중대재해조사 및 감독 대상 사업장 등 자원실적은 제외) B: 공단 지원 사업장 근로자수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실적	신규	0.51	0.48	-	-	* '25. 0.31 → '26. 0.29 (△6.5%) ** '25 목표치 0.45에 6.6% 감소 반영하여 0.42 산출		
	달성도	-	105.9	104.0	-	-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② 중상해사고 재해율(%) (하향지표)	목표	0.090	0.084	삭제	삭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실적	0.084	-	-	-	-			
	달성도	93.3	-	-	-	-			
③ 50인 미만 사업장 작업 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연계율(%)	목표	77.6	79.8	삭제	삭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실적	66.2	-	-	-	-			
	달성도	85.3	-	-	-	-			

* '25년 실적은 '26.3월말 집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 25,687백만원(66,807개소) -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 30,781백만원(455,882명)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신뢰성 평가 : 669개소 - 직종별 건강진단 및 근골예방 비용지원 : 42,496명, 4,514개소 -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관리: 22,184명 -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 2,026개소 -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개소) : 5,013개소 -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 1식(12,054건) -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위탁) : 70,343회
2023	-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 31,615백만원(75,419개소) -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 31,873백만원(514,682명)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신뢰성 평가 : 659개소 - 직종별 건강진단 및 근골예방 비용지원 : 39,861명, 4,556개소 -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 2,027개소 -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모니터링(개소) : 4,917개소 -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 1식(12,100건) -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위탁) : 70,843회
2024	-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 75,016개소 -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 501,835명 -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 670개소 - 직종별 건강진단 및 근골예방 비용지원 : 33,118명, 4,602개소 -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 1,971개소 -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모니터링(개소) : 5,299개소 -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위탁) : 72,069회
2025	-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 74,651개소 -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 481,170명 -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 658개소 - 직종별 건강진단 및 근골예방 비용지원 : 41,860명, 4,600개소 -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 1,721개소 -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모니터링(개소) : 4,974개소 -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 1식(11,177건) - 화학물질 역량강화 프로그램 : 1식(499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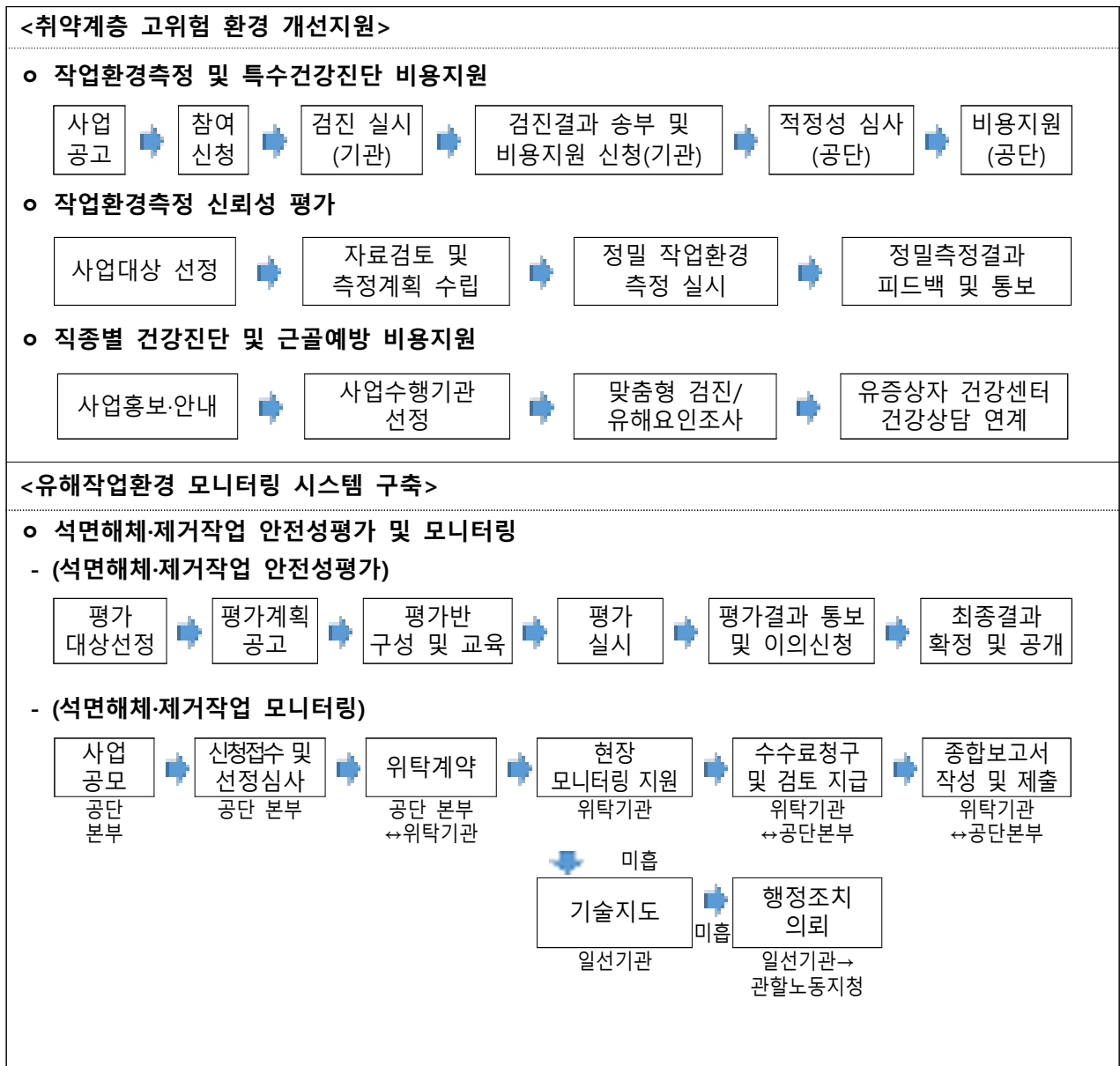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소규모 사업장의 측정·특검 제도이행 비용지원 대상확대 및 현장 참여형 예방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책 사각지대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에 기여
- 석면해체제거업체 평가·관리 및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한 석면에 의한 암 예방 기여
- 건강보호 체계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지원기반 강화를 통한 양질의 근로자 건강보호 서비스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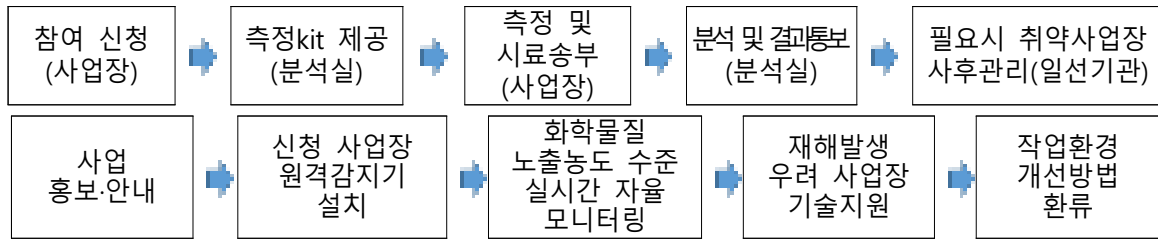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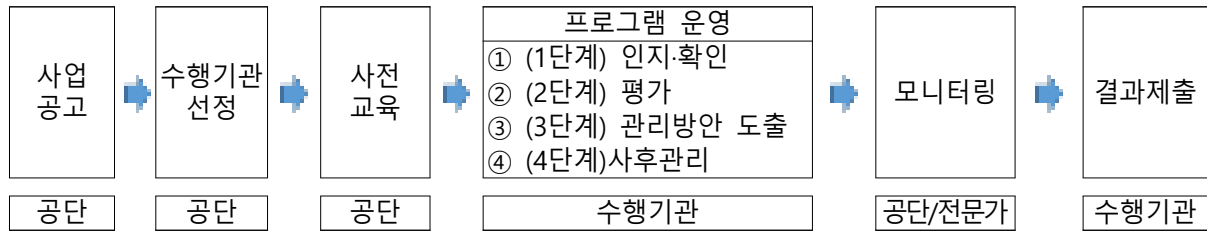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기



○ 화학물질 역량강화 프로그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6년 예산안 기후노동위 예비검토보고서

- 기존에 비용지원 받은 사업장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장에서도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도록 독려 필요

⇒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신규 사업장의 제도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24 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평가결과 : 보통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79,348	-	79,348	79,348	76,290	96.1	96.1	-	3,058
2023	82,176	-	82,176	82,176	80,441	97.9	97.9	-	1,735
2024	81,276	-	81,276	81,276	80,764	99.4	99.4	-	512
2025	75,526	-	75,526	75,526	75,238	99.6	99.6	-	28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코로나19 감염자 급증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기한 연장(1개월)으로, 측정대상기관 수검물량 가중에 따른 수수료 미집행 등(3,058백만원)
2023	- (불용) 근골예방 물품지원 조달구매 낙찰차액 및 경비 집행잔액(1,735백만원)
2024	- (불용) 근골예방 지원물품 낙찰차액 및 사업수행경비 집행잔액 등(512백만원)
2025	- (불용) 산업보건사업 수행장비 구매 낙찰차액 및 사업수행경비 집행잔액(288백만원)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6) 근로자건강보호(4152-35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업보건 보상정책관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2	353
명칭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기술지원	근로자건강보호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근로자 건강센터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업무상질병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산업보건정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및 민간기관 검사판정능력 평가 (舊 정도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산업보건정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산업보건정책과
		안전보건감독국
	사업시행주체	화학사고예방조사과
MSDS 제출 및 비공개 정보심사	소관부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실·국·과(팀)
		안전보건감독국
	사업시행주체	화학사고예방조사과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집중관리	소관부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실·국·과(팀)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사업시행주체	산업보건정책과
직업성질병 감시 및 수사지원	소관부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실·국·과(팀)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사업시행주체	산업보건정책과
		고용노동부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근로자 건강보호	43,145	45,295	45,295	47,151	49,211	3,916	8.6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44,387	44,477	43,145	-	1,332	45,295	45,295	45,295	44,292	-	1,003	49,211
· 근로자건강센터	22,060	22,060	21,758	-	302	22,963	22,963	22,963	22,705	-	258	25,023
· 업무상질병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3,373	3,373	3,243	-	130	3,374	3,374	3,374	3,223	-	151	4,921

	2024					2025(2025.12월 말)						2026 계 획
	계 획 액 (수 정)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이 월 액	불 용 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이 월 액	불 용 액	
						당 초	수 정					
· 직업성질환 역학 조사 및 민간기관 검 사판정능력 평가 (舊 정도관리)	2,888	2,888	2,712	-	176	2,888	2,888	2,888	2,568	-	320	2,888
· 화학물질 유해 위험성 평가	3,498	3,498	3,347	-	151	3,502	3,502	3,502	3,423	-	79	3,510
· MSDS 제출 및 비공개정보 심사	1,066	1,066	1,037	-	29	1,066	1,066	1,066	1,029	-	37	1,249
·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집중관리	3,840	3,840	3,584	-	256	3,840	3,840	3,840	3,840	-	-	3,958
· 직업성 질병 감시 및 수사지원	7,662	7,752	7,464	-	288	7,662	7,662	7,662	7,504	-	158	7,66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근로자건강센터) 건강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병 예방 상담, 직업적 트라우마 상담 및 기초 직업건강서비스 제공
- (업무상질병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산업보건 유해·위험요인 집중관리가 필요한 취약분야 개입(대응) 및 지원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 관리체계 조기 안착 유도
-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및 민간기관 검사판정능력 평가)
 - 직업병발생 또는 질병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업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병에 대한 원인규명 및 예방대책 제시
 - 특수·진폐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석면조사기관 분석능력 신뢰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평가 실시
-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 MSDS 정보구축 및 제공,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화학물질 물리적 위험성 평가 등
- (MSDS 제출 및 비공개정보 심사) MSDS 제출 의무화 및 영업비밀과 관련된 물질정보 일부 비공개 승인제도 시행에 따른 화학물질제품 정보관리 및 심사업무 위탁수행
-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집중관리) 장시간 근로·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심층 건강진단·집중관리를 통해 업무상질병 예방 기여
- (직업성 질병 감시 및 수사지원) 질병의 업무기인성 파악 및 직업성질환 발생 사업장 유해환경개선, 고용부 재해조사 시 전문적 조언을 제시할 직업병안심센터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도시설,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2. 안전보건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시설
3.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관리)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위험성 수준별로 유해인자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평가대상 유해인자의 선정기준, 유해성·위험성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평가 결과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전부 포함된 경우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국외에서 제조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자"라 한다)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경우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 방법·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① 제110조제1

항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이하 "대체자료"라 한다)으로 적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의 대체 필요성, 대체자료의 적합성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자가 그 유효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날부터 5년 단위로 그 기간을 계속하여 연장승인할 수 있다.

⑥ 신청인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에 관한 결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은 화학물질이 제1항 단서에 따른 화학물질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⑨ 제5항에 따른 연장승인과 제8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거나 직업성 질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제1항에 따라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2.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3. 산업보건의
 4. 근로자대표
 5. 제165조제2항제38호에 따라 제14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疫學調査) 실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① 제1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허가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허가대상물질의 제조·사용설비, 작업방법, 그 밖의 허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대상물질제조·사용자"라 한다)는 그 제조·사용설비를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대상물질제조·사용자의 제조·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사용설비를 수리·개조 또는 이전하도록 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그 물질을 제조·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대상물질제조·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자체검사 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제2항에 따른 도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작업환경측정기관"이라 한다)에

-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 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 ⑥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127조 및 제175조제5항제15호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항목·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

-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애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 (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주기·항목·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이하 "임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임시건강진단의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역학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요구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역학조사 참석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역학조사의 방법·대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 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996 하반기~1999: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대통령 보고)
- 2000. 9월: 국무총리실 「안전관리종합대책」 (국무회의 보고)
- 2000~2004: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1999.12월)
- 2005~2009: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4.12월)
- 2010~2014: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0. 3월)
- 2015~2019: 제4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5. 1월)
- 2020~2024: 제5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20. 5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88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1,825	43,890	44,387	45,295	49,211

- 기타 : 산재보험가입 사업장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 수혜자 : 산재보험가입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근로자건강센터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 공단	25,023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업무상질병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4,921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및 민간기관 검사판정 능력 평가 (舊 정도관리)			2,888		
화학물질 유해 위험성 평가			3,510		
MSDS 제출 및 비공개정보심사			1,249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집중관리			3,958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구 분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 근로자건강보호	45,295	49,211
	22,963	25,023
(1) 근로자건강센터	· 근로자건강센터 15,768 (24개소×657백만원) · 트라우마센터 2,810 (23개소×122.2백만원) · 분소 4,325 (22개소×196.6백만원) · 신규 트라우마센터 60 (1개소×60백만원)	· 근로자건강센터 15,768 (24개소×657백만원) · 트라우마센터 2,870 (24개소×122.2백만원) · 분소 4,325 (22개소×196.6백만원) · 신규 근로자건강센터(트라우마센터) 2,060 (2개소×1,030백만원)
(2) 업무상질병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3,374 · 질식재해예방 1,028 (기술지원 2,000회×514천원) · 중독사고예방 1,254 (7,500회×167.2천원) · 취약근로자 1,092	4,921 · 질식재해예방 1,030 (기술지원 2,000회×515천원) · 중독사고예방 1,254 (7,500회×167.2천원) · 취약근로자 2,637

구 분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기술지원 6,500회×167.5천원)	(기술지원 6,500회×167.5천원) (물품지원 1,545백만원)
(3)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및 민간기관 검사판정능력 평가 (舊 정도관리)	2,888 · 개별역학조사 1,185 (69건×17.2백만원) · 집단 역학조사 570 (5건×114백만원) · 정도관리 1,133(수시)	2,888 · 개별역학조사 1,185 (69건×17.2백만원) · 집단 역학조사 570 (5건×114백만원) · 검사판정능력 평가 1,133(수시)
(4)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	3,502 ·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 932 (1,050종, 117건) · 만성흡입독성시험 2,570	3,510 ·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 932 (1,050종, 117건) · 만성흡입독성시험 2,578
(5) MSDS 제출 및 비공개정보 심사	1,066 · MSDS 심사 1,066 (1식×1,066백만원)	1,249 · MSDS 심사 1,249 (1식× 1,249 백만원)
(6)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집중관리	3,840 · 심층진단 3,120 (20천명×156천원) · 초고위험군 관리 720 (3,600명×200천원)	3,958 · 심층진단 3,198 (20.5천명×156천원) · 초고위험군 관리 760 (3,800명×200천원)
(7) 직업성 질병 감시 및 수사지원	7,662 · 직업성 질병 감시 및 수사지원 7,612 (6개소×1,268백만원) · 데이터베이스 전산망 유지관리 50	7,662 · 직업성 질병 감시 및 수사지원 7,612 (6개소×1,268백만원) · 데이터베이스 전산망 유지관리 5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추정산식 (또는 추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 지원사업장의 사고사망 만인율(‰) (하향지표) (단일지표)	목표	신규	0.54	0.50	0.45	0.42	전체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목표 비율*을 준용**하여 목표치 설정	○추정산식 : 지원사업장의 사고사망 만인율(‰) =A/B×10,000 A: 공단 지원 사업장* 사고 사망자수(명) * 재해발생사업장 (중대재해조사 및 감독 대상 사업장 등) 자원실적은 제외 B: 공단 지원 사업장 근로자수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실적	신규	0.51	0.48	-	-	* '25. 0.31 → '26. 0.29 (△6.5%) ** '25 목표치 0.45에 6.6% 감소 반영하여 0.42 산출		
	달성도	-	105.9	104.0	-	-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② 중상해사고 재해율(%) (하향지표)	목표	0.090	0.084	삭제	삭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실적	0.084	-	-	-	-			
	달성도	93.3	-	-	-	-			
③ 50인 미만 사업장 작업 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연계율(%)	목표	77.6	79.8	삭제	삭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실적	66.2	-	-	-	-			
	달성도	85.3	-	-	-	-			

* '25년 실적은 '26.3월말 집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근로자건강센터 및 분소: 23개소/21개소(207,697명) - 산업보건이슈 감시 및 대응: 16,519개소 -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69건 - 민간기관 정도관리: 7회 -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 1,281종/건 - 만성흡입독성시험시설 운영: 1식 - MSDS 제출 및 비공개 정보심사 : 1식 - 옥외 근로자마스크지원 : 287만개 - 감정노동근로자 건강보호 컨설팅 : 2,001개소 - 직업성 질병 감시 및 수사지원 : 6개소
2023	- 근로자건강센터 및 분소: 23개소/22개소(243,193명) - 산업보건이슈 감시 및 대응: 17,781개소 -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74건 - 민간기관 정도관리: 수시(7회) -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 1,221종/건 - 만성흡입독성시험시설 운영: 1식 - MSDS 제출 및 비공개 정보심사 : 1식 - 옥외 근로자마스크지원 : 228만개 - 감정노동근로자 건강보호 컨설팅 : 1,039개소 -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관리 : 20,234명 - 직업성 질병 감시 및 수사지원 : 6개소
2024	- 근로자건강센터 및 분소: 24개소/22개소(248,094명) - 업무상질병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 20,293개소 -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58건 - 민간기관 정도관리 : 수시 -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 1,228종/건 - 만성흡입독성시험시설 운영: 1식 - MSDS 제출 및 비공개 정보심사 : 1식 -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집중관리: 22,215명 - 직업성 질병 감시 및 수사지원 : 6개소
2025	- 근로자건강센터 및 분소: 24개소/22개소(252,339명) - 업무상질병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 16,460개소 -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45건 - 민간기관 정도관리 : 수시 -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 1,306종/건 - 만성흡입독성시험시설 운영: 1식 - MSDS 제출 및 비공개 정보심사 : 1식 -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집중관리: 23,624명 - 직업성 질병 감시 및 수사지원 : 6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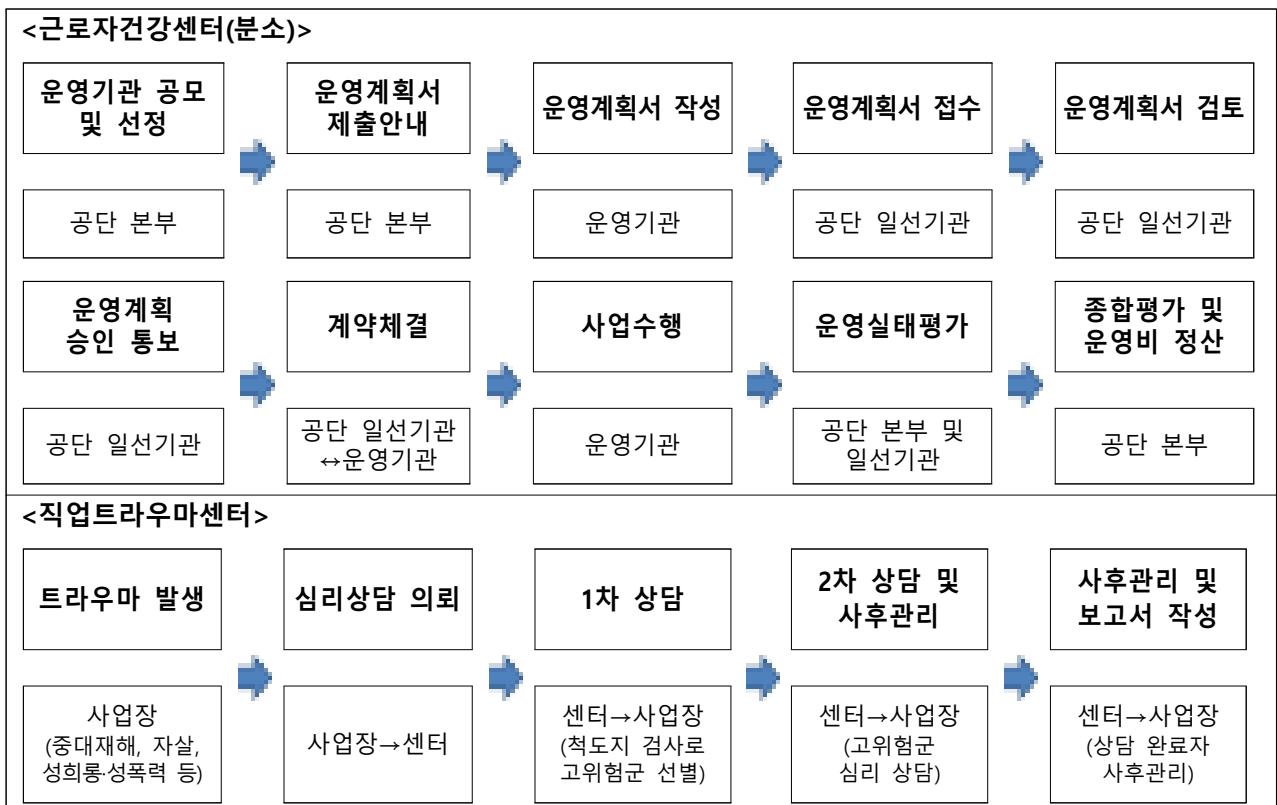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직업건강서비스 소외지역 근로자 대상 건강상담 서비스 강화를 통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업무상질병 예방에 기여
- 트라우마 등의 새로운 건강이슈와 직업병에 대한 적기 개입·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 집행 효과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산업보건전문기관 질 관리 및 사전예방적 역학조사 등을 통한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 산업현장 유통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자발적 공개율 향상, 화학물질정보 투명성 확대를 통한 MSDS 신뢰성 제고 및 현장 작동성 강화
- 유통되는 화학물질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차원의 화학물질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통해 화학물질로 인한 산재 발생 시 즉각적 대응을 및 사전예측을 통한 예방활동 가능
- 장시간 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과로성 업무상질병 예방에 기여
-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신속대응을 통해 집단발병 사례를 막고, 필요시 노동부 및 공단과 함께 현장에 방문하여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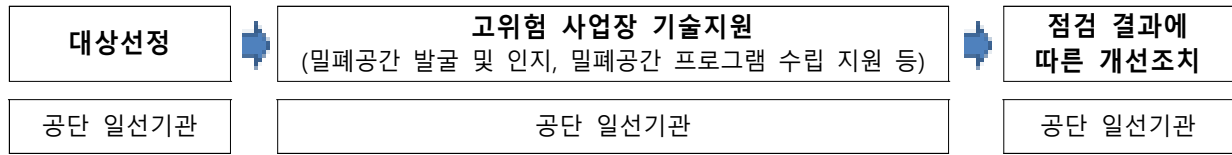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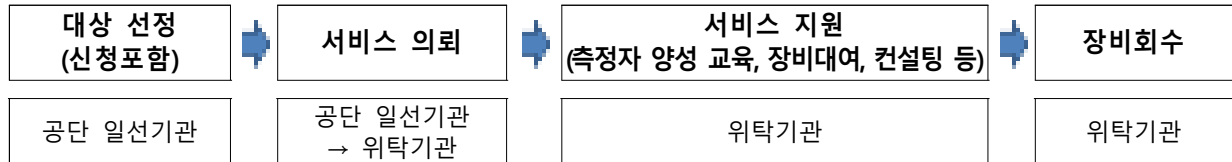
<업무상질병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 질식사고 예방 현장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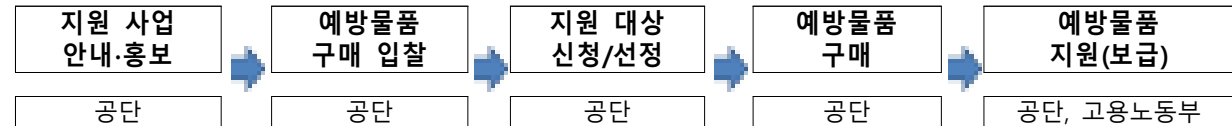
- 질식사고 예방 기술 지원(직접지원)



- One-Call 서비스(위탁지원)



○ 폭염 취약근로자 건강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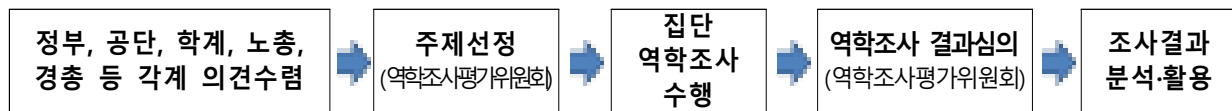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 개별 역학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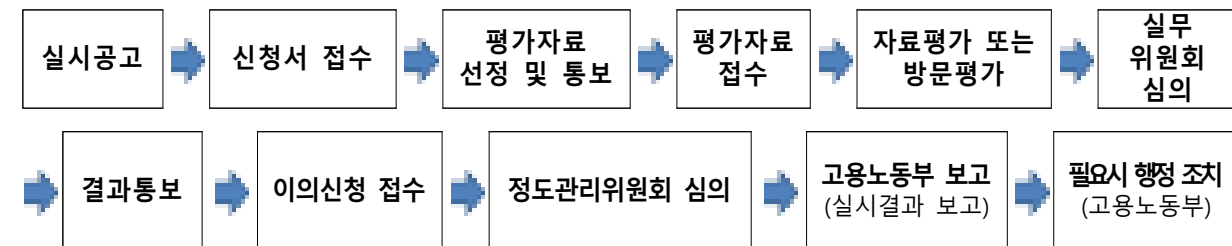


○ 집단 역학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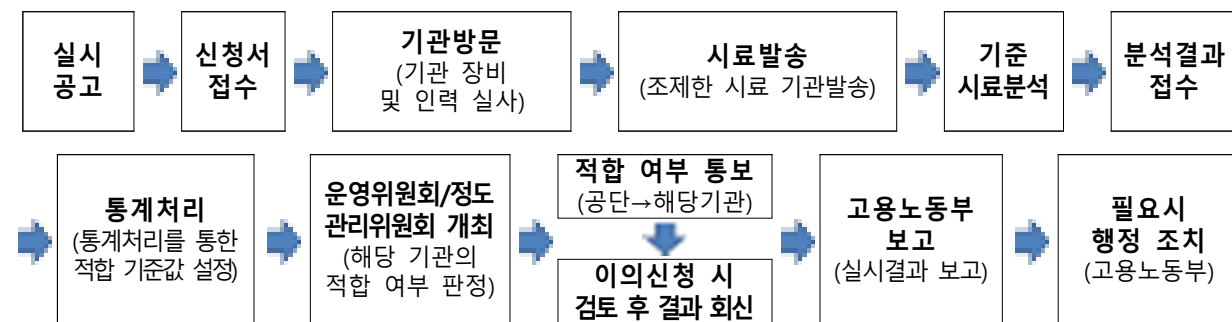


○ 민간기관 정도관리

- 특수·진폐 건강진단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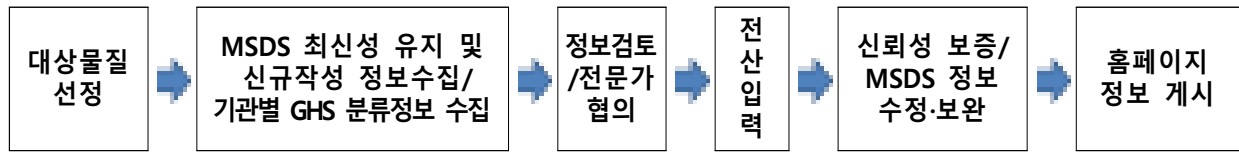


-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석면조사기관, 특수건강진단(분석정도관리 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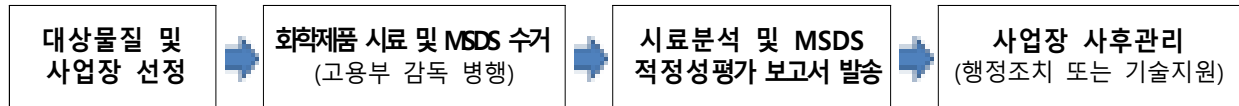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

○ MSDS 정보구축 및 제공



○ MSDS 적정성 조사 및 시험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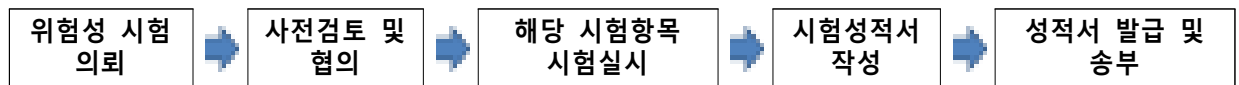
○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평가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및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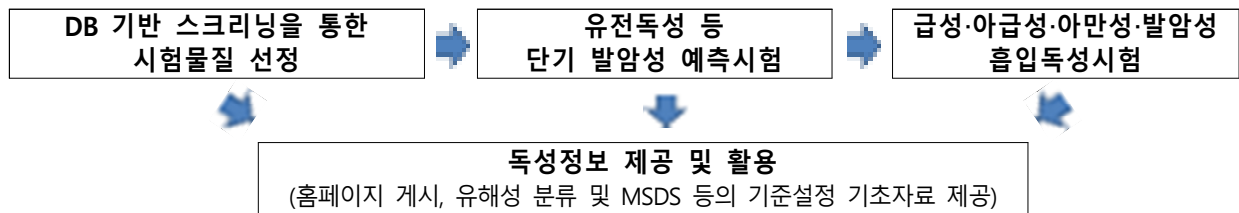
○ 화학물질 물리적 위험성 및 안전성 시험



○ 화학사고 예방 및 원인규명 위험성평가



○ 만성흡입독성 시험시설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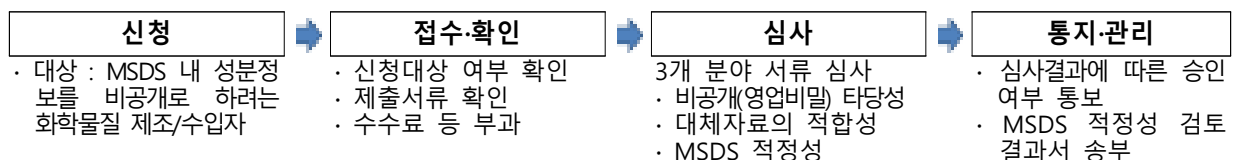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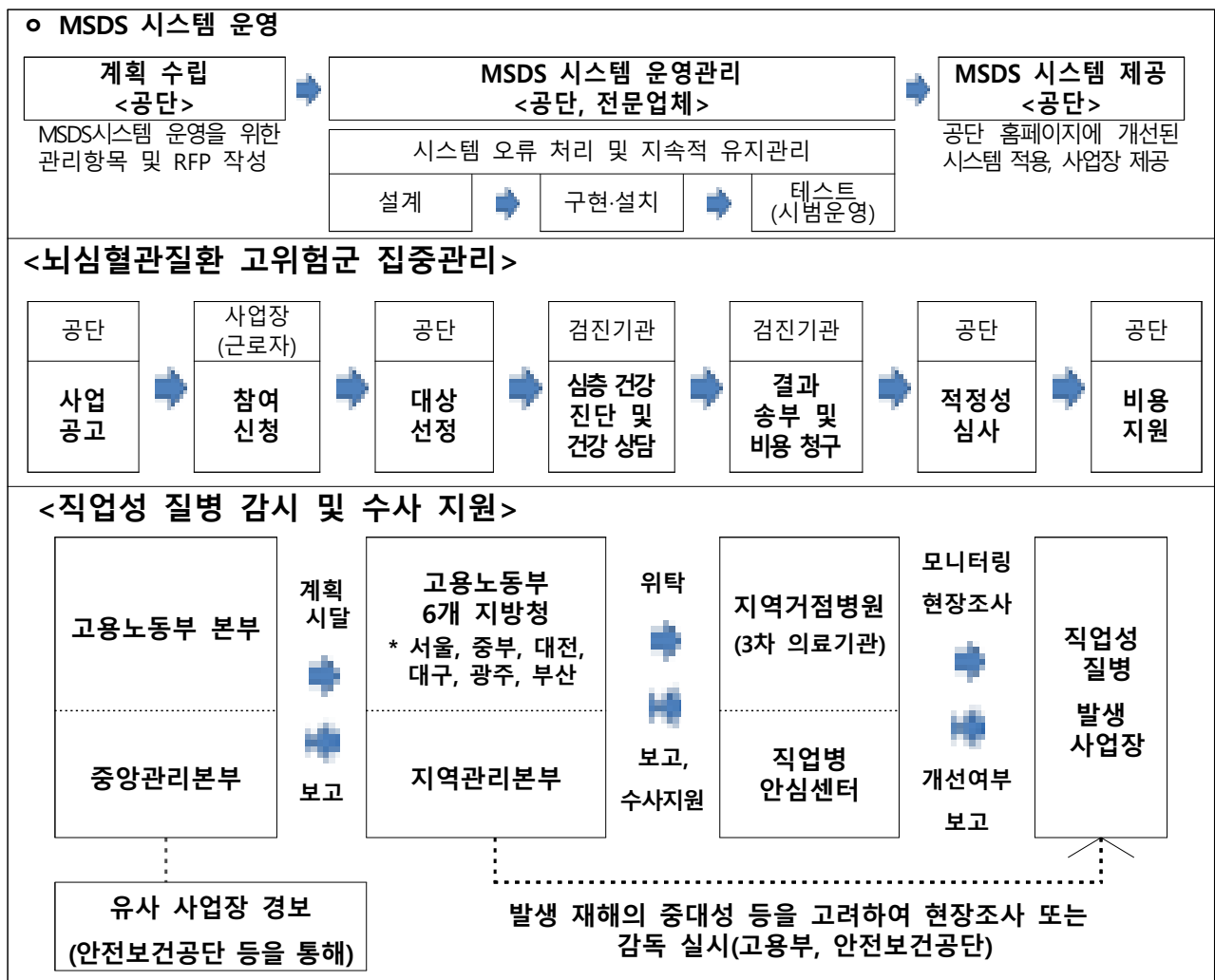
<MSDS 제출 및 비공개 정보심사>

○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심사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사항 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 3) 자체평가
 - '24 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평가결과 : 보통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41,825	-	41,825	41,825	40,111	95.9	95.9	-	1,714
2023	43,890	-	43,890	43,890	43,043	98.1	98.1	90	757
2024	44,387	-	44,387	44,477	43,145	97.2	97.0	-	1,332
2025	45,295	-	45,295	45,295	44,292	97.8	97.8	-	1,00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근로자건강센터 운영경비 정산잔액 등 사업수행경비 집행잔액 (1,714백만원)
2023	- (불용) 근로자건강센터 운영경비 정산잔액 등 사업수행경비 집행잔액 (757백만원)
2024	- (불용) 근로자건강센터 운영경비 정산잔액, 용역수행잔금 등 사업수행경비 집행잔액(1,332백만원)
2025	- (불용) 근로자건강센터 운영경비 정산잔액, 용역수행잔금 등 사업수행경비 집행잔액(1,003백만원)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7)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4152-35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 정책관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2	355
명칭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기술지원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정책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386	386	386	386	386	0	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386	386	381	-	5	386	386	386	383	-	3	386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243	243	242	-	1	243	243	243	241	-	2	243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143	143	139	-	4	143	143	143	142	-	1	14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원청의 재해에 하청 재해도 포함하여 산정·공표함으로써,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 (공공기관 안전수준 평가)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을 평가, 정부 경영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안전한 공공일터 기반 조성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
 2. 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防護裝置)·보호구(保護具) 등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
 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 작성 및 지도·감독
 5.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6.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
 7. 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8.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9. 안전·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10.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 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

- 2015 ~ 2019 : 제4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5. 1월)
- 2016. 6월 : 여·야·정 합의
- 2017. 4월 : 개정 법률안 공포 및 시행(산안법 제14788호)
- 2020. 1월 : 개정 법률안 공포 및 시행(산안법 제16272호)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 2019.3월 :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발표(관계부처 합동)
- 2019.3월 :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기재부)
- 2019.3월 :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발표(기재부)
- 2019.9월 :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고용부)
- 2019.10월 : 공공기관 경영편람 수정(기재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19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05	405	386	386	38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86,000	○ 일반수용비(210-01) : 8,422천원 가.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일반운영비 (4,702천원) · 사업 설명자료 제작비 : 600,000원×49장=2,940천원 · 전문가 검토 회의 참석비 : 150,000원×6명×2회=1,800천원 · 단수조정 : 38천원 나. 공공기관 안전수준 평가 일반운영비(3,720천원) · 설명회 안내자료 제작 : 50개×4,000원×10부=2,000천원 · 평가심의 위원회 위촉수당 : 150,000원×6명×2회=1,800천원 · 단수조정 : 8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90천원 가.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190천원) · 안내문 등 발송비: 500원×380개소=190천원 ○ 임차료(210-07) : 1,600천원 가.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600천원) · 사업주 간담회 장소 임차료 : 300,000원×2회=600천원 나. 공공기관 안전수준 평가 일반운영비 (1,000천원) · 설명회, 워크숍 장소 임차 : 600,000×1회= 600천원 · 평가계획 평가심의위원회 회의 : 200,000원×2회=400천원	386,000	○ 일반수용비(210-01) : 8,422천원 가.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일반운영비 (4,702천원) · 사업 설명자료 제작비 : 600,000원×49장=2,940천원 · 전문가 검토 회의 참석비 : 150,000원×6명×2회=1,800천원 · 단수조정 : 38천원 나. 공공기관 안전수준 평가 일반운영비(3,720천원) · 설명회 안내자료 제작 : 50개×4,000원×10부=2,000천원 · 평가심의 위원회 위촉수당 : 150,000원×6명×2회=1,800천원 · 단수조정 : 8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90천원 가.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190천원) · 안내문 등 발송비: 500원×380개소=190천원 ○ 임차료(210-07) : 1,600천원 가.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600천원) · 사업주 간담회 장소 임차료 : 300,000원×2회=600천원 나. 공공기관 안전수준 평가 일반운영비 (1,000천원) · 설명회, 워크숍 장소 임차 : 600,000×1회= 600천원 · 평가계획 평가심의위원회 회의 : 200,000원×2회=400천원
	○ 국내여비(220-01) : 368,288천원 가.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232,408천원)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현황 점검지도 출장 여비 : 50,000원×380개소=19,000천원 · 이의제기 사업장 현장확인 출장 여비 : 50,000원×42,681개소×20%×0.5=213,405천원 · 경비조정 : 3천원 나. 공공기관 안전수준 평가 여비 (135,800천원) · 기관평가 실시(본사) (11,900천원) -관내 : 20,000*170개소*2일*70%= 4,760천원 -관외 : 70,000*170개소*2일*30%= 7,140천원 · 기관평가 실시(현업 및 발주공사현장) (877920천원) -관내 : 20,000원*3,540개소*70%= 49,560천원 -관외 : 78,000원*3,540개소*30%= 74,34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7,500천원 가.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5,100천원) · 사업 설명회 소요경비 : 100,000원×49지방관서=4,900천원 · 경비조정 : 200천원 나. 공공기관 안전수준 평가 일반운영비 (2,400천원) · 평가설명회 개최 : 200,000원×3개분야= 600천원 · 평가자 사전등급결정 회의 개최 : 150,000원×3개분야×4회 = 1,800천원		○ 국내여비(220-01) : 368,288천원 가.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232,408천원)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현황 점검지도 출장 여비 : 50,000원×380개소=19,000천원 · 이의제기 사업장 현장확인 출장 여비 : 50,000원×42,681개소×20%×0.5=213,405천원 · 경비조정 : 3천원 나. 공공기관 안전수준 평가 여비 (135,800천원) · 기관평가 실시(본사) (11,900천원) -관내 : 20,000*170개소*2일*70%= 4,760천원 -관외 : 70,000*170개소*2일*30%= 7,140천원 · 기관평가 실시(현업 및 발주공사현장) (877920천원) -관내 : 20,000원*3,540개소*70%= 49,560천원 -관외 : 78,000원*3,540개소*30%= 74,34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7,500천원 가.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5,100천원) · 사업 설명회 소요경비 : 100,000원×49지방관서=4,900천원 · 경비조정 : 200천원 나. 공공기관 안전수준 평가 일반운영비 (2,400천원) · 평가설명회 개최 : 200,000원×3개분야= 600천원 · 평가자 사전등급결정 회의 개최 : 150,000원×3개분야×4회 = 1,8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 지원사업장의 사고사망 만인율(‰) (하향지표) (단일지표)	목표	신규	0.54	0.50	0.45	0.42	전체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목표 비율*을 준용**하여 목표치 설정	○ 측정산식 : 지원사업장의 사고사망 만인율(‰) = A/B × 10,000 A: 공단 지원 사업장* 사고 사망자수(명) * 재해발생사업장 (중대재해조사 및 감독 대상 사업장 등) 자원실적은 제외 B: 공단 지원 사업장 근로자수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실적	신규	0.51	0.48	-	-	* '25. 0.31 → '26. 0.29 (△6.5%)		
	달성도	-	105.9	104.0	-	-	** '25 목표치 0.45에 6.6% 감소 반영하여 0.42 산출		
② 중상해사고 재해율(%) (하향지표)	목표	0.090	0.084	삭제	삭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실적	0.084	-	-	-	-			
	달성도	93.3	-	-	-	-			
③ 50인 미만 사업장 작업 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연계율(%)	목표	77.6	79.8	삭제	삭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실적	66.2	-	-	-	-			
	달성도	85.3	-	-	-	-			

* '25년 실적은 '26.3월말 집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지도관리 사업장 수: 380개소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171개소
2023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지도관리 사업장 수: 380개소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126개소
2024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지도관리 사업장 수: 380개소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108개소
2025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지도관리 사업장 수: 380개소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105개소

③ 향후(2026년 이후) 기대효과 : 원청과 하청의 산업재해 통합관리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책임 강화 및 공공기관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공공 일터 구성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405	-	405	405	392	96.8	96.8	-	13
2023	405	-	405	405	404	99.8	99.8	-	1
2024	386	-	386	386	381	98.7	98.7	-	5
2025	386	-	386	386	383	99.2	99.2	-	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집행잔액으로 인한 13백만원 불용
2023	- 집행잔액으로 인한 1백만원 불용
2024	- 집행잔액으로 인한 5백만원 불용
2025	- 집행잔액으로 인한 3백만원 불용

사 업 명						
(18) 안전보건문화정착(4154-3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		080	08E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4	350
명칭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문화확산	안전보건문화정착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안전보건교육 및 미디어개발	소관부처	실·국·과(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 안전문화협력팀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교육과정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 안전문화협력팀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문화 선진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 안전문화협력팀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안전보건 문화정착	32,366	35,674	35,674	34,506	36,376	702	2.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32,925	32,925	32,366	-	559	35,674	35,674	35,674	35,166	-	508	36,376
· 안전보건교육 및 미디어개발	20,112	20,112	19,714	-	398	22,040	22,040	22,040	21,693	-	347	21,363
· 전문교육과정운영	4,313	4,313	4,248	-	65	5,134	5,134	5,134	5,005	-	129	5,043
· 안전보건문화선진화	8,500	8,500	8,404	-	96	8,500	8,500	8,500	8,468	-	32	9,97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안전보건교육 및 미디어개발) 계층별로 수준에 맞는 다양한 집체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중소기업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실정에 맞는 맞춤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 활성화와 자율안전관리 기반 조성에 기여
 - 산재예방 교육 및 사업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업종별, 직종별, 대상별 안전보건 콘텐츠를 개발하여 온·오프라인 보급
- (전문교육과정 운영)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종사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법정 직무교육 등 실시
- (안전보건문화 선진화)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방송·언론매체 등을 통한 산재예방 알림사업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 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995~1996 상반기 : 산업재해예방 특별사업
- 1996 하반기~1999 :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대통령 보고)
- 2000~2004 :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1999.12월)
- 2005~2009 :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4.12월)
- 2010~2014 :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0. 3월)
- 2015~2019 : 제4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5. 1월)
- 2020~2024: 제5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20. 5월)
- 2022.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국정과제)
- 2025.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88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9,351	32,847	32,925	35,674	36,376

- 기타 : 산재보험가입 사업장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 수혜자 : 산재보험가입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안전보건교육 및 미디어개발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 공단	21,363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전문교육 과정운영			5,043		
안전보건 문화 선진화			8,670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구 분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 안전보건문화 정착	35,674	36,376
(1) 안전보건교육 및 미디어개발	22,040	21,363
■ 안전보건교육	9,274 · 안전보건교육 8,928 (611,000명×14,612원) · 체험교육장 운영비 346 (1식×346백만원)	9,070 · 안전보건교육 <u>8,518</u> <u>(582,000명×14,636원)</u> · 체험교육장 운영비 <u>415</u> (1식× <u>415</u> 백만원) · <u>중대재해처벌법</u> 경영책임자교육 <u>137</u> (12회×11.4백만원)
■ 외국인근로자 안전서포트	2,362 · 외국인 교육 613 (42,000명×14,595원) · 콘텐츠 제작 1,749 (300종×5,830천원)	2,362 · 외국인 교육 613 (42,000명×14,595원) · 콘텐츠 제작 1,749 (300종×5,830천원)
■ 취약계층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지원	6,884 ·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지원 4,600 (115,000명×40천원) · 건설근로자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1,358 · 교재 제작 및 이수자 관리 926	6,411 ·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지원 4,600 (115,000명×40천원) · 건설근로자 종합지원시스템 운영관리 <u>877</u> · 교재 제작 및 이수자 관리 <u>934</u>
■ 안전보건미디어 개발 및 보급	3,520 · 안전보건미디어개발 및 보급 3,520 (617종×5,705천원)	3,520 · 안전보건미디어개발 및 보급 3,520 (617종×5,705천원)
(2) 전문교육과정운영	5,134	5,043
■ 전문교육과정운영	5,134 · 전문교육과정 운영 3,446 (12,220명×282천원) · 전문교육 이러닝과정 872 (41,000명×21.3천원) · 체험실습 교육장비 개보수 716 · 수도권 실습교육장 이전 타당성조사 100	5,043 · 전문교육과정 운영 <u>3,455</u> (12,220명×283천원) · 전문교육 이러닝과정 872 (41,000명×21.3천원) · 체험실습 교육장비 개보수 716
(3) 안전보건문화 선진화	8,500	9,970
■ 안전문화사업	1,116 · 안전문화사업 730 (1식×730백만원) · 안전보건강조주간행사 386 (1식×386백만원)	1,116 · 안전문화사업 730 (1식×730백만원) · <u>산업안전보건의 달</u> 386 (1식×386백만원)
■ 홍보사업	7,384 · 홍보사업 5,884 (1식×5,884백만원) · 안전문화 정책홍보 1,500 (1식×1,500백만원)	6,984 · 홍보사업 <u>5,684</u> (1식× <u>5,684</u> 백만원) · 안전문화 정책홍보 <u>1,300</u> (1식× <u>1,300</u> 백만원)
■ 대국민 산재예방 안전의식 개선사업	-	1,870 · <u>대국민 산재예방 안전의식 개선사업 1,870</u> (1식×1,87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 지원사업장의 사고사망 만인율(‰) (하향지표) (단일지표)	목표	신규	0.54	0.50	0.45	0.42	전체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목표 비율을 준용*하여 목표치 설정	○ 측정산식 : 지원사업장의 사고사망 만인율(‰) = A/B × 10,000 A: 공단 지원 사업장* 사고 사망자수(명) * 재해발생사업장 (중대재해조사 및 감독 대상 사업장 등 자원실적은 제외) B: 공단 지원 사업장 근로자수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실적	신규	0.51	0.48	-	-	* '25. 0.31 → '26. 0.29 (△6.5%)		
	달성도	-	105.9	104.0	-	-	** '25 목표치 0.45에 6.6% 감소 반영하여 0.42 산출		
② 중상해사고 재해율(%) (하향지표)	목표	0.090	0.084	삭제	삭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실적	0.084	-	-	-	-			
	달성도	93.3	-	-	-	-			
③ 50인 미만 사업장 작업 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연계율(%)	목표	77.6	79.8	삭제	삭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실적	66.2	-	-	-	-			
	달성도	85.3	-	-	-	-			

* '25년 실적은 '26.3월말 집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안전보건교육: 1,221,242명 - 취약계층 기초안전보건교육 지원 : 129,898명 - 안전보건미디어개발 및 보급 : 617종 - 전문교육과정운영 : 317,669명(이러닝 교육포함) - 안전문화사업: 1식 - 홍보사업: 1식 - 민간기관재해예방활동지원 : 2,297백만원(1식)
2023	- 안전보건교육: 722,354명 - 취약계층 기초안전보건교육 지원 : 130,000명 - 안전보건미디어개발 및 보급 : 617종 - 안전보건 컨설턴트 육성 : 1,007명 - 전문교육과정운영 : 422,615명(이러닝 교육포함) - 안전문화사업: 1식 - 홍보사업: 1식 - 민간기관재해예방활동지원 : 2,276백만원(1식)

2024	- 안전보건교육: 870,248명 - 취약계층 기초안전보건교육 지원: 115,000명 - 안전보건미디어개발 및 보급: 617종 - 전문교육과정운영: 237,672명 - 안전문화사업: 1식 - 홍보사업: 1식
2025	- 안전보건교육: 723,502명 - 외국인 근로자 안전서포트(신규) : 56,862명 - 취약계층 기초안전보건교육 지원: 111,735명 - 안전보건미디어개발 및 보급: 617종 - 전문교육과정운영: 251,422명 - 안전문화사업: 1식 - 홍보사업: 1식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사업장의 중처법 이해 지원을 위한 안전보건교육과정 운영 및 건설업 근로자 종합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관리 강화
- 산재예방 소통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안전문화 확산 지원
 - 정부의 사망사고 감축 정책과 병행하는 산업안전보건 분야 특화 캠페인을 통해 정책의 현장 작동성 최대화 및 중대법 적용이 유예된 소규모 사업장 타깃 집중 추진으로 사업주 안전경영 및 근로자 안전의식 확립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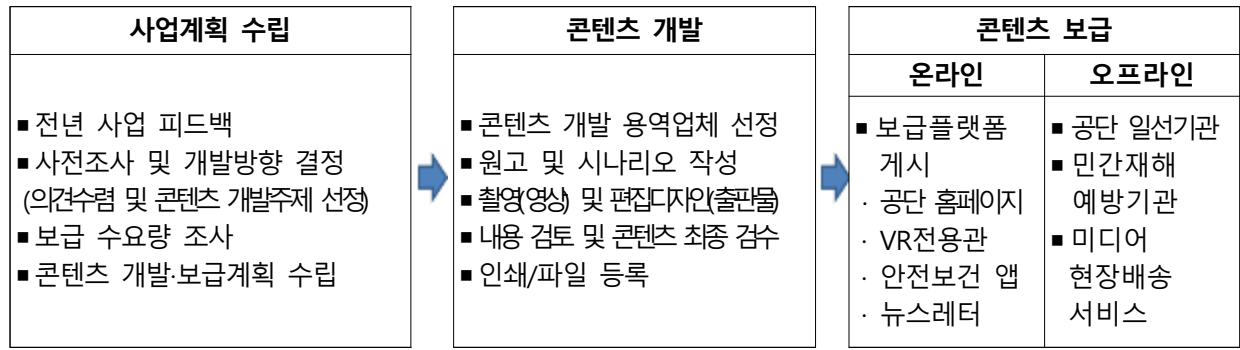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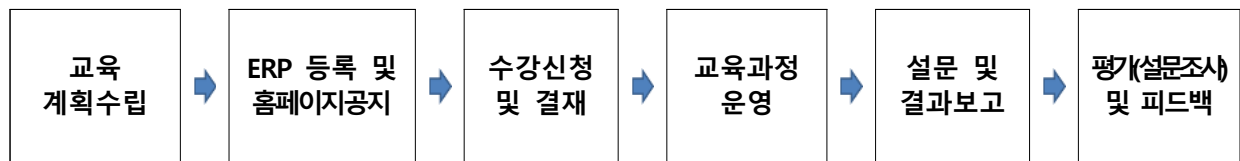


○ 안전보건미디어 개발 및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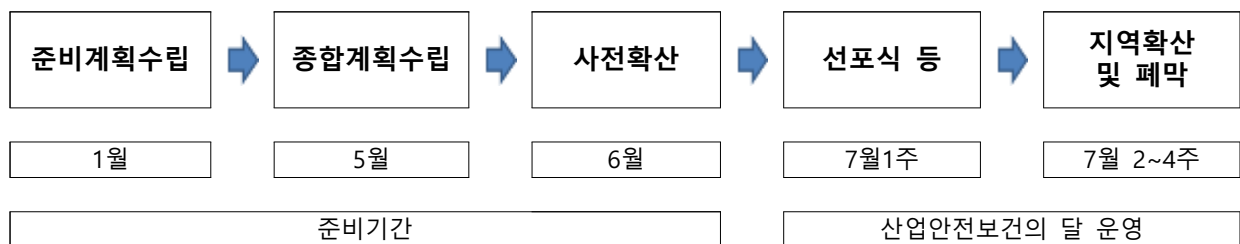
<전문교육과정운영>

- 전문교육과정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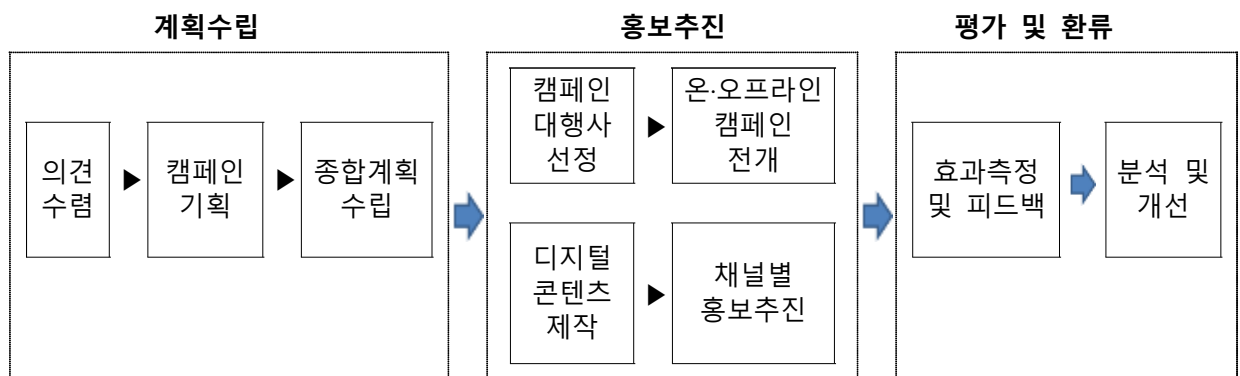


<안전보건문화 선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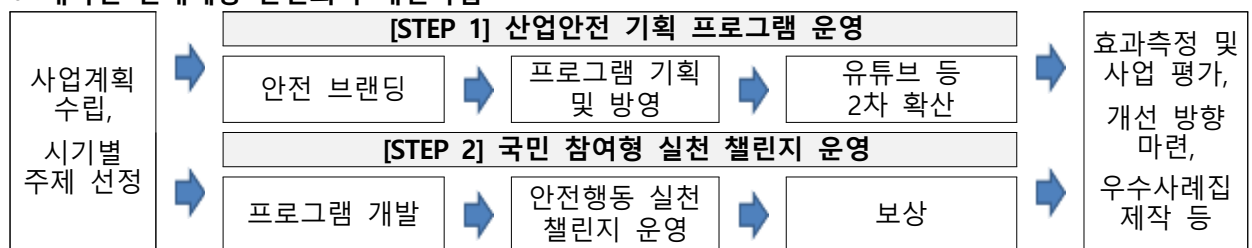
- 산업안전보건의 달



○ 홍보사업



○ 대국민 산재예방 안전의식 개선사업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5년 국정감사
 - 외국인노동자 산재가 매년 증가함에도 공단이 개발한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의 외국인 이용률이 1%대로 저조함
 - ⇒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은 외국인 전용 플랫폼(FORS 365*)으로 리뉴얼 하여 FORS 365앱으로 오픈('25. 12월)
 - * Foreigner Safety 365 - 17개 송출국 언어 기반의 안전보건 콘텐츠, 외국인
 - 건설·조선업 등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에 대한 특화 프로그램이 없음
 - ⇒ 건설·조선업에 대한 업종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안전보건콘텐츠 개발·보급, 교육 인프라 확대 및 체험교육 활성화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 방안 수립
 - 25년 예산안 환노위 예비검토보고서
 - 고용허가제에 의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외 모든 외국인 근로자(92만명)에게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 강구
 - ⇒ “모든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안전의식 제고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본 안전 수칙으로 구성된 외국인 기초안전보건교육 도입
 - '24년 국정감사
 -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 대상 재해예방 안전보건교육 대책 마련 요구
 - ⇒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언어가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비언어 콘텐츠 제작·보급하고 VR·체험교육 등 실감형 교육 확대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 3) 자체평가
 - '24 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평가결과 : 우수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29,351	-	29,351	29,351	28,987	98.8	98.8	-	364
2023	32,847	-	32,847	32,847	32,358	98.5	98.5	-	489
2024	32,925	-	32,925	32,925	32,366	98.3	98.3	-	599
2025	35,674	-	35,674	35,674	35,166	98.6	98.6	-	50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안전보건교육 및 홍보사업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등 사업수행경비 집행잔액(364백만원)
2023	- (불용)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문화 선진화 사업 등 수행경비 일부 집행잔액(489백만원)
2024	- (불용)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문화 선진화 사업수행경비 집행잔액 등(559백만원)
2025	- (불용)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문화 선진화 사업수행경비 집행잔액 등(508백만원)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9) 산재예방시설건립(4154-3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4	351
명칭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문화확산	산재예방시설건립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산재예방 시설건립	소관부처	실·국·과(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
		로드맵이행총괄팀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산재예방 시설건립	5,544	4,200	4,200	2,882	11,395	7,195	171.3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5,548	5,548	5,544	-	4	4,200	4,200	4,200	4,199	-	1	11,395
· 익산안전체험 교육장 시설개선	5,254	5,254	5,253	-	1	-	-	-	-	-	-	-
· 영암 안전체험 교육장 건립	100	100	97	-	3	-	-	-	-	-	-	2,413
· 노후안전체험 교육장 시설개선	194	194	194	-	-	4,200	4,200	4,200	4,199	-	1	8,220
· 노후청사 내진성능 검 사 및 보수	-	-	-	-	-	-	-	-	-	-	-	462
· 안전체험교육장 관련 용 역	-	-	-	-	-	-	-	-	-	-	-	200
· 안전보건역량개발원 관 련 검토 연구용역	-	-	-	-	-	-	-	-	-	-	-	1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노후 안전체험교육장 시설개선) 체험교육 인프라가 전무한 경북지역 내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으로 체험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산업재해 감소 기여
- (노후청사 내진성능 검사 및 보수)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공단 시설물의 내진 안전성 여부에 대한 성능평가 및 보강공사
- (안전체험교육장 관련 용역) 안전체험교육 개선 및 민간 체험인프라 확충을 위한 조사 용역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 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 14조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계 법령의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진보강대책에 관한 기본방향
 2. 내진성능평가에 관한 사항
 3. 내진보강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4. 내진보강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내진보강대책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6. 그 밖에 내진보강대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5호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 ① 법제3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법인을 말한다.
 1.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의 다음 각 목의 기관
 - 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부속기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영)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영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작성한 계획·매뉴얼 등에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재난유형에 대해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작성된 것으로 본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996 하반기~1999: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대통령 보고)
- 2000. 9월: 국무총리실 「안전관리종합대책」 (국무회의 보고)
- 2000~2004: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1999. 12월)
- 2005~2009: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4. 12월)
- 2010~2014: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0. 3월)
- 2015~2019: 제4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5. 1월)
- 2020~2024: 제5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20. 5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26~'30) 661억원
- 사업기간 : '88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006	21,026	5,548	4,200	11,39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 수혜자 : 산재보험가입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노후 안전체험 교육장 시설개선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 공단	8,220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노후청사 내진성능 검사 및 보수			462		
영암 안전체험 교육장 건립			2,413		
안전보건 역량개발원 관련 검토 연구용역			100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구 분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 산재예방시설건립	4,200	11,395
(1) 노후 안전체험 교육장 시설개선	4,200 · 인천 안전체험교육장 4,200 (공사비 1,200 + 체험콘텐츠비 3,000)	8,220 · 경북 안전체험교육장 2,220 (부지매입비 2,000백만원 + 매입경비 18백만원 + 설계비 100백만원 + 해체공사비 102백만원) · 경남 안전체험교육장 6,000 (부지매입비 5,788백만원 + 매입경비 28백만원 + 설계비 100백만원 + 해체공사비 84백만원)

(2) 영암 안전체험 교육장 건립	-	2,413 · 영암 안전체험교육장 2,413 (부지매입비 2,370백만원 + 설계비 43백만원)
(3) 노후청사 내진성능 검사 및 보수	-	462 · 노후청사 내진성능 검사 및 보수 462 (내진성능평가) 240백만원 (내진보강공사) 222백만원
(4) 안전보건 역량개발원 관련 검토 연구용역	-	100 · 안전보건 역량개발원 관련 검토 연구용역 100 (1식×100백만원)
(5) 안전체험교육장 관련 용역	-	200 · 안전체험교육장 관련 용역 200 (1식×2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 지원사업장의 사고사망 만인율(‰) (하향지표) (단일지표)	목표	신규	0.54	0.50	0.45	0.42	전체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목표 비율*을 준용**하여 목표치 설정	○ 측정산식 : 지원사업장의 사고사망 만인율(‰) = A/B×10,000 A: 공단 지원 사업장* 사고 사망자수(명) * 재해발생사업장 (중대재해조사 및 감독 대상 사업장 등) 지원실적은 제외 B: 공단 지원 사업장 근로자수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실적	신규	0.51	0.48	-	-	* '25. 0.31 → '26. 0.29 (△6.5%) ** '25 목표치 0.45에 6.6% 감소 반영하여 0.42 산출		
	달성도	-	105.9	104.0	-	-			
② 중상해사고 재해율(%) (하향지표)	목표	0.090	0.084	삭제	삭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실적	0.084	-	-	-	-			
	달성도	93.3	-	-	-	-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③ 50인 미만 사업장 작업 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연계율(%)	목표	77.6	79.8	삭제	삭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실적	66.2	-	-	-	-			
	달성도	85.3	-	-	-	-			

* '25년 실적은 '26.3월말 집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여수(공정률 80.3%)·공사 진행 중 - 익산 터파기 공정 진행 및 인천 안전체험교육장 실시설계 진행 중
2023	- 익산 구조물공사 진행 및 인천 안전체험교육장 시공사 선정
2024	- 익산 안전체험교육장: 개관 - 인천 안전체험교육장: 옥탑층 구조물 공사 완료 - 영암 안전체험교육장 타당성조사: 완료
2025	- 인천 안전체험교육장 개관

③ 향후(2026년도 이후)

- 체험교육장 건립, 시설개선, 건립지원으로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 및 현장 적용
-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써 지진 등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비를 우선하고, 재난상황 시 대응과 복구를 위한 활동을 지속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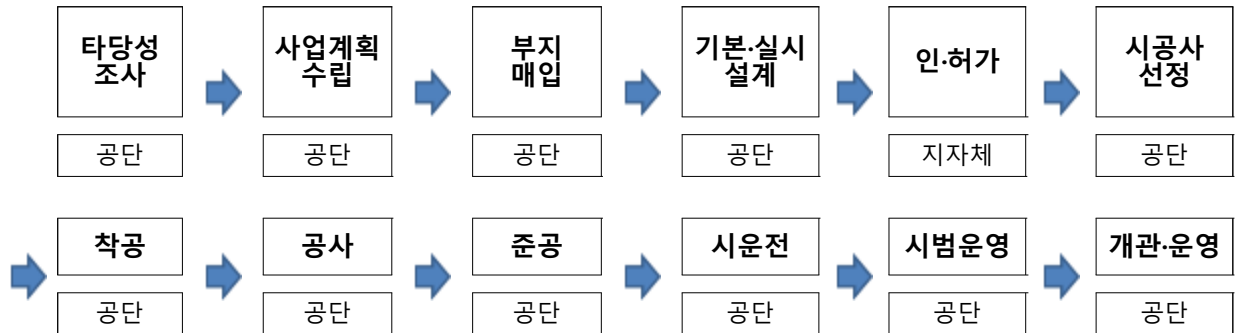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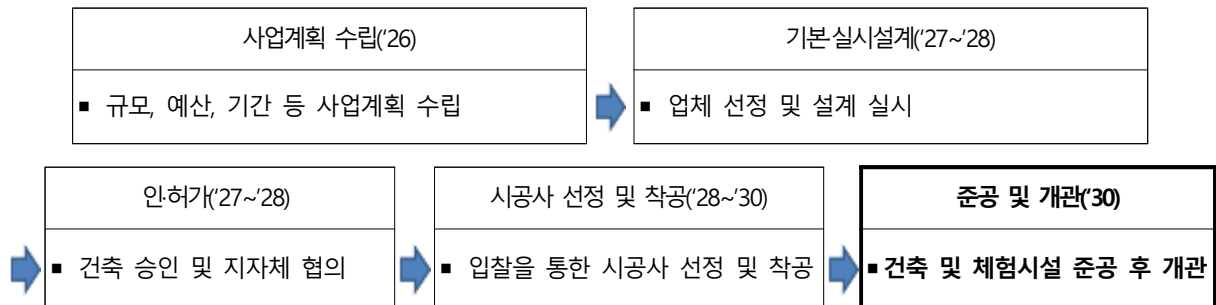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026~2030	-	-	-	-	82	579	661

7) 사업 집행절차

<노후 안전체험교육장 시설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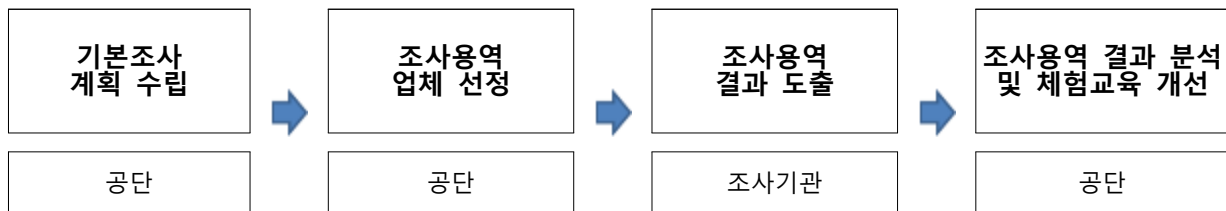
<영암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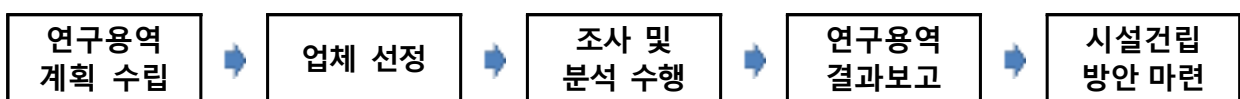
<노후청사 내진성능 검사 및 보수>



<안전체험교육장 관련 용역>



<안전보건역량개발원 관련 검토 연구용역>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5년 예산안 환노위 서면질의
 - 경북 서남부권 및 경남 북부지역의 안전체험교육 수요 대응을 위해 경북 고령 월성산단 내 안전체험교육장 추가 건립 필요
 - ⇒ 예산 반영을 통해 노후화로 운영 중단된 경북·경남 안전체험교육장 시설개선을 추진하여 경북·경남 지역 안전체험교육 수요 대응
 - 전국 최대 제조업체 소재지이자 기초단체 중 최근 5년 최대 사고사망자 수를 기록 중인 경기도 화성시 내 안전체험교육장 추가 건립 필요
 - ⇒ 수도권 안전체험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부(인천) 안전체험교육장 시설개선을 추진 중이며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안전체험교육장 추가 건립 추진
 - '24년 환노위 국정감사 지적사항
 - 운영 중단된 안전체험교육장 조속한 재개 필요
 - ⇒ 운영 중단 중인 노후 교육장 3개소는 '23년 시설개선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6년 예산 확보 노력 후 순차적으로 건립할 예정임
 - 안전체험장 노후화에 따른 비정상적 운영 시정 필요
 - ⇒ 충청, 경남, 경북 체험교육장 신규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설개선 예산을 추가 요청하여, 신규 건립을 추진하겠음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23,006	-	23,006	23,006	23,006	100.0	100.0	-	-
2023	21,026	-	21,026	21,026	21,025	100.0	100.0	-	1
2024	5,548	-	5,548	5,548	5,544	99.9	99.9	-	4
2025	4,200	-	4,200	4,200	4,199	100.0	100.0	-	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월) 설계변경 및 관급자재 납품지연으로 인한 공기연장, 선행공정 지연에 따른 예산이월(15,920백만원)
2023	- (불용) 노후 안전체험교육장 타당성조사 용역 낙찰차액(1백만원) - (이월) 노후(중부)안전체험교육장 위수탁사업비 잔액 및 익산 안전체험교육장 2개년도 계약 잔여예산 실집행 이월(8,325백만원)
2024	- (불용) 영암 안전체험교육장 타당성 조사 용역 낙찰차액 등(4백만원)
2025	- (불용) 인천 안전체험교육장 공사비·체험콘텐츠비 낙찰차액 등(1백만원)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0)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4154-35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4	357
명칭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문화확산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소관부처	실·국·과(팀)	
		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	-	-	11,142	11,142	11,142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11,142
·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	-	-	-	-	-	-	-	-	-	-	11,14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국민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위험 상황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일터 조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② 추진경위

-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 후진국형 산재가 지속 발생
- 일터의 산재 발생위험 등을 발견할 경우 간편하게 신고하고 조치하는 '안전일터 신고센터' 개설 추진('25년~),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추진
- 대통령 지시사항('25.8.12.) : 안전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검토할 것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6년~ (신규)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11,14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 (2025 계획) - 원 → (2026 계획) 11,142백만원, 순증

- (요구) 일터의 산재 발생위험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산규 11,142백만원 요구
- (산출) 포상금 11,100백만원
간담회 및 업무협의 20백만원
자료 유인 및 제도 홍보 22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11,142	○ 일반수용비(210-01) : 22,000천원 가. 우수 관서 및 지방자치단체 선정 심의자료 유인 및 제도 홍보 20,000천원 나. 우수 관서 및 지방자치단체 선정 심의위원회 외부 위원 수당 150,000원 × 2회 × 5명 = 1,500,000원 ○ 사업추진비(240-01) : 20,000천원 가. 우수 기관 선정 1,140천원 - 우수 관서 및 지방자치단체 선정 위원회 개최 20,000원 × 10명 × 4회 = 800,000원 - 우수기관 선정위원회 다과 등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5,000\text{원} \times 4\text{회} = 340,000\text{원}$ 나. 제도 운영 관련 의견 수렴 13,100천원 - 지방관서 의견 수렴 등 $25,000\text{원} \times 48\text{개 관서} \times 8\text{명} = 9,600,000\text{원}$ -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25,000\text{원} \times 20\text{명} \times 2\text{회} = 1,000,000\text{원}$ - 제도개선 검토 회의 $25,000\text{원} \times 10\text{명} \times 10\text{회} = 2,500,000\text{원}$ 다.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5,760천원 $10,000\text{원} \times 48\text{개 관서} \times 12\text{회} = 5,760,000\text{원}$ ○ 포상금(310-03) : 11,100백만원 <u>① (안전·보건조치) $30,000\text{건}^{1)} \times 70\%^{2)} \times 500,000\text{원}^{3)} = 10,500\text{백만원}$</u> 1) 최근 3년간 신고 건수 평균 15,000건 → 포상금제도 도입 시 신고 건수 2배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확정되는 경우는 전체의 약 70%로 추정 3) 1건당 500,000원 지급 <u>② (고의적인 법 위반) $100\text{건}^{4)} \times 5,000,000\text{원}^{5)} = 500\text{백만원}$</u> 4) 고의적인 법 위반 신고 건수 5) 고의적인 법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금액 <u>③ (우수 기관) $5\text{개}^{6)} \times \text{반기} \times 10\text{백만원} = 100\text{백만원}$</u> 6) 반기별 우수 자치단체 총 5개 선정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26년 신규사업)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신고 활성화 및 위험상황 해소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고용노동부 직접수행)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해당없음('26년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	-	-	-	-	-	-	-	-
2023	-	-	-	-	-	-	-	-	-
2024	-	-	-	-	-	-	-	-	-
2025.7	-	-	-	-	-	-	-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해당없음('26년 신규사업)
2023	- 해당없음('26년 신규사업)
2024	- 해당없음('26년 신규사업)
2025	- 해당없음('26년 신규사업)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21) 안전보건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4155-3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예방정책관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5	350
명칭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기반조성	안전보건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산업안전 보건연구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정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사업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정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통계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정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안전보건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7,749	7,331	7,331	7,131	7,031	△300	△7.1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7,984	7,984	7,749	-	235	7,331	7,331	7,331	7,009	-	322	7,031
· 안전보건연구사업	4,139	4,139	3,998	-	141	3,341	3,341	3,341	3,233	-	108	3,241
· 국제협력사업	885	885	805	-	80	885	885	885	823	-	62	885
· 산업재해통계	2,960	2,960	2,946	-	14	3,105	3,105	3,105	2,953	-	152	2,90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안전보건연구사업) 안전경영정책연구, 산업안전연구, 직업건강연구, 화학물질연구 등 안전보건 분야별 자체·위탁연구 수행 등
- (국제협력사업) 국외 안전보건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선진 안전보건정보 교류 및 보급
- (산업재해통계) 산재현황 및 원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산재통계자료를 생산·가공·보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996 하반기~1999: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대통령 보고)
- 2000. 9월: 국무총리실 「안전관리종합대책」 (국무회의 보고)
- 2000~2004: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1999. 12월)
- 2005~2009: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4. 12월)
- 2010~2014: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0. 3월)
- 2015~2019: 제4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5. 1월)
- 2020~2024: 제5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20. 5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88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944	8,843	7,984	7,331	7,03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안전보건 연구사업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 공단	3,241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국제협력사업			885		
산업재해통계			2,905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구 분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 안전보건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7,331	7,031
(1) 산업안전보건연구	3,341 · 산업안전보건연구 3,341 (39개과제×85.7백만원)	3,241 · 산업안전보건연구 3,241 (39개과제×83.1백만원)
(2) 국제협력사업	885 · 국제협력사업 713 (69회×10.3백만원) · 해외정보관리 172 (159회×1.1백만원)	885 · 국제협력사업 713 (69회×10.3백만원) · 해외정보관리 172 (159회×1.1백만원)
(3) 산업재해통계	3,105 · 산업재해통계 705 (10회×70.5백만원) · 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 2,200 (1식×2,200백만원) · 특수건강진단 DB 암호화처리 200	2,905 · 산업재해통계 705 (10회×70.5백만원) · 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 2,200 (1식×2,2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 지원사업장의 사고사망 만인율(‰) (하향지표) (단일지표)	목표	신규	0.54	0.50	0.45	0.42	전체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목표 비율*을 준용**하여 목표치 설정	○ 측정산식 : 지원사업장의 사고사망 만인율(‰) = A/B × 10,000 A: 공단 지원 사업장* 사고 사망자수(명) * 재해발생사업장 (중대재해조사 및 감독 대상 사업장 등) 자원실적은 제외 B: 공단 지원 사업장 근로자수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실적	신규	0.51	0.48	-	-	* '25. 0.31 → '26. 0.29 (△6.5%) ** '25 목표치 0.45에 6.6% 감소 반영하여 0.42 산출		
	달성도	-	105.9	104.0	-	-			
② 중상해사고 재해율(%) (하향지표)	목표	0.090	0.084	삭제	삭제	삭제			
	실적	0.084	-	-	-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달성도	93.3	-	-	-	-			
③ 50인 미만 사업장 작업 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연계율(%)	목표	77.6	79.8	삭제	삭제	삭제			
	실적	66.2	-	-	-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달성도	85.3	-	-	-	-			

* '25년 실적은 '26.3월말 집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안전경영정책연구: 23건 - 산업안전연구: 13건 - 직업건강연구: 15건 - 직업환경연구: 5건 - 화학물질연구: 10건 - 산업안전분야 국제학술지 발간: 1식 - 국제협력사업: 258회 - 산업재해통계: 12회/중
2023	- 안전경영정책연구: 19건 - 산업안전연구: 11건 - 직업건강연구: 16건 - 직업환경연구: 6건 - 화학물질연구: 9건 - 산업안전분야 국제학술지 발간: 1식 - 국제협력사업: 285회 - 산업재해통계: 10회·중 / 근로환경조사 1식
2024	- 안전경영정책연구: 19건 - 산업안전연구: 9건 - 직업건강연구: 16건 - 직업환경연구: 5건 - 화학물질 연구: 9건 - 산업안전분야 국제학술지 발간: 1식 - 국제협력사업: 301회 - 산업재해통계: 10회/중 / 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 1식
2025	- 안전경영정책연구: 13건 - 산업안전연구: 8건 - 직업건강연구: 10건 - 직업환경연구: 6건 - 화학물질 연구: 13건 - 산업안전분야 국제학술지 발간: 1식 - 국제협력사업: 330회 - 산업재해통계: 10회/중 / 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 1식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폭염 등 기후요인으로부터의 근로자 건강보호 방안 마련, 새로운 작업방식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등 선제적 산업재해 예방 연구
- 연구결과 공개를 통해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통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
- 국제 정보교류 및 협력사업 등 산업안전보건 국내·외 인프라 구축
- 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를 통한 근로환경, 화학적·기계적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관리 실태 파악 등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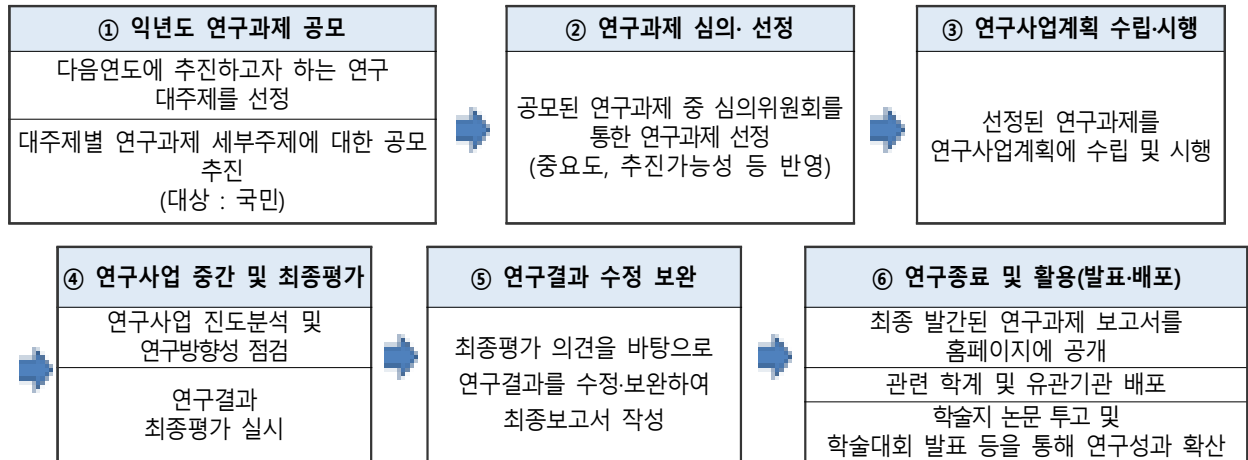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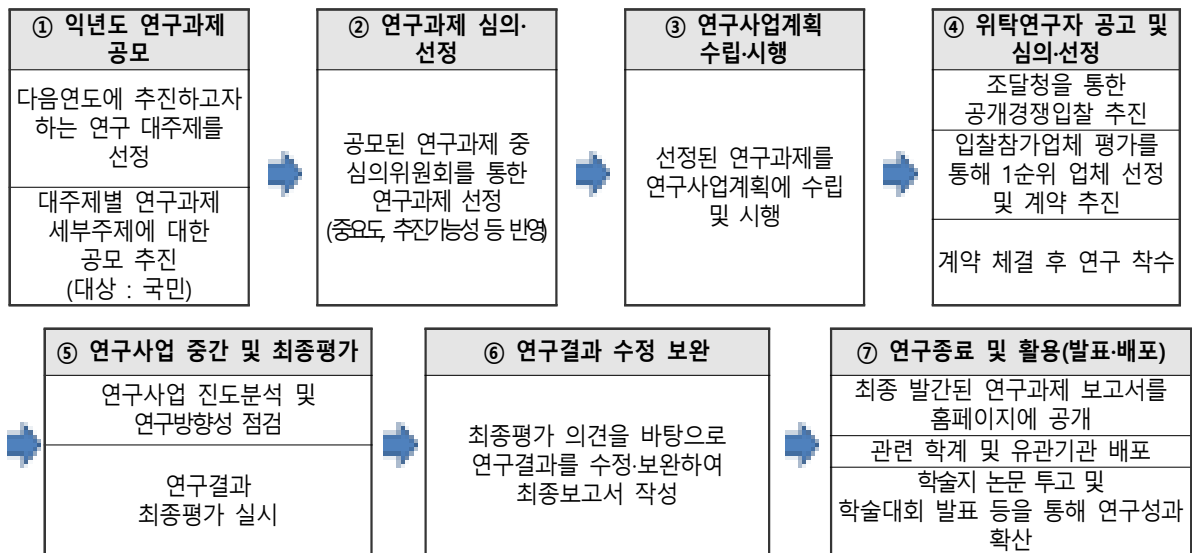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산업안전보건연구>

○ 자체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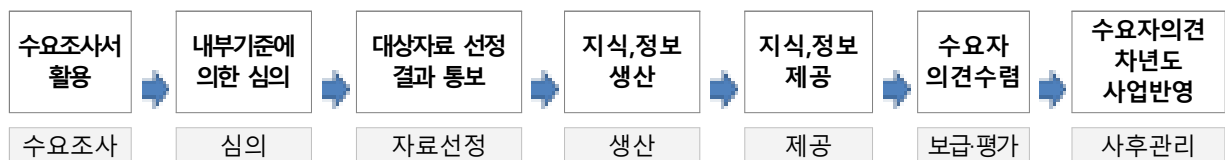
○ 위탁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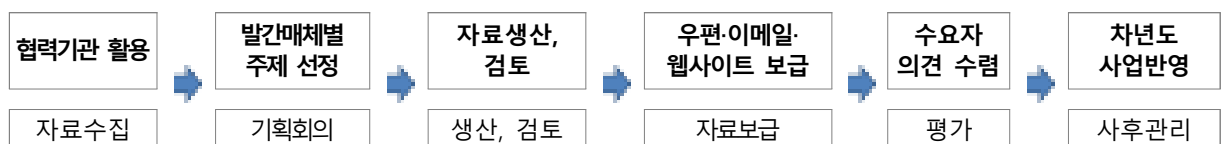
<국제협력사업>

○ 국외 안전보건정보 제공 및 교류 활성화

- 해외정보관리·지식·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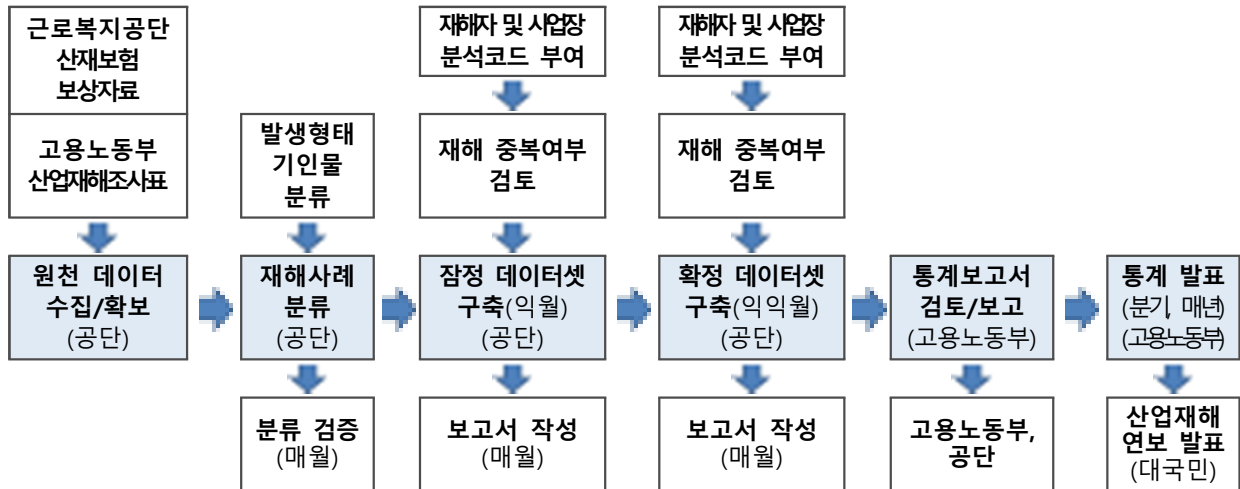


- 해외정보관리·안전보건 활동 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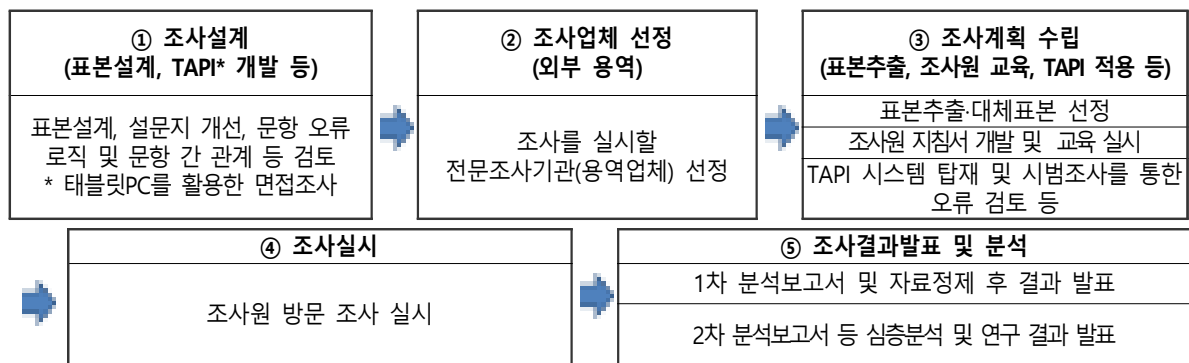


<산업재해통계>

○ 산업재해통계



○ 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산재예방사업 평가 관련 산재보험정책전문위원회 요구사항

- 산재보험정책전문위원회*(‘23.5.22.) 안건으로 산재예방사업 확대에 대한 효과를 평가 지표 개발 요구(문성현 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8조에 의거한 위원회

⇒ 요구에 따라 산재예방사업 평가를 수행할 신규 조직을 신설 완료하였으나 (‘24.1.19., 예방사업평가팀 정원 4명, 경제학박사 등으로 구성), 사업평가 예산은 미반영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24 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우수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5,944	-	5,944	5,944	5,768	97.0	97.0	-	176
2023	8,843	-	8,843	8,843	8,653	97.9	97.9	-	190
2024	7,984	-	7,984	7,984	7,749	97.1	97.1	-	235
2025	7,331	-	7,331	7,331	7,009	95.6	95.6	-	32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산업안전보건연구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및 코로나로 인한 국제협력사업 수행경비 집행잔액(176백만원)
2023	- (불용) 산업안전보건연구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등 수행경비 집행잔액(190백만원)
2024	- (불용) 산업안전보건연구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및 국제협력사업 수행경비 집행잔액 등 (235백만원)
2025	- (불용) 산업안전보건연구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및 국제협력사업 수행경비 집행잔액 등 (322백만원)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2)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4155-3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예방정책관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5	351
명칭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기반조성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운영 (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안전보건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사업시행주체	산업안전정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안전보건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18,014	14,636	14,636	11,454	9,441	△ 5,195	△ 35.5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8,033	18,033	18,015	-	18	14,636	14,636	14,636	14,635	- (119)	1	9,441
· 안전보건관리 정보시스템운영	18,033	18,033	18,015	-	18	14,636	14,636	14,636	14,635	- (119)	1	9,44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산재예방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최신 안전보건정보를 사업장 및 안전보건관계자 등에게 제공하여 산재예방업무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 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996 하반기~1999: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대통령 보고)
- 2000. 9월: 국무총리실 「안전관리종합대책」 (국무회의 보고)
- 2000~2004: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1999. 12월)
- 2005~2009: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4. 12월)
- 2010~2014: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0. 3월)
- 2015~2019: 제4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5. 1월)
- 2020~2024: 제5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20. 5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88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864	6,820	18,033	14,636	9,44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및 노동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안전보건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 공단	9,441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구 분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 안전보건관리 정보시스템운영	14,636	9,441
(1) 안전보건정보 시스템운영	①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8,724 · 그룹웨어시스템 개선 및 DB 품질진단 181 · 산재예방통합정보시스템 및 ERP 시스템 개선 378 · 산재예방 종합포털 구축 8,165	①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3,285 · 그룹웨어시스템 개선 및 DB 품질진단 181 · 산재예방통합정보시스템 및 ERP 시스템 개선 378 · 산업안전포털 유지·운영 2,726
	② 정보시스템 운영 5,170 · 정보시스템 유지·운영 2,571 · 정보화 용역 감리 40 · 전산장비 리스료 854 · 사무용 PC·SW 등 구매 1,491 · 외부망 회선사용료 117 · 정보화역량강화 교육 25 · 기타 운영비 72	② 정보시스템 운영 5,414 · 정보시스템 유지·운영 2,760 · 정보화 용역 감리 40 · 전산장비 리스료 854 · 사무용 PC·SW 등 구매 1,546 · 외부망 회선사용료 117 · 정보화역량강화 교육 25 · 기타 운영비 72
	③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742 · 클라우드 기반 망분리 사업 742	③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742 · 클라우드 기반 망분리 사업 742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 지원사업장의 사고사망 만인율(‰) (하향지표) (단일지표)	목표	신규	0.54	0.50	0.45	0.42	전체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목표 비율을 준용*하여 목표치 설정	○ 측정산식 : 지원사업장의 사고사망 만인율(‰) =A/B×10,000 A: 공단 지원 사업장* 사고 사망자수(명) * 재해발생사업장 (중대재해조사 및 감독 대상 사업장 등) 자원실적은 제외 B: 공단 지원 사업장 근로자수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실적	신규	0.51	0.48	-	-	* '25. 0.31 → '26. 0.29 (△6.5%)		
	달성도	-	105.9	104.0	-	-	** '25 목표치 0.45에 6.6% 감소 반영하여 0.42 산출		
② 중상해사고 재해율(%) (하향지표)	목표	0.090	0.084	삭제	삭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실적	0.084	-	-	-	-			
	달성도	93.3	-	-	-	-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③ 50인 미만 사업장 작업 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연계율(%)	목표	77.6	79.8	삭제	삭제	삭제			
	실적	66.2	-	-	-	-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달성도	85.3	-	-	-	-			

* '25년 실적은 '26.3월말 집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운영 11식
2023	-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운영 12식
2024	-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운영 12식
2025	-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운영 12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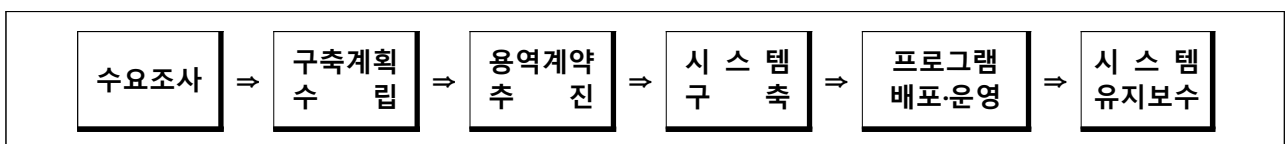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산업안전포털 등 안정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원활한 산재예방사업 수행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사항 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 3) 자체평가
 - '24 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우수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5,864	-	5,864	5,864	5,850	99.8	99.8	-	14
2023	6,820	-	6,820	6,820	6,817	100.0	100.0	-	3
2024	18,033	-	18,033	18,033	18,015	99.9	99.9	-	18
2025	14,636	-	14,636	14,636	14,635	100.0	100.0	-	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정보시스템 고도화 용역 낙찰차액 등 사업수행경비 집행잔액(14백만원)
2023	- (불용) 정보시스템 고도화 용역 낙찰차액 등 사업수행경비 집행잔액(3백만원)
2024	- (불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낙찰차액 등 사업수행경비 집행잔액(18백만원)
2025	- (불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낙찰차액 등 사업수행경비 집행잔액(1백만원) - (이월) 물품(서버) 수급 문제로 납품 지연되어 산업안전포털(ERP) 모바일 운영 서버 구매 계약 종료일 미도래에 따른 사고 이월(119백만원)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3) 미래환경변화대응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R&D)(4155-36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예방정책관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5	361
명칭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기반조성	미래환경변화대응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데이터 기반 산재 예방·대응 지원체계 구축	실·국·과(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데이터 기반 산재 예방·대응 지원체계 구축	-	-	-	1,554	1,554	1,554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1,554
· 데이터 기반 산재 예방·대응 지원체계 구축	-	-	-	-	-	-	-	-	-	-	-	1,55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데이터 기반 산재 예방·대응 지원체계 구축) 산업안전보건 데이터의 산업적, 기술적, 정책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데이터 관리·운영 체계 고도화가 필요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데이터 통합 및 표준화를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및 데이터 정제 등 품질관리 방안 수립 연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26~'30) 370억원
- 사업기간 : '26.4.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1,55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 수혜자 : 산재보험가입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데이터 기반 산재 예방대응 지원체계 구축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 공단	1,554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구 분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 미래환경변화대응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R&D)	-	<u>1,554</u>
(1) 데이터 기반 산재 예방·대응 지원 체계 구축	-	1,554 · 데이터 기반 산재 예방·대응 지원체계 구축 1,500 (연구개발비) 1개과제×2,000백만원 ×9/12개월 = 1,500백만원 · 연구기획평가 54 (기획평가관리비) 5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2026~202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 동 사업은 '26년 신규사업으로 2022~2026년도 성과가 도출되지 않았으며, '26년 이후 사업의 목적과 맞는 성과지표 설정

성과지표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데이터 활용 서비스 만족도 (단위: 점)	목표	-	-	70.6	72.7	유사조사결과* 연구데이터 수요자 만족도 평균 점수 기준 매년 3%를 상향한 목표치 설정 *다부처 국가생명 연구자원 선진화 사업(과기정통부)	리커트 척도 5구간 척도로 조사하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출	설문조사
	실적	-	-	-	-			
	달성도	-	-	-	-			
정책 채택률 (단위: %)	목표	-	-	-	50	동 성과지표는 유사사업 '융복합신기술제품 안전기술지원사업' (산업부)의 '22~'23년 성과 평균 22.65% 대비 도전적 목표치로 50%설정	(개발완료된 인증기준 (안), 표준 모델(안) 중 제개정 고시 및 표준 채택 누계수 ÷ 개발완료 인증기준(안) 및 표준 모델(안) 누계수)x100	인증기준(안) 및 표준 모델(안) 중 고시완료 또는 국내외 표준으로 채택된 기준(안) 확인
	실적	-	-	-	-			
	달성도	-	-	-	-			
등록특허 K-PEG 등급 (단위: 점)	목표	-	-	3.23	3.33	'재난안전산업 기술사업화 지원' (행안부) 사업의 2024년도 목표치를 기준으로 매년 3%를 상향한 도전적 목표치 설정	K-PEG 등급 ÷ 특허등록건수	특허등록증 및 특허평가보고서
	실적	-	-	-	-			
	달성도	-	-	-	-			
산업현장 활용도 (단위: %)	목표	-	-	-	50	동 사업 개발 기술은 안전보건과 관련된 공공기술이며 기술의 산업현장 도입은 '사업화 성공'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기술의 사업화 성공률 34.7%* 대비 매우 도전적 목표치로 50% 설정 *성과활용현황 조사분석 보고서 (산업부, 2021.09.)	(현장 도입 건수 ÷ 종료과제 누적 건수) × 100	제품/시스템 등 도입 계약서 (계약서), 현장실사
	실적	-	-	-	-			
	달성도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사항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유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첨단기술을 통한 자동화 시스템 개발을 통해 산재예방 정책 및 제도 추진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026~2030	-	-	-	-	16	354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연구개발사업 추진 계획 예고	고용노동부	· 연구개발 사업 추진 계획 공고
↓		
② 사업공고	전담기관 (안전보건공단)	· 전략 및 세부 과제별 요구사항 공지
↓		
③ 과제 신청·접수	전담기관 (안전보건공단)	· 부처 및 공단 매체를 통해 과제 홍보·접수
↓		
④ 연구과제선정	선정위원회	· 부처 및 공단 포함
↓		
⑤ 협약체결 및 연구개 발비 지원	전담기관 (안전보건공단)	· 전담기관과 참여기관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 선금 지 급
↓		
⑥ 사업수행·관리	참여기관	· 연구수행에 따른 보안준수 여부 및 연구윤리 이행 실태 수시 관리
↓		
⑦ 진도점검 및 보고(중간평가)	평가위원회	· 과제추진 적정성 검토 등 월별 추적관리
↓		
⑧ 최종점검· 최종평가	평가위원회	· 관련 학계·산업군 등 전문가로 구성하여 현장적용성 및 활용성 평가
↓		
⑨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 (안전보건공단)	· 추진내용 적정성 판단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비 지급
↓		
⑩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전담기관 (안전보건공단)	· 공단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연계 검토 및 연구개발 결과 홍보, 특허 등 추적관리

8) 각종 평가

- | |
|--|
| <p>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년 국정감사<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사고 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 기술 지침을 만드는 컨트롤타워 설립 및 산업안전 R&D 구축 필요<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사고 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한 '26년도 연구개발(R&D) 예산 1,554백만원 확보○ '24년 회계연도 결산<ul style="list-style-type: none">-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효과성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재예방 R&D 추진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예정○ '24년 국정감사<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안전 관련 국가 R&D 필요<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기획 승인을 위해 동 예산안 제출 <p>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사항 없음</p> <p>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p> |
|--|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4) 기금관리비 인건비(7084-1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 보상정책관		080	08E
명칭	및예방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4	101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산재보험및예방기금 운영비	기금관리비 인건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금관리비인건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보건 보상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금관리비 인건비	128	144	144	159	159	15	10.4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 12월 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44 (144)	144	128	-	16	144	144	144	136	-	8	159
· 기금관리비 인건 비	144 (144)	144	128	-	16	144	144	144	136	-	8	15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기금관리 보조업무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9조(기금관리 보조요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1995년
- 추진배경 : 기금관리원 채용하여 기금의 효율적·전문적 관리 지원
- 정책변화 및 정책적 중요성 :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원 채용 필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40	136	144	144	15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직접관리(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기금관리비 인건비:

(‘25계획) 144백만원 → (‘26계획) 159백만원(증 15백만원, 10.4%)

① 인건비 (‘25계획) 121 → (‘26계획) 133백만원(증 12백만원, 9.9%)

② 민간이전 (‘25계획) 23 → (‘26계획) 26백만원(증 2백만원, 8.7%)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구 분	‘25	‘26
	계 획	계 획
☐ 기금관리비 인건비	144	159
○ 인건비	121	133
- 급여	90	94
	- 월임금 [2,436,000원(라등급)*1.03] *3명*12월	- 월임금 [2,509,100원(라등급)*1.038] *3명*12월
- 시간외수당 및 상여금 등	31	39
○ 민간이전	23	26
- 4대 보험료	13	15
	- 120,515천원(급여총액)*0.1122(보험료율)	- 133,000천원(급여총액)*0.1122(보험료율)
- 퇴직충당금	10	11
	- 120,515천원(급여총액)/12월	- 133,000천원(급여총액)/12월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산재기금의 적정한 집행과 관리의 효율화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금관리원 고용 계속 → 근로제공 → 예산 및 자금 배정 → 임금 등 지급

8) 각종 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27	+13	140	140	139	99.3	99.3	-	1
2023	136	-	136	136	125	91.9	91.9	-	9
2024	144	-	144	144	128	88.9	88.9	-	16
2025	144	-	144	144	136	94.4	94.4	-	8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2023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2024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2025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25) 산재보험운영 인건비(7084-1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080	08E
명칭	및예방기금		재심사위원회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4	102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산재보험및예방기금 운영비	산재보험운영 인건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산재보험운영인건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산재보험운영 인건비	141	181	181	197	197	16	8.8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 12월 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81 (181)	181	141	-	40	181	181	181	181	-	-	197
· 산재보험운영 인 건비	181 (181)	181	141	-	40	181	181	181	181	-	-	19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서 정리 등 업무를 보조하는 사무원의 인건비 지급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제1항 제8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8.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② 추진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1995년
- 추진배경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타직 채용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4	762	181	181	19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직접관리(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산재보험운영인건비:

(‘25계획) 181백만원 → (‘26계획) 197백만원(증 16백만원, 8.8%)

① 인건비 (‘25계획) 151 → (‘26계획) 164백만원(증 13백만원, 8.6%)

② 민간이전 (‘25계획) 30 → (‘26계획) 33백만원(증 3백만원, 10.1%)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구 분	‘25	‘26
	계획	계획
□ 산재보험운영인건비	181	197
○ 인건비	151	164
- 급여	116	120
- 사무원 [2,173,000원*1.03*2명*12월]		- 사무원 [2,250,000원*1.038*2명*12월]
- 조사연구원 [2,500,00원*1.03*2명*12월]		- 조사연구원 [2,575,000원*1.038*2명*12월]
- 시간외수당 및 상여금 등	35	44
○ 민간이전	30	33
- 4대 보험료	18	19
- 사무원 [71,000천원(급여총액)*0.1125(보험료율)]		- 사무원 [80,240천원(급여총액)*0.1125(보험료율)]
- 조사연구원 [72,000천원(급여총액)*0.1125(보험료율)]		- 조사연구원 [84,248천원(급여총액)*0.1125(보험료율)]
- 퇴직충당금	12	14
- 사무원 [71,000천원(급여총액)/12월]		- 사무원 [80,240천원(급여총액)/12월]
- 조사연구원 [72,000천원(급여총액)/12월]		- 조사연구원 [84,248천원(급여총액)/12월]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관리업무 지원으로 산재근로자의 재심사건의 효율화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재결서 및 결정서 정리요원 및 조사연구원 고용 계속 → 근로제공 → 예산 및 자금배정 → 임금 등 지급
--

8) 각종 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54	-	154	154	148	96.2	96.2	-	6
2023	762	-	762	762	509	66.8	66.8	-	253
2024	181	-	181	181	141	77.9	77.9	-	40
2025	181	-	181	181	181	99.9	99.9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2023	- 불용 사유 : 기간제(심사지원관) 채용일정 지연 및 심사지원관, 조사연구원 중도퇴직
2024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2025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025.12.22.)	고용부담금	320	09	5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 추가 확보
	상용임금	110	03	△5	
합 계				0	

사 업 명
(26) 산재예방운영 인건비(7084-1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080	08E
명칭	및예방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4	103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산재보험및예방기금운영비	산재예방운영 인건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산재예방운영 인건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정책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산재예방운영 인건비	2,100	2,467	2,467	2,686	2,686	219	8.9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 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2,457 (2,457)	2,457	2,100	0	357	2,467	2,467	2,467	2,296	-	171	2,686
· 산재예방운영 인건비	2,457 (2,457)	2,457	2,100	0	357	2,467	2,467	2,467	2,296	-	171	2,68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본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전문위원(조사·연구위원 11명)과 지방관서 사무원(48명)의 보수(법정수당), 사회 보험료, 퇴직금 등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 재해 예방의 재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출연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8.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 연도 : 1995년
- 추진배경 : 산업재해예방 업무 지원을 위한 본부 전문위원(조사·연구위원) 및 지방관서 사무원의 인건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204	2,325	2,457	2,467	2,68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산재예방운영 인건비:

(‘25계획) 2,467백만원 → (‘26계획) 2,686백만원(증 219백만원, 8.9%)

① 인건비 (‘25계획) 2,064 → (‘26계획) 2,243백만원(증 179백만원, 8.7%)

② 민간이전 (‘25계획) 403 → (‘26계획) 443백만원(증 40백만원, 9.9%)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구 분	’25	’26
	계획	계획
□ 산재예방운용 인건비	2,467	2,686
○ 인건비	2,064	2,243
- 급여	1,610 - 전문위원(11명): 387 가등급: 3,586,590*12월*1명 나등급: 2,863,140*12월*11명 - 사무원(48명): 1,223 2,123,190*12월*48명	1,649 - 전문위원(11명): 404 가등급: 3,743,270*12월*1명 나등급: 2,988,240*12월*11명 - 사무원(48명): 1,245 2,167,080*12월*48명
- 시간외수당 및 상여금 등	454	594
○ 민간이전	403	443

구 분	'25	'26
	계획	계획
- 전문위원(11명)	104 - 530,555천원(급여총액)*0.1958(보험료율)	124 - 632,905천원(급여총액)*0.1958(보험료율)
- 사무원(48명)	288 - 1,469,754천원(급여총액)*0.1958(보험료율)	316 - 1,615,259천원(급여총액)*0.1958(보험료율)
- 단수조정	13	3

4) 사업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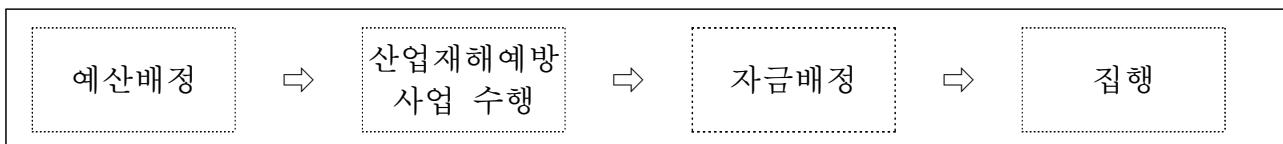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산업재해예방사업의 원활한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2,204	△13	2,191	2,191	2,068	94.4	94.4	0	123
2023	2,325	0	2,325	2,325	2,089	89.8	89.8	0	236
2024	2,457	0	2,457	2,457	2,100	85.5	85.5	0	357
2025	2,467	0	2,467	2,467	2,296	46.2	93.1	0	171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2023	- 불용 사유 : 중도 퇴사, 육아휴직 및 시간선택제 근무 등에 따른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집행 잔액 발생
2024	- 불용 사유 : 장애직 채용 공백, 중도 퇴사, 육아휴직 및 시간선택제 근무 등에 따른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집행 잔액 발생
2025	- 불용 사유 : 장애직 채용 공백, 중도 퇴사, 육아휴직 및 시간선택제 근무 등에 따른 상용임금 집행 잔액 발생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025.12.24.)	고용부담금	320	09	10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 추가 확보
	상용임금	110	03	△10	
합 계				0	

사 업 명
(27) 근로복지공단 인건비(7084-1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업보건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보상정책관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4	104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산재보험및예방기금운영비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보건 보상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중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211,083	217,951	218,708	227,223	227,223	9,272	4.3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211,083	211,083	211,083	-	-	217,951	218,908	218,908	218,708	-	-	227,223
· 근로복지공단인건비	211,083	211,083	211,083	-	-	217,951	218,908	218,908	218,708	-	-	227,22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 적용 · 부과 및 보상, 재활사업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함에 따른 공단 직원 인건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기금의 용도)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8.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8 이상을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 '95년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06,756	204,371	211,083	218,708	227,223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근로복지공단 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출연	근로복지공단	227,223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 (2025) 217,951백만원 → (2026 계획) 227,223백만원, 증 9,272백만원, 증 4.3%
- ①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 (2025) 217,951백만원 → (2026 계획) 227,223백만원, 증 9,272백만원, 증 4.3%
- (요구)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계속소요 및 공통인상분, 증원인력 인건비 등 요구
 - (산출) 계속소요 217,951백만원 + 공통인상분 7,465백만원 + 증원 인건비 1,050백만원 + 내부경영평가 성과급 757백만원 = 227,223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근로복지 공단 인건비 217,951	<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217,951백만원 >	근로복지 공단 인건비 227,223	<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227,223백만원 > 증 9,272백만원
	가. 계속소요 : 211,083백만원		가. 계속소요 : 217,951백만원
	나. '25년 공통인상분(3.0%) : 6,392백만원		나. 26년 공통인상분 : 7,465백만원
	다. '24년 정기증원 신규인력 잔여금액(10명, 6개월분) : 303백만원		다. 24년 수시증원 인건비 12개월분 : 333백만원
	라. '25년 정기증원 신규인력(5명, 6개월분) : 173백만원		라. 25년 정기증원 인건비 잔여 6개월분 : 173백만원
			마. 26년 정기증원(증원 169명) 인건비 증액분 : 5,732백만원
			바. 26년 정기증원(감원 139명) 인건비 감액분 : △5,188백만원
			사. 내부경영평가 성과급 정상 지급 : 75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산정, 부과업무의 원활한 수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 배정 → 근로복지공단 매월 고용노동부 자금 신청 → 자금 배정 → 집행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200,185	6,571	206,756	206,756	206,756	100.0	100.0	-	-
2023	204,371	-	204,371	204,371	204,371	100.0	100.0	-	-
2024	211,083	-	211,083	211,083	211,083	100.0	100.0	-	-
2025	217,951	-	218,708	218,708	218,708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계획변경) 통상임금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인건비 지급 - 특이사항 없음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계획변경)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인건비 지급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기재부협 의 (2025.12.23.)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350	350-01	757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4.12.)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법정수당 추가소요 지급
합 계				757	-

사 업 명						
(2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건비(7084-1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예방정책관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4	105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산재보험및예방기금운영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건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인건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사업시행주체	산업안전정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인건비	151,107	157,008	166,651	164,624	164,624	7,616	4.9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51,107	151,107	151,107	-	-	157,008	166,651	166,651	166,609	-	42	164,624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건비	151,107	151,107	151,107	-	-	157,008	166,651	166,651	166,609	-	42	164,62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

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지속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88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41,751	147,232	151,107	166,651	164,62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 수혜자 : 산재보험가입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인건비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 공단	164,624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건비

: (2025 계획) 157,008만원 → (2025 계획) 166,651백만원 → (2026 계획) 164,624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6,651	○ 계속소요 : 151,107백만원 ○ '25년 공통인상분(3.0%) : 4,534백만원 ○ '24년 정기증원(4명, 6개월분) 및 수시증원(8명, 12개월분) : 562백만원 ○ '25년 정기증원 신규인력 인건비(28명, 6개월분) : 805백만원 ○ 통상임금 지급('25년 기금변경) : 9,408백만원 ○ 법정수당 추가소요 지급('25년 기금변경) : 235백만원	164,624	○ 계속소요 : 157,008백만원 ○ '26년 공통인상분 : 5,553백만원 ○ 추가소요 : 1,637백만원 - '25년 정기증원 인건비(6개월분) (805백만원) - '25년 수시증원 인건비(12개월분) (832백만원) ○ 특이소요 : 426백만원 - '26년 정기증원 인건비(6개월분) (42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공단 본부 및 산하기관 운영경비 지원(141,751백만원 집행)
2023	- 공단 본부 및 산하기관 운영경비 지원(147,232백만원 집행)
2024	- 공단 본부 및 산하기관 운영경비 지원(151,107백만원 집행)
2025	- 공단 본부 및 산하기관 운영경비 지원(166,609백만원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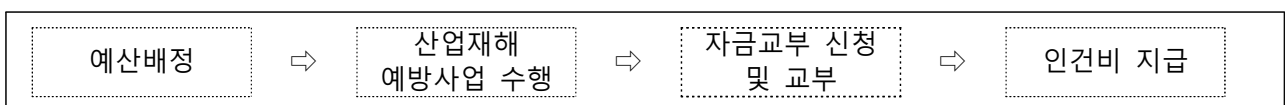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산재예방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41,239	512	141,751	141,751	141,751	100.0	100.0	-	-
2023	147,232	-	147,232	147,232	147,232	100.0	100.0	-	-
2024	151,107	-	151,107	151,107	151,107	100.0	100.0	-	-
2025	157,008	9,643	166,651	166,651	166,609	100.0	100.0	-	4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공단 임직원 인건비 지원(141,751 백만원 집행)
2023	- 공단 임직원 인건비 지원(147,232 백만원 집행)
2024	- 공단 임직원 인건비 지원(151,107 백만원 집행)
2025	- 공단 임직원 인건비 지원(166,609 백만원 집행)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기재부협의 (2025.7.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건비	350	350-01	9,408	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 내부평가급 최소 보장분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 후 차액 지급을 위한 통상임금 정산금
기재부협의 (2025.12.2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건비	350	350-01	235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4.12.)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법정수당 추가소요 지급
합 계				9,643	-

사 업 명						
(29) 기금운영관리(7084-1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업보건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보상정책관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4	106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산재보험및예방기금운영비	기금운영관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금운영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보건
		보상정책관
	사업시행주체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금운영관리	2,855	2,941	2,941	3,044	3,044	103	3.5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2,855	2,855	2,855	-	-	2,941	2,941	2,941	2,941	-	-	3,044
· 기금운영관리	2,855	2,855	2,855	-	-	2,941	2,941	2,941	2,941	-	-	3,04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산재보험사업을 위탁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의 인건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기금의 용도)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1. 27.>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한다)에 대한 출연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8.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8 이상을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추진경위 -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738	2,785	2,855	2,941	3,044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근로복지공단 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출연	근로복지공단	3,044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기금운영관리 : (2025) 2,941백만원 → (2026 계획) 3,044백만원, 증 103백만원, 증 3.5%

① 기금운영관리 : (2025) 2,941백만원 → (2026 계획) 3,044백만원, 증 103백만원, 증 3.5%

- (요구) 공통인상률 반영 요구
- (산출) 계속소요 2,941백만원 + 공통인상분 103백만원 = 3,044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기금운영 관리 2,941	< 기금운영관리 2,941백만원 > 가. 계속소요 : 2,855백만원 나. '25년 공통인상분(3.0%) : 86백만원	기금운영 관리 3,044	< 기금운영관리 3,044백만원 > 가. 계속소요 : 2,941백만원 나. '26년 공통인상분 : 10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산정, 부과업무의 원활한 수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 배정 → 근로복지공단 매월 고용노동부 자금 신청 → 자금 배정 → 집행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2,738	-	2,738	2,738	2,738	100.0	100.0	-	-
2023	2,785	-	2,785	2,785	2,785	100.0	100.0	-	-
2024	2,855	-	2,855	2,855	2,855	100.0	100.0	-	-
2025	2,941	-	2,941	2,941	2,941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30) 기금관리비 기타경비(7084-2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 보상정책관		080	08E
명칭	및예방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4	201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산재보험및예방기금 운영비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금관리비기타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보건 보상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302	363	333	345	345	△18	△5.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 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363 (313)	313	302	-	11	363	333	333	278	-	55	345
· 기금관리비 기타 경비	363 (313)	313	302	-	11	363	333	333	278	-	55	34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지원을 위한 관서운영경비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예의 출연
 4.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출연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8.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② 추진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1995년
- 추진배경 : '95.5.1. 산재보험기금의 설치에 따라 기금집행 및 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서운영경비 지원
- 정책변화 및 정책적 중요성 :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 관리 주체에 대한 일정 수준의 경비 지원 필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73	351	363	363	34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직접관리(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25계획) 363백만원 → (‘26계획) 345백만원(감 18백만원, -4.96%)

- ① 운영비 : 300 → 291백만원(감 9백만원, -3.0%)
- ② 여비 : 10 → 10백만원(전년 동)
- ③ 업무추진비 : 4 → 4백만원(전년 동)
- ④ 공사비 : 49 → 40백만원(감 9백만원, -18.4%)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구 분	'25	'26
	계획	계획
□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363	345
○ 운영비	300	291
- 일반수용비	257	256
- 공공요금및제세	6	6
- 특근매식비	6	6
- 시설장비유지비	28	20
		3
	3	10
- 복리후생비	10	10
○ 여비	10	4
- 국내여비	4	40
○ 업무추진비	49	
○ 공사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산재기금의 적정한 집행과 관리의 효율화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금운용계획 수립, 배정, 지출, 결산, 평가 등 업무수행(근무지내 출장, 초과근무에 따른 특근매식비, 심의위원회 등 회의 개최, 관련 책자 유인 등) → 관련 비용 지출
- 지방노동관서 시설비 수요 파악 → 우선순위 선정(시급성 및 필요성) → 자금배정 → 지방노동관서 용역 계약 체결 → 공사시행 →지출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373	△70	303	303	195	64.4	64.4		108
2023	381	△30	351	351	265	69.6	75.5		86
2024	363	△50	313	313	303	96.8	96.8		10
2025	363	△30	333	333	278	83.5	83.5		55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사유 : 운영비 절감액 및 집행 잔액
2023	- 불용 사유 : 운영비 절감액 및 집행 잔액
2024	- 불용 사유 : 운영비 절감액 및 집행 잔액
2025	- 불용 사유 : 운영비 절감액 및 집행 잔액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025.12.16.)	일반수용비	210	01	△30	산재예방분야 지방관서 국내여비 부족에 따른 기금변경 * 산재예방운용 기타경비(7084-203)_국내여비 (220-01)로 변경
합 계				△30	

사 업 명
(31) 산재보험운영 기타경비(7084-2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 보상정책관		080	08E
명칭	및예방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4	202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산재보험및예방기금 운영비	산재보험운영 기타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산재보험운영 기타경비	실·국·과(팀)
	산업보건 보상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산재보험운영 기타경비	883	899	821	855	855	△44	△4.9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 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899 (949)	949	884	-	65	899	821	821	741	-	80	855
· 산재보험운영기 타경비	899 (949)	949	884	-	65	899	821	821	741	-	80	85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운영비 지원
- 보험급여 등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한 재심사 사건을 심리 재결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운영비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출연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8.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② 추진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1995년
- 추진배경 : 산재기금의 주요사업인 산재보험사업을 주관하는 부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한 운영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82	1,042	899	899	85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직접관리(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산재보험운영기타경비:

(‘25계획) 899백만원 → (‘26계획) 855백만원(감 44백만원, -4.9%)

- ① 운영비 : 781 → 744백만원(감 37백만원, -4.7%)
- ② 여비 : 30 → 30백만원(전년 동)
- ③ 업무추진비 : 63 → 63백만원(전년 동)
- ④ 자산취득비 : 25 → 18백만원(감 7백만원, -28.0%)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구 분	‘25	‘26
	계획	계획
□ 산재보험운영 기타경비	899	855
○ 운영비	781	744
- 일반수용비	680	661
- 공공요금및제세	40	22
- 특근매식비	16	16
- 임차료	32	32
- 복리후생비	3	3
- 관리용역비	10	10
○ 여비	30	30
- 국내여비	17	17
- 국외업무여비	13	13
○ 업무추진비	63	63
○ 자산취득비	25	18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2~'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산재기금의 적정한 집행과 관리의 효율화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금운용계획 수립, 배정, 지출, 결산, 평가 등 업무수행(근무지내 출장, 초과근무에 따른 특근매식비, 심의위원회 등 회의 개최, 관련 책자 유인 등) → 관련 비용 지출
-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업무수행(근무지내 출장, 초과근무에 따른 특근매식비, 심의위원회 등 회의 개최, 관련 책자 유인 등) → 관련 비용 지출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882		882	882	756	85.7	85.7	8	118
2023	1,042		1,042	1,050	950	91.2	90.5		100
2024	899	+50	949	949	884	93.2	93.2		65
2025	899	△78	821	821	741	90.2	90.2		80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사유 : 운영비 절감액 및 집행 잔액 - 이월 사유 : 산재재심사위원회 전산시스템 개선용역 계약기간에 따른 이월
2023	- 불용 사유 : 운영비 절감액 및 집행 잔액
2024	- 불용 사유 : 운영비 절감액 및 집행 잔액
2025	- 불용 사유 : 운영비 절감액 및 집행 잔액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025.9.26.)	국내여비 (산재보상 정책과)	220	01	10	산재보험분야 국내여비 부족분 증액
	일반수용비 (산재보상 정책과)	210	01	△10	
자체변경 (2025.11.18.)	일반수용비 (산재보상 정책과)	210	01	△8	산재보험정책분야 연구용역비 부족에 따른 기 금변경 * 산재보험 및 예방연구개발(7085-200)_산재보험 정책분야 연구용역비로 변경
자체변경 (2025.11.18.)	일반수용비 (산재재심사위원 회)	210	01	45	산재재심사위원회 운영비 부족분 증액
	일반수용비 (산재보상 정책과)	210	01	△45	
자체변경 (2025.12.16.)	일반수용비 (산재보상 정책과)	210	01	△70	산재예방분야 지방관서 국내여비 부족에 따른 기금변경 * 산재예방운용 기타경비(7084-203)_국내여비 (220-01)로 변경
자체변경 (2025.12.22.)	일반수용비 (산재재심사위원 회)	210	01	2	산재재심사위원회 운영비 부족분 증액
	공공요금 및 제세 (산재재심사위원 회)	210	02	△2	
자체변경 (2025.12.22.)	국내여비 (산재재심사위원 회)	220	01	0.2	산재재심사위원회 국내여비 부족분 증액
	공공요금 및 제세 (산재재심사위원 회)	210	02	△0.2	
자체변경 (2025.12.29.)	국내여비 (산재보상 정책과)	220	01	3	산재보험분야 국내여비 부족분 증액
	국외업무여비 (산재보상 정책과)	210	01	△3	
합 계				△78	

사 업 명
(32) 산재예방운영 기타경비(7084-2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080	08E
명칭	및예방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4	203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산재보험및예방기금운영비	산재예방운영 기타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산재예방운영 기타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정책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산재예방운영 기타경비	2,572	2,417	2,417	2,299	2,431	14	0.6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 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2,652 (2,652)	2,652	2,572	0	80	2,417	2,517	2,517	2,458	0	59	2,299
· 산재예방운영 기타경비	2,652 (2,652)	2,652	2,572	0	80	2,417	2,517	2,517	2,458	0	59	2,29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산업안전보건본부 및 지방관서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 부서 운영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출연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8.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 연도 : 1995년

- 추진배경 : 본부 및 지방관서의 산업재해예방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5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799	2,862	2,652	2,417	2,43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산재보험운영기타경비:

(‘25계획) 2,417백만원 → (‘26계획) 2,431백만원(증 14백만원, 0.6%)

- ① 운영비 : (‘25년) 1,045 → (‘26년) 1,045백만원(감 99백만원)
- ② 여비 : (‘25년) 1,246 → (‘26년) 1,246백만원(전년 동)
- ③ 업무추진비 : (‘25년) 64 → (‘26년) 64백만원(전년 동)
- ④ 보전금 : (‘25년) 6 → (‘26년) 138백만원(증 132백만원)
- ⑤ 자산취득비 : (‘25년) 56 → (‘26년) 37백만원(감 19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구 분	‘25	‘26
	계획	계획
□ 산재예방운영 기타경비	2,417	2,431
○ 운영비	1,045	946
- 일반수용비	800	743
- 공공요금및제세	184	146
- 특근매식비	7	4
- 임차료	6	5
- 복리후생비	47	47
- 기타운영비	1	1
○ 여비	1,246	1,246

구 분	'25	'26
	계획	계획
- 국내여비	1,203	1,203
- 국외업무여비	43	43
○ 업무추진비	64	64
○ 보전금	6	138
○ 자산취득비	56	37

4) 사업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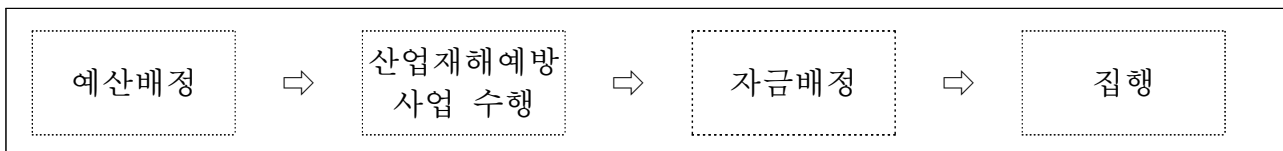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산업재해예방사업의 원활한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2,799	70	2,869	2,869	2,820	98.3	98.3	0	49
2023	2,849	0	2,862	2,862	2,812	98.3	98.3	0	50
2024	2,652	0	2,652	2,652	2,572	97.0	97.0	0	80
2025	2,417	100	2,517	2,517	2,458	97.7	97.7	0	59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2023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2024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2025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025.8.21.)	임차료	210	07	3	산재예방분야 임차료 부족분 증액
	일반수용비	210	01	△3	
자체변경 (2025.10.15.)	임차료	210	07	2	산재예방분야 임차료 부족분 증액
	일반수용비	210	01	△2	
자체변경 (2025.12.16.)	국내여비	220	01	100	산재예방분야 지방관서 국내여비 부족에 따른 기금변경 *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및 산재보험운영 기타 경비의 일반수용비에서 각각 30백만원, 70백만원 변경
자체변경 (2025.12.18.)	국내여비	220	01	200	산재예방분야 지방관서 국내여비 부족분 증액
	일반수용비	210	01	△200	
합 계				100	

사 업 명
(33)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7084-2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업보건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보상정책관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4	204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산재보험및예방기금운영비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보건 보상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중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	37,381	36,747	36,747	39,702	39,702	2,955	8.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37,381	37,381	37,381	-	-	36,747	36,747	36,747	36,747	-	-	39,702
·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	37,381	37,381	37,381	-	-	36,747	36,747	36,747	36,747	-	-	39,70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대한 기관운영에 필요한 소요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기금의 용도)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1. 27.>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8.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8 이상을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추진경위 : '95년부터 산재보험 적용·징수 및 보상, 재활사업을 위탁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및 소속기관 사업수행 및 기관운영 비용 지원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6,294	35,501	37,381	36,747	39,702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근로복지공단 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출연	근로복지공단	39,702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제1항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 : (2025) 36,747백만원 → (2026 계획) 39,702백만원, 증 2,955백만원, 증 8.0%
- ①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 : (2025) 36,747백만원 → (2026 계획) 39,702백만원, 증 2,955백만원, 증 8.0%
- (요구)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 요구
 - (산출) 계속소요 36,747백만원 + 특이소요 4,988백만원 + 추가소요 67백만원 - 완료소요 912백만원 - 공통절감 1,188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근로복지 공단 기관운영 경비 36,747	<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 36,747백만원 > 가. 계속소요 : 37,381백만원 나. 특이소요 : 2,179백만원 - 특별미원 지원보호 여동경비 462백만원 - 대전서부지사 이전소요 482백만원 - 임차청사 임차료 관리비 인상 595백만원 - 노후 임차차량 교체 197백만원 - 재난 안전물품 장비 구매 50백만원 - 공공요금 인상소요 133백만원 - 공무원 처우개선 소요 135백만원 - 경기남부판정위원회 신설 119백만원 - 24년 정기총회 선택적 복리비 6개월분 4백만원 - 25년 정기총회 선택적 복리비 6개월분 2백만원 다. 완료소요 : △1,166백만원(서울성동지사 이전, 울산중부지사 신설 등) 라. 공통절감 : △1,647백만원	근로복지 공단 기관운영 경비 39,702	<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 39,702백만원 > 증 2,955백만원 가. 계속소요 : 36,747백만원 나. 특이소요 : 4,988백만원 - 26년 정기총회(169명) 선택적복리비 53백만원 - 소속기관 이전 및 확장소요 : 622백만원 - 근로복지여구원 이전소요 : 759백만원 - 26년 임차청사 임차관리비 인상소요 : 384백만원 - 경인지역본부 개청 소요예산 : 2,454백만원 - 특별미원 지원보호 여동경비 : 425백만원 - 노후 및 임차 차량 교체 소요 : 153백만원 - 공무원 처우개선 소요 : 138백만원 다. 추가소요 : 67백만원 - 24년 수시총회 선택적복리비 12개월분 : 5백만원 - 25년 정기총회 선택적복리비 잔여 6개월분 : 2백만원 - 경기남부판정위원회 임차료 잔여 6개월분 : 60백만원 라. 완료소요 : △912백만원(대전서부지사 이전, 경인남부판정위 신설 등) 마. 공통절감 : △1,18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해당없음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산정, 부과업무의 원활한 수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 배정 → 근로복지공단 매월 고용노동부 자금 신청 → 자금 배정 → 집행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36,294	-	36,294	36,294	36,294	100.0	100.0	-	-
2023	35,501	-	35,501	35,501	35,501	100.0	100.0	-	-
2024	37,381	-	37,381	37,381	37,381	100.0	100.0	-	-
2025	36,747	-	36,747	36,747	36,747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3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관운영경비(7084-2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예방정책관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4	205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산재보험및예방기금운영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관운영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기관운영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기관운영경비	15,905	15,053	15,053	15,378	15,378	325	2.2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5,905	15,905	15,905	-	-	15,053	15,053	15,053	15,053	-	-	15,378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관운영경비	15,905	15,905	15,905	-	-	15,053	15,053	15,053	15,053	-	-	15,37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관운영 업무수행을 위한 경상운영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위험성 수준별로 유해인자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평가대상 유해인자의 선정기준, 유해성·위험성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지속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88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670	15,418	15,905	15,053	15,37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 수혜자 : 산재보험가입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기관운영경비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15,378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관운영경비

: (2025 당초 계획) 15,053백만원 → (2026 계획) 15,378백만원, 325백만원 증액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053	○ 계속소요 : 15,905백만원 ○ 특이소요 : 499백만원 - 노후청사 개보수 비용(90백만원), 울산 공동직장 어린이집 운영비(237백만원), 임차청사 임차료·관리비 인상(61백만원), '24년 정기증원 공무원 인건비(34백만원), 공무직 처우개선 소요(27백만원), 정기증원 선택적복리비(50백만원), ○ 완료소요 : △443백만원 - 노후청사 유지보수, 평택지사 신설 비용 등 ○ 공통절감 : △908백만원	15,378	○ 계속소요 : 15,053백만원 ○ 추가소요 : 373백만원 - '25년 정기증원 선택적복리비(6개월분) (9백만원) '25년 장기증원(무기직) 선택적복리비(6개월분) (1백만원) '25년 정기증원(무기직) 인건비(6개월분) (34백만원) '25년 수시증원 선택적복리비(12개월분) (9백만원) - 청사임차 재원 이관(320백만원) ○ 공통기준 : 100백만원 - 무기직 처우개선 (100백만원) ○ 특이소요 : 162백만원 - '26년 정기증원 선택적복리비(6개월분) (5백만원) '26년 정기증원(무기직) 인건비(6개월분) (36백만원) - 노후청사 개보수 비용(72백만원), 임차청사 임차료·관리비 인상(38백만원), 공공요금 인상 소요(11백만원), ○ 완료소요 : △90백만원 - 노후청사 시설 유지보수 ○ 공통절감 : △22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사항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공단 본부 및 산하기관 운영경비 지원(15,670백만원 집행)
2023	- 공단 본부 및 산하기관 운영경비 지원(15,418백만원 집행)
2024	- 공단 본부 및 산하기관 운영경비 지원(15,905백만원 집행)
2025	- 공단 본부 및 산하기관 운영경비 지원(15,035백만원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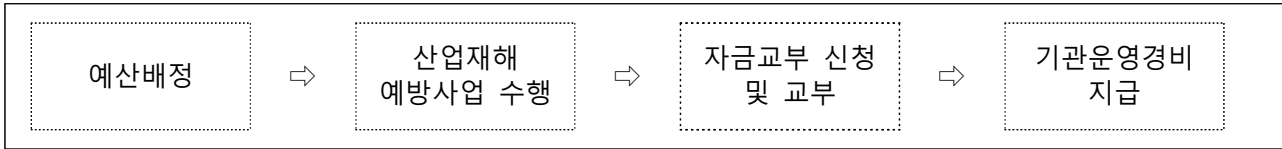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산재예방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 화학물질 안전보건인프라 구축 및 화학물질 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입안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5,670	-	15,670	15,527	15,527	100.0	100.0	-	-
2023	15,418	-	15,418	15,670	15,670	100.0	100.0	-	-
2024	15,905	-	15,905	15,418	15,418	100.0	100.0	-	-
2025	15,053		15,053	15,053	15,053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전액 집행
2023	- 전액 집행
2024	- 전액 집행
2025	- 전액 집행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35)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7084-2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업보건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보상정책관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4	206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산재보험및예방기금운영비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보건
		보상정책관
	사업시행주체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	1,304	1,304	1,304	2,877	2,877	1,573	120.6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304	1,304	1,304	-	-	1,304	1,304	1,304	1,304	-	-	2,877
· 근로복지공단청사임차	1,304	1,304	1,304	-	-	1,304	1,304	1,304	1,304	-	-	2,87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대한 청사 및 숙소 임차보증금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기금의 용도)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1. 27.>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한다)에 대한 출연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8.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8 이상을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추진경위 : '95년부터 산재보험 적용·징수 및 보상, 재활사업을 위탁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및 소속기관 청사 임차보증금 지원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5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097	1,752	1,304	1,304	2,87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근로복지공단 임직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 : (2025) 1,304백만원 → (2026 계획) 2,877백만원, 증 1,573백만원, 증 120.6%

①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 : (2025) 1,304백만원 → (2026 계획) 2,877백만원, 증 1,573백만원, 증 120.6%

- (요구)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대한 청사 및 숙소 임차보증금 지원
- (산출) 계속소요 1,304백만원 + 기존 임차청사 재계약 인상분 773백만원 + 26년 이전 청사 보증금 1,200백만원 - 공통절감 400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근로복지 공단 청사임차 1,304	<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 1,304백만원 > 가. 계속소요 1,304백만원 나. 특이소요 132백만원 - 경인남부판정위원회 신설 임차보증금 100백만원 - 기존 임차보증금 재계약 인상분 32백만원 다. 완료소요 △132백만원(울산중부지사 신설비용 완료소요)	근로복지 공단 청사임차 2,877	<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 2,877백만원 > 증 1,573백만원 가. 계속소요 1,304백만원 나. 기존 청사 재계약 인상분 773백만원 다. 26년 이전 청사 보증금 1,200백만원 라. 공통절감 △4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산정, 부과업무의 원활한 수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 배정 → 근로복지공단 임차보증금 소요발생시 고용노동부 자금 신청 → 자금 배정 → 집행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3,097	-	3,097	3,097	3,097	100.0	100.0	-	-
2023	1,752	-	1,752	1,752	1,752	100.0	100.0	-	-
2024	1,304	-	1,304	1,304	1,304	100.0	100.0	-	-
2025	1,304	-	1,304	1,304	1,304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3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청사임차(7084-2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예방정책관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4	207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산재보험및예방기금운영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청사임차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청사임차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사업시행주체	산업안전정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청사임차	867	867	867	304	304	△563	△64.9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867	867	867	-	-	867	867	867	867	-	-	304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청사임차	867	867	867	-	-	867	867	867	867	-	-	30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청사임차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 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지속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88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47	647	867	867	30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무형자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 수혜자 : 산재보험가입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청사업차	직접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304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6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청사임차

: (2025 당초 계획) 867백만원 → (2026 계획) 304백만원, 563백만원 감액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67	○ 계속소요 : 867백만원 ○ 특이소요 : -백만원 ○ 공통절감 : -백만원	304	○ 계속소요 : 867백만원 ○ 특이소요 : △243백만원 - 기존청사 재계약 인상분 77백만원 - 청사임차 재원 이관 △320백만원 ○ 공통절감 : 32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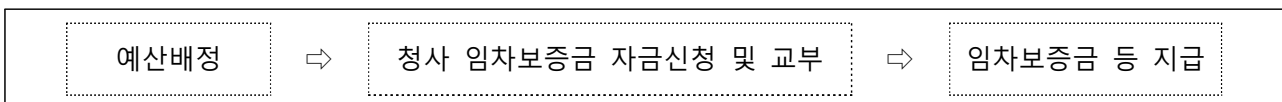
2022	- 공단 산하기관 임차청사 등 임차보증금 지원(947백만원)
2023	- 공단 산하기관 임차청사 등 임차보증금 지원(647백만원)
2024	- 공단 산하기관 임차청사 등 임차보증금 지원(867백만원)
2025	- 공단 산하기관 임차청사 등 임차보증금 지원(867백만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산재예방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947	-	947	947	947	100.0	100.0	-	-
2023	647	-	647	647	647	100.0	100.0	-	-
2024	867	-	867	867	867	100.0	100.0	-	-
2025	867		867	867	867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전액 집행
2023	- 전액 집행
2024	- 전액 집행
2025	- 전액 집행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37) 산재보험 적용징수보상(7084-2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업보건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보상정책관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4	208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산재보험및예방기금운영비	산재보험 적용징수보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산재보험 적용징수보상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보건 보상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산재보험 적용징수보상	9,168	9,168	9,168	9,244	9,244	76	0.8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9,168	9,168	9,168	-	-	9,168	9,168	9,168	9,168	-	-	9,244
· 산재보험적용징수보상	9,168	9,168	9,168	-	-	9,168	9,168	9,168	9,168	-	-	9,24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산업재해 가입대상 사업주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 보험료 징수 및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업무 등에 소요되는 수행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1. 27.>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한다)에 대한 출연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8.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8 이상을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추진경위 : 산재보험 적용징수보상·재활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경상운영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340	11,000	9,168	9,168	9,244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근로복지공단 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출연	근로복지공단	9,244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산재보험 적용징수보상 : (2025) 9,168백만원 → (2026 계획) 9,244백만원, 증 76백만원, 증 0.8%

① 산재보험 적용징수보상 : (2025) 9,168백만원 → (2026 계획) 9,244백만원, 증 76백만원, 증 0.8%

- (요구) 산업재해 가입대상 사업주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 보험료 징수 및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업무 등에 소요되는 수행경비 지원
- (산출) 계속소요 9,168백만원 + 공무직 처우개선 76백만원 = 9,244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산재보험 적용징수 보상 9,168	< 산재보험 적용징수보상 9,168백만원 > 가. 계속소요 9,168백만원 나. 특이소요 48백만원 - 공무직 처우개선 소요 48백만원 다. 공통절감 : △48백만원	산재보험 적용징수 보상 9,244	< 산재보험 적용징수보상 9,244백만원 > 증 76백만원 가. 계속소요 9,168백만원 나. 특이소요 76백만원 - 공무직 처우개선 소요 7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원활한 산재보험 부과, 보상, 재할업무 수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 배정 → 근로복지공단 매월 고용노동부 자금 신청 → 자금 배정 → 집행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1,340	-	11,340	11,340	11,340	100.0	100.0	-	-
2023	11,000	776	11,776	11,776	11,776	100.0	100.0	-	-
2024	9,168	-	9,168	9,168	9,168	100.0	100.0	-	-
2025	9,168	-	9,168	9,168	9,168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38) 산재보험 및 예방 연구개발(7085-2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 보상정책관		080	08E
명칭	및예방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5	20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산재보험및예방연구개발	산재보험및예방연구개발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산재보험 및 예방 연구개발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보건 보상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산재보험및예방 연구개발	407	570	578	527	527	△43	△7.5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 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570 (570)	582	407	24	151	570	602	602	428	162	12	527
· 산재보험및예방연 구개발	570 (570)	582	407	24	151	570	602	602	428	162	12	527
○ 비목별 분류(합계)	570 (570)	582	407	24	151	570	602	602	428	162	12	527
· 연구개발비(260-01)	570 (570)	582	407	24	151	570	602	602	428	162	12	52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산재보험제도 및 산재예방 관련 주요 쟁점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하여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책수립 시 반영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보험사업 관련 조사·연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1998년
- 추진배경 :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연구를 통하여 산재보험 및 예방사업의 평가 결과 및 개선안을 마련 정책 및 예산에 반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8년부터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00	600	570	570	52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직접관리(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연구용역 수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산재보험 및 예방 연구개발:

(‘25계획) 570백만원 → (‘26계획) 527백만원(감 43백만원, 7.5%)

- ① 산재보험정책분야 연구용역 (‘25계획) 430 → (‘26계획) 400백만원(감 30백만원, 7.0%)
- ② 산재예방정책분야 연구용역 (‘25계획) 140 → (‘26계획) 127백만원(감 13백만원, 9.3%)

4) 사업효과

-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사항 없음
-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산재보험 및 예방분야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도개선 또는 정책수립에 반영함으로써 산재보험 및 예방사업의 효과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연구용역 추진 과제 선정(고용노동부연구용역심의위원회)→ 연구용역 수행자(기관) 선정(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 → 연구용역 계약 및 시행→ 연구결과물 제출 → 정책수립 및 평가 등 반영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600		600	604	564	93.9	93.3	8	32
2023	600	17	617	625	613	99.4	98.1	12	-
2024	570		570	582	407	70.0	70.0	24	151
2025	570	8	578	602	428	74.0	71.1	162	12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 이월 사유 : 연구용역 계속비 이월
2023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 이월 사유 : 연구용역 계속비 이월
2024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 이월 사유 : 연구용역 계속비 이월
2025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 이월 사유 : 연구용역 계속비 이월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025.9.26.)	산재보험분야 정책연구용역	-	-	70	산재보험분야 정책연구용역비 부족분 증액
	산재예방분야 정책연구용역	-	-	△70	
자체변경 (2025.11.18.)	산재보험분야 정책연구용역	-	-	43	산재보험분야 정책연구용역비 부족분 증액 * 산재보험운영 기타경비의 일반수용비에서 8 백만원변경
	산재예방분야 정책연구용역	-	-	△35	
합 계				8	

사 업 명						
(39)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탁(9005-84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정책관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000	9005	840
명칭	기금간거래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자산운용팀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공공자금관리 기금(총괄계정) 예탁	3,300,000	4,850,000	4,850,000	5,050,000	5,050,000	200,000	4.1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 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3,300,000 [3,300,000]	3,300,000	3,300,000	-	-	4,850,000	4,850,000	4,850,000	4,850,000	-	-	5,050,000
· 공공자금관리기금(총 괄계정)예탁	3,300,000 [3,300,000]	3,300,000	3,300,000	-	-	4,850,000	4,850,000	4,850,000	4,850,000	-	-	5,05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재정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산재보험기금의 안정적인 운용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운용)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예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예의 예탁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관리기금예의 예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1998년
- 추진배경 : 여유자금(기금 적립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여 국가재정 안정화에 기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030,000	1,550,090	3,300,000	4,850,000	5,050,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직접관리(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공공자금관리기금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25계획) 4,850,000백만원 → (‘26계획) 5,050,000백만원(증 200,000백만원, 4.1%)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 없음
-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가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투자되고, 국채의 발행규모를 축소하여 국가재정 안정화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공자금관리기금 집행 계획 수립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700,000	330,000	2,030,000	2,030,000	2,030,000	100.0	100.0	-	-
2023	1,550,090	0	1,550,090	1,550,090	1,550,090	100.0	100.0	-	-
2024	3,300,000	0	3,300,000	3,300,000	3,300,000	100.0	100.0	-	-
2025	4,850,000	0	4,850,000	4,850,000	4,850,000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40) 한국은행 예치(9705-97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업보건 보상정책관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5	970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산재기금)	한국은행 예치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한국은행 예치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보건 보상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한국은행예치	42,165	0	0	0	0	-	-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 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 (-)	-	42,165	-	-	0	0	0	0	0
· 한국은행 예치	- (-)	-	42,165	-	-	0	0	0	0	0
○ 비목별 분류(합계)	- (-)	-	42,165	-	-	0	0	0	0	0
· 한국은행예치금 (470-01)	- (-)	-	42,165	-	-	0	0	0	0	0

* '25년 집행액은 '26.1월말 집계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회계연도 말 여유자금 운용 또는 기타 지출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한국은행 국고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에의 예입(預入)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추진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1995년
- 추진배경 : 회계연도 말 부득이 지출되지 못하고 국고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한국은행 예치금으로 봄
- 정책변화 및 정책적 중요성 : 연간 한국은행 예치를 최소화토록 기금을 관리·운용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5년부터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949	-	-	-	-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직접관리(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한국은행 예치: ('25계획) 0백만원 → ('26계획) 0백만원(전년 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산재보험 및 예방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회계연도 말일 한국은행 시재 파악 → 지출 재원으로 사용 또는 여유재원은 통화 및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 → 이후 한국은행 국고계좌로 입금되거나 시재 미파악 부분이 한국은행에 예치됨

8) 각종 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23,949		23,949	23,949	38,480	160.7	160.7		
2023	0		0	0	34,021	0	0		
2024	0		0	0	42,165	0	0		
2025	0		0	0	0	0	0		

* '25년 집행액은 '26.1월말 집계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41)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05-97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정책관		080	08B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5	972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산재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자산운용팀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비통화금융 기관예치	2,683,380	8,550,527	8,478,269	5,399,612	5,378,216	△3,172,311	△37.1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 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7,172,771 (7,171,880)	7,171,880	2,683,380	-	-	8,550,527	8,478,269	8,478,269	3,943,527	-	-	5,378,216
· 비통화금융기관예 치	7,172,771 (7,171,880)	7,171,880	2,683,380	-	-	8,550,527	8,478,269	8,478,269	3,943,527	-	-	5,378,21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여유자금(기금 적립금)을 비통화금융기관(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에 수익증권(채권형, 주식형, 단기자금 등)으로 예치하여 기금 조성에 기여하고, 기금의 지출 수요에 대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②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운용)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추진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1995년
- 추진배경 : 여유자금(기금 적립금)을 비통화금융기관(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에 일정비율 예치하여 기금운영의 안정성과 수익성, 유동성 확보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199,551	7,864,758	7,171,880	8,519,559	5,378,21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직접관리(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5계획) 8,550,527백만원 → (‘26계획) 5,378,216백만원
(감 3,172,311백만원, 37.1%)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 없음
-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유동성을 확보하여 기금 조성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분기별 자산운용계획에 따른 자산군별 투자 비중내에서 채권형·주식형 등의 수익증권 운용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7,532,344	△332,793	7,199,551	7,199,551	3,449,930	48.6	48.6	-	-
2023	7,865,534	△776	7,864,758	7,864,758	4,308,335	54.8	54.8	-	-
2024	7,172,771	△891	7,171,880	7,171,880	2,683,380	37.4	37.4	-	-
2025	8,550,527	△72,258	8,478,269	8,478,269	3,943,527	46.5	46.5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국회승인변경 (2025.5.1.)	비통화금융 기관예치금	470	03	△6,560	경제 취약계층인 산재근로자의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비 증액에 따른 소요재원 마련(1차 추정)
국회승인변경 (2025.7.4.)	비통화금융 기관예치금	470	03	△15,000	폭염에 따른 온열환경 취약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장비의 구입 비용 지원 사업비 증액에 따른 소요재원 마련(2차 추정)
기재부협의 (2025.7.9.)	비통화금융 기관예치금	470	03	△9,40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통상임금소송 인용에 따른 인건비 증액 소요재원 마련
기재부협의 (2025.12.18.)	비통화금융 기관예치금	470	03	△38,529	합병증 등 예방관리 사업비 부족분 증액 소요재원 마련
기재부협의 (2025.12.18.)	비통화금융 기관예치금	470	03	△1,769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수당 부족분 증액 소요재원 마련
기재부협의 (2025.12.18.)	비통화금융 기관예치금	470	03	△757	근로복지공단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증액 소요재원 마련
기재부협의 (2025.12.18.)	비통화금융 기관예치금	470	03	△23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증액 소요재원 마련
합 계				△72,258	

Ⅲ.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사 업 명
(1) 장애인고용장려금(145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및 직업재활기금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52	303
명칭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고용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장애인 고용장려금	소관부처	실·국·과(팀)
		통합고용정책국
	사업시행주체	장애인고용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장애인 고용장려금	353,371	377,377	377,377	403,220	403,220	25,843	6.8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 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323,371 (353,371)	353,371	353,371	-	-	377,377	377,377	377,377	377,377	-	-	403,220
· 장애인고용장려금	311,872 (341,872)	341,872	341,872	-	-	372,015	372,015	370,954	370,954	-	-	401,370
·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	11,499 (11,499)	11,499	11,499	-	-	5,362	5,362	6,423	6,423	-	-	-
·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 (-)	-	-	-	-	-	-	-	-	-	-	1,8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 도모 및 고용촉진 유도
-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원하여 소규모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3년 한시사업으로 '25년 종료)
-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의무고용 미달 중소기업에서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여 점진적 고용의무이행 유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제21조, 제30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설치·수리 등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

3. 장애인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작업 지도원,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낭독자 등을 배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고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기기

제30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제28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91. 장려금등제도 신설: 손실비용 보전제도로 장려금·지원금 지원
 - * 고용의무 적용업체(300인 이상) 지원금(부담기초액 50%, 2~3년) 지원 / 의무고용 미적용업체(300인 미만) 장려금(지원금의 50%, 1년) 지원
- '95. 장려금·지원금 지급금액 부담기초액의 80%로 통일
- '96. 장려금·지원금 지급기준 부담기초액의 100%로 상향
- '00.7월 법 개정을 통해 장려금·지원금을 '장려금'으로 통합하고, 지급단가를 장애의 경중에 따라 최저임금에 연계(100~175%, 1년)
- '02.9월 장려금 지급단가를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정액화
- '03.12월 지급단가 조정: 월30만원~60만원
- '10.1월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10) 2.3%, ('12) 2.5%, ('14) 2.7%
- '10.4월 지급단가 조정: 월15만원~50만원(경증장애인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 * 6급 장애인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 지원('11.1.1부터 시행)
- '15.1월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17) 2.9%, ('19) 3.1%
- '16.1월 지급단가 조정: 월15만원~60만원(중증여성 단가 10만원 인상)
- '18.1월 지급단가 조정: 월30만원~60만원(중증남성 단가 10만원 인상)
 - * 6급 장애인 4년 한시지원 및 경증장애인 근속기간별 감액제도 폐지
- '20.1월 지급단가 조정: 월30만원~80만원(경증여성 5만원, 중증남성 10만원, 중증여성 20만원 단가 인상)
- '21.3월 제19차 일자리 위원회(소규모 사업장이 장애인을 신규고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 '22.1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시행
- '23.1월 지급단가 조정: 월35만원~90만원(경증 5만원, 중증 10만원 단가 인상)
- '25.5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한시사업 종료
- '25.8월 국정과제 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內 ‘기업 대상 고용개선장려금 신설’ 포함
 -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 장려금을 최장 1년간 지원하여 점진적 고용의무 이행 유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장애인고용장려금) '91년~계속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22년~(3년 한시)

-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26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62,422	297,747	323,371	377,377	403,220

- 기타: 수혜자 규모

(단위 : 명)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연인원	584,360	611,300	633,382	755,920	810,730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지원인원	2,860	2,860	21,804	10,902	-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지급연인원	-	-	-	-	4,27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공단위탁) 및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
 -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50인 이상 100인 미만 의무고용 미달 사업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장애인고용장려금	출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60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및 제71조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출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0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및 제71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장애인고용장려금 : (2025 계획) 377,377백만원 → (2026 계획) 403,220백만원, 25,843백만원 증액

① 장애인고용장려금

: (2025) 372,015백만원 → (2026 계획) 401,370백만원, 29,355백만원 증액

- (요구) ①지급연인원 확대 ('25) 755,920명 → ('26요구) 810,730명 (+54,810명)
- ②지급률 축소 ('25) 81.51% → ('26요구) 80.76% (△0.75%p)

* 지급률: 장려금 지급단가로 지급되는 비율('20~'24년 평균: 80.76%)

③운영비 증액 ('25) 210백만원 → ('26요구) 260백만원 (+50백만원)

- (산출) 지급연인원 × 지급단가 × 지급률 + 운영비 260백만원

* 지급연인원(810,730명) × 지급단가(1인당 월35~90만원) × 지급률(80.76%)

* 지급연인원 평균증가율 : ('25) 6.00% → ('26요구) 6.21% (+0.21%p)

* 지급률 : ('25) 81.51% → ('26요구) 80.76% (△0.75%p)

* 운영비 : 210백만원(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9,130천원 × 23개 지역본부 및 지사)
+ 50백만원(제도개선 연구용역비)

②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 (2025 계획) 5,362백만원 → (2026 계획), 순감

- 한시사업기간 종료로 인한 순감

③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 (2025 계획) - → (2026 계획) 1,850백만원, 순증

- '26년 신규사업 신설로 인한 순증

- (요구) 1,850백만원

- (산출) 지급인원 × 지급단가 × 지급기간 + 운영비 200백만원

* 지급인원(534명) × 지급단가(386천원) × 지급기간(8개월) + 운영비(200백만원)

* 지급인원(534명) : 786명('24년도 50인 이상 ~ 100인 미만 사업체 중증장애인 신규채용 인원 × 68.0%('24년 50인 이상 ~ 100인 미만 사업체 의무고용 미이행률)

* 지급단가(386천원) : 평균지급단가[(중증남성 350천원*64.0%)+(중증여성 450천원*36.0%)]

※'24년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중증 지급연인원 중 남성 비율 64.0%, 여성비율 36.0%

* 운영비 : 200백만원(전산시스템 구축비용)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77,377	○ 기타보전금(310-04) : 377,167,000천원 가. 장애인고용장려금 (371,805,000천원) - 지급연인원 755,920명 × 지급단가 월35~90만원 × 지급률 81.51% = 371,805,000천원 나.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 (5,362,000천원) - 지급연인원 10,902명 × 지급단가 월35~90만원 × 지급률 81.51% = 5,362,000천원 ○ 사업출연금(350-02) : 210,000천원 가. 장애인고용장려금 (210,000천원) - 공단 소속기관 23개소 × 운영비 9,130,435원 = 210,000천원	403,220	○ 기타보전금(310-04) : 402,760,000천원 가. 장애인고용장려금 (401,110,000천원) - 지급연인원 810,730명 × 지급단가 월35~90만원 × 지급률 80.76% = 401,110,000천원 나.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1,650,000천원) - 지급인원 534명 × 평균지급단가 386천원 × 지급기간 8개월 = 1,650,000천원 ○ 사업출연금(350-02) : 460,000천원 가. 장애인고용장려금 (260,000천원) - 공단 소속기관 23개소 × 운영비 9,130,435원 = 210,000천원 - 제도개선 연구용역비 50,000천원 나.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200,000천원) - 전산시스템 구축비 20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 (단위: %)	목표	3.18	3.20	(삭제)	(삭제)	(삭제)	'24년 프로그램 성과지표 변경	-	-
	실적	3.19	3.24	-	-	-			
	달성도	100.3	101.3	-	-	-			
근로지원인 수혜장애인 비율 (단위: %)	목표	1.66	1.96	(삭제)	(삭제)	(삭제)	'24년 프로그램 성과지표 변경	-	-
	실적	1.89	2.07	-	-	-			
	달성도	113.86	105.6	-	-	-			
장애인 취업자 비율 (단위: %)	목표	-	(신규)	5.18	(삭제)	(삭제)	'25년 프로그램 성과지표 변경	-	-
	실적	-	-	6.17	-	-			
	달성도	-	-	119.1	-	-			
장애인고용률 (단위: %)	목표	-	-	(신규)	49.1	49.2	최근 5개년('20~'24) 평균(49.1%)의 의욕치 0.1%p 반영	(장애인 취업자 수 / 15세 이상 만 64세 이하 장애인 인구) × 1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실적	-	-	-	48.3	-			
	달성도	-	-	-	98.4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연인원 608,302명(순인원: 83,071명)
2023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연인원 665,816명(순인원: 82,982명)
2024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연인원 709,945명(순인원: 88,270명)
2025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연인원 762,886명(순인원: 94,429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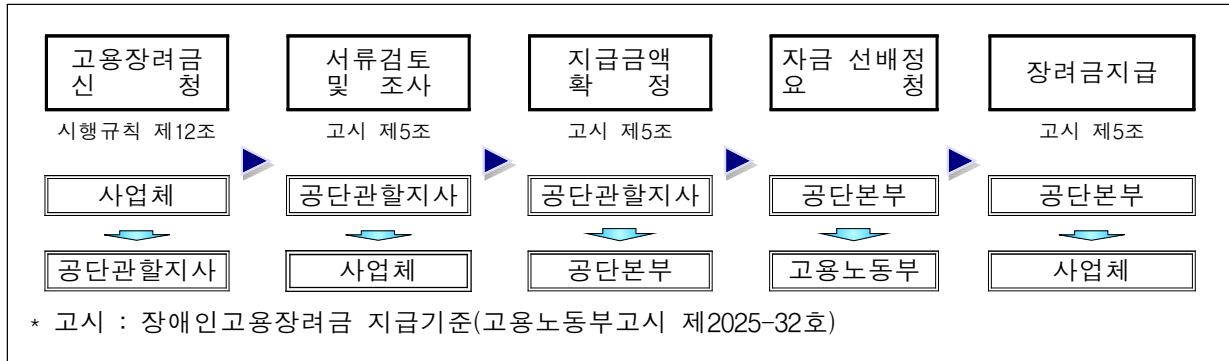
-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촉진을 장려하고, 장애인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창출 기대
 - * 사업 규모 확대: 지급연인원 ('25년) 755,920명 → ('26년) 810,730명
-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의무고용 미달 사업주의 점진적 고용의무 이행 유도
 - * ('26년) 지급연인원 4,272명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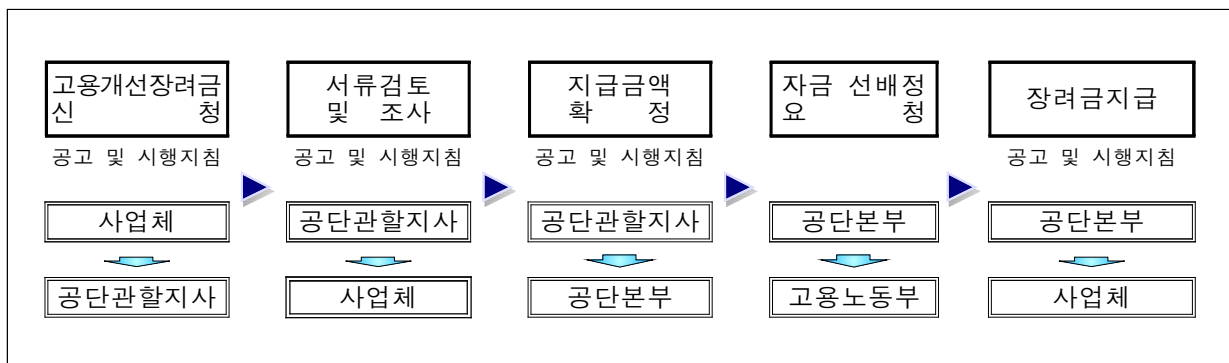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장애인고용장려금



○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지적사항)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의 2022년 동 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제 지원인원의 추이를 검토하여 2023년에 지원 가능한 인원을 바탕으로 목표량을 산출하는 등 객관적이고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 있음('23년 예산안 환노위 검토보고서)
 - (후속조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가 동 사업을 인지하고 장애인 신규고용에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 홍보하고, 실제로 장애인을 신규 고용한 사업주는 빠짐없이 지원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충실히 운영('23년 예산안 환노위 검토보고서)
- 2) 대외공개 평가
 - '23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 등급 미산정('지원고용 및 재할' 유형으로 등급 미산정)
 - '24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 개선필요
 - '25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 양호
- 3) 자체평가
 - '23년 재정사업자율평가 : 비대상
 - '24년 재정사업자율평가 : '보통' 등급 획득
 - '25년 재정사업자율평가 : '보통' 등급 획득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262,422	10,000	272,422	272,422	269,790	99.0	99.0	-	2,632
2023	297,747	27,000	324,747	324,747	324,272	99.9	99.9	-	475
2024	323,371	30,000	353,371	353,371	353,371	100.0	100.0	-	-
2025	377,377	-	377,377	377,377	377,377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업 활성화에 따른 지급예산 부족으로 10,000백만원 증액 변경 - 신규고용장려금 집행부진에 따른 집행잔액 2,632백만원 불용
2023	-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업 활성화에 따른 지급예산 부족으로 27,000백만원 증액 변경 - 신규고용장려금 집행부진에 따른 집행잔액 475백만원 불용
2024	-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업 활성화에 따른 지급예산 부족으로 30,000백만원 증액 변경
2025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활성화에 따른 지급예산 부족으로 내역사업간 계획변경 (장애인고용장려금 1,061백만원 감액,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1,061백만원 증액)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2) 장애인고용관리지원(1452-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및 직업재활기금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52	306
명칭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고용지원	장애인고용관리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근로지원인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소관부처	실·국·과(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장애인고용 관리지원	248,006	252,114	260,792	270,699	275,296	23,182	9.2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248,006 (248,006)	248,006	248,006	-	-	252,114	260,792	260,792	260,792	-	-	275,296
· 고용관리비용	425 (425)	425	425	-	-	-	-	-	-	-	-	-
· 근로지원인 지원	242,458 (242,458)	242,458	242,458	-	-	246,991	255,669	255,669	255,669	-	-	270,456
· 장애인고용시설장 비지원	3,450 (3,450)	3,450	3,450	-	-	3,450	3,450	3,450	3,450	-	-	3,150
· 장애인근로자 지원센터	1,673 (1,673)	1,673	1,673	-	-	1,673	1,673	1,673	1,673	-	-	1,69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근로지원인 지원)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중증장애인 및 근로사업장 특성에 맞는 지원기능에 따라 4개의 지원유형*의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 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제1유형(업무보조형), 제2유형(의사소통형), 제3유형(적응지도형)

** '25년부터 고용관리비용을 근로지원비용(내부배치형)으로 통합하여 운영

-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편의시설·통근용승합차 등의 구입·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근로환경 개선
- * 2년간 고용유지 조건으로, 장애인 1인당 1천만원(중증 1천5백만원) 한도로 지원
-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장애인근로자에게 전문고충상담과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직업생활유지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19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근로지원인"이라 한다)을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설치·수리 등에 드는 비용

3. 장애인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작업 지도원 또는 수화 통역사 등을 배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② 추진경위

<고용관리비용>

- 1997. 최초 사업시작
- 2008. 작업지도원 비용 지원 금액 조정(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작업지도 시 월 14만원)
- 2010. 직업생활상담비용 지원 폐지
- 2011. 수화통역비용 지원 폐지
- 2025. 근로지원비용(내부배치형)으로 근로지원인 사업에 통합

<근로지원인 지원>

- 2007.~2008. '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 사회적 일자리 사업 실시
- 2010.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시행
- 2011. 03. 09.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법률 근거 마련
- 2013. 03. 장애인 본인부담금 인하(시간당 500원(수화통역 700원)→시간당 300원)
- 2013. 06. 근로지원인 지원 시간 확대(월 100시간→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일 8시간)
- 2022. 01. 근로지원인 지원 유형 구분(업무보조형, 의사소통형, 적응지도형)
- 2025. 근로지원비용(내부배치형) 통합, 4개 지원유형 제공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 1995. 융자사업을 보완하여 담보능력이 없는 사업주에게 무상지원

- 2007.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기금 사업으로 전환
- 201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사업으로 전환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 2020. 최초 사업시작(서울·부산·광주지역 3개소 운영)
- 2021. 전국 권역별 사업운영(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경기 6개소 운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95~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10,671	232,998	248,006	260,792	275,29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장애인고용사업주, 장애인근로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장애인고용 관리지원	출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275,296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및 제71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장애인고용관리지원 : (2025 기금변경) 260,792백만원 → (2026 계획) 275,296백만원, 14,504백만원 증액
(2025 당초 계획 252,114백만원 → 제2차 기금변경 260,792백만원)

① 근로지원인 지원

- : (2025 기금변경) 255,669백만원 → (2026 계획) 270,456백만원, 14,787백만원 증액
(2025 당초 계획 246,991백만원 → 제2차 기금변경 255,669백만원)
- (산출) 지원금 268,911백만원($11,700\text{명} \times 15,571\text{원} \times 125\text{시간} \times 12\text{개월} \times 98.4045\%$ -단수조정 10,397원)
근로지원비용(내부배치형) 24백만원($140,000\text{원} \times 15\text{명} \times 12\text{개월} \times 94.9\%$ +단수조정 85,200원)
사업운영비 484백만원, 시스템유지보수비 69백만원, 교육비 968백만원

②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 : (2025 계획) 3,450백만원 → (2026 계획) 3,150백만원, 300백만원 감액
- (산출) 화장실 등 편의시설 2,040백만원($136\text{개소} \times 15\text{백만원}$)
통근용 승합자동차 1,110백만원($18\text{개소} \times 40\text{백만원} + 19\text{개소} \times 20\text{백만원} + \text{단수조정 } 10\text{백만원}$)

③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 (2025 계획) 1,673백만원 → (2026 계획) 1,690백만원, 17백만원 증액

- (산출)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1,690백만원(6개소×281,600천원+단수조정 400천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60,792	○ 사업출연금 : 260,792,000천원 <고용관리비용> 근로지원인(내부배치형) 지원으로 통합 운영 <근로지원인 지원> 255,669,000천원 : (당초) 246,991,000천원 + (기금변경) 8,678,000천원 가. 지원금 : 11,000명*15,092원*125시간*12개월*98.4045%=245,045,000천원 나. 근로지원인 4유형: 140,000원*267명*12개월*94.9%=425,000천원 다. 사업운영비 : 484,000천원 라. 시스템유지보수비 : 69,000천원 마. 교육비 : 교육운영 968,000천원 바. 기금변경 : 8,678,000천원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지원> 3,450,000천원 가. 화장실 등 편의시설 : 150개소×15,000천원=2,250,000천원 나. 통근용 승합자동차 : (20개소×40,000천원)+(20개소×20,000천원) =1,200,000천원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1,673,000천원 가.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 6개소*279,000천원=1,673,000천원	275,296	○ 사업출연금 : 275,296,000천원 <근로지원인 지원> 270,456,000천원 가. 지원금 : 11,700명*15,571원*125시간*12개월*98.4045%=268,911,000천원 나. 근로지원비용(내부배치형): 140,000원*15명*12개월*94.9%=24,000천원 다. 사업운영비 : 484,000천원 라. 시스템유지보수비 : 69,000천원 마. 교육비 : 교육운영 968,000천원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지원> 3,150,000천원 가. 화장실 등 편의시설 : 136개소×15,000천원=2,040,000천원 나. 통근용 승합자동차 : (18개소×40,000천원)+(19개소×20,000천원)+ 단수조정 10,000천원=1,110,000천원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1,690,000천원 가.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 6개소*281,600천원+단수조정 400천원 =1,69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 (단위: %)	목표	3.18	3.20	(삭제)	(삭제)	(삭제)	'24년 프로그램 성과지표 변경	-	-
	실적	3.19	3.24	-	-	-			
	달성도	100.3	101.3	-	-	-			
근로지원인 수혜장애인 비율 (단위: %)	목표	1.66	1.96	(삭제)	(삭제)	(삭제)	'24년 프로그램 성과지표 변경	-	-
	실적	1.89	2.07	-	-	-			
	달성도	113.86	105.6	-	-	-			
장애인 취업자 비율 (단위: %)	목표	-	(신규)	5.18	(삭제)	(삭제)	'25년 프로그램 성과지표 변경	-	-
	실적	-	-	6.17	-	-			
	달성도	-	-	119.1	-	-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장애인고용률 (단위: %)	목표	-	-	(신규)	49.1	49.2	최근 5개년('20~'24) 평균(49.1%)의 의욕치 0.1%p 반영	(장애인 취업자 수 / 15세 이상 만 64세 이하 장애인 인구) × 1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실적	-	-	-	48.3	-			
	달성도	-	-	-	98.4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고용관리비용 지원 사업체 185개소(중복제외), 작업지도원 396명(중복제외), 근로지원인 13,800명(장애인근로자 15,015명) 지원, 시설장비 206개소 지원,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6개소 운영
2023	고용관리비용 지원 사업체 255개소(중복제외), 작업지도원 476명(중복제외), 근로지원인 13,571명(장애인근로자 16,400명) 지원, 시설장비 192개소 지원,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6개소 운영
2024	고용관리비용 지원 사업체 151개소(중복제외), 작업지도원 299명(중복제외), 근로지원인 13,573명(장애인근로자 18,195명) 지원, 시설장비 208개소 지원,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6개소 운영
2025	근로지원비용 지원 사업체 67개소(중복제외), 작업지도원 163명(중복제외), 근로지원인 13,209명(장애인근로자 19,179명) 지원, 시설장비 210개소 지원,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6개소 운영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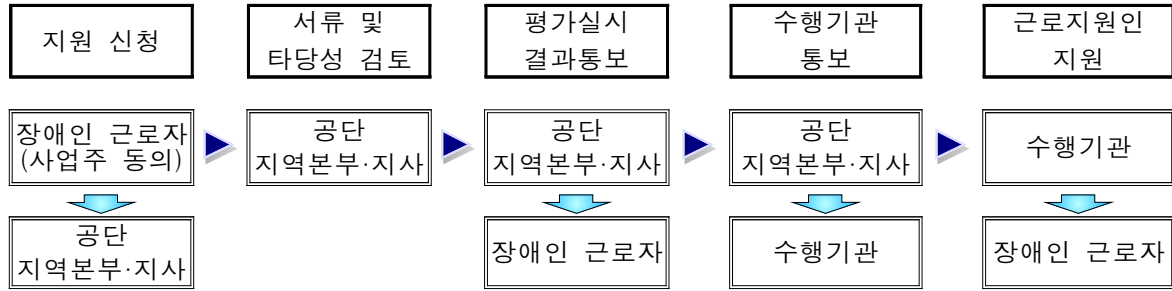
-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적응력 제고 및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관리비용 부담완화(근로지원인 지원 11,700명, 근로지원비용(내부배치형) 15명)
- 장애인 편의시설·통근용승합차 등의 구입·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근로환경 개선(173개소)
- 장애인근로자에게 전문고충상담을 지원하여 직업생활 유지 도모(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6개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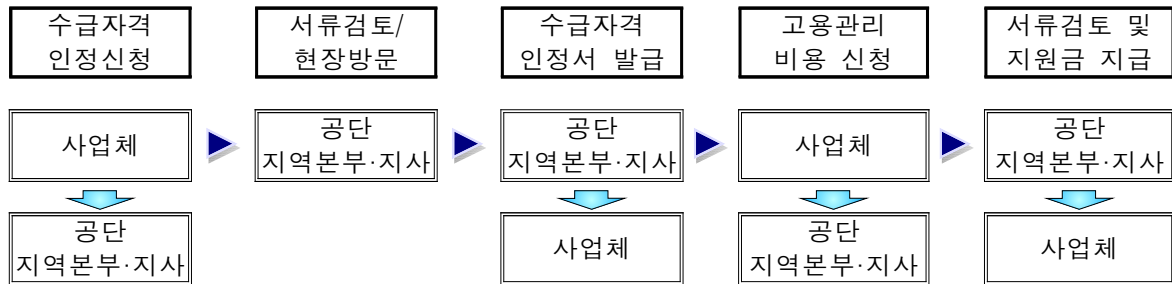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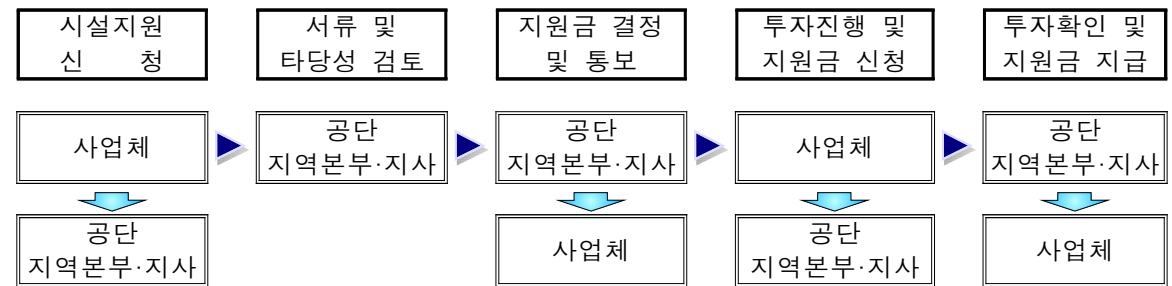
<근로지원인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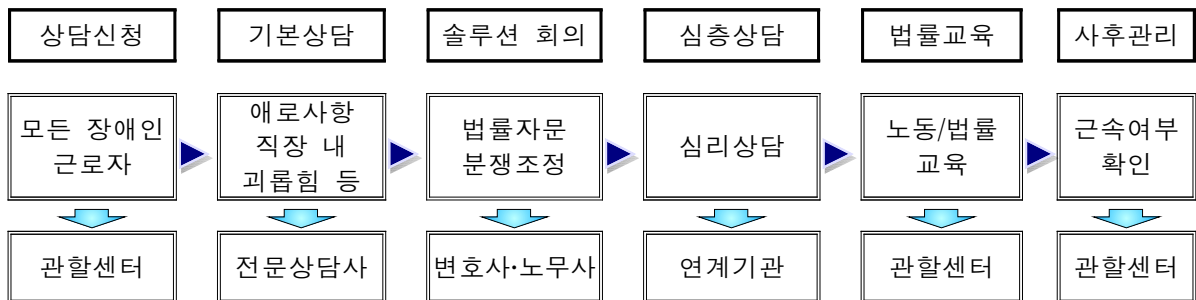
<근로지원비용(내부배치형)>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지적사항)예산안 환노위 소위 검토보고서('24년 예산안):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관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 책정한 인건비를 4.9% 인상한 예산 증액 필요
(후속조치)예산안 환노위 소위 검토보고서('24년 예산안): 센터 종사자 평균 인건비 월 94천원(총 17,000천원)을 인상('26년)하여 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 (지적사항)예산안 환노위 소위('25년 예산안):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인구가 80만명이 넘으며, 근로지원인 수요 확대되고 있어, 근로지원인 예산 확대 필요(11,000명→20,000명)
(후속조치)예산안 환노위 소위('25년 예산안): 더 많은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비스 수요 파악, 근로지원인 인력 확보 등 다각적 노력 추진
- (지적사항)결산 환노위 검토보고서('24 회계연도 결산):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사업 예산 확보 및 근로지원인 처우개선 노력 필요
(후속조치)결산 환노위 검토보고서('24 회계연도 결산): '25.10월 기금운용계획 변경, '26년 물량 확대 등 예산 확보, 근로지원인 처우개선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지적사항)결산 예정처 분석보고서('24 회계연도 결산): 동시지원에 대한 적절한 선정 기준을 모색하고, 근로지원인 수요 지속 점검하여 적정 사업 규모 검토 필요
(후속조치)결산 예정처 분석보고서('24 회계연도 결산): 동시지원 기준 정립 및 내규 반영, 현장수요 반영하여 '25.10월 기금운용계획 변경, '26년 물량 확대 등 예산 확보

2) 대외공개 평가

- '23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 등급 미산정(지원고용 및 재할 유형으로 등급 미산정)
- '24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 개선필요
- '25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 양호

3) 자체평가

- '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보통
- '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보통
- '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비대상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210,671	-	210,671	210,671	210,671	100.0	100.0	-	-
2023	232,998	-	232,998	232,998	232,998	100.0	100.0	-	-
2024	248,006	-	248,006	248,006	248,006	100.0	100.0	-	-
2025	252,114	8,678	260,792	260,792	260,792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피출연기관의 집행잔액 855백만원 불용
2023	- 피출연기관의 집행잔액 2,709백만원 불용
2024	- 피출연기관의 집행잔액 360백만원 불용
2025	- 기금운용계획변경 8,678백만원 증액 - 계획변경 사유: 근로지원인 지원금 추가 소요 발생 - 피출연기관의 집행잔액 197백만원 불용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025.10.1.)	장애인고용관리지원 (근로지원인 지원)	350	02	8,678	근로지원인 지원 확대를 위한 증액
합 계				8,678	

사 업 명
(3) 장애인취업지원(1452-3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및직업재활기금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52	311
명칭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고용지원	장애인취업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용의무이행지도	소관부처	실·국·과(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평가	소관부처	실·국·과(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취업알선지원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장애인인턴제	소관부처	실·국·과(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 학생 취업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장애인취업 지원	34,211	33,411	33,411	36,849	36,849	3,438	10.3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34,011 (34,211)	34,211	34,211	-	-	33,411	33,411	33,411	33,411	-	-	36,849
· 장애인취업지원	34,011 (34,211)	34,211	34,211	-	-	33,411	33,411	33,411	33,411	-	-	36,84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용의무이행지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민간기업 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여 효과적인 고용의무 이행 지원
- (장애인취업알선지원) 전문적 구직상담과 장애인 개별 특성 및 능력에 맞는 현실적인 취업가능 직무 제시를 통해 장애인의 취업 기회 확대 및 고용의 질 향상 도모
- (직업능력평가) 장애인의 직업적 가능성을 탐색하여 고용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적합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업능력평가 실시
-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현장훈련과 직장 적응을 직무 지도원을 통해 사업장 현장에서 「先 배치·훈련, 後 고용」 지원
- (장애인인턴제)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 이하 장애유형의 중증장애인과 만 50세 이상 장년 장애인,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턴경험을 통한 직무능력 및 조직 적응력 향상으로 정규직 전환기회 확대
- (장애학생취업지원) 장애학생이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 중심 통합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여, 개인별 욕구와 능력에 맞는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4조, 제28조, 제29조

제10조(직업지도)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을 실시하고,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고용)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중증장애인 중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직무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취업알선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여야 한다. 제16조(취업알선기관 간의 연계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재활실시기관 간에 구인·구직 정보의 교류와 장애인 근로자 관리 등의 효율적인 연계를 꾀하고,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취업 후 적응지도)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이하 “우대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제29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수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 상황 기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고용계획의 수립 의무 또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하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

② 추진경위

- 1991. 최초 사업 시작
- 1999.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접수 업무 수탁
- 2005.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관련 작업능력평가 시행
- 2012.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수탁 수행
- 2014. 중증장애인지원고용 훈련수당 상향 조정(일 12천원→일 17천원)
- 2015.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 시행
- 2016. 중증장애인 인턴제 참여 장애유형 확대(11개 유형)
- 2018. 중증장애인 인턴제 참여 장애유형 변경(10개 유형)
- 2019.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민간위탁 일원화(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시행

- 2020. 장애인인턴제 지원대상 확대(중증장애인→경증 장년장애인 포함)
- 2021.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직업적 장애) 신규 시행(20개 관정평가팀 설치)
- 2023. 장애인인턴제 지원대상 확대(특정유형의 중증·장년 장애인→발달장애인 포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91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0,630	33,488	34,211	33,411	36,84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구직장애인, 구인사업주, 장애학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장애인취업 지원	출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36,849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및 제71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장애인취업지원 : (2025 계획) 33,411백만원 → (2026 계획) 36,849백만원, 3,438백만원 증액

① 고용의무이행지도

- : (2025 계획) 1,553백만원 → (2026 계획) 1,983백만원, 430백만원 증
- (산출) 사업체고용의무이행지도 461백만원(20.04백만원×23개소)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12백만원(12백만원×1회)
 - 장애인고용촉진대회 100백만원(100백만원×1회)
 -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컨설팅 307백만원(25.6백만원×12개월)
 -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컨설팅 시스템 고도화 400백만원(400백만원×1식)
 -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컨설팅 지원 416백만원
 - (기본형 컨설팅 120백만원, 심화형 컨설팅 200백만원, 장애인고용가이드 제작 20백만원, 컨설팅 성과 확산 40백만원, 기업 인사담당자 교육 36백만원)
 - 직무개발사업 운영(이관) 214백만원(21.4백만원×10개소)
 - 장애인고용 업무시스템 유지관리 73백만원(6,083,000원×12개월)

② 장애인취업알선지원

- : (2025 계획) 1,268백만원 → (2026 계획) 1,054백만원, 214백만원 감
- (산출) 취업알선사업 운영 650백만원(28.261백만원×23개소)

취업알선지원금 25백만원(30명×0.3백만원)+(80명×0.2백만원)
 고용업무시스템(취업알선공동수행전산망) 운영 157백만원(13.1백만원×12개월)
 직무개발사업 운영(이관) 순감
 범부처 장애인취업지원 운영 114백만원(19백만원×6개소)
 범부처 시스템 유지관리 108백만원(9백만원×12개월)

③ 직업능력평가

: (2025 계획) 5,674백만원 → (2026 계획) 5,458백만원, 216백만원 감
 - (산출) 직업적 장애판정 및 현장평가 등 3,428백만원
 (직업적 장애판정 사업비 3,204백만원, 판정시스템 운영 150백만원, 현장평가 74백만원)
 직업능력평가센터 및 판정팀 운영 2,030백만원(23개소×88.26백만원)

④ 중증장애인지원고용

: (2025 계획) 15,097백만원 → (2026 계획) 18,535백만원, 3,438백만원 증
 - (산출) 훈련운영비 1,226백만원(204,400원×6,000명)
 훈련수당 7,571백만원(35천원×6,000명×36.05일)
 숙박비 193백만원(10,000원×6,000명×36.05일×8.9%)
 사업체보조금 4,183백만원(19,340원×6,000명×36.05일)
 직무지도원 수당 5,362백만원(2,017명×40,000원×36.05일×95.46%)+(2,257명×40,000원×30일×95.46%)

⑤ 장애인인턴제

: (2025 계획) 6,558백만원 → (2026 계획) 6,558백만원, 전년동
 - (산출) 인턴지원금 4,500백만원(1백만원×1,000명×6개월×75%)
 정규직전환지원금 2,058백만원(0.8백만원×1,000명×6개월×64%×67%)

⑥ 장애학생취업지원

: (2025 당초 계획) 3,261백만원 → (2026 계획) 3,261백만원, 전년동
 - (산출) 진로설계 1,573백만원(225천원×7,000명)
 사회성훈련 1,216백만원(869천원×1,400명)
 부모교육 472백만원(337천원×1,400명)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3,411	○ 고용의무이행지도: 1,553백만원 1) 사업체고용의무 이행지도: 461백만원 가) 장애인고용상황조사 등: 232백만원(10.08백만원×23개소) 나) 의무고용이행지원 및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서 접수,관리: 82백만원(33,954원×3명×35일×23개소) 다) 고용의무사업주 이행지원: 132백만원 라) 사업주 인식개선교육 및 간담회: 15백만원 2)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12백만원(12백만원×1회) 3) 장애인고용촉진대회: 100백만원(100백만원×1회) 4)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컨설팅: 307백만원(25.6백만원×12개월) 5)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컨설팅: 600백만원(600백만원×1회) 6) 장애인 고용업무시스템: 73백만원(6.08백만원×12개월)	36,849	○ 고용의무이행지도: 1,983백만원 1) 사업체고용의무 이행지도: 461백만원 가) 장애인고용상황조사 등: 232백만원(10.08백만원×23개소) 나) 의무고용이행지원 및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서 접수,관리: 82백만원(33,954원×3명×35일×23개소) 다) 고용의무사업주 이행지원: 132백만원 라) 사업주 인식개선교육 및 간담회: 15백만원 2)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12백만원(12백만원×1회) 3) 장애인고용촉진대회: 100백만원(100백만원×1회) 4)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컨설팅: 307백만원(25.6백만원×12개월) 5)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컨설팅: 816백만원 가) 장애인고용컨설팅 시스템 고도화: 400백만원(400백만원×1회) 나)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컨설팅 지원: 416백만원 1>기본형 컨설팅: 120백만원(1백만원×120개소) 2>심화형컨설팅(전문가 매칭): 200백만원(10백만원×20개소) 3>장애인고용 가이드 제작: 20백만원(20백만원×1개) 4>컨설팅 성과 확산: 40백만원(40백만원×1회) 5> 기업 인사담당자 교육: 36백만원(0.6백만원×30명×2회) 6) 직무개발사업 운영(이관): 214백만원 가)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확산(일자리창출사업): (21.4백만원×10개소) 7) 장애인 고용업무시스템: 73백만원(6.08백만원×12개월)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장애인취업알선지원: 1,268백만원 1) 취업알선사업 운영: 650백만원(28,261백만원×23개소) 2) 장애인취업알선 지원금: 25백만원(30명×0.3백만원)+(80명×0.2백만원) 3) 고용업무시스템(취업알선공동수행전산망) 운영: 157백만원(13.1백만원×12개월) 4) 중증장애인 일자리창출사업(취업활성화지원): 214백만원(21.4백만원×10건) 5) 범부처 장애인취업지원: 222백만원 가) 범부처 장애인 취업지원 운영: 114백만원(19백만원×6개소) 나) 시스템 유지관리: 108백만원(9백만원×12개월) ○ 중증장애인지원고용: 15,097백만원 1) 훈련운영비: 1,226백만원(204,400원×6,000명) 2) 훈련수당 등: 4,326백만원 가) 훈련준비금 및 훈련수당: 4,133백만원[(40,000원×6,000명)+(18,000원×6,000명×36.05일(평균훈련일수))] 나) 숙박비: 193백만원[10,000원×6,000명×36.05일(평균훈련일수)×8.9%(지급률)] 3) 사업체보조금: 4,183백만원[19,340원×6,000명×36.05일(평균훈련일수)] 4) 직무지도원 수당: 5,362백만원[(2,017명×40,000원×36.05일(평균훈련일수)×95.46%(지급률))+(2,257명×40,000원×30일(평균지원일수)×95.46%(지급률))] ○ 장애인인턴제: 6,558백만원 1) 인턴지원금: 4,500백만원 가) 중증: 1,350백만원[1,000,000원×300명×6개월×75%(지급률)] 나) 장년: 2,250백만원[1,000,000원×500명×6개월×75%(지급률)] 다) 발달: 900백만원[1,000,000원×200명×6개월×75%(지급률)] 2) 정규직 전환지원금: 2,058백만원 가) 중증: 617백만원[800,000원×300명×6개월×64%(지급률)×67%(정규직 전환율)] 나) 장년: 1,029백만원[800,000원×500명×6개월×64%(지급률)×67%(정규직 전환율)] 다) 발달: 412백만원[800,000원×200명×6개월×64%(지급률)×67%(정규직 전환율)] ○ 직업능력평가: 5,674백만원 1) 직업적 장애판정 및 현장평가 등: 3,644백만원 가) 직업적 장애판정 및 판정시스템 운영: 3,570백만원 나) 현장평가: 74백만원 2) 직업능력평가센터 및 판정팀 운영: 2,030백만원 가) 직업능력평가센터 및 판정팀 운영: 1,606백만원 나) 평가사 양성교육 및 자격검정: 270백만원(900,000원×300명) 다) 직업능력 평가도구 개발 및 구매: 154백만원 ○ 장애학생취업지원: 3,261백만원 1) 진로설계: 1,573백만원(225,000원×7,000명) 2) 사회성 훈련: 1,216백만원(869,000원×1,400명) 3) 부모교육: 472백만원(337,000원×1,400명)		○ 장애인취업알선지원: 1,054백만원 1) 취업알선사업 운영: 650백만원(28,261백만원×23개소) 2) 장애인취업알선 지원금: 25백만원(30명×0.3백만원)+(80명×0.2백만원) 3) 고용업무시스템(취업알선공동수행전산망) 운영: 157백만원(13.1백만원×12개월) 4) 중증장애인 일자리창출사업(취업활성화지원, 이관): 순감 5) 범부처 장애인취업지원: 222백만원 가) 범부처 장애인 취업지원 운영: 114백만원(19백만원×6개소) 나) 시스템 유지관리: 108백만원(9백만원×12개월) ○ 중증장애인지원고용: 18,535백만원 1) 훈련운영비: 1,226백만원(204,400원×6,000명) 2) 훈련수당 등: 7,764백만원 가) 훈련수당: 7,571백만원(35천 원×6,000명×36.05일) 나) 숙박비: 193백만원[10,000원×6,000명×36.05일(평균훈련일수)×8.9%(지급률)] 3) 사업체보조금: 4,183백만원[19,340원×6,000명×36.05일(평균훈련일수)] 4) 직무지도원 수당: 5,362백만원[(2,017명×40,000원×36.05일(평균훈련일수)×95.46%(지급률))+(2,257명×40,000원×30일(평균지원일수)×95.46%(지급률))] ○ 장애인인턴제: 6,558백만원 1) 인턴지원금: 4,500백만원 가) 중증: 1,350백만원[1,000,000원×300명×6개월×75%(지급률)] 나) 장년: 2,250백만원[1,000,000원×500명×6개월×75%(지급률)] 다) 발달: 900백만원[1,000,000원×200명×6개월×75%(지급률)] 2) 정규직 전환지원금: 2,058백만원 가) 중증: 617백만원[800,000원×300명×6개월×64%(지급률)×67%(정규직 전환율)] 나) 장년: 1,029백만원[800,000원×500명×6개월×64%(지급률)×67%(정규직 전환율)] 다) 발달: 412백만원[800,000원×200명×6개월×64%(지급률)×67%(정규직 전환율)] ○ 직업능력평가: 5,458백만원 1) 직업적 장애판정 및 현장평가 등: 3,428백만원 가) 직업적 장애판정 및 판정시스템 운영: 3,354백만원 나) 현장평가: 74백만원 2) 직업능력평가센터 및 판정팀 운영: 2,030백만원 가) 직업능력평가센터 및 판정팀 운영: 1,606백만원 나) 평가사 양성교육 및 자격검정: 270백만원(900,000원×300명) 다) 직업능력 평가도구 개발 및 구매: 154백만원 ○ 장애학생취업지원: 3,261백만원 1) 진로설계: 1,573백만원(225,000원×7,000명) 2) 사회성 훈련: 1,216백만원(869,000원×1,400명) 3) 부모교육: 472백만원(337,000원×1,400명)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 (단위: %)	목표	3.18	3.20	(삭제)	(삭제)	(삭제)	'24년 프로그램 성과지표 변경	-	-
	실적	3.19	3.24	-	-	-			
	달성도	100.3	101.3	-	-	-			
근로지원인 수혜장애인 비율 (단위: %)	목표	1.66	1.96	(삭제)	(삭제)	(삭제)	'24년 프로그램 성과지표 변경	-	-
	실적	1.89	2.07	-	-	-			
	달성도	113.86	105.6	-	-	-			
장애인 취업자 비율 (단위: %)	목표	-	(신규)	5.18	(삭제)	(삭제)	'25년 프로그램 성과지표 변경	-	-
	실적	-	-	6.17	-	-			
	달성도	-	-	119.1	-	-			
장애인고용률 (단위: %)	목표	-	-	(신규)	49.1	49.2	최근 5개년('20~'24) 평균(49.1%)의 의욕치 0.1%p 반영	(장애인 취업자 수 / 15세 이상 만 64세 이하 장애인 인구) × 1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실적	-	-	-	48.3	-			
	달성도	-	-	-	98.4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취업실적: 45,117명 ▪ 직업능력평가: 31,554명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6,406명 ▪ 장애인 인턴제: 639명 ▪ 장애학생 취업지원: 7,166명
2023	▪ 취업실적: 49,934명 ▪ 직업능력평가: 30,170명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6,598명 ▪ 장애인 인턴제: 846명 ▪ 장애학생 취업지원: 7,297명
2024	▪ 취업실적: 56,665명 ▪ 직업능력평가: 33,464명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6,707명 ▪ 장애인 인턴제: 1,161명 ▪ 장애학생 취업지원: 7,135명
2025	▪ 취업실적: 67,478명 ▪ 직업능력평가: 32,425명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6,518명 ▪ 장애인 인턴제: 1,160명 ▪ 장애학생 취업지원: 7,223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공공 및 민간부문에 대한 효율적인 장애인고용 의무이행지도를 통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공공 3.8%, 민간 3.1%) 달성 추진
- 장애인의 개별 역량에 맞는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 욕구 및 취업 기술 향상을 통해 성공적인 알선취업과 경제적 자립 유도
- 장애인인턴제 1,000명,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6,000명 등 현장중심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안정적 노동시장 진입에 기여
- 전달체계 재정비 및 운영 효율화를 통해 18,000명의 장애인에게 취업과 고용유지에 필요한 기능 정도와 작업환경 요구에 따른 개인별 맞춤 고용서비스 지속 확대
- 부처(교육·고용·복지) 간 연계 강화로 장애학생 7,000명에게 상담, 직업능력평가, 개별진로계획 수립, 사회성 훈련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졸업 후 사회 진입기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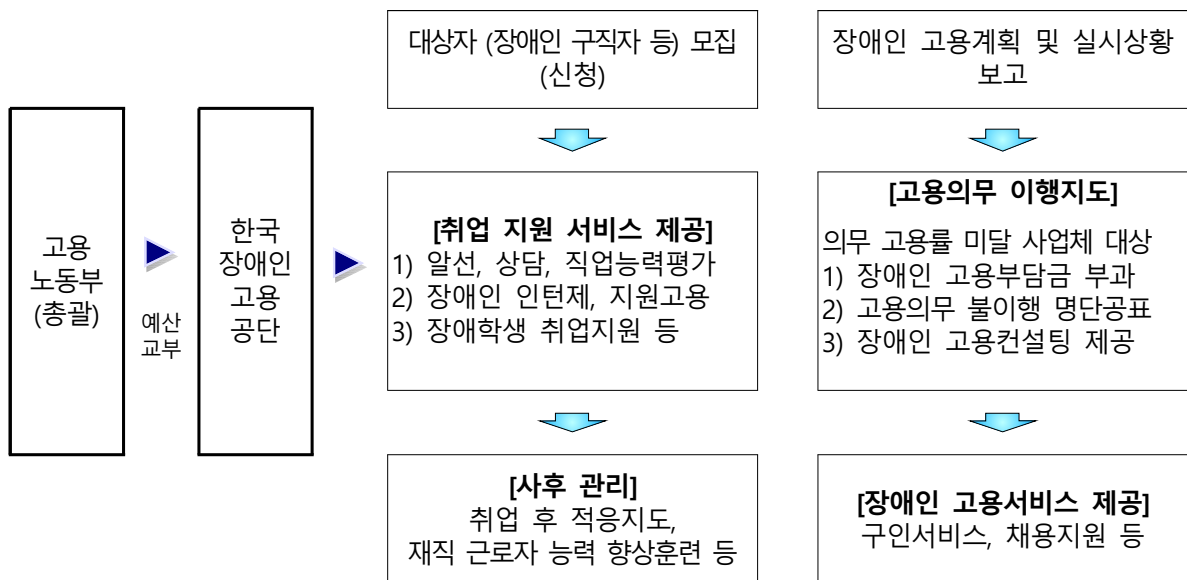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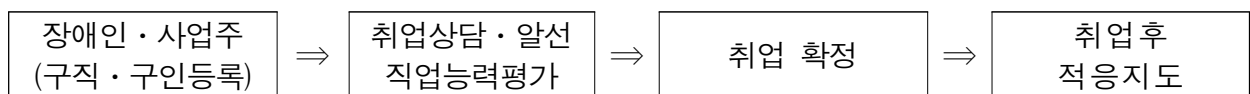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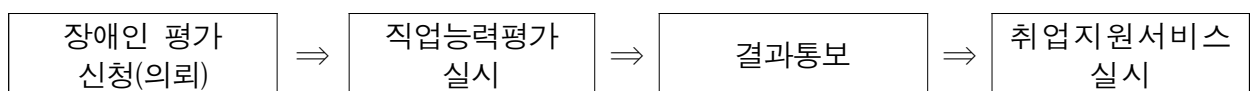
1) 고용의무이행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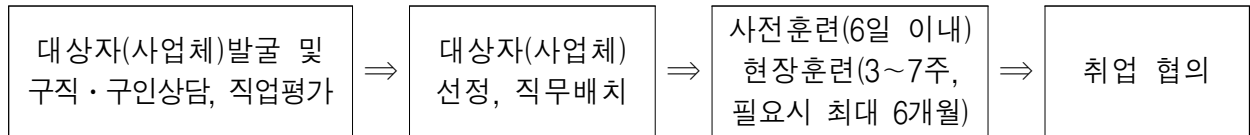
2) 장애인취업알선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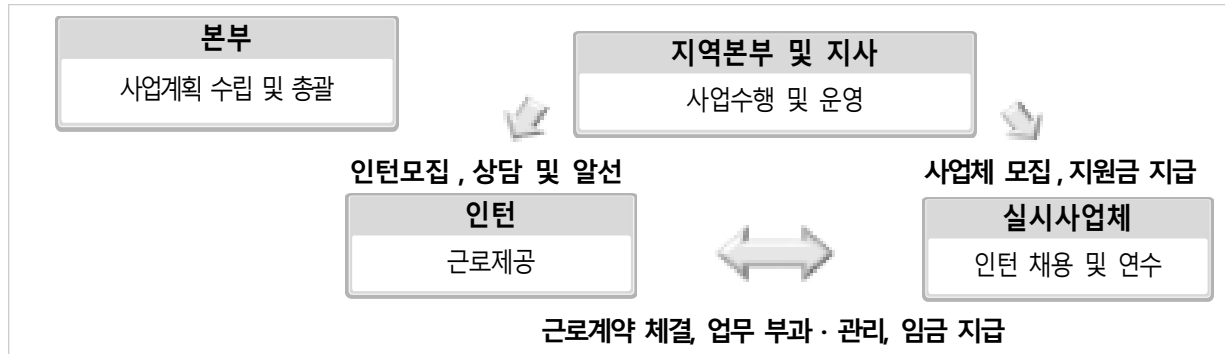
3) 직업능력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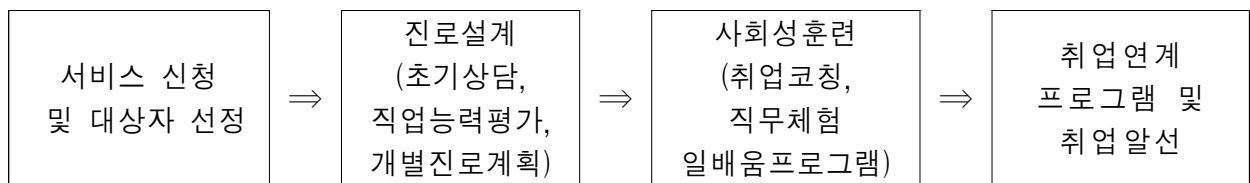
4) 중증장애인지원고용



5) 장애인인턴제



6) 장애학생취업지원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지적사항)2023년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이 장애인 인턴제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면밀하게 사업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23년 예산안 환노위 검토보고서)
 - (후속조치)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으로 장애인 인턴제 수요가 감소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장애인 인턴제 지원금 단가를 인상(지원금 월 80→100만원, 정규직 전환지원금 월 65→80만원)하였음('23년 예산안 환노위 검토보고서)
- 2) 대외공개 평가
 - '23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 등급 미산정('지원고용 및 재활' 유형으로 등급 미산정)
 - '24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 : (장애인취업알선지원, 중증장애인지원고용) 평가 등급: '양호',
 - (장애인인턴제, 장애학생취업지원) 평가 등급: '개선필요'
 - '25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 : (장애인취업알선지원,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장애인인턴제, 장애학생취업지원) 평가 등급: '양호'
- 3) 자체평가
 - '23년 재정사업자율평가 : 비대상
 - '24년 재정사업자율평가 : 비대상
 - '25년 재정사업자율평가 : '보통' 등급 획득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30,630	-	30,630	30,630	30,630	100.0	100.0	-	-
2023	33,488	-	33,488	33,488	32,859	98.1	98.1	-	629
2024	34,011	200	34,211	34,211	34,211	100.0	100.0	-	-
2025	33,411	-	33,411	33,411	33,411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피출연기관의 집행잔액 1,287백만원 불용
2023	- 출연금 미교부액 629백만원 불용 - 피출연기관의 집행잔액 612백만원 불용
2024	- (기금운용계획변경)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백만원 증액 - 피출연기관의 집행잔액 809백만원 불용
2025	- 피출연기관의 집행잔액 887백만원 불용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해당없음

사 업 명
(4)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1452-31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및 직업재활기금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52	315
명칭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고용지원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통합고용정책국
	사업시행주체	장애인고용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장애인취업성공 패키지지원	24,701	26,452	26,452	27,480	27,480	1,028	3.9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24,701 (24,701)	24,701	24,701	-	-	26,452	26,452	26,452	26,452	-	-	27,480
· 장애인취업성공패 키지지원	24,701 (24,701)	24,701	24,701	-	-	26,452	26,452	26,452	26,452	-	-	27,48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장애인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취업계획 수립→직업능력향상→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 촉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0조, 제15조, 제19조

제10조(직업지도)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을 실시하고, 고용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취업알선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여야 한다.
제19조(취업 후 적응지도)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2012.~2015. 취업성공패키지 I의 장애인 유형에 해당하는 물량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
* 물량 : ('12년) 3,500명→('13년) 3,500명→('14년) 1,500명→('15년) 1,000명
- 2017. 일반회계로 운영되던 취업성공패키지 I의 취약계층(장애인 유형)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활용하여 공단에서 출연사업으로 직접 수행
- 2020. 저소득층 장애인 대상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II유형 신설
* 물량 : ('20년) 9,000명(저소득층 유형 1,000명 포함)
- 2021. 저소득층 참여자 확대(1,000명 → 3,000명)
* 물량 : ('21년) 11,000명(저소득층 유형 3,000명 포함)
- 2024. 기존 I,II유형 통합 운영
* 물량 : ('24년) 13,000명(저소득층 3,000명 포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7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0,600	21,018	24,701	26,452	27,48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18세 이상 구직장애인 및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장애인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출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27,480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제71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 (2025 계획) 26,452백만원 → (2026 계획) 27,480백만원, 1,028백만원 증액

① 참여수당 : ('25 계획) 9,407백만원 → ('26 계획) 9,407백만원, 전년 동

- (산출) 1단계 참여수당 : 14,000명×0.15백만원×90%
- 2단계 참여수당 : (12,600명×1.704백만원×30.84%)+(12,600명×0.1백만원×60%)+(1,400명×0.1백만원)

② 구직촉진수당 : ('25 계획) 4,092백만원 → ('26 계획) 4,833백만원, 742백만원 증

- (산출) ('25) 구직촉진수당 : 3,000명×3백만원×41.25%
- 조기취업성공수당 : (252명×1백만원)+(110명×0.75백만원)+(68명×0.5백만원)+(40명×0.25백만원)
- ('26) 구직촉진수당 : 3,000명×3.6백만원×41.25%
- 조기취업성공수당 : (252명×1백만원)+(110명×0.75백만원)+(68명×0.5백만원)+(40명×0.25백만원)

③ 취업성공수당 : ('25 계획) 3,485백만원 → ('26계획) 3,485백만원, 전년 동

- (산출) 12,600명×1.5백만원×18.44%

④ 사업운영비 : ('25 계획) 3,222백만원 → ('26 계획) 3,337백만원, 115백만원 증

- * 공단 관할 지사 확대(+1개소)
- (산출) ('25) 28개소×115,071백만원 → ('26) 29개소×115,071백만원

⑤ 전문인력 인건비 : ('25 계획) 6,246백만원 → ('26 계획) 6,417백만원, 171백만원 증

- * 최저임금 연동소요로 인한 인건비 증액
- (산출) ('25) 172명×3,026천원×12개월 → ('26 계획) 172명×3,109백만원×12개월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계획액	산출내역		계획액	산출내역	
26,452	○ 참여수당: 9,407백만원 가. 1단계 참여수당: 1,890백만원 14,000명(지원인원)x150,000원x90%(지급률) 나. 2단계 참여수당: 7,517백만원 [12,600명(1단계 수료인원)x284,000원x50%(2단계 참여율)x77.1%(2단계 수료율)x6개월x80%(지급률)]+[12,600명x60%(1단계 수료율)x100,000원]+[1,400명(취업브릿지 수혜인원)x100,000원] ○ 구직촉진수당: 4,092백만원 가. 구직촉진수당: 3,713백만원 3,000명x55%(취업률)x75%(지급률)x500천원x6개월 나. 조기취업성공수당: 379백만원 252명x1백만원+110명x0.75백만원+68명x0.5백만원+40명x0.25백만원 ○ 취업성공수당: 3,485백만원 가. 3개월 근속: 1,052백만원 12,600명x55%(취업률)x75%(3개월 근속율)x75%(고용보험가입율)x300천원x90%(지급률) 나. 6개월 근속: 936백만원 12,600명x55%(취업률)x50%(6개월 근속율)x75%(고용보험가입율)x400천원x90%(지급률) 다. 12개월 근속: 1,497백만원 12,600명x55%(취업률)x40%(12개월 근속율)x75%(고용보험가입율)x800천원x90%(지급률) ○ 사업운영비: 3,222백만원 가. 28개소x115,071천원 ○ 전문인력 인건비: 6,246백만원 가. 172명x3,026,000원x12개월		27,480	○ 참여수당: 9,407백만원 가. 1단계 참여수당: 1,890백만원 14,000명(지원인원)x150,000원x90%(지급률) 나. 2단계 참여수당: 7,517백만원 [12,600명(1단계 수료인원)x284,000원x50%(2단계 참여율)x77.1%(2단계 수료율)x6개월x80%(지급률)]+[12,600명x60%(1단계 수료율)x100,000원]+[1,400명(취업브릿지 수혜인원)x100,000원] ○ 구직촉진수당: 4,833백만원 가. 구직촉진수당: 4,455백만원 3,000명x55%(취업률)x75%(지급률)x600천원x6개월 나. 조기취업성공수당: 379백만원 252명x1백만원+110명x0.75백만원+68명x0.5백만원+40명x0.25백만원 ○ 취업성공수당: 3,485백만원 가. 3개월 근속: 1,052백만원 12,600명x55%(취업률)x75%(3개월 근속율)x75%(고용보험가입율)x300천원x90%(지급률) 나. 6개월 근속: 936백만원 12,600명x55%(취업률)x50%(6개월 근속율)x75%(고용보험가입율)x400천원x90%(지급률) 다. 12개월 근속: 1,497백만원 12,600명x55%(취업률)x40%(12개월 근속율)x75%(고용보험가입율)x800천원x90%(지급률) ○ 사업운영비: 3,337백만원 가. 29개소x115,071천원 ○ 전문인력 인건비: 6,417백만원 가. 172명x3,109,000원x12개월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추정산식 (또는 추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 (단위: %)	목표	3.18	3.20	(삭제)	(삭제)	(삭제)	'24년 프로그램 성과지표 변경	-	-
	실적	3.19	3.24	-	-	-			
	달성도	100.3	101.3	-	-	-			
근로지원인 수혜장애인 비율 (단위: %)	목표	1.66	1.96	(삭제)	(삭제)	(삭제)	'24년 프로그램 성과지표 변경	-	-
	실적	1.89	2.07	-	-	-			
	달성도	113.86	105.6	-	-	-			
장애인 취업자 비율 (단위: %)	목표	-	(신규)	5.18	(삭제)	(삭제)	'25년 프로그램 성과지표 변경	-	-
	실적	-	-	6.17	-	-			
	달성도	-	-	119.1	-	-			
장애인고용률 (단위: %)	목표	-	-	(신규)	49.1	49.2	최근 5개년('20~'24) 평균(49.1%)의 의욕치 0.1%p 반영	(장애인 취업자 수 / 15세 이상 만 64세 이하 장애인 인구) × 1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실적	-	-	-	48.3	-			
	달성도	-	-	-	98.4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10,401명 참여(중증 6,550명, 63.0%) * 2유형(저소득층) 2,918명 참여(중증 71.5%)
2023	10,917명 참여(중증 6,564명, 60.1%) * 2유형(저소득층) 2,914명 참여(중증 71.3%)
2024	12,377명 참여(중증 7,465명, 60.3%) * 저소득층(중위소득 60%이하) 3,272명 참여(중증 73.2%)
2025	13,020명 참여(중증 8,057명, 61.9%) * 저소득층(중위소득 60%이하) 3,513명 참여(중증 7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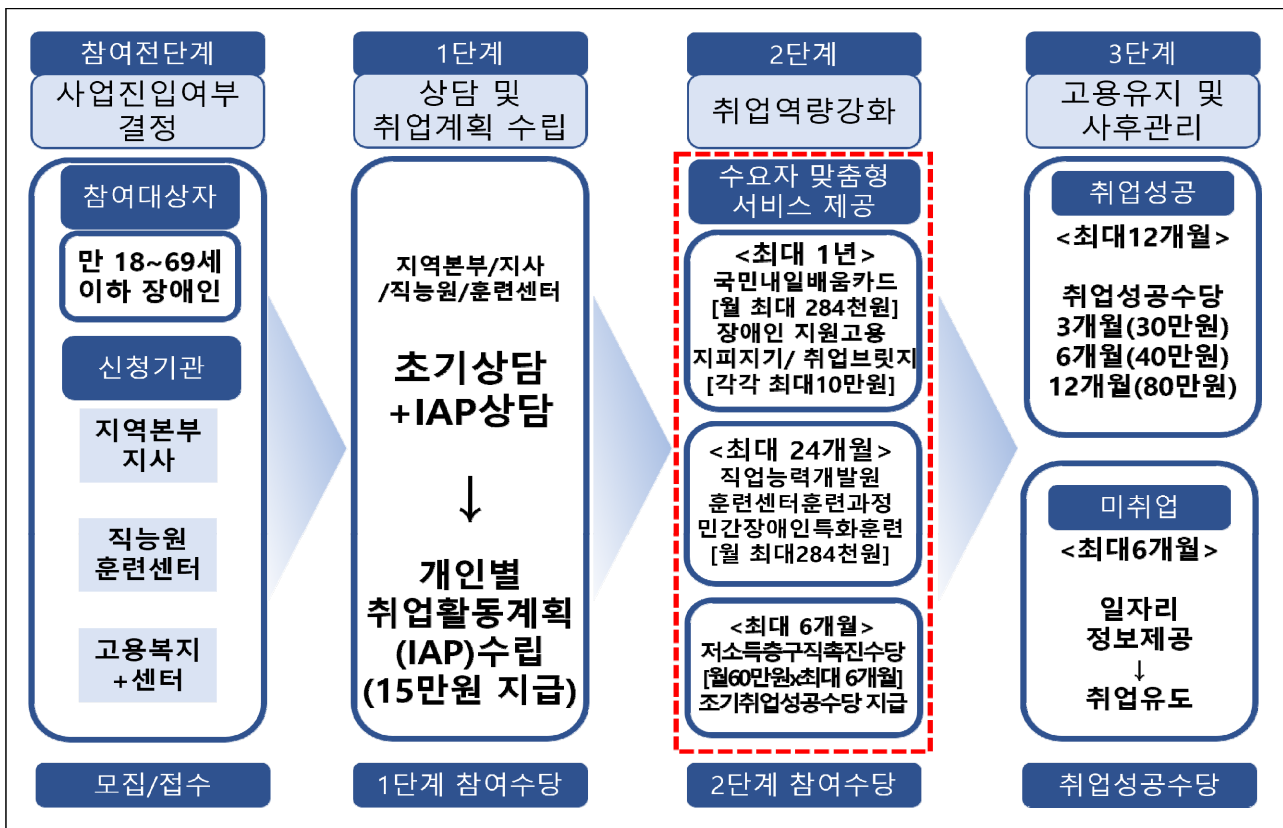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통해 취업 확대 및 안정적인 직업적응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유도(14,000명)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지적사항)내실 있는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확대 추세에 맞춰 상담인력의 전문성 강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프로그램의 질 제고방안 마련 필요('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예정처 분석보고서)
 - (후속조치)사업의 품질제고를 위해 상담인력에 대한 경력별·수준별 차등화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AI잡케어*를 활용한 심층상담 도입과 취업코칭프로그램 개편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의 내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취업 후 3개월간 집중 사후관리를 추진(월 1회)하는 등 취업자의 직장적응 및 장기근속 지원도 강화하였음
 - * AI잡케어: AI빅데이터 분석기반 지능형 생애 경력개발 지원 서비스('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예정처 분석보고서)
- 2) 대외공개 평가
 - '23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 등급 미산정('지원고용 및 재할' 유형으로 등급 미산정)
 - '24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 개선필요
 - '25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 양호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20,600	-	20,600	20,600	20,600	100.0	100.0	-	-
2023	21,018	-	21,018	21,018	20,600	98.0	98.0	-	418
2024	24,701	-	24,701	24,701	24,701	100.0	100.0	-	-
2025	26,452	-	26,452	26,452	26,452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피출연기관의 집행잔액 229백만원 불용
2023	- 출연금 미교부액 418백만원 불용
2024	- 피출연기관의 집행잔액 330백만원 불용
2025	- 피출연기관의 집행잔액 665백만원 불용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5)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1452-31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및 직업재활기금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52	317
명칭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고용지원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통합고용정책국
	사업시행주체	장애인고용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최저임금적용 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3,712	3,712	3,712	3,760	3,760	48	1.3%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3,712 (3,712)	3,712	3,712	-	-	3,712	3,712	3,712	3,712	-	-	3,760
·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3,712 (3,712)	3,712	3,712	-	-	3,712	3,712	3,712	3,712	-	-	3,7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 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0조 및 제15조

제10조(직업지도)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을 실시하고,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취업알선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여야 한다.

- ② 추진경위

- ('19년)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폐지 및 저임금 근로장애인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합동 TF' 운영('18.2월~'19.3월),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 발표(관계부처 합동, '19.12월)
- ('20년)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사업' 시행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744	3,744	3,712	3,712	3,76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소속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중 일반노동 시장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장애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최저임금적용 제외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출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3,760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및 제71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2025 계획) 3,712백만원 → (2026 계획) 3,760백만원, 48백만원 증액

- (산출)

- ① 고용전환촉진수당: ('25) 2,880백만원(8백명×0.3백만원×12개월) → ('26) 2,880백만원(8백명×0.3백만원×12개월)(전년동)
- ② 취업성공수당(전환지원): ('25) 80백만원(8백명×1백만원×10%(전환성공률)) → ('26) 80백만원(8백명×1백만원×10%(전년동))
- ③ 고용전환 사업주지원금: ('25) 432백만원(8백명×0.9백만원×12개월×10%(전환성공률)×50%(누적근속률))
→ ('26) 432백만원(8백명×0.9백만원×12개월×10%×50%)(전년동)
- ④ 전환성공지원금: ('25) 신설 → ('26) 48백만원(8백명×0.6백만원×10%(증 48백만원))
- ⑤ 운영비: ('25) 320백만원(8백명×0.4백만원) → ('26) 320백만원(8백명×0.4백만원)(전년동)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712	○ 사업출연금 : 3,712,000천원 가. 고용전환촉진수당 (2,880,000천원) • 800명 x 300,000원 x 12개월 = 2,880,000천원 나. 전환성공수당 (80,000천원) • 800명 x 1,000,000원 x 10% = 80,000천원 다. 고용전환 사업주지원금 (432,000천원) • 800명 x 900,000원 x 12개월 x 10% x 50% = 432,000천원 라. 사업운영비 (320,000천원) • 800명 x 400,000원 = 320,000천원	3,760	○ 사업출연금 : 3,760,000천원 가. 고용전환촉진수당 (2,880,000천원) • 800명 x 300,000원 x 12개월 = 2,880,000천원 나. 전환성공수당 (80,000천원) • 800명 x 1,000,000원 x 10% = 80,000천원 다. 고용전환 사업주지원금 (432,000천원) • 800명 x 900,000원 x 12개월 x 10% x 50% = 432,000천원 라. 전환성공지원금 (48,000천원) • 800 x 600,000원 x 10% = 48,000천원 마. 사업운영비 (320,000천원) • 800명 x 400,000원 = 32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 (단위: %)	목표	3.18	3.20	(삭제)	(삭제)	(삭제)	'24년 프로그램 성과지표 변경	-	-
	실적	3.19	3.24	-	-	-			
	달성도	100.3	101.3	-	-	-			
근로지원인 수혜장애인 비율 (단위: %)	목표	1.66	1.96	(삭제)	(삭제)	(삭제)	'24년 프로그램 성과지표 변경	-	-
	실적	1.89	2.07	-	-	-			
	달성도	113.86	105.6	-	-	-			
장애인 취업자 비율 (단위: %)	목표	-	(신규)	5.18	(삭제)	(삭제)	'25년 프로그램 성과지표 변경	-	-
	실적	-	-	6.17	-	-			
	달성도	-	-	119.1	-	-			
장애인고용률 (단위: %)	목표	-	-	(신규)	49.1	49.2	최근 5개년('20~'24) 평균(49.1%)의 의욕치 0.1%p 반영	(장애인 취업자 수 / 15세 이상 만 64세 이하 장애인 인구) × 1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실적	-	-	-	48.3	-			
	달성도	-	-	-	98.4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참여인원 946명
2023	참여인원 877명
2024	참여인원 884명
2025	참여인원 884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800명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일반노동시장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수행 주체	단계별 프로그램
직업재활시설 및 공단	1단계 : 전환준비단계 (직업재활시설) (전환준비계획) 상담, 직업능력평가, 개별취업계획 수립 (전환준비훈련) 직무능력향상 훈련, 직업준비교육, 직무체험 (전환결정단계) 향상도 평가, 위원회 등 통해 지원 방향 결정
	경제적지원 고용전환촉진수당(장애인) : 월 30만원, 최대 2년
	
공단	2단계 : 전환지원단계 (일반노동시장) (취업지원프로그램) 지원고용, 인턴제, 맞춤훈련 등 지원 (취업알선) 구인사업체 발굴 및 취업 연계
	
공단	3단계 : 고용안정단계 (일반노동시장) (고용유지지원) 적응지도,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인식개선교육)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경제적지원 전환성공수당(장애인) : 3개월간 최대 100만원 사업주지원금(사업주) : 최대 90만원, 3년간 전환성공지원금(시설) : 3개월간 최대 60만원
* 전환 이후 고용유지에 실패한 훈련생이 원소속 시설로 복귀할 경우 재참여 기회 제공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23년 재정사업자율평가) : '보통' 등급 획득
 - ('24년 재정사업자율평가) : '보통' 등급 획득
 - ('25년 재정사업자율평가) : '우수' 등급 획득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3,744	-	3,744	3,744	3,744	100.0	100.0		
2023	3,744	-	3,744	3,744	3,744	100.0	100.0		
2024	3,712	-	3,712	3,712	3,712	100.0	100.0		
2025	3,712	-	3,712	3,712	3,712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피출연기관 집행잔액 29백만원
2023	- 피출연기관 집행잔액 19백만원
2024	- 피출연기관 집행잔액 90백만원
2025	- 피출연기관 집행잔액 51백만원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6)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1452-31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및 직업재활기금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52	318
명칭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고용지원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통합고용정책국
	사업시행주체	장애인고용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8,027	6,597	8,039	8,518	8,518	1,921	29.1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6,597 (8,027)	8,027	8,027	-	-	6,597	8,039	8,039	8,039	-	-	8,518
· 중증장애인근로자 출 퇴근비용 지원	6,597 (8,027)	8,027	8,027	-	-	6,597	8,039	8,039	8,039	-	-	8,51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저소득·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

제18조(장애인 근로자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 ② 추진경위

- 2018. 04.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 반영
- 2019. 11.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방안 연구(고려대학교)
- 2020. 07.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 완료(보건복지부)
- 2021. 04. 사업 시행
 - ※ 지원대상 :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자 중 중위소득 100% 미만 중증장애인 근로자
- 2022. 01. 지원 대상 확대(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자)
- 2022. 07. 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지원 근거마련('22.7월 시행)
- 2023. 지원 대상 확대(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 2024. 01. 지원단가 인상(월 5→7만원)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1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610	6,948	8,027	8,039	8,51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최저임금적용제외를 받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출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8,518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및 제71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 (2025 기금변경) 8,039백만원 → (2026 계획) 8,518백만원, 479백만원 증액
(2025 당초 계획 6,597백만원 → 제2차 기금변경 8,039백만원)

- (요구) 증가한 수요 대응을 위해 지원금 예산 증액 요구
 - (산출) ① 출·퇴근비용 지원 8,195백만원, ② 사업운영비 323백만원(전년동)
 - ① 출·퇴근비용 지원 8,195백만원
 - ② 사업운영비 323백만원
- 사업운영 300백만원, 시스템유지 23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039	○ 출·퇴근비용 지원 : 6,274백만원 가. $13,104\text{명} \times 70\text{천원} \times 12\text{개월} \times 57\% = 6,274\text{백만원}$ ○ 사업운영비 : 323백만원 가. (사업운영) 23개 지사 $\times 13\text{백만원} = 300\text{백만원}$ 나. (시스템유지) 23백만원 $\times 1\text{식} = 23\text{백만원}$ ○ 기금변경 : 1,442백만원	8,518	○ 출·퇴근비용 지원 : 8,195백만원 가. $14,670\text{명} \times 70\text{천원} \times 12\text{개월} \times 66.5\% = 8,195\text{백만원}$ ○ 사업운영비 : 323백만원 가. (사업운영) 23개 지사 $\times 13\text{백만원} = 300\text{백만원}$ 나. (시스템유지) 23백만원 $\times 1\text{식} = 23\text{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 (단위: %)	목표	3.18	3.20	(삭제)	(삭제)	(삭제)	'24년 프로그램 성과지표 변경	-	-
	실적	3.19	3.24	-	-	-			
	달성도	100.3	101.3	-	-	-			
근로지원인 수혜장애인 비율 (단위: %)	목표	1.66	1.96	(삭제)	(삭제)	(삭제)	'24년 프로그램 성과지표 변경	-	-
	실적	1.89	2.07	-	-	-			
	달성도	113.86	105.6	-	-	-			
장애인 취업자 비율 (단위: %)	목표	-	(신규)	5.18	(삭제)	(삭제)	'25년 프로그램 성과지표 변경	-	-
	실적	-	-	6.17	-	-			
	달성도	-	-	119.1	-	-			
장애인고용률 (단위: %)	목표	-	-	(신규)	49.1	49.2	최근 5개년('20~'24) 평균(49.1%)의 의욕치 0.1%p 반영	(장애인 취업자 수 / 15세 이상 만 64세 이하 장애인 인구) × 1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실적	-	-	-	48.3	-			
	달성도	-	-	-	98.4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4,357명 지원
2023	-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14,093명 지원
2024	-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14,670명 지원
2025	-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14,220명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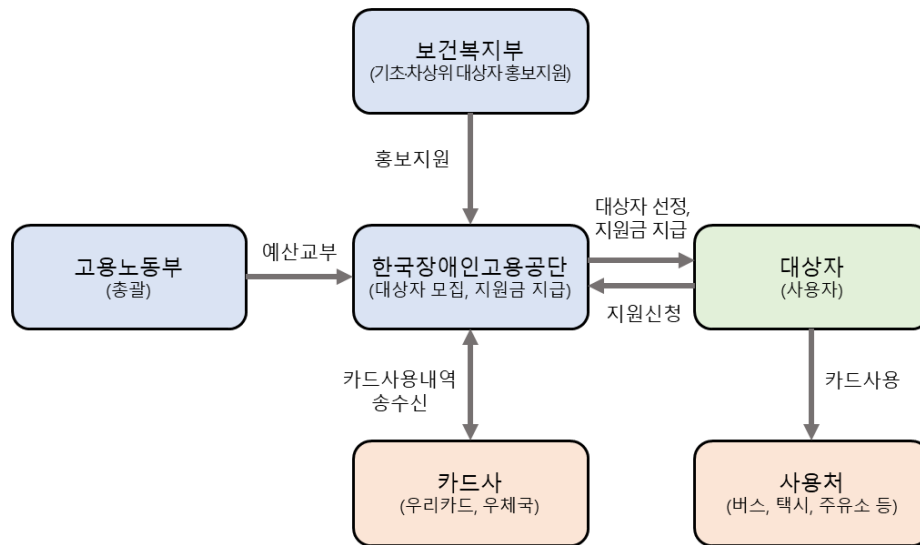
- 소득수준이 낮고 근로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하여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속유지
- 저소득·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지원 및 사회적 비용 감소 유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추진체계



-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고용노동부 (8,518백만원)	=> (교부액)	한국장애인고용공단 (8,518백만원)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지적사항)중위소득 50% 이하의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및 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하여 사업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23년 공공기관 예산안 예정처 분석보고서)
 - (후속조치)지자체와 장애인단체 등을 통해 중위소득 50% 이하의 대상자가 다수 근로하는 장애인일자리 및 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는 등 사업 관리('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예정처 분석보고서)
 - (지적사항)목표인원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 및 관리가 필요하며 사업의 지원대상이 중증장애인 근로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발급 등 사업절차를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23년도 예산 환노위 검토보고서)
 - (후속조치)'23년 목표인원 증가에 따라, 보건복지부, 주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등 홍보, 전산시스템을 강화, 대리인 신청제도를 신설하여 카드발급이 어려운 대상자의 탈락을 방지하는 등 사업운영관리 및 사업절차 보완 노력('23년도 예산 환노위 검토보고서)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23년 재정사업자율평가) : 비대상
- ('24년 재정사업자율평가) : '보통' 등급
- ('25년 재정사업자율평가) : '보통' 등급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2,610	-	2,610	2,610	2,610	100.0	100.0	-	-
2023	6,948	-	6,948	6,948	5,052	72.7	72.7	-	1,896
2024	6,597	1,430	8,027	8,027	8,027	100.0	100.0	-	-
2025	6,597	1,442	8,039	8,039	8,039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피출연기관 집행잔액 896백만원 불용
2023	- 출연금 미교부액 1,896백만원 불용
2024	- 기금운용계획변경 1,430백만원 증액 - 계획변경 사유: 홍보 효과, 단가인상으로 인한 지원금 예산 부족 - 피출연기관 집행잔액 22백만원 불용
2025	- 기금운용계획변경 1,442백만원 증액 - 계획변경 사유: 지급률 증가로 인한 지원금 예산 부족 - 피출연기관 집행잔액 25백만원 불용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025.10.1.)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350	02	1,442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확대를 위해 1,442백만원 증액
합 계				1,442	

사 업 명
(7)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1453-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및 직업재활기금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53	304
명칭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고용인프라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통합고용정책국
	사업시행주체	장애인고용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장애인표준 사업장지원	52,883	52,856	52,856	60,243	60,243	7,387	14.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 획
	계 획 액 (수 정)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이 월 액	불 용 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이 월 액	불 용 액	
						당 초	수 정					
○ 기능별 분류(합계)	52,883 (52,883)	52,883	52,883	-	-	52,856	52,856	52,856	52,856	-	-	60,243
·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52,883 (52,883)	52,883	52,883	-	-	52,856	52,856	52,856	52,856	-	-	60,24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안전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

제22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에게 그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다른 민간 기업으로부터 출자를 받는 등 지역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② 추진경위

- 2003. 2. 19. 제2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에 포함
- 2007. 4. 4. 「수요자 관점의 장애인정책」 대통령 업무보고 시 새로운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방안으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 도입 제시
- 2007. 7. 13.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 도입(2008. 1. 14. 시행)
- 2010. 1. 18. 2010년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정책 자료(고용정책협의회)

- 2011. 2. 18.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공동출자 설립 가능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2011. 3. 9. 시행)
- 2013. 5. 28. 18대 국정과제(50-9)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확대
- 2018. 12. 31. 사회적 경제기업형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근거 및 지원 절차 마련
- 2018. 4. 19.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 방안 포함
- 2019. 12. 31.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근거 및 지원 절차 마련
- 2023. 5. 14.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에 기업의 장애인 고용기여 방안으로써 장애인표준사업장 제시
- 2023. 11. 16.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수익계약 조항 국가계약법(시행령) 명시
- 2024. 2. 17.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수익계약 조항 지방계약법(시행령) 명시
- 2025. 11. 11. 지주회사 내 계열사간 공동출자 허용 법 개정(2025. 11. 11.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2~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6,437	44,883	52,883	52,856	60,24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려는 사업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장애인표준 사업장지원	출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60,243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 제43조 및 제71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 (2025 계획) 52,856백만원 → (2026 계획) 60,243백만원, 7,387백만원 증액

①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 ('25 계획) 51,600 → ('26 계획) 59,060백만원, 14.5% 증

- (요구)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 기본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실질적 장애인 채용방안 제시를 위해 전체 무상지원금 규모 및 단가를 상향하여 59,060백만원 요구

- (산출) 일반형·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등 설립 지원 52,460백만원

* 172개소 × 305백만원

도약지원형 지원 6,100백만원

* 20개소 × 305백만원

창업자금 500백만원

* 10개소 × 50백만원(전년동)

② 사업운영 및 판매활동지원

: ('25 계획) 1,256 → ('26 계획) 1,183백만원, △ 5.8%

- (요구)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 기본계획 등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 및 자생력 제고 위해 직접생산 확인 업무를 운영하고자 '25년 1,256백만원 대비 73백만원 감액된(△5.8%) 1,183백만원 요구

- (산출) 사업운영 및 판매지원시스템, 직접생산확인 업무 도입 등 고려하여 1,183백만원 산출

· 사업운영 및 판매지원: 330백만원(330백만원 × 1식)(전년 동)

· 온라인 판매지원시스템: 278백만원(278백만원 × 1식)(전년 동)

· 우선구매 활성화지원(위탁): 200백만원(200백만원 × 1식)(전년 동)

· 생산품 직접생산 확인 업무: 175백만원(직접생산 확인 필수 경비)

* '26년 직접생산확인 예정 품목수(450개) 및 소요 경비 단가를 고려한 소요액 반영

· 생산품 홍보·마케팅비 지원: 200백만원(10개소 × 20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2,856	○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 51,600,000천원 가. 표준사업장 지원금 (51,600,000천원) · 일반 및 자회사 등 : 162개 × 300,000천원=48,600,000천원 · 도약지원형 : 10개소 × 300,000천원=3,000,000천원 ○ 사업운영 및 판매활동지원 : 1,256,000천원 가. 표준사업장 지원경비(1,256,000천원) · 표준사업장사업운영및생산품판매활동지원 : 608,000,000원×1식=608,000천원 · 우선구매제도지원 : 200,000,000원×1식=200,000천원 · 직접생산확인지원 : (직접생산확인 450개×389,000원)+(업무시스템개발 273,000,000원×1식)=448,000천원	60,243	○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 59,060,000천원 가. 표준사업장 지원금 (59,060,000천원) · 일반 및 자회사 등 : 172개소 × 305,000천원=52,460,000천원 · 도약지원형 : 20개소 × 305,000천원=6,100,000천원 · 창업자금 : 10개소 × 50백만원= 500,000천원 ○ 사업운영 및 판매활동지원 : 1,183,000천원 가. 표준사업장 지원경비(1,183,000천원) · 표준사업장사업운영및생산품판매활동지원 : 608,000,000원×1식=608,000천원 · 우선구매제도지원 : 200,000,000원×1식=200,000천원 · 직접생산확인지원 : (직접생산확인 450개×389,000원)- 단수조정 50,000원 = 175,000천원 · 생산품 홍보·마케팅비 : 20,000,000원×10개소=20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 (단위: %)	목표	3.18	3.20	(삭제)	(삭제)	(삭제)	'24년 프로그램 성과지표 변경	-	-
	실적	3.19	3.24	-	-	-			
	달성도	100.3	101.3	-	-	-			
근로지원인 수혜장애인 비율 (단위: %)	목표	1.66	1.96	(삭제)	(삭제)	(삭제)	'24년 프로그램 성과지표 변경	-	-
	실적	1.89	2.07	-	-	-			
	달성도	113.86	105.6	-	-	-			
장애인 취업자 비율 (단위: %)	목표	-	(신규)	5.18	(삭제)	(삭제)	'25년 프로그램 성과지표 변경	-	-
	실적	-	-	6.17	-	-			
	달성도	-	-	119.1	-	-			
장애인고용률 (단위: %)	목표	-	-	(신규)	49.1	49.2	최근 5개년('20~'24) 평균(49.1%)의 의욕치 0.1%p 반영	(장애인 취업자 수 / 15세 이상 만 64세 이하 장애인 인구) × 1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실적	-	-	-	48.3	-			
	달성도	-	-	-	98.4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표준사업장 및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선정·지원 - 표준사업장: (주)동구발등 99개소 설립지원(창업자금 24개소 제외)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주)제니엘플러스 등 59개소 설립지원 -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푸르메여주팜 주식회사 1개소 지원
2023	- 표준사업장 및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선정·지원 - 표준사업장: (주)유환 등 85개소 설립지원(창업자금 20개소 제외)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주)희망별숲 등 64개소 설립지원 -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지원 없음
2024	- 표준사업장 및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선정·지원 - 표준사업장: (주)오보틀 등 142개소 설립지원(창업자금 10개소 제외)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주)위드센 등 42개소 설립지원 -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지원 없음
2025	- 표준사업장 및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선정·지원 - 표준사업장: 투인산업(주) 등 169개소 설립지원(창업자금 10개소 제외) - 도약지원형 표준사업장 : (주)희망별숲 등 11개소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 통한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유지
- 표준사업장 202개소 지원(일반·자회사형 172개소, 도약지원형 20개소, 창업자금 10개소)
- 도약지원형 20개소 추가고용 유도 및 노후시설·장비 개선 등 추가 투자 지원
- 표준사업장 200개소, 450개 품목 생산품 직접생산 확인 등으로 판로 확대 및 자생력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절차도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고용노동부 (60,243백만원)	=> (60,243백만원)	한국장애인고용 공단 (60,243백만원)	=> (60,243백만원)	공단 소속기관 및 용역기관 등 24개 기관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지적사항)장애인 표준사업장 실태조사,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등의 통계자료 관리 관련 개선 계획 필요 ('23 국정감사 환노위 이수진 의원)
 - (후속조치)(표준사업장 관리 강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근로조건 관리 방안 마련('23.10월)을 통해 ① 매분기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항목(근로계약, 월 근로시간, 평균임금 등) 추가('24년 1분기부터 적용) 하고, ② 관련 시스템 개선 및 업무담당자 교육 시행으로 사후 관리 철저
- 2) 대외공개 평가
 - '23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 등급 미산정('지원고용 및 재취'유형으로 등급 미산정)
 - '24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 '양호' 등급 획득
 - '25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 개선필요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36,437	-	36,437	36,437	36,437	100.0	100.0	-	-
2023	44,883	-	44,883	44,883	41,583	92.6	92.6	-	3,300
2024	52,883	-	52,883	52,883	52,883	100.0	100.0	-	-
2025	52,856		52,856	52,856	52,856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피출연기관의 집행잔액 3,697백만원 불용
2023	- 피출연기관의 집행잔액 2,277백만원(출연금 미교부액 3,300백만원) 불용 - (불용사유) ①투자 예정 품목의 가격 등 내역 변동사항 발생, ②사업주의 이행보증증권 가입 가능금액 부족에 따른 투자금액 축소, ③하반기 투자 포기 및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발생으로 추가 선정 진행 시 회계연도 내 충분한 투자기한 부여 불가
2024	- 피출연기관의 집행잔액 3,065백만원 불용
2025	- 피출연기관의 집행잔액 1,663백만원 불용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8) 보조공학기기지원(1453-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및 직업재활기금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53	305
명칭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고용인프라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보조공학기기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통합고용정책국
	사업시행주체	장애인고용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보조공학기기 지원	19,603	19,793	19,793	19,950	19,950	157	0.8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9,603 (19,603)	19,603	19,603	-	-	19,793	19,793	19,793	19,793	-	-	19,950
· 보조공학기기지원	19,603 (19,603)	19,603	19,603	-	-	19,793	19,793	19,793	19,793	-	-	19,9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신체·정신적 장애로 인한 기능저하 또는 상실로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근로자에게 체계적으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고용안정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 제21조, 제21조의2

제18조(장애인 근로자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장비의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2. 장애인 공무원: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공학기기·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장비의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의 제공
--

- ② 추진경위

- '04. 2월 : 복권위원회에 보조공학센터 설립 신규 사업 제안
- '04.12월 :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개시
- '06. 7월 : 공단 지사로 상용기기 전달체계 확대
- '14. 1월 : 복권기금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으로 재원 변경
- '14. 3월 : 출퇴근용 차량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시행

- '22. 1월 :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 장애인공무원으로 확대
- '22. 7월 : 장애인근로자 직접신청 근거마련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 지원
- '24. 1월 : 본인부담금 시행(보조공학기기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10%)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4~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6,660	19,248	19,603	19,793	19,95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장애인근로자(공무원), 장애인고용 사업주, 장애인 사업주(근로자 4인 이하)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보조공학 기가지원	출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9,950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및 제71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보조공학기가지원 : (2025 계획) 19,793백만원 → (2026 계획) 19,950백만원, 157백만원 증액

- (요구) 장애인 근로자의 작업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 예산 요구
- (산출) ① 보조공학기가지원금: ('25) 16,772백만원 → ('26) 16,772백만원(전년 동)
- ② 보조공학기기개발: ('25) 200백만원 → ('26) 200백만원(전년 동)
- ③ 보조공학기가지원사업 운영비: ('25) 628백만원 → ('26) 629백만원(1백만원 증)
- ④ 맞춤형보조공학서비스지원: ('25) 2,193백만원 → ('26) 2,199백만원(6백만원 증)
- ⑤ 업무시스템 개선: ('25) 0원 → ('26) 150백만원(순증)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9,793	○ 사업출연금 : 19,793백만원 가. 보조공학기가지원금: 16,772백만원 - (15,000점×1.2백만원)-(본인부담금 1,228백만원) =16,772백만원 나. 보조공학기기개발: 200백만원 - 2종×100백만원 = 200백만원 다. 보조공학기가지원사업 운영비: 628백만원 1) 박람회 및 이동전시	19,950	○ 사업출연금 : 19,950백만원 가. 보조공학기가지원금: 16,772백만원 - (15,000점×1.2백만원)-(본인부담금 1,228백만원) =16,772백만원 나. 보조공학기기개발: 200백만원 - 2종×100백만원 = 200백만원 다. 보조공학기가지원사업 운영비: 629백만원 1) 박람회 및 이동전시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1.1백만원×10회 = 211백만원 2) 사업운영비 23개소×13.8백만원 = 317백만원 3) 시스템유지보수비 100백만원×1식 = 100백만원 라. 맞춤형보조공학서비스지원: 2,193백만원 1) 제품개발·국산화 10건×105백만원 = 1,050백만원 2) 품질안전검사 100건×2.62백만원 = 262백만원 3) 제작·품질인증실 운영 58.7백만원×12개월 = 704백만원 4) 전문인력인건비 5명×2,956,000원×12월 = 177백만원		21.1백만원×10회 = 211백만원 2) 사업운영비 23개소×13.83백만원 = 318백만원 3) 시스템유지보수비 100백만원×1식 = 100백만원 라. 맞춤형보조공학서비스지원: 2,199백만원 1) 제품개발·국산화 10건×105백만원 = 1,050백만원 2) 품질안전검사 100건×2.62백만원 = 262백만원 3) 제작·품질인증실 운영 58.7백만원×12개월 = 704백만원 4) 전문인력인건비 5명×3,050,000원×12월 = 183백만원 마. 업무시스템 개선: 150백만원 - 1식×150백만원 = 15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 (단위: %)	목표	3.18	3.20	(삭제)	(삭제)	(삭제)	'24년 프로그램 성과지표 변경	-	-
	실적	3.19	3.24	-	-	-			
	달성도	100.3	101.3	-	-	-			
근로지원인 수혜장애인 비율 (단위: %)	목표	1.66	1.96	(삭제)	(삭제)	(삭제)	'24년 프로그램 성과지표 변경	-	-
	실적	1.89	2.07	-	-	-			
	달성도	113.86	105.6	-	-	-			
장애인 취업자 비율 (단위: %)	목표	-	(신규)	5.18	(삭제)	(삭제)	'25년 프로그램 성과지표 변경	-	-
	실적	-	-	6.17	-	-			
	달성도	-	-	119.1	-	-			
장애인고용률 (단위: %)	목표	-	-	(신규)	49.1	49.2	최근 5개년('20~'24) 평균(49.1%)의 의욕치 0.1%p 반영	(장애인 취업자 수 / 15세 이상 만 64세 이하 장애인 인구) × 1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실적	-	-	-	48.3	-			
	달성도	-	-	-	98.4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보조공학기기 지원 인원 8,570명(11,410점)
2023	○ 보조공학기기 지원 인원 5,867명(8,139점)
2024	○ 보조공학기기 지원 인원 7,540명(11,311점)
2025	○ 보조공학기기 지원 인원 8,079명(12,509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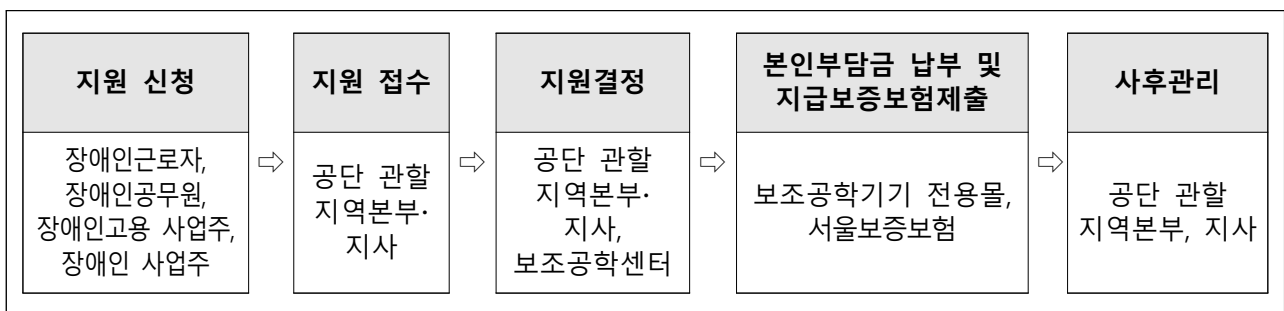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장애유형과 직무환경에 맞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로 인한 기능저하 및 상실로 직업생활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 근로자 지원
- 첨단 보조공학기기 개발, 고가의 외산기기 국산화를 위한 연구·보급 추진
- 체계적이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안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체계 마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지적사항)(‘25년 예산안 예결위 검토보고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와 달리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사업 내용 개선 검토 필요
 - (후속조치) ①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용자·지원규정」 제23조제4항에 여성장애인을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근거조항 마련, ②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 개정으로 실질적으로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 우대기준(가점) 신설

2) 대외공개 평가

- ‘23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 등급 미산정(‘지원고용 및 재활’ 유형으로 등급 미산정)
- ‘24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 양호
- ‘25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 개선필요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6,660	-	16,660	16,660	16,660	100.0	100.0	-	-
2023	19,248	-	19,248	19,248	19,248	100.0	100.0	-	-
2024	19,603	-	19,603	19,603	19,603	100.0	100.0	-	-
2025	19,793	-	19,793	19,793	19,793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피출연기관의 집행잔액 140백만원 불용
2023	- 피출연기관의 집행잔액 125백만원 불용
2024	- 피출연기관의 집행잔액 105백만원 불용
2025	- 피출연기관의 집행잔액 154백만원 불용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해당없음

사 업 명
(9) 장애인직업능력개발(1457-31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및 직업재활기금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57	314
명칭	장애인고용촉진	장애인직업능력제고	장애인직업능력개발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소관부처	실·국·과(팀)
		통합고용정책국
	사업시행주체	장애인고용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장애인직업 능력개발	87,428	60,611	60,611	64,475	69,448	8,837	14.6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88,585 (89,603)	89,603	87,428	-	2,175	60,611	60,611	60,611	60,611	-	-	69,448
· 장애인직업능력개발	88,585 (89,603)	89,603	87,428	-	2,175	60,611	60,611	60,611	60,611	-	-	69,44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장애인이 희망·적성·능력에 맞는 일자리 취업을 위해 전용 훈련시설(직업능력개발원, 디지털훈련센터 및 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민간 훈련기관 훈련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 직업훈련 기회 확대
- 장애인 AI 활용능력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취업 연계를 위해 공단 직접훈련 및 민간 전문기관 협업을 통한 위탁훈련 실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2조

제 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훈련 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훈련비를 포함한다)을 융자·지원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장애인에게 훈련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융자·지원 기준 및 훈련수당의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및 훈련센터 운영>

- 1992. 일산직업전문학교 인수·운영
* '00.3. 대전, '00.9. 부산, '02.9. 전남, 대구 직업전문학교 개원
- 1997.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98~'02)에 5개 권역별 공공장애인 직업훈련기관 확충 계획 발표(12월)
- 2005. 장애유형별 특화훈련 실시
- 2008. 장애유형별 특성화훈련 확대(전 센터 2개 유형 실시)

- 2010. '직업능력개발원'으로 명칭 변경
- 2014. 서울맞춤훈련센터 설립
- 2016. 청각장애인훈련센터 및 서울,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
- 2017. 천안·아산, 창원 맞춤훈련센터 및 광주,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
- 2018. 인천, 전주, 제주 맞춤훈련센터 및 대전, 경기, 전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
- 2019. 경기 맞춤훈련센터 및 부산, 울산, 강원, 충북, 경북, 경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
- 2020. 서울남부, 세종, 경기북부, 충남, 전남, 제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
- 2021. 경기맞춤훈련센터를 판교디지털훈련센터로 전환
- 2021. 구로디지털훈련센터 설립
- 2022. 광주디지털훈련센터 설립
- 2023. 인천, 천안·아산맞춤훈련센터를 인천, 천안·아산디지털훈련센터로 전환
대구디지털훈련센터 부설 설치
- 2024. 창원, 전주맞춤훈련센터를 창원, 전주디지털훈련센터로 전환
대전디지털훈련센터 부설 설치
- 2024. 부산디지털훈련센터 설립
- 2025.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개원, 일산디지털훈련센터 부설 설치
서울, 제주맞춤훈련센터를 서울, 제주디지털훈련센터로 전환

<장애인훈련기관(공공·민간 위탁 훈련기관) 지원>

- 1995. 장애인직업훈련 및 지원에 대한 규정 마련하여 지원 시작
※ 공공훈련기관(폴리텍 22개소), 특수학교 전공과(8개교), 민간훈련기관(15개소)
- 2007. 학교법인 기능대학과 장애인 훈련 확대를 위한 MOU 체결
여성 및 중증장애인 우대 명문화(고시 개정)
- 2017. 민간훈련, 개별적 훈련 지원을 고용보험 실업자 계좌적합훈련으로 통합
재원 이관(장고기금 → 고용보험기금)
- 2018. 민간훈련기관 지원 사업 재원 이관(고용보험기금 → 장고기금)
- 2019.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시설 등의 훈련과정 이관·지원 (21개 기관, 435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92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0,597	81,916	89,603	60,611	69,448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만 1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 또는 필요로 하는 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장애인직업 능력개발	출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69,448	1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제71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장애인직업능력개발

: (2025 당초 계획) 60,611백만원 → (2026) 69,448백만원, 8,837백만원 증액

①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운영

: (2025 계획) 19,102백만원 → (2026 계획) 21,671백만원, 2,569백만원 증액

- (요구) 직능원 사감 3조 2교대 전환을 위한 시설관리비 및 최저임금 인상 연동 소요액 반영
- (산출) 교육훈련비: 5개소×1,239.6백만원=6,198백만원
 시설관리비: 5개소×1,286백만원=6,430백만원(증 911백만원)
 훈련장비: 5개소×168.2백만원=841백만원
 안전한 환경환경 조성(노후시설 개보수): 5개소×328.8백만원=1,644백만원
 디지털능력개발원: 85백만원×2증=170백만원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교육훈련비: 4,630백만원×1개소=4,630백만원
 시각장애인 전용훈련시설 건립 건축설계비: 1,658백만원×1식=1,658백만원(순증 1,658백만원)
 농생명특화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사업 도입 방안 연구: 100백만원×1식=100백만원(순증 100백만원)

② 맞춤형훈련센터 운영

: (2025 계획) 16,148백만원 → (2026 계획) 17,221백만원, 1,073백만원 증액

- (요구) 맞춤형훈련센터, 디지털훈련센터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비 및 디지털훈련센터 확대 설치비용 반영
- (산출) 맞춤형훈련센터 교육훈련비: 7개소×1,147백만원=8,029백만원(증 176백만원)
 디지털훈련센터 교육훈련비: 13개소×670.15백만원=8,712백만원(증 1,531백만원)
 디지털훈련센터 확대: (부설 1개소) 480백만원×1개소=480백만원(감 634백만원(완료 소요))

③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운영

: (2025 계획) 19,443백만원 → (2026 계획) 21,552백만원, 2,109백만원 증액

- (요구) 발달장애인 자기주도 재직자훈련 신규 실시 비용 및 최저임금 인상 연동 소요액 반영
- (산출) 발달훈련센터 교육훈련비: 19개소×888.05백만원=16,873백만원(증 401백만원)
 직업훈련준비과정: 19개소×102.6백만원=1,949백만원
 통학버스 지원: 19개소×45백만원=855백만원
 가상훈련시스템 구축: 5개소×53백만원=265백만원
 발달장애인 자기주도 재직자훈련: 8개소×201.25백만원=1,610백만원(증 1,610백만원)

④ 장애인 훈련기관 지원

: (2025 계획) 5,918백만원 → (2026 계획) 5,789백만원, 129백만원 감액

- (요구) 장애인의 훈련접근성 확대를 위한 공공·민간 훈련기관 교육훈련비 등 지원
- (산출) 공공훈련지원: 40명×3.21백만원=128백만원(감 129백만원)
 민간훈련지원: 790명×7,166백만원=5,661백만원

⑤ 장애인 AI활용 강화 프로그램

: 2026 신규, (2026 계획) 3,215백만원(순증)

- (산출) AI역량강화(직접훈련): 3,500명×517.1천원=1,810백만원(순증 1,810백만원)
AI민간훈련(위탁훈련): 100명×11,05백만원=1,105백만원(순증 1,105백만원)
AI훈련과정 연구용역: 300백만원×1식=300백만원(순증 300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0,611	○ 사업출연금 : 60,611,000천원 ○ 직업능력개발원 운영: 19,102백만원 가. 교육훈련비 : 5개소×1,239.6백만원=6,198백만원 나. 시설관리비 : 5개소×1,103.9백만원=5,519백만원 다. 훈련장비 : 5개소×168.2백만원=841백만원 라. 안전한 훈련환경 조성 : 1,644백만원 - 노후시설 개보수 : 5개소×328.8백만=1,644백만원 마. 디지털능력개발원 : 85백만원×2중=170백만원 바. 남부직업능력개발원 교육훈련비: 4,630백만원×1개소=4,630백만원 사. 시각장애인훈련센터 타당성조사: 100백만원×1식=100백 ○ 맞춤형훈련센터: 16,148백만원 가. 맞춤형센터운영 : 7개소×1,121.9백만원=7,853백만원 나. 디지털훈련센터 운영 : 8,295백만원 - 디지털훈련센터 교육훈련비 : 10개소×718.1백만원=7,181백만원 - 디지털훈련센터 확대 634백만원(전환2)+480백만원(부설1)=1,114백만원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19,443백만원 가. 발달훈련센터 교육훈련비 : 19개소×861.8백만원=16,374백만원 나. 직업훈련준비과정 : 19개소×102.6백만원=1,949백만원 다. 통학지원 : 19개소×45백만원=855백만원 라. 가상훈련시스템 구축 : 5개소×53백만원=265백만원 ○ 장애인훈련기관 지원: 5,918백만원 가. 공공훈련지원 : 80명×3,21백만원=257백만원 나. 민간훈련지원 : 790명×7.166백만원=5,661백만원	69,448	○ 사업출연금 : 69,448,000천원 ○ 직업능력개발원 운영: 21,671백만원 가. 교육훈련비 : 5개소×1,239.6백만원=6,198백만원 나. 시설관리비 : 5개소×1,286백만원=6,430백만원 다. 훈련장비 : 5개소×168.2백만원=841백만원 라. 안전한 훈련환경 조성 : 1,644백만원 - 노후시설 개보수 : 5개소×328.8백만=1,644백만원 마. 디지털능력개발원 : 85백만원×2중=170백만원 바. 남부직업능력개발원 교육훈련비: 4,630백만원×1개소=4,630백만원 사. 시각전용훈련시설건립 건축설계비: 1,658백만원×1식=1,658백만원 아. 농생명특화 직업능력개발 사업 도입 방안 연구: 100백만원×1식=100백만원 ○ 맞춤형훈련센터: 17,221백만원 가. 맞춤형센터운영 : 7개소×1,147백만원=8,029백만원 나. 디지털훈련센터 운영 : 9,192백만원 - 디지털훈련센터 교육훈련비 : 13개소×670.15백만원=8,712백만원 - 디지털훈련센터 확대 (부설 1) 480백만원×1개소=480백만원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21,552백만원 가. 발달훈련센터 교육훈련비 : 19개소×888.05백만원=16,873백만원 나. 직업훈련준비과정 : 19개소×102.6백만원=1,949백만원 다. 통학지원 : 19개소×45백만원=855백만원 라. 가상훈련시스템 구축 : 5개소×53백만원=265백만원 마. 발달장애인 자기주도 재직자훈련: 8개소×201.25백만원=1,610백만원 ○ 장애인훈련기관 지원: 5,789백만원 가. 공공훈련지원 : 40명×3,21백만원=128백만원 나. 민간훈련지원 : 790명×7.166백만원=5,661백만원 ○ 장애인 AI활용 강화 프로그램 : 3,215백만원 가. AI역량강화(직접훈련): 3,500명×517.1천원=1,810백만원 나. AI민간훈련(위탁훈련): 100명×11,05백만원=1,105백만원 다. AI훈련과정 연구용역: 300백만원×1식=3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추정산식 (또는 추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 (단위: %)	목표	3.18	3.20	(삭제)	(삭제)	(삭제)	'24년 프로그램 성과지표 변경	-	-
	실적	3.19	3.24	-	-	-			
	달성도	100.3	101.3	-	-	-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근로지원인 수혜장애인 비율 (단위: %)	목표	1.66	1.96	(삭제)	(삭제)	(삭제)	'24년 프로그램 성과지표 변경	-	-
	실적	1.89	2.07	-	-	-			
	달성도	113.86	105.6	-	-	-			
장애인 취업자 비율 (단위: %)	목표	-	(신규)	5.18	(삭제)	(삭제)	'25년 프로그램 성과지표 변경	-	-
	실적	-	-	6.17	-	-			
	달성도	-	-	119.1	-	-			
장애인고용률 (단위: %)	목표	-	-	(신규)	49.1	49.2	최근 5개년('20~'24) 평균(49.1%)의 의욕치 0.1%p 반영	(장애인 취업자 수 / 15세 이상 만 64세 이하 장애인 인구) × 1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실적	-	-	-	48.3	-			
	달성도	-	-	-	98.4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직업능력개발원 및 훈련센터 양성훈련 - 수료인원 3,014명, 취업인원 2,753명(취업률 91.3%) ○ 장애인훈련기관 지원(공공·민간) - 수료인원 678명, 취업인원 482명(취업률 71.1%)
2023	○ 직업능력개발원 및 훈련센터 양성훈련 - 수료인원 3,178명, 취업인원 2,559명(취업률 80.5%) ○ 장애인훈련기관 지원(공공·민간) - 수료인원 708명, 취업인원 547명(취업률 77.3%)
2024	○ 직업능력개발원 및 훈련센터 양성훈련 - 수료인원 3,145명, 취업인원 2,582명(취업률 82.1%) ○ 장애인훈련기관 지원(공공·민간) - 수료인원 646명, 취업인원 442명(취업률 68.4%)
2025	○ 직업능력개발원 및 훈련센터 양성훈련 - 수료인원 3,375명, 취업인원 2,779명(취업률 82.3%) ○ 장애인훈련기관 지원(공공·민간) - 수료인원 584명, 취업인원 109명(취업률 18.7%)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훈련 수요 대비 부족한 장애인 훈련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직업훈련 참여기회 확대, AI 시대에 대응하는 직업훈련과정 운영으로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강화

- (경기남부직능원 개원) '25년 3월 경기남부직능원 개소로 훈련 정원 300명 규모 직업 능력개발훈련 서비스 제공
- (맞춤·디지털훈련센터) 기업에서 요구하는 현장 인력 양성·공급하는 맞춤훈련 확대 및 4차 산업형 IT 일자리 증가 대응 및 장애인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 훈련센터 확대 설치
 - * 디지털훈련센터 확대: ('25) 13개소 → ('26) 14개소(부설형 1개소)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교육청과 연계하여 '교육(학령기) - 훈련(청년기)'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전국 17개 시·도(19개소) 운영 및 훈련 참여 어려운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준비과정' 운영으로 중증장애인 훈련 서비스 강화
- (공공·민간 위탁훈련) 공공(폴리텍대학) 및 민간훈련기관 지원을 통해 가사, 이동 불편으로 직업훈련 참여가 어려운 여성, 장년 장애인 등의 훈련 접근성 제고
- (발달장애인 재직자훈련) 발달장애인 재직근로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직무 및 기초 소양 훈련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장기근속을 유도
- (시각장애인전용 훈련시설 설립) 시각장애인 장애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시각장애인 전용훈련시설 건립을 위한 공공건축 심의 및 기본·실시설계 착수. '29년 완공 목표
- (AI활용강화 프로그램) 장애인 AI 활용과 관련한 공단 직접훈련 및 민간위탁훈련 실시로 AI에 대한 이해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 연계 기대
- (농생명특화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사업 도입 방안 연구) 농생명 분야 산업환경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직업훈련 수요 실태조사, 훈련과정 개발, 공공·민간 협업 모델(예시: 전북 공공기관-국가식품클러스터-농생명산업지구) 발굴 등 농생명 분야 훈련 사업 도입 방안 연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타당성조사) 시각장애인 전용훈련시설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조사기간 및 수행처: '25.4 ~ '25.11, 한국자치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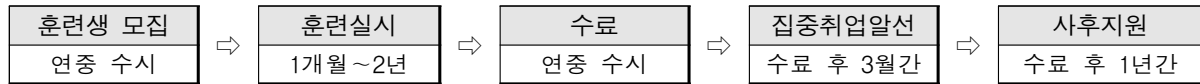
- (조사결과) ① 설립필요성 있음(훈련수요 대비 공급 부족, 훈련 직종 다양화 및 시각장애 특화 공간설계 등 전용 인프라 필수), ② 경제적타당성 있음(총사업비 286억에 대비 편익 현재가치 555억으로 편익이 큼)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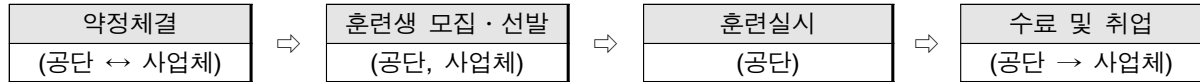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및 훈련센터 운영>

1) 정규훈련(융복합·특화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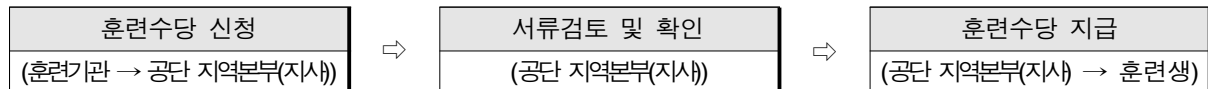
* '17년부터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연계, 1단계 집중상담·진로설계 후 훈련실시

2) 맞춤형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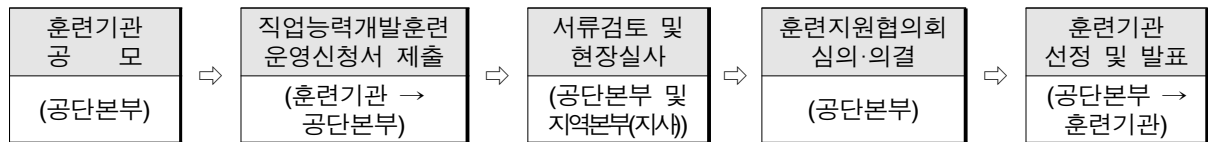


<장애인훈련기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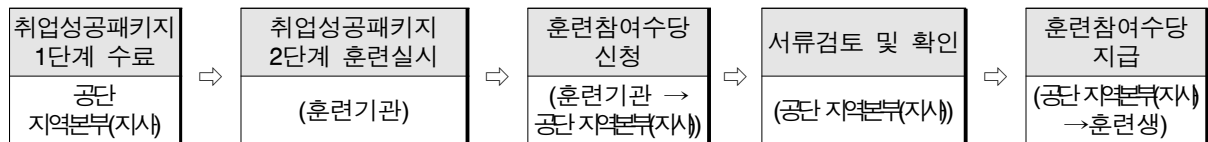
1) 공공훈련기관 훈련수당 지급



2) 민간훈련기관 선정(공모)



3) 민간훈련기관 훈련참여수당 지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지적사항)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신축 사업은 부지 매입 및 설계 절차 지연으로 2021년 사업비 중 공사비가 전액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22년 공사비는 예산안 등 편성지침을 참고하여 적정 수준으로 감액 조정 필요('22년 예산안 예결위 검토보고서)
- (후속조치)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은 '21년 착공, 연차별 계획 및 공사 진행 일정에 따라 '24년 준공 완료('22년 예산안 예결위 검토보고서)

2) 대외공개 평가

- '23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 등급 미산정('지원고용 및 재할' 유형으로 등급 미산정)
- '24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 개선필요
- '25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 양호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70,597	-	70,597	70,597	70,597	100.0	100.0	-	-
2023	81,906	10	81,916	81,916	80,686	98.5	98.5	-	1,230
2024	88,585	1,018	89,603	89,603	87,428	97.6	97.6	-	2,175
2025	60,611	-	60,611	60,611	60,611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피출연기관의 경기남부직능원 공사비 24,649백만원, 일산직능원 생활관 증축 공사비 2,855백만원 이월 - 피출연기관의 집행잔액 597백만원 불용
2023	- (기금운용계획변경)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용지보상비 10백만원 증액 변경 - 피출연기관의 경기남부직능원 공사비 13,029백만원, 일산직능원 생활관 증축 공사비 7,753백만원, 시각장애인훈련센터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15백만원 이월 - 출연금 미교부액 1,230백만원 불용 및 피출연기관의 집행잔액 180백만원 불용
2024	- (기금운용계획변경)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생활관 증축 추가소요 공사비 1,018백만원 증액 변경 - 경기남부직능원 출연금 미교부액 2,175백만원 불용(준공정산 및 집행잔액 등)
2025	- 피출연기관의 집행잔액 2,061백만원 불용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10) 장애인기능경기대회(1457-31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및 직업재활기금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57	319
명칭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직업능력제고	장애인기능경기대회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장애인기능 경기대회	소관부처	실·국·과(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중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4,510	4,520	4,520	5,571	5,571	1,051	23.3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4,510 (4,510)	4,510	4,510	-	-	4,520	4,520	4,520	4,520	-	-	5,571
· 장애인기능경기대회	4,510 (4,510)	4,510	4,510	-	-	4,520	4,520	4,520	4,520	-	-	5,57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장애인 직업기능 개발 및 향상을 촉진하고, 사회와 기업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 발달 및 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개최
-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참여로 대한민국 기능장애인의 위상을 높임
- 국제대회 입상자에게 기능장려금을 지급하여 기능향상을 촉진하고 국제대회 개최 관련 주요 회의 참가를 통해 정보교류 및 국제협력을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6조의2(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사회와 기업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참가자격 등 참가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기능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거나 국내에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선발기준 등 참가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제1항에 따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법인·기관·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추진경위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 1996. 7개 시·도를 시작으로 최초 실시
- 1997. 11개 시·도 개최
- 1998. 15개 시·도 개최
- 1999. 16개 시·도 확대 개최, 민간 위탁 실시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

- 1999. 최초 개최(인천)
- 2001. 3개 지역 개최
- 2002. 4개 권역별 개최
- 2008. 민간위탁 개최, 전국대회 연계(기본직종 입상자 전국대회 출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 1981.~1991. 공단 설립 전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이 주관하여 개최
- 1992. 제9회 대회부터 공단이 주관하여 개최
- 2005. 서울광장 개최식 개최 등 최초로 공단 외부시설에서 대회 실시
- 2006.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주최 실시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 1981. 제1회 대회 참가(공단 설립 전으로 민간에서 주관)
- 1995. 제4회 대회부터 공단 주관으로 참가
- 1996. 입상자 기능장려금 지급 시작
- 2005. 03. 2011년 제8회 대회 서울 개최 결정
- 2007. 제7회 대회(일본 시즈오카) 참가, 종합우승 4연패 달성
- 2011. 제8회 대회 서울 개최, 종합우승 5연패 달성
- 2016. 제9회 대회(프랑스 보르도) 참가, 종합우승 6연패 달성
- 2023. 03. 제10회 대회(프랑스 메스) 참가, 종합우승 7연패 달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92~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766	7,705	4,510	4,520	5,57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장애인,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 종사자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출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5,571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제71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5,571백만원 : (2025 계획) 4,520백만원 → (2026 계획) 5,571백만원, 1,051백만원 증액

- (요구) 27년 국제대회 참가준비를 위한 선발전 개최 및 훈련비용 순증
- (산출) ① 지방대회 : ('25) 1,762백만원 → ('26요구) 1,762백만원 (전년 동)
- ② 발달대회 : ('25) 270백만원 → ('26요구) 270백만원 (전년 동)
- ③ 전국대회 : ('25) 1,459백만원 → ('26요구) 1,459백만원 (전년 동)
- ④ 국제대회 : ('25) 1,029백만원 → ('26요구) 2,080백만원 (증 1,051백만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520	□ 장애인기능경기대회 4,520,000천원 가.지방기능경기대회 1,762,000천원 1) 위탁운영비 1,754,000천원 가) 경기장 설치 등 대회운영 899,180천원 (52,893천원*17개소) 나)운영수당 440,820천원 다)상금, 참가장려금 414,000천원 2)공단 사업운영비 8,000천원 나.발달기능경기대회 270,000천원 1) 위탁운영비 268,840천원 가) 경기장 설치 등 대회운영 184,460천원 (46,115천원*4개권역) 나)운영수당 33,980천원 다)상금, 참가장려금 50,400천원 2) 공단 사업운영비 1,160천원 다.전국기능경기대회 1,459,000천원 1)대회 운영 등 654,400천원 2)운영수당 110,000천원 3)상금, 참가장려금 694,600천원 라.국제기능경기대회 1,029,000천원 1)국제대회 관련업무(IAF 회의참가 등) 36,000천원 2)기능장려금 993,000천원 가)18년차 10,461,530원*13명 나)14년차 9,627,900원*43명 다)9년차 10,200,000원*25명 라)2년차 8,173,910원*23명	5,571	□ 장애인기능경기대회 5,571,000천원 가.지방기능경기대회 1,762,000천원 1) 위탁운영비 1,754,000천원 가) 경기장 설치 등 대회운영 899,180천원 (52,893천원*17개소) 나)운영수당 440,820천원 다)상금, 참가장려금 414,000천원 2)공단 사업운영비 8,000천원 나.발달기능경기대회 270,000천원 1) 위탁운영비 268,840천원 가) 경기장 설치 등 대회운영 184,460천원 (46,115천원*4개권역) 나)운영수당 33,980천원 다)상금, 참가장려금 50,400천원 2) 공단 사업운영비 1,160천원 다.전국기능경기대회 1,459,000천원 1)대회 운영 등 654,400천원 2)운영수당 110,000천원 3)상금, 참가장려금 694,600천원 라.국제기능경기대회 2,080,000천원 1)국제대회 관련업무(IAF 회의참가 등) 36,000천원 2)국가대표 선발 488,000천원 가)선발전 개최 392,000천원 나)운영수당 96,000천원 3) 참가준비 571,000천원 가)소속훈련 545,000천원 나)사전조사 26,000천원 4)기능장려금 985,000천원 가)19년차 10,461,530원*13명 나)15년차 9,627,900원*43명 다)10년차 10,525,000원*24명 라)3년차 8,704,760원*21명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 (단위: %)	목표	3.18	3.20	(삭제)	(삭제)	(삭제)	'24년 프로그램 성과지표 변경	-	-
	실적	3.19	3.24	-	-	-			
	달성도	100.3	101.3	-	-	-			
근로지원인 수혜장애인 비율 (단위: %)	목표	1.66	1.96	(삭제)	(삭제)	(삭제)	'24년 프로그램 성과지표 변경	-	-
	실적	1.89	2.07	-	-	-			
	달성도	113.86	105.6	-	-	-			
장애인 취업자 비율 (단위: %)	목표	-	(신규)	5.18	(삭제)	(삭제)	'25년 프로그램 성과지표 변경	-	-
	실적	-	-	6.17	-	-			
	달성도	-	-	119.1	-	-			
장애인고용률 (단위: %)	목표	-	-	(신규)	49.1	49.2	최근 5개년('20~'24) 평균(49.1%)의 의욕치 0.1%p 반영	(장애인 취업자 수 / 15세 이상 만 64세 이하 장애인 인구) × 1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실적	-	-	-	48.3	-			
	달성도	-	-	-	98.4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지방대회: 17개 시·도 개최, 29직종, 2,073명 참가 ▪ 발달대회: 4개 권역별 개최, 6직종, 498명 참가 ▪ 전국대회: 제주도에서 개최, 40직종, 356명 참가 ▪ 국제대회: 기능장려금 지급(99명)
2023	▪ 지방대회: 17개 시·도 개최, 26직종, 2,162명 참가 ▪ 발달대회: 4개 권역별 개최, 6직종, 604명 참가 ▪ 전국대회: 경상북도 경주에서 개최, 39직종, 383명 참가 ▪ 국제대회: 기능장려금 지급(99명), 제10회 대회 참가(종합우승 7연패)
2024	▪ 지방대회: 17개 시·도 개최, 26직종, 2,325명 참가 ▪ 발달대회: 4개 권역별 개최, 6직종, 667명 참가 ▪ 전국대회: 충청북도 청주에서 개최, 40직종, 388명 참가 ▪ 국제대회: 기능장려금 지급(101명)
2025	▪ 지방대회: 17개 시·도 개최, 25직종, 2,300명 참가 ▪ 발달대회: 4개 권역별 개최, 6직종, 635명 참가 ▪ 전국대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40직종, 423명 참가 ▪ 국제대회: 기능장려금 지급(10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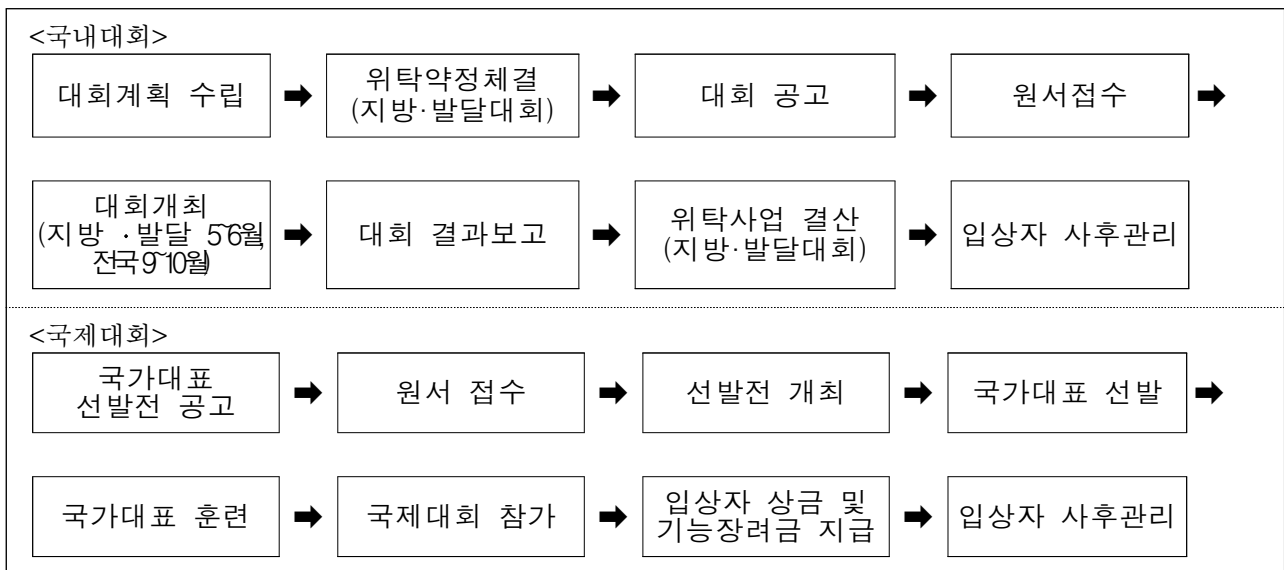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지방, 발달 및 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를 통해 장애인 기능 개발·향상 및 고용촉진과 대국민 인식개선 도모
- '26년 연도 중, 전국장애인기능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참가를 위한 선발전을 개최하여 국가대표를 선발하고 집중훈련을 거친 후 '27년 핀란드 제11회 국제대회 참가, 종합우승 8연패 달성을 통해 기능 강국의 위상 제고
- IAF(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연합) 회의 참가를 통해 국제교류 강화 및 기능 강국의 위상 전파
- 기능장려금 지급을 통한 우수 기능인의 사기진작 및 우대 풍토 조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23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 '보통' 등급 획득
 - ('24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 '우수' 등급 획득
 - ('25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보통' 등급 획득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7,766	-	7,766	7,766	7,766	100.0	100.0	-	-
2023	7,705	-	7,705	7,705	7,705	100.0	100.0	-	-
2024	4,510	-	4,510	4,510	4,510	100.0	100.0	-	-
2025	4,520	-	4,520	4,520	4,520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코로나19 및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당초 개최지(러시아) 전쟁 등으로 대회가 연기됨에 따라 2,993백만원 불용
2023	- 피출연기관의 집행잔액 58백만원 불용
2024	- 피출연기관의 집행잔액 144백만원 불용
2025	- 피출연기관의 집행잔액 53백만원 불용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해당없음

사 업 명
(11) 장애인고용연구(1459-32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및 직업재활기금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59	324
명칭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고용연구및인식개선	장애인고용연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장애인고용연구	소관부처	실·국·과(팀)
		통합고용정책국
	사업시행주체	장애인고용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장애인고용 연구	3,844	3,518	3,518	3,737	3,737	219	6.2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3,844 (3,844)	3,844	3,844	-	-	3,518	3,518	3,518	3,518	-	-	3,737
· 장애인고용연구	3,844 (3,844)	3,844	3,844	-	-	3,518	3,518	3,518	3,518	-	-	3,73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장애인 고용 관련 연구개발(정책연구, 실용연구)을 통해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집행 지원
- 국가승인통계조사 4종(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기업체장애인 고용실태조사,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을 실시하여 장애인 관련 전문 통계 데이터 생성·보급을 통한 합리적 정책 입안 기반 조성
- 장애인 직업 및 고용정보(알기 쉬운 자료 포함) 개발을 통해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도모
- 교육연수사업을 통해 장애인고용 실무자의 전문성과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체 임직원의 장애인 인식개선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제26조

제43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조사·연구
4.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의 양성·연수

제26조(장애인 실태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장애인의 취업직종·근로형태·근속기간·임금수준 등 고용현황 및 장애인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하여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1991년: 최초 사업시작(본부 소속)
- 1994년: 직업영역개발사업 최초 실시
- 2000년: 연구개발 전담조직 고용개발원 개원(2실 1부 체계),
- 2005년: 정부부문 직업영역개발사업 실시 및 ILO-KEAD 장애인고용 초청 연수 ('05~'08 아태지역 개발도상국 장애인고용전문가 대상)
- 2006년: 정부부문 의무고용률 2%→3% 상향 조정 정책지원 연구보고서 발간·보급

- 2008년: 제1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및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실시
- 2009년: 학술지 「장애와 고용」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선정
- 201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실시
- 2017년: 2017 국제장애고용포럼(IDEF) 개최,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 2018년: 2018 국제장애고용포럼(IDEF) 개최
- 2019년: 장애인 근로능력 판정도구 개발
- 2020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실시
- 2022년: 2022년 국제장애고용포럼(IDEF) 개최,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연 2회 실시
- 2025년: 2025년 국제장애고용포럼(IDEF) 개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285억(장애인고용 교육연수원 설립비용)
- 사업기간 : '91~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982	4,544	3,844	3,518	3,73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고용노동부 등 정부 및 지자체, 국회 등 입법기관의 장애인 고용정책 입안자 및 사업담당자, 장애인, 장애인고용 사업주, 장애인관련 기관 및 단체, 연구 기관 및 연구자,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 종사자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장애인고용 연구	출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3,737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및 제26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장애인고용연구 : (2025 계획) 3,518백만원 → (2026 계획) 3,737백만원, 219백만원 증액

① 고용연구과제 수행 : (2025 계획) 505백만원 → (2026 계획) 505백만원, 전년 동일

- (요구) 고용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25년 대비 동일하게 요구

- (산출) 505백만원

* 연구과제 확대: ('25년) 172 → ('26계획) 172백만원(12과제 × 14.3백만원) (전년동)

* 보급과제 제작: ('25년) 12 → ('26계획) 12백만원 (1과제 × 6,000원 × 2,000부) (전년동)

* 장애인 고용정책 동향지 발간: ('25년) 21 → ('26계획) 21백만원 (6회 × 3.5백만원) (전년동)

* 발달장애인 알기 쉬운 자료 개발: ('25년) 300 → ('26계획) 300백만원 (2종 × 150백만원) (전년동)

- ② 통계조사 수행: (2025 계획) 2,722백만원 → (2026 계획) 2,941백만원, +8%
- (요구) 국가정책 통계품질 확보를 위한 조사인력 지원단가 인상을 위해, '25년 대비 +8%(219백만원) 증액 요구
 - *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조사 단가 25,000원(120,600원→140,400원) 증액,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단가 5,000원(17,700원→21,700원) 증액
 - (산출) 219백만원 증액
 - *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5년) 659 → ('26계획) 758백만원 (1식 × 758백만원)
 - ↳ 1) 표본설계 1회×50백만원 = 50백만원 2) 조사비용 5,000명×140,400원 = 702백만원 3) 조사 실시 관련 사업비 1회×6백만원 = 6백만원, 총 99백만원 증액
 - *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25년) 1,180 → ('26계획) 1,180백만원 (2식 × 590백만원)(전년동)
 - *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25년) 567 → ('26계획) 717백만원 (1식 × 687백만원)
 - ↳ 1) 표본설계 1회×30백만원 = 30백만원 2) 조사비용 30,000개소×21,700원 = 681백만원 3) 조사 실시 관련 사업비 1회×6백만원 = 6백만원, 총 120백만원 증액
 - *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25년) 316 → ('26계획) 316백만원 (1식 × 316백만원)(전년동)
- ③ 교육연수과정 운영: (2025 계획) 175→ (2026 계획) 175백만원, 전년동
- (요구) 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사이버연수원(콘텐츠 유지보수 등) 운영을 위하여 '25년 대비 동일하게 요구
 - (산출) 175백만원
 - * 연수과정 운영: ('25년) 62 → ('26계획) 62백만원(12과제 × 5.1백만원)
 - * 사이버콘텐츠 및 시스템 유지: ('25년) 113 → ('26요구) 113백만원(1식 × 113백만원)
- ④ 정보자료실 운영: (2025 계획) 50→ (2026 계획) 50백만원, 전년동
- (요구) 정보자료실 운영을 위하여 '25년 대비 동일하게 요구
 - (산출) 50백만원
 - * 자료 구축 및 운영: ('25년) 50 → ('26계획) 50백만원(12월 × 4.2백만원)
- ⑤ EDI사이버연수원 유지관리: (2025 계획) 66→ (2026 계획) 66백만원, 전년동
- (요구) EDI사이버연수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25년 대비 동일하게 요구
 - (산출) 66백만원
 - * EDI사이버연수원 시스템 유지·관리: ('25년) 66 → ('26계획) 66백만원 (12월 × 5.5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518	○ 사업출연금 : 3,518백만원	3,737	○ 사업출연금 : 3,737백만원
	가. 장애인 고용 연구과제 수행 (505백만원)		가. 장애인 고용 연구과제 수행 (505백만원)
	· 기본과제 수행: 172백만원(12과제 × 14.3백만원)		· 기본과제 수행: 172백만원(12과제 × 14.3백만원)
	· 보급과제 제작: 12백만원(1과제 × 6,000원 × 2,000부)		· 보급과제 제작: 12백만원(1과제 × 6,000원 × 2,000부)
	· 장애인 고용정책 동향지 발간: 21백만원(6회 × 3.5백만원)		· 장애인 고용정책 동향지 발간: 21백만원(6회 × 3.5백만원)
	· 발달장애인 알기 쉬운 자료 개발 및 보급: 300백만원(2종 × 150백만원)		· 발달장애인 알기 쉬운 자료 개발 및 보급: 300백만원(2종 × 150백만원)
3,518	나. 통계조사 수행 (2,722백만원)	3,737	나. 통계조사 수행 (2,941백만원)
	· 장애인고용패널조사: 659백만원(1식 × 659백만원)		· 장애인고용패널조사: 758백만원(1식 × 758백만원)
	·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1,180백만원(2식 × 590백만원)		·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1,180백만원(2식 × 590백만원)
	·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567백만원(1식 × 567백만원)		·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687백만원(1식 × 687백만원)
	·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316백만원(1식 × 316백만원)		·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316백만원(1식 × 316백만원)
3,518	다. 전문인력 양성 교육연수 과정 (175백만원)	3,737	다. 전문인력 양성 교육연수 과정 (175백만원)
	· 연수과정 운영: 62백만원(12과정 × 5.1백만원)		· 연수과정 운영: 62백만원(12과정 × 5.1백만원)
	· 사이버콘텐츠 및 시스템 유지: 113백만원(1식 × 113백만원)		· 사이버콘텐츠 및 시스템 유지: 113백만원(1식 × 113백만원)
	라. 정보자료실 운영 (50백만원)		라. 정보자료실 운영 (50백만원)
	· 자료 구축 및 운영: 50백만원(12월 × 4.2백만원)		· 자료 구축 및 운영: 50백만원(12월 × 4.2백만원)
3,518	마. EDI사이버연수원 유지관리 (66백만원)	3,737	마. EDI사이버연수원 유지관리 (66백만원)
	· EDI사이버연수원 시스템 유지·관리: 66백만원 (12월 × 5.5백만원)		· EDI사이버연수원 시스템 유지·관리: 66백만원 (12월 × 5.5백만원)

4) 사업효과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 (단위: %)	목표	3.18	3.20	(삭제)	(삭제)	(삭제)	'24년 프로그램 성과지표 변경	-	-
	실적	3.19	3.24	-	-	-			
	달성도	100.3	101.3	-	-	-			
근로지원인 수혜장애인 비율 (단위: %)	목표	1.66	1.96	(삭제)	(삭제)	(삭제)	'24년 프로그램 성과지표 변경	-	-
	실적	1.89	2.07	-	-	-			
	달성도	113.86	105.6	-	-	-			
장애인 취업자 비율 (단위: %)	목표	-	(신규)	5.18	(삭제)	(삭제)	'25년 프로그램 성과지표 변경	-	-
	실적	-	-	6.17	-	-			
	달성도	-	-	119.1	-	-			
장애인고용률 (단위: %)	목표	-	-	(신규)	49.1	49.2	최근 5개년('20~'24) 평균(49.1%)의 의욕치 0.1%p 반영	(장애인 취업자 수 / 15세 이상 만 64세 이하 장애인 인구) × 1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실적	-	-	-	48.3	-			
	달성도	-	-	-	98.4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23개 연구과제 수행(정책연구 17과제, 직업영역개발 6과제) -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2회),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발달 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실시 - 전문인력양성교육 2,950명 및 사이버연수원교육 41,213명
2023	20개 연구과제 수행(고용연구 14과제, 현안연구 4과제, 위탁연구 2과제) -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2회),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발달 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실시 - 전문인력양성교육 3,430명 및 사이버연수원교육 29,058명
2024	20개 연구과제 수행(고용연구 13과제, 현안연구 7과제) -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2회),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발달 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실시 - 전문인력양성교육 3,601명 및 사이버연수원교육 23,833명
2025	16개 연구과제 수행(고용연구 11과제, 현안연구 5과제) -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2회),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발달 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실시 - 전문인력양성교육 3,991명 및 사이버연수원 27,752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용연구

- 국정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과제 추진으로 단기적·장기적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장애인 고용정책 방향 제시
-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3~'27) 수행에 필요한 사업개편 및 신규 사업 실시에 따른 효과성 분석

- 발달장애인의 직업정보, 취업사례 및 고용유지에 필요한 정보, 고용관련 법령 및 정책 등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 자기 결정을 통한 직업 선택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에 기여

○ 조사통계

- 장애인 노동시장의 기초통계자료(국가 4종 통계)를 구축함으로써 합리적인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수요자 맞춤형 통계서비스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장애인 고용 저변 확대 및 국민 신뢰 제고
- 주요 정책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보호자 및 당사자)의 실태와 욕구를 매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지원

○ 교육연수

- 장애인고용 교육연수원 설립을 통한 장애인고용 전문인력 양성 확대, 장애인 직무역량 강화교육 등 실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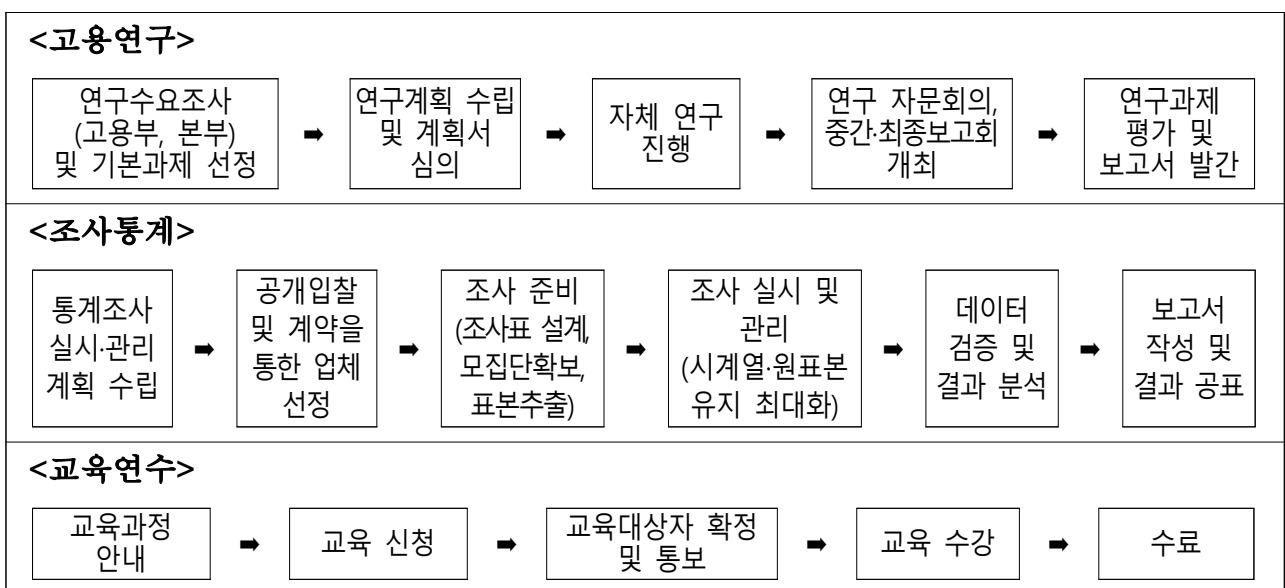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021~2027	10	-	5	-	-	270	285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지적사항)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 건립 사업관리 강화 필요("24회계연도 결산 환노위 검토보고서) (후속조치)설계공모 등 발주절차를 거쳐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 완료("25.10.28.)하였으며, 이후 사업추진 단계도 정상 진행중("24회계연도 결산 환노위 검토보고서)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3,982	-	3,982	3,982	3,982	100.0	100.0	-	-
2023	4,544	-	4,544	4,544	4,493	98.9	98.9	-	51
2024	3,844	-	3,844	3,844	3,844	100.0	100.0	-	-
2025	3,518	-	3,518	3,518	3,518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피출연기관의 집행잔액 18백만원 불용 - 피출연기관의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 건설예산 및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조사용역비 995백만원 이월
2023	- 출연금 미교부액 51백만원 불용 - 피출연기관의 집행잔액 29백만원 불용 - 피출연기관의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 공사비 1,413백만원과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잔금 100백만원 이월
2024	- 피출연기관의 집행잔액 44백만원 불용 - 피출연기관의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 공사비 1,287백만원과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잔금 80백만원 이월
2025	- 피출연기관의 집행잔액 21백만원 불용 - 피출연기관의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 공사비 1,189백만원과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잔금 76백만원 이월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해당없음

사 업 명						
(12) 장애인인식개선지원(1459-32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및 직업재활기금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59	327
명칭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고용연구 및 인식개선	장애인인식개선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장애인인식개선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장애인 인식개선지원	5,756	5,064	5,064	4,808	4,808	△256	△5.1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 말)						2026 계 획
	계 획 액 (수 정)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이 월 액	불 용 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이 월 액	불 용 액	
						당 초	수 정					
○ 기능별 분류(합계)	5,764 (5,764)	5,764	5,756	-	8	5,064	5,064	5,064	5,064	-	-	4,808
· 장애인 인식 개선 지원	5,764 (5,764)	5,764	5,756	-	8	5,064	5,064	5,064	5,064	-	-	4,80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목적)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
- (내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18.5.29)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의 교육 의무 이행지원을 위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제5조의3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의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다.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①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

야 하며,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피교육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2000. 장애인에 대한 사회 전반의 편견 제거를 통한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
- 2007.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의무 등 법 조항 신설
- 2008. 사업주, 인사담당자 등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 2015.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명단공표 해소 필수요건으로 인식개선 교육 의무 실시
- 201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사업으로 전환(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지원 사업 수탁 수행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지원 교육 의무 법률 근거 마련(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 2018.05.2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시행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019. 사업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를 지원하여 사업주 부담 감경과 장애인 강사 활성화를 위해 「교육 강사 지원 사업」 시작
- 2020.06.09.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도록 법률 근거 마련
- 2021.06.29. 사업주의 교육 실시 결과 제출 의무 및 교육 증빙자료 보관 의무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근거 마련
- 2024. 국민디자인단 구성 “우리 회사 베프(Barrier Free)” 교육 로드맵 재설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0~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975	4,815	5,764	5,064	4,80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장애인 인식개선지원	출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4,708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제71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장애인인식개선지원 : (2025 계획) 5,064백만원 → (2026 계획) 4,808백만원, 256백만원 감액

- (요구) 사업주 및 근로자의 교육 의무 이행지원을 위한 강사 양성 및 이러닝 학습시스템 운영 등 교육인프라 운영, 무료 교육 강사 지원 및 장애인 체육팀 운영을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① 장애인인식개선지원(민간위탁) : ('25) 2,512백만원 → ('26) 2,162백만원, △13.9%

('25) 문화체험형 교육 위탁사업 1식×2,162백만원+일반형 교육 위탁사업 2종×175백만원(2025년)

→ ('26) 문화체험형 교육 위탁사업 1식×2,162백만원, 일반형 교육 위탁사업 폐지 (350백만원 감액)

② 강사지원사업 : ('25) 1,000백만원 → ('26) 1,000백만원, 전년 동

('25) 10,000개소×100,000원 = 1,000백만원 → ('26) 10,000개소×100,000원 = 1,000백만원

③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 ('25) 1,552백만원 → ('26) 1,646백만원, +6.1%

■ 인식개선교육 강사양성 ('25) 170백만원=전문강사 양성 10회×12백만원+보수교육 10회×5백만원

→ ('26) 254백만원= 전문강사 양성 10회×12백만원+보수교육 10회×5백만원+역량강화교육 4회×21백만원 (84백만원 증액)

* 일반형 민간위탁지원금 폐지에 따른 '강사 역량강화'교육 대체 신설

■ 인식개선 사업운영비 ('25) 110백만원 = 1식×110백만원 → ('26) 110백만원 (전년 동)

■ 비대면 시스템 운영 ('25) 78백만원 = 12개월×6.5백만원 → ('26) 78백만원 (전년 동)

■ 교육의무이행 홍보 ('25) 466백만원 = 1식×466백만원 → ('26) 466백만원 (전년 동)

■ 교육 콘텐츠 개발 ('25) 227백만원 = 1식×227백만원 → ('26) 227백만원 (전년 동)

■ 교육포털 유지 관리 ('25) 123백만원 = 1식×123백만원 → ('26) 123백만원 (전년 동)

■ 장애인 체육팀 운영비 ('25) 378백만원 = 인건비 283백만원+운영비 95백만원 → ('26) 388백만원 = 인건비 293백만원 +운영비 95백만원 (10백만원 증액)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064	○ 일반수용비(210-01) : 100,000천원 가. 교육의무 홍보 등(100백만원) · 1식×100백만원=100백만원 ○ 사업출연금 : 4,964,000천원	4,808	○ 일반수용비(210-01) : 100,000천원 가. 교육의무 홍보 등(100백만원) · 1식×100백만원=100백만원 ○ 사업출연금 : 4,708,000천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가. 장애인인식개선지원(민간위탁)(2,512백만원) · 1식 × 2,512백만원 = 2,512백만원 나. 강사 양성 운영(170백만원) · 전문강사 양성 10회 × 12백만원 = 120백만원 · 보수교육 운영 10회 × 5백만원 = 50백만원 다. 교육 강사 지원(1,000백만원) · 10,000개소 × 지원금 100,000원 = 1,000백만원 라. 교육의무 홍보(366백만원) · 1식 × 366백만원 = 366백만원 마. 사업운영비(110백만원) · 1식 × 110백만원 = 110백만원 바. 교육콘텐츠 제작(227백만원) · 1식 × 227백만원 = 227백만원 사. 교육포털 유지관리(123백만원) · 1식 × 123백만원 = 123백만원 아. 비대면 교육 시스템 운영(78백만원) · 12개월 × 6.5백만원 = 78백만원 자. 장애인 체육팀 운영(378백만원) · 인건비 3,930천원 × 6명 × 12개월 + 운영비 1식 × 95,000천원 = 378백만원		가. 장애인인식개선지원(민간위탁)(2,162백만원) · 1식 × 2,162백만원 = 2,162백만원 나. 강사 양성 운영(254백만원) · 전문강사 양성 10회 × 12백만원 = 120백만원 · 보수교육 운영 10회 × 5백만원 = 50백만원 · 역량강화교육 운영 4회 × 21백만원 = 84백만원 다. 교육 강사 지원(1,000백만원) · 10,000개소 × 지원금 100,000원 = 1,000백만원 라. 교육의무 홍보(366백만원) · 1식 × 366백만원 = 366백만원 마. 사업운영비(110백만원) · 1식 × 110백만원 = 110백만원 바. 교육콘텐츠 제작(227백만원) · 1식 × 227백만원 = 227백만원 사. 교육포털 유지관리(123백만원) · 1식 × 123백만원 = 123백만원 아. 비대면 교육 시스템 운영(78백만원) · 12개월 × 6.5백만원 = 78백만원 자. 장애인 체육팀 운영(388백만원) · 인건비 4,069천원 × 6명 × 12개월 + 운영비 1식 × 95,000천원 = 38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추정산식 (또는 추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 (단위: %)	목표	3.18	3.20	(삭제)	(삭제)	(삭제)	'24년 프로그램 성과지표 변경	-	-
	실적	3.19	3.24	-	-	-			
	달성도	100.3	101.3	-	-	-			
근로지원인 수혜장애인 비율 (단위: %)	목표	1.66	1.96	(삭제)	(삭제)	(삭제)	'24년 프로그램 성과지표 변경	-	-
	실적	1.89	2.07	-	-	-			
	달성도	113.86	105.6	-	-	-			
장애인 취업자 비율 (단위: %)	목표	-	(신규)	5.18	(삭제)	(삭제)	'25년 프로그램 성과지표 변경	-	-
	실적	-	-	6.17	-	-			
	달성도	-	-	119.1	-	-			
장애인고용률 (단위: %)	목표	-	-	(신규)	49.1	49.2	최근 5개년('20~'24) 평균(49.1%)의 의욕치 0.1%p 반영	(장애인 취업자 수 / 15세 이상 만 64세 이하 장애인 인구) × 1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실적	-	-	-	48.3	-			
	달성도	-	-	-	98.4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인식개선 교육 강사 양성 : 1,156명(장애인 118명) ○ 강사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수료 442명 ○ 교육기관 지정 : 54개소(장애인 단체 28개소) ○ 인식개선 민간위탁 지원 : 11개 기관 13개 분야 - 교육 홍보, 교육모니터링, 강의 스کیل업, 교육 콘텐츠 발굴 및 개발, 지역 컨퍼런스 개최, 문화·체험형 인식개선 지원
------	--

	○ 무료 교육 강사 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지원(17개시도 136개 기관) - 사업장에 대한 무료 강사 지원: 11,999개소 ○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교육 콘텐츠(통합콘텐츠 포함) 공동 활용 4개 기관 327,887건 * 경기도, 서울특별시, 중앙교육연수원, 보건복지인재원 - 교육용 콘텐츠 16종, 교육 홍보용 콘텐츠 4종 개발·보급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이러닝 시스템 구축
2023	○ 인식개선 교육 강사 양성 : 696명(장애인 95명) ○ 강사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수료 886명 ○ 교육기관 지정 : 49개소(장애인 단체 17개소) ○ 인식개선 민간위탁 지원 : 11개 기관 13개 분야 - 교육 홍보, 교육모니터링, 강의 스킬업, 교육 콘텐츠 발굴 및 개발, 지역 컨퍼런스 개최, 문화·체험형 인식개선 교육 지원 ○ 무료 교육 강사 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지원(17개시도 137개 기관) - 사업장에 대한 무료 강사 지원: 11,988개소 ○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교육 콘텐츠(10종) 개발, 교육포털 및 이러닝시스템 통한 보급(119,721건) - 교육 콘텐츠(통합콘텐츠 포함) 공동 활용 5개 기관 지정·운영(593,161건) * 경기도, 서울특별시, 중앙교육연수원, 보건복지인재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이러닝 시스템 구축 및 운영('16,201명 수료)
2024	○ 인식개선 교육 강사 양성 : 547명(장애인 68명) ○ 강사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수료 1,024명 ○ 교육기관 지정 : 54개소(장애인 단체 20개소) ○ 인식개선 민간위탁 지원 : 5종 13개소 - 교육 홍보, 강사활동지원, 연구·개발, 지역맞춤형 캠페인, 문화·체험형 인식개선 교육 ○ 무료 교육 강사 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지원(17개시도 139개 기관) - 사업장에 대한 무료 강사 지원: 12,000개소 ○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교육 콘텐츠(통합콘텐츠 포함) 공동 활용 5개 기관 지정·운영 * 경기도, 서울특별시, 중앙교육연수원, 보건복지인재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이러닝 시스템 운영(29,311명 이용)
2025	○ 인식개선 교육 강사 양성 : 540명(장애인 57명) ○ 강사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수료 1,230명 (장애인 309명) ○ 교육기관 지정 : 39개소(장애인 단체 7개소) ○ 인식개선 민간위탁 지원 : 3종 15개소 - 교육 홍보, 강사활동지원, 문화체험형 인식개선 교육 ○ 무료 교육 강사 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지원(17개시도 126개 기관) - 사업장에 대한 무료 강사 지원: 9,995개소 ○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교육 콘텐츠(통합콘텐츠 포함) 공동 활용 5개 기관 지정·운영 * 경기도, 서울특별시, 중앙교육연수원, 보건복지인재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이러닝 시스템 운영(38,039명 이용)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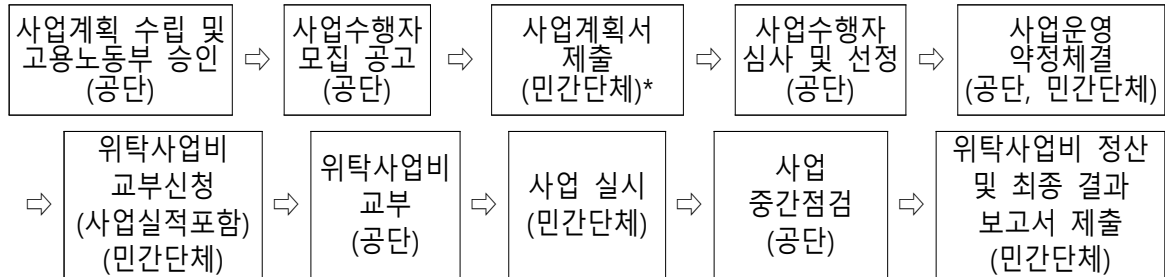
- 의무 이행 홍보,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교육 강사 지원 및 교육 이행지도 등을 통해 효과적인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실시로 직장 내 장애친화적 환경조성 및 장애인 고용률 향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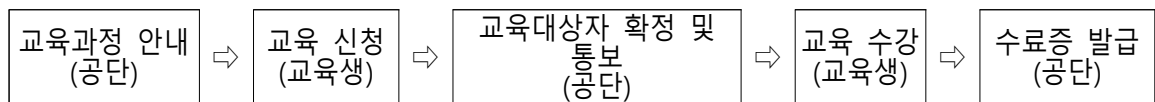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① 장애인인식개선지원(민간위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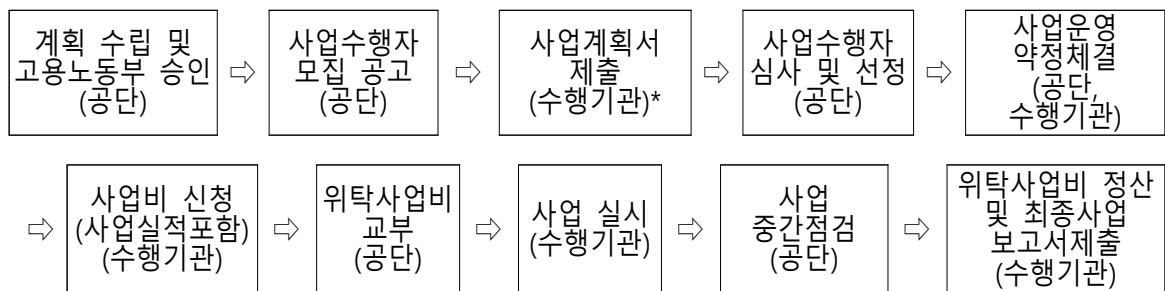


*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15개소 지정·사업위탁
(강사 활동 지원 등 교육지원사업 2개소, 문화·체험형교육 13개소)

② 강사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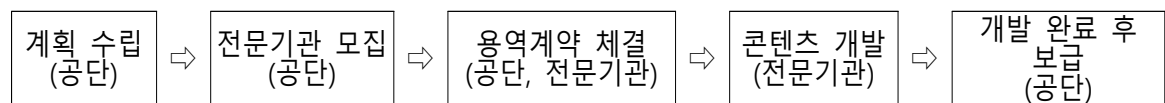


③ 교육 강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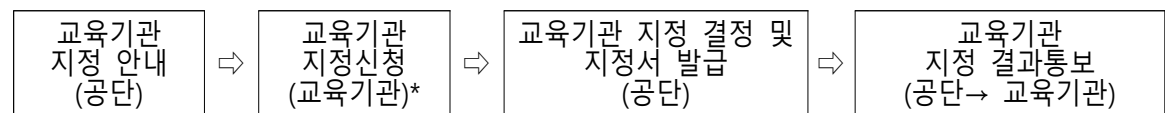


* 비영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지정 교육기관('25년 126개소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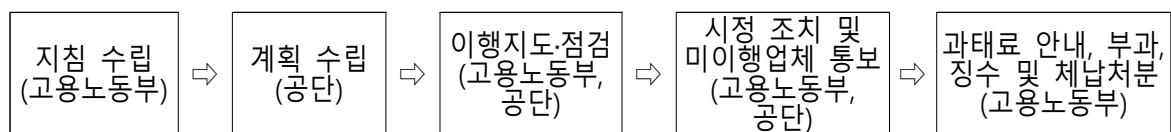
④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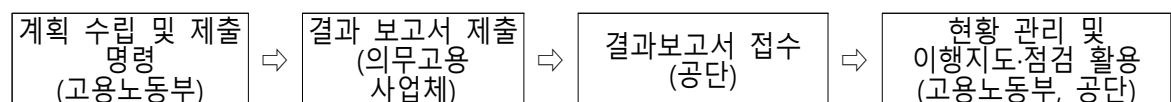
⑤ 교육기관 지정



⑥ 교육 이행지도·점검



⑦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23년 재정사업자율평가) : '보통' 등급 획득
- ('24년 재정사업자율평가) : '미흡' 등급 획득
- ('25년 재정사업자율평가) : '우수' 등급 획득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4,975	-	4,975	4,975	4,975	100.0	100.0	-	-
2023	4,815	-	4,815	4,815	4,782	99.3	99.3	-	33
2024	5,764	-	5,764	5,764	5,756	99.8	99.8	-	8
2025	5,064	-	5,064	5,064	5,064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피출연기관의 집행잔액 63백만원 불용
2023	- 출연금 미교부액 33백만원 불용 및 피출연기관의 집행잔액 57백만원 불용
2024	- 집행잔액 8백만원 불용 및 피출연기관의 집행잔액 75백만원 불용
2025	- 피출연기관의 집행잔액 60백만원 불용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13) 장애인고용증진용자(용자)(1462-33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	080	08D
명칭	및 직업재활기금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62	330
명칭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고용증진용자(용자)	장애인고용증진용자(용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장애인고용 증진용자(용자)	소관부처	실·국·과(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장애인고용 증진용자(용자)	630	1,072	1,072	1,232	1,232	160	14.9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630 (630)	630	630	-	-	1,072	1,072	1,072	977	-	95	1,232
· 장애인고용증진용 자(용자)	630 (630)	630	630	-	-	1,072	1,072	1,072	977	-	95	1,23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장애인고용증진용자(용자))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필요한 작업시설, 편의시설 등의 구입·설치·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여 장애인고용에 따른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근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촉진을 도모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1조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용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설치·수리 등에 드는 비용

② 추진경위

- 1992.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사업 실시
- 2005. '07년부터 장애인기금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재원 이관
- 2014. 용자방식을 대하방식에서 이차보전방식으로 변경
 - * 4% 이차보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2017. 용자방식을 이차보전방식에서 대하방식으로 변경
 - * 대출금리 1%,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2019. 고용보험기금에서 장애인기금으로 재원 이관
- 2023. 용자방식을 대하방식에서 이차보전방식으로 변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92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025	304	630	1,072	1,232

- 기타: '24년 42개소 지원, '25년 43개소 목표로 지원 중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용자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장애인고용증진 용자(용자)	용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232	100.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1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장애인고용증진용자(용자) : (2025 계획) 1,072백만원 → (2026 계획) 1,232백만원, 160백만원 증액

- (요구) 26년도 신규 지원 및 '23년 지원방식 변경 이후 이차보전 지원 대상 용자금이 누적됨에 따라 '23~'25년도 기지원분에 대한 이차보전금 요구
- (산출) 1,233백만원(① 신규 지원 158백만원 + ② 기지원('23~'25년분) 1,074백만원)
 - ① '26년 신규: 9,025백만원(용자총액) × 5%(이차보전금리) × 35%(평균용자실행률)=158백만원
 - * 연평균 용자실행률: 최근 3개년('22~'24년) 월별 용자실행률의 평균값으로 산출
 - ② '23~'25년 기지원: 21,489백만원*(용자잔액) × 5%(이차보전금리)=1,074백만원
 - * ('23~'25년 용자총액) 27,101 - ('25년 상환 및 '26년 상환예정액) 5,612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72	< 이차보전금 1,072백만원 > 가. '23년 기지원 용자액 이차보전금: 9,198백만원×5%=460백만원 나. '24년 기지원 용자액 이차보전금: 9,025백만원×5%=450백만원 다. '25년 신규 용자액 이차보전금: 9,025백만원×36%(평균 용자 실행률)×5%=162백만원	1,232	< 이차보전금 1,232백만원 > 가. '23년 기지원 용자액 이차보전금: 4,874백만원×5%=244백만원 나. '24년 기지원 용자액 이차보전금: 7,590백만원×5%=380백만원 다. '25년 기지원 용자액 이차보전금: 9,025백만원×5%=450백만원 라. '26년 신규 용자액 이차보전금: 9,025백만원×35%(평균 용자 실행률)×5%=15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 (단위: %)	목표	3.18	3.20	(삭제)	(삭제)	(삭제)	'24년 프로그램 성과지표 변경	-	-
	실적	3.19	3.24	-	-	-			
	달성도	100.3	101.3	-	-	-			
근로지원인 수혜장애인 비율 (단위: %)	목표	1.66	1.96	(삭제)	(삭제)	(삭제)	'24년 프로그램 성과지표 변경	-	-
	실적	1.89	2.07	-	-	-			
	달성도	113.86	105.6	-	-	-			
장애인 취업자 비율 (단위: %)	목표	-	(신규)	5.18	(삭제)	(삭제)	'25년 프로그램 성과지표 변경	-	-
	실적	-	-	6.17	-	-			
	달성도	-	-	119.1	-	-			
장애인고용률 (단위: %)	목표	-	-	(신규)	49.1	49.2	최근 5개년('20~'24) 평균(49.1%)의 의욕치 0.1%p 반영	(장애인 취업자 수 / 15세 이상 만 64세 이하 장애인 인구) × 1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실적	-	-	-	48.3	-			
	달성도	-	-	-	98.4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40개소 지원
2023	38개소 지원
2024	42개소 지원
2025	43개소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작업시설·부대시설·편의시설 등의 구입·설치·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여 장애인고용 촉진 및 고용유지도모(43개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장애인고용증진융자(융자)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 '23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비대상
 - '24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보통' 등급
 - '25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보통' 등급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9,025	-	9,025	9,025	8,811	97.6	97.6	-	214
2023	304	-	304	304	142	46.7	46.7	-	162
2024	630	-	630	630	630	100.0	100.0	-	-
2025	1,072	-	1,072	1,072	977	91.1	91.1	-	9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집행잔액 214백만원 불용(담보물권 미흡)
2023	- 집행잔액 162백만원 불용(사업개시 지연)
2024	- 해당사항 없음
2025	- 집행잔액 95백만원 불용(사후취소 및 금리인하)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14) 장애인고용정보화(정보화)(1466-24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고용노동부	통합정책고용국		080	08D
명칭	및 직업재활기금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66	240
명칭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고용정보화	장애인고용정보화(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장애인고용 정보화(정보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장애인고용 정보화(정보화)	5,053	4,153	4,153	4,530	4,530	377	9.1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5,053 (5,053)	5,053	5,053	-	-	4,153	4,153	4,153	4,153	-	-	4,530
· 장애인고용정보화(정보화)	5,053 (5,053)	5,053	5,053	-	-	4,153	4,153	4,153	4,153	-	-	4,5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장애인고용정보화(정보화)) 장애인고용정보화를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장애인 고용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장애인 및 사업주 등 대국민의 업무편의 증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6조, 제43조

제16조(취업알선기관 간의 연계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재활실시기관 간에 구인·구직 정보의 교류와 장애인 근로자 관리 등의 효율적인 연계를 꾀하고,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의 조치를 강구할 때에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조사·연구 8.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알선 기관 사이의 취업알선전산망 구축·관리, 홍보·교육 및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관련 사업 9.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 사이의 업무 연계 및 지원
--

② 추진경위

- 1993. 취업알선관리시스템(text) 구축·운영
- 1998. 인터넷홈페이지 구축·운영,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1999. 전산실 개선(신규전산장비 도입 및 LAN구축) 운영
- 2000. 취업알선(C/S), 기금관리시스템(Web)구축·운영
- 2001. 학사관리시스템(Web), 그룹웨어 구축·운영
- 2002. 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 등 4종 시스템 Web 구축·운영
- 2003. 보안시스템 구축·운영 및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2004. 장애인 고용정보시스템 등 8종 전산시스템 운영
- 2005. 장애인 고용정보시스템 189개 유관기관과 정보연계
- 2006. 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 등 8종 전산시스템 운영
- 2007. 원스톱 업무통합시스템(EP) 운영
- 2011. 장애인고용 통합업무시스템 구축·운영
- 2012. 재무예산시스템 Web 구축 및 개인정보보호체계 강화·구축
- 2013. 정보보호 강화(APT 공격대응),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2014. 전산인프라 개선사업(DB서버 교체 등)
- 2015. 정보보안 강화사업(본부·고용개발원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 2016. 전사포털 구축 및 보안장비 고도화 사업
- 2017. 정보보안 인프라 개선, 노후 서버 교체 및 백업시스템 개선
- 2018. 전산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 사업
- 2019. 정보보안 강화 및 운영환경 개선 사업
- 2020. 정보보호시스템 및 백업인프라 개선 사업
- 2021. 정보시스템 인프라 개선 사업
- 2022. 네트워크 망 분리 1차
- 2023. 정보보안 및 전산장비 강화사업(네트워크 망 분리 2차)
- 2024. 노후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강화 사업(네트워크 망 분리 3차)
- 2025. 정보인프라 고도화 사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91~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526	4,815	5,053	4,153	4,53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장애인, 사업주, 공단 및 유관기관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장애인고용 정보화(정보화)	출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4,530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6조 및 제43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장애인고용정보화(정보화) : (2025 계획) 4,153백만원 → (2026 계획) 4,530백만원, 377백만원 증액

- (요구) 사업주 전자신고(청),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및 전산시설장비 유지보수 비용, 본부-소속 기관 간 통신회선 비용 등 장애인고용정보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운영 예산 요구
- (산출)
 - 회선사용료 : ('25) 1,055백만원 → ('26) 1,055백만원(전년동)
 - 시스템 유지보수 : ('25) 1,152백만원 → ('26) 1,242백만원(증 90백만원)
 - 전산관리 상용직 보수 : ('25) 240백만원 → ('26) 240백만원(전년동)
 - 전산장비 임차료 : ('25) 593백만원 → ('26) 593백만원(전년동)
 -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 ('25) 20백만원 → ('26) 20백만원(전년동)
 - 장애인통합서비스 디지털플랫폼 구축 BPR/ISP 수립 : ('25) 0백만원 → ('26) 311백만원(순증)
 - 노후 시스템 교체 : ('25) 746백만원 → ('26) 722백만원(감 24백만원)
 - 사무용 전산장비 교체 : ('25) 131백만원 → ('26) 131백만원(전년동)
 - 상용SW 이용료 : ('25) 216백만원 → ('26) 216백만원(전년동)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153	○ 사업출연금(350-02) : 4,153,000천원 가. 장애인고용전산망 운영 : 4,153백만원 1) 회선사용료(1,055백만원) ·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51개소×1.48백만원×12개월=905백만원 · 인터넷회선 등 사용료 12.5백만원×12개월=150백만원 2) 시스템 유지보수(1,152백만원) · 개발SW 유지보수 3,811백만원×9.8%=373백만원 · 상용SW 유지보수 5,012백만원×8.06%=404백만원 · HW 유지보수 8,152백만원×4.6%=375백만원 3) 전산관리 상용직 보수(240백만원) · 4명×5백만원×12개월=240백만원 4) 전산장비 임차료(593백만원) · 1식×593백만원=593백만원 5) 정보시스템 기능개선(20백만원) · 36FP×0.55백만원=20백만원 6) 노후 시스템 교체(746백만원) · 1식×746백만원=746백만원 7) 사무용 전산장비 등 도입(131백만원) · 93대×1.10백만원+10대×1.23백만원+25대×0.67백만원=131백만원 8) 상용SW 이용료(216백만원) · 한글 ALA 370명×0.101백만원=37백만원 · 백신 등 보안SW 800명×0.117백만원=94백만원 · MS오피스 Gas 325명×0.262백만원=85백만원	4,530	○ 사업출연금(350-02) : 4,530,000천원 가. 장애인고용전산망 운영 : 4,530백만원 1) 회선사용료(1,055백만원) ·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51개소×1.48백만원×12개월=905백만원 · 인터넷회선 등 사용료 12.5백만원×12개월=150백만원 2) 시스템 유지보수(1,242백만원) · 개발SW 유지보수 3,811백만원×9.8%=373백만원 · 상용SW 유지보수 5,705백만원×8.06%=460백만원 · HW 유지보수 8,856백만원×4.6%=409백만원 3) 전산관리 상용직 보수(240백만원) · 4명×5백만원×12개월=240백만원 4) 전산장비 임차료(593백만원) · 1식×593백만원=593백만원 5) 정보시스템 기능개선(20백만원) · 36FP×0.55백만원=20백만원 6) 장애인통합서비스 디지털플랫폼 구축 BPR/ISP 수립(311백만원) · 1식×311백만원=311백만원 7) 노후 시스템 교체(722백만원) · 1식×722백만원=722백만원 8) 사무용 전산장비 등 도입(131백만원) · 93대×1.10백만원+10대×1.23백만원+25대×0.67백만원=131백만원 9) 상용SW 이용료(216백만원) · 한글 ALA 370명×0.101백만원=37백만원 · 백신 등 보안SW 800명×0.117백만원=94백만원 · MS오피스 Gas 325명×0.262백만원=8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 (단위: %)	목표	3.18	3.20	(삭제)	(삭제)	(삭제)	'24년 프로그램 성과지표 변경	-	-
	실적	3.19	3.24	-	-	-			
	달성도	100.3	101.3	-	-	-			
근로지원인 수혜장애인 비율 (단위: %)	목표	1.66	1.96	(삭제)	(삭제)	(삭제)	'24년 프로그램 성과지표 변경	-	-
	실적	1.89	2.07	-	-	-			
	달성도	113.86	105.6	-	-	-			
장애인 취업자 비율 (단위: %)	목표	-	(신규)	5.18	(삭제)	(삭제)	'25년 프로그램 성과지표 변경	-	-
	실적	-	-	6.17	-	-			
	달성도	-	-	119.1	-	-			
장애인고용률 (단위: %)	목표	-	-	(신규)	49.1	49.2	최근 5개년('20~'24) 평균(49.1%)의 의욕치 0.1%p 반영	(장애인 취업자 수 / 15세 이상 만 64세 이하 장애인 인구) × 1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실적	-	-	-	48.3	-			
	달성도	-	-	-	98.4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본부, 고용개발원, 5개 직업능력개발원, 22개 지역본부·지사, 1개 보조공학센터 등 본부-소속기관 간 장애인고용전산망 운영 ▪ 전자신고 신고(청) 시스템 운영
2023	▪ 본부, 고용개발원, 5개 직업능력개발원, 22개 지역본부·지사, 1개 보조공학센터 등 본부-소속기관 간 장애인고용전산망 운영 ▪ 전자신고 신고(청) 시스템 운영
2024	▪ 본부, 고용개발원, 6개 직업능력개발원, 23개 지역본부·지사, 1개 보조공학센터 등 본부-소속기관 간 장애인고용전산망 운영 ▪ 전자신고 신고(청) 시스템 운영
2025	▪ 본부, 고용개발원, 6개 직업능력개발원, 23개 지역본부·지사, 1개 보조공학센터 등 본부-소속기관 간 장애인고용전산망 운영 ▪ 전자신고 신고(청) 시스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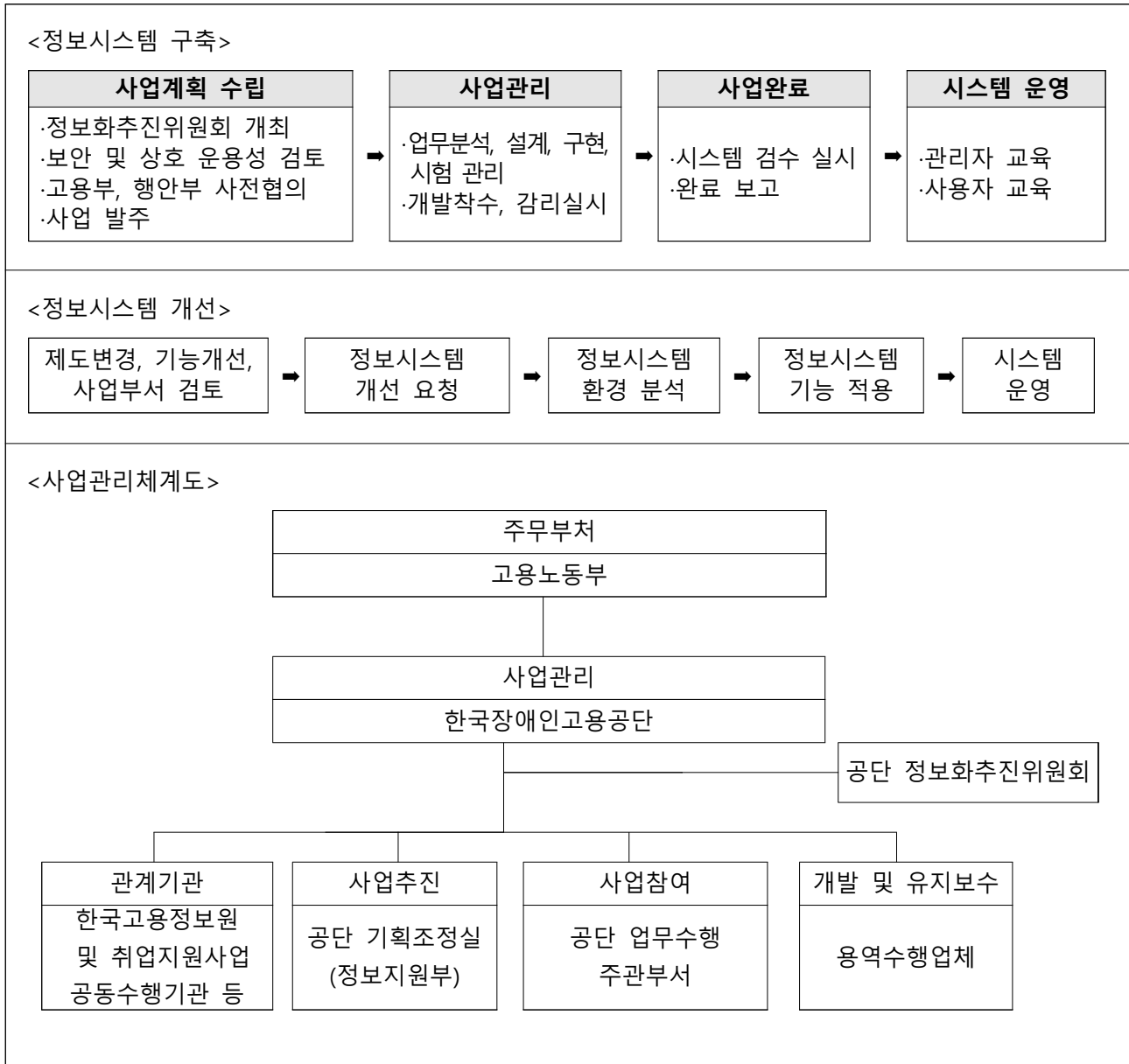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 등 47종의 정보 시스템 운영, 보건복지부 등 22개 기관 70종의 연계 정보를 제공하여 공단↔유관 기관 간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지원
- 장애인 고용사업체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 신고(고) 환경 조성으로 기업의 장애인고용 활성화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23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통' 등급
- '24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통' 등급
- '2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통' 등급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4,526	-	4,526	4,526	4,526	100.0	100.0	-	-
2023	4,815	-	4,815	4,815	4,669	97.0	97.0	-	146
2024	5,053	-	5,053	5,053	5,053	100.0	100.0	-	-
2025	4,153	-	4,153	4,153	4,153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피출연기관의 집행잔액 1백만원 불용
2023	- 미교부액 146백만원 및 피출연기관의 집행잔액 48백만원 불용
2024	- 피출연기관의 집행잔액 71백만원 불용
2025	- 피출연기관의 집행잔액 67백만원 불용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15) 기금관리비(인건비)(7079-1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및 직업재활기금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9	11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장애인고용촉진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인건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금관리비 (인건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통합고용정책국
	사업시행주체	장애인고용과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금관리비 (인건비)	83	98	98	107	107	9	9.2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97 (97)	97	83	-	14	98	98	98	85	-	13	107
· 기금관리비(인건비)	97 (97)	97	83	-	14	98	98	98	85	-	13	10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한 기금관리원 인건비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1조

제7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지급에 사용한다.

1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 수행에 따르는 경비

- ② 추진경위

- 199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수입·지출 관리원이 필요하여 운영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91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7	132	97	98	107

-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관리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기금관리비(인건비) : (2025 계획) 98만원 → (2026 계획) 107백만원, 9백만원 증액

- (요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기금관리원 인건비(2명) 요구
- (산출) 기금관리원 인건비 89백만원
기금관리원 고용부담금 18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8	○ 상용임금(110-03) : 81,617천원	107	○ 상용임금(110-03) : 89,000천원
	가. 기금관리원(2명) (81,617천원)		가. 기금관리원(2명) (89,000천원)
	· 기본급 및 초과근무수당 등: 3,400.7천원×12월×2명=81,617천원		· 기본급 및 초과근무수당 등: 3,708천원×12월×2명=89,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16,383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18,000천원
	가. 기금관리원(2명) (16,383천원)		가. 기금관리원(2명) (18,000천원)
	· 사회보험료 및 퇴직금 682.6천원×12월×2명=16,383천원		· 사회보험료 및 퇴직금 750천원×12월×2명=18,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기금관리원(2명) 인건비 79백만원 지급
2023	· 기금관리원(2명) 인건비 124백만원 지급
2024	· 기금관리원(2명) 인건비 83백만원 지급
2025	· 기금관리원(2명) 인건비 85백만원 지급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원활한 운용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매월 급여 지급일에 급여 및 초과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 대외공개 평가
-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87	-	87	87	79	90.8	90.8	-	8
2023	132	-	132	132	124	93.9	93.9	-	8
2024	97	-	97	97	83	85.6	85.6	-	14
2025	98	-	98	98	85	86.7	86.7	-	1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기금관리원 4대보험 등 고용부담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1백만원 자체변경 - 집행잔액 8백만원 불용
2023	- 집행잔액 8백만원 불용
2024	- 집행잔액 14백만원 불용
2025	- 집행잔액 13백만원 불용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16) 장애인고용공단 인건비(7079-12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및 직업재활기금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9	12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장애인고용촉진기금운영비	장애인고용공단 인건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장애인고용공단 인건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장애인고용공단 인건비	72,058	74,526	74,526	77,926	77,926	3,400	4.6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72,058 (72,058)	72,058	72,058	-	-	74,526	74,526	74,526	74,526	-	-	77,926
· 장애인고용공단 인건비	72,058 (72,058)	72,058	72,058	-	-	74,526	74,526	74,526	74,526	-	-	77,92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운영을 위한 임직원 인건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제71조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7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지급에 사용한다.

1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 수행에 따르는 경비

② 추진경위

- 1990.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90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6,529	69,795	72,058	74,526	77,92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장애인고용공단 인건비	출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77,926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및 제71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장애인고용공단 인건비 : (2025 계획) 74,526백만원 → (2026 계획) 77,926백만원, 3,400백만원 증액

- (요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운영을 위한 임직원(1,105명) 인건비 예산 요구
- (산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 인건비 77,926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4,526	○ 기관운영출연금(350-01) : 74,526,000천원 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건비(정원 1,082명) (74,526,000천원)	77,926	○ 기관운영출연금(350-01) : 77,926,000천원 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건비(정원 1,105명) (77,926,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 인건비 66,529백만원 지급
2023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 인건비 69,795백만원 지급
202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 인건비 72,058백만원 지급
2025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 인건비 74,526백만원 지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원활한 추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매월 출연금 교부신청(공단) → 출연금 지급(고용노동부) → 인건비 지급(공단)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고용노동부 (77,926백만원)	=> (77,926백만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77,926백만원)	-	-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 대외공개 평가
-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66,529	-	66,529	66,529	66,529	100.0	100.0	-	-
2023	69,795	-	69,795	69,795	69,795	100.0	100.0	-	-
2024	72,058	-	72,058	72,058	72,058	100.0	100.0	-	-
2025	74,526	-	74,526	74,526	74,526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피출연기관 정·현원 차이로 인한 집행잔액 551백만원
2023	- 피출연기관 정·현원 차이로 인한 집행잔액 14백만원
2024	- 피출연기관 정·현원 차이로 인한 집행잔액 453백만원
2025	- 피출연기관 정·현원 차이로 인한 집행잔액 355백만원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17) 기금관리비(기타경비)(7079-2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및 직업재활기금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9	21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장애인고용촉진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기타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통합고용정책국
	사업시행주체	장애인고용과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중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170	171	171	171	171	-	-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71 (171)	171	170	-	1	171	171	171	167	-	4	171
· 기금관리비(기타경비)	171 (171)	171	170	-	1	171	171	171	167	-	4	17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경상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1조

제7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지급에 사용한다.

1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 수행에 따르는 경비

- ② 추진경위

- 199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경상경비 지원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91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0	179	171	171	171

-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기금관리비(기타경비) : (2025 계획) 171백만원 → (2026 계획) 171백만원, 전년동

- (요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경상경비 요구
- (산출)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171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71	○ 일반수용비(210-01) : 95,179천원 가. 결산서, 기금운용계획 등 각종 인쇄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37,000천원) 나. 위원회 등 회의수당 및 서면심의 수당 (25,479천원) 다. 업무위탁대가 및 수수료 (32,7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6,000천원 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서 작성 등 (6,000천원) ○ 임차료(210-07) : 5,978천원 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등 회의장소 임차 (5,978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1,400천원 가. 기금관리원 2명 맞춤형 복지지원 및 기타복지증진비 (1,400천원) ○ 국내여비(220-01) : 4,555천원 가. 기금업무 관련 출장 (4,555천원) ○ 업무추진비(240-01) : 7,888천원 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개최 등 (7,888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50,000천원 가. 일반연구비 (50,000천원)	171	○ 일반수용비(210-01) : 95,179천원 가. 결산서, 기금운용계획 등 각종 인쇄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37,000천원) 나. 위원회 등 회의수당 및 서면심의 수당 (25,479천원) 다. 업무위탁대가 및 수수료 (32,7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6,000천원 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서 작성 등 (6,000천원) ○ 임차료(210-07) : 5,978천원 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등 회의장소 임차 (5,978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1,400천원 가. 기금관리원 2명 맞춤형 복지지원 및 기타복지증진비 (1,400천원) ○ 국내여비(220-01) : 4,555천원 가. 기금업무 관련 출장 (4,555천원) ○ 업무추진비(240-01) : 7,888천원 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개최 등 (7,888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50,000천원 가. 일반연구비 (5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기금관리비(기타경비) 141백만원 집행
2023	▪ 기금관리비(기타경비) 174백만원 집행
2024	▪ 기금관리비(기타경비) 170백만원 집행
2025	▪ 기금관리비(기타경비) 167백만원 집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지출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 대외공개 평가
-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50	-	150	150	141	94.0	94.0	-	9
2023	179	-	179	179	174	97.2	97.2	-	5
2024	171	-	171	171	170	99.4	99.4	-	1
2025	171	-	171	171	167	97.6	97.6	-	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집행잔액 9백만원 불용
2023	- 집행잔액 5백만원 불용
2024	- 집행잔액 1백만원 불용
2025	- 집행잔액 4백만원 불용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18) 장애인고용공단 사업운영비(7079-22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및 직업재활기금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9	22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장애인고용촉진기금운영비	장애인고용공단 사업운영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장애인고용공단 사업운영비	실·국·과(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장애인고용공단 사업운영비	10,139	9,538	9,538	9,616	9,616	78	0.8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0,139 (10,139)	10,139	10,139	-	-	9,538	9,538	9,538	9,538	-	-	9,616
· 장애인고용공단 사업운영비	10,139 (10,139)	10,139	10,139	-	-	9,538	9,538	9,538	9,538	-	-	9,61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제71조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7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지급에 사용한다.

1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 수행에 따르는 경비

② 추진경위

- 1990. 9.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설립
- 1992~2002. 직업능력개발원 5개소 설치
- 1993~2012. 지사 18개소 설치
- 2000. 1. 고용개발원 설치
- 2001. 1.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 및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업무 수탁
- 2010.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기관명 변경
- 2015~2017. 훈련센터 8개소(맞춤훈련센터(3) 및 발달장애인훈련센터(4), 청각센터(1)) 설치
- 2018. 지사 2개소(서울동부, 경기동부지사) 설치 및 훈련센터 6개소(인천, 전주, 제주 맞춤, 대전, 경기, 전북 발달) 설치
- 2019. 지역본부제 도입(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및 훈련센터 7

- 2020. 개소(경기 맞춤, 부산, 울산, 강원, 충북, 경북, 경남 발달) 설치
훈련센터 6개소(서울남부, 세종, 경기북부, 충남, 전남, 제주 발달) 설치
- 2021. IT맞춤훈련센터 1개소(서울) 설치
- 2022. 수도권 지사 2개소(서울북부, 경기서부) 설치
- 2024. 지사 1개소(경남서부지사) 설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90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094	9,720	10,139	9,538	9,61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장애인고용공단 사업운영비	출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9,616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및 제71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장애인고용공단 사업운영비 : (2025 계획) 9,538백만원 → (2026 계획) 9,616백만원, 78백만원 증액

- (요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운영을 위한 사업운영비 예산 요구
- (산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운영비 9,616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538	○ 기관운영출연금(350-01) : 9,538,000천원 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운영비 (9,538,000천원)	9,616	○ 기관운영출연금(350-01) : 9,616,000천원 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운영비 (9,616,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운영비 10,094백만원 지급
2023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운영비 9,720백만원 지급
202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운영비 10,139백만원 지급
2025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운영비 9,538백만원 지급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운영을 통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원활한 추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7) 사업 집행절차

- 매월 출연금 교부신청(공단) → 출연금 지급(고용노동부) → 사업운영비 지급(공단)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고용노동부 (9,616백만원)	=> (9,616백만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9,616백만원)	-	-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 대외공개 평가
-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0,094	-	10,094	10,094	10,094	100.0	100.0	-	-
2023	9,720	-	9,720	9,720	9,720	100.0	100.0	-	-
2024	10,139	-	10,139	10,139	10,139	100.0	100.0	-	-
2025	9,538	-	9,538	9,538	9,538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피출연기관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잔금 20백만원 이월 - 피출연기관의 공공부문 효율화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액 505백만원 및 집행잔액 207백만원 불용
2023	- 피출연기관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잔금 20백만원 이월 - 피출연기관의 공공부문 효율화에 따른 경상경비 집행잔액 390백만원 불용
2024	- 피출연기관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잔금 20백만원 이월 - 피출연기관의 공공부문 효율화에 따른 경상경비 집행잔액 411백만원 불용
2025	- 피출연기관의 공공부문 효율화에 따른 경상경비 집행잔액 262백만원 불용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19) 장애인고용공단 청사임차보증금(7079-23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및 직업재활기금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9	23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장애인고용촉진기금운영비	장애인고용공단 청사임차보증금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장애인고용공단 청사임차보증금	소관부처	실·국·과(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장애인고용공단 청사임차보증금	660	660	660	340	340	△320	△48.5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 획
	계 획 액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660 (660)	660	660	-	-	660	660	660	660	-	-	340
· 장애인고용공단 청사업차보증금	660 (660)	660	660	-	-	660	660	660	660	-	-	34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사 및 무연고 직원 사택 임차보증금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제71조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7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지급에 사용한다.

1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 수행에 따르는 경비

- ② 추진경위

- 199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사 및 무연고 직원 사택 임차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90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50	500	660	660	34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용자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장애인고용공단 청사임차보증금	용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340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및 제71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장애인고용공단 청사임차보증금 : (2025 계획) 660백만원 → (2026 계획) 340백만원, 320백만원 감액

- (요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사 및 무연고 직원 사택 임차를 위한 청사임차보증금 예산 요구
- (산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사임차보증금 340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60	○ 기관운영출연금(350-01) : 660,000천원 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사임차보증금 (660,000천원)	340	○ 기관운영출연금(350-01) : 340,000천원 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사임차보증금 (34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사임차보증금 950백만원 지급
2023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사임차보증금 500백만원 지급
202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사임차보증금 660백만원 지급
2025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사임차보증금 660백만원 지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원활한 추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장애인고용공단 청사 및 사택 임차보증금 신청 → 집행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 대외공개 평가
-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950	-	950	950	950	100.0	100.0	-	-
2023	500	-	500	500	500	100.0	100.0	-	-
2024	660	-	660	660	660	100.0	100.0	-	-
2025	660	-	660	660	660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20) 장애인고용공단 대외협력(7079-2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및 직업재활기금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79	25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장애인고용촉진기금운영비	장애인고용공단 대외협력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장애인고용공단 대외협력	소관부처	실·국·과(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장애인고용공단 대외협력	953	953	953	903	903	△50	△5.2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953 (953)	953	953	-	-	953	953	953	953	-	-	903
· 장애인고용공단 대외협력	953 (953)	953	953	-	-	953	953	953	953	-	-	90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일반국민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기업이 장애인을 적극 고용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관련 정부 정책 및 국제기구 정책과 균형 유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추진경위

<대내협력>

- 1990. 장애인고용 인식개선을 위한 TV·라디오 광고, 물품 제작 등 추진
- 1991. 장애인고용촉진대회 개최
- 1992.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을 위한 작품현상공모전 개최
- 1995. 월간 ‘장애인과 일터’ 발간
- 2011. 공단 SNS 채널 개설 및 운영
- 2020. 공단 30년사 편찬

<국제협력>

- 1991.~2005. 전문가양성 및 장애유형별 교육을 위한 해외연수 실시
- 1994.~1999. UNDP 사업수행
- 1995. SRH(하이델베르그재활재단)과 자매결연 협약
- 1998. RI(세계재활협회) 가입
- 2005.~2008. 한/ILO 협력사업 초청연수 실시

- 2007.~2010. 한/ILO 협력사업 후속조치의 자매결연 추진
- 2011. 외부재원(한국국제협력단)을 활용한 자매결연기관 지원 확대 노력, RI 총회 등 국제회의 참가, 개발도상국 직업능력개발기법 전수 지원
- 2020. 국제협력팀(대외협력팀) 신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90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45	993	953	953	90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장애인,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 대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장애인고용공단 대외협력	출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903	1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장애인고용공단 대외협력 : (2025 계획) 953백만원 → (2026 계획) 903백만원, 50백만원 감액

- (요구) 장애인고용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개선 및 고용촉진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공단 대외협력 예산 요구
- (산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외협력 903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53	○ 기관운영출연금(350-01) : 953,000천원 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외협력 (953,000천원)	903	○ 기관운영출연금(350-01) : 903,000천원 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외협력 (903,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외협력 1,045백만원 지급
2023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외협력 993백만원 지급
202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외협력 953백만원 지급
2025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외협력 953백만원 지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홍보>

- 장애인고용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개선 및 고용촉진 활성화 여건 조성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장애인고용 실천을 연계하는 홍보를 통해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 장애인고용정책 및 장애인고용공단 사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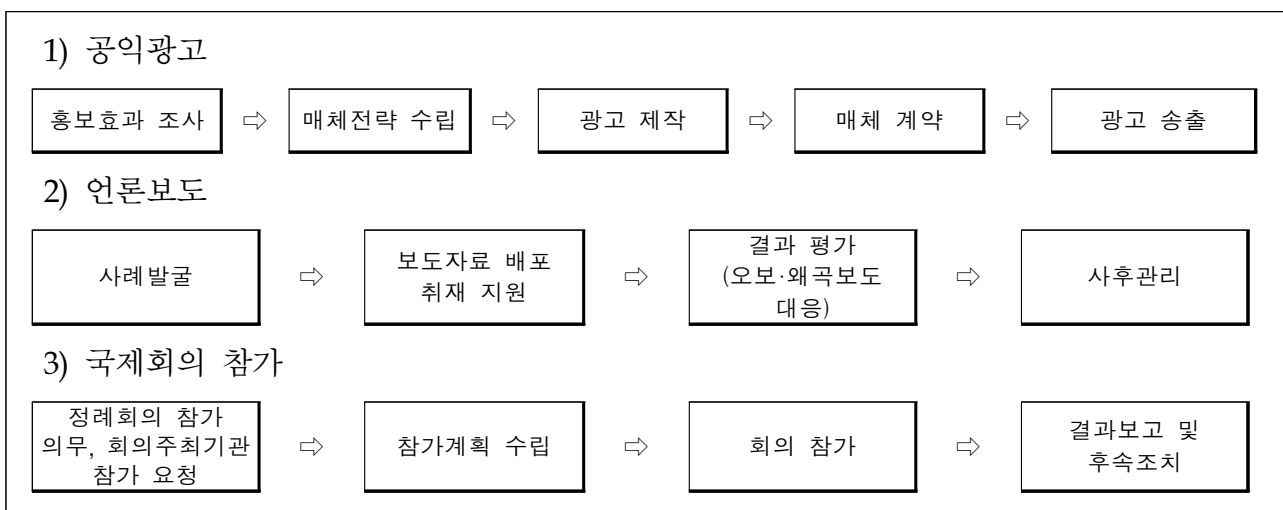
<대외협력>

- 장애계와의 소통 활성화를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공단 사업에 대한 고객 관점의 의견 반영
- 국제회의 및 행사 참가, 공적개발원조 연수사업 추진 등을 통해 해외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장애인 고용 관련 국제교류체계 확립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 대외공개 평가
-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045	-	1,045	1,045	1,045	100.0	100.0	-	-
2023	993	-	993	993	993	100.0	100.0	-	-
2024	953	-	953	953	953	100.0	100.0	-	-
2025	953	-	953	953	953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피출연기관의 공공부문 효율화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액 52백만원 및 집행잔액 8백만원 불용
2023	- 피출연기관의 집행잔액 34백만원 불용
2024	- 피출연기관의 집행잔액 19백만원 불용
2025	- 피출연기관의 집행잔액 44백만원 불용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21)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9006-84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및 직업재활기금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000	9006	840
명칭	기금간거래(예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소관부처	실·국·과(팀)
		통합고용정책국
	사업시행주체	장애인고용과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탁	600,000	700,000	700,000	800,000	800,000	100,000	14.3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600,000 (600,000)	600,000	600,000	-	-	700,000	700,000	700,000	700,000	-	-	800,000
· 공공자금관리기금(총 괄계정) 예탁	600,000 (600,000)	600,000	600,000	-	-	700,000	700,000	700,000	700,000	-	-	80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자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설치된 공공자금관리기금(기획재정부 소관)에 예탁하여 공공목적의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국가재정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2조,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2조(기금의 운용·관리) ③ 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② 추진경위

- 2017.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7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00,000	600,000	600,000	700,000	800,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 (2025 계획) 700,000백만원 → (2026 계획) 800,000백만원, 100,000백만원 증액

- (요구) '25년 수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 요구
- (산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800,000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00,000	○ 기금예탁금(480-03) : 700,000,000천원	800,000	○ 기금예탁금(480-03) : 800,00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공자기금으로 600,000백만원 예탁
2023	공자기금으로 600,000백만원 예탁
2024	공자기금으로 600,000백만원 예탁
2025	공자기금으로 700,000백만원 예탁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공공목적의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국가재정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운용 규모 및 국가재정상황에 따라 공공자금관리 기금 예탁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 대외공개 평가
-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500,000	100,000	600,000	600,000	600,000	100.0	100.0	-	-
2023	600,000	-	600,000	600,000	600,000	100.0	100.0	-	-
2024	600,000	-	600,000	600,000	600,000	100.0	100.0	-	-
2025	700,000	-	700,000	700,000	700,000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여유자금 운용규모 등 고려하여 공자기금 예탁금 100,000백만원 증액 변경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22) 한국은행예치(9702-97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및 직업재활기금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000	9702	971
명칭	기금간거래(예탁금)	여유자금운용	한국은행예치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한국은행예치	소관부처	실·국·과(팀)
		통합고용정책국
	사업시행주체	장애인고용과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한국은행예치	781	936	936	889	889	△47	△5.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300 (300)	300	781	-	-	936	936	936	1,761	-	-	889
· 한국은행예치	300 (300)	300	781	-	-	936	936	936	1,761	-	-	88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국고 계좌 운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9조, 제72조

제69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33조와 제35조에 따른 부담금·가산금 및 연체금
3.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공단 수입금
4. 제57조에 따른 차입금
5. 제70조에 따른 차입금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7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탁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3.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추진경위

- 199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설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91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00	300	300	936	88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한국은행예치 : (2025 계획) 936백만원 → (2026 계획) 889백만원, 47백만원 감액

- (요구) 최근 5년('20~'24년) 연평균 증감률(△5%) 반영
- (산출) 한국은행예치금 889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36	○ 한국은행예치금(470-01) : 936,000천원	889	○ 한국은행예치금(470-01) : 889,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한국은행 788백만원 예치
2023	한국은행 1,192백만원 예치
2024	한국은행 781백만원 예치
2025	한국은행 1,761백만원 예치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안정적 운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한국은행 예치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 대외공개 평가
-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300	-	300	300	788	262.7	262.7	-	-
2023	300	-	300	300	1,192	397.3	397.3	-	-
2024	300	-	300	300	781	260.3	260.3	-	-
2025	936	-	936	936	1,761	188.1	188.1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23)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02-97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및 직업재활기금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000	9702	973
명칭	기금간거래(예탁금)	여유자금운용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소관부처	실·국·과(팀)
		통합고용정책국
	사업시행주체	장애인고용과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중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767,800	544,804	534,684	707,030	697,460	152,656	28.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499,109 (466,461)	466,461	767,800	-	-	544,804	534,684	534,684	717,394	-	-	697,460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499,109 (466,461)	466,461	767,800	-	-	544,804	534,684	534,684	717,394	-	-	697,4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여유자금을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9조, 제72조

제69조(기금의 자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33조와 제35조에 따른 부담금·가산금 및 연체금
3.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공단 수입금
4. 제57조에 따른 차입금
5. 제70조에 따른 차입금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7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탁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3.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추진경위

- 199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설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91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98,988	425,381	466,461	534,684	697,46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025 계획) 544,804백만원 → (2026 계획) 697,460백만원, 152,656백만원 증액

- (요구) '26년 여유자금 규모 고려하여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요구
- (산출)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697,460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44,804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470-00) : 544,804,000천원	697,460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470-00) : 697,46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비통화금융기관 552,398백만원 예치
2023	비통화금융기관 628,840백만원 예치
2024	비통화금융기관 767,800백만원 예치
2025	비통화금융기관 717,394백만원 예치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안정적 운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연간 자산운용계획 및 분기별 자산운용계획에 따라 장기 수익증권 및 단기자금의 예탁규모 결정하여 전문기관(연기금투자플) 등 위탁 운용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 대외공개 평가
-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607,688	△108,700	498,988	498,988	552,398	110.7	110.7	-	-
2023	452,391	△27,010	425,381	425,381	628,840	147.8	147.8	-	-
2024	499,109	△32,648	466,461	466,461	767,800	164.6	164.6	-	-
2025	544,804	△10,120	534,684	534,684	717,394	134.2	134.2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기금운용계획변경) 공자기금 위탁금 규모 확대 및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등을 위해 108,700백만원 감액
2023	- (기금운용계획변경)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및 장애인직업능력개발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용지보상비 증액을 위해 27,010백만원 감액
2024	- (기금운용계획변경) 장애인고용장려금 수요 증가에 따른 지원 확대 등을 위해 32,648백만원 감액
2025	- (기금운용계획변경) 근로지원인 및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확대 등을 위해 10,120백만원 감액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기획재정부 승인 (2025.10.1.)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470	03	△10,120	근로지원인 지원금 및 출·퇴근비용지원 추가 소요 발생으로 부족분 지급하기 위한 감액
합 계				△10,120	

IV. 임금채권보장기금

사 업 명						
(1) 대지급금 지급(305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임금채권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	080	08E
명칭	보장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51	300
명칭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대지급금 지급	대지급금 지급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대지급금 지급	고용노동부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사업시행주체	-
채권관리 비용	고용노동부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습체불 사업주 회수관리	고용노동부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대지급금지급	727,198	529,346	719,092	746,517	746,068	216,722	40.9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474,733	727,203	727,198	0	5	529,346	719,092	719,092	688,519	0	30,573	746,068
· 대지급금 지급	472,550	724,207	724,207	0	0	526,403	715,016	715,016	684,511	0	30,505	742,077
· 채권관리비용	2,183	2,996	2,991	0	5	2,943	4,076	4,076	4,008	0	68	3,289
· 상습채불사업주회수관리	0	0	0	0	0	0	0	0	0	0	0	70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대지급금 지급)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채불임금 등을 지급(대지급금)함으로써 채불근로자 생활안정 도모
- (채권관리비용) 사업주에게 구상권 행사 과정에 드는 소송 비용
- (상습채불 사업주 회수관리) 상습채불사업주의 변제금 회수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 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중국판결
-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근무기간, 휴업기간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
 3.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4.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 ④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

터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근로자가 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⑧ 그 밖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 2.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 3.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
- ③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 및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및 그 밖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퇴직 후 같은 근무기간, 같은 휴업기간 또는 같은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그 지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것
 - 2.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것
-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2. 제7조제6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지원 비용의 지급
3.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용자
- 4.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
5.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6. 임금등 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연구
7.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 다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임금채권보장사업과 기금의 관리·운용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1998년

- 추진배경

- 근로기준법(제38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는 일정범위의 임금채권(특히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최우선변제)이 여타 채권(담보채권, 조세·공과금)에 비해 우선적으로 변제되도록 하는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를 두고 있음
- 그러나 사업주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없으며,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적기에 임금채권 확보가 곤란
- 이에 1980년부터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 오다가 '98. 1.15 발족한 노사정위원회의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채택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계약』을 제정하면서 구체적인 도입방안이 논의되었음
-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으로 도산한 기업이 급증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98. 2.20 법률을 제정하여, '98. 7. 1 부터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8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43,089	559,155	474,733	680,180	746,068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대지급금 지급) 직접수행, (채권관리비, 상습체불 사업주 회수관리)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 사업 수혜자 : 임금 등이 체불된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채권관리비	출연	근로복지 공단	2,635	80.1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 제4호
		한국자산 관리공사	654	19.9	
상습체불 사업주회수 관리	출연	근로복지 공단	702	100.0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 제4호
계	-	-	3,991	-	-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세부 요구내용

◆ 대지급금 지급 : (2025 기금 변경) 719,092백만원* → (2026 계획) 746,068백만원, 26,976백만원 증액

* 2025 당초 계획 529,346백만원 → 제1회 추경 680,180백만원 → 2025 기금 변경 719,092백만원

① 대지급금 지급 : (2025 기금 변경) 715,016백만원* → (2026 계획) 742,077백만원, 27,061백만원 증액

* 2025 당초 계획 526,403백만원 → 제1회 추경 677,237백만원 → 2025 기금 변경 715,016백만원

<도산대지급금> (2025 기금 변경) 73,319백만원 → (2026 계획) 137,254백만원, 63,935백만원 증액

* 2025 당초 계획 42,267백만원 → 2025 기금 변경 73,319백만원

- (요구) ① '26년 상반기 소요액(21,775백만원) + ② '26년 하반기 공약이행 소요액(115,479백만원)

① '26년 상반기 소요액 21,775백만원 ⇨ 최근 3년('22~'24년) 도산대지급금 평균 지원실적의 50%

* 6,379명 × 6.827백만원 × 50%

② '26년 하반기 공약이행 소요액 115,479백만원 ⇨ '24년 도산대지급금 지급사건의 체불액(최종 6개월분 체불임금 반영), 최근 5년 체불액 평균증감율(6.6%) 반영

* 203,244백만원 × 1.066² × 50%

- (신청인원) '25년 예상인원(5,798명)에 최근 4년 평균 체불근로자수 증가율(4.64%) 반영

* 6,067명 = 5,798명 × 1.0464

- (지원단가) '26년도 소요액을 수혜인원으로 역산하여 산출

* 22,623백만원 = 137,254백만원 ÷ 6,067명

- (산출) 6,067명×22,623천원

<간이대지급금> (2025 기금 변경) 641,698백만원* → (2026 계획) 604,823백만원, 36,875백만원 감액

* 2025 당초 계획 484,136백만원 → 제1회 추경 634,970백만원 → 2025 기금 변경 641,698백만원

- (요구) ① (신청인원) '22~'24년 1~5월 지원 인원수가 당해연도 전체 지원 인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3년 평균(43.9%)을 산정한 후, '25년 1~5월 지원 인원수(46,322명)에 반영하여 '25년 전체 예상 물량 (105,517명) 산정, 도산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에 따른 수요이동 감안

② (지원단가) '23~'25년 평균단가(5.53백만원)에 최근 5년 보수상승률 3.64% 반영하여 '26년 예상

단가(5.732백만원) 산정

- (산출) 105,517명×5,732천원

② 채권관리비용 : (2025 기금 변경) 4,076백만원 → (2026 계획) 3,289백만원, 787백만원 감액

* 2025 당초 계획 2,943백만원 → 2025 기금 변경 4,076백만원

- (요구) '24년 실제 실적(소송, 보전처분 등) 반영

- (산출)

* 소제기 비용: 721백만원

- (지급명령) 308백만원(3,698건×83,400원)

- (소송) 413백만원(1,125건×366,700원)

* 보전처분 비용: 657백만원

- (부동산) 380백만원(1,645건×231,300원)

- (자동차) 248백만원(1,785건×141,100원)

- (채권 등) 29백만원(206건×139,860원)

* 강제집행비용: 179백만원(90건×1,983,716원)

* 기타 소송비용: 357백만원(변호사 소송수임료 193백만원, 자문변호사료 48백만원, 채권관리교육 116백만원)

* 고지·독촉비용: 290백만원

- (고지) 145백만원(3,035원×47,823건)

- (독촉) 145백만원(3,035원×47,779건)

* 압류비용: 372백만원

- (압류예고) 42백만원(3,035원×13,826건)

- (압류촉탁) 330백만원

* 강제집행 공매수수료: 59백만원(33건×1,800,000원)

* 미회채권 위탁 수수료: 654백만원

- 미회수 채권 위탁액 : 505,474백만원('25년도 위탁액 기준, 5년 이상, 1억원 미만)

- 한국자산관리공사 회수율 : 2.23%('14~'24년 누적회수율, 한국자산관리공사 통계)

- 예상 회수금액 : 11,272백만원(505,474백만원×2.23%)

- 국가채권 평균 수수료율('19~'24년) : 5.801%(한국자산관리공사 통계)

- 위탁수수료 : 654백만원(11,272백만원×5.801%)

③ 상습체불 사업주 회수관리 : (2025 당초 계획) 0백만원 → (2026 계획) 702백만원, 순증

- (요구)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 경제 제재 신규 도입('25.10.23.)에 따라 '26년부터 상습체불사업주 선정 대상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를 통한 변제금 납부 독려로 변제금 회수율 제고 가능, 소명기회 부여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필요, 대지급금 지급 사업비의 내역사업으로 신설

- (산출) 702백만원

* 일반수용비: 16백만원

- 사전통지서 발송(DM), 사무용품 구입비, 사무자동화소모품지, 교육훈련비 등

* 공공요금 및 제세: 99백만원

- 전화요금, 팩스, 사전통지서 우편요금 등

* 현장조사 및 교부송달(여비): 160백만원

- 관내 출장비: 110백만원(25,000원×4,400개소)

- 관외 출장비: 50백만원(125,000원×400개소)

* 업무지원 경비: 17백만원

- 특근매식비, 부서운영비, 사업추진비 등 업무수행경비

* 상습체불사업주 선정 관리시스템 운영: 299백만원

- 시스템 개발: 31백만원(인건비: 20,830천원, 제경비: 2,708천원, 기술료: 4,708천원, 부가세: 2,824천원)

- 시스템 유지관리: 268백만원(22,363천원×12개월)

* 임차료: 5백만원

- 복합기 등 사무기기 임차: 5백만원(421,000원×12개월)

* 자산취득비: 106백만원

- 사무집기, 일반사무기기, 전산사무기기 등 신설 부서 배치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19,092 백만원	○ 기타보전금(310-04) 715,016,000천원 1.도산대지급금 : 42,267,420천원 5,798명*7,290,000원=42,267,420천원 + (기금변경) 54,984백만원(25년 9월말 실적) + 18,335백만원(10~12월 추계액) - 42,267백만원(예산현액)=31,052백만원 2.간이대지급금 : 634,970,000천원 99,188명*4,881,000원=484,136,628천원 + (회 추경안) 23,442명*6,434,348원=150,834백만원 + (기금변경) (481,266백만원(25년 9월말 실적) + 160,432백만원(10~12월 추계액)* - 634,971백만원(예산현액)=6,727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4,076,000천원 1. 소제기 비용 6,212건*217,218원=1,349,358천원 2. 보전처분 비용 4,331건*112,925원=489,078천원 3. 강제집행 비용 158건*864,075원=136,524천원 4. 기타 소송비용 : 208,040천원 가. 변호사 소송수임료 14,327,230원*10건=143,272천원 나. 자문변호사료 2,593,000원*12개월=31,116천원 다. 채권관리 교육비용 33,652,000원=33,652천원 5. 미회수채권 위탁(한국자산관리공사) 수수료 511,485,000,000원*2.51%*5.917%=759,641천원 + (기금변경) 1,133백만원	746,068 백만원	○ 기타보전금(310-04) 746,517,000천원 1. 도산대지급금: 137,254,000천원 6,067명*22,623,000원=137,254,000천원 2. 간이대지급금: 604,823,444천원 105,517명*5,732,000원=604,823,444천원 ○ 사업출연금(350-02) 3,991,000천원 1. 채권관리비용: 3,289,000천원 가. 소제기 비용: 720,951천원 1) 지급명령 3,698건*83,400원=308,413천원 2) 소송 1,125건*366,700원=412,538천원 나. 보전처분 비용: 657,354천원 1) 부동산 1,645건*231,300원=380,489천원 2) 자동차 1,758건*141,100원=248,054천원 3) 채권 등 206건*139,860원=28,811천원 다. 강제집행 비용 90건*1,983,716원=178,534천원 라. 기타 소송비용: 356,681천원 1) 변호사 소송수임료 19,300,000원*10건=193,000천원 2) 자문변호사료 3,960,000원*12개월=47,520천원 3) 채권관리 교육비용 116,161,000원=116,161천원 마. 고지.독촉비용: 290,152천원 1) 고지 3,035원*47,823건=145,143천원 2) 독촉 3,035원*47,779건=145,009천원 바. 압류비용: 371,613천원 1) 압류예고 3,035원*13,826건=41,962천원 2) 압류촉탁 329,651,000원=329,651천원 사. 강제집행 공매수수료 33건*1,800,000원=59,400천원 아. 미회수채권 위탁(한국자산관리공사) 수수료 505,474,000,000원*2.23%*5.801%=653,893천원 자. 단수조정 422,000원=422천원 2. 상습체불사업주 회수관리: 702,000천원 가. 일반수용비 16,000,000원=16,000천원 나. 공공요금및제세 99,000,000원=99,000천원 다. 여비(현장조사 및 교부송달) 160,000,000원=160,000천원 라. 특근매식비 8,640,000원=8,640천원 마. 부서운영비 4,800,000원=4,800천원 바. 사업추진비 1,720,000원=1,720천원 사. 관서운영추진비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000,000원=2,000천원 아. 상습체불사업주 선정 관리시스템 운영: 299,000천원 1) 시스템 개발 31,000,000원=31,000천원 2) 시스템 유지관리 268,000,000원=268,000천원 자. 임차료 5,000,000원=5,000천원 차. 자산취득비 106,000,000원=106,000천원 카. 단수조정 -160,000원=△16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추정산식 (또는 추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권리구제율(%)	목표	75.1	78.5	81.5	84.3	84.5	외부환경 및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난 3개년 평균실적 대비 상향	(지도해결근로자수+대지급금지급 근로자수+체불 사업주응일자지 원근로자수)/체 불근로자수*100	고용노동부 노사누리시스템
	실적	81.9	83.9	85.0	-	-			
	달성도	109.1	106.9	104.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구분	계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사업장수	지급인원	금액	사업장수	지급인원	금액	사업장수	지급인원	금액
2025	23,706	115,374	684,511	1,316	9,826	69,274	22,390	105,548	615,237
2024	24,327	128,638	724,207	1,073	7,826	54,828	23,254	120,812	669,379
2023	24,183	132,079	686,905	825	5,881	39,635	23,358	126,198	647,271
2022	22,271	108,284	536,864	713	5,430	36,576	21,558	102,854	500,288
2021	24,071	107,431	546,571	1,147	10,381	79,360	22,924	97,050	467,210
2020	24,975	110,610	579,690	1,463	14,032	109,975	23,512	96,578	469,715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일정범위의 체불임금등에 대해 대지급금을 지급 함으로써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도산대지급금>

<사실상 도산의 경우>

근로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지방관서)



지방관서
도산등사실인정 통지(근로자)



근로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 및 확인신청(지방관서)



지방관서
요건 충족 시 지급청구서 및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근로복지공단
도산대지급금 지급

<재판상 도산의 경우>

사업주
재판상도산 신청(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신청) (법원)



법원
재판상도산 인정(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사업주)

<간이대지급금>

<확정판결로 청구하는 경우>

<체불확인서로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
체불 신고(지방관서)



지방관서
체불 조사 및 체불금액 확정 자체청산 지도, 미청산 시 체불확인서 발급(소송제기용)

지방관서
체불 조사 및 체불금액 확정 자체청산 지도, 미청산 시 체불확인서 발급(대지급금 청구용)



근로자(법률구조공단 등)
임금 청구소송 제기, 승소판결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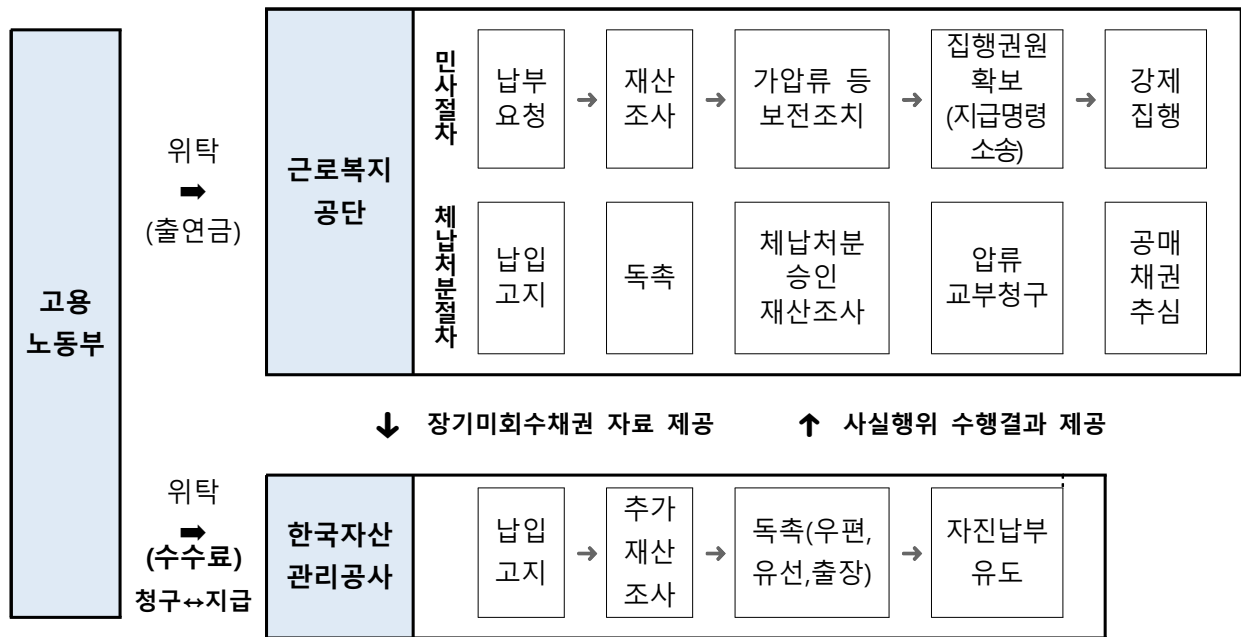


근로자
간이대지급금 청구(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지급요건 등 확인 후 간이대지급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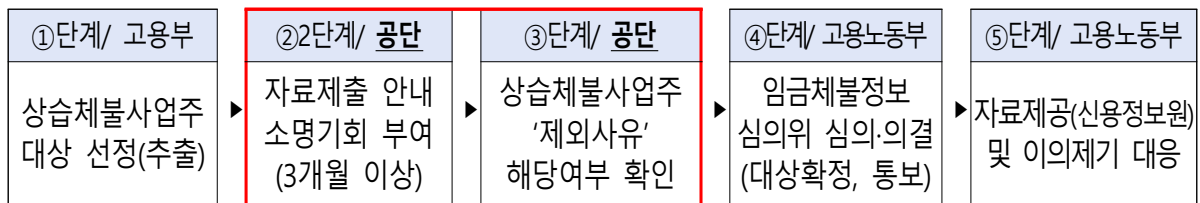
<채권관리비용>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실행위(채무자 주소거소 확인, 재산조사, 납부 독촉, 전화방문상담 등) 수행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수행하는 사실행위 이외에 보전처분, 소송, 강제집행, 시효관리 등 법률행위 및 소멸정리 업무 등은 캠프 위탁 후에도 공단에서 계속 수행

<상습채불사업주 회수관리>



* 상습채불사업주 신용제재 예고통지서 등기우편 발송(교부, 송시송달) → 사업장 가동상태(파산, 회생, 실종 등) 확인 등 사실관계 검토 → 전액청산여부, 청산계획(채불액의 80% 이상 청산한 경우에 한함) 실행가능성 판단 등 '제외사유' 해당여부 확인 → 확인자료(증빙) 고용노동부 송부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대지급금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22년·'23년 환노위·예결위 결산)
 - 대지급금 계획액을 실제 수요를 반영하여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고, 연례적인 과소 편성 관행을 개선할 것('24년 환노위·예결위 결산)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643,089	-2,985	640,104	640,104	536,864	83.9	83.9	0	103,240
2023	559,155	127,773	686,928	686,928	686,905	100.0	100.0	0	23
2024	474,733	252,470	727,203	727,203	727,198	100.0	100.0	0	5
2025	529,346	189,746	719,092	719,092	688,519	95.7	95.7	0	30,57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임금채불 발생의 감소로 인해 대지급금 지급 지원 근로자수도 감소로 집행잔액 발생
2023	- 금리인상의 영향과 소비심리 위축, 건설경기 둔화 등에 따른 기업 경영사정 악화로 채불신 고액 증가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 증가로 1,278억원 증액
2024	- 임금채불 증가 등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 수요 증가로 2,525억원 증액
2025	- 대미 관세정책 여파 등으로 내수부진 지속,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가 예상되어 채불규모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 1,508억원 증액 - 임금채불 증가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 378억원 증액 - 소송제기 사건의 증가 및 적극적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에 따른 채권관리비용 11억원 증액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국회의결 (1차 추경) (2025.5.1)	대지급금 지급	310	04	150,834	대미 관세정책 여파 등으로 내수부진 지속,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가 예상되어 채불규모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 증액
기재부협의 (2025.11.18.)	대지급금 지급	310	04	37,779	임금채불 증가에 따른 대지급금 증가
	채권관리비용	350	02	1,133	소송제기 사건의 증가 및 적극적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에 따른 채권관리비용 부족
합 계				189,746	

사 업 명
(2) 무료법률구조지원(305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임금채권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	080	08E
명칭	보장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52	302
명칭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채불근로자조력지원	무료법률구조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무료법률 구조지원	고용노동부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사업시행주체	대한법률구조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무료법률 구조지원	13,907	11,509	15,415	11,678	11,678	169	1.5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1,509	13,907	13,907	0	0	11,509	15,415	15,415	15,415	0	0	11,678
· 무료법률구조지원	11,509	13,907	13,907	0	0	11,509	15,415	15,415	15,415	0	0	11,67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무료법률구조지원)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하여 임금채권을 행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체불근로자들의 실질적 권리구제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2. 제7조제6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지원 비용의 지급
3.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용자
4.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
5.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6. 임금등 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연구
7.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 다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임금채권보장사업과 기금의 관리·운용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5년
- 추진배경
 - 2004. 3. 4 대통령 업무보고시 체불행정 혁신 지시
 - 2004. 12.15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거쳐 2단계 서민생활 안정대책 마련
 - ※ 체불근로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실시 포함
 - 2005. 3. 2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 ※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무료법률구조사업재원 지원근거 마련
 - 2005. 7. 1 체불임금피해근로자 무료법률구조 실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5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948	10,386	11,509	11,509	11,678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대한법률구조공단
- 사업수혜자 : 임금채불 근로자
- ※ 월소득(평균임금) 400만원 이상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무료법률 구조지원	출연	대한법률 구조공단	11,678	100.0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 제7호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세부 요구내용

- 무료법률구조지원 : (2025 기금 변경) 15,415백만원 → (2026 계획) 11,678백만원, 3,737백만원 감액
(2025 당초 계획 11,509백만원 → 2025 기금 변경 15,415백만원)
- (요구) 최근 체불근로자수 증가율 및 평균 집행단가 감소율을 감안하여 편성
* 55,635건¹⁾(‘26년 예상사건수) × 209,900원²⁾(‘26년 예상단가) = 11,678백만원
- (산출)
1) (‘26년 예상건수) 55,635건
= 283,212명(‘24년 체불근로자수)x1.0467x1.0467(4년 평균 체불근로자수 증가율)x24.8%(3년 평균 수혜비율)x72.3%(3년 평균사건비율)
* 체불 근로자수 증가율

(단위 : 명)

구분	21	22	23	24	최근 4년 평균증가율 적용
체불근로자(명)	247,005	237,501	275,432	283,212	1.0467

* 수해 및 평균사건 비율

(단위 : 건, 명)

구 분	사건수(A)	근로자수(B)	체불근로자수(C)	수해율(B/C)	사건비율(A/B)
2022	43,078	61,757	237,501	26.0%	69.8%
2023	44,813	61,394	275,432	22.3%	73.0%
2024	54,878	73,958	283,212	26.1%	74.2%
평균	-	-	-	24.8%	72.3%

2) ('26년 예상단가) 209,900원(최근 4년 연평균 집행단가 적용)
= 253,416원('24년 단가) x 91% x 91% (연평균 증가율)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소송비용(A)	변호사비용(B)	계(C=A+B)	사건수(D)	평균단가(원) (D/C*100)
2021	12,321	13,897	26,218	77,668	337,565
2022	7,113	6,941	14,054	43,078	326,245
2023	7,245	6,048	13,293	44,813	296,633
2024	6,738	7,169	13,907	54,878	253,416
4년 평균 증가율					-9%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415 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15,415,000천원 1. 무료법률구조지원 : 15,415,000천원 35,407건*325,057원=11,509,293천원 + (기금변경) 65,182건(25년 추가 사건수) x 236,497원(단가) - 11,509백만 원(예산액) = 3,906,000천원	11,678 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11,678,000천원 1. 무료법률구조지원 : 11,678,000천원 55,635건* 209,900원 = 11,677,787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권리구제율(%)	목표	75.1	78.5	81.5	84.3	84.5	외부환경 및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난 3개년 평균실적 대비 상향	(지도해결근로자수 +대지급금지급 근로자수+체불 사업주응자지 원근로자수)/체 불근로자수*100	고용노동부 노사누리시스템
	실적	81.9	83.9	85.0	-	-			
	달성도	109.1	106.9	104.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단위 : 명, 건, 억원)

연도	집행액	지원실적		
		인원수	사건수	구조금액
2025	154	77,212	59,457	6,180
2024	139	73,958	54,878	5,587
2023	133	61,394	44,813	4,738
2022	140	61,757	43,078	4,527
2021	261	116,464	77,667	8,304
2020	282	137,637	90,174	10,099
2019	282	162,977	106,249	11,188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체불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체불근로자들의 생계보장에 지속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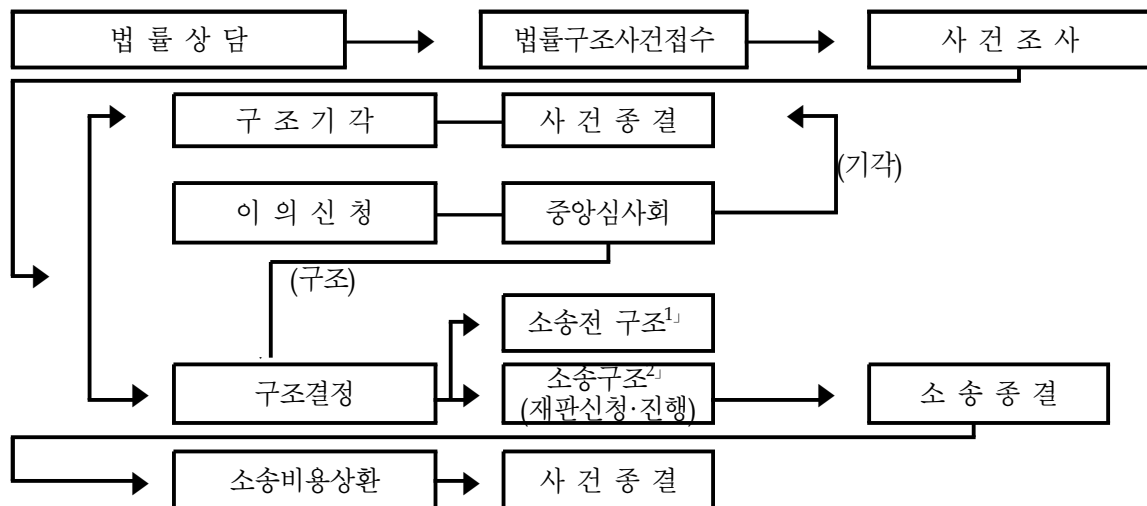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고용노동부>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면 신고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사하여 체불금품을 확정→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해당 근로자가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원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토록 안내→해당 근로자가 직접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지부에 무료법률구조지원을 요청→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



1] 소송전 구조 : 소송 제기 전 화해 또는 조정 성립 사건

2] 소송구조 :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민사소송대리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0,948	3,109	14,057	14,057	14,057	100.0	100.0	0	0
2023	10,386	2,907	13,293	13,293	13,293	100.0	100.0	0	0
2024	11,509	2,398	13,907	13,907	13,907	100.0	100.0	0	0
2025	11,509	3,906	15,415	15,415	15,415	100.0	100.0	0	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사업비 집행이 소송사건이 종결된 후 집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따른 영향 효과가 소송 소요 기간(3개월 이상)만큼 늦게 반영되는 차이가 있고,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송물 단가도 인상됨에 따른 추가 소요액 발생으로 31억원 증액 변경
2023	- 체불규모 증가에 따른 무료법률구조지원 수요 증가로 29억원 증액 변경
2024	- 임금체불 증가 등에 따른 무료법률구조지원 수요 증가로 24억원 증액 변경
2025	- 사건수 증가에 따른 무료법률구조지원 39억원 증액 변경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기재부협의 (2025.11.18.)	무료법률 구조지원	350	02	3,906	무료법률구조 사건수 증가에 따른 증액
합 계				3,906	

사 업 명
(3) 체불청산지원 용자(용자)(3054-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임금채권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	080	08E
명칭	보장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54	304
명칭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체불청산지원 용자	체불청산지원 용자(용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1.5~3.7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체불청산지원 용자(용자)	고용노동부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체불청산지원 용자(용자)	76,918	70,352	86,356	70,635	70,635	283	0.4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40,190	77,200	76,918	0	282	70,352	86,356	86,356	85,911	0	445	70,635
· 체불청산지원용자(용자)	40,190	77,200	76,918	0	282	70,352	86,356	86,356	85,911	0	445	70,63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체불청산지원 용자(용자)) (사업주)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용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 (근로자)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비 용자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용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용자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퇴직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용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비용 용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2. 제7조제6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지원 비용의 지급
 3.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용자
 4.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
 5.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6. 임금등 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연구
 7.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 다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임금채권보장사업과 기금의 관리·운영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12. 8. 2
- 추진배경
 -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임금 또는 퇴직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는 상황
 -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필요
 - '10.12.14. 대통령 업무보고시 “선의를 체불사업주 용자제도(‘11년 법개정)”를 마련키로 보고
 - 체불사업주 용자제도(안) 마련, 의견수렴 간담회 실시(‘11.4월)
 -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용자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공포(‘12.2.1, 8.2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2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0,710	48,333	40,190	78,481	70,635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용자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수혜자 : (사업주 용자) 경제적 사정으로 임금 지불여력이 부족하나,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되, 용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근로자 용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세부 요구내용

◆ 체불청산지원 용자(용자) : (2025 기금 변경) 86,356백만원 → (2026 계획) 70,635백만원, 15,751백만원 감액
(2025 당초 계획 70,352백만원 → 제2회 추경 78,481백만원 → 2025 기금 변경 86,356백만원)

<사업주 용자> (2025 기금 변경) 52,125백만원 → (2026요구) 37,135백만원, 14,990백만원 감액
(2025 당초 계획 24,724백만원 → 제2회 추경 27,581백만원 → 2005 기금 변경 52,125백만원)

- (요구) '23년 7월 제도 개편 이후 평균 근로자수 및 단가를 반영
- (산출) 5,580명*×6.655백만원**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근로자수	구분	근로자수	용자금액	비고
2023.3분기	906	2023.3분기	906	5,851	개정 법률 시행('23.7.)
2023.4분기	1,497	2023.4분기	1,497	10,116	
2024.1분기	1,620	2024.1분기	1,620	10,702	
2024.2분기	1,316	2024.2분기	1,316	9,514	
2024.3분기	1,452	2024.3분기	1,452	9,961	개정 시행규칙 시행('24.8.)
2024.4분기	1,577	2024.4분기	1,577	9,629	
2025.4월	2,295	2025.4월	2,295	15,194	
분기별 평균(a)	1,395	계	10,663 ^(A)	70,967 ^(B)	
연 평균(a*4)	5,580*	평균 단가(B/A)		6.655**	

<근로자 용자> (2025 기금 변경) 34,231백만원 → (2026요구) 33,500백만원, 731백만원 감액
(2025 당초 계획 45,628백만원 → 제2회 추경 50,900백만원 → 2005 기금 변경 34,231백만원)

- (요구) 최근 3년 평균 근로자수 및 단가를 반영
- (산출) 4,645명*7.212백만원**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근로자수	금액	평균 단가
2024	4,945	37,112	7.505
2023	5,910	47,207	7.988
2022	3,080	18,918	6.142
3년 평균	4,645*	34,412	7.212**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6,356 백만원	○ 기타민간용자금(450-04) : 86,356,000천원 1. 체불청산지원 용자 : 86,356,128천원 가. 사업주 3,816명*6,479,000원=24,723,864천원 + (2회 추경안) 441명*6,479,000원=2,857,239천원 + (기금변경) 40,110백만원('25년 9월말 실적) + 12,015백만원 (10~12월 추계액) - 27,581백만원(예산현액)=24,544,000천원 나. 근로자 5,356명*8,519,000원=45,627,764천원 + (2회 추경안) 619명*8,519,000원=5,273,261천원 + (기금변경) 26,375백만원('25년 9월말 실적) + 7,856백만원(10 ~12월 추계액) - 50,900백만원(예산현액)=-16,669,000천원	70,635 백만원	○ 기타민간용자금(450-04) : 70,635,000천원 1. 체불청산지원 용자 : 70,634,640천원 가. 사업주 5,580명*6,655,000원=37,134,900천원 나. 근로자 4,645명*7,212,000원=33,499,74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임금채불 피해근로자 권리구제율(%)	목표	75.1	78.5	81.5	84.3	84.5	외부환경 및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난 3개년 평균실적 대비 상향	(지도해결근로자수 +대지급금지급 근로자수+채불 사업주용자지 원근로자수)/채 불근로자수*100	고용노동부 노사누리시스템
	실적	81.9	83.9	85.0	-	-			
	달성도	109.1	106.9	104.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구분	계		사업주 용자			근로자 용자	
	근로자	용자금액	사업장수	근로자	용자금액	근로자	용자금액
2025	11,853	85,911	870	7,556	53,224	4,297	32,687
2024	10,910	76,918	668	5,965	39,806	4,945	37,112
2023	10,120	72,786	482	4,210	25,579	5,910	47,207
2022	5,758	33,177	342	2,678	14,259	3,080	18,918
2021	7,020	40,979	555	4,178	21,255	2,842	19,724
2020	5,344	19,240	585	5,344	19,240	-	-
2019	4,488	18,046	564	4,488	18,046	-	-
2018	3,038	12,777	419	3,038	12,777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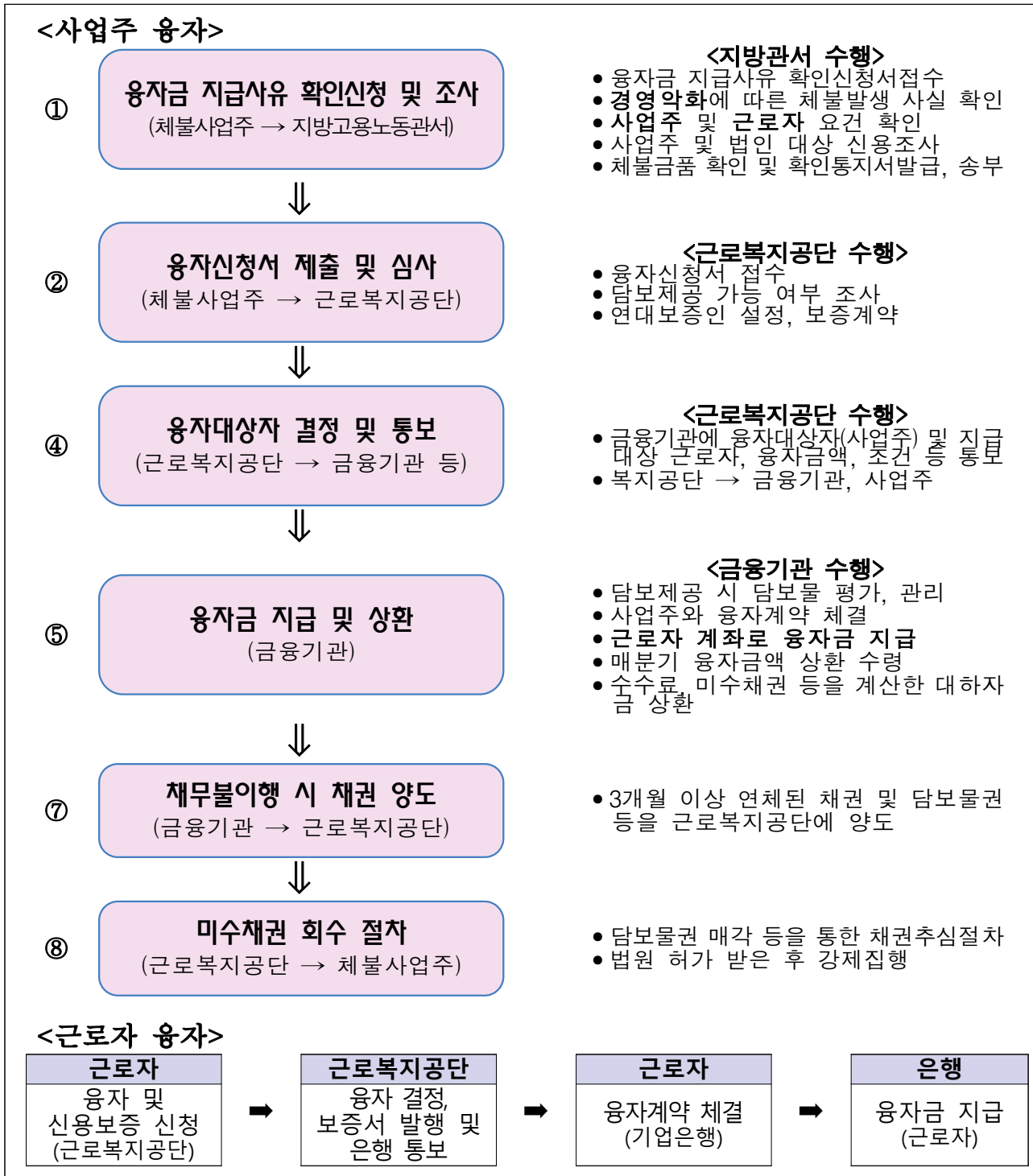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채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용자를 실시함으로써 채불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
- 임금채불로 어려움을 겪는 재직·퇴직근로자 대상의 용자를 지원하여 생계지원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지원규모 확대로 누적미상환금액 증가, 미상환용자금 회수율 제고방안 마련 필요 (환노위, '22회계연도 결산)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30,710	2,985	33,695	33,695	33,177	98.5	98.5	0	518
2023	48,333	34,704	83,037	83,037	72,785	87.7	87.7	0	10,252
2024	40,190	37,010	77,200	77,200	76,918	99.6	99.6	0	282
2025	70,352	16,004	86,356	86,356	85,911	99.5	99.5	0	44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최근 경기침체 및 탑승률 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일부 버스 운수업 사업장에서 근로자 용자신청 폭증으로 30억원 증액 및 집행잔액 발생
2023	- 최근 임금채불 등의 증가로 인해 용자 수요 증가하여 347억원 증액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용자 상한액 인상 등 제도개편('23.7월)에 따른 추가소요를 예상하였으나 실적 저조, 근로자용자 한시적 한도 상향(2.22~6.30) 및 대유위니아 체불발생 등으로 347억원 증액 변경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근로자용자 신청 감소로 103억원 불용발생
2024	- 임금채불 증가 등에 따른 체불청산지원 용자 수요 증가로 370억원 증액
2025	- 경기불황 등으로 체불규모가 증가하여 체불청산지원 용자 사업의 지급수요 증가에 대응하 고자 81억원 증액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선정으로 인해 용자 소요 증가 및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해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용자 지급 신청이 증가로 79억원 증액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국회의결 (2차 추경) (2025.7.4)	체불청산지원 용자(용자)	450	04	8,129	경기불황 등으로 체불규모가 증가하여 체불청산지원 용자 사업의 지급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체불청산지원용 자 증액
기재부협의 (2025.11.18.)	체불청산지원 용자(용자)	450	04	7,875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선정으로 인해 용자 소요 증가 및 장기간 경기 침체로 인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 증액
합 계				16,004	

사 업 명
(4) 임금채권정보화경비(정보화)(3055-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임금채권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	080	08E
명칭	보장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55	301
명칭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임금채권 정보화	임금채권 정보화경비(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임금채권 정보화경비 (정보화)	고용노동부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임금채권 정보화경비 (정보화)	341	341	341	341	341	0	0.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341	341	341	0	0	341	341	341	341	0	0	341
· 임금채권정보화경비(정보화)	341	341	341	0	0	341	341	341	341	0	0	34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임금채권정보화경비(정보화)) 대지급금지급, 변제금 회수, 사업주부담금 징수 등 임금채권보장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정보화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2. 제7조제6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지원 비용의 지급
 3.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용자
 4.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
 5.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6. 임금등 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연구
 7.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 다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임금채권보장사업과 기금의 관리·운용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8년
- 추진배경 : 대지급금 지급, 변제금회수, 사업주부담금 징수 등의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정보화경비를 기금에서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8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41	341	341	341	341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수혜자 : 근로복지공단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파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임금채권정보화경비(정보화)	출연	근로복지공단	341	100.0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 제4호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세부 요구내용

- ① 임금채권정보화경비(정보화) : (2025 계획) 341백만원 → (2026 계획) 341백만원, 전년 동
-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41 백만원	○ 기관운영출연금(350-01) : 341,000천원 1. 정보화운영 : 341,000천원 가. 일반수용비 37,546,000원=37,546천원 나. 공공요금및제세 14,084,000원=14,084천원 다. 급식비 189,000원=189천원 라. 특근매식비 1,108,000원=1,108천원 마. 일·숙직비 186,000원=186천원 바. 임차료 122,249,000원=122,249천원 사. 시설장비유지비 152,385,000원=152,385천원 아. 관리사업비 11,145,000원=11,145천원 자. 기타운영비 913,000원=913천원 차. 국내여비 1,476,000원=1,476천원 카. 업무추진비 719,000원=719천원	341 백만원	○ 기관운영출연금(350-01) : 341,000천원 1. 전산장비 유지관리 : 286,070천원 가. 사용SW 유지관리(SW도입비*요율) 570,000,000원*10%=57,000천원 나. HW유지관리(장비도입비*요율) 957,000,000원*7%=66,990천원 다. 기타설비 유지관리(장비도입비*요율) 214,000,000원*7%=14,980천원 라. 사무용SW 사용료((오피스+한글)*수량) (221,000원+79,000원)*47본=14,100천원 마. 개발SW 유지관리('25기술자평균임금단가*12개월*인원+'26기술자평균임금단가*12개월*인원) 11,000,000원=11,000천원 바. 노후장비 교체 및 증설 122,000,000원=122,000천원 2.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 54,930천원 가. 공공요금및제세(회선사용료) 14,000,000원=14,000천원 나. 기타운영비 : 36,906천원 1) 전산소모품 구입비 1,906,000원=1,906천원 2) 바이러스백신 사용료 2,000,000원=2,000천원 3) 패치관리SW 사용료 33,000,000원=33,000천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다. 특근매식비 9,000원*8명*1회*12회=864천원 라. 기타운영비 1,000,000원=1,000천원 마. 국내여비 90,000원*1명*12개월=1,080천원 바. 관서운영비 30,000원*3명*12회=1,08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신속하고 정확한 대지급금 지급으로 행정서비스 질 제고, 사업주 변제금 회수 및 부담금 징수 업무의 전문화를 통한 실적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매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보화경비 청구 → 고용노동부에서 출연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임금채권보장시스템 분리구축 비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 ('24년 환노위·예결위 결산)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341	0	341	341	324	95.0	95.0	0	17
2023	341	0	341	341	341	100.0	100.0	0	0
2024	341	0	341	341	341	100.0	100.0	0	0
2025	341	0	341	341	341	100.0	100.0	0	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불용 발생
2023	- 이·전용, 불용 등 특이사항 없음
2024	- 이·전용, 불용 등 특이사항 없음
2025	- 이·전용, 불용 등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5) 기금관리비(인건비)(7082-1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임금채권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	080	08E
명칭	보장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2	101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임금채권보장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인건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금관리비 (인건비)	고용노동부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사업시행주체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금관리비 (인건비)	102	105	105	116	116	11	10.5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02	102	102	0	0	105	105	105	104	0	1	116
· 기금관리비(인건비)	102	102	102	0	0	105	105	105	104	0	1	11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금관리비(인건비)) 임금채권보장기금관리 보조요원의 인건비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3 (기금관리요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1
- 추진배경 : 기금관리요원 채용하여 기금의 효율적·전문적 관리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1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6	98	102	105	116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기금관리실무관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세부 요구내용

① 기금관리비(인건비) : (2025 기금 변경) 105 → (2026계획) 116백만원, +10.5%

(2025 당초 계획 105백만원 → 2025 기금 변경 105백만원)

- 공통 처우개선 3.8%, 명절상여금 기본급의 120%,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증액 소요 반영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5 백만원	○ 상용임금(110-03) : 71,773천원 1. 기금관리실무관 초과근무수당('라'등급) (2,535,240원+140,000원)/209시간*38시간*1.5*12월*2명=17,511천원 2. 기금관리실무관 보수('라'등급) 2,535,240원*12월*2명=60,846천원 3. 기금관리실무관 상여금 1,100,000원*2명=2,200천원 4. 기금관리실무관 급식비 140,000원*12월*2명=3,360천원 5. 기금관리실무관 연가보상비 (2,535,240원+140,000원)/209시간*8시간*18일*2명=3,686천원 + (기금변경) 퇴직연금 납입을 위한 감액: -16,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33,227천원 1. 기금관리원 정부부담 사회보험료 : 9,849천원 가. 건강보험료 : 3,515천원 1) 건강보험료 87,773,000원*3.545%=3,112천원 2) 요양보험료 87,773,000원*0.459%=403천원 나. 국민연금 87,773,000원*4.5%=3,950천원 다. 고용보험료 87,773,000원*1.75%=1,536천원 라. 산재보험료 87,773,000원*0.966%=848천원 2. 기금관리원 퇴직연금 부담금 87,773,000원/12=7,314천원 + (기금변경) 퇴직연금 납입을 위한 증액: 16,000천원	116 백만원	○ 상용임금(110-03) : 96,880천원 1. 기금관리실무관 초과근무수당('라'등급) (2,631,570원+140,000원+2,631,570원*120%/12월)/209시간*38시간*1.5*12월*2명=19,864천원 2. 기금관리실무관 보수('라'등급) 2,631,570원*12월*2명=63,158천원 3. 기금관리실무관 상여금 2,631,570원*120%*2명=6,316천원 4. 기금관리실무관 급식비 140,000원*12월*2명=3,360천원 5. 기금관리실무관 연가보상비 (2,631,570원+140,000원+2,631,570원*120%/12월)/209시간*8시간*18일*2명=4,182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19,120천원 1. 기금관리원 정부부담 사회보험료 : 11,094천원 가. 건강보험료 : 3,873천원 1) 건강보험료 96,719,000원*3.545%=3,429천원 2) 요양보험료 96,719,000원*0.459%=444천원 나. 국민연금 96,719,000원*4.75%=4,594천원 다. 고용보험료 96,719,000원*1.75%=1,693천원 라. 산재보험료 96,719,000원*0.966%=934천원 2. 기금관리원 퇴직연금 부담금 96,719,000원*8.33%=8,057천원 3. 단수조정 -31,000원=△31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정한 집행과 효율적 관리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매월 급여지급일에 급여, 초과근무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86	0	86	86	86	100.0	100.0	0	0
2023	98	0	98	98	98	100.0	100.0	0	0
2024	102	0	102	102	102	100.0	100.0	0	0
2025	105	0	105	105	104	99.0	99.0	0	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기금관리실무관 퇴직연금(DB형) 적립금 납입을 위하여 7백만원 전용
2023	- 기금관리실무관 퇴직연금(DB형) 적립금 납입을 위하여 18백만원 전용
2024	- 기금관리실무관 퇴직연금(DB형) 적립금 납입을 위하여 18백만원 전용
2025	- 기금관리실무관 퇴직연금(DB형) 적립금 납입을 위하여 16백만원 전용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025.12.11.)	기금관리비 (인건비)	110	03	△16	기금관리실무관 퇴직연금(DB형) 적립금 납입을 위한 자체 전용
		320	09	16	
합 계				0	

사 업 명
(6) 사업운영비(제도운영인건비)(7082-1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임금채권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	080	08E
명칭	보장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2	102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임금채권보장기금운영비	사업운영비(제도운영인건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사업운영비 (제도운영인건비)	고용노동부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사업시행주체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사업운영비 (제도운영인건비)	796	804	804	885	885	81	10.1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802	802	796	0	6	804	804	804	796	0	8	885
· 사업운영비(제도운영인건비)	802	802	796	0	6	804	804	804	796	0	8	88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업운영비(제도운영인건비)) 임금채권보장제도 전담요원의 인건비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3 (기금관리요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5
- 추진배경 : 임금채권보장업무 전담 조사요원을 채용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업무 효율적 관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5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58	758	802	804	885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기금관리실무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세부 요구내용

① 사업운영비(제도운영인건비) : (2025 기금 변경) 804 → (2026계획) 885백만원, +10.1%
(2025 당초 계획 804백만원 → 2025 기금 변경 804백만원)

- 공통 처우개선 3.8%, 명절상여금 기본급의 120%,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증액 소요 반영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04 백만원	○ 상용임금(110-03) : 586,701천원 1. 기금관리원 보수 : 653,755천원천원 가. 월급여 : 539,426천원천원 1) 라등급 2,461,540원*12월*13명=384,000천원 2) 마등급 2,158,700원*12월*6명=155,426천원 나. 초과근무수당 : 61,509천원 1) 라등급 (2,461,540원+140,000원)/209시간*15시간*1.5*12월*13명=43,691천원 2) 마등급 (2,158,700원+140,000원)/209시간*15시간*1.5*12월*6명=17,818천원 다. 상여금 1,100,000원*19명=20,900천원 라. 급식비 140,000원*12월*19명=31,920천원 2. 연가보상비 : 18,908천원 가. 라등급 (2,461,540원+140,000원)/209시간*8.3시간*10일*13명=13,431천원 나. 마등급 (2,158,700원+140,000원)/209시간*8.3시간*10일*6명=5,477천원 + (기금변경) 퇴직연금 납입을 위한 감액: -87,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218,299천원 1. 기금관리원 정부부담 사회보험료 : 75,477천원 가. 건강보험료 : 26,935천원 1) 건강보험료 672,701,000원*3.545%=23,847천원 2) 요양보험료 672,701,000원*0.459%=3,088천원 나. 국민연금 672,701,000원*4.5%=30,272천원 다. 고용보험료 672,701,000원*1.75%=11,772천원 라. 산재보험료 672,701,000원*0.966%=6,498천원 2. 기금관리원 퇴직연금 672,701,000원/12=56,058천원 3. 단수조정 -236,000원=-236천원 + (기금변경) 퇴직연금 납입을 위한 증액: 87,000천원	885 백만원	○ 상용임금(110-03) : 739,179천원 1. 기금관리실무관 보수 : 721,291천원 가. 월급여 : 570,743천원 1) 라등급 2,604,450원*12월*13명=406,294천원 2) 마등급 2,284,020원*12월*6명=164,449천원 나. 초과근무수당 : 61,554천원 1) 라등급 (2,604,450원+140,000원+2,604,450원*120%/12월)/209시간*13시간*1.5*12월*13명=43,736천원 2) 마등급 (2,284,020원+140,000원+2,284,020원*120%/12월)/209시간*13시간*1.5*12월*6명=17,818천원 다. 상여금 2,604,450원*120%*13명+2,284,020원*120%*6명=57,074천원 라. 급식비 140,000원*12월*19명=31,920천원 2. 연가보상비 : 17,888천원 가. 라등급 (2,604,450원+140,000원+2,604,450원*120%/12월)/209시간*8시간*8.5일*13명=12,710천원 나. 마등급 (2,284,020원+140,000원+2,284,020원*120%/12월)/209시간*8시간*8.5일*6명=5,178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145,821천원 1. 기금관리원 정부부담 사회보험료 : 84,795천원 가. 건강보험료 : 29,601천원 1) 건강보험료 739,284,000원*3.545%=26,208천원 2) 요양보험료 739,284,000원*0.459%=3,393천원 나. 국민연금 739,284,000원*4.75%=35,116천원 다. 고용보험료 739,284,000원*1.75%=12,937천원 라. 산재보험료 739,284,000원*0.966%=7,141천원 2. 기금관리원 퇴직연금 739,284,000원*8.33%=61,582천원 3. 단수조정 -556,000원=△556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도산등사실인정 업무의 효율적 관리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매월 급여지급일에 급여, 초과근무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658	0	658	658	649	98.6	98.6	0	9
2023	758	0	758	758	755	99.6	99.6	0	3
2024	802	0	802	802	796	99.3	99.3	0	6
2025	804	0	804	804	796	99.0	99.0	0	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기금관리실무관 퇴직연금(DB형) 적립금 납입을 위하여 5백만원 전용
2023	- 기금관리실무관 퇴직연금(DB형) 적립금 납입을 위하여 57백만원 전용
2024	- 기금관리실무관 퇴직연금(DB형) 적립금 납입을 위하여 89백만원 전용
2025	- 기금관리실무관 퇴직연금(DB형) 적립금 납입을 위하여 87백만원 전용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 변경 (2025.12.11.)	사업운영비 (제도운영인건비)	110	03	△87	기금관리실무관 퇴직연금(DB형) 적립금 납입을 위한 자체 전용
		320	09	87	
합 계				0	

사 업 명
(7) 사업운영비(공단인건비)(7082-1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임금채권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	080	08E
명칭	보장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2	103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임금채권보장기금운영비	사업운영비(공단인건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사업운영비 (공단인건비)	고용노동부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사업운영비 (공단인건비)	13,228	13,818	13,872	15,514	15,514	1,696	12.3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3,228	13,228	13,228	0	0	13,818	13,872	13,872	13,872	0	0	15,514
· 사업운영비(공단인건비)	13,228	13,228	13,228	0	0	13,818	13,872	13,872	13,872	0	0	15,51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업운영비(공단인건비)) 대지급금지급, 변제금 회수, 사업주부담금 징수 등 임금채권 보장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2. 제7조제6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지원 비용의 지급
 3.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용자
 4.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
 5.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6. 임금등 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연구
 7.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 다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임금채권보장사업과 기금의 관리·운용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1998
- 추진배경 : 대지급금 지급, 변제금회수, 사업주부담금 징수 등의 업무를 위탁수행 하는 근로복지공단 인건비를 기금에서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8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664	12,881	13,228	13,818	15,514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수혜자 : 근로복지공단직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사업운영비 (공단인건비)	출연	근로복지 공단	15,514	100.0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 제4호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세부 요구내용

- ① 사업운영비(공단인건비) : (2025 기금 변경) 13,872백만원 → (2026 계획) 15,514백만원, +11.8%
(2025 당초 계획 13,818백만원 → 2025 기금 변경 13,872백만원)
- 공통 처우개선 3.5%, 추가소요 1,269백만원('25년 정기증원 인건비 잔여 6개월분: 168백만원, '25년 수시증원 인건비 12개월분: 1,101백만원)), 특이소요 54백만원(내부평가 성과급 재원 부족 소요: 54백만원), 완료소요 150백만원(혁신가이드라인 이행 감액 반영: △150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872 백만원	○ 기관운영출연금(350-01) : 13,872,000천원 1. '25년 인건비 13,818,000,000원=13,818,000천원 + (기금변경)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 노사지도 지침 변경 : 54,000천원	15,514 백만원	○ 기관운영출연금(350-01) : 15,514,000천원 1. '25년 인건비 13,818,000,000원=13,818,000천원 2. 인건비 증감분 14,937,000,000원*3.5%=522,795천원 3. '25년 정기증원 인건비 잔여 6개월분 168,000,000원=168,000천원 4. '25년 수시증원 인건비 12개월분 1,101,000,000원=1,101,000천원 5. 내부평가 성과급 재원 부족 소요 54,000,000원=54,000천원 6. 혁신가이드라인 이행 감액 -150,000,000원=△150,000천원 7. 단수조정 205,000원=205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신속하고 정확한 대지급금 지급으로 행정서비스 질 제고, 사업주 변제금 회수 및 부담금 징수 업무의 전문화를 통한 실적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매월 근로복지공단에서 인건비 청구 → 고용노동부에서 출연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1,664	354	12,018	12,018	12,018	100.0	100.0	0	0
2023	12,881	0	12,881	12,881	12,881	100.0	100.0	0	0
2024	13,228	0	13,228	13,228	13,228	100.0	100.0	0	0
2025	13,818	54	13,872	13,872	13,872	100.0	100.0	0	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통상임금 소송('18년 시간외수당 등 차액분)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소송금액 및 이자비용 등 지급을 위한 인건비 기금운용계획 변경
2023	- 이·전용, 불용 등 특이사항 없음
2024	- 이·전용, 불용 등 특이사항 없음
2025	-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 노사지도 지침 변경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부족분 증액변경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기재부협의 (2025.12.23.)	사업운영비 (공단인건비)	350	01	54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 노사지도 지침 변경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부족분 증액변경
합 계				54	

사 업 명
(8) 기금관리비(기타경비)(7082-2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임금채권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	080	08E
명칭	보장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2	201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임금채권보장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기타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고용노동부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사업시행주체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14	14	14	14	14	0	0.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4	14	14	0	0	14	14	14	14	0	0	14
· 기금관리비(기타경비)	14	14	14	0	0	14	14	14	14	0	0	1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금관리비(기타경비)) 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2. 제7조제6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지원 비용의 지급
 3.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융자
 4.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
 5.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6. 임금등 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연구
 7.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 다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
- 8. 그 밖에 임금채권보장사업과 기금의 관리·운용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1998년
- 추진배경 : 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8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	14	14	14	14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세부 요구내용

① 기금관리비(기타경비) : (2025 계획) 14 → (2026 계획) 14백만원, 전년 동

-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1,851천원 1.임금채권보장기금관리 : 11,800천원 가. 기금운용계획인쇄 10,000원*50부=500천원 나.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수당 100,000원*13명*5회=6,500천원 다. 임금채권보장기금자산운용위원회수당 100,000원*6명*8회=4,800천원 2. 단수조정 51,000원=51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1,400천원 1.기금관리원맞춤형복지지원 500,000원*2명=1,000천원 2.기타복리후생비 400,000원=4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749천원 1.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간담회 749,000원=749천원	14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1,851천원 1.임금채권보장기금관리 : 11,800천원 가. 기금운용계획인쇄 10,000원*50부=500천원 나.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수당 100,000원*13명*5회=6,500천원 다. 임금채권보장기금자산운용위원회수당 100,000원*6명*8회=4,800천원 2. 단수조정 51,000원=51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1,400천원 1.기금관리원맞춤형복지지원 500,000원*2명=1,000천원 2.기타복리후생비 400,000원=4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749천원 1.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간담회 749,000원=749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 및 자금 배정 → 임채기금(위원회 개최 등) 관련 업무 수행 → 비용정산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5	0	15	15	14	93.3	93.3	0	1
2023	14	0	14	14	14	100.0	100.0	0	0
2024	14	0	14	14	14	100.0	100.0	0	0
2025	14	0	14	14	14	100.0	100.0	0	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전용, 불용 등 특이사항 없음
2023	- 이·전용, 불용 등 특이사항 없음
2024	- 이·전용, 불용 등 특이사항 없음
2025	- 이·전용, 불용 등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9) 사업운영비(제도운영기타경비)(7082-2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임금채권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	080	08E
명칭	보장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2	202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임금채권보장기금운영비	사업운영비(제도운영기타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사업운영비 (제도운영기타경비)	고용노동부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사업시행주체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사업운영비 (제도운영 기타경비)	415	318	373	318	308	△10	-3.1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329	420	415	0	5	318	373	373	358	12	3	308
· 사업운영비(제도운영기타경비)	329	420	415	0	5	318	373	373	358	12	3	30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업운영비(제도운영기타경비)) 임금채권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여비, 정책연구비, 포상금 등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2. 제7조제6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지원 비용의 지급
 3.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용자
 4.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
 5.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6. 임금등 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연구
 7.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 다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임금채권보장사업과 기금의 관리·운용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1998
- 추진배경 : 임금채권보장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8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84	344	329	318	308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기금관리실무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세부 요구내용

- ① 사업운영비(제도운영기타경비) : (2025 기금 변경) 373 → (2026계획) 308백만원, -17.4%
(2025 당초 계획 318백만원 → 2025 기금 변경 373백만원)
- 공통감액 △5%, PBS 47백만원 감액, 신고포상금 50백만원 반영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73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67,766천원 - 임금채권보장제도업무처리요령인쇄 15,000원*1,000부=15,000천원 - 임금채권보장법령집발간 10,000원*1,000부=10,000천원 - 기금운용평가서유인 10,000원*50부=500천원 - 결산보고서 인쇄 10,000원*50부=500천원 - 임금채권보장제도Workshop 5,000,000원=5,000천원 - 임금채권보장제도홍보비 : 15,000천원 가. 신문광고 5,000,000원=5,000천원 나. 인터넷 배너 광고 10,000,000원=10,000천원 - 임금채권보장부담금비용안내신문광고(5단*18.5cm)*5개일간지 5,000,000원=5,000천원 - 도산등심의위원회심의수당 7,068,000원=7,068천원 - 결산회계감리비용 10,000,000원=10,000천원 - 단수조정 -302,000원=-302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1,000천원 - 기금운용계획작성및결산 7,000원*70일*2명=980천원 - 단수조정 20,000원=20천원 ○ 임차료(210-07) : 9,000천원 - 근로감독관 역량강화 교육 임차료 9,000,000원=9,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13,300천원 - 기금관리원맞춤형복지지원 500,000원*19명=9,500천원 - 기타 복리후생비 3,800,000원=3,8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20,000천원 - 자산운용 성과평가 20,000,000원=2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63,679천원 - 사실상 도산인정 현지확인 가. 관내 26,679,000원=26,679천원 나. 관외	308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54,766천원 - 임금채권보장제도업무처리요령인쇄 15,000원*1,000부=15,000천원 - 임금채권보장법령집발간 10,000원*1,000부=10,000천원 - 기금운용평가서유인 10,000원*50부=500천원 - 결산보고서 인쇄 10,000원*50부=500천원 - 임금채권보장제도Workshop 5,000,000원=5,000천원 - 임금채권보장제도홍보비 : 15,000천원 가. 신문광고 5,000,000원=5,000천원 나. 인터넷 배너 광고 10,000,000원=10,000천원 - 임금채권보장부담금비용안내신문광고(5단*18.5cm)*5개일간지 5,000,000원=5,000천원 - 도산등심의위원회심의수당 7,068,000원=7,068천원 - 결산회계감리비용 10,000,000원=10,000천원 - 단수조정 -302,000원=-302천원 - 공통절감 -5% -13,000,000원=-13,0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1,000천원 - 기금운용계획작성및결산 7,000원*70일*2명=980천원 - 단수조정 20,000원=20천원 ○ 임차료(210-07) : 9,000천원 - 근로감독관 역량강화 교육 임차료 9,000,000원=9,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13,300천원 - 기금관리원맞춤형복지지원 500,000원*19명=9,500천원 - 기타 복리후생비 3,800,000원=3,8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20,000천원 - 자산운용 성과평가 20,000,000원=2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63,679천원 - 사실상 도산인정 현지확인 가. 관내 26,679,000원=26,679천원 나. 관외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7,000,000원=37,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9,121천원 1.제도연구 : 8,943천원 가. 항공료 1,500,000원*2*2명=6,000천원 나. 일비 \$30*2명*6일=497천원 다. 숙박비 \$137*2명*6일=2,269천원 라. 식비 \$59*2명*6일=977천원 2.단수조정 178,000원=178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31,134천원 1. 임금채권보장제도개선간담회 20,000,000원=20,000천원 2. 도산인정업무처리를위한유관기관업무협의 3,134,000원=3,134천원 3. 근로감독관 역량강화 교육 8,000,000원=8,00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60,000천원 1.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용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60,000,000원=60,000천원 ○ 포상금(310-03) : 98,093천원 1.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13,000,000원=13,000천원 + (기금변경)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증액 : 55,093천원 2. 도산등사실인정 처리실적 우수지방관서 포상금 30,000,000원=30,000천원		37,000,000원=37,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9,121천원 1.제도연구 : 8,943천원 가. 항공료 1,500,000원*2*2명=6,000천원 나. 일비 \$30*2명*6일=497천원 다. 숙박비 \$137*2명*6일=2,269천원 라. 식비 \$59*2명*6일=977천원 2.단수조정 178,000원=178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31,134천원 1. 임금채권보장제도개선간담회 20,000,000원=20,000천원 2. 도산인정업무처리를위한유관기관업무협의 3,134,000원=3,134천원 3. 근로감독관 역량강화 교육 8,000,000원=8,00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60,000천원 1.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용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60,000,000원=60,000천원 ○ 포상금(310-03) : 93,000천원 1.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63,000,000원=63,000천원 2. 도산등사실인정 처리실적 우수지방관서 포상금 30,000,000원=3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도산등사실인정 업무의 효율적 관리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 및 자금 배정 → 임채기금 관련 업무 수행 → 비용정산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484	0	484	484	454	93.8	93.8	8	22
2023	344	0	344	352	350	101.7	99.4	0	2
2024	329	91	420	420	415	98.8	98.8	0	5
2025	318	55	373	373	358	96.0	96.0	12	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지방관서 국내여비 부족, 신고포상금 신청 등으로 소요재원 마련을 위한 계획 변경 - 연구용역비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 책임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2022.11.8. ~ 2023.3.7.)」계약기간 미도래로 8백만원 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
2023	- 신고포상금 신청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소요재원 마련을 위한 자체계획 변경
2024	- 신고포상금 신청 따른 소요재원 마련을 위한 91백만원 증액 변경 및 대지급금 조력지원 세부사업 예산 미반영으로 사업운영비(제도운영기타경비)에서 대지급금 조력지원 사업비를 집행하여, 부족분에 대한 세목조정(11백만원) 및 자체전용(9백만원)
2025	- '25년도 대지급금 조력지원 사업비 예산 미반영으로 대지급금 조력지원 비용을 사업운영비(제도운영기타경비)에서 집행함에 따라 소요 재원 마련을 위한 자체계획 변경 - 신고포상금 증가에 따른 소요재원 마련 - 정책연구비 「대지급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연구(2025.7.4. ~ 2026.2.6)」계약기간 미도래로 12백만원 이월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025.5.15)	사업운영비 (제도운영 기타경비)	210	01	20	'25년도 대지급금 조력지원 사업비 예산 미반영으로 대지급금 조력지원 비용을 사업운영비(제도운영기타경비)에서 집행함에 따라 소요 재원 마련
		210	05	-1	
		210	07	-10	
		220	09	-9	
기재부협의 (2025.12.23.)	사업운영비 (제도운영 기타경비)	310	03	55	신고포상금 증가에 따른 소요 재원 마련
합 계				55	

사 업 명
(10) 사업운영비(공단기타경비)(7082-2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임금채권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	080	08E
명칭	보장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2	203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임금채권보장기금운영비	사업운영비(공단기타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사업운영비 (공단기타경비)	고용노동부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사업운영비 (공단기타경비)	1,885	1,890	1,890	2,042	2,042	152	8.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885	1,885	1,885	0	0	1,890	1,890	1,890	1,890	0	0	2,042
· 사업운영비(공단기타경비)	1,885	1,885	1,885	0	0	1,890	1,890	1,890	1,890	0	0	2,04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업운영비(공단기타경비)) 대지급금지급, 변제금 회수, 사업주부담금 징수 등 임금채권보장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기타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2. 제7조제6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지원 비용의 지급
 3.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용자
 4.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
 5.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6. 임금등 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연구
 7.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 다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임금채권보장사업과 기금의 관리·운용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1998
- 추진배경 : 대지급금 지급, 변제금회수, 사업주부담금 징수 등의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기타경비를 기금에서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8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727	3,288	1,885	1,890	2,042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수혜자 : 근로복지공단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사업운영비 (공단기타경비)	출연	근로복지 공단	2,042	100.0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 제4호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세부 요구내용

① 사업운영비(공단기타경비) : (2025 당초 계획) 1,890백만원 → (2026 계획) 2,042백만원, +8.0%

- **공통절감 △76백만원(△5%), 완료소요 △49백만원**(혁신가이드라인 이행 관련 선택적 복리비 감액: △3백만원, 특별민원으로부터 직원보호 위한 연동경비: △30백만원, 대전서부지사 이전 비용: △16백만원), **추가소요 16백만원**(‘25년 정기증원 선택적복리비 잔여 6개월분: 3백만원, ‘25년 수시증원 선택적복리비 12개월분: 13백만원), **특이소요 261백만원**(임차청사 임차료·관리비 인상소요: 27백만원, 경인지역본부 완공에 따른 이전 등 개청 소요: 174백만원, 노후 및 임차 차량 및 셔틀버스 교체 소요: 11백만원,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추가처우개선: 6백만원, ‘26년 소속기관 이전 소요(평택, 성남, 청주, 포항): 43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90 백만원	○ 기관운영출연금(350-01) : 1,890,000천원 1. 기타경비 : 1,890,000천원 가. 운영비 : 1,486,965천원 1) 일반수용비 87,600,000원=87,600천원 2) 공공요금및제세 339,100,000원=339,100천원 3) 특근매식비 8,465,000원=8,465천원 4) 유류비 12,600,000원=12,600천원 5) 복리후생비 147,400,000원=147,400천원 6) 기타운영비 118,800,000원=118,800천원 7) 청사 임차료 348,000,000원=348,000천원 8) 청사 시설장비유지비 425,000,000원=425,000천원 나. 여비 : 128,640천원 1) 국내여비 119,235,000원=119,235천원 2) 국외업무여비 9,405,000원=9,405천원 다. 업무추진비 : 24,795천원 1) 사업추진비 19,665,000원=19,665천원	2,042 백만원	○ 기관운영출연금(350-01) : 2,042,000천원 1. 기타경비 : 2,042,000천원 가. 운영비 : 1,602,759천원 1) 일반수용비 97,600,000원=97,600천원 2) 공공요금및제세 371,100,000원=371,100천원 3) 특근매식비 5,925,000원=5,925천원 4) 유류비 8,694,000원=8,694천원 5) 복리후생비 160,400,000원=160,400천원 6) 기타운영비 95,040,000원=95,040천원 7) 청사 임차료 359,000,000원=359,000천원 8) 청사 시설장비유지비 505,000,000원=505,000천원 나. 여비 : 89,292천원 1) 국내여비 79,887,000원=79,887천원 2) 국외업무여비 9,405,000원=9,405천원 다. 업무추진비 : 24,795천원 1) 사업추진비 19,665,000원=19,665천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 관서업무추진비 5,130,000원=5,130천원 라. 직무수행경비 : 30,600천원 1) 직책수행경비 30,600,000원=30,600천원 마. 유형자산 : 21,000천원 1) 자산취득비 21,000,000원=21,000천원 바. 외부콜센터 : 198,000천원 1) 외부콜센터 직원인건비 198,000,000원=198,000천원		2) 관서업무추진비 5,130,000원=5,130천원 라. 직무수행경비 : 30,600천원 1) 직책수행경비 30,600,000원=30,600천원 마. 유형자산 : 90,554천원 1) 자산취득비 90,554,000원=90,554천원 바. 외부콜센터 : 204,000천원 1) 외부콜센터 직원인건비 204,000,000원=204,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신속하고 정확한 대지급금 지급으로 행정서비스 질 제고, 사업주 변제금 회수 및 부담금 징수 업무의 전문화를 통한 실적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매월 근로복지공단에서 기타경비 청구 → 고용노동부에서 출원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2,727	0	2,727	2,727	2,659	97.5	97.5	0	68
2023	3,288	1,550	4,838	4,838	4,838	100.0	100.0	0	0
2024	1,885	0	1,885	1,885	1,885	100.0	100.0	0	0
2025	1,890	0	1,890	1,890	1,890	100.0	100.0	0	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불용 발생
2023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신규 소송업무 수행에 따라 소송제기 사건 급증으로 소송비용 마련
2024	- 이·전용, 불용 등 특이사항 없음
2025	- 이·전용, 불용 등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11)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9202-84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임금채권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	080	08E
명칭	보장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200	9202	840
명칭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고용노동부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사업시행주체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공공자금관리 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0	969	969	4,875	2,565	1,596	164.7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0	0	0	0	0	969	969	969	0	0	969	2,565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0	0	0	0	0	969	969	969	0	0	969	2,56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에 따른 이자상환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 공공자금관리기본법 제6조(총괄계정의 채원과 용도)
- ② 추진경위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에 따른 이자상환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5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969	2,565

- 기타 : 해당없음

-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세부 요구내용

①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 (2025 계획) 969 → (2026계획) 2,565백만원, 1,596백만원 증액

-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25년 및 '26년 각각 570억원 예수에 따른 이자 반영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69 백만원	○ 예수금이자(510-05) : 969,000천원 1.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969,000,000원=969,000천원	2,565 백만원	○ 예수금이자(510-05) : 2,565,000천원 1.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57,000,000,000원 \times 3\% + 57,000,000,000원 \times 3\% \times 50\% = 2,565,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예수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안정화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매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이자 상환 요청 → 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이자 상환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	-	-	-	-	-	-	-	-
2023	-	-	-	-	-	-	-	-	-
2024	-	-	-	-	-	-	-	-	-
2025	969	0	969	969	0	0.0	0.0	0	96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전용, 불용 등 특이사항 없음
2023	- 이·전용, 불용 등 특이사항 없음
2024	- 이·전용, 불용 등 특이사항 없음
2025	- 이·전용, 불용 등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12) 한국은행예치(9704-97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임금채권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	080	08E
명칭	보장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4	971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	한국은행예치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한국은행예치	고용노동부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사업시행주체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한국은행예치	4,576	4,671	4,671	4,671	4,671	0	0.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4,671	4,671	4,576	0	0	4,671	4,671	4,671	5,850	0	0	4,671
· 한국은행예치	4,671	4,671	4,576	0	0	4,671	4,671	4,671	5,850	0	0	4,67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한국은행예치) 회계연도 말 여유자금 운용 또는 기타 지출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한국은행 국고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2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 ②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및 제10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중 “보험급여”는 “대지급금”으로, “보험료수입”은 “부담금수입”으로 본다.

② 추진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1998년
- 추진배경 : 회계연도 말 부득이 지출되지 못하고 국고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한국은행 예치금으로 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8년~계속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세부 요구내용

① 한국은행예치 : (2025 계획) 4,671 → (2026계획) 4,671백만원

- 한국은행 국고잔액 평균금액 수준 반영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671 백만원	○ 한국은행예치금(470-01) : 4,671,000천원 1. 한국은행 예치금 4,671,000,000원=4,671,000천원	4,671 백만원	○ 한국은행예치금(470-01) : 4,671,000천원 1. 한국은행 예치금 4,671,000,000원=4,671,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 임금채권보장 사업의 적절한 수행 및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회계연도 말일 한국은행 시재 파악 → 지출 재원으로 사용 또는 여유재원은 통화 및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 → 이후 한국은행 국고계좌로 입금되거나 시재 미파악 부분이 한국은행에 예치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4,861	0	4,861	4,861	4,980	102.4	102.4	0	0
2023	4,671	0	4,671	4,671	3,601	77.1	77.1	0	0
2024	4,671	0	4,671	4,671	4,576	98.0	98.0	0	0
2025	4,671	0	4,671	4,671	5,850	125.2	125.2	0	0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

사 업 명
(13)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04-97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임금채권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	080	08E
명칭	보장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4	973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비통화금융 기관예치	고용노동부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사업시행주체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비통화금융 기관예치	116,777	280,090	70,325	41,576	42,025	-238,065	-85.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325,005	33,036	116,777	0	0	280,090	70,325	70,325	143,654	0	0	42,025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325,005	33,036	116,777	0	0	280,090	70,325	70,325	143,654	0	0	42,02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여유자금(기금 적립금)을 비통화금융기관(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에 수익증권(채권형, 주식형, 단기자금 등)으로 예치하여 기금 조성에 기여하고, 기금의 지출 수요에 대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8조에 따른 사업주의 변제금(辨濟金)
 2. 제9조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
 3. 제2항에 따른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2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 ②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및 제10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중 “보험급여”는 “대지급금”으로, “보험료수입”은 “부담금수입”으로 본다.

② 추진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1998년
- 추진배경 : 여유자금(기금 적립금)을 비통화금융기관(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에 일정비율 예치하여 기금운영의 안정성과 수익성, 유동성 확보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8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8,951	176,606	325,005	121,127	42,025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직접관리(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임금채권보장기금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26년도 여유자금 운용 금액(당해년도 여유자금 회수액 및 수지차를 합한 금액)
42,025백만원을 비통화금융기관에 전부 예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유동성을 확보하여 기금 조성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분기별 자산운용계획에 따른 자산군별 투자 비중내에서 채권형·주식형 등의 수익증권 운용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58,951	-3,463	155,488	155,488	70,073	45.1	45.1	0	0
2023	176,606	-166,934	9,672	9,672	79,316	820.1	820.1	0	0
2024	325,005	-291,969	33,036	33,036	116,777	353.5	353.5	0	0
2025	280,090	-209,765	70,325	70,325	143,654	204.3	204.3	0	0

2) 주요 결산사항

2022	- 무료법률구조지원 사업비 집행이 소송사건이 종결된 후 집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따른 영향 효과가 소송 소요기간(3개월 이상)만큼 늦게 반영되는 차이가 있고,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송물 단가도 인상됨에 따른 추가 소요 마련을 위한 감액 및 근로복지공단 직원 통상 임금 소송('18년 시간외수당 등 차액분)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소송금액 및 이자비용 등 지급을 위한 인건비 마련을 위한 감액
2023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신규 소송업무 수행에 따라 소송제기 사건 급증으로 소송비용 및 임금채불 증가로 사업비 소요재원 마련을 위한 감액
2024	- 임금채불 증가로 사업비 및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소요재원 마련을 위한 감액
2025	- 임금채불 증가로 사업비 및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소요재원 마련을 위한 감액 -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 노사지도 지침 변경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부족분 소용재원 마련을 위한 감액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국회의결 (1차 추경) (2025.5.1)	비통화금융 기관예치	470	03	△150,834	대미 관세정책 여파 등으로 내수부진 지속,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가 예상되어 체불규모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 소요재원 마련을 위한 감액
국회의결 (2차 추경) (2025.7.4)	비통화금융 기관예치	470	03	△8,129	경기불황 등으로 체불규모가 증가하여 체불청산지원 용자 사업의 지급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체불청산지원용자 소요재원 마련을 위한 감액
기재부협의 (2025.11.18.)	비통화금융 기관예치	470	03	△50,693	임금채불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소요재원 마련을 위한 감액
기재부협의 (2025.12.23.)	비통화금융 기관예치	470	03	△109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 노사지도 지침 변경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부족분 및 신고포상금 증가에 따른 소요재원 마련을 위한 감액
합 계				△209,765	

V. 근로복지진흥기금

사 업 명
(1) 근로자복지지원(306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근로복지 진흥기금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중소복지계정	080	08E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61	301
명칭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근로자복지지원	근로자복지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근로자 복지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 원, %)

목 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근로자복지지원	3,750	1,558	1,558	1,607	1,607	49	3.1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 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 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3,812	3,812	3,750	0	62	1,558	1,558	1,558	1,558	0	0	1,607
· 문화예술제	407	407	407	0	0	407	407	407	407	0	0	407
· 기업복지활성화지원	1,151	1,151	1,151	0	0	1,151	1,151	1,151	1,151	0	0	1,200
· 직장여성아파트관리운영	2,254	2,254	2,192	0	62	0	0	0	0	0	0	0

나. 사업 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문화예술제) 노동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가요·미술·문학·연극 등 4가지 분야의 문화 예술제를 개최함으로써 건전한 노동문화 창출로 여가 활동 유도과 근로의욕 증대
-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 및 소속 노동자에게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무상 제공

* 지원 내용: 직무스트레스, 조직 내 소통, 직장 내 괴롭힘, 자살 등 15개 분야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 (직장여성아파트 관리 운영) 저소득 여성 노동자에게 아파트를 저렴하게 임차

2) 사업개요

□ 사업 근거 및 추진 경위

- ① 법령상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 및 제91조

제83조(근로자지원프로그램)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개인의 고충 등 업무 저해 요인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상담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9. 근로자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10.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지원
11. 근로자지원프로그램 관련 지원

② 추진 경위

○ 문화예술제

- '80. 11. 제1회 『노동문화제』 (미술 분야) 개최(주최: 노동부)
- '81. 5. 문학 분야 신설, 국무총리상 신설(제2회)
- '85. 5. 음악 분야 신설(제6회)
- '86. 9. 노동문화제 사업 이관[노동부→근로복지공사
- '88. 10. 연극 분야 신설(제9회)
- '92. 4. 명칭 변경[노동문화제→근로자문화예술제](제13회)
- '95. 1. 기금사업 편입(일반회계→근로복지진흥기금)
- '96. 6. 대통령상 신설
- '24. 1. 미술제 웹툰 분야 신설
- '25. 제46회 근로자문화예술제 개최

○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 '08. 5. '09년 2월 고용노동부장관 업무보고
 - *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 확산, 우리사주제 등 선진기업복지제도 활성화 주력
- '09. 3.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 정책 추진 방향 보고
 -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근로복지 추진
- '09. 11.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 개정 시 선택적복지·근로자지원프로그램 관련 규정 신설
- '10년 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 사업 시행
 - * 기업 복지 컨설팅,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제공
- '15. 2.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컨설팅 신설
- '16. 사업 명칭 변경(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 →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 '20.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개편(EAP, 퇴직연금, 선택적복지, 사내공동기금 → 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 컨설팅에 집중)
- '23. 1. 중소기업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지원 확대에 지출구조 조정(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 컨설팅 '22년 사업 종료)

○ 직장여성아파트 관리 운영

- '81. 3. 대통령 지시로 사업 추진
- '85. 10.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건립 지침에 따라 건설되어 운영
- '12. 10. 명칭 변경(근로여성임대아파트→직장여성아파트)
- '18. 10. 사업 종료(LH 행복주택으로 사업전환 추진)

□ 주요 내용

① 사업 규모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사업 기간
(문화예술제) '80년 ~ 계속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10년 ~ 계속
(직장여성아파트 관리 운영) '85년부터 운영, '18년 사업 종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646	1,564	3,812	1,558	1,607

②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시행 방법: 직접 수행
- 사업 시행 주체: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문화예술제) 재직 노동자(산재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포함), 산재보험 가입 중소기업 사업주,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

(직장여성아파트 관리 운영) 저소득 여성 노동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 근거: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문화예술제

: (2025 당초 계획) 407백만 원 → (2026 계획) 407백만 원, 전년 동

- (요구) 행사 개최를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미술, 문학, 연극 및 가요 4개 분야 입선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 90백만 원
위탁관리비 291백만 원
사업운영비 26백만 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07	○ 일반수용비(210-01) : 113,162천 원 1. 공통 12,855천 원 가. 상장 및 상장 표지 제작비 : 3,700원×231개=855천 원 나. 시상금 12,000천 원 · 대통령상 7,000,000원×1명=7,000천 원 · 국무총리상 : 5,000,000원×1명=5,000천 원 2. 미술 분야31,000천 원 가. 근로자미술제 시상금 24,000천 원 · 대상 : 4,000,000원×1명=4,000천 원 · 금상 : 2,000,000원×4명=8,000천 원 · 은상 : 1,000,000원×4명=4,000천 원 · 동상 : 500,000원×16명=8,000천 원 나. 노동문화협회 지원 : 7,000,000원=7,000천 원 3. 문학 분야24,000천 원 가. 근로자문학제 시상금 24,000천 원 · 대상 : 4,000,000원×1명=4,000천 원 · 금상 : 2,000,000원×4명=8,000천 원 · 은상 : 1,000,000원×4명=4,000천 원 · 동상 : 500,000원×16명=8,000천 원	407	○ 일반수용비(210-01) : 113,162천 원 1. 공통 12,855천 원 가. 상장 및 상장 표지 제작비 : 3,700원×231개=855천 원 나. 시상금 12,000천 원 · 대통령상 7,000,000원×1명=7,000천 원 · 국무총리상 : 5,000,000원×1명=5,000천 원 2. 미술 분야31,000천 원 가. 근로자미술제 시상금 24,000천 원 · 대상 : 4,000,000원×1명=4,000천 원 · 금상 : 2,000,000원×4명=8,000천 원 · 은상 : 1,000,000원×4명=4,000천 원 · 동상 : 500,000원×16명=8,000천 원 나. 노동문화협회 지원 : 7,000,000원=7,000천 원 3. 문학 분야24,000천 원 가. 근로자문학제 시상금 24,000천 원 · 대상 : 4,000,000원×1명=4,000천 원 · 금상 : 2,000,000원×4명=8,000천 원 · 은상 : 1,000,000원×4명=4,000천 원 · 동상 : 500,000원×16명=8,000천 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 연극 분야 16,100천 원 가. 근로자연극제 시상금 16,100천 원 1) 단체상 13,500천 원 - 대상: 4,000,000원×1팀=4,000천 원 - 금상: 3,000,000원×1팀=3,000천 원 - 은상: 1,500,000원×2팀=3,000천 원 - 동상: 1,000,000원×3팀=3,000천 원 - 특별상: 500,000×1팀=500천 원 2) 개인상 2,600천 원 - 최우수연기상: 500,000원×1명=500안천 원 - 연기상: 300,000원×4명=1,200천 원 - 연출상: 300,000원×1명=300천 원 - 작품상: 300,000원×1명=300천 원 - 무대미술상: 300,000원×1명=300천 원 5. 가요 분야13,500천 원 가. 근로자가요제 시상금 13,500천 원 - 대상: 4,000,000원×1명=4,000천 원 - 금상: 2,000,000원×2명=4,000천 원 - 은상: 1,000,000원×3명=3,000천 원 - 동상: 500,000원×4명=2,000천 원 - 특별상: 500,000원×1명=500천 원 6. 저소득 수상 노동자 표구비 지원: 100,000원×33명=3,300천 원 7. 연극반 지원금 12,600천 원 가. 경연대회: 600,000원×21팀=12,600천 원 8. 단수 조정 -193,000원= -193천 원 ○ 일반응역비(210-14): 290,700천 원 1. 문화예술제 위탁 사업비 290,700,000원=290,700천 원 ○ 국내 여비(220-01): 1,725천 원 1. 문화예술제 공통 776천 원 가. 관내 출장비: 22,000원×2명×4회=176천 원 나. 관외출장비: 60,000원×2명×5회=600천 원 2. 문화예술제 미술 분야: 110천 원 가. 중앙대회: 55,000원×1명×2회=110천 원 3. 문화예술제 연극 분야: 987천 원 가. 관내출장비: 22,000원×1명×6.7회=147천 원 나. 관외출장비: 840천 원 - 지방공연심사위원 동행: 60,000원×2일×1명×5개소=600천 원 - 공연준비점검: 60,000원×2일×1명×2개소=240천 원 4. 공통 경비 삭감: -148,000원=-148천 원 ○ 사업추진비(240-01): 1,579천 원 1. 문화예술제 유관기관 업무협약: 200,000×9회-공통 삭감 221,000원 =1,579천 원		4. 연극 분야 16,100천 원 가. 근로자연극제 시상금 16,100천 원 1) 단체상 13,500천 원 - 대상: 4,000,000원×1팀=4,000천 원 - 금상: 3,000,000원×1팀=3,000천 원 - 은상: 1,500,000원×2팀=3,000천 원 - 동상: 1,000,000원×3팀=3,000천 원 - 특별상: 500,000×1팀=500천원 2) 개인상 2,600천 원 - 최우수연기상: 500,000원×1명=500안천 원 - 연기상: 300,000원×4명=1,200천 원 - 연출상: 300,000원×1명=300천 원 - 작품상: 300,000원×1명=300천 원 - 무대미술상: 300,000원×1명=300천 원 5. 가요 분야13,500천 원 가. 근로자가요제 시상금 13,500천 원 - 대상: 4,000,000원×1명=4,000천 원 - 금상: 2,000,000원×2명=4,000천 원 - 은상: 1,000,000원×3명=3,000천 원 - 동상: 500,000원×4명=2,000천 원 - 특별상: 500,000원×1명=500천 원 6. 저소득 수상근로자 표구비 지원: 100,000원×33명=3,300천 원 7. 연극반 지원금 12,600천 원 가. 경연대회: 600,000원×21팀=12,600천 원 8. 단수 조정 -193,000원= -193천 원 ○ 일반응역비(210-14): 290,700천 원 1. 문화예술제 위탁 사업비 290,700,000원=290,700천 원 ○ 국내여비(220-01): 1,725천 원 1. 문화예술제 공통 776천 원 가. 관내 출장비: 22,000원×2명×4회=176천 원 나. 관외출장비: 60,000원×2명×5회=600천 원 2. 문화예술제 미술 분야: 110천 원 가. 중앙대회: 55,000원×1명×2회=110천 원 3. 문화예술제 연극 분야: 987천 원 가. 관내출장비: 22,000원×1명×6.7회=147천 원 나. 관외출장비: 840천 원 - 지방공연심사위원 동행: 60,000원×2일×1명×5개소=600천 원 - 공연준비점검: 60,000원×2일×1명×2개소=240천 원 4. 공통 경비 삭감: -148,000원=-148천 원 ○ 사업추진비(240-01): 1,579천 원 1. 문화예술제 유관기관 업무협약: 200,000×9회-공통 삭감 221,000원 =1,579천 원

②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 (2025 당초 계획) 1,151백만 원 → (2026 계획) 1,200백만 원, 49백만 원 증액

- (요구)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지원 사업비 1,200백만 원 요구

- (산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운영 1,200백만 원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1,080백만 원: (개인 상담) 16,262건×6만 원 + (온라인 상담) 2,450건×2만 원 + (집단상담) 210회×20만 원 + 특화프로그램 13회×100만 원

* 사업 지원 관련 운영비 120백만 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51	○ 일반수용비(210-01): 100,272천 원 1. 광고 및 광고료 50,000천 원 가. 광고료: 50,000,000원=50,000천 원 2. 인쇄 및 유인비 25,000천 원 가. 팸플렛, 포스터 등: 1,000원×25,000부=25,000천 원 3. 기업복지활성화지원사업 모니터링 8,000천 원 4.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매 17,272천 원 가. 사무용품 구입비: 650,000*12개월=7,800천 원 나. 소모품 구입비: 650,000원*12개월=7,800천 원 다.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1,000천 원 라. 비품수선비: 672,000원 = 672천 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4,400천원 1. 기업복지활성화지원사업 홍보물 발송료: 14,400,000원=14,400천 원 ○ 일반용역비(210-14): 1,031,000천 원 1.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운영 1,031,000천 원 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운영 1,031,000천 원 1) 근로자 개인 상담 : 60,000원×16,262건=975,720천 원 2) 집단상담 및 교육 : 200,000원×210회=42,000천 원 3) 특화프로그램 : 1,000,000원×13회=13,000천 원 4) 단수 조정: 280,000원= 280천 원 ○ 국내 여비(220-01): 2,625천 원 1. 관내 출장비 : 22,000원×1명×1일×10월×6권역=1,320천 원 2. 관외 출장비 : 60,000원×2명×2.5회×6권역=1,800천 원 3. 공통 경비 삭감 : -495,000원=-495천 원 ○ 사업추진비(240-01): 2,537천 원 1.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유관기관 업무협약: (200,000원×15회)-공통 삭감 463,000원=2,537천 원	1,200	○ 일반수용비(210-01) : 100,272천 원 1. 광고 및 광고료 50,000천 원 가. 광고료: 50,000,000원=50,000천 원 2. 인쇄 및 유인비 25,000천 원 가. 팸플렛, 포스터 등: 1,000원×25,000부=25,000천 원 3. 기업복지활성화지원사업 모니터링 8,000천 원 4.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매 17,272천 원 가. 사무용품 구입비: 650,000*12개월=7,800천 원 나. 소모품 구입비: 650,000원*12개월=7,800천 원 다.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1,000천 원 라. 비품수선비 : 672,000원 = 672천 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4,400천 원 1. 기업복지활성화지원사업 홍보물 발송료: 14,400,000원=14,400천 원 ○ 일반용역비(210-14) : 1,080,000천 원 1.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운영 1,080,000천 원 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운영 1,080,000천원 1) 근로자 개인 상담: 60,000원×16,262건=975,720천 원 2) 온라인 상담: 20,000원×2,450건=49,000천 원 3) 집단상담 및 교육: 200,000원×210회=42,000천 원 4) 특화프로그램: 1,000,000원×13회=13,000천 원 5) 단수 조정: 280,000원= 280천 원 ○ 국내 여비(220-01): 2,625천 원 1. 관내출장비: 22,000원×1명×1일×10월×6권역=1,320천 원 2. 관외출장비: 60,000원×2명×2.5회×6권역=1,800천 원 3. 공통 경비 삭감: -495,000원=-495천 원 ○ 사업추진비(240-01): 2,537천 원 1.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유관기관 업무협약: (200,000원×15회)-공통삭감 463,000원=2,537천 원

4) 사업 효과

□ 사업 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 추진 경과 및 실적
 - 문화예술제

2022	- 참가인원 목표: 5,099명/실적 5,580명, 109% 달성 - 국민 참여 심사제 확대(미술 분야 포함)(총 57,434건), 심사 절차 간소화 등
2023	- 참가인원 목표: 5,552명/실적 5,245명, 94.5% 달성 - 근로자영상제 시범 실시
2024	- 참가인원 목표: 6,056명/실적 5,774명, 95.3% 달성 - 근로자미술제 웹툰 분야 신설
2025	- 참가인원 목표: 5,699명/실적 5,476명, 96.1% 달성 - 근로자가요제 신설 40주년 기념 왕중왕전 실시

○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2022	- 근로자의 신체적 및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기업 EAP 특강 (476건 목표) - 감정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 대상 체험형 특화프로그램 확대(25건 목표)
2023	- 기업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다양화(조직문화 분석, 변화/힐링 프로그램 제안 등) - EAP 14,510건 제공
2024	- 기업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다양화(조직문화 분석, 변화/힐링 프로그램 제안 등) - EAP 14,949건 제공
2025	- 기업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다양화(조직문화 분석, 변화/힐링 프로그램 제안 등) - EAP 15,266건 제공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문화예술제

- 근로자의 창작 및 여가·문화 생활 욕구 충족, 예술 활동 참여를 통해 근로자의 문화 예술 활동 다양화 및 건전하고 생산적인 노동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

* 참가자 목표 5,663명(직전 3개년 평균치 대비 증 3%)

○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 노동자의 업무 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개인 고충 등 업무 저해 요인 해결을 지원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 도모 등 중소기업 노동자 삶의 질 제고

* 취약계층 참여율 확대 : 37.1%(직전 3개년 평균실적 대비 증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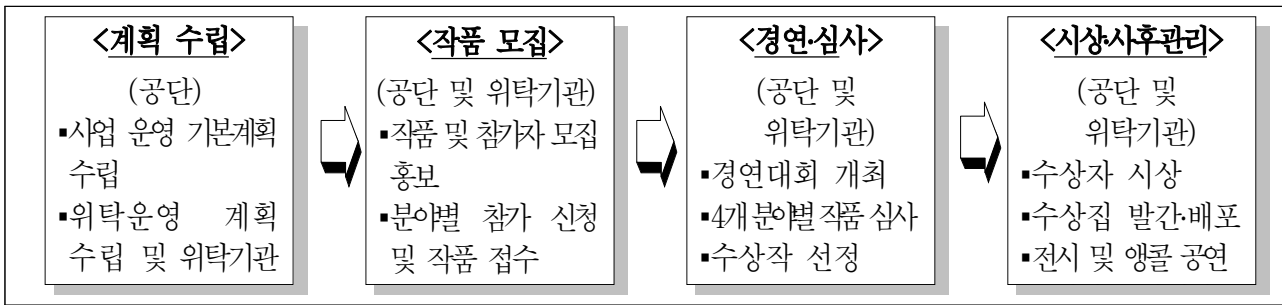
○ 직장여성아파트 관리 운영: '18년 사업 종료

5)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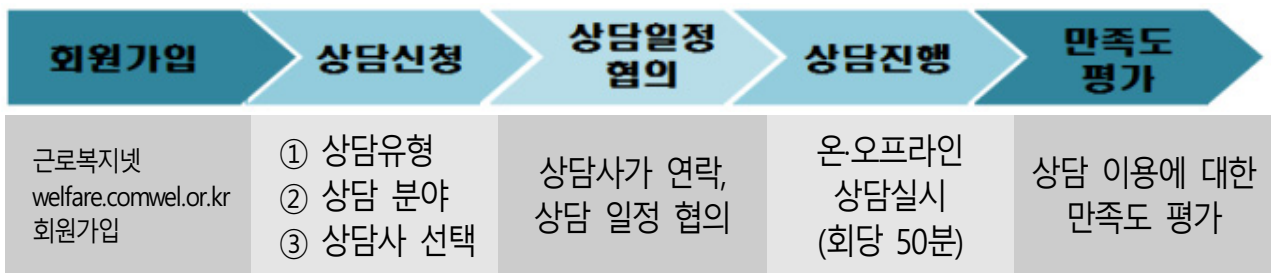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 절차

○ 문화예술제



○ 기업복지활성화 지원(근로복지공단 직접 수행)



○ 직장여성아파트 관리 운영: '18년 사업 종료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근로복지정보시스템(정보화)' 사업 예산 중 4,900만 원을 '근로자복지지원' 사업 예산으로 수행하여야 할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위탁 운영비로 지출(환노위, '23결산)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 없음
- 3) 자체평가: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 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646	-	1,646	1,646	1,646	100.0	100.0	-	-
2023	1,564	-	1,564	1,564	1,564	100.0	100.0	-	-
2024	1,893	1,919	3,812	3,812	3,750	98.4	98.4	-	62
2025	1,558	-	1,558	1,558	1,558	100.0	100.0	-	-

2) 주요 결산 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사항

2022	- 계획 변경 사유: 해당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해당 없음
2023	- 계획 변경 사유: 해당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해당 없음
2024	- 계획 변경 사유: 직장여성아파트 토양오염 손해배상청구소송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손해 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완충녹지 조성공사비용 정산 차액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계획 변경 세부내역: 해당 없음

사 업 명
(2) 퇴직연금사업운영(3061-31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근로복지 진흥기금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중소복지 계정	080	08E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61	318
명칭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근로자복지지원	퇴직연금사업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계약형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연구센터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 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퇴직연금 사업운영	17,857	24,001	27,551	24,801	24,801	800	3.3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22,324	22,324	17,857	-	4,467	24,001	27,551	27,551	27,551	-	-	24,801
· 계약형퇴직연금	1,832	1,832	1,832	-	0	1,829	1,829	1,829	1,829	-	-	1,844
·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	20,179	20,179	15,719	-	4,460	21,855	25,405	25,405	25,405	-	-	22,570
· 퇴직연금연구센터 운영	313	313	306	-	7	317	317	317	317	-	-	387

* (퇴직연금연구센터운영) 세부사업에서 내역사업으로 이관('24년)

나. 사업 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계약형 퇴직연금) 중소기업(30명 이하) 사용자·노동자에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의 운영관리업무 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소기업(30명 이하) 사용자·노동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 (퇴직연금연구센터 운영)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장·단기 정책수립에 기여하고 퇴직연금사업에 대한 평가 수행으로 근로자의 사업자 선택권 보장 및 서비스 질 향상

2) 사업개요

□ 사업 근거 및 추진 경위

- ① 법령상 근거 조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3조의2, 제23조의 14, 제26조 및 제34조,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3조의 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①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공단에서 운영한다.

제23조의 14(국가의 지원) ①국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 부담금, 가입자 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한다)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① 정부는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노사단체, 퇴직연금업무 유관기관, 단체와의 공단 연구사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2.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7.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진흥기금의 용도) 법 제91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퇴직연금 사업 등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② 추진 경위

- (계약형퇴직연금사업) '10년 12월 4인 이하 사업장을 사업 대상으로 시행

* '12.7.26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사업대상 확대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동 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국회 의결*

* '22.4.14. 시행

■ 공적 퇴직연금서비스 도입 배경

· 퇴직연금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는 중소·영세사업장 수익성 부족에 따른 가입·운영 기대로 공적 서비스 제공 필요성 대두

· 또한, 생계형 영세사업주의 경우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부족*에 따른 가입저조로 근로자 퇴직급여 체불가능성 내재 및 안정적인 노후 생활 저해

*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기피 이유 중 관심·인식부족이 30.5% 차지('10.03 서울경제 게재)

·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인프라가 구축된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

- (퇴직연금연구센터운영)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연구센터 운영 사업 용역 입찰로 인한 용역사업으로 수행('15~'22) 하다 '23년부터 지속적인 연구 사업 수행을 위해 근로복지진흥기금 內 사업으로 이관

□ 주요 내용

① 사업 규모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사업기간: '10년 ~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188	15,855	22,324	24,001	24,801

②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시행 방법: 직접 수행
- 사업 시행 주체: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30인 이하 사업장 및 소속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계약형퇴직연금사업

- : (2025 당초 계획) 1,829백만 원 → (2026 계획) 1,844백만 원, 15백만 원 증액
- (요구) 공무직 처우개선비 증액, 운영비 일부 감액
- (산출) 상용임금 1,091백만 원(37백만원 증액), 일반수용비 (202백만 원, 18백만 원 감액), 공공요금 및 제세 99백만 원(9백만 원 감액), 고용부담금 209백만 원(7백만 원 증액), 국내여비 29백만 원(2백만 원 감액), 그 외는 동일

②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 (2025 기금 변경) 25,405백만원 → (2026 계획) 22,570백만 원, 2,835백만 원 감액
(2025 당초 계획 21,855백만 원 → 기금변경 25,405백만 원)
- (요구) 전년 수준 재정 지원(최저임금 130% 미만 가입자) 소요 예정액 반영
- (산출) 재정지원금 21,036백만 원(685백만 원 증), 일반수용비 1,029백만 원(30백만 원 증) 그 외는 전년 동일

③ 퇴직연금연구센터 운영 사업비

- : (2025 당초 계획) 317백만 원 → (2026 계획) 387백만 원, 70백만 원 증액
- (요구) 공무직 인건비 현실화 및 포럼 개최에 따른 연구용역비 반영
- (산출) 상용 임금 140백만 원(33백만 원 증액), 고용부담금 31백만 원(7백만 원 증액), 연구용역비 205백만 원(30백만 원 증액) 그 외 전년 동일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7,551	■ 계약형 퇴직연금 운영을 위한 사업비 1,829백만 원 ○ 상용임금 : 1,054백만 원 - 퇴직연금운영요원(34명) 954,497천 원 - 제도운영 전문위원(1명) 68,612천 원 - 처우개선비: 31,000천 원 ○ 일반수용비 : 220백만 원 - 사무용품비: 720천 원	24,801	■ 계약형 퇴직연금 운영을 위한 사업비 1,844백만 원 ○ 상용임금 : 1,091백만 원 - 퇴직연금운영요원(37명) 983,497천 원 - 제도운영 전문위원(1명) 70,612천 원 - 처우개선비: 37,000천 원 ○ 일반수용비 : 202백만 원 - 사무용품비: 720천 원 - 인쇄비 및 유인비: 103,697천 원 (퇴직연금제도 교육책자 발간)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인쇄비 및 유인비: 115,697천 원 (퇴직연금제도 교육책자 발간: 900원*90,000원, 우편봉투, 안내문, 통지문 등 서식인쇄 2,891,390원*12월) - 소모성물품비: 1,218천원 (101,500*12월) - 간행물 등 구입비 150천원 (50,000원*3회) - 비품수선비 450천원 (150,000원*3회) - 각종수수료 및 사용료 등 12,000천원 (위원회 수당 300,000원*10*4회*1위원회, - 광고료 및 홍보료 57,600천원 (홍보물 9,000,000원, 신문광고 3,300,000원*3회*3개지, 라디오광고 2,100,000원*3회*3개사) - 교육훈련비 32,500천원 (직원교육비 50,000원*4회*160명, 전문가기관위탁교육비 100,000원*5명) ○ 공공요금 및 제세 : 108백만 원 - 전화료 31,200천원 (2,600,000원*12월) - 우편요금 77,154천원 (취급실적 및 운영현황 통지 300원*3회*30,800부, 가입자 교육안내 및 납입현황 발송 535원*3회*30,800개소) ○ 특근매식비 : 27백만 원 - 특근매식비 27,000천 원 (7,000원*35명*9.2일*12월) ○ 임차료 : 63백만 원 - 차량임차 등 63,000천 원 : (4,846,154원*13대) ○ 유류비 : 10백만 원 ○ 시설장비비 : 30백만 원 ○ 복리후생비 : 14백만 원 - 복리후생비 14,000천 원: (400천 원 × 35명) ○ 기타운영비 : 23백만 원 - 부서운영 및 실적포상 23,000천 원: (부운영비 440천 원*12월) (실적우수 4.43백만 원*4회) ○ 국내 여비: 31백만 원 (관내 22,000원*8.74명*9회*12월)+(관외 55,000원*7명*3회*9월) ○ 사업추진비: 6백만 원 (본부: 295,400*8회, 소속기관101,250*39개소) ○ 고용부담금(퇴직연금운영인력, 공무원 35명) : 202백만 원 - 퇴직연금운영요원: 189,364천 원 - 제도운영전문위원: 12,257천 원 ○ 자산취득비: 41백만 원 - 사무기기 취득: 41,000천 원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을 위한 사업비 25,405백만 원 ○ 기타보전금: 23,901백만 원 - 재정지원: 사업주지원금 10,175.5백만원 근로자지원금 10,175.5백만 원 + (기금변경) 3,550백만 원 ○ 일반수용비: 999백만 원 - 사무용품구입비 571천 원 (47,600원*12월) - 인쇄비 및 유인비 76,625천 원 (교육책자 발간 1,000원*50,400권 우편봉투, 안내문, 통지문 등 서식인쇄 2,185,400원*12월, 안내) - 홍보물 등 제작비 221,226 천원 (취급실적 제작 370원*30,800부, 미가입사업장 가입안내 제작 370원*46,200부, 온라인서비스 이용안내 리플릿 제작 370원*30,800부, 재정지원 신청 통지서 제작 63원*12월*21,280부, 가입 기념품 제작 3,000원*20,000개, 신규가입 바인더 제작 3,000원*20,000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매뉴얼 제작 및 Q&A 제작 4,000원*7,463권, 제도안내 팜플릿 제작 500원*30,800부) - 소모성 물품 구입비 3,982천 원 (331,800원*12월) - 간행물 구입비 360천 원 (30,000원*12월)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309,320천 원 (위원회 수당 300,000원*12명*2, 자료인쇄비 10,000원*23부*4회, 속기사비용 300,000*4회, 대관료 500,000원*2회), 출금이체수수료 등 각종금융수수료 299,000천 원 - 광고료 및 홍보료 363,000천 원 (대중매체 13,375,500원*8회, 지하철, 인터넷 등 32,000,000원*8회) - 자산운용 교육연수비 2,000천 원 (200,000원*5명*2회)	900원*80,000권, 우편봉투, 안내문, 통지문 등 서식인쇄 2,641,417원*12월) - 소모성물품비: 1,218천 원 (101,500*12월) - 간행물 등 구입비 150천 원 (50,000원*3회) - 비품수선비 450천 원 (150,000원*3회) - 각종수수료 및 사용료 등 12,000천 원 (위원회 수당 300,000원*10*4회*1위원회, - 광고료 및 홍보료 51,300천 원 (홍보물 9,000,000원, 신문광고 3,300,000원*3회*3개지, 라디오광고 2,100,000원*2회*3개사) - 교육훈련비 32,500천 원 (직원교육비 50,000원*4회*160명, 전문가기관위탁교육비 100,000원*5명) ○ 공공요금 및 제세 : 99백만 원 - 전화료 31,200천 원(2,600,000원*12월) - 우편요금 67,635천 원(취급실적 및 운영현황 통지 300원*3회*27,000부, 가입자 교육안내 및 납입현황 발송 535원*3회*27,000개소) ○ 특근매식비 : 27백만 원 - 특근매식비 26,676천 원 (9,000원*38명*6.5일*12월) ○ 임차료 : 63백만 원 - 차량임차 등 63,000천 원 : (4,846,154원*13대) ○ 유류비 : 10백만 원 ○ 시설장비비 : 30백만 원 ○ 복리후생비 : 14백만 원 - 복리후생비 14,060천 원: (370천 원 × 38명) - 단수조정: △60천 원 ○ 기타운영비 : 23백만 원 - 부서운영 및 실적포상 23,000천 원: (부운영비 440천원*12월)+(실적우수 4.43백만원*4회) ○ 국내 여비: 29백만 원 (관내 22,000원*8.4명*9회*12월)+(관외 55,000원*6.2명*3회*9월) ○ 사업추진비 : 6백만 원 (본부: 295,400*8회, 소속기관101,250*39개소) ○ 고용부담금(퇴직연금운영인력, 공무원 38명) : 209백만 원 - 퇴직연금운영요원 : 195,364천 원 - 제도운영전문위원 : 13,257천 원 ○ 자산취득비: 41백만 원 - 사무기기 취득: 41,000천 원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을 위한 사업비 22,570백만 원 ○ 기타보전금: 21,036백만 원 - 재정지원: 사업주지원금 10,518백만원, 근로자지원금 10,518백만 원 ○ 일반수용비: 1,029백만 원 - 사무용품구입비 571천 원 (47,600원*12월) - 인쇄비 및 유인비 76,625천원 (교육책자 발간 1,000원*50,400권 우편봉투, 안내문, 통지문 등 서식인쇄 2,185,400원*12월, 안내) - 홍보물 등 제작비 221,226 천 원 (취급 실적 제작 370원*30,800부, 미가입사업장 가입 안내 제작 370원*46,200부, 온라인서비스 이용 안내 리플릿 제작 370원*30,800부, 재정지원 신청 통지서 제작 63원*12월*21,280부, 가입 기념품 제작 3,000원*20,000개, 신규가입 바인더 제작 3,000원*20,000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매뉴얼 제작 및 Q&A 제작 4,000원*7,463권, 제도 안내 팜플릿 제작 500원*30,800부) - 소모성 물품 구입비 3,982천 원 (331,800원*12월) - 간행물 구입비 360천 원 (30,000원*12월)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339,480천 원 (위원회 수당 300,000원*12명*2, 자료인쇄비 10,000원*23부*4회, 속기사비용 300,000*4회, 대관료 500,000원*2회), 출금이체수수료 등 각종금융수수료 330,000천원 - 광고료 및 홍보료 363,000천 원 (대중매체 13,375,500원*8회, 지하철, 인터넷 등 32,000,000원*8회) - 자산운용 교육연수비 2,000천 원 (200,000원*5명*2회) - 직무교육 및 금융워크숍 19,452천 원 (교육자료 인쇄 및 기타 교육 소모품 비용 32,400원*160명*3회, 대관료 500,000원*3회, 강사료 200,000원*4명*3회)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직무교육 및 금융위크숍 19,452천 원 (교육자료 인쇄 및 기타 교육 소모품 비용 32,400원*160명*3회, 대관료 500,000원*3회, 강사료 200,000원*4명*3회) ○ 공공요금 및 제세: 483백만 원 - 전화요금 6,000천 원 (500,000원*12월) - 우편요금 371,985천 원 (재정지원 통지 DM발송 300원*12월*30,800부, 가입자 바인더 DM발송 600원*30,800부, 가입자 안내 홍보문 발송비 600원*80,000부, 가입자교육 교재 납입내역 및 운용현황 ,190원*30,800부*3회, 퇴직연금 취급실적 950원*30,800부, 계약이전 등 중요서류 등기 발송비 1,799원*30,800부) - 문자이용료 104,646천 원 (온라인서비스 이용안내 MMS 85원*2회*400,000개, 개인정보제공등의 처리후 안내 및 가입자 교육안내 30원*4회*30,800개, 부담금 납부 및 미납 안내 30원*30,800개*25.66회, 수수료 납부 안내 30원*2회*30,800개, 제도 변경 사항, 정산, 수익률 변동 안내 30원*61,600명*4회) ○ 여비: 18백만 원 (관내 22,000원*10명*4회*12월, 관외 55,000*4명*4회*9월) ○ 업무추진비: 4백만 원 - 본부 4,270천 원(위원회 개최 200,000원*2회*10명, 유관기관 간담회 90,000*3회) ■ 퇴직연금연구센터 운영 317백만 원 ○ 상용임금: 107백만 원 - 무기계약직(2명): 103,651,000원 - 처우개선비 3,000천원 ○ 일반수용비: 11백만 원 - 국외 자료 번역비 500,000원*2, 통계브리프 발간 10,000원*100부*1회, 통계프로그램 이용료, 1,000,000원*2명, 퇴직연금사업 평가 심의회의 위원수당200,000원*2명*3회,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용역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200,000원*4명, 국외자료 최 중보고서 발간 비용 5,000,000원 ○ 연구용역비: 175백만 원 -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관련 연구용역 120,000,000원, 퇴직연금 사업 관련 연구용역 35,000,000원, 중퇴기금제도 연구용역 20,000,000원 ○ 고용부담금 24백만 원 - 무기계약직(2명) 고용부담금 (사회보험료 14,494,000, 퇴직금 9,400,000)		○ 공공요금 및 제세 : 483백만 원 - 전화요금 6,000천 원 (500,000원*12월) - 우편요금 371,985천 원 (재정지원 통지 DM발송 300원*12월*30,800부, 가입자 바인더 DM발송 600원*30,800부, 가입자 안내 홍보문 발송비 600원*80,000부, 가입자교육 교재 납입내역 및 운용현황 ,190원*30,800부*3회, 퇴직연금 취급실적 950원*30,800부, 계약이전 등 중요서류 등기 발송비 1,799원*30,800부) - 문자이용료 104,646천 원 (온라인서비스 이용 안내 MMS 85원*2회*400,000개, 개인정보제공등의 처리후 안내 및 가입자 교육안내 30원*4회*30,800개, 부담금 납부 및 미납 안내 30원*30,800개*25.66회, 수수료 납부 안내 30원*2회*30,800개, 제도 변경사항, 정산, 수익률 변동 안내 30원*61,600명*4회) ○ 여비: 18백만 원 (관내 22,000원*10명*4회*12월, 관외 55,000*4명*4회*9월) ○ 업무추진비: 4백만 원 - 본부 4,270천 원(위원회 개최 200,000원*2회*10명, 유관기관 간담회 90,000*3회) ■ 퇴직연금연구센터 운영 387백만 원 ○ 상용임금: 140백만 원 - 무기계약직(2명): 135,651,000원 - 처우개선비 4,000천 원 ○ 일반수용비: 11백만 원 - 국외자료 번역비 500,000원*2, 통계브리프 발간 10,000원*100부*1회, 통계프로그램 이용료, 1,000,000원*2명, 퇴직연금사업 평가 심의회의 위원수당200,000원*2명*3회,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용역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200,000원*4명, 국외자료 최 중보고서 발간 비용 5,000,000원 ○ 연구용역비: 205백만 원 -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관련 연구용역 120,000,000원,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지표개선 연구용역 30,000,000원, 퇴직연금사업 관련 연구용역 35,000,000원, 중퇴기금제도 연구용역 20,000,000원 ○ 고용부담금 31백만 원 - 무기계약직(2명) 고용부담금 (사회보험료 18,494,000 퇴직금 12,400,000)

4) 사업 효과

□ 사업 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 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계약형퇴직연금) 사업장 92,192개소, 가입자 433,658명 적립금 41,607억 원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장 2,443개소, 가입자 9,650명 적립금 324억 원
2023	- (계약형퇴직연금) 사업장 75,668개소, 가입자 398,248명 적립금 43,456억 원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장 13,691개소, 가입자 64,681명 적립금 4,734억 원
2024	- (계약형퇴직연금) 사업장 69,858개소, 가입자 367,418명 적립금 45,371억 원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장 23,233개소, 가입자 108,515명 적립금 8,601억 원
2025	- (계약형퇴직연금) 사업장 66,113개소, 가입자 331,465명 적립금 45,943억 원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장 35,634개소, 가입자 163,899명 적립금 14,907억 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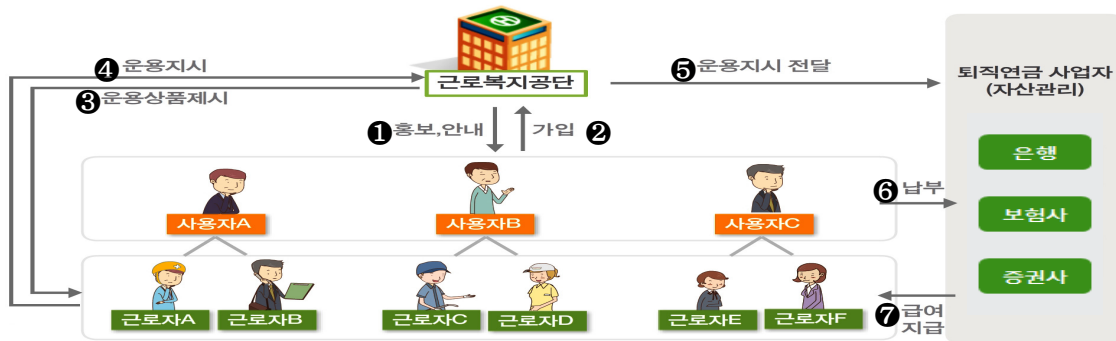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주·근로자 재정지원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 퇴직급여 체불 방지 및 노후 소득 보장 기능 강화
- 제도 조사·연구를 통해 정책적 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 지원, 사업자 평가를 통한 가입자 권익 보호 및 서비스 질 제고

5)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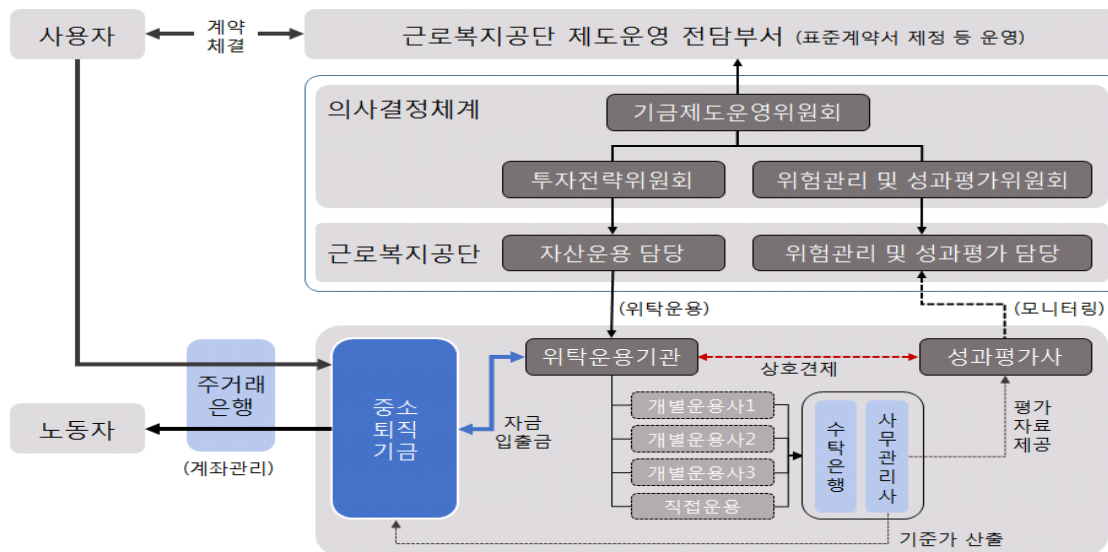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 절차

■ 계약형퇴직연금제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퇴직연금연구센터

추진 절차	시행 주체	절차 내용
① 사업추진계획 수립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연구센터 추진계획 수립 시달
② 센터운영계획 보고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연구센터 세부운영계획 수립 보고
③ 센터운영계획 승인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연구센터 세부운영계획 검토 - 정책연구과제 / 사업자 평가 등
④ 추진 및 보고	근로복지공단	정책과제연구, 사업자 평가 등 사업추진 및 연구센터 운영결과 보고(최종보고서 인쇄)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가입자 증가 추세 둔화, 계약형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대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방침 등을 고려, 사업 예산 축소 필요 ('22 회계연도 예정처 결산 검토보고서)
- 사업 예산 규모의 적정성 검토, 사업장 가입 촉진 방안 등 마련 필요 ('22 회계연도 예정처·예결위 결산 검토보고서)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운영 사업의 목표 미달성 및 집행 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홍보 다각화뿐만 아니라 홍보 수단별로 효과성을 측정하고, 개선 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인식도를 재고하는 등 사업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필요 ('23 회계연도 예정처 결산 검토보고서)
- 퇴직연금 운영 지원 대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퇴기금제도 편입을 유도하는 방안 및 중소사업장 근로자가 중퇴기금제도에 가입할 의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가입 독려 방안 마련 필요 ('23 회계연도 환노위 결산 검토 보고서)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립금 중도인출 규모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으로 적립금이 운영되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24 회계연도 예정처 결산 검토 보고서)

2) 대외공개 평가

- '24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25년 실시): '우수'

3) 자체평가: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 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9,188	-	9,188	9,188	6,100	66.4	66.4	-	3,088
2023	15,855	-	15,855	15,855	8,897	56.1	56.1	-	6,958
2024	22,324	-	22,324	22,324	17,857	80.0	80.0	-	4,467
2025	24,001	3,550	27,551	27,551	27,551	100.0	100.0	-	-

2) 주요 결산 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사항

2022	- 계획 변경: 해당 없음 - 이월 사유: 해당 없음 - 불용 사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금 집행부진에 따라 재정지원금 3,077백만 원 미집행, 기타 집행잔액 11백만 원
2023	- 계획 변경: 해당 없음 - 이월 사유: 해당 없음 - 불용 사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금 집행부진에 따라 재정지원금 6,937백만 원 미집행, 기타 집행잔액 21백만 원
2024	- 계획 변경: 해당 없음 - 이월 사유: 해당 없음 - 불용 사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금 집행부진에 따라 재정지원금 4,460백만 원 및 예정된 연구용역 계획 변경에 따른 연구용역비 7백만 원 미집행
2025	- 계획 변경: 일반수용비→ 일반연구비 예산 전용 - 기금운용계획 변경: 푸른씨앗 가입자수 급증 등 재정지원금 지급대상 증가에 따른 3,550백만원 기금운용계획변경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025.7.2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210	01	△29	퇴직연금기금제도 컨설팅을 위한 예산 전용
		260	01	29	
자체변경 (2025.11.19.)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310	04	3,550	푸른씨앗 가입자 수 급증 등 재정지원금 지급 대상 증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
합 계				3,550	

사 업 명
(3) 근로복지기금지원(3061-32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근로복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중소복지	080	08E
명칭	진흥기금			계정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61	322
명칭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근로자복지지원	근로복지기금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근로복지 기금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노동정책관
	사업시행주체	노무제공자지원과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 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근로복지 기금지원	21,814	29,896	29,896	19,204	19,204	△10,692	△35.8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 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23,278	23,278	21,814	-	1,464	29,896	29,896	29,896	23,464	-	6,432	19,204
· 근로복지기금지원	23,278	23,278	21,814	-	1,464	29,896	29,896	29,896	23,464	-	6,432	19,204

나. 사업 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대기업의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지원을 촉진하여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지원
- 다수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촉진하고 기금 규모 확대 및 안정화를 통해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복지향상 도모

2) 사업 개요

□ 사업 근거 및 추진 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86조의2, 제86조의5, 제91조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①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6.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제86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둘 이상의 사업주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공동기금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86조의5(공동기금제도의 촉진) 공동기금법인이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7.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및 공동기금 제도 관련 지원

② 추진 경위

- '14. 8.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 '15. 3.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
- '15. 7. 근로복지기본법 개정(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16. 1. 21.시행)

- '15. 9.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사업 활성화 반영
- '16. 3.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고시) 제정
- '19. 9.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 발표
- '20. 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공동기금 재정지원 확대)
- '20. 12.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촉진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21.6.9. 시행)
- '22. 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상생형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중견기업 지원 관련)
- '22. 4.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고시) 개정(상생형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중견기업 지원 관련)
- '22. 5. 공동기금 지원 우선순위 개선 및 지원대상 선정 합리화(공단규정 개정)
- '23. 5.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고시) 개정 (상생협약 체결 공동기금에 대한 지원 확대로 노동시장 격차 개선 추진)
- '25. 2. 소규모기업으로 구성된 공동기금 지원 강화 (공단규정 개정)

□ 주요 내용

① 사업 규모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사업 기간: '15년 ~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6,469	19,209	23,278	29,896	19,204

②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시행 방법: 직접 수행
- 사업 시행 주체: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중소기업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 근거: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2025 당초 계획) 795백만 원 → (2026 계획) 877백만 원, 82백만 원 증액
 - (요구) 최근 3년간('22~'24년) 지원 추이 및 '24년 실적행액 등을 감안, '25년 대비 82백만 원 증액
 - (산출) 51.6백만 원* × 17개소
 * 최근 3년('22~'24년)간 평균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단가
 = 최근 3년 평균 지원액 877백만 원(지원금 합계 2,632백만 원 / 3개년) ÷ 3년 평균 지원 사내
 기금 17개소(사내기금 합계 50개소 / 3개년)
- ②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2025 당초 계획) 28,959백만 원 → (2026 계획) 18,185백만 원, 10,774백만 원 감액

- (요구) 최근 3년간('22~'24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수요 및 상생협약 체결업종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수요 감소** 등을 반영하여, '25년 대비 10,774백만 원 감액

* '22년부터 심사위원회 심사 수에 따라 지원율을 차등하여 지원함에 따라 최근 3년('22~'24년) 평균으로 지원 수요 및 지원단가 반영

(① 평균 40점 미만, ② 40점 이상 60점 미만, ③ 60점 이상 80점 미만, ④ 80점 이상

→ ① 지원배제, ② 신청 금액의 50%, ③ 75%, ④ 100%)

** 상생 협약 체결 업종 중 조선업에 대한 '대기업(원청) 증액 출연 및 자치단체 출연 연장에 대한 지원 확대('23~'25년)' 종료 반영

- (산출)

1) 참여기업간 공동기금 출연 지원 9,254백만 원(77.1백만 원×120개소)

: 3년 평균('12~'24년) 지원단가와 신규 설립 공동기금 수 증가를 반영하여 산출

⇒ 공동기금 지원 확대('20년) 이후 신규 설립 공동기금 수의 증가*를 고려하고, 근로자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공동기금의 복지자생력 지원을 위해서 3년 평균 지원 공동기금 수(91개소)보다 많은 120개소에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수혜 확산을 강화하고자 함

※ 공동기금 신규 설립 추이: ('20) 175 → ('21) 113 → ('22) 178 → ('23) 166 → ('24) 174개소

2) 대기업의 중소기업 공동기금 출연 지원 5,819백만 원(529백만 원×11개소)

: 3년 평균('22~'24년) 지원단가와 지원된 기금 수(11개소)를 근거로 산출

3)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공동기금 출연지원 2,148백 만원(214.8백만 원×10개소)

: 3년 평균('22~'24년) 지원단가와 지원된 기금 수(10개소)를 근거로 산출

4) 상생 협약 체결 업종 중소기업 공동기금에 대기업의 추가 출연지원 750백만 원(750백만 원×1개소)

: '24년에 대기업(원청)이 증액 출연한 공동기금 1개소당 지원단가와 지원 예상 공동기금 수를 근거로 산출

5) 상생 협약 체결 업종 중소기업 공동기금에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출연지원 214백만 원(214백만 원×1개소)

: 상생 협약 체결에 따라 지자체 출연금 지원기간이 연장된 공동기금의 '24년 지원단가와 지원 예상 공동기금 수를 근거로 산출

③ 운영비 : (2025 당초 계획) 142백만 원 → (2026 계획) 142백만 원 (전년 동)

- (요구) 기금지원심사위원회 및 사업홍보, 공동기금 집행 실태 점검, 사업 매뉴얼 개정 등을 위한 비용(전년 동)

- (산출)

* 기금지원심사위원 수당, 사업 매뉴얼 인쇄, 홍보물 제작 등 수용비 60백만 원(전년 동)

* 공동기금법인 지원금 집행 실태 점검 용역, 매뉴얼 업데이트 등 용역비 82백만 원(전년 동)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9,896	[210-01] 일반수용비 60,000천 원 1. 홍보비 등: 10,000,000원*2회=20,000천 원 2. 기금지원심사위원회 수당: 210,000원*4명*6회=5,040천 원 3. 근로복지기금지원 매뉴얼 인쇄: 30,000원*500권= 15,000천 원 4. 사무용품 구매 19,960천 원 가. 복사용지: 30,000원*200박스=6,000천 원 나. 레이저프린터 소모품: 100,000원*70개=7,000천 원 다. 기타 소모품비: 580,000원*12월=6,960천 원	19,204	[210-01] 일반수용비 60,000천 원 1. 홍보비 등 : 10,000,000원*2회=20,000천 원 2. 기금지원심사위원회 수당: 300,000원*4명*4회=4,800천 원 3. 근로복지기금지원 매뉴얼 인쇄 : 30,000원*500권= 15,000천 원 4. 사무용품 구매 20,200천 원 가. 복사용지: 30,000원*200박스=6,000천 원 나. 레이저프린터 소모품: 100,000원*70개=7,000천 원 다. 기타 소모품비: 600,000원*12월=7,200천 원
	[210-14] 일반용역비 82,000천 원 1. 실무매뉴얼 업데이트 : 37,000,000원*1회=37,000천 원 2. 공동기금법인 지원금 집행내역 모니터링 용역 : 45,000,000원*1회=45,000천 원		[210-14] 일반용역비 82,000천 원 1. 실무매뉴얼 업데이트 : 37,000,000원*1회=37,000천 원 2. 공동기금법인 지원금 집행내역 모니터링 용역 : 45,000,000원*1회=45,000천 원
	[310-04] 기타보전금 29,754,000천 원 1. 근로복지기금지원 29,753,800천 원 가.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795,000천 원		[310-04] 기타보전금 19,062,000천 원 1. 근로복지기금지원 19,062,000천 원 가.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877,000천 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50,500,000원*16개소=808,000천 원 2) 단수조정: △13,000천 원 나.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28,958,800천원 1) 참여기업간 공동기금 출연지원 91,900,000*120개소=11,028,000천원 2) 대기업의 중소기업 공동기금 출연지원 625,900,000원*12개소= 7,510,800천원 3)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공동기금 출연지원 240,000,000원*7개소= 1,680,000천원 4) 상생협약 체결업종 중소기업 공동기금에 대기업의 추가 출연지원 750,000,000원*10개소= 7,500,000천원 5) 상생협약 체결업종 중소기업 공동기금에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출연지원 248,000,000원*5개소= 1,240,000천 원 2. 단수조정 : 200,000원= 200천 원		1)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51,600,000원*17개소=877,200천 원 2) 단수조정: △200천 원 나.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18,185,000천 원 1) 참여기업 간 공동기금 출연지원 77,100,000*120개소=9,252,000천 원 2) 대기업의 중소기업 공동기금 출연지원 529,000,000원*11개소= 5,819,000천 원 3)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공동기금 출연지원 214,800,000원*10개소= 2,148,000천 원 4) 상생협약 체결업종 중소기업 공동기금에 대기업의 추가 출연지원 750,000,000원*1개소= 750,000천 원 5) 상생협약 체결업종 중소기업 공동기금에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출연지원 214,000,000원*1개소= 214,000천 원 2. 단수조정 : 2,000,000원= 2,000천 원

4) 사업 효과

□ 사업 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 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94개 기금법인 참여, 1,118개 중소기업 근로자 206,133명 지원 - 근로복지기금 지원 심사위원회 2회 개최
2023	- 98개 기금법인 참여, 1,196개 중소기업 근로자 204,687명 지원 - 근로복지기금 지원 심사위원회 2회 개최
2024	- 143개 기금법인 참여, 1,416개 중소기업 근로자 230,325명 지원 - 근로복지기금 지원 심사위원회 2회 개최
2025	- 163개 기금법인 참여, 1,606개 중소·협력업체의 근로자 278,249명 지원 - 근로복지기금 지원 심사위원회 2회 개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대기업(도급업체)의 중소 협력(파견)업체 근로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 증진
 - 사내기금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혜근로자수 10,470명 목표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중소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활성화 유도, 공동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복지 증진, 대·중소기업간 복지격차 완화 기대
 - 공동기금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혜근로자수 217,138명 목표

5)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 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 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24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25년 실시): '보통'
- 3) 자체평가: '23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24년 실시): '보통'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 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6,469	-	16,469	16,469	16,084	97.7	97.7	-	385
2023	15,459	3,750	19,209	19,209	19,206	100.0	100.0	-	3
2024	23,278	-	23,278	23,278	21,814	93.7	93.7	-	1,464
2025	29,896	-	29,896	29,896	23,464	78.5	78.5	-	6,432

2) 주요 결산 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사항

2022	- 불용사유: 경기 악화로 대기업(또는 원청)의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복지비용 지출이 감소되어 일부 불용 발생
2023	- 기금운용계획 변경('23.9.) : 상생협약 체결 조선업 공동기금의 지원한도 인상에 따른 원청(대기업) 추가 출연분 지원 소요 반영(154.5억 원 → 192억원, 증 37.5억 원) - 불용 사유: 공동기금 집행실태 점검 용역비 낙찰 차액
2024	- 불용 사유: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기금 지원을 결정 및 지원배제 공동기금 발생, 공동기금 집행 실태 점검 용역비 낙찰 차액
2025	- 불용 사유: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기금 지원율(신청금액의 100%, 75%, 50%, 지원배제) 결정, 공동기금 집행실태 점검 용역비 낙찰 차액 불용

☐ 2025년 계획변경 : 해당 없음

사 업 명
(4) 근로복지금(중소계정) 정보화경비(정보화)(3061-32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근로복지진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중소복지	080	08B
명칭	기금			계정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61	325
명칭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근로자복지지원	근로복지금(중소계정) 정보화경비(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근로복지금(중소계정) 정보화경비(정보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 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근로복지금 (중소계정) 정보화경비 (정보화)	334	334	334	334	334	-	-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 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334	334	334	0	0	334	334	334	334	0	0	334
- 전산장비 유지관리	312	312	312	0	0	312	312	312	312	0	0	312
-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22	22	22	0	0	22	22	22	22	0	0	22

나. 사업 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보증·담보 여력이 낮은 취약계층의 정상 금융 생활 복귀 지원 등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 근거 및 추진 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및 제91조

제14조(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및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4. 제14조에 따른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② 추진 경위

- 사업 시작 년도: 2008년
- 추진 배경
 - 기존: 고용보험회계와 산재보험회계에서 50%씩 부담
 - '08년부터: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분담
(근로복지진흥기금 2.1% 분담. 단, 자산취득비는 4.2% 분담)

□ 주요 내용

① 사업 규모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사업 기간: '08년~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34	334	334	334	334

②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시행 방법: 직접 수행
- 사업 시행 주체: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노동자, 근로복지공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 근거: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근복기금(중소계정) 정보화 경비

: (2025 당초 계획) 334백만 원 → (2026 계획) 334백만 원, 전년동

- (요구) 전산장비 유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지원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전산장비 유지관리 312백만 원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22백만 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34	[210-01] 일반수용비 15,138천 원 1. 사무용품 구입(행정사무자동화기기소모품): 572,000원=572천 원 2. 간행물 등의 구입비: 20,000원=20천 원 3. 바이러스백신 사용료: 500,000원=500천 원 4. 패치 관리 SW 사용료: 14,000,000원=14,000천 원 5. 단수 조정: 46천 원	334	[210-01] 일반수용비 15,488천 원 1. 사무용품 구입(행정사무자동화기기소모품): 572,000원=572천 원 2. 간행물 등의 구입비: 20,000원=20천 원 3. 바이러스백신 사용료: 500,000원=500천 원 4. 패치 관리 SW 사용료: 14,000,000원=14,000천 원 5. 교육훈련비: 350,000원=350천 원 6. 단수 조정: 46천 원
	[210-02] 공공요금및제세 3,721천 원 1. 우편요금 32천 원 가. 우편요금: 11,825원 =12천 원 나. 등기우편 : 20,342원=20천 원 2. 통신회선사용료: 3,689,467원=3,689천 원		[210-02] 공공요금및제세 3,721천 원 1. 우편요금 32천 원 가. 우편요금: 11,825원 =12천 원 나. 등기우편 : 20,342원=20천 원 2. 통신회선사용료: 3,689,467원=3,689천 원
	[210-05] 특근매식비 960천 원 1. 직원특근매식비: 960,000원=960천 원		[210-05] 특근매식비 960천 원 1. 직원특근매식비: 960,000원=960천 원
	[210-07] 임차료 81,000천 원 1. '23년 사무자동화기기 도입: 36,000천 원 2. '24년 노후보안장비 교체 및 증설: 45,000천 원		[210-07] 임차료 81,000천 원 1. '23년 사무자동화기기 도입: 36,000천 원 2. '24년 노후보안장비 교체 및 증설 : 45,000천 원
	[210-09] 시설장비유지비 93,391천 원 1. 상용 SW유지보수: 31,980,000원=31,980천 원 2. HW 유지보수: 51,919,000원=51,919천 원 3. 사무용 SW라이센스: 9,492,000원=9,492천 원		[210-09] 시설장비유지비 93,391천 원 1. 상용 SW유지보수: 31,980,000원=31,980천 원 2. HW 유지보수: 51,919,000원=51,919천 원 3. 사무용 SW라이센스: 9,492,000원=9,492천 원
	[210-15] 관리용역비 138,000천 원 1.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위탁 : 138,000,000원=138,000천 원		[210-15] 관리용역비 138,000천 원 1.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위탁 : 138,000,000원=138,000천 원
	[210-16] 기타 운영비 1,004천 원 1. 부서 운영비: 654,000원=654천 원 2. 교육훈련비 : 350,000원=350천 원		[210-16] 기타 운영비 654천 원 1. 부서 운영비: 654,000원=654천 원
	[220-01] 국내여비 786천 원 1. 정보시스템 확인 점검 및 업무협의 786천 원 가. 관내 여비 : 22,000원*19개소*2명=836천 원 나. 단수 조정 : △50,000원=△50천 원		[220-01] 국내 여비 786천 원 1. 정보시스템 확인 점검 및 업무협의 786천 원 가. 관내 여비 : 22,000원*19개소*2명=836천 원 나. 단수 조정 : △50,000원=△50천 원

4) 사업 효과

☐ 사업 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 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 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중소복지계정 사업의 원활한 수행

5)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 절차: 해당 없음

8) 각종 평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 없음2) 대외공개 평가: '24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25년 실시): '보통'3) 자체평가: '23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24년 실시): '보통' |
|---|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 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334	0	334	334	317	94.9	95.0	0	17
2023	334	0	334	334	334	100.0	100.0	0	0
2024	334	0	334	334	334	100.0	100.0	0	0
2025	334	0	334	334	334	100.0	100.0	0	0

2) 주요 결산 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사항

2022	- 불용 사유: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경상경비 하반기 예산 10% 절감 및 집행잔액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계획 변경 세부내역: 해당 없음

사 업 명
(5) 근로복지정보시스템(정보화)(3061-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근로복지 진흥기금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중소복지계정	080	08E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61	500
명칭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근로자복지지원	근로복지정보시스템(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근로복지정보시스템(정보화)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 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근로복지정보 시스템(정보화)	5,851	5,358	5,358	9,992	9,992	4,634	86.5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 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5,854	5,854	5,851	0	3	5,358	5,358	5,358	5,358	0	0	9,992
- 전산장비 유지관리	3,656	3,656	3,656	-	-	3,656	3,656	3,656	3,656	0	0	3,656
-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1,702	1,702	1,702	-	-	1,702	1,702	1,702	1,702	0	0	1,653
- 금융감독원 혁신 방안 및 감독규정 개정 사항 개발 용역	496	496	493	0	3	0	0	0	0	0	0	0
- 지능형 생활 안정 지원 시스템 구축	-	-	-	0	0	0	0	0	0	0	0	4,683

나. 사업 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전산장비 유지관리) 근로복지종합시스템 및 퇴직연금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보인프라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중소기업 및 저소득(취약계층) 근로자 선택적 복지 지원 프로그램 및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 사업개요

□ 사업 근거 및 추진 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및 제91조

제14조(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및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4. 제14조에 따른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0조, 「금융감독규정」 제20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6. 공단(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요건 등) ① 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3.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운용 관리 업무 또는 자산관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산 설비와 사무실을 갖추는 것. 이 경우 그 전산 설비는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설비를 갖추고, 제도 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 시스템을 미리 구축하여야 한다.

「금융감독규정」

제20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사업 추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내부직무 전결기준에 따라 부서장 전결 금액 이상의 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것
2. 정보처리시스템의 신규사업 및 통합·전환·재개발 등과 같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비용 대비 효과분석을 실시할 것
3. 타당성 검토와 비용 대비 효과분석 결과는 전산운영위원회 등 독립적인 조직의 승인을 받을 것
4.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석·설계 단계부터 보안대책을 강구할 것

② 추진 경위

- 사업 시작 년도: '08년 ~ 계속
- 근로복지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근로자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 (1차: '02~'06년, 2차: '07~'11년)
 - '09년 근로복지포털(희망드림 근로복지넷) 구축
 - '10년 자산운용, 지원 전산시스템 구축
 - '11년 모바일 웹 서비스 개시
 - '14년 중소기업청과 시스템 연계
 - '16년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디자인 리뉴얼
 - '16년 홈페이지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 '18년 근로복지정보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10월)
 - '21년 근로복지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인프라 고도화
 - '22년 근로복지넷과 근로복지서비스 통합 추진
 - '23년 근로복지통합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BPR/ISP 수립
- 퇴직연금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10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 공포(9월)
 - '10년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사업 개시(12월)
 - '12년 30인 이하 사업장까지 사업대상 확대
 - '15년 자체 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 완료 및 시스템 적용

- '16년 자체 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통계)
- '17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대상자 확대 적용
- '18년 퇴직연금 현장업무지원용 모바일 서비스 개시
- '20년 퇴직연금정보시스템(계약형) 노후장비 교체 및 인프라 고도화
- '21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시행 '22.4월)에 따른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22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통합플랫폼 구축
- '23년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을 위한 응용프로그램 개발
- '24년 금융감독원 혁신방안 및 감독규정 개정사항 응용프로그램 개발

□ 주요 내용

① 사업 규모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사업 기간: '08년 ~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7,069	5,552	5,854	5,358	9,992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시행 방법: 직접 수행
- 사업 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영세 중소기업 및 노동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 근거: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근로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25 당초 계획) 5,358백만 원 → (2026 계획) 9,992백만 원, 4,634백만 원 증액

- (요구) 전산장비 유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지원을 위해 전년 수준 운영비 및 '지능형생활안전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비용 요구

- (산출) 전산장비 유지관리 3,656백만 원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1,653백만 원
지능형생활안전지원시스템 구축 4,683백만 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358	○ 일반수용비(210-01) : 229,276천 원	9,992	○ 일반수용비(210-01) : 180,276천 원
	1. 근로복지정보시스템(정보화) : 72,138천 원 가. 근로복지포털사이트운영 업무위탁상담료: 53,000천 원 나. EAP전문가 상담료: 510,416원×12월×8명=49,000천 원 다. 사업자선정 기술지원 평가료: 200천원×5개사업×4명=4,000천 원 라. 안내문 인쇄비: 4,370천 원 마. 광고료: 9,000천 원 바. 사무용품비: 768천 원 사. 근로자의날 홍보물 제작: 5천원×1,000명=5,000천 원		1. 전산소모품, 각종 수수료 등 : 157,000천 원 가. 전산소모품 등 구입: 1,400천원×12개월=16,800천 원 나. TimeStamp 이용료: 50만개×20원(건)=10,000천 원 다. 금융현황 데이터 사용료: 1,000천원×12개월=12,000천 원 라. 서버공인인증서 사용료: 800천원×12개월=9,600천 원 마. 모바일+온라인 백신 사용료: 6,600천원×12개월=79,200천 원 바. 정보시스템 만족도 조사: 1,500천원×2회=3,000천 원 사. 예약결제원 플랫폼 이용료: 2,200천원×12개월=26,400천 원
	2. 퇴직연금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 158,138천 원 가. 사무용품: 18,503천 원 나. 이용자 만족도 조사: 3,000천 원 다. 유관기관 연계 수수료: 110,635천 원 1) Time Stamp 이용료: (50천개소×20원)+(450천개소×20원)=10,000천 원 2) 금융현황데이터 사용료(민간평가기관): 1,000천원×12개월=12,000천 원 3) 서버공인인증서 사용료: 10,000천 원 4) 모바일백신 사용료(안드로이드, IOS): 26,400천원×2식=52,800천 원 5) 온라인백신 사용료(홈페이지): 25,835천 원 라. 한국예탁결제원수수료: 26,000천 원		2. 안내 및 홍보물 제작: 23,000천 원
	3. 단수 조정: △1,000천 원		3. 단수조정 : 276천 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213,589천 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213,589천 원
	1. 근로복지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 11,850천 원 2. 퇴직연금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 201,739천 원		1. 유관기관 및 인터넷 통신회선료: 6,000천 원×12개월=72,000천 원 2. 현장지원서비스 단말기 사용료: 10,300천 원×12개월=123,600천 원 3. 우편요금: 1천원×18천건=18,000천 원 4. 단수조정: △11천 원
	○ 임차료(210-07) : 1,252,384천 원		○ 임차료(210-07): 1,252,384천 원
	1. '20년 노후장비교체 및 증설: 409,569천 원 2. '21년 노후장비교체 및 증설: 708,074천 원 3. '25년 노후장비교체 및 증설: 135,972천 원 4. 단수조정 : △1,231천원		1. '21년 노후장비 교체: 177,000천 원×2분기=354,000천 원 2. '25년 노후장비 교체: 136,000천 원×4분기=544,000천 원 3. '26년 노후장비 교체 및 증설: 177,000천원×2분기=354,000천 원 4. 단수조정: 384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369,366천 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369,366천 원
	1. 근로복지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유지보수: 109,800천 원 2. 자산운용자산시스템운영(정보화)유지보수: 34,000천 원 3. 퇴직연금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유지보수: 1,225,054천 원 가. H/W: 212,054천 원 나. S/W: 729,000천 원 다. 초급기술자: 284,000천 원 4. 단수조정 : 512천 원		1. 상용SW 유지보수: 729,000천 원 2. HW 유지보수: 640,000천 원 3. 단수조정: 366천 원
	○ 관리용역비(210-15): 2,287,288천 원		○ 관리용역비(210-15): 2,287,288천 원
	1. 근로복지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252,000천 원 가. 근로복지포털사이트 프로그램운영 위탁수수료: 252,000천 원 2. 퇴직연금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968,538천 원 가. 고급기술자: 531,000천 원 나. 중급기술자: 427,000천 원 다. 퇴직연금기금제도 응용프로그램 운영 유지보수: 10,538천 원 3. 중소기업퇴직연금 통합플랫폼 구축 위탁 운영: 1,066,000천원		1. 근로복지넷 위탁운영: 23,034천원×12개월×3.5명=967,428천 원 2. 개발소프트웨어 유지관리: 23,034천원×12개월×0.91명=251,531천 원 3. 중소기업퇴직연금 통합플랫폼 구축 위탁운영: 10,660백만원×1년×10%=1,066,000천 원 4. 단수조정 : 2,329천 원
	○ 국내여비(220-01): 4,574천 원		○ 국내여비(220-01) : 4,574천 원
	1. 관내출장비: 22천 원×60개소×2명=2,640천 원 2. 관외출장비: 60천 원×12개소×3명=2,160천 원 3. 단수조정 : △226천 원		1. 관내출장비: 22천원×60개소×2명=2,640천 원 2. 관외출장비: 60천원×12개소×3명=2,160천 원 3. 단수조정 : △226천 원
	○ 사업추진비(240-01): 1,523천 원		○ 사업추진비(240-01): 1,523천 원
	1. 근로복지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1,523천 원 가. 유관기관업무협약및자료협조: 1,523천 원		2. 근로복지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1,523천 원 가. 유관기관업무협약및자료협조: 1,523천 원
		○ 일반연구비(260-01): 4,463,000천 원	
		가. 지능형생활안전지원시스템 구축=4,463,000천 원	
		○ 자산취득비(430-01) : 220,000천 원	
		가. 지능형생활안전지원시스템 구축=220,000천 원	

4) 사업 효과

□ 사업 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 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통합플랫폼 구축
2023	- 근로복지통합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BPR/ISP 수립 -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을 위한 응용프로그램 개발
2024	- 근로복지통합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BPR/ISP 수립 -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을 위한 응용프로그램 개발
2025	- 퇴직연금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를 통한 안정적 정보서비스 제공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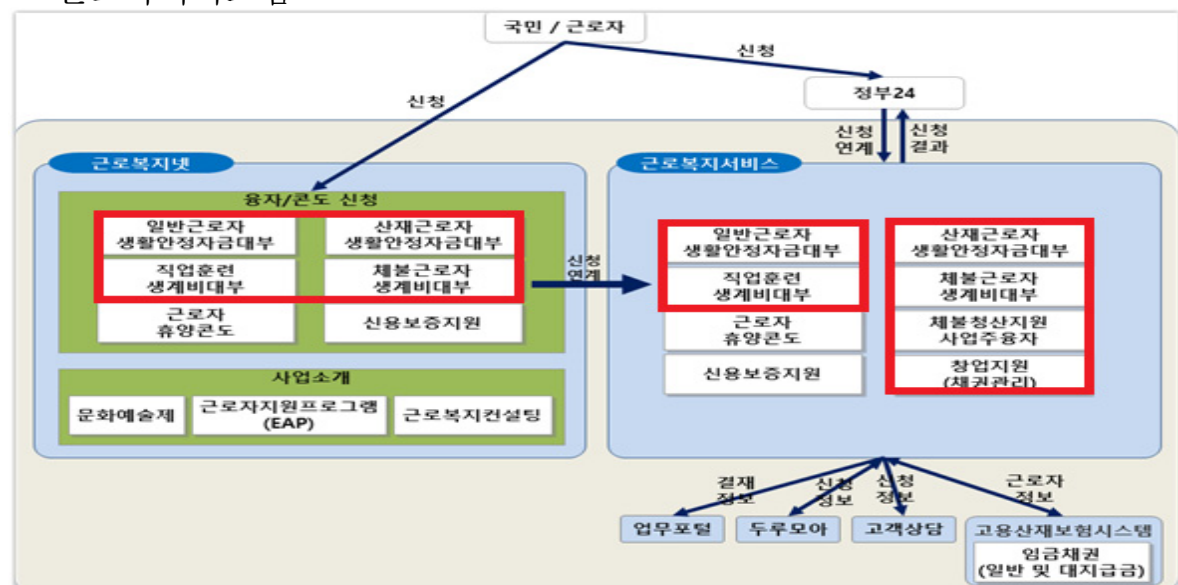
-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비대면 근로복지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모바일시스템 개선을 통한 쉽고 편리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현
 - 대국민 근로복지종합포털로의 기능 충족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

5)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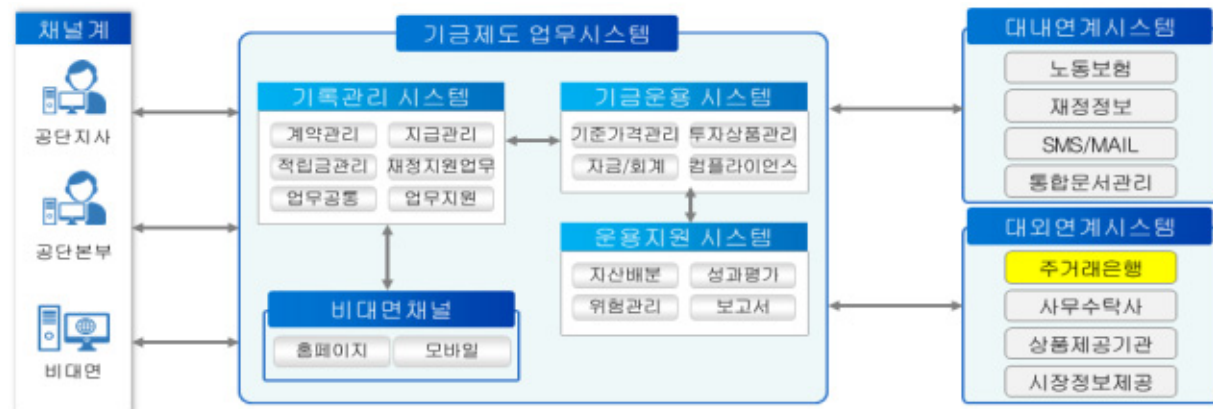
○ 근로복지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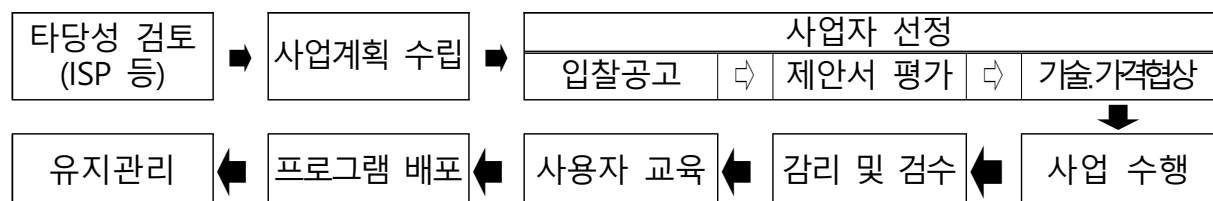
○ 퇴직연금 시스템(계약형)



○ 퇴직연금 시스템(기금형)



□ 사업 절차



8) 각종 평가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자세 변경을 통한 예산 미편성 신규사업 추진 지양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 재발주의(환노위·예결위, '22년도 결산 검토보고서)
- 대외공개 평가: 해당 없음
- 자체평가
 - '23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24년 시행) '24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25년 시행) "보통"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 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3,831	13,238	17,069	17,069	14,769	86.5	86.5	2,296	4
2023	4,792	760	5,552	7,848	7,848	100.0	100.0	0	0
2024	5,854	0	5,854	5,854	5,851	99.9	99.9	0	3
2025	5,358	0	5,358	5,358	5,358	100.0	100.0	0	0

2) 주요 결산 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사항

2022	- 계획 변경 사유: 3,831백만 원 → 17,069백만 원, 증 13,238백만 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22. 4. 14.)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비용 증액 - 이월 사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통합플랫폼 구축 관련 용역 사업 종료 기간 미도래에 따른 일부 금액 이월 2,296백만 원 - 불용 사유: 정보화 사업 낙찰 차액 4백만 원 불용
2023	- 계획 변경 사유: 4,792백만 원 → 5,552백만 원, 증 760백만 원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비용 증액
2024	- 불용 사유: 정보화 사업 낙찰 차액 3백만 원 불용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계획 변경 세부내역: 해당 없음

사 업 명
(6) 생활안정자금(용자)(3062-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근로복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중소복지	080	08E
명칭	진흥기금			계정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62	306
명칭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근로자생활안정자금(용자)	생활안정자금(용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생활안정자금 (용자)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사업시행주체	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 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생활안정자금(용자)	118,234	91,462	106,342	91,070	89,432	△ 2,030	△ 2.2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 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 획
	계 획 액 (수정)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이 월 액	불 용 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이 월 액	불 용 액	
						당 초	수 정					
○ 기능별 분류(합계)	118,462	118,462	118,234	0	228	91,462	106,342	106,342	92,480	-	13,862 [13,862]	89,432
· 생활안정자금(응자)	118,462	118,462	118,234	0	228	88,462	103,342	103,342	92,438	-	10,904 [10,904]	85,475
·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0	0	0	0	0	3,000	3,000	3,000	42	-	2,958 [2,958]	3,957

나. 사업 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저소득 노동자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 필수자금
응자를 통해 가계 부담 경감 및 생활 안정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 근거 및 추진 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

- ①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의 응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경제 상황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응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혼례비·장례비·생계비 등의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의 응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생활안정자금의 응자)

- ①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의 응자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근속 중이고 그 임금 수준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근로자로 하며, 그 가족의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생계비의 응자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응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신청근로자의 소득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근로자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용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용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자금의 범위, 용자 조건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 추진 경위

- '96년 중소기업체 생산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용자 시행
- '98년 혼례·장례비 용자 추가
- '99. 1. 3개월 이상 체불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생계비대부 시작
- '99. 2. 2개월 이상 체불 노동자로 사업 대상 변경(체불생계비)
- '02년 기업규모 및 업종 제한 폐지, 용자 대상을 저소득 노동자로 전면 확대
- '03년 노부모 요양비 추가
- '08. 1. 용자 종류 간 우선순위 부여(의료비→노부모요양비→장례비→혼례비)
- '08. 9. 1개월 이상 체불 노동자로 사업 대상 변경(체불생계비)
- '10. 1. 체불생계비대부사업과 통합 운영
- '11. 9. 자녀학자금·긴급생활유지비 추가
- '13. 1. 용자 종목 명칭 변경(긴급생활유지비→임금감소생계비)
- '14. 5. 소액용자제도 신설(소액임금감소생계비)
- '15. 1. 신청자 1인당 용자 한도 증액(1인당 1천만 원 → 2천만 원) 및 금리 인하(3.0% → 2.5%), 자녀학자금 자녀 수 제한 폐지, 생활안정자금 비정규직 소득 요건 폐지
- '16. 1. 소득 기준 인용 근거 일원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용자 대상자 추가
* 소득 기준 인용 근거: 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상 중위 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17. 3. 건설일용근로자 용자 요건 완화(45일 이상 일용근로내역/7.5일분 이상 체불 → 3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5일분 이상 체불)
- '17.10. 용자 대상자 확대(부당해고 후 복직 전 근로자 용자 대상자 포함)
- '18. 5.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근로자 대상 용자 요건 완화(소득 요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자녀 500만 원 한도 →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 대상 700만 원 한도, 임금체불생계비: 1,000만 원 한도 → 2,000만 원 한도)
- '18. 7. 임금체불생계비 용자 소득 요건 완화(3인가구 중위소득 → 4인가구 중위소득)
- '19. 4. 거치 상환기간 다양화(1년 거치 3년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상환 중 선택)
- '19. 9. 임금체불생계비 대상자 확대: 재직 노동자 → 재직 및 퇴직 후 6개월 이내 노동자
- '19.11. 용자 금리 인하: 연 2.5% → 1.5%
- '20. 3.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용자) 소득 요건 완화(3.9~12.31.)
* 3인가구 중위소득의 2/3(20년 기준 월 259만 원) 이하 → 3인가구 중위소득(20년 기준 월 388만 원) 이하

- '20. 5.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금채불생계비·소액생계비 용자 한도 한시 인상(5.1.~12.31.)
* (임금채불생계비) 1→2천만 원, (소액생계비) 2→5백만 원
- '20. 7.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1인당 용자 총한도 한시 확대(7.1.~12.31.) * 2 → 3천만 원
- '21. 1. 7세미만 영·유아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위한 '자녀양육비' 신설
- '21. 6. 용자종목 중 “임금채불생계비” 폐지
*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임금채불 근로자 생계비 용자사업' 시행('21. 6. 9.)
- '22. 2. 코로나 피해 고용 취약계층 생계 지원을 위한 한시 '생계지원비' 신설
- '22. 2. 혼례비 용자 요건 완화(예식 전 및 혼인신고 후 90일 이내 →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 '23. 8. 수해 피해지역 사업장 근로자 대상 용자 요건 완화(자녀학자금: 고등학생 자녀 500만 원 한도 →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 대상 700만 원 한도)
- '24.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속성 폐지에 따른 임금감소생계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액생계비와 통합하고, 상환 조건 완화(1년 거치 1년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상환)
- '25. 1. 부모요양비 → 노부모부양비로 용자 종목명 변경, 자녀양육비 및 노부모부양비 한도 상향(1→2천만 원), 자녀학자금 폐지

□ 주요 내용

① 사업 규모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사업기간: '96년 ~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1,850	170,000	118,462	106,342	89,432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시행 방법: 용자
- 사업 시행 주체: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중인 1인 자영업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 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생활안정자금 (용자)	용자	근로복지공단	85,475	100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 등)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용자	근로복지공단	3,957	3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생활안정자금(용자)

: (2025 추경) 106,342백만 원 → (2026 계획) 89,432백만 원, 16,910백만 원 감액

(2025 당초 계획 91,462백만 원 → 제1회 추경 106,342백만 원)

- (요구) '25년 이차보전 용자잔액 및 '26년 이차보전 신규 용자 발생에 따른 이자 지원금 반영 및 경기회복세를 감안하여 2,030백만 원을 감액한 89,432백만 원 요구

- (산출) 89,432백만 원 = ('24년 용자종목별 평균단가 × 14,118명) + 이차보전금

■ 생활안정자금(용자) 85,475백만 원 = '24년 용자종목별 평균단가 × 14,118명

① 의료비: 11,300백만 원 = 3,054명×3.7백만 원

② 혼례비: 41,761백만 원 = 3,423명×12.2백만 원

③ 장례비: 1,469백만 원 = 165명×8.9백만 원

④ 노부모부양비: 5,255백만 원 = 1,222명×4.3백만 원

⑤ 자녀양육비: 23,524백만 원 = 5,114명×4.6백만 원

⑥ 소액생계비: 2,166백만 원 = 1,140명×1.9백만 원

■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3,957백만 원

① 3,000백만 원 = '26년 신규 20,000명 × 5.0백만 원('25년 용자 한도) × 이차보전을 3%p

* 용자 재원 1,000억 원 기준

② 957백만 원 = '25년 이전 용자잔액 이차보전금 × 이차보전을 3%p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1,462	○ 기타민간용자금(450-04) : 88,462,000천 원 가. 생활안정자금 용자 (88,461,500천원) - 의료비: 11,412,000천원 = 3,170명×3,600천 원 - 혼례비: 28,291,800천원 = 2,319명×12,200천 원 - 장례비: 1,719,900천원 = 189명×9,100천 원 - 부모요양비: 5,680,400천 원 = 1,291명×4,400천 원 - 자녀학자금: 12,680,600천 원 = 2,698명×4,700천 원 - 자녀양육비: 25,022,800천 원 = 5,324명×4,700천 원 - 소액생계비: 3,654,000천 원 = 1,827명×2,000천 원 나. 조정 재원 (500천 원) ○ 이차보전금(320-05) : 3,000,000천 원 가.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3,000,000천 원) 3,000,000천 원 = (20,000명×5,000천 원('25년 단가))×3.0%보전	89,432	○ 기타민간용자금(450-04) : 85,475,000천 원 가. 생활안정자금 용자 (85,475,000천 원) - 의료비: 11,300,000천원 = 3,054명× 3,700천 원 - 혼례비: 41,761,000천원 = 3,423명 × 12,200천 원 - 장례비: 1,469,000천원 = 165명 × 8,900천 원 - 노부모부양비: 5,255,000천 원 = 1,222명 × 4,300천 원 - 자녀양육비: 23,524,000천 원 = 5,114명 × 4,600천 원 - 소액생계비: 2,166,000천 원 = 1,140명 × 1,900천 원 ○ 이차보전금(320-05) : 3,957,000천 원 가.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3,957,000천 원) 3,000백만 원 = '26년 신규 20,000명 × 5.0백만 원('25년 용자 한도) × 이차보전을 3%p * 용자 재원 1,000억 원(금융기관 재원) 기준 957백만 원 = '25년 이전 용자잔액 이차보전금 × 이차보전을 3%p

4) 사업 효과

□ 사업 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 근거	추정산식 (또는 추정 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 출처)
용자 지원을 (단위: %)	목표	93.0	93.4	-	-	-	지표삭제('24년)	(생활안정자금 용자 실행액 / 생활안정자금 용자 예산)×100	근로복지공단 내부 자료
	실적	96.3	97.1	-	-	-			
	달성도	103.5	104.0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 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231,850백만 원의 예산으로 223,170백만 원 집행(41,639명 지원)하여 계획 대비 96.3% 달성. 집행잔액으로 8,680백만 원 발생
2023	170,000백만 원의 예산으로 165,030백만원 집행(30,639명 지원)하여 계획 대비 97.1% 달성. 집행잔액으로 4,970백만 원 발생
2024	118,462백만 원의 예산으로 118,234백만 원 집행(20,306명 지원)하여 계획 대비 99.8% 달성
2025	106,342백만 원의 예산으로 92,490백만 원 집행(16,500명 지원)하여 계획 대비 87.0% 달성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금융기관 재원을 포함하여 매년 1,800억 원 규모의 사업 유지 및 저소득 취약계층 노동자 생활 필수자금 용자를 통한 생활 안정 지원

5)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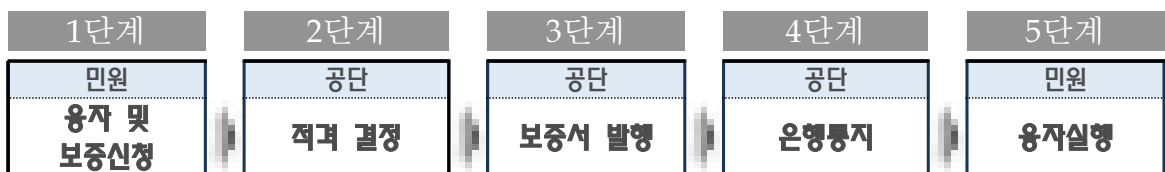
7) 사업 집행 절차

○ 추진체계

- ① 사업계획 수립(근로복지공단) → ②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심의회 심의 → ③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 ④ 근로복지공단 시행

○ 업무 흐름 절차

- ① 용자신청서 접수(공단 소속기관) → ② 용자 대상 사전심사 및 예비 선발 결과 통보(공단본부) → ③ 예비 선정자 증빙서류 제출 → ④ 용자 대상자 최종 선발 및 결과 통보(소속기관) → ⑤ 용자약정체결 및 용자금 지급(용자 대상자, 대행금융기관)



8) 각종 평가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5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한 이차보전금 계획안 감액 조정 필요('26회계연도 예산안 기후노동위 검토보고서)
- 대외공개 평가: 해당 없음
- 자체평가: '24회계연도('25년 시행) 재정사업자율평가 “보통”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 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99,051	32,799	231,850	231,850	223,170	96.3	96.3	0	8,680
2023	150,000	20,000	170,000	170,000	165,030	97.1	97.1	0	4,970
2024	88,462	30,000	118,462	118,462	118,234	99.8	99.8	0	228
2025	91,462	14,880	106,342	106,342	92,480	87.0	87.0	0	13,862

2) 주요 결산 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사항

2022	- 기금운용계획 변경: 1,991억 원 → 2,319억 원 - 계획 변경 사유: 물가 상승으로 취약 근로 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용자 재원 추가 확보 - 불용 사유 ○ 생활안정자금(용자) : 해당 사유 발생 시에만 용자 지원이 가능한 사업 특성 상 불가피하게 미집행액 발생 ○ 고용 취약계층 생계 지원 용자 : 사업비 규모 내 용자신청을 받았으나, 최종 용자 미실행, 신용불량 등으로 불용액 발생 및 일용직 인건비 등 운영비 일부 불용
2023	- 기금운용계획 변경: 1,500억 원 → 1,700억 원 - 계획 변경 사유: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해 용자 재원 추가 확보 - 불용 사유: 결혼, 가족 사망, 질병 등 해당 사유 발생 시에만 용자 지원이 가능한 사업 특성상 불가피하게 미집행액 발생
2024	- 기금운용계획 변경: 885억 원 → 1,185억 원 - 계획 변경 사유: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여파에 따른 경기회복세 둔화로 취약 근로 계층 가계경제 부담이 가중되어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용자 재원 추가 확보 - 불용 사유: 사업비 규모 내 용자신청을 받았으나, 용자신청서 심사 시 부적격 처리(자격요건 미달), 신용불량, 최종 용자 미실행 등의 사유로 불용액 발생
2025	- 기금운용계획 변경: 915억 원 → 1,063억 원 - 계획 변경 사유: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여파에 따른 경기회복세 둔화로 취약계층 가계경제 부담 경감을 위해 용자 재원 추가 확보(1차 추정)

☐ 2025년 계획 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 원)

구분(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국회 의결 (2025.6.9.)	생활안정자금 (용자)	450	04	14,880	경기회복세 둔화로 취약계층 가계경제 부담 경감을 위해 용자 재원 추가 확보 (1차 추정)
합계				14,880	

사 업 명
(7) 기금관리비(인건비)(7081-1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근로복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중소복지	080	08E
명칭	진흥기금			계정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1	101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근로복지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인건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금관리비 (인건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 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중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금관리비 (인건비)	8,933	9,222	9,257	9,581	9,581	359	3.9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 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8,933	8,933	8,933	0	0	9,222	9,257	9,222	9,257	0	0	9,581
· 인건비	8,933	8,933	8,933	0	0	9,222	9,257	9,222	9,257	0	0	9,581

나. 사업 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복지사업 종사자(153명) 인건비 집행으로 원활한 근로복지 사업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 근거 및 추진 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6.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② 추진 경위

- 최초 사업 시작 년도: 1993년
- 추진 배경
 - '93. 12.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정·시행
 - '94. 5.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설치
 - '98. 2.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실업대책사업 등 사업범 위 확대
 - '02. 1.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시행
 - '10.12.09.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시행

□ 주요 내용

① 사업 규모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사업 기간: '93년 ~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705	8,696	8,933	9,222	9,581

②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시행 방법: 직접 수행
- 사업 시행 주체: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 근거: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중소복지계정 사업수행 인력 인건비

: (2025 기변) 9,257백만 원 → (2026 계획) 9,581백만 원, 324백만 원 증액
(2025 당초 계획 9,222백만 원 → 기금운용계획변경 9,257백만 원)

- (요구) 중소복지계정 사업수행인력(153명) 인건비 인상 및 내부 경영평가 성과급 정상지급분 반영 요구
- (산출) '26년 인건비 9,581백만 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257	○ 인건비(110-01) : 9,257,000천 원 가. '24년 인건비 : 8,933,000천 원 나. '25년 인상분(3%): 270,000천 원 다. '24년 정기증원(추가 6개월분): 19,000천 원 라. 기금운용계획 변경: 35,000천 원	9,581	○ 인건비(110-01) : 9,581,000천 원 가. '25년 인건비 : 9,222,000천 원 나. '26년 인상분: 323,000천 원 다. 내부경영평가성과급 정상지급: 36,000천 원

4) 사업 효과

□ 사업 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 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 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중소복지계정 사업의 원활한 수행

5)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 절차: 해당 없음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 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 없음
- 3) 자체평가: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 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8,409	296	8,705	8,705	8,705	100.0	100.0	0	0
2023	8,696	0	8,696	8,696	8,696	100.0	100.0	0	0
2024	8,933	0	8,933	8,933	8,933	100.0	100.0	0	0
2025	9,222	0	9,257	9,257	9,257	100.0	100.0	0	0

2) 주요 결산 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사항

2022	- 계획 변경: 296백만 원 증액(추경) - 이월 및 불용 없이 전액 집행
2023	- 이월 및 불용 없이 전액 집행
2024	- 이월 및 불용 없이 전액 집행
2025	- 계획 변경: 35백만 원 증액(기금운용계획 변경)

☐ 2025년 계획 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 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 변경 (2025.12.24.)	기금관리비 (인건비)	110	01	35	대법원 통상임금 기준 판례 변경(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편입)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분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여유자금→인건비)
합계				35	

사 업 명						
(8) 기금관리비(기타경비)(7081-2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근로복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중소복지	080	08E
명칭	진흥기금			계정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1	201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근로복지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기타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금관리비 (인건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 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1,713	1,442	1,442	1,932	1,932	490	34.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 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713	1,713	1,713	0	0	1,442	1,442	1,442	1,442	0	0	1,932
· 가금관리비(기타경비)	1,713	1,713	1,713	0	0	1,442	1,442	1,442	1,442	0	0	1,932

나. 사업 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관리 비용 집행으로 원활한 근로복지 사업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 근거 및 추진 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6.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② 추진 경위

- 최초 사업 시작 년도: 1993년
- 추진 배경
 - '93. 12.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정·시행
 - '94. 5.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설치
 - '98. 2.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실업대책사업 등 사업범위 확대
 - '02. 1.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시행
 - '10.12.09.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시행

□ 주요 내용

① 사업 규모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사업기간: '93년 ~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03	1,637	1,713	1,442	1,932

②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시행 방법: 직접 수행
- 사업 시행 주체: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 근거: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기금관리비(기타 경비)

- : (2025 당초 계획) 1,442백만 원 → (2026 계획) 1,932백만 원, 490백만 원 증액
 - (요구) 중소복지계정 사업운영비증액 요구(청사임차료 및 관리비 인상분, 지사 이전 소요 등)

① 계속 소요: 1,401백만 원(1,442백만 원- 25년 완료 소요)

- 1,442백만 원(24년도 예산) - 24년도 완료 소요 41백만 원(청사 이전 비용 등)

② 특이 소요: +576백만 원

- 처우개선(7백만 원), 소속기관 이전 확장 소요(39백만 원), 임차 청사 임차관리비 인상 소요(24백만 원), 경인지역본부 개청 준비 소요(151백만 원), 국가결산체계 용역비 (346백만 원), 노후 및 임차차량 교체소요(9백만 원)

③ 특이 소요 반영 잔여분: △45백만 원

- * 특이 소요 반영 잔여분은 기타 운영비, 자산취득비에서 감액

- (산출) 상용임금 140백만 원, 운영비 992백만 원, 여비 298백만 원, 업무추진비 8백만 원, 직책수행경비 36백만 원, 일반연구비 366백만 원, 고용부담금 25백만 원, 자산취득비 66백만 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42	○ 인건비(110-03) : 133,412천 원	1,932	○ 인건비(110-03) : 140,412천 원
	가. 무기계약직(3명) (128,412천 원)		가. 무기계약직(3명) (133,412천 원)
	나. 처우개선 (5,000천 원)		나. 처우개선 (7,000천 원)
	○ 일반수용비(210-01) : 104,356천 원		○ 일반수용비(210-01) : 112,356천 원
	가. 본부 및 소속기관 64개소 일반수용비 (88,356천 원)		가. 본부 및 소속기관 64개소 일반수용비 (88,356천 원)
	나. 회계법인 결산지원용역비 (15,000천 원)		나. 회계법인 결산지원용역비 (15,000천 원)
	다. 청사이전 이사비용 기금분담금 (1,000천 원)		다. 청사이전 이사비용 기금분담금 (9,000천 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65,087천 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92,087천 원
	가. 본부 및 소속기관 64개소 공공요금및제세 65,087천 원		가. 본부 및 소속기관 64개소 공공요금및제세 65,087천 원
	○ 특근매식비(110-01) : 2,953천 원		○ 특근매식비(110-01) : 2,953천 원
	가. 특근매식비 (2,953천 원)		가. 특근매식비 (2,953천 원)
	○ 임차료(210-07) : 260,000천 원		○ 임차료(210-07) : 294,000천 원
	가. 임차료 (260,000천 원)		가. 임차료 (294,000천 원)
	· 노후 및 임차차량 교체소요 기금분담분 13,000천 원 포함		· 노후 및 임차차량 교체소요 기금분담분 9,000천 원 포함
	○ 유류비(210-08) : 2,000천 원		○ 유류비(210-08) : 2,000천 원
	가. 유류비 (2,000천 원)		가. 유류비 (2,000천 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252,935천 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312,935천 원
	가. 청사 관리비 분담 및 유지보수비 (216,935천 원)		가. 청사 관리비 분담 216,935천 원
	나. 특별민원보호 연동경비 기금분담금 (27,000천 원)		나. 소속기관 이전 시설장비유지비 기금분담금(19,000천 원)
	다. 소속기관 이전 시설장비유지비 기금분담금(9,000천 원)		다. 경인지역본부 개청준비소요 (77,000천 원)
	○ 복리후생비(210-12) : 117,848천 원		○ 복리후생비(210-12) : 117,848천 원
	가. 복지포인트 등 (103,967천 원)		가. 복지포인트 등 (103,967천 원)
	나. 단체보장성보험가입 (11,781천 원)		나. 단체보장성보험가입 (11,781천 원)
	· 77,000원*153 = 11,781천 원		· 77,000원*153 = 11,781천 원
	다. 공무원 처우개선(복지포인트) (2,100천 원)		다. 공무원 처우개선(복지포인트) (2,100천 원)
	· 700,000원*3명 = 2,100천 원		· 700,000원*3명 = 2,100천 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일반용역비(210-14): 20,000천 원 가. PCSI (20,0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57,591천 원 가. 본부 및 64개 소속기관 부서운영비 (57,591천 원) ○ 국내여비(220-01) : 290,367천 원 가. 본부, 64개 소속기관 여비 (290,367천 원) ○ 국외여비(220-02) : 8,251천 원 가. 선진복지제도시찰 (8,251천 원) ○ 사업추진비(240-01) : 1,533천 원 가. 근로복지사업 수행관련 사업추진(본부, 64개소속기관) (1,533천 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6,897천 원 가. 본부 및 64개 소속기관 관서업무비 (6,897천 원) ○ 직책수행경비(250-02) : 35,646천 원 가. 월정직책급(이사1명,1급1명,2급 3명,3급28명) (35,646천 원) ○ 일반연구비(260-01) : 20,000천 원 가. 근로복지사업 연구용역 (20,000천 원) ○ 고용부담금(320-09) : 24,724천 원 가. 무기계약직(3명) 사회보험료 및 퇴직금 (24,724천 원) ○ 자산취득비(430-01) : 38,400천 원 가. 본부 및 64개 소속기관 자산취득비 (38,400천 원)		○ 일반용역비(210-14) : 20,000천 원 가. PCSI (20,000천 원) ○ 기타운영비(210-16) : 38,251천 원 가. 본부 및 64개 소속기관 부서운영비 (38,251천 원) ○ 국내여비(220-01) : 290,367천 원 가. 본부, 64개 소속기관 여비 (290,367천 원) ○ 국외여비(220-02) : 7,510천 원 가. 선진복지제도시찰 (7,510천 원) ○ 사업추진비(240-01) : 1,533천 원 가. 근로복지사업 수행관련 사업추진(본부, 64개소속기관) (1,533천 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6,897천 원 가. 본부 및 64개 소속기관 관서업무비 (6,897천 원) ○ 직책수행경비(250-02) : 35,646천 원 가. 월정직책급(이사1명,1급1명,2급 3명,3급28명) (35,646천 원) ○ 일반연구비(260-01) : 3,66,000천 원 가. 근로복지사업 연구용역 (20,000천 원) 나. 국가결산체계개편 용역비 (346,000천 원) ○ 고용부담금(320-09) : 25,465천 원 가. 무기계약직(3명) 사회보험료 및 퇴직금 (25,465천 원) ○ 자산취득비(430-01) : 40,740천 원 가. 본부 및 64개 소속기관 자산취득비 (23,740천 원) 나. 경인지역본부 개청준비소요 (40,000천 원) 다. 소속기관 이전 자산취득비 (17,000천 원) 라. 공통경비 절감 △15,000

4) 사업 효과

☐ 사업 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 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 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중소복지계정 사업의 원활한 수행

5)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 절차: 해당 없음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 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 없음
- 3) 자체평가: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 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203	0	1,203	1,203	1,134	94.3	94.3	0	69
2023	1,637	0	1,637	1,637	1,635	99.9	99.9	0	2
2024	1,713	0	1,713	1,713	1,713	100.0	100.0	0	0
2025	1,442	0	1,442	1,442	1,442	100.0	100.0	0	0

2) 주요 결산 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사항

2022	- 불용 사유: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경상경비 하반기 예산 10% 절감 및 집행잔액
2023	- 불용 사유: 집행잔액
2024	- '24. 10. 10.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연구비로 4백만 원 전용(근로복지기금사업 연구용역비 부족분 마련)
2025	- '25. 5. 27. 국내 여비에서 일반용역비, 시설 장비 유지비로 전용

☐ 2025년 계획 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 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 변경 사유
자체 변경 (2025.5.27.)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210	14	20	국가결산체계 개편 컨설팅
자체 변경 (2025.5.27.)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210	09	25	직제 개편 재배치
합계				45	

사 업 명						
(9) 기금관리비(법인세)(7081-2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근로복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중소복지	080	08E
명칭	진흥기금			계정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1	201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근로복지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법인세)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 계상	사업 소관 변경 정보
			실시 여부	관리 대상	예산사업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금관리비 (법인세)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 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금관리비 (법인세)	20	363	363	200	200	△163	△44.9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 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363	363	20	0	343	363	363	363	0	0	343	200
· 기금관리비(법인세)	363	363	20	0	343	363	363	363	0	0	343	200

나. 사업 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관리비용 집행으로 원활한 근로복지사업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 근거 및 추진 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② 추진 경위

- 최초 사업 시작 년도: 1993년
- 추진 배경
 - '93. 12.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정·시행
 - '94. 5.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설치
 - '98. 2.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실업대책사업 등 사업범위 확대
 - '02. 1.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시행
 - '10.12.09.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시행

□ 주요 내용

① 사업 규모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사업 기간: '93년 ~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758	5,549	363	363	200

②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시행 방법: 직접 수행
- 사업 시행 주체: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기금관리비(법인세)

: (2025 당초 계획) 363백만 원 → (2026 계획) 200백만 원 (163백만 원 감액)

- (산출) 법인세 200백만 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63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363,000천 원 가. 법인세 (363,000천 원)	200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200,000천 원 가. 법인세 (200,000천 원)

4) 사업 효과

□ 사업 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 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 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중소복지계정 사업의 원활한 수행

5)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 절차: 해당 없음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 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 없음
- 3) 자체평가: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 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7,758	0	7,758	7,758	7,758	100.0	100.0	0	0
2023	5,549	0	5,549	5,549	20	0.4	0.4	0	5,529
2024	363	0	363	363	20	5.5	5.5	0	343
2025	363	0	363	363	20	5.5	5.5	0	343

2) 주요 결산 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사항

2022	- 이월 및 불용 없이 예산 전액 집행
2023	- 법인세 경정청구 인용에 따른 법인세 미부과
2024	- 공단의 법인세 산출 세액 대비 기납부 원천세액이 많아 법인세 미집행
2025	- 공단의 법인세 산출 세액 대비 기납부 원천세액이 많아 법인세 미집행

☐ 2025년 계획 변경 세부내역: 해당 없음

사 업 명
(10) 사업운영비(근로자생활안정대부)(7081-2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근로복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중소복지	080	08E
명칭	진흥기금			계정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1	204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근로복지기금운영비	사업운영비 (근로자생활안정대부)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					2025예산시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사업운영비 (근로자생활 안정대부)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 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사업운영비 (근로자생활 안정대부)	113	113	113	113	113	-	-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 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13	113	113	0	0	113	113	113	113	0	0	113
· 사업운영비 (근로자생활안정대부)	113	113	113	0	0	113	113	113	113	0	0	113

나. 사업 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비

2) 사업개요

□ 사업 근거 및 추진 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

- ①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의 용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경제상황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용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혼례비·장례비·생계비 등의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용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생활안정자금의 용자)

- ①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의 용자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근속 중이고 그 임금 수준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근로자로 하며, 그 가족의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생계비의 용자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용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신청 근로자의 소득(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근로

자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용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용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자금의 범위, 용자 조건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 추진 경위

- '96년 중소기업체 생산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용자시행
- '98년 혼례·장례비 용자 추가
- '99. 1. 3개월 이상 체불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생계비대부 시작
- '99. 2. 2개월 이상 체불근로자로 사업대상 변경(체불생계비)
- '02년 기업규모 및 업종 제한 폐지, 용자대상을 저소득근로자로 전면 확대
- '03년 노부모 요양비 추가
- '08. 1. 용자종류 간 우선순위 부여(의료비→노부모요양비→장례비→혼례비)
- '08. 9. 1개월 이상 체불근로자로 사업대상 변경(체불생계비)
- '10. 1. 체불생계비대부사업과 통합운영
- '11. 9. 자녀학자금·긴급생활유지비 추가
- '13. 1. 용자 종목 명칭 변경(긴급생활유지비→임금감소생계비)
- '14. 5. 소액용자제도 신설(소액임금감소생계비)
- '15. 1. 신청자 1인당 용자 한도 증액(1인당 1천만 원 → 2천만 원) 및 금리 인하(3.0% → 2.5%),
자녀학자금 자녀 수 제한 폐지, 생활안정자금 비정규직 소득 요건 폐지
- '16. 1. 소득기준 인용근거 일원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용자대상자 추가
 - * 소득기준 인용근거 : 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상 중위 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17. 3. 건설일용근로자 용자 요건 완화(45일 이상 일용근로내역/7.5일분 이상 체불 → 3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5일분 이상 체불)
- '17.10. 용자 대상자 확대(부당해고 후 복직 전 근로자 용자대상자 포함)
- '18. 5.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 근로자 대상 용자 요건 완화(소득 요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자녀 500만 원 한도 →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 대상 700만 원 한도, 임금체불생계비: 1,000만 원 한도 → 2,000만 원 한도)
- '18. 7. 임금체불생계비 용자 소득 요건 완화(3인가구 중위소득 → 4인가구 중위소득)
- '19. 4. 거치 상환기간 다양화(1년 거치 3년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상환 중 선택)
- '19. 9. 임금체불생계비 대상자 확대: 재직 노동자 → 재직 및 퇴직 후 6개월 이내 노동자
- '19.11. 용자 금리 인하: 연 2.5% → 1.5%
- '20. 3.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용자) 소득 요건 완화(3. 9.~12. 31.)
 - * 3인가구 중위소득의 2/3('20년 기준 월 259만 원) 이하 → 3인가구 중위소득('20년 기준 월 388만 원) 이하
- '20. 5.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금체불생계비·소액생계비 용자한도 한시 인상(5. 1.~12. 31.)
 - * (임금체불생계비) 1→2천만원, (소액생계비) 2→5백만 원

- '20. 7.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1인당 용자 총한도 한시 확대(7. 1.~12. 31.)
* 2 → 3천만 원
- '21. 1. 7세미 만 영·유아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위한 '자녀양육비' 신설
- '21. 6. 용자종목 중 "임금체불생계비" 폐지
*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용자사업' 시행('21. 6. 9.)
- '22. 2. 코로나 피해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한시 '생계지원비' 신설
- '22. 2. 혼례비 용자요건 완화(예식 전 및 혼인신고 후 90일 이내 →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 '23. 8. 수해피해지역 사업장 근로자 대상 용자 요건 완화(자녀학자금 : 고등학생 자녀 500만원 한도 →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 대상 700만원 한도)
- '24.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속성 폐지에 따른 임금감소생계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액 생계비와 통합하고, 상환조건 완화(1년 거치 1년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상환)
- '25. 1. 부모요양비 → 노부모부양비로 용자종목명 변경, 자녀양육비 및 노부모부양비 한도 상향(1→2천만 원), 자녀학자금 폐지

□ 주요 내용

① 사업 규모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사업 기간: '96년 ~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4	113	113	113	113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시행 방법: 용자
- 사업 시행 주체: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해당 없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 근거: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① 사업운영비(근로자생활안정대부): (2025 당초 계획) 113백만 원 → (2026 계획) 113백만 원, 전년 동
 - (요구)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비
 - (산출)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특근매식비, 여비, 업무추진비 전년과 동일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3	○ 일반수용비(210-01) : 103,105천 원	113	○ 일반수용비(210-01) : 103,105천 원
	가. 사무용품 구입 (828천 원) · 복사용지(A4) : 25,000원*2박스*12월=600천 원 · 레이저프린터 소모품(토너) : 57,000원*4개=228천 원		가. 사무용품 구입 (828천 원) · 복사용지(A4) : 25,000원*2박스*12월=600천 원 · 레이저프린터 소모품(토너) : 57,000원*4개=228천 원
	나. 인쇄 및 유인비 (30,000천 원) · 안내문(8월) : 50원*200,000매=10,000천 원 · 안내문(4월) : 100원*200,000매=20,000천 원		나. 인쇄 및 유인비 (30,000천 원) · 안내문(8월) : 50원*200,000매=10,000천 원 · 안내문(4월) : 100원*200,000매=20,000천 원
	다. 각종수수료 및 사용료 (12,800천 원) · 주소출력비용 : 30원*160,000매=4,800천 원 · DM용역비용 : 50원*160,000매=8,000천 원		다. 각종수수료 및 사용료 (12,800천 원) · 주소출력비용 : 30원*160,000매=4,800천 원 · DM용역비용 : 50원*160,000매=8,000천 원
	라. 사업 안내 (9,000천 원) · 인터넷 광고료 : 1,000원*9,000회=9,000천 원		라. 사업 안내 (9,000천 원) · 인터넷 광고료 : 1,000원*9,000회=9,000천 원
	마. 소속기관 재배정 (50,592천 원) · 홍보비용 등 지원 : 50,592,000원=50,592천 원		마. 소속기관 재배정 (50,592천 원) · 홍보비용 등 지원 : 50,592,000원=50,592천 원
	바. 단수조정 -115천 원		바. 단수조정 -115천 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7,180천 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7,180천 원
	가. 우편료 (7,180천 원) · 보통우편: 520원*13,808매=7,180천 원		가. 우편료 (7,180천 원) · 보통우편: 520원*13,808매=7,180천 원
	○ 특근매식비(210-05): 300천 원		○ 특근매식비(210-05): 300천 원
	가. 특근매식비: 7,000원*2명*21일=294천 원		가. 특근매식비: 9,000원*2명*16일=288천 원
	나. 단수조정: 6천 원		나. 단수 조정: 12천 원
	○ 국내여비(220-01): 2,233천 원		○ 국내여비(220-01): 2,233천 원
	가. 관내 출장비: 22,000원*2명*8회=352천 원		가. 관내 출장비: 22,000원*2명*8회=352천 원
	나. 관외 출장비: 60,000원*2명*16회=1,920천 원		나. 관외 출장비: 60,000원*2명*16회=1,920천 원
	다. 단수조정: -39천 원		다. 단수조정: -39천 원
	○ 사업추진비(240-01): 182천 원		○ 사업추진비(240-01): 182천 원
	가. 대부담당자 회의: 182,000원*1회=182천 원		가. 대부담당자 회의: 182,000원*1회=182천 원

4) 사업 효과

□ 사업 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 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생활필수자금 대부 사업의 원활한 수행

5)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 절차: 해당 없음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 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 없음
- 3) 자체평가: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 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14	0	114	114	108	94.8	94.8	0	6
2023	113	0	113	113	113	100.0	100.0	0	0
2024	113	0	113	113	113	100.0	100.0	0	0
2025	113	0	113	113	113	100.0	100.0	0	0

2) 주요 결산 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사항

2022	- 불용 사유: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경상경비 하반기 예산 10% 절감 및 집행 잔액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계획 변경 세부내역: 해당 없음

사 업 명
(11) 사업운영비(근로자휴양시설지원)(7081-2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근로복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중소복지	080	08E
명칭	진흥기금			계정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1	205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고용노동행정지원	사업운영비(근로자휴양시설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사업운영비 (근로자휴양시설지원)	소관 부처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사업 시행 주체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 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사업운영비 (근로자휴양 시설지원)	644	646	646	20	20	△626	△96.9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 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646	646	644	0	2	646	646	646	644	0	2	20
· 사업운영비 (근로자휴양시설사업)	646	646	644	0	2	646	646	646	644	0	2	20

나. 사업 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근로자에 휴양콘도의 이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가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강한 노동력을 재생산

2) 사업개요

□ 사업 근거 및 추진 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9. 근로자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② 추진 경위

- '93. 12.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 제정·시행
- '94. 5. 근로복지진흥기금 설치
- '95. 1. 중소기업근로자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
- '97. 5. 50인 미만 제조업체 1년 이상 재직 생산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개시
- '01. 중소기업 전업종으로 확대
- '04. 11. 고령자와 임금이 낮은 근로자를 우대하도록 선정 우선순위 변경
- '07. 8. 근로자복지통합전산망 실시로 업무 편의성 향상
- '08. 5. 근로자휴양콘도 운영체계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13. 9. 근로자휴양콘도 지원사업 활성화 추진
- '20. 3. 근로자휴양콘도 지원사업 제도개선 추진
- * (이용대상 확대) 저소득 근로자 → 전체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
- '25. 6. 취약계층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근로자휴양콘도 지원규정」 개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사업 기간: '97년 ~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1	20	646	646	20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시행 방법: 직접 수행
- 사업 시행 주체: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산재보험 적용사업장(워크숍, 교육목적에 한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 근거: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사업운영비(근로자휴양시설지원) : (2025 당초 계획) 646백만 원 → (2026 계획) 20백만원(626백만 원 감액)

- (요구) 근로자휴양시설지원을 위한 운영비
- (산출)
 - (일반수용비) : ('25) 9백만 원 (전년 동)
 - (공공요금및제세) : ('25) 10백만 원 (전년 동)
 - (국내여비) : ('25) 1백만 원 (전년 동)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46	[210-01] 일반수용비 9,185천 원	20	[210-01] 일반수용비 9,185천 원
	1. 사무용품구입비 255천 원		1. 사무용품구입비 255천 원
	가. 복사용지(A4) : 23,500원*1박스*6월= 141천 원		가. 복사용지(A4) : 23,500원*1박스*6월= 141천 원
	나. 레이저프린터 소모품(토너) 구입비 : 57,000원*2개=114천 원		나. 레이저프린터 소모품(토너) 구입비 : 57,000원*2개=114천 원
	2. 광고료 9,750천 원		2. 광고료 9,750천 원
	가. 신문광고 : 35,000원*5단*18cm*3개지*1회=9,450천 원		가. 신문광고 : 35,000원*5단*18cm*3개지*1회=9,450천 원
20	나. 인터넷광고 : 1,000원*300회=300천 원	20	나. 인터넷광고 : 1,000원*300회=300천 원
	3. 휴양시설 안내 홍보물 제작비 : 93,000원=93천 원		3. 휴양시설 안내 홍보물 제작비 : 93,000원=93천 원
	4. 공통경비 절감 : -913,000원=-913천 원		4. 공통경비 절감 : -913,000원=-913천 원
	[210-02] 공공요금및제세 10,056천 원		[210-02] 공공요금및제세 10,056천 원
	1. 우편요금 1,883천 원		1. 우편요금 1,883천 원
	가. 보통우편 : 470원*3,447통=1,620천 원		가. 보통우편 : 470원*3,447통=1,620천 원
646	나. 등기우편 : 2,270원*116통=263천 원	20	나. 등기우편 : 2,270원*116통=263천 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 콘도구좌보유 지방세 : 6,973,000원=6,973천 원 3. SMS문자전송료 : 15원*80,000건=1,200천 원 [220-01] 국내여비 602천 원 1. 관내 출장비 : 22,000원*8명=176천 원 2. 관외 출장비 : 60,000원*8명=480천 원 3. 단수조정 : -54,000원=-54천 원 [240-01] 사업추진비 157천 원 1. 사업추진관련 간담회 : 157,000원 *1회 = 157천 원 [440-00] 무형자산 626,000천 원 1. 근로자휴양시설 계약 연장 : 626,000,000원=626,000천 원		2. 콘도구좌보유 지방세 : 6,973,000원=6,973천 원 3. SMS문자전송료 : 15원*80,000건=1,200천 원 [220-01] 국내여비 602천 원 1. 관내 출장비 : 22,000원*8명=176천 원 2. 관외 출장비 : 60,000원*8명=480천 원 3. 단수조정 : -54,000원=-54천 원 [240-01] 사업추진비 157천 원 1. 사업추진관련 간담회 : 157,000원 *1회 = 157천 원

4) 사업 효과

☐ 사업 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 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 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휴식을 통한 생산적 노동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업무로 지친 근로자 삶의 휴식처 역할 기대

5)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 절차: 해당 없음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 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 없음
- 3) 자체평가: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 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01	0	101	101	96	95.0	95.0	0	5
2023	20	0	20	20	19	95.0	95.0	0	1
2024	646	0	646	646	644	99.7	99.7	0	2
2025	646	0	646	646	644	99.7	99.7	0	2

2) 주요 결산 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사항

2022	- 계획 변경 사유: 해당 없음 - 불용 사유: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경상경비 하반기 예산 10% 절감 및 집행 잔액
2023	- 계획 변경 사유: 해당 없음 - 이월 사유: 해당 없음 - 불용 사유: 집행잔액 1백만원
2024	- 계획 변경 사유: 유형자산취득비를 무형자산으로 전용(626백만 원) - 이월 사유: 해당 없음 - 불용 사유: 근로자 휴양시설 만기 회원권 재계약에 따른 차액 2백만 원
2025	- 불용 사유: 근로자 휴양시설 만기 회원권 재계약에 따른 차액 2백만 원

☐ 2025년 계획 변경 세부내역: 해당 없음

사 업 명
(12) 복권기금전출(8999-84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근로복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중소복지 계정	080	08E
명칭	진흥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99	841
명칭	기금간거래(전출금)	복권기금반환	복권기금전출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복권기금전출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사업시행주체	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 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중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복권기금전출	9,714	23,448	23,448	26,255	26,255	2,807	12.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 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 획
	계 획 액 (수정)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이 월 액	불 용 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이 월 액	불 용 액	
						당 초	수 정					
○ 기능별 분류(합계)	9,714	9,714	9,714	0	0	23,448	23,448	23,448	23,441	0	7 [7]	26,255
· 복권기금전출	9,714	9,714	9,714	0	0	23,448	23,448	23,448	23,441	0	7 [7]	26,255

1) 사업목적·내용

- 복권기금으로부터 배분된 법정 배분금 사용 후 불용액에 대한 반환

2) 사업개요

□ 사업 근거 및 추진 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제1항 제6호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9조의2(불용액의 복권기금에의 반납)
 - 기관의 장 등은 해당 복권기금사업의 취소·축소·중단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不用額)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금액을 지체 없이 복권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금액을 복권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추진 경위

- 고용취약계층 한시생계비 융자원금 상환액, 근로복지기금지원 사업비, 퇴직연금사업 운영 사업비 및 신용보증대위변제 불용액 반납

□ 주요 내용

① 사업 규모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사업기간: '04년 ~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69	206	9,714	23,448	26,255

②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시행 방법: 직접 수행
- 사업 시행 주체: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 근거: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복권기금 전출

: (2025 당초 계획) 23,448백만 원 → (2026 계획) 26,255백만 원, 2,807백만 원 증액

- (요구)

- 고용 취약계층 한시생계비 용자원금 상환액 반납
- 근로복지기금지원 사업비 불용액
- 퇴직연금사업운영 사업비 불용액 반납
-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비 불용액 반납

- (산출)

- 고용 취약계층 한시생계비 용자 원금 상환액 22,875백만 원
- 근로복지기금지원 사업비 불용액 반환액 1,411백만 원
- 퇴직연금사업운영 사업비 불용액 반환액 1,957백만 원
-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비 불용액 반환액 12백만 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3,448	○ 기금전출금(610-03) : 23,448백만 원 - 고용 취약계층 한시생계비 용자원금 상환액 16,496백만 원 - 퇴직연금사업운영 사업비 불용액 6,952백만 원 반환	26,255	○ 기금전출금(610-03) : 26,255백만 원 ·고용 취약계층 한시생계비 용자원금 상환액 22,854백만 원 ·근로복지기금지원 사업비 불용액 반환액 1,411백만 원 ·퇴직연금사업운영 사업비 불용액 반환액 1,957백만 원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비 불용액 반환액 12백만 원

4) 사업 효과

□ 사업 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 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 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해당 없음

5)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 절차: 해당 없음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 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 없음
- 3) 자체평가: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 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974	195	1,169	1,169	1,168	99.9	99.9	0	1
2023	206	0	206	206	206	100.0	100.0	0	0
2024	9,714	0	9,714	9,714	9,714	100.0	100.0	0	0
2025	23,448	0	23,448	23,448	23,441	100.0	100.0	0	7

2) 주요 결산 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사항

2022	- 불용 사유: 집행잔액(1백만 원) - 계획 변경: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임차보증금 반납금의 신속한 반환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2023	해당 없음
2024	해당 없음
2025	- 불용 사유: 집행잔액(7백만 원)

☐ 2025년 계획 변경 세부내역: 해당 없음

사 업 명
(13)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9005-84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근로복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중소복지 계정	080	08E
명칭	진흥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000	9005	840
명칭	기금간거래(예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탁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 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탁	26,000	20,000	20,000	20,000	20,000	-	-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 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 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26,000	26,000	26,000	0	0	20,000	20,000	20,000	20,000	0	0	20,000
·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예탁	26,000	26,000	26,000	0	0	20,000	20,000	20,000	20,000	0	0	20,000

나. 사업 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복지계정 여유자금 일부를 공자기금에 예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용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며,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4. 「국가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

② 추진경위

- 2018년도 기금존치평가 시 중기가용자산 과다 보유로 공자기금 예탁 권고하여 2018년부터 예탁실시

□ 주요 내용

① 사업 규모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사업 기간: '18년~'20년, '23년 ~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26,000	26,000	20,000	20,000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시행 방법: 직접 수행
- 사업 시행 주체: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 근거: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2025 당초 계획) 20,000백만 원 → (2026 계획) 20,000백만 원, 전년 동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0,000	[480-03] 기금예탁금	20,000백만 원	20,000	[480-03] 기금예탁금	20,000백만 원

4) 사업 효과

□ 사업 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 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 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여 국가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투자하고, 국채의 발행 규모를 축소하여 국가 재정 안정화에 기여

5)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 절차: 해당 없음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 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 없음
- 3) 자체평가: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 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0	0	0	0	0	0	0	0	0
2023	26,000	0	26,000	26,000	26,000	100.0	100.0	0	0
2024	26,000	0	26,000	26,000	26,000	100.0	100.0	0	0
2025	20,000	0	20,000	20,000	20,000	100.0	100.0	0	0

2) 주요 결산 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사항

2022	- 해당 없음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계획 변경 세부내역: 해당 없음

사 업 명
(14) 신용보증사업계정 전출(9301-86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근로복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중소복지	080	08E
명칭	진흥기금			계정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300	9301	860
명칭	계정간거래(전출금)	신용보증사업계정 전출	신용보증사업계정 전출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신용보증 사업계정전출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사업시행주체	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 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중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신용보증사업 계정전출	35,352	31,215	57,887	40,172	40,172	8,957	22.3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 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35,352	35,352	35,352	0	0	31,215	57,887	57,887	57,887	0	0	40,172
· 신용보증사업 계정전출	35,352	35,352	35,352	0	0	31,215	57,887	57,887	57,887	0	0	40,172

나. 사업 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신용보증사업계정으로 자금 전출을 통하여 신용보증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사업 수행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 근거 및 추진 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근로복지기본법」 제92조(회계처리의 구분 등)

제92조(회계처리의 구분 등) ① 제88조 제1항 제5호 및 제9호 규정에 따른 자금은 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조성·운용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② 제88조 제1항 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자금은 각각 제91조 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사업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1조제5호에 따른 사업비를 위하여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안에서 구분 계리하는 자금 간에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추진 경위

- 최초 사업 시작 년도: 2003년
- 추진 배경: 신용보증사업계정 사업비를 위하여 중소기업계정의 자금 전용 필요

□ 주요 내용

① 사업 규모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사업 기간: '03년 ~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8,777	23,716	35,352	57,887	40,172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시행 방법: 직접 수행
- 사업 시행 주체: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 근거: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신용보증사업계정 전출금

: (2025 추경) 57,887백만 원 → (2026 계획) 40,172백만 원, 17,715백만 원 감액
(2025 당초 계획 31,215백만 원 → 제1회 추경 57,887백만 원)

- (요구) 신용보증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업비 요구액
- (산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법정배분금 및 신용보증계정 수지차, 신용보증계정의 복권기금 전출금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7,887	○ 계정간전출금(610-03) : 57,887,000천 원 가. 신용보증사업계정 전출 31,215,000천 원 · 신용보증지원사업 지출소요에서 자체수입과 여유자금을 고려한 금액 나. (1차 추경) 신용보증대위변제 추경액(32,952백만원) 신용보증 여유자금 소요(6,280백만원) 차액 +26,672,000천 원	40,172	○ 계정간전출금(610-03) : 40,172,000천 원 가. 신용보증사업계정 전출 · 신용보증지원사업 지출소요에서 자체수입과 여유자금 및 신용보증계정의 복권기금전출금을 고려한 금액

4) 사업 효과

□ 사업 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 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 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중소기업계정 사업의 원활한 수행

5)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 절차: 해당 없음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 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 없음
- 3) 자체평가: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 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8,777	0	18,777	18,777	10,700	57.0	57.0	0	8,077
2023	23,716	0	23,716	23,716	20,200	85.2	85.2	0	3,516
2024	35,352	0	35,352	35,352	35,352	100.0	100.0	0	0
2025	31,215	26,672	57,887	57,887	57,887	100.0	100.0	0	0

2) 주요 결산 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사항

2022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융자 사업 증액에 따른 신용보증계정 전출 규모 축소
2023	- 불용 사유: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으로 융자 예산 909억 원 증가됨에 따라 신용보증사업계정 보증료 수입 증가로 신용보증계정 전출 규모 축소
2024	- 해당 없음
2025	- (1차 추경) 신용보증 대위변제 재원 마련을 위한 계정 간 전출금 26,672백만 원

☐ 2025년 계획 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 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국회 의결 (2025.6.9.)	신용보증 사업계정 전출금	610	03	26,672	신용보증 대위변제 재원 마련을 위한 계정 간 전출금
합계				26,672	

사 업 명
(15) 통화금융기관예치(9713-97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근로복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중소복지	080	08E
명칭	진흥기금			계정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13	970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통화금융기관 예치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 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중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통화금융 기관예치	15,323	1,000	1,000	1,000	1,000	-	-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 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000	1,000	15,323	0	0	1,000	1,000	1,000	-	0	0	1,000
· 통화금융기관예치	1,000	1,000	15,323	0	0	1,000	1,000	1,000	-	0	0	1,000

나. 사업 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통화금융기관예치) 근로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여유자금 운용

2) 사업개요

□ 사업 근거 및 추진 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근로복지기본법」 제90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운용)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용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5.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을 위한 수익사업에의 투자

② 추진 경위

- 최초 사업시작 년도: 1993년

□ 주요 내용

① 사업 규모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사업 기간: 1993년 ~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00	1,000	1,000	1,000	1,000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시행 방법: 직접 수행
- 사업 시행 주체: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 근거: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중소복지계정 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한 여유자금

- 통화금융기관예치(중소복지) : (2025 당초 계획) 1,000백만 원 → (2026 계획) 1,000백만 원 (전년 동)
- '26년 말 통화금융기관 예치 예상액 : 1,000백만 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00	[470-02] 통화금융기관예치금	1,000백만 원	1,000	[470-02] 통화금융기관예치금	1,000백만 원

4) 사업 효과: 해당 없음

5)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 절차: 해당 없음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 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 없음
- 3) 자체평가: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 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000	0	1,000	1,000	11,630	1,163.0	1,163.0	0	0
2023	1,000	0	1,000	1,000	38,209	3,820.9	3,820.9	0	0
2024	1,000	0	1,000	1,000	15,323	1,532.3	1,532.3	0	0
2025	1,000	0	1,000	1,000	0	0	0	0	0

2) 주요 결산 사항: 해당 없음

사 업 명
(16)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13-97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근로복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중소복지	080	08E
명칭	진흥기금			계정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13	977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 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5,800	208,887	163,785	186,583	188,221	△20,666	△9.9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 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40,159	140,159	95,800	0	0	208,887	163,750	163,750	-	0	0	188,221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40,159	140,159	95,800	0	0	208,887	163,750	163,750	-	0	0	188,221

나. 사업 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근로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여유자금 운용

2) 사업개요

□ 사업 근거 및 추진 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근로복지기본법」 제90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제1항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용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5.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을 위한 수익사업에의 투자

② 추진 경위

- 최초 사업 시작 년도: 1993년

□ 주요 내용

① 사업 규모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사업 기간: 1993년 ~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1,943	56,892	140,159	167,335	188,221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시행 방법: 직접 수행
- 사업 시행 주체: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 근거: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중소기업계정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한 여유자금

- 비통화금융기관예치(중소복지) : (2025 기변) 163,750백만원 → (2026 계획) 188,221백만 원, 24,436백만 원 증액
(2025 당초 계획 208,887백만 원 → 제1회 추경 167,335백만원 → 기금변경 163,750백만원)
- '26년 말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예상액 : 186,583백만 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3,750	[470-03]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163,750백만 원 가. 당초예산 208,887백만원 나. (1회 추경) 신용보증계정 전출 -26,672백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비 -14,880백만원 다. (기금운용계획변경) 퇴직연금사업운영 사업비 -3,550백만원	186,583	[470-03]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186,583백만 원

4) 사업 효과: 해당 없음

5)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 절차: 해당 없음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 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 없음
- 3) 자체평가: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 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18,471	△46,528	71,943	71,943	100,408	139.6	139.6	0	0
2023	81,402	△24,510	56,892	56,892	43,339	76.2	76.2	0	0
2024	172,078	△31,919	140,159	140,159	95,800	68.4	68.4	0	0
2025	208,887	△45,137	163,750	163,750	0	0	0	0	0

2) 주요 결산 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사항

2022	- 기금운용계획 변경: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한 여유자금 감액
2023	-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전지정운용제도 운용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비용 및 공동근로복지 기금에 대한 지원 확대, 저소득 근로자 생계비 대출 지원 확대를 반영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한 여유자금 감액
2024	- 기금운용계획 변경: 생활안정자금융자 재원 확보를 위한 여유자금 감액, 공단이 LH에 매각한 구로 직장여성아파트 토양오염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화해 권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재원 확보를 위한 여유자금 감액
2025	- 1차 추경: 추경재원(융자 증액, 계정간 전출금) 확보를 위한 여유자금 감액 - 기금운용계획 변경: 신용보증 사업비, 퇴직연금 재정지원금, 인건비(통상임금 판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재원 확보를 위한 여유자금 감액

☐ 2025년 계획 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 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국회 의결 (2025.6.9.)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470	03	△41,552	1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비통화금융 기관예치 감액
자체 변경 (2025.11.19.)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470	03	△3,550	퇴직연금 재정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한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감액
자체 변경 (2025.12.24.)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470	03	△35	인건비 재원(통상임금 변경소요) 확보를 위한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감액
합계				△45,137	

사 업 명
(17) 근로복지금(신용계정) 정보화경비(정보화)(3063-32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근로복지진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 관	신용보증	080	08B
명칭	기금			사업계정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63	326
명칭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근로자복지지원	근로복지금(신용계정) 정보화경비(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근로복지금(신용계정) 정보화경비(정보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 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중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근로복지금 (신용계정) 정보화경비 (정보화)	148	148	148	148	148	-	-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 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48	148	148	0	0	148	148	148	148	0	0	148
· 전산장비 유지관리	120	120	120	0	0	120	120	120	120	0	0	120
·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28	28	28	0	0	28	28	28	28	0	0	28

나. 사업 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보증·담보 여력이 낮은 취약계층의 정상 금융 생활 복귀 지원 등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 근거 및 추진 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16.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② 추진 경위

- 기존: 고용보험회계와 산재보험회계에서 50%씩 부담
- '08년부터: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분담
(근로복지진흥기금 2.1% 분담, 단, 자산취득비는 4.2% 분담)

□ 주요 내용

① 사업 규모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사업 기간: '08년~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48	148	148	148	148

②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시행 방법: 직접 수행
- 사업 시행 주체: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 근거: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근복기금(신용보증) 정보화 경비

- : (2025 당초 계획) 148백만 원 → (2026 계획) 148백만 원, 전년동
- (요구) 전산장비 유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지원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전산장비 유지관리 120백만 원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28백만 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8	[210-01] 일반수용비 21,949천 원 1. 전산소모품구입: 1,399,000원=1,399천 원 2. 바이러스백신 사용료: 3,212,000원=3,212천 원 3. 패치관리SW 사용료: 17,000,000원=17,000천 원 4. 단수조정 338,000원=338천 원 [210-02] 공공요금및제세 5,839천 원 1. 우편요금: 39,827원=40천 원 2. 통신회선사용료: 5,799,477원=5,799천 원 [210-07] 임차료 79,000천 원 1. '23년 사무자동화기기 도입: 34,000천 원 2. '24년 노후보안장비 교체 및 증설: 45,000천 원 [210-09] 시설장비유지비 34,006천 원 1. HW 유지보수: 34,006,000원=34,006천 원 [210-15] 관리용역비 7,206천 원 1.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위탁: 7,206,000원=7,206천 원	148	[210-01] 일반수용비 21,949천 원 1. 전산소모품구입 : 1,399,000원=1,399천 원 2. 바이러스백신 사용료 : 3,212,000원=3,212천 원 3. 패치관리SW 사용료 : 17,000,000원=17,000천 원 4. 단수조정 : 338,000원=338천 원 [210-02] 공공요금및제세 5,839천 원 1. 우편요금: 39,827원=40천 원 2. 통신회선사용료: 5,799,477원=5,799천 원 [210-07] 임차료 79,000천 원 1. '23년 사무자동화기기 도입: 34,000천 원 2. '24년 노후보안장비 교체 및 증설: 45,000천 원 [210-09] 시설장비유지비 34,006천 원 1. HW 유지보수 : 34,006,000원=34,006천 원 [210-15] 관리용역비 7,206 천원 1.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위탁 : 7,206,000원=7,206천 원

4) 사업 효과

□ 사업 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 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 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신용보증사업계정 사업의 원활한 수행

5)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 절차: 해당 없음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 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 없음
- 3) 자체평가: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 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48	0	148	148	141	95.0	95.0	0	7
2023	148	0	148	148	148	100.0	100.0	0	0
2024	148	0	148	148	148	100.0	100.0	0	0
2025	148	0	148	148	148	100.0	100.0	0	0

2) 주요 결산 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사항

2022	- 불용 사유: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경상경비 하반기 예산 10% 절감 및 집행 잔액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계획 변경 세부내역: 해당 없음

사 업 명
(18) 신용보증대위변제(3064-3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근로복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신용보증 사업계정	080	08E
명칭	진흥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64	308
명칭	근로조건 보호 및 복지증진	신용보증대위변제	신용보증대위변제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신용보증 대위변제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 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신용보증 대위변제	30,195	31,659	86,331	37,734	37,734	6,075	19.2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 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 획
	계 획 액 (수정)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이 월 액	불 용 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이 월 액	불 용 액	
						당 초	수 정					
○ 기능별 분류(합계)	30,195	30,195	30,195	0	0	31,659	86,331	86,331	86,331	0	0	37,734
· 신용보증대위변제	30,195	30,195	30,195	0	0	31,659	86,331	86,331	86,331	0	0	37,734

나. 사업 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보증·담보 여력이 낮은 취약계층 등에 대한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금융회사를 통한 융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득격차 해소와 생활 안정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 근거 및 추진 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구직신청한 실업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금융회사 등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의 융자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그 금전채무를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대상 융자사업 및 보증대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보증채무의 이행 등)

- 제22조제1항에 따라 융자사업을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은 같은 조의 계약 내용에 정하여진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의 계약 내용에 따라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추진 경위

- '00. “근로자 보증 부담 완화를 위한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도입추진” 대통령 보고 (노동부문 국정개혁 과제)
- '01. 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공포(법률 제6510호)
- '02. 1.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시행
- '10. 12.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시행

- '14. 12. 보증한도 상향(1,000만원→2,000만원)
- '15. 5. 채무조정제도(지연이자 감면제도) 도입
- '16. 1. 보증대상 확대(산재보험에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9. 4. 지연이자 인하 및 채무조정제도 개선
- '20. 7.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보증한도 상향(2,000만원→3,000만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증한도 한시 상향(2,000만원→3,000만원*)
* '20. 7. 1.이후 용자신청서 접수하여 '20년 용자마감일까지 용자실행을 완료한 경우에 한함
- '20. 12. 보증대상 확대(특수형태근로종사자(전체),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주요 내용

① 사업 규모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사업 기간: '02년 ~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8,343	33,550	30,195	86,331	37,734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시행 방법: 직접 수행
- 사업 시행 주체: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정책자금 용자 대상자 중 신용보증을 신청하는 자
(저소득 근로자, 산재근로자, 구직 등록한 실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 근거: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신용보증대위변제

: (2025 기변) 86,331백만 원 → (2026 계획) 37,734백만 원, 48,597백만 원 감액

(2025 당초 계획 31,659백만 원 → 제1회 추경 64,611백만 원 → 기금변경 86,331백만 원)

- (요구) '20~'23년 용자 사업 규모 증가에 따른 대위변제금 및 조기상환 보증료환급분 지급 소요 요구

- (산출) 신용보증대위변제 36,867백만 원, 신용보증보증료환급 867백만 원

(1) 신용보증대위변제

- '25년말 추정보증잔액에 해당 용자사업의 최근 5년('20~'24년) 대위변제율 전체 평균(4.99%) 적용하여 산출

- 용자사업별 '25년말 추정보증잔액 × 대위변제율의 평균 4.99

(단위: 백만 원, %)

구분	'25년말 추정 보증잔액	대위변제율의 평균	대위변제금
생활안정자금	338,111	4.99	16,887
임금채불생계비 (채불근로자생계비 포함)	107,899		5,390
소액생계비	1,292		65
직업훈련생계비	239,606		11,968
산재생활안정자금	51,197		2,557
계	738,105		36,867

※ 산식에서는 4.995% 곱함

(2) 신용보증보증료환급

- '25년말 추정보증잔액에 최근 5년간('20~'24년) 용자사업별 보증료 환급비율의 평균 적용·산출 → 867백만 원

- 용자사업별 '25년말 추정보증잔액 × 보증료 환급률

(단위: 백만원, %)

구분	'25년말 추정 보증잔액	보증료 환급률	환급 보증료
생활안정자금	338,111	0.10	338
임금채불생계비 (채불근로자생계비 포함)	107,899	0.25	270
소액생계비	1,292	0.12	2
직업훈련생계비	239,606	0.09	216
산재생활안정자금	51,197	0.08	41
계	738,105		867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6,331	○반환금및손실금(710-03) 31,659,000천 원 1. 신용보증 대위변제 : 30,698,000,000원=30,698,000천 원 + (1차 추경) 32,952,000천 원 + (기금변경) 21,720,000천 원 2. 신용보증 보증료 환급 : 961,000,000원=961,000천 원	37,734	○반환금및손실금(710-03) 37,734,000천 원 1. 신용보증 대위변제 : 36,867,000,000원=36,867,000천 원 2. 신용보증 보증료 환급 : 867,000,000원=867,000 천원

4) 사업 효과

□ 사업 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 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신용보증지원실적: 54,704명, 3,091억 원(누적 842,918명, 39,672억 원) - 예산집행 실적(실적/계획): 28,343백만 원/28,343백만 원 ⇒ 100.0% - 대위변제금 회수 실적: 7,756백만 원(누적 98,332백만 원)
2023	- 신용보증지원실적: 51,289명, 3,068억 원(누적 894,207명, 42,740억 원) - 예산집행 실적(실적/계획): 33,550백만 원/33,550백만 원 ⇒ 100.0% - 대위변제금 회수 실적: 7,320백만 원(누적 105,652백만 원)
2024	- 신용보증지원실적: 36,608명, 1,929억 원(누적 930,815명, 44,670억 원) - 예산집행 실적(실적/계획): 30,195백만 원/30,195백만 원 ⇒100.0% - 대위변제금 회수 실적: 8,173백만 원(누적 113,825백만 원)
2025	- 신용보증지원실적: 34,833명, 1,701억 원(누적 965,648명, 46,371억 원) - 예산 집행 실적(실적/계획): 86,331백만 원/86,331백만 원 ⇒100.0% - 대위변제금 회수 실적: 9,647백만 원(누적 123,472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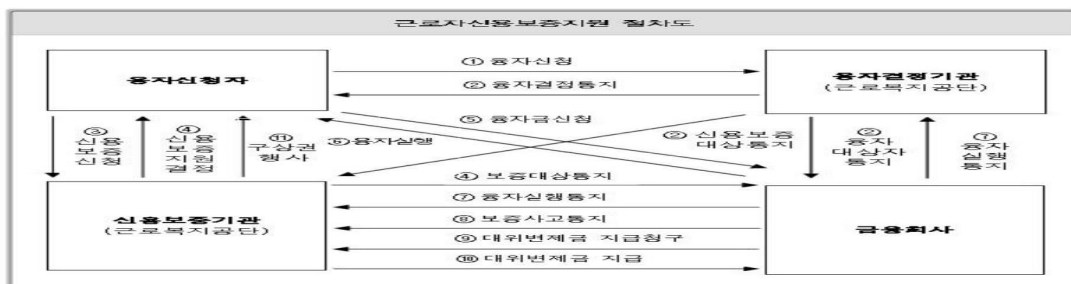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보증·담보 여력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하여 매년 2,000억 원 내외의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저신용·저소득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 보증지원 후 원리금 6개월 이상 연체 등이 발생한 경우 대위변제금을 지급하며, 구상채권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매년 80억 원 내외 회수하여 기금 건전성 강화에 기여

5)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 절차

- 추진 절차
 - 사업계획 수립(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진흥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 근로복지공단 시행
- 적용 법령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제27조, 제92조
 -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 「근로자 신용보증사업 운영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 업무프로세스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구상채권 관리 및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예정처·예결위, '22, '24년도 결산 검토보고서)
○ 기금별 분담 방안 마련 등 기금재정건전성에 대한 점검 필요(예정처 '22년, 예결위 '24년도 결산 검토보고서)
2) 대외공개 평가
○ '24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25년 실시): '우수'
3) 자체평가
○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 평가 결과: '보통' (2024년도 이후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 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28,343	0	28,343	28,343	28,343	100.0	100.0	0	0
2023	33,550	0	33,550	33,550	33,550	100.0	100.0	0	0
2024	30,195	0	30,195	30,195	30,195	100.0	100.0	0	0
2025	31,659	54,672	86,331	86,331	86,331	100.0	100.0	0	0

2) 주요 결산 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사항

2022	- 해당 없음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계획 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 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국회 의결 (2025.6.9.)	신용보증 대위변제	710	03	32,952	1차 추경('25년 신용보증 대위변제 추가소요분 증액)
자체 변경 (2025.11.19.)	신용보증 대위변제	710	03	21,720	신용보증 대위변제 추가소요분 증액
합 계				54,672	

사 업 명
(19) 사업운영비(신용보증인건비)(7081-1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근로복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신용보증 사업계정	080	08E
명칭	진흥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1	102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근로복지기금운영비	사업운영비(신용보증인건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사업운영비 (신용보증인건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 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사업운영비 (신용보증인건비)	3,287	3,386	3,397	3,516	3,516	130	3.8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 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 획
	계 획 액 (수정)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이 월 액	불 용 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이 월 액	불 용 액	
						당 초	수 정					
○ 기능별 분류(합계)	3,287	3,287	3,287	0	0	3,386	3,397	3,397	3,397	0	0	3,516
· 사업운영비 (신용보증인건비)	3,287	3,287	3,287	0	0	3,386	3,397	3,397	3,397	0	0	3,516

나. 사업 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신용보증 지원 사업 수행 인력(52명) 인건비 지원으로 원활한 사업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 근거 및 추진 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6.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② 추진경위

- '93. 12.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정·시행
- '94. 5.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설치
- '01. 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공포(법률 제6510호)
- '02. 1.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시행
- '10. 12.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시행

□ 주요 내용

① 사업 규모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사업 기간: '02년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152	3,206	3,287	3,386	3,516

②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시행 방법: 직접 수행
- 사업 시행 주체: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정책자금 용자 대상자 중 신용보증을 신청하는 자(저소득 근로자, 산재근로자, 구직 등록한 실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 근거: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 신용보증사업계정 사업수행 인력 인건비
- : (2025 기변) 3,397백만 원 → (2026 계획) 3,516백만원, 99백만 원 증액
(2025 당초 계획 3,386백만 원 → 기금운용계획변경 3,397백만원)
- (요구) 신용보증계정 사업수행인력(52명) 인건비 3% 인상
 - (산출) '26년 인건비 3,516백만 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397	○보수(110-01) 3,397,000천 원 1. 인건비(52명) : 3,287,000천 원 2. '25년 인상분(3%) : 99,000천 원 3. 기금변경: 11,000천 원	3,516	○보수(110-01) 3,516,000천 원 1. 인건비(52명) : 3,386,000천 원 2. '26년 인상분 : 119,000천 원 3. 내부경영평가성과급 정상지급분: 11,000천 원

4) 사업 효과

☐ 사업 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 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 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신용보증사업 계정 사업의 원활한 수행

5)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 절차: 해당 없음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 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 없음
- 3) 자체평가: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 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3,152	0	3,152	3,152	3,152	100.0	100.0	0	0
2023	3,206	0	3,206	3,206	3,206	100.0	100.0	0	0
2024	3,287	0	3,287	3,287	3,287	100.0	100.0	0	0
2025	3,386	0	3,386	3,386	3,386	100.0	100.0	0	0

2) 주요 결산 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사항

2022	- 해당 없음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계획 변경: 11백만 원 증액(기금운용계획 변경)

☐ 2025년 계획 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 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 변경 (2025.12.24.)	사업운영비 (신용보증인건비)	110	01	11	대법원 통상임금 기준 판례 변경(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편입)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분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
합계				11	

사 업 명
(20) 사업운영비(신용보증기타경비)(7081-2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근로복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신용보증 사업계정	080	08E
명칭	진흥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81	209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근로복지기금운영비	사업운영비(신용보증기타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사업운영비 (신용보증기타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 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사업운영비 (신용보증기타경비)	839	843	843	843	843	-	-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 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 획
	계 획 액 (수정)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이 월 액	불 용 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이 월 액	불 용 액	
						당 초	수 정					
○ 기능별 분류(합계)	843	843	839	0	4	843	843	843	843	0	0	843
· 사업운영비 (신용보증기타경비)	843	843	839	0	4	843	843	843	843	0	0	843

나. 사업 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신용보증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관리 비용 지원으로 원활한 사업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 근거 및 추진 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 16.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② 추진경위

- '93. 12.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정·시행
- '94. 5.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설치
- '01. 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공포(법률 제6510호)
- '02. 1.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시행
- '10. 12.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시행

□ 주요 내용

① 사업 규모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사업 기간: '02년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02	816	843	843	843

②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시행 방법: 직접 수행
- 사업 시행 주체: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 근거: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사업운영비(신용보증 기타경비)

: (2025 당초 계획) 843백만 원→ (2026 계획) 843백만 원, 전년 동

- (산출) 일반수용비 367백만 원, 공용요금 및 제세 260백만 원, 특근매식비 6백만 원, 일숙직비 1백만 원, 유류비 6백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1백만 원, 복리후생비 43백만원, 기타운영비 62백만 원, 여비 41백만 원, 업무추진비 12백만 원, 직무수행경비 3백만 원, 자산취득비 42백만 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843	○ 일반수용비(210-01) 367,171천 원 1. 사무용품비 24,635천원 가. 기본사무용품비 : 12,000원*52명*12월=7,488천 원 나. 컴퓨터 및 행정소모품 : 12,076,000원=12,076천 원 다. 복사용지 : 5,071,000원=5,071천 원 2. 비품수선비 : 4,185,000원=4,185천 원 3. 인쇄 및 유인비 : 4,505,000원=4,505천 원 4. 신문구독료 12,000원*1부*12월=144천 원 5. 업무관련 도서구입비 : 20,000원*1권*12월=240천 원 6. 소송비용 292,833천 원 가. 가압류비용 : 119,052,000원=119,052천 원 나. 지급명령 신청비용 : 71,825,000원= 71,825천 원 다. 본안소송비용 : 45,360,000원=45,360천 원 라. 강제집행비용 : 56,596,000원=57천 원 7. 공고 및 안내 : 14,981,000원=14,981천 원 8.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비 3,400천 원 가. SMS문자서비스 수수료 : 42,500건*20원*4회=3,400천 원 9. 가상계좌시스템운영비 : 300원*10,000건*2회=6,000천 원 10. 구상채권 결손처분협의회(외부기관위원수당) : 84,000원*2명*1회*11개 거점기관=1,848천 원 11. 직원직무교육 5,256천 원 가. 숙박비 : 11,000원*52명*2박*1회=1,144천 원 나. 식대 : 6,000원*52명*6식*1회=1,872천 원 다. 교재비용 : 10,000원*52명*2명=1,040천 원 라. 버스임차료 : 200,000원*2대*1회=400천 원 마. 강의장사용료 : 400,000원*2일*1실= 800천 원 바. 직무교육 강사위촉수당 : 45,000원*5시간*4명*1회=900천 원 12. 신용관리실무위탁교육 : 108,000원*52명*1회=5,616천 원 13. 단수조정: -2,124,000원=-2,124천 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259,710천 원 1. 우편요금 42,470천 원 가. 보통우편: 470원*26,608건=12,506천 원 나. 등기우편: 2,510원*11,141건=27,964천 원 다. 기타우편요금: 2,000,000원=2천 원 2. 전화요금 : 80,000원*52회선*12월=49,920천 원 3. 신용평가 및 신용정보 활용 수수료 27,800천 원 가. 재산조사 등 신용평가 수수료(구상채권회수): 10,000원*200건=2,000천 원 나. 신용평가시스템 수수료: 2,150,000원*12월=25,800천 원	843	○ 일반수용비(210-01) 367,171천 원 1. 사무용품비 24,635천 원 가. 기본사무용품비 : 12,000원*52명*12월=7,488천 원 나. 컴퓨터 및 행정소모품 : 12,076,000원=12,076천 원 다. 복사용지 : 5,071,000원=5,071천 원 2. 비품수선비 : 4,185,000원=4,185천 원 3. 인쇄 및 유인비 : 4,505,000원=4,505천 원 4. 신문구독료 12,000원*1부*12월=144천 원 5. 업무관련 도서구입비 : 20,000원*1권*12월=240천 원 6. 소송비용 292,833천 원 가. 가압류비용 : 119,052,000원=119,052천 원 나. 지급명령 신청비용 : 71,825,000원= 71,825천 원 다. 본안소송비용 : 45,360,000원=45,360천 원 라. 강제집행비용 : 56,596,000원=57천 원 7. 공고 및 안내 : 14,981,000원=14,981천 원 8.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비 3,400천 원 가. SMS문자서비스 수수료 : 42,500건*20원*4회=3,400천 원 9. 가상계좌시스템운영비 : 300원*10,000건*2회=6,000천 원 10. 구상채권 결손처분협의회(외부기관위원수당) : 84,000원*2명*1회*11개 거점기관=1,848천 원 11. 직원직무교육 5,256천 원 가. 숙박비 : 11,000원*52명*2박*1회=1,144천 원 나. 식대 : 6,000원*52명*6식*1회=1,872천 원 다. 교재비용 : 10,000원*52명*2명=1,040천 원 라. 버스임차료 : 200,000원*2대*1회=400천 원 마. 강의장사용료 : 400,000원*2일*1실= 800천 원 바. 직무교육 강사위촉수당 : 45,000원*5시간*4명*1회=900천 원 12. 신용관리실무위탁교육 : 108,000원*52명*1회=5,616천 원 13. 단수조정: -2,124,000원=-2,124천 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259,710천 원 1. 우편요금 42,470천원 가. 보통우편 : 470원*26,608건=12,506천 원 나. 등기우편 : 2,510원*11,141건=27,964천 원 다. 기타우편요금 : 2,000,000원=2천 원 2. 전화요금 : 80,000원*52회선*12월=49,920천 원 3. 신용평가 및 신용정보 활용 수수료 27,800천 원 가. 재산조사 등 신용평가 수수료(구상채권회수) : 10,000원*200건=2,000천 원 나. 신용평가시스템 수수료 : 2,150,000원*12월=25,800천 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4. 신용회복지원 분담금 : 126,720,000원= 126,720천 원 5. 보증보험료 : 50,000원*52명=2,600천 원 6. 한국신용정보원 전용회선사용료 : 200,000원*12월= 2,400천 원 7. 통신회선 유지보수료 : 50,000원*12월=600천 원 8. 가상계좌 월회선 사용료 : 100,000원*12개월=1,200천 원 9. 사업소세 6,000,000원= 6,000천 원 ○ 특근매식비(210-05) 5,860천 원 1. 직원특근매식비 : 5,860,000원=5,860천 원 ○ 일숙직비(210-06) 635천 원 1. 일숙직수당 : 635,000원=635천 원 ○유류비(210-08) 5,500 천 원 1. 유류비 : 5,500,000원= 5,500천 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080천 원 1. 통신시설유지비: 90,000원*12월=1,080천 원 ○ 복리후생비(210-12) 42,809천 원 1. 고교생 자녀학자금보조금: 4,329,000원=4,329천 원 2. 취미활동지원비: 15,000원*52명*6회= 4,680천 원 3. 단체보장성보험 가입: 77,000원*52명=4,004천 원 4. 맞춤형복지카드: 573,000원*52명=29,796천 원 ○ 기타운영비(210-16) 61,957천원 1. 부운영비 : 100,000원*1부*12월=1,200천 원 2. 구상채권회수 및 보증사고 해제 포상: 60,960,000원=60,960천 원 3. 단수조정 : -203,000원=-203천 원 ○ 국내 여비(220-01) 41,191천 원 1. 관내 여비: 22,000원*52명*4일*12월*0.5=27,456천 원 2. 관외여비 18,480천 원 가. 구상권행사 출장여비: 60,000원*100개소=6,000천 원 나. 업무점검출장여비: 60,000원*4명*11개소*2회=5,280천 원 다. 유관기관 업무수행 출장여비 : 60,000원*4명*12월*2.5회=7,200천 원 3. 단수조정 : -4,745,000원=-4,745천 원 ○ 사업추진비(240-01) 9,885천 원 1. 사업수행관련업무비 9,885천 원 가. 유관기관사업업무추진비 : 170,000원*12월=2,040천 원 나. 지역본부 및 지사 : 7,845,000원=7,845천 원 ○ 관서업무비(240-02) 2,047천 원 1. 체육행사비: 17,000원*52명*2회=1,768천 원 2. 근로자의날: 5,000원*52명=260천 원 3. 단수조정: 19,000원=19천 원 ○ 직책수행경비(250-02) 3,427천 원 1. 월정직책급 (2급 1명, 3급 2명): 3,427,000원=3,427천 원		4. 신용회복지원 분담금 : 126,720,000원= 126,720천 원 5. 보증보험료 : 50,000원*52명=2,600천 원 6. 한국신용정보원 전용회선사용료 : 200,000원*12월= 2,400천 원 7. 통신회선 유지보수료 : 50,000원*12월=600천 원 8. 가상계좌 월회선 사용료 : 100,000원*12개월=1,200천 원 9. 사업소세 6,000,000원= 6,000천 원 ○ 특근매식비(210-05) 5,860천 원 1. 직원특근매식비 : 5,860,000원=5,860천 원 ○ 일숙직비(210-06) 635천 원 1. 일숙직수당 : 635,000원=635천 원 ○유류비(210-08) 5,500천 원 1. 유류비 : 5,500,000원= 5,500천 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080천 원 1. 통신시설유지비 : 90,000원*12월=1,080천 원 ○ 복리후생비(210-12) 42,809천 원 1. 고교생 자녀학자금보조금: 4,329,000원=4,329천 원 2. 취미활동지원비: 15,000원*52명*6회= 4,680천 원 3. 단체보장성보험 가입: 77,000원*52명=4,004천 원 4. 맞춤형복지카드 573,000원*52명=29,796천 원 ○ 기타운영비(210-16) 61,957천 원 1. 부운영비: 100,000원*1부*12월=1,200천 원 2. 구상채권회수 및 보증사고 해제 포상 : 60,960,000원=60,960천 원 3. 단수조정 : -203,000원=-203천 원 ○ 국내여비(220-01) 41,191천 원 1. 관내여비 : 22,000원*52명*4일*12월*0.5=27,456천 원 2. 관외여비 18,480천원 가. 구상권행사 출장여비 : 60,000원*100개소=6,000천 원 나. 업무점검출장여비 : 60,000원*4명*11개소*2회=5,280천 원 다. 유관기관 업무수행 출장여비 : 60,000원*4명*12월*2.5회=7,200천 원 3. 단수조정: -4,745,000원=-4,745천 원 ○ 사업추진비(240-01) 9,885천 원 1. 사업수행관련업무비 9,885천 원 가. 유관기관사업업무추진비: 170,000원*12월=2,040천 원 나. 지역본부 및 지사: 7,845,000원=7,845천 원 ○ 관서업무비(240-02) 2,047천 원 1. 체육행사비 : 17,000원*52명*2회=1,768천 원 2. 근로자의날: 5,000원*52명=260천 원 3. 단수조정: 19,000원=19천 원 ○ 직책수행경비(250-02) 3,427천 원 1. 월정직책급 (2급 1명, 3급 2명): 3,427,000원=3,427천 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 자산취득비(430-01) 41,728천 원		○ 자산취득비(430-01) 41,728천 원
	1. 사무기기 구입비 41,728천 원		1. 사무기기 구입비 41,728천 원
	가. 컴퓨터 구입: 1,500,000원*10명=15,000천 원		가. 컴퓨터 구입: 1,500,000원*10명=15,000천 원
	나. 소프트웨어 구입: 250,000원*10명= 2,500천 원		나. 소프트웨어 구입: 250,000원*10명= 2,500천 원
	다. 복사기: 4,000,000원*2대=8,000천 원		다. 복사기: 4,000,000원*2대=8,000천 원
	라. 프린터: 900,000원*1대=900천 원		라. 프린터: 900,000원*1대=900천 원
	마. 스캐너 구입: 1,532,800원*10대=15,328천 원		마. 스캐너 구입: 1,532,800원*10대=15,328천 원

4) 사업 효과

☐ 사업 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 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 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신용보증사업계정 사업의 원활한 수행

5)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 절차: 해당 없음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 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 없음
- 3) 자체평가: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 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902	0	902	902	849	94.1	94.1	0	53
2023	816	0	816	816	814	99.7	99.7	0	2
2024	843	0	843	843	839	99.5	99.5	0	4
2025	843	0	843	843	843	100.0	100.0	0	0

2) 주요 결산 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사항

2022	- 불용 사유: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경상경비 하반기 예산 10% 절감 및 집행잔액
2023	- 불용 사유: 집행잔액
2024	- 불용 사유: 집행잔액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계획 변경 세부내역: 해당 없음

사 업 명
(21)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13-97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근로복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신용보증 사업계정	080	08E
명칭	진흥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13	978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비통화금융 기관예치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 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17,300	34,901	6,890	17,696	17,696	△17,205	△49.3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 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21,119	21,119	17,300	0	0	34,901	6,890	6,890	-	0	0	17,696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1,119	21,119	17,300	0	0	34,901	6,890	6,890	-	0	0	17,696

나. 사업 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근로자신용보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여유자금 운용

2) 사업개요

□ 사업 근거 및 추진 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90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제1항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용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제15항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을 위한 수익사업에의 투자

② 추진 경위

- 최초 사업 시작 년도: 2002년

□ 주요 내용

① 사업 규모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사업 기간: 2002년 ~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21,119	28,621	17,696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시행 방법: 직접 수행
- 사업 시행 주체: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 근거: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신용보증사업계정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한 여유자금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025 기금운용계획 변경) 6,890백만 원 → (2026 계획) 17,696백만원, 10,795백만 원 증액
(2025 당초 계획 34,901백만 원 → 제1회 추경 28,621백만 원 → 기금변경 6,890백만 원)
- '26년 말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예상액 : 17,696백만 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890	[470-03]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6,890백만 원 가. 당초예산 34,901백만 원 나. (1회 추경)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비 -6,280백만 원 다. (기금운용계획변경)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비 -21,720백만 원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인건비 -11백만 원	17,696	[470-03]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17,696백만 원

4) 사업 효과: 해당 없음

5)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 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 없음
- 3) 자체평가: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 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0	0	0	0	0	0	0	0	0
2023	0	0	0	0	1,000	순증	순증	0	0
2024	21,119	0	21,119	21,119	17,300	81.9	81.9	0	0
2025	34,901	△31,011	6,890	6,890	0	0	0	0	0

2) 주요 결산 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사항: 해당 없음

☐ 2025년 계획 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 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국회 의결 (2025.6.9.)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470	03	6,280	'25년 신용보증 대위변제 제1차 추경 집행을 위한 여유자금 활용
자체 변경 (2025.11.19.)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470	03	21,720	신용보증 대위변제 기금변경을 위한 여유자금 활용
자체 변경 (2025.12.24.)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470	03	11	통상임금 판례변경에 따른 인건비 집행을 위한 여유자금 활용
합계				28,011	

사 업 명
(22)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9005-84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근로복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실업대책 사업계정	080	08E
명칭	진흥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000	9005	841
명칭	기금간거래(예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탁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 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탁	24,000	40,000	40,000	40,000	40,000	-	-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 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24,000	24,000	24,000	0	0	40,000	40,000	40,000	40,000	0	0	40,000
· 내역사업명	24,000	24,000	24,000	0	0	40,000	40,000	40,000	40,000	0	0	40,000

나. 사업 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근로복지진흥기금 실업대책사업계정 여유자금 일부를 공자기금에 예탁

2) 사업개요

□ 사업 근거 및 추진 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 하며,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등” 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4. 「국가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

② 추진 경위

- 2018년도 기금준치평가 시 중기 가용자산 과다 보유로 공자기금 예탁 권고하여 2019년부터 예탁실시

□ 주요 내용

① 사업 규모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사업 기간: '19년~'20년, '23년 ~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24,000	24,000	40,000	40,000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시행 방법: 직접 수행
- 사업 시행 주체: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 근거: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 (2025 당초 계획) 40,000백만 원 → (2026 계획) 40,000백만 원 (전년 동)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0,000	[480-03] 기금예탁금	40,000백만 원	40,000	[480-03] 기금예탁금	40,000백만 원

4) 사업 효과

☐ 사업 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 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 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여 국가 재정 융자 등 공공목적에 투자하고, 국채의 발행 규모를 축소하여 국가 재정 안정화에 기여

5)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 절차: 해당 없음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 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 없음
- 3) 자체평가: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 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0	0	0	0	0	0	0	0	0
2023	24,000	0	24,000	24,000	24,000	100.0	100.0	0	0
2024	24,000	0	24,000	24,000	24,000	100.0	100.0	0	0
2025	40,000	0	40,000	40,000	40,000	100.0	100.0	0	0

2) 주요 결산 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사항

2022	- 해당 없음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계획 변경 세부내역: 해당 없음

사 업 명
(23) 통화금융기관예치(9713-97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근로복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실업대책 사업계정	080	08E
명칭	진흥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13	971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통화금융기관 예치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공단
	사업시행주체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 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중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통화금융 기관예치	1	2	2	2	2	-	-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 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2	2	1	0	0	2	2	2	0	0	0	2
· 통화금융기관예치	2	2	1	0	0	2	2	2	0	0	0	2

나. 사업 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통화금융기관예치) 근로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여유자금 운용

2) 사업개요

□ 사업 근거 및 추진 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근로복지기본법」 제90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제1항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용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제15항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을 위한 수익사업에의 투자

② 추진 경위

- 최초 사업 시작 년도: 1999년

□ 주요 내용

① 사업 규모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사업 기간: 1999년 ~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	2	2	2	2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시행 방법: 직접 수행
- 사업 시행 주체: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 근거: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① 중소복지계정 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한 여유자금
- 통화금융기관예치(실업대책): (2025 당초 계획) 2백만 원 →(2026 계획) 2백만 원 (전년 동)
 - '26년 말 통화금융기관 예치 예상액: 2백만 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	[470-02] 통화금융기관예치금	2백만 원	2	[470-02] 통화금융기관예치금	2백만 원

4) 사업 효과: 해당 없음

5)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 절차: 해당 없음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 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 없음
- 3) 자체평가: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 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2	0	2	2	6,728	336,415.5	336,415.5	0	0
2023	2	0	2	2	6,729	336,473.4	336,473.4	0	0
2024	2	0	2	2	1	51.2	51.2	0	0
2025	2	0	2	2	0	0	0	0	0

2) 주요 결산 사항: 해당 없음

사 업 명
(24)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13-97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근로복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실업대책 사업계정	080	08E
명칭	진흥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13	979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 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중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21,737	6,239	6,239	9,102	9,102	2,863	31.5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 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20,986	20,986	21,737	0	0	6,239	6,239	6,239	-	0	0	9,102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0,986	20,986	21,737	0	0	6,239	6,239	6,239	-	0	0	9,102

나. 사업 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근로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여유자금 운용

2) 사업개요

□ 사업 근거 및 추진 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근로복지기본법」 제90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제1항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용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제15항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을 위한 수익사업에의 투자

② 추진 경위

- 최초 사업 시작년도: 1999년

□ 주요 내용

① 사업 규모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사업 기간: 1999년 ~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553	14,024	20,986	6,239	9,102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시행 방법: 직접 수행
- 사업 시행 주체: 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 근거: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실업대책사업계정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한 여유자금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025 당초 계획) 6,239백만 원 → (2026 계획) 9,102백만 원, 2,863백만 원 증액
- '26년 말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예상액: 9,102백만 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239	[470-03] 통화금융기관예치금 6,239백만 원	9,102	[470-03] 통화금융기관예치금 9,102백만 원

4) 사업 효과: 해당 없음

5)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 절차: 해당 없음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 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 없음
- 3) 자체평가: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 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3,553	0	13,553	13,553	37,329	275.4	275.4	0	0
2023	14,024	0	14,024	14,024	13,835	98.7	98.7	0	0
2024	20,986	0	20,986	20,986	21,737	103.6	103.6	0	0
2025	6,239	0	6,239	6,239	0	0	0	0	0

2) 주요 결산 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사항

2022	- 해당 없음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계획 변경 세부내역: 해당 없음

